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검역대상전염병 확대에 따른 검역관리방안 마련

A Study on the Reform of Quarantine Guideline
in Compliance with the Expansion of the Quarantine Diseases

주관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질병관리본부

주 의

1. 이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최종결과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과제 번호	2008-E00208-00		
과제명	국문	검역대상전염병 확대에 따른 검역관리방안 마련	
	영문	A Study on the Reform of Quarantine Guideline in Compliance with the Expansion of the Quarantine Diseases	
주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이재용
주관연구 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전공
	손명세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보건 정책
	연락처	이메일	핸드폰번호
	02-2228-1870	msohn53@yuhs.ac	011-396-5340
연구기간	2008 년 4 월 21 일 - 2008 년 8 월20 일(4개월)		
연구비	29,100,000원		
연구기간	2008 . 4 . 21 - 2008 . 8 . 20		
총참여	11 명		
연구원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2명 보조원: 4명)		
2008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최종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최종결과보고서 10부. 2008 년 8 월 20 일 주관연구책임자 손명세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이재용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목 차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1

(한글) 검역대상전염병 확대에 따른 검역관리방안 마련

(영문) A Study on the Reform of Quarantine Guideline in Compliance with the Expansion of the Quarantine Diseases

II. 학술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목 차례>

제1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3
제1절 목표.....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목표 달성도.....	7
1. 연구목표 달성도.....	7
2. 연구에의 기여도.....	7
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8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9
제1절 연구 내용.....	9
제2절 연구 방법.....	10
제3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12
제1절 국내 검역법규 현황.....	12
제2절 국내 검역 현황.....	15
1. 운행 현황.....	15
2. 검역 실시 현황.....	48
3. 검역 결과.....	63
제3절 국외 검역 현황.....	68
1. 검역 업무 관련.....	68
2. 검역소 조직 관련.....	103
제4절 검역핵심역량 평가.....	126
1. 국제보건규칙(2005)의 분석.....	126

2. 설문조사를 통한 검역핵심역량 평가.....	133
제5절 과학적 검역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 및 개선안.....	137
1. 검역조사방법 개선안.....	137
2. 검역 소독방법 개선안.....	186
3. 무전검역 및 승선검역 체계 개선안.....	214
4. 오염지역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217
5.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222
제6절 검역업무지침 개정안.....	227
제7절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개정(안).....	271
1.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개정안 제1안.....	271
2.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개정안 제2안.....	279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284
제5장 연구성과.....	286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287
제7장 참고문헌.....	287
제8장 첨부서류	289
부록1. 호주에 도착하는 항공사 및 항공기 오퍼레이터를 위한 지침.....	290
부록2. 호주 크루즈 선박의 대리인 및 운항자를 위한 안내.....	309
부록3. US 통관항의 공중보건감시 연방 검역관을 위한 지침.....	321
부록4. 중국 검역 규칙.....	335
부록5. 중국 국제선박 행정검역조치.....	383
부록6. 일본 검역법.....	395
부록7. WHO : 항공기 살충 권고안.....	431
부록8. 호주 Schedule of Aircraft Disinsection Priocedures.....	440
부록9. 네덜란드 Schedule of Requirements Ship Sanitation.....	451
부록10. 호주 Mandatory Ballast Water Management Requirments.....	464
부록11. 입국지점의 핵심 역량	473

I.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과 제 명	검역대상전염병 확대에 따른 검역관리방안 마련		
중심단어	국제보건규칙(2005), 검역대상전염병, 검역체계, 검역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주관연구책임자	손 명 세
연구기간	2008.4 - 2008 . 8		
1. 필요성 및 목표			
국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역법을 주축으로 하는 국내 검역 현황 및 실태에 적합한 과학적 검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검역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을 도모			
2. 연구 방법			
문헌조사 : 자료 수집을 통한 사안의 검토			
면접조사 및 현장조사: 검역체계에 관련 공무원 및 해외 검역 기관을 방문 및 면접하여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			
검역 실무자 자문회의 :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안 도출을 위한 의견 검토			
워크샵 : 개정안 및 정책개편방향에 대한 검역 실무자들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3. 내용			
첫째, 국내 각 검역소의 검역추이 및 경향 분석을 통한 개정의 재고사항 파악,			
둘째, 해외 각국의 검역 자료의 수집과 각국 검역기관의 조직 및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이해,			
셋째, 선진국가 검역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방문 및 해당 국가의 검역업무수행에서의 고려점 파악,			
넷째, IHR2005에 따른 국제적인 검역체계개선과 관련된 각국의 노력 파악			
다섯째, 검역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쟁점별 표준안 마련			
◆ 전염병별(세균성 전염병 및 바이러스성 전염병) 검역조사 기준			
◆ 운송수단별 (항공기 및 선박) 검역조사 기준			
◆ 전염병별(매개체) 검역소독 기준			
◆ 운송수단별 (항공기 및 선박) 검역소고 기준			
◆ 검역질문지 간소화 방안			
◆ 합리적 오염지역 선정 방안			
여섯째, 쟁점별 표준안을 반영한 공항 및 해항 검역이 구분된 검역지침 마련			

Summary

Title of Project	A Study on the Reform of Quarantine Guideline in Compliance with the Expansion of the Quarantine Diseases		
Key Words	communicable disease, quarantine system, IHR 2005		
Institute	Yonsei University	Project Leader	Myoungsei Sohn
Project Period	2008.4 - 2008 . 8		
1. Purposes and necessities the efficient improvement with scientific quarantine system suited to Korean quarantine status and situation in order to prevent and quarantine the communicable diseases from abroad 2. Method reviews of documents: review of the cases with the collecting documents field studies with interviews: to visit foreign quarantine organization and to interview the quarantine officer in order to find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foreign quarantine systems. consulting conference with working-level talks: reviews of the quarantine officers' opinion working in the field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nt quarantine guideline workshop: to collect the quarantine officers' opinions on the future amendment and new direction of the quarantine policy, resulting in agreement of the amendment 3.Contents the first, the reviews of the current changes in the domestic quarantine station and the key point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rantine system. the second, the collection of the foreign documents and the understanding of foreign quarantine system. ,the third, visiting the quarantine organization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understanding the key points of their performances in the quarantine system. the forth, examination of the effor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rantine system due to IHR2005 the fifth, the preparation of the standard guideline for the amendment of the quarantine system ◆ the guideline for the quarantine and inspection related to categorized communicable diseases(viral and bacterial) ◆ the guideline for the quarantine and inspection related to transportations(ships, aircrafts,trains) ◆ the guideline for sanitification ◆ related to related to categorized communicable diseases(viral and bacterial) ◆ related to transportations(ships, aircrafts,trains) ◆ the plan of simplification on the quarantine inquiries ◆ the plan of appropriate declaration on the infected areas the sixth, the preparation of the quarantine guideline with the standards including the key points(classified as airports and ports)			

제1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제1절 목표

1. 연구 배경

가.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

-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5. 5. 23 제58차 세계보건총회시 국제보건규칙 (IHR) 전면 개정
-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23일 제58차 세계보건총회 “정부협상팀회의” 참석하여 제5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보건규칙(2005)에 수용의사를 표명하고 최종안에 합의하였음
- 회원국이 유보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세계보건규칙(2005)은 해당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하며, 이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 사업 또는 법률을 개정·수립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이미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이행 보고를 하는 2008년 제61차 총회까지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자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착수·진행중에 있음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책,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 진행 중에 있는 검역법 전면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내용을 뒷받침해 줄 검역 관련 업무지침 및 검역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국제보건규칙에서 규정된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질병발생에 대한 감시와 대응 능력 및 검역 능력"을 2012년 6월까지 규칙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2007. 6. 15 국제보건규칙(2005)이 발효됨에 따라 2012. 6월까지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요구하는 검역핵심역량을 개발·강화·유지해야 함
- 13개 검역소의 현 역량을 평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대내외적 검역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검역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나.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한 검역관리체계의 변화

- 일본의 검역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검역업무는, 선박검역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던 과거의 업무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 선박 검역에 대한 수요보다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신종 전염병의 확산

- 최근 들어 SARS, 조류독감 등 신종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세계적인 위협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SARS 및 조류독감을 검역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검역조사 및 소독 기준은 세균성 전염병 쪽에 치중하고 있어, 바이러스 및 진균성 전염병 등의 검역조사 및 소독에 관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라. 검역필요성의 증가와 검역인력의 부족

- 신종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국제보건비상사태의 발발 및 증가하는 국가 간 왕래로 말미암아 검역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검역투입가능인력의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2. 연구 목적

가.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요구하는 검역핵심역량 강화 및 확보 방안 마련

- 국제보건규칙(2005)은 2012. 6월까지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요구하는 검역핵심역량을 개발·강화·유지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함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부과하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규칙(2005)가 요구하고 있는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 역량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13개 검역소의 현 역량을 평가하도록 함
- 평가된 검역소의 검역핵심역량현황 분석을 통해 국제보건규칙(2005)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 및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함

나. 과학적인 검역관리체계 구축

- 국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역법을 주축으로 하는 국내 검역 현황 및 실태에 적합한 과학적 검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검역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을 도모하고자 함
-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표준안 마련
 - 현 검역체계는 항만 및 선박검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기·열차·자동차·여행자 등 운송수단이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현 검역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항공기·열차·자동차·여행자 등 다양해진 운송수단에 맞추어 각각의 검역조사 및 조치에 관한 표준안 마련이 필요함
- 전염병별 검역조사 표준안 마련
 - 현행 검역법상 검역대상전염병은 콜레라·페스트·황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나, 개정 예정인 검역법은 검역대상전염병의 범위를 콜레라·페스트·황열 외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추가하고 있음
 - 기존의 검역조사는 주로 세균성 전염병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검역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각 검역전염병별 검역조사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함
- 오염지역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제시
 - 현재 검역업무는 각 국가별로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오염지역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오염지역 운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대표적인 오염지역으로 구분되는 중국과의 왕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세균성 전염병 위주의 검역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특히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질문서 징구 및 승선검역 등) 검역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됨은 물론이며, 인력사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임
 - 특히 가장 왕래가 많은 중국의 경우, 콜레라 등 세균성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중국 전체가 오염지역으로 구분되어 중국에서 입항하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형편이어서 비효율적인 검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오염지역, 비오염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프로그램 및 표준안 마련

- 최근 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의 발발로 말미암아 검역인력의 수적인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유관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검역소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등을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프로그램 및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함

○ 검역업무지침 개정안 제시

- 전염병별·운송수단별 검역조사표준안 및 소독기준 그리고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프로그램 및 표준안을 포괄하는 해항과 공항으로 분리된 검역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함

제2절 목표 달성도

1. 연구목표 달성도

- 개정된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변화된 국외 검역관련법규 및 검역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과학적 선진 검역 체계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각 검역소별 검역운영현황 및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입국 현황을 국가별/지역별/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부과하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규칙(2005)가 요구하고 있는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 역량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13개 검역소의 현 역량을 평가하였음
- 검역조사방법 개선안 제시
 - 전염병 증상별 및 매개체별 검역조사방법 기준 마련
 - 운송수단별 위생조사방법 기준 마련
 - 검역질문서 개선안 마련
 - 오염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 방안 제시
- 검역 소독 표준안 마련
 - 운송수단별 검역 소독 표준안 제시
 - 전염병 매개체별 검역 소독 표준안 제시
- 공항, 항만, 육로 등 검역장소별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프로그램 쟁점 분석
- 공항과 해항으로 분리된 검역업무지침 개정안 및 선박등 위생검사지침 개정안 마련

2. 연구에의 기여도

-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선진 검역체계의 수립방안과 검역 업무 지침 및 표준안 마련에 반영할 수 있음.
- 통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합리적인 검역체계수립과 검역인원 확보 및 배치를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2012. 6월까지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요구하는 검역핵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며, 신종전염병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3개 국립검역소가 검역업무의 표준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과학적인 검역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각 운송수단별·전염병별 검역체계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검역업무지침 및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정된 국제보건규칙(2005)의 이행을 위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국내 검역체계가 정비될 수 있음

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제보건규칙(2005) 발표에 따른 동향

-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2005) 발표 : 2005. 05
- 국제보건규칙(2005) 번역 및 배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질병관리본부
-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
주관-질병관리본부, 연구-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2005.12.21~2006.6.20)
-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2007.05.09 -> 제17대 국회 임기만료 자동폐기 (2008.5.29)
-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2007.06.11. -> 제17대 국회 임기만료 자동폐기 (2008.5.29)
-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법 및 검역법의 하위법령 개정방향 연구
주관-질병관리본부, 연구-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2007.11~2008.4)
-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2008.05.09
-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2008.07.17.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내용

□ 1단계

- 검역조사방법 개선안 제시
 - 승선검역·무선검역 체계 개선
 - 검역질문서 간소화 방안 마련
- 오염지역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제시
 - 과거 5년간의 각 검역소별 검역운영현황을 국가별/지역별/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오염지역 선정에 반영

□ 2단계

- 국외 검역관련현황 파악 및 분석
 - 개정된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변화된 국외 검역관련법규 및 검역현황 조사·분석
 - 국외의 선진 검역 체계 조사·분석
 - 필수조사 대상국가 : 아시아권(중국, 일본, 홍콩), 미주권(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권(3개국)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요구하는 검역핵심역량 확보 방안 제시
 - 국제보건규칙(2005) 상의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교차점)을 위한 핵심역량 요건’ 분석
 - 13개 국립검역소의 현 검역핵심역량 평가
 - 검역핵심역량 확보 방안 마련

□ 3단계

- 검역조사 표준안 제시
 - 항공기, 선박, 자동차, 열차 등 운송수단별 위생검사 표준안 마련
 - 운송수단 및 운송수단에 실린 화물에 대한 소독기준 마련
 - 전염병별 검역조사 표준안 마련

- 공항, 항만, 육로 등 검역장소별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프로그램 보완 및 표준안 제시
 -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 검사
 -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 검역구역내 감염병원균 분포상태 조사
 - 선박의 균형유지수(Ballast Water)에 대한 조사
- 검역업무지침, 선박등 위생검사지침 개정안 제시
 - 공항과 해항으로 분리된 검역업무지침 개정안 마련
 - 각종 서식 정비 및 작성기준 마련

제2절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자료 수집을 통한 사안의 검토
 - 국내에서 발간·발표된 검역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인터넷 검색 및 통계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정책 및 규칙, 기준, 제도의 검토 및 문제점 파악
 - 국외사례 검토 : 세계보건기구 및 선진국의 검역 관련 문헌 및 법안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국외의 검역 관련 정책 및 제도·현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가능성 검토
- 통계 분석
 - 최근 5년 간의 전국 각 국립검역소 검역운영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지역별, 검역소별 검역현황을 분석하고, 검역운영의 변화양상을 예측하여, 장기적인 업무량을 추정
 - 이를 통해 과학적인 검역필요인력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오염지역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국내·외 검역현장조사
 - 각 입국지점(공항, 항만, 육상교차점)별로 관련 검역소를 방문하여, 항공기·선박·열차·자동차·도보 등 각 운송수단 별 검역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

- 선진국의 검역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 및 호주의 검역소를 방문, 그들의 검역운영현황 및 검역체계를 살펴보고 선진검역시스템을 우리나라의 검역체계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

○ 검역 실무자 자문회의

- 각 공항, 항만, 육상교차점 검역 별로 각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및 조치 표준안을 마련
- 위에서 실시한 검역핵심역량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와 외국의 검역체계 및 검역현황 등을 평가, 반영하여 과학적인 검역 업무 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를 구성된 실무자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받는 절차를 거침

○ 설문조사

- 전국 13개 검역소 및 질병관리본부 검역업무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국내 검역핵심역량을 평가

○ 워크숍 개최

- 검역업무관련 지침 개정안 및 표준안에 대한 검역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검역관련 공무원 및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합의 도출

제3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제1절 국내 검역법규 현황

1. 검역법 및 검역법 하위법령 개정

가. 검역법 개정 배경

- 지금의 검역법은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해공항검역규칙(남조선과도정부보건후생부령 제2호)이 폐지되고 1954년 해외로부터 전염병이 전입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해공항에 내항하는 승객·승무원·선박·항공기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해공항검역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1963년 이 법의 명칭을 검역법으로 바꾸어 개정한 후, 약 12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짐.
- 현재의 검역법은 일본의 검역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초기 제정 당시부터 항만 및 선박검역을 위주로 제정되었고, 이후 항공기, 도보검역 등이 추가되어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한 조항에 선박, 항공기, 여행자, 도보검역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검역기준의 혼동을 야기시킴.
-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개정과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법안의 체계에 있어서의 정합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삭제 조항과 유사조항 등이 다수 남아 있어 국제보건규칙(2005)가 개정되기 전부터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음
-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 발효 후, 5년 이내에 질병감시, 평가, 보고체계를 국제보건규칙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비(동 규칙 § 5.1)하여야 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꾸준히 행하고 있음

나. 검역법 주요개정방향

- ① 법률 체계 정비

- '목적', '용어정의' 조항을 대폭 수정하고(안 제1조 및 제2조),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보호'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 제6조 및 제7조)
- 각 조문의 성격 및 내용에 포함토록 장(章) 분류체계를 개선함
- ② IHR 개정안에 제시된 각종 공중보건조치의 시행 근거 마련
- 검역감염병을 기존의 3종(콜레라, 황열, 페스트)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추가하여 5종으로 검역감염병을 확대함(안 제2조)
-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중보건조치’, ‘검역감염병 감염의심자에 대한 감시’, ‘입·출국의 금지’ 조항 신설(안 제8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9조)
- “취 또는 벌레”를 “감염병매개체”로 “취잡이소독증명서”를 “선박위생증명서”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의 명칭 변경(안 제33조 및 제36조)
- ③ 기타 각종 검역제도의 보완
- ‘조건부 검역해제’, ‘물품수입 제한’, ‘시체해부’, ‘외국여행자 진찰’, ‘검역차 검역기 계양’ 등 현 검역 여건상 실효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조항 삭제(안 제18조, 제28조, 제34조, 제40조)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현행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격리수 이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법률에 규정(안 제27조)
- ‘하물’ 또는 ‘화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화물’로 통일 (안 제1조, 제14조 등)
- ④ 검역선 등의 운용근거 마련
- 검역소장은 검역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과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역감염병환자 발생 등 검역구역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검역감염병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다. 검역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방향

- 하위법령 체계 정비
- 감시감염병의 범위
- 권한의 위임 문제
-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 검역소독 대행업 등록을 위한 시설, 장비, 약제 및 인력 기준
- 검역차량 및 검역선 운용 기준
- 각종 서식 정비

제2절 국내 검역 현황

1. 운행 현황

가. 항공기

(1) 연도별 전체 입항 항공기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 들어오는 전체 항공기의 수가 84,694 대에서 127,332 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 항공기의 수도 2004년 13,403대에서 2007년 25,116대로 4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12년에는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입국 항공기 수가 전체 입국량의 25%에 달할 것으로 평가됨.

○ 제한된 검역 인력과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에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검역인력 및 장비의 부족 상황에서는 현재와 같은 검역 체계 및 오염지역 운영 현황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84,694		93,548		107,791		127,332	
지역별	오염지역	13,403	15.8%	15,978	17.1%	19,091	17.7%	25,116	19.7%
	비오염지역	71,289	84.2%	77,612	83.0%	88,700	82.3%	102,216	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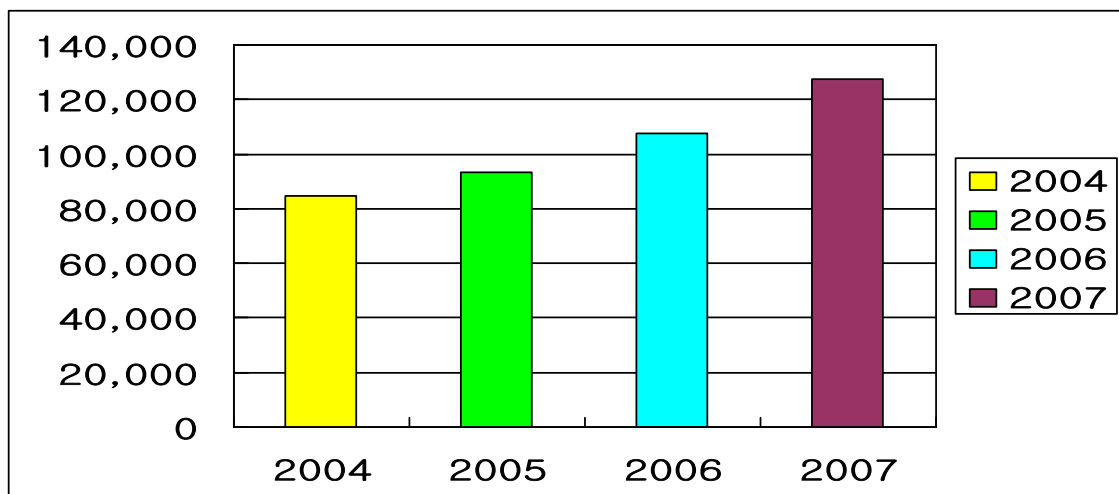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입항 항공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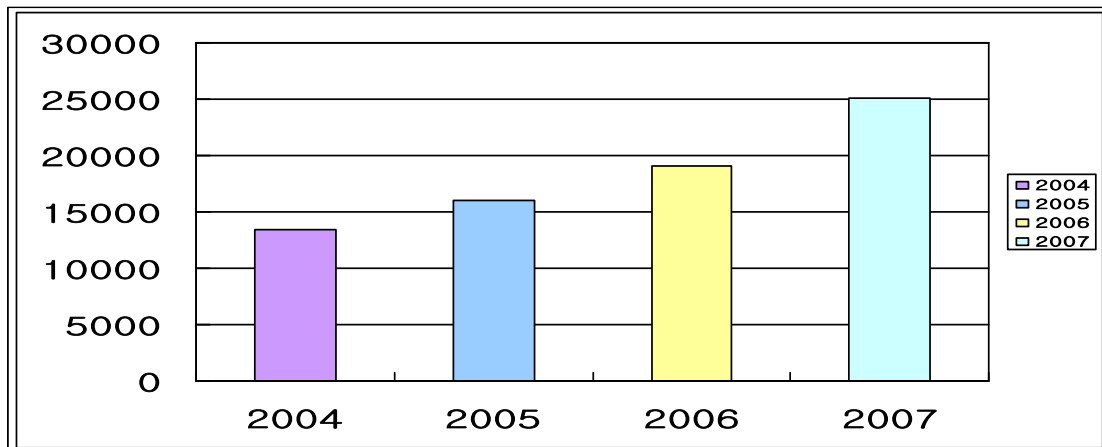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오염지역 입항 항공기

(2) 인천공항 취항 현황

① 연도별 인천공항 항공기 취항 현황

○ 인천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수는 2004년 74,623대에서 2007년 103,892대로 전체 입항 항공기 수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오염지역으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수는 2004년 11,317대에서 2007년 14,455대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증가량에 비하여 오염지역 입국 항공기수의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전체 항공기 입국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종 전염병의 출현 등 검역대상전염병이 확대되어 검역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천공항 검역소에 대한 검역인원 확충 및 시설 증대의 필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74,623		81,396		93,425		103,892	
지역별	오염지역	11,317	15.2%	11,273	13.8%	12,337	13.2%	14,455	13.9%
	비오염지역	63,306	84.8%	70,123	86.2%	81,088	86.8%	93,766	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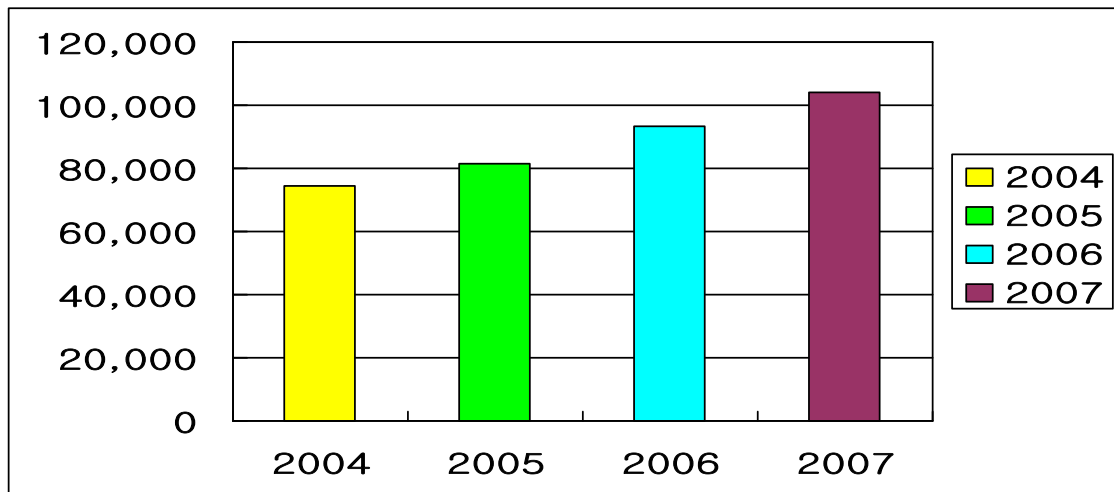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인천공항 입항 항공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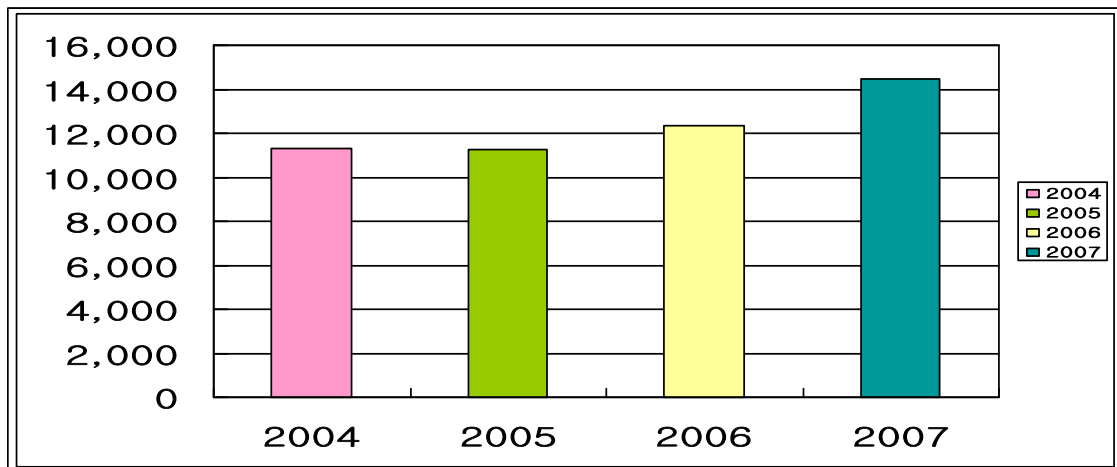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인천공항 오염지역 입항 항공기수

② 인천공항 아시아 지역 연도별 입항 비율

○ 주요 오염지역인 중국 및 태국, 필리핀 등의 입항 비율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전체 오염지역을 모두 관리할 수 없는 현재의 부족한 검역 인력 및 장비 부족 상황에서, 오염지역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이들 지역의 검역 업무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콜레라 등 세균성 전염병으로서, 검역질문서 정구 및 가검물 채취로 인한 업무 과다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바, 콜레라 오염지역을 오염지역에서 제외하고, 입국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 및 치료 교육 및 홍보에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국 가	2005		2006		2007	
총 계	57,550	100%	66,899	100%	78,805	100%
중국	23,377	40.62%	29,990	44.83%	39,298	49.87%
일본	17,067	29.66%	18,062	27.00%	17,835	22.63%
태국	3,523	6.12%	4,173	6.24%	4,769	6.05%
필리핀	2,746	4.77%	3,054	4.57%	3,998	5.07%
대만	2,964	5.15%	2,943	4.40%	2,548	3.23%
싱가폴	2,204	3.83%	2,170	3.24%	2,166	2.75%
베트남	1,900	3.30%	2,149	3.21%	2,429	3.08%
말레이시아	1,331	2.31%	1,637	2.45%	1,776	2.25%
인도	458	0.80%	663	0.99%	594	0.75%
몽골	463	0.80%	509	0.76%	566	0.72%
인도네시아	797	1.38%	703	1.05%	886	1.12%
캄보디아	127	0.22%	400	0.60%	1,381	1.75%
우즈베키스탄	232	0.40%	226	0.34%	249	0.32%
카자흐스탄	163	0.28%	109	0.16%	196	0.25%
키르기스스탄	59	0.10%	33	0.05%	14	0.02%
브루나이	5	0.01%	22	0.03%	10	0.01%
북한	106	0.18%	19	0.03%	17	0.02%
미얀마	4	0.01%	30	0.04%	1	0.00%
방글라데시	1	0.00%	1	0.00%	1	0.00%
네팔	2	0.00%	6	0.01%	53	0.07%
몰디브	1	0.00%	-	-	-	-
파키스탄	9	0.02%	-	-	2	0.00%
스리랑카	2	0.00%	-	-	1	0.00%
한국	9	0.02%	-	-	15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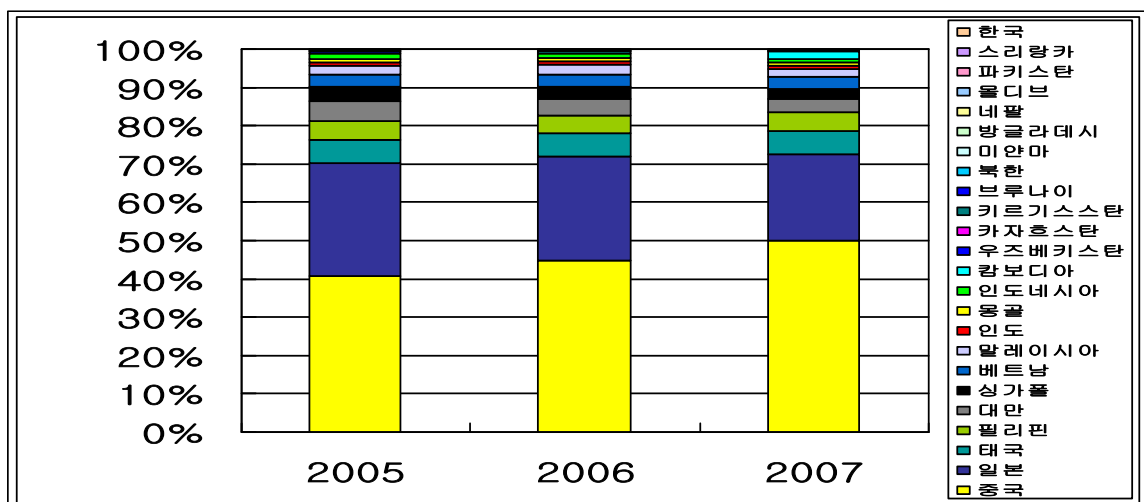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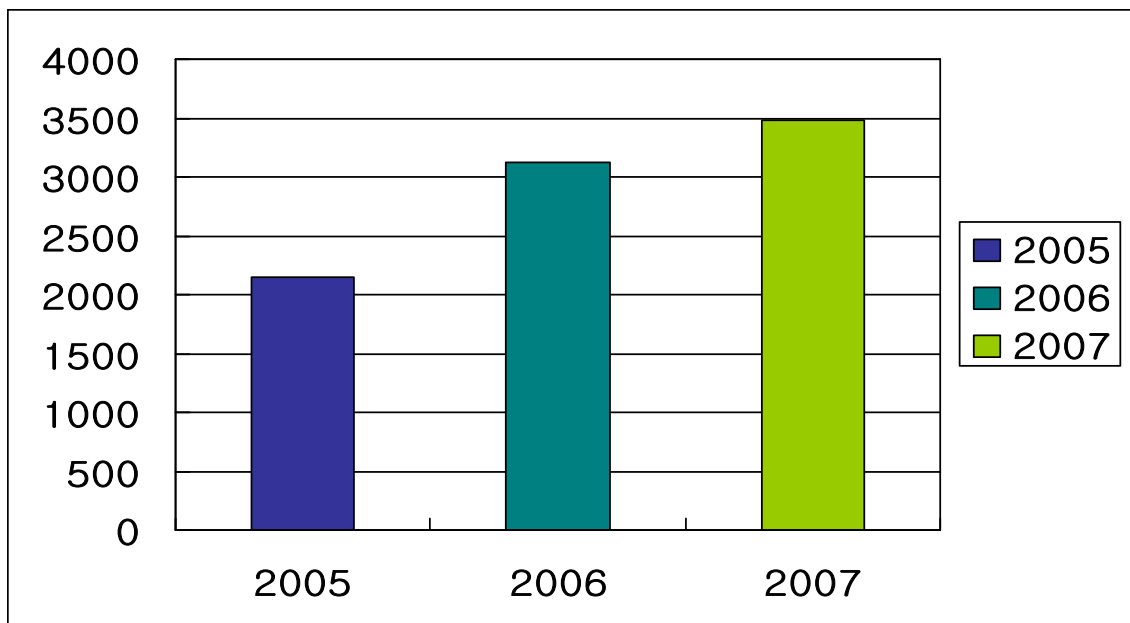
그림 5 인천공항 아시아 지역 연도별 입항 비율

(3) 김포공항 취항 현황

① 연도별 김포공항 항공기 취항 현황

○ 김포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수는 2005년 2,148대에서 2007년 3,484대로 2년 사이에 거의 1.75배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4000대를 웃돌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속적으로 김포 공항 입항 항공기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는 전세계적인 국제 교류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입항 항공기의 3%에 이르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나타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	2,148	3,123	3,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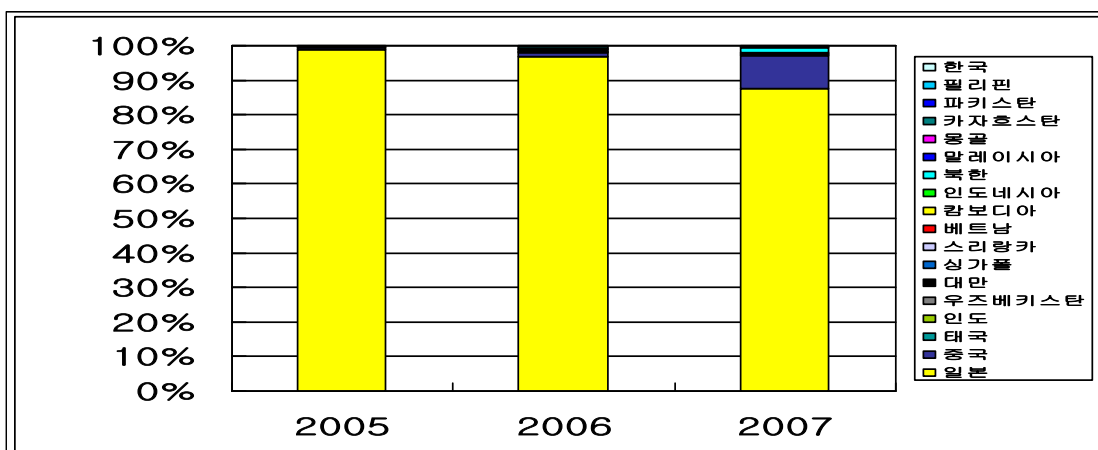


② 김포공항 아시아지역 연도별 입항 비율

○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는 주로 비오염지역인 일본으로부터의 입항이 2007년 2,972대로 전체 아시아지역 입국량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는 오염지역 입국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교역량 증가로 말미암아 오염지역인 중국으로부터의 입항이 2005년 10대에서 2007년 326대로 불과 2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향후 10년 내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량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됨

- 김포 공항으로 들어오는 오염지역 항공기의 증가는 김포공항의 검역인원 및 시설·장비 보강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항공기 증가로 말미암아 전체 입국량의 3%에 불과한 김포 공항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국 가	2005		2006		2007	
총 계	2,109	100%	3,067	100%	3,400	100%
일본	2,084	98.81%	2,968	96.77%	2,974	87.47%
중국	10	0.47%	35	1.14%	326	9.59%
태국	4	0.19%	6	0.20%	3	0.09%
인도	1	0.05%	7	0.23%	3	0.09%
우즈베키스탄		0.00%	-	-	1	0.03%
대만	1	0.05%	18	0.59%	14	0.41%
싱가폴	3	0.14%	2	0.07%	7	0.21%
스리랑카		0.00%	-	-	1	0.03%
베트남	3	0.14%	1	0.03%	2	0.06%
캄보디아	1	0.05%	-	-	3	0.09%
인도네시아	-	-	-	-	2	0.06%
북한	-	-	21	0.68%	48	1.41%
말레이시아	-	-	1	0.03%	5	0.15%
몽골	-	-	-	0.00%	1	0.03%
카자흐스탄	-	-	2	0.07%	4	0.12%
파키스탄	-	-	1	0.03%	1	0.03%
필리핀	-	-	2	0.07%	5	0.15%
한국	2	0.09%	3	0.10%	-	-



(4) 목포 취항 현황

① 연도별 목포 항공기 취항 현황

- 목포 검역소의 항공기 취항수는 2004년 536에서 2007년 677로 지난 3년간의 증가량은 전체 항공기 입항수의 0.5%로 비중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전체 입항 항공기 증가증가량에 비하여도 증가율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536	581	629	677
지역별	오염지역	522 (97%)	559 (96%)	628 (99.8%)	669 (99%)
	비오염지역	12 (2.6%)	22 (3.7%)	1 (0.1%)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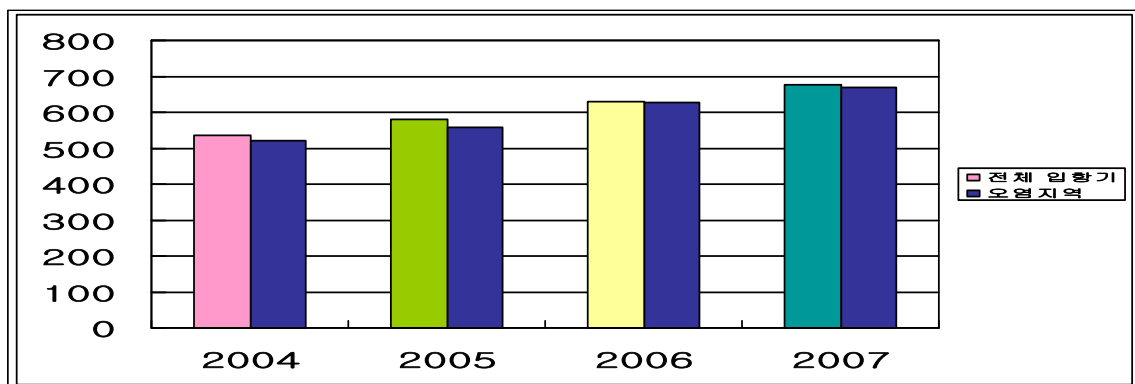


그림 8 연도별 목포 입항기 및 오염지역 입항기수

② 목포 검역소 아시아지역 연도별 입항 비율

- 전체 입항기수에 비하여 절대량은 그리 많지 않으며, 그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전체 입항기 중에서 오염지역으로부터 입항하는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오염지역으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 중에서 중국으로부터 입항하는 수가 2005년 581대에서 2007년 675대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거의 96%에 육박하고 있어, 중국 전체를 오염지역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콜레라 등의 오염 지역 선정 기준 방식으로는 증가하는 검역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입항하고 있는 지역은 457대 전체 67.7%를 차지하고 있는 상해로 분석되었으며, 상해와 같이 비교적 위생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경우,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의 오염 지역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구 분		국가명	2005		2006		2007	
			운항(대)		운 항(대)		운 항(대)	
광 주 공 항	소 계		581	100%	629	100%	675	100%
	중 국	상해	512	88.12%	462	73.45%	457	67.70%
		심양	9	1.55%	53	8.43%	52	7.70%
		천진	7	1.20%	25	3.97%	-	-
		마카오	3	0.52%	17	2.70%	-	-
		해구	2	0.34%	13	2.07%	21	3.11%
		북경	2	0.34%	12	1.91%	18	2.67%
		광조우	-	-	7	1.11%	8	1.19%
		홍콩	-	-	-	-	23	3.41%
		심천	-	-	-	-	1	0.15%
		장사	-	-	-	-	53	7.85%
		삼아	-	-	-	-	7	1.04%
		계림	-	-	-	-	3	0.44%
		샤먼	-	-	-	-	2	0.30%
	대 만	타이페이	7	1.20%	-	-	4	0.59%
		카오슝	8	1.38%	-	-	-	-
	필리핀 마닐라		21	3.61%	18	2.86%	21	3.11%
	베트남 하노이		4	0.69%	-	-	-	-
	일 본	나리타	5	0.86%	1	0.16%	-	-
		후쿠오카	-	-	-	-	2	0.30%
	태국 방콕		1	0.17%	-	-	-	-
	홍콩		-	-	11	1.75%	-	-
	몽고 울란바토르		-	-	8	1.27%	-	-
	북한 평양		-	-	2	0.32%	3	0.44%

(5) 김해 취항 현황

① 연도별 김해공항 항공기 취항 현황

- 김해 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수는 2004년 6,367대에서 2007년 10,725대로 지난 3년 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입항 항공기수의 약 8.4%를 차지하는 것임.

- 특히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2008년에는 14,000대를 웃돌아 전체 입항 항공기수의 1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검역인력 및 검역 장비의 충원 및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6,367	7,490	7,993	10,725
지역별	오염지역	870 (13.6%)	3,108 (41%)	3,815 (47.7%)	5,987 (56%)
	비오염지역	5,497 (86.3%)	4,382 (58.5%)	4,178 (52.3%)	4,738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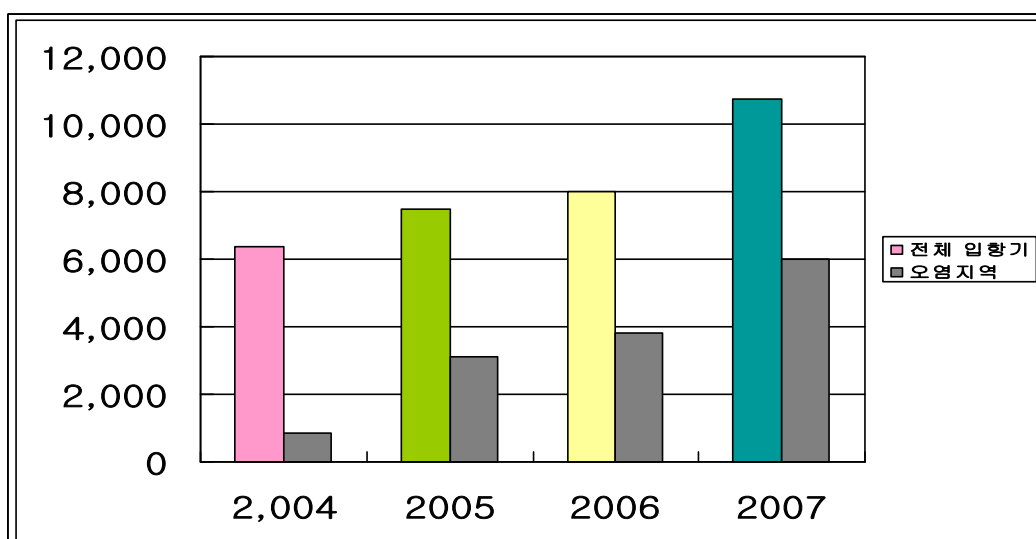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김해공항 입항기 및 오염지역 입항기수

② 김해 공항 아시아지역 연도별 입항 비율

- 김해 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오염지역으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김해 공항 전체 입항기의 반 이상의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마찬가지로 중국으로의 입항기가 전체의 40.75%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국 중 북경 및 푸둥과 홍콩 등 비교적 위생 상태가 개선되어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검역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들을 수인성 전염병 오염 관리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구 분	국가명		2005		2006		2007		
			운 항(대)		운 항(대)		운 항(대)		
김 해 공 항	소 계		7,256	100%	7,993	100%	10,725	100%	
	아 시 아 · 중 동 아 시 아· 중 동	대만	가오슝		0.00%	-	-	14	0.13%
		타이페이	100	1.38%	198	2.48%	296	2.76%	
		말레이시아	코나키나발루	1	0.01%	1	0.01%	1	0.01%
			쿠알라룸푸르	3	0.04%	1	0.01%	-	-
		베트남	하노이	53	0.73%	1	0.01%	262	2.44%
			호치민	213	2.94%	124	1.55%	387	3.61%
		싱가폴		2	0.03%	-		1	0.0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	-		1	0.01%
		인도	델리	-	-	1	0.01%	-	-
			뭄바이	-	-	3	0.04%	-	-
		북한		-	-	2	0.03%	6	0.0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	0.03%	-		1	0.01%
		일본	간사이	1,093	15.06%	1,082	13.54%	1,089	10.15%
				고마츠	2	0.03%	1	0.01%	1
			가고시마	-	-	2	0.03%	1	0.01%
				고베	-	-	1	0.01%	-
			나고야	672	9.26%	717	8.97%	721	6.72%
			나리타	1,231	16.97%	1,124	14.06%	1,090	10.16%
			삿포로	1	0.01%	92	1.15%	157	1.46%
			오가야마	3	0.04%	1	0.01%	-	-
			오키나와	1	0.01%	1	0.01%	1	0.01%
			이즈모	1	0.01%	-	-	3	0.03%
			하네다	2	0.03%	-	-	1	0.01%
			후쿠오카	457	6.30%	486	6.08%	513	4.78%
			오이타	-	-	1	0.01%	-	-
			이와미	-	-	1	0.01%	-	-
			키나규슈	-	-	4	0.05%	6	0.06%
	중국	광저우	88	1.21%	107	1.34%	160	1.49%	

			마카오	34	0.47%	66	0.83%	40	0.37%
			북경	753	10.38%	741	9.27%	1,301	12.13%
			삼아	6	0.08%	16	0.20%	40	0.37%
			서안	98	1.35%	101	1.26%	84	0.78%
			선양	238	3.28%	248	3.10%	226	2.11%
			연태	2	0.03%	2	0.03%	57	0.53%
			천진	7	0.10%	3	0.04%	4	0.04%
			청도	270	3.72%	305	3.82%	386	3.60%
			푸둥	746	10.28%	771	9.65%	1,117	10.41%
			항저우	110	1.52%	139	1.74%	214	2.00%
			해구	9	0.12%	13	0.16%	13	0.12%
			홍콩	214	2.95%	236	2.95%	492	4.59%
			황산	-	-	21	0.26%	-	-
			곤명	-	-	5	0.06%	-	-
			대련	-	-	19	0.24%	87	0.81%
			샤먼	-	-	3	0.04%	11	0.10%
			심천	-	-	1	0.01%	12	0.11%
			연길	-	-	-	-	36	0.34%
			위해	-	-	-	-	91	0.85%
		캄보디아	씨엠립	1	0.01%	16	0.20%	92	0.86%
			프놈펜		0.00%	-	-	1	0.01%
		카자흐스탄 (알카티)		-	-	2	0.03%	1	0.01%
		쿠웨이트		1	0.01%	1	0.01%	-	-
		태국	방콕	425	5.86%	452	5.65%	593	5.53%
			파타야	-	-	10	0.13%	-	-
			푸켓	-	-	-	-	6	0.06%
		필리핀	마닐라	388	5.35%	429	5.37%	697	6.50%
			세부	29	0.40%	68	0.85%	103	0.96%
			LAOAG	-	-	1	0.01%	-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	-	1	0.01%	-	-
		쿠웨이트		-	-	1	0.01%	-	-

(6) 울산공항 취항 현황

① 연도별 울산공항 항공기 취항 현황

- 울산공항의 항공기 취항 현황은 연간 3-4대에 불과하고, 특히 2007년에는 전무한 상황이며, 또한 입항 항공기도 모두 일본 등 비오염지역으로부터 입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검역 인력의 상시 비치가 아닌 교육 및 홍보에 초점을 맞춰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3	4	1	-
지역별	오염지역	2	4	-	
	비오염지역	1	-	1	

구 분		국가명		2005		2006		2007	
				운 항(대)		운 항(대)		운 항(대)	
울 산 공 항	소 계			4	100%	1	100%	-	-
	아 시 아 · 중 동	중 국	푸 둥	1	25%	-	-	-	-
			난 징	1	25%	-	-	-	-
		일 본 (ATSUGI)		-	-	1	100%	-	-

(7) 대구공항 취항 현황

① 연도별 대구공항 항공기 취항 현황

- 대구공항의 항공기 취항 현황은 2004년 1,227대에서 2007년 1,615대로 전체 항공기 취항수의 1%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나,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입국 비율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이 사항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1,227	1,473	1,598	1,615
지역별	오염지역	162 (13%)	173 (12%)	766 (48%)	1,604 (99.3%)
	비오염지역	1,065 (87%)	1,300 (88%)	832 (52%)	1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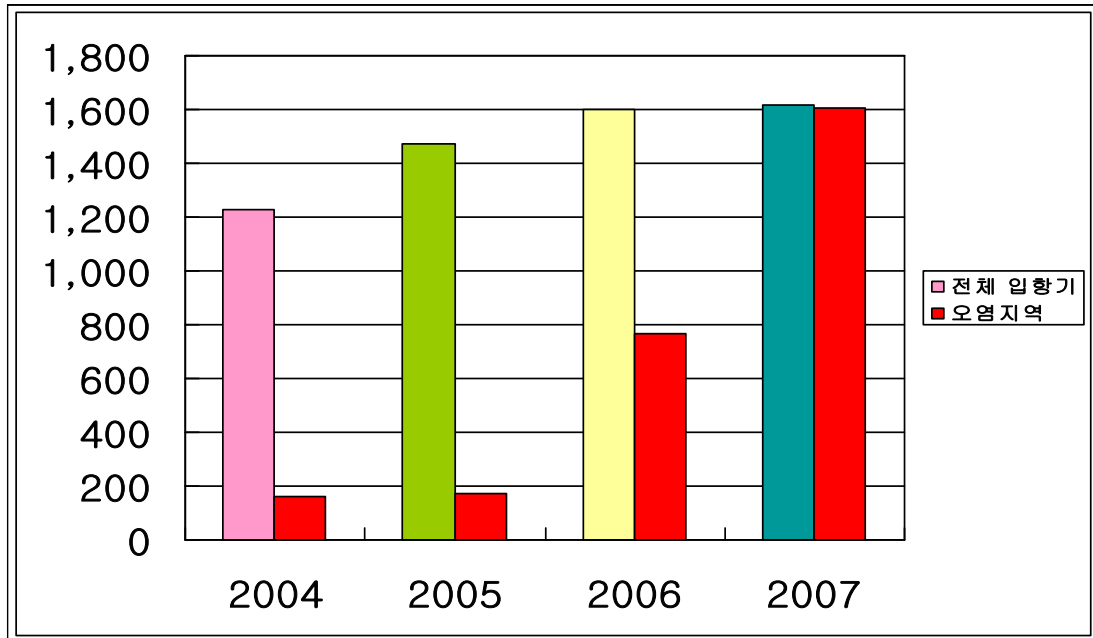


그림 10 연도별 대구공항 입항기 및 오염지역 입항기수

② 대구 공항 아시아지역 연도별 입항 비율

○ 대구 공항의 아시아지역 연도별 입항 비율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태국 방콕 12.7%, 중국 83.1%으로 입항하는 항공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중국의 경우는 상해 29.09%, 북경 27.41%, 홍콩 7.21%, 심양 6.28%, 청도 6.46% 등에서 들어오는 항공기가 많은 수를 차지 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위생 상태에 좋은 이 지역을 전체 오염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구 분		국가명	2005		2006		2007		
			운 항(대)		운 항(대)		운 항(대)		
대 구 공 항	소 계		1,441	100%	1,592	100%	1,609	100%	
	아 시 아	태국 방콕	103	7.15%	133	8.35%	204	12.68%	
		필리핀 마닐라	69	4.79%	67	4.21%	59	3.67%	
		중국	상해	451	31.30%	455	28.58%	468	29.09%
			북경	349	24.22%	457	28.71%	441	27.41%
			심양	176	12.21%	153	9.61%	101	6.28%
			청도	141	9.78%	128	8.04%	104	6.46%
			연대	71	4.93%	62	3.89%	-	-

			장춘	6	0.42%	7	0.44%	-	-
			관저우	7	0.49%	5	0.31%	4	0.25%
			시안	8	0.56%	-	-	-	-
			장사	-	-	44	2.76%	46	2.86%
			심천	-	-	3	0.19%	24	1.49%
			천진	-	-	7	0.44%	-	-
			삼아	-	-	13	0.82%	7	0.44%
			대련	-	-	1	0.06%	2	0.12%
			마카오	-	-	29	1.82%	24	1.49%
			홍콩	-	-	26	1.63%	116	7.21%
		일본	나고야	-	-	1	0.06%	-	-
			히로시마	1	0.07%	-	-	1	0.06%
		베트남하노이		-	-	-	-	2	0.12%
		캄보디아씨엠립		-	-	-	-	2	0.12%
		대만	타이페이	48	3.33%	-	-	3	0.19%
			까오슝	11	0.76%	-	-	-	-

(8) 동해 취항 현황

① 연도별 동해 항공기 취항 현황

- 동해의 항공기 취항 현황은 매우 미미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 있는 것은 물론이며, 입국하고 있는 국가도 위생상태가 비교적 좋은 광저우와 비오염국가인 일본이므로 자율적인 위생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위생 교육 및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좋을 것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24	43	21	9
지역별	오염지역	-	22 (51.2%)	20 (95.2%)	8 (88.9%)
	비오염지역	24 (100%)	21 (48.8%)	1 (4.8%)	1 (11.1%)

구 분		국가명		2005		2006		2007	
				운 항(대)		운 항(대)		운 항(대)	
양 양 공	소 계			41	100%	21	100%	9	100%
	아시	중국	상하이	21	51%	19	90%	-	-

항	아 · 중동	광저우	1	2%	-	-	8	89%
		일본 칸사이	19	46%	-	-	1	11%
		태국 방콕	-	-	1	5%	-	-
		러시아	-	-	1	5%	-	-
		블라디보스톡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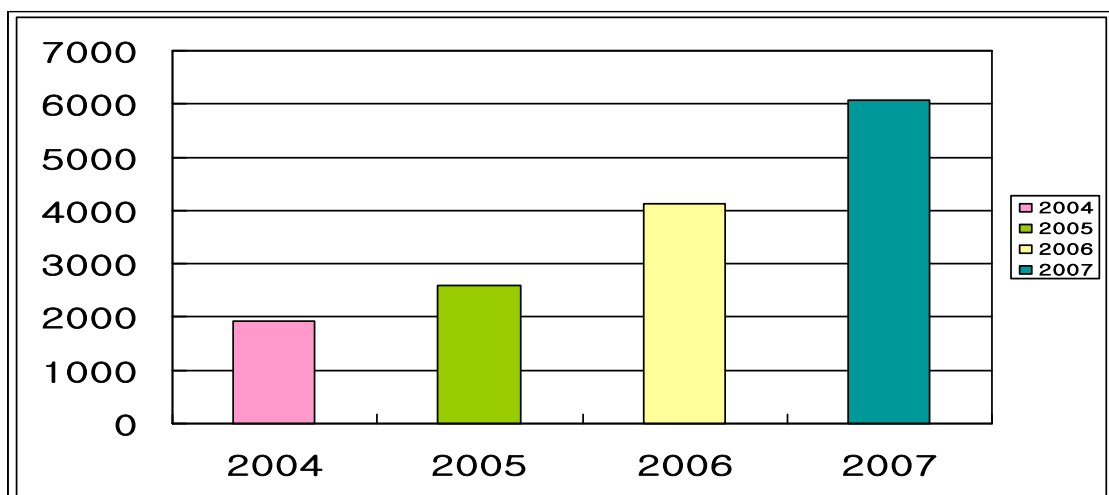
(9) 제주공항 취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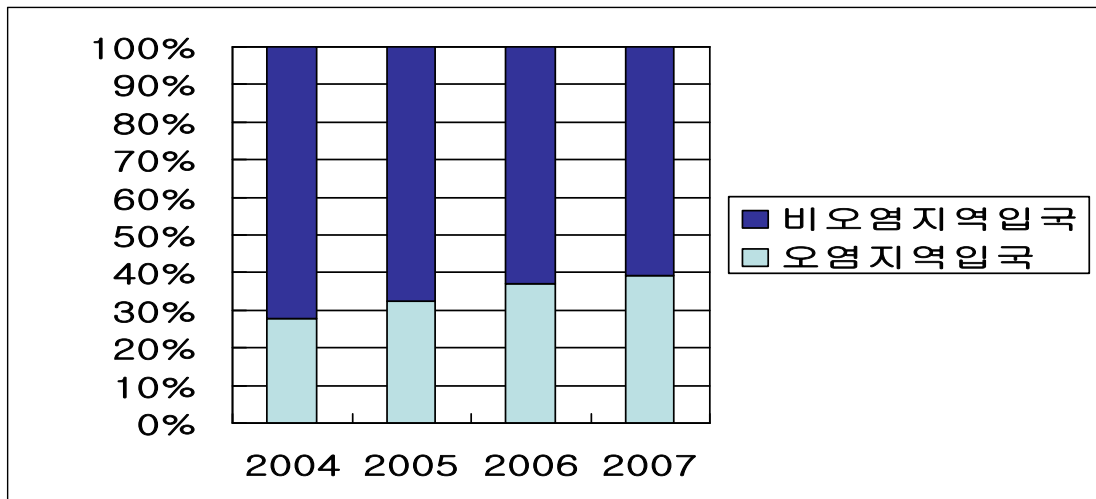
① 연도별 제주공항 항공기 취항 현황

○ 제주공항의 항공기 취항 수는 2004년 1,914 대에서 2007년 6,079대로 전체 취항 항공기의 약 5%에 달하는 수치이며, 지난 3년간 거의 3 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입국량은 2004년 530대에서 2007년 2,391대로 거의 4배 이상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1,914	2,599	4,120	6,079
지역별	오염지역	530 (27.7%)	840 (32.3%)	1,525 (37%)	2,391 (39.3%)
	비오염지역	1,384 (72.3%)	1,759 (67.7%)	2,595 (63%)	3,688 (60.7%)





② 제주 공항 아시아지역 연도별 입항 비율

○ 제주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전체 항공기 중에서 오염지역으로 입국되는 항공기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오염지역인 대만과 중국으로부터의 입항이 2,284대와 2,357대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구 분		국가명	2005		2006		2007	
			운 항(대)		운 항(대)		운 항(대)	
제 주 공 항	소 계		2,573	100%	4,120	100%	6,079	100%
	아 시 아 · 중 동	일 본	947	36.81%	1,205	29.25%	1,380	22.70%
		대 만	791	30.74%	1,372	33.30%	2,284	37.57%
		중 국	835	32.45%	1,520	36.89%	2,357	38.77%
	필 리 핀	-	-	-	-	11	0.18%	
	기 타		-	-	23	0.56%	47	0.77%

나. 선박

(1) 연도별 전체 입항 선박

- 연도별 전체 입항하는 선박의 수는 2004년 61,376건에서 2007년 72,118건으로 약 만 여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도별 전체 입항하는 항공기 수인 127,332건의 약 2/3에 조금 못미치는 수임. 선박의 경우는 국제 교역량의 증가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항공기 교류량에 비하여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입국량이 2004년 15,038건에서 2007년 39,351건으로 거의 2 배 이상이 증가한 점과 오염지역대 비오염지역 비율이 2007년에 54.6%:45.4%로 과반 수를 넘었다는 점에서, 특성 상 많은 검역인원 확보가 어려운 선박 검역의 체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시사됨
-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체 입항하는 선박의 증가율에 비하여,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 하는 선박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오염지역의 분포 비율이 과반수를 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비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선박의 수가 2005년 이래로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61,376	63,386	67,143	72,118
지역별	오염지역	15,038 (24.5%)	29,556 (46.6%)	35,074 (52.2%)	39,351 (54.6%)
	비오염지역	46,338 (75.5%)	33,830 (53.4%)	32,069 (47.8%)	32,767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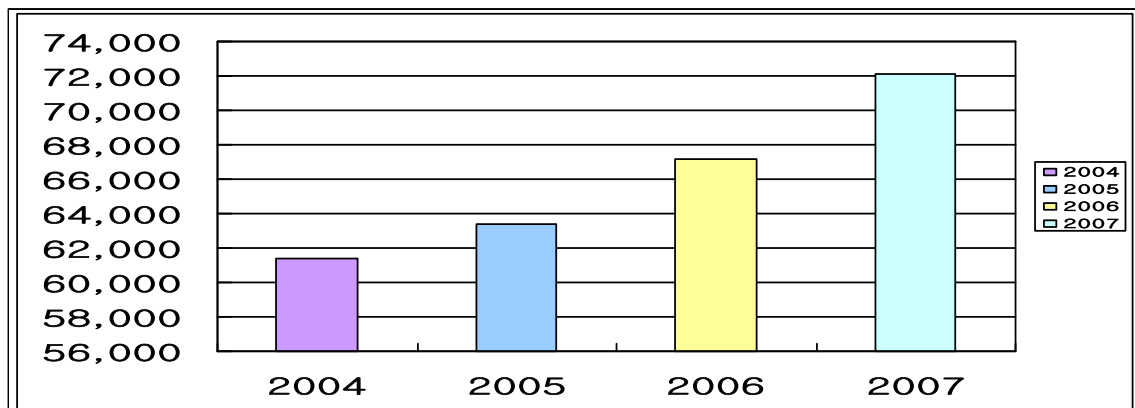


그림 13 연도별 입항 선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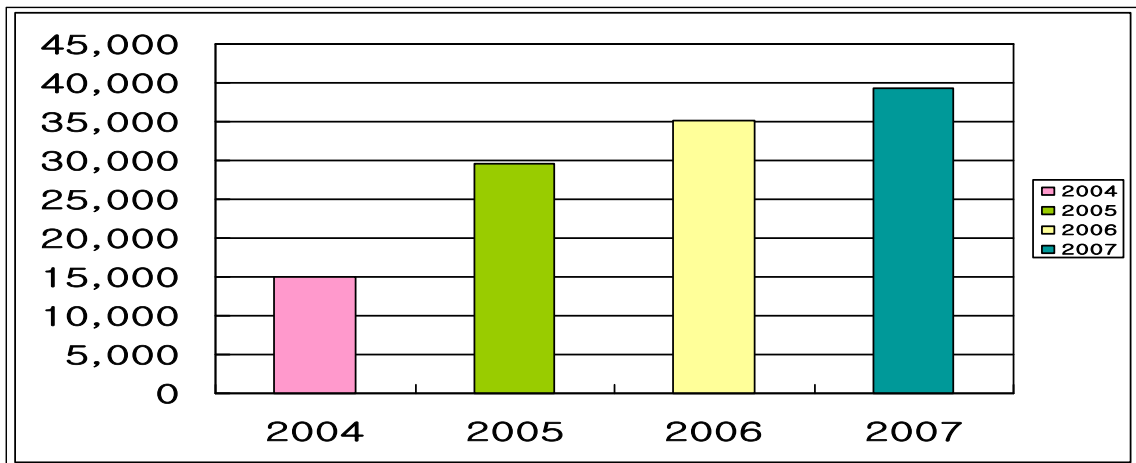


그림 14 연도별 오염지역 입항 선박

(2) 부산항 취항 현황

① 연도별 부산항 선박 취항 현황

- 연도별 부산항으로 취항하는 선박 현황은 2004년 24,106건에서 2007년 25,188 건으로 약 1,0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나,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오히려 2004년보다 취항하는 선박의 수가 감소하는 등 특이할 만한 증가 추세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절대량에서 전체 취항 선박수의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취항 선박 수도 2004년 15,038건에서 2007년 10,989 건으로 분명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음
- 근처의 김해 공항의 입항 항공기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부산 검역소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인력 등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24,106	23,745	23,744	25,188
지역별	오염지역	15,038 (62.4%)	9,137 (38.5%)	10,379 (43.7%)	10,989 (43.6%)
	비오염지역	9,068 (37.6%)	14,608 (61.5%)	13,365 (56.3%)	14,199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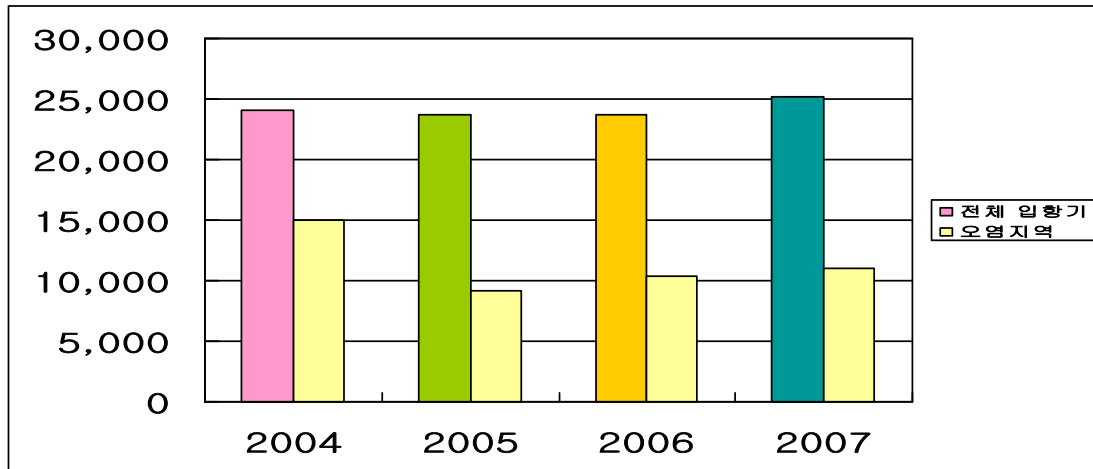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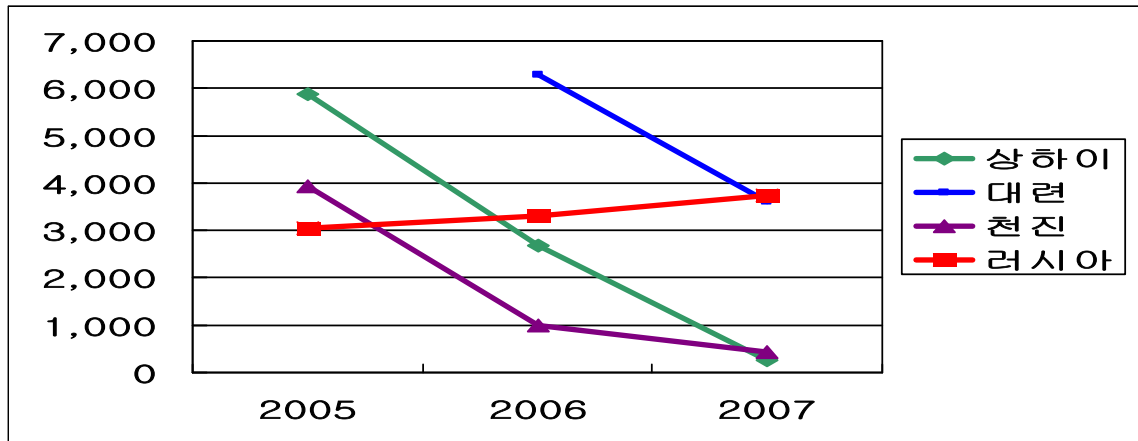
그림 15 연도별 부산항 입항 선박수

② 연도별 부산항 여객선 취항 현황

- 연도별 부산으로 입항하는 오염지역의 선박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과 더불어, 이를 반영하듯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여객선 및 여객 수의 경우는 2005년 3,433척으로 525,768명에서 2007년 3,386척으로 711,237명으로 여객선의 경우는 감소하고 있으며, 여객수는 증가하고 있음
- 전체적인 여객의 수는 국제 교류의 증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여객선의 경우는, 비오염지역인 일본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검역 업무량은 크지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근처의 김해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객이 증가하면서 오염지역인 중국으로부터 오는 여객수가 감소세가 뚜렷하므로, 중국에 대한 검역량이 많지는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임. 반면, 러시아에서 오는 여객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구 분			2005		2006		2007	
			운항(척)	여객수	운항(척)	여객수	운항(척)	여객수
소 계			3,433	525,768	3,121	604,167	3,386	711,237
부산 항	일본		3425	512,926	3,111	590,904	3,378	703,193
			99.8%	97.6%	99.7%	97.8%	99.8%	98.9%
	중 국	부산↔상하이	3	5,866	1	2,684	1	257
			0.1%	1.1%	0.03%	0.4%	0.03%	0.04%
		부산↔대련	-	-	5	6,284	2	3,608
			-	-	0.2%	1.0%	0.06%	0.5%
		부산↔천진	3	3,933	2	986	1	431

		0.1%	0.7%	0.1%	0.2%	0.03%	0.1%
	러시아	2	3,043	2	3,309	3	3,748
		0.1%	0.6%	0.1%	0.5%	0.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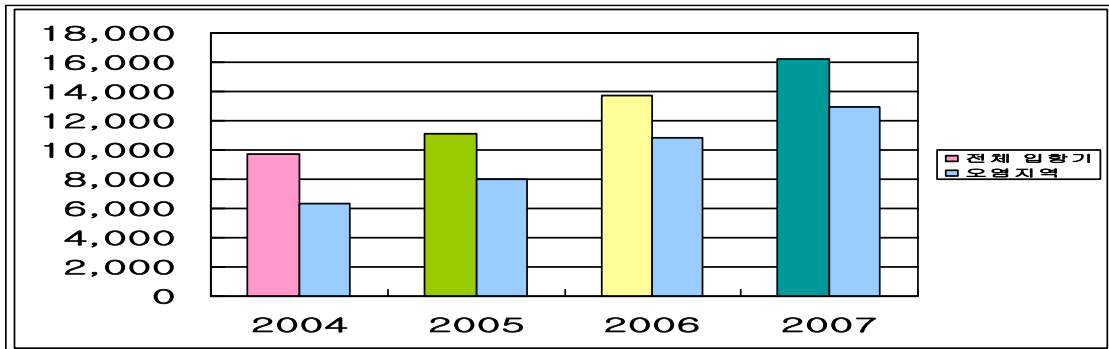
(3) 인천 취향 현황

① 연도별 인천 선박 취향 현황

○ 연도별 인천항으로 취향하는 선박의 양은 2004년 9,721건에서 2007년 16,215건으로 지난 3년 간 6,500 여건이나 증가하였음. 이는 전체 취향 선박수의 약 22.5%에 달하는 양으로서 올 2008년에는 20,000건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오염지역으로부터 취향하는 선박의 수가 2004년 6,354건에서 2007년 12,936건으로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천항 취향 선박수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9,721	11,101	13,722	16,215
지역별	오염지역	6,354 (65.4%)	7,973 (71.8%)	10,820 (78.9%)	12,936 (79.8%)
	비오염지역	3,367 (34.6%)	3,128 (28.2%)	2,902 (21.1%)	3,279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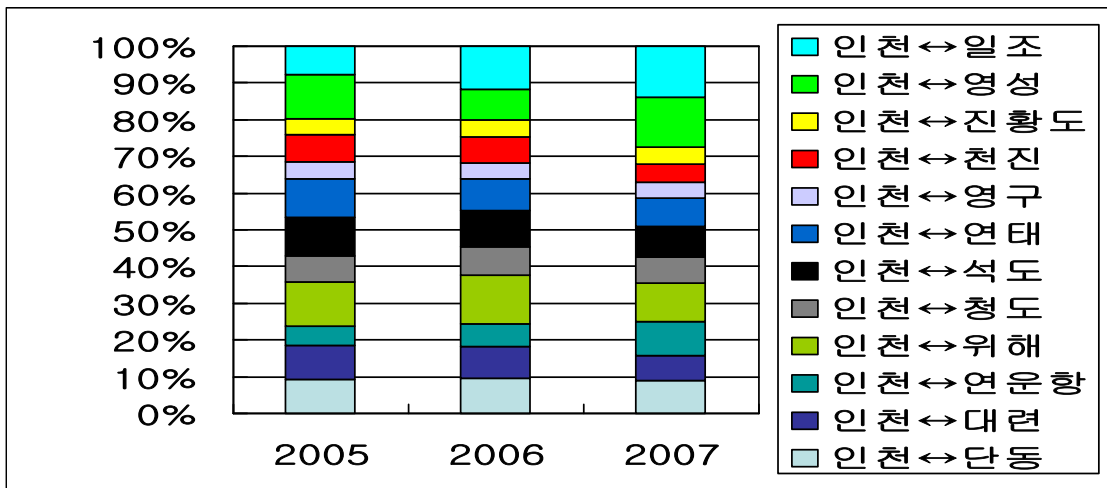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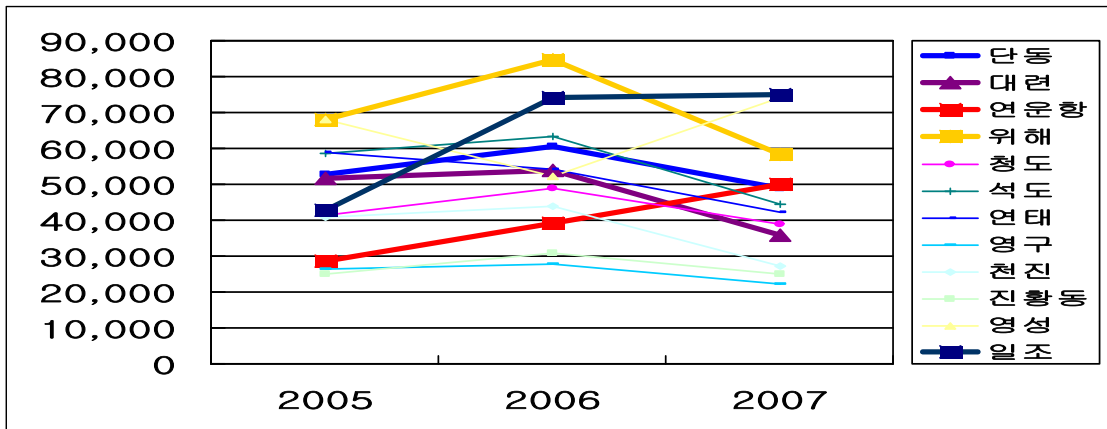


② 연도별 중국 여객선 취항 현황

-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도별 중국 여객선 취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운항척 및 여객수는 특별한 증감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선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승객의 특별한 증가가 보이지는 않고 있음. 대부분의 여객들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특별히 검역 인원의 증원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낙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교육·홍보가 요구될 것임
-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취항하는 여객선 중 가장 많은 여객이 드나드는 곳은 일조 13.85%, 영성 13.67%, 위해 10.73%, 연운항 9.20%, 단동 9.02% 순으로 위생 상태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단동과 연운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구 분			운항척	여객수	운항 척	여객수	운항 척	여객수
			2005		2006		2007	
인 천	소 계		1,526	563,391	1,544	633,171	1,660	542,580
	중 국	인천↔단동	150	52,754	147	60,673	150	48,955
			52,754	9.36%	60,673	9.58%	48,955	9.02%
		인천↔대련	140	51,776	147	53,890	145	35,962
			51,776	9.19%	53,890	8.51%	35,962	6.63%
		인천↔연운항	103	28,500	103	39,251	149	49,896
			28,500	5.06%	39,251	6.20%	49,896	9.20%
		인천↔위해	146	68,105	146	84,623	148	58,242
68,105	12.09%		84,623	13.36%	58,242	10.73%		
인천↔청도	147	41,277	145	48,930	148	38,877		
	41,277	7.33%	48,930	7.73%	38,877	7.17%		
인천↔석도	155	58,712	153	63,235	152	44,501		
	58,712	10.42%	63,235	9.99%	44,501	8.20%		

	인천↔연태	157 58,992	58,992 10.47%	147 54,081	54,081 8.54%	154 42,319	42,319 7.80%
	인천↔영구	104 26,512	26,512 4.71%	98 27,720	27,720 4.38%	103 22,285	22,285 4.11%
	인천↔천진	103 40,748	40,748 7.23%	100 43,813	43,813 6.92%	100 27,142	27,142 5.00%
	인천↔진황도	103 25,032	25,032 4.44%	101 30,732	30,732 4.85%	106 25,134	25,134 4.63%
	인천↔영성	122 68,153	68,153 12.10%	105 52,149	52,149 8.24%	156 74,145	74,145 13.67%
	인천↔일조	96 42,830	42,830 7.60%	152 74,074	74,074 11.70%	149 75,122	75,122 13.85%



○ 절대 여객수는 연운항 및 단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유의하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조 및 영성에서 들어오는 여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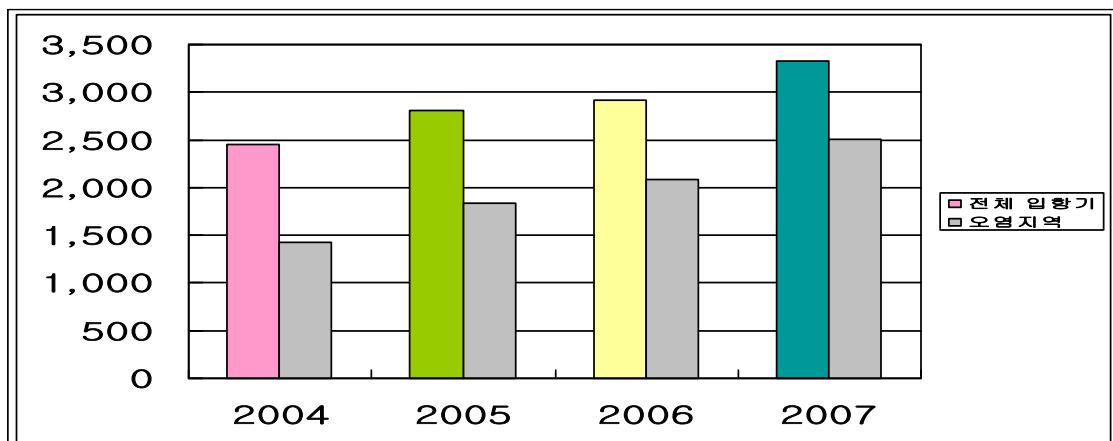
(4) 군산 취항 현황

① 연도별 군산 선박 취항 현황

○ 군산으로 취항하는 선박의 수는 2004년 2,455건에서 2007년 3,328건으로 지난 3년 간 약 천건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취항 선박의 약 4.6%에 달하는 수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산 및 인천항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임

○ 특이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3년간 오염지역으로부터 취항하는 선박의 수가 1,421척에서 2,502척으로 증가하여 약 천건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4년 57.9%를 차지하던 오염지역비율이 75.2%로 증가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증가된 군산으로 취항하는 선박의 수가 거의 대부분 오염지역으로부터 온 선박임을 시사함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2,455	2,808	2,912	3,328
지역별	오염지역	1,421 (57.9%)	1,832 (65.2%)	2,080 (71.4%)	2,502 (75.2%)
	비오염지역	1,034 (42.1%)	976 (34.8%)	832 (28.6%)	826 (24.8%)



② 연도별 군산항 여객선 취항 현황

○ 연도별 군산항으로 취항하는 중국 여객선의 수는 2007년 급격히 운항 척 및 여객수 모두에서 증가하여 146척, 37,150명으로 증가하였음.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인 만큼, 유증상자 색출 및 검역에 인력 배정이 필요할 것임

구 분			2005		2006		2007	
			운항척	여객수	운항척	여객수	운항척	여객수
군산항	중국	군산↔청도	1	490	1	290	146	37,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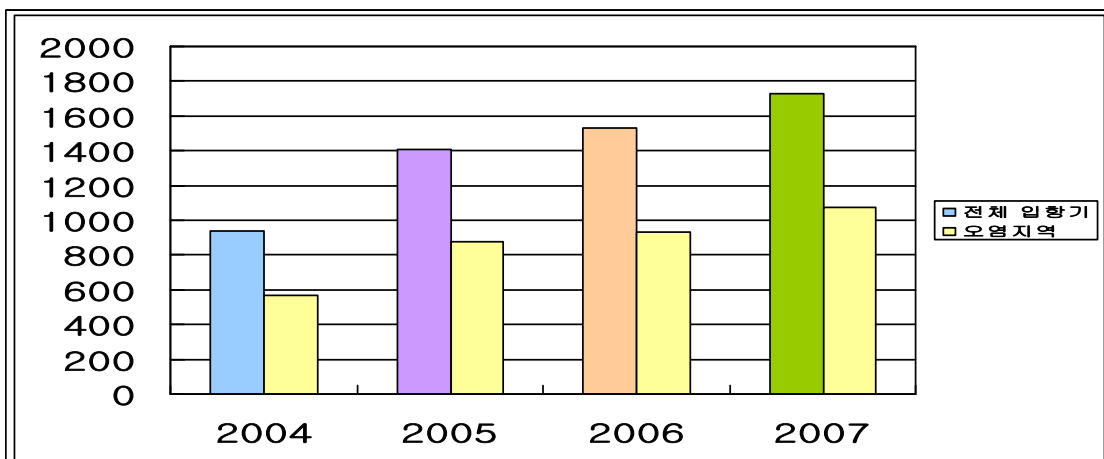
(5) 목포 취항 현황

① 연도별 목포 선박 취항 현황

○ 목포로 취항하는 선박의 수는 2004년 941건에서 2007년 1730건으로 지난 3년간 거의 2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이는 전체 취항 선박수의 2.4%에 불과한 수라고 평가됨.

○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에서 취항하는 선박의 비율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 비율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점이 특이점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941	1,406	1,529	1,730
지역별	오염지역	569 (60.5%)	877 (62.4%)	930 (60.8%)	1,072 (62.0%)
	비오염지역	372 (39.5%)	529 (37.6%)	599 (39.2%)	658 (38.0%)



② 연도별 여객선 취항 현황

○ 중국에서 목포항으로 취항하는 여객선 및 여객의 수는 2006년 9척, 1151명에서 2007

년 1척 56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상하이 는 위생이 비교적 청결하므로 자발적인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구 분			2005		2006		2007	
			운항척	여객수	운항 척	여객수	운항 척	여객수
목포항	중국	목포↔ 상하이	-	-	9	1,151	1	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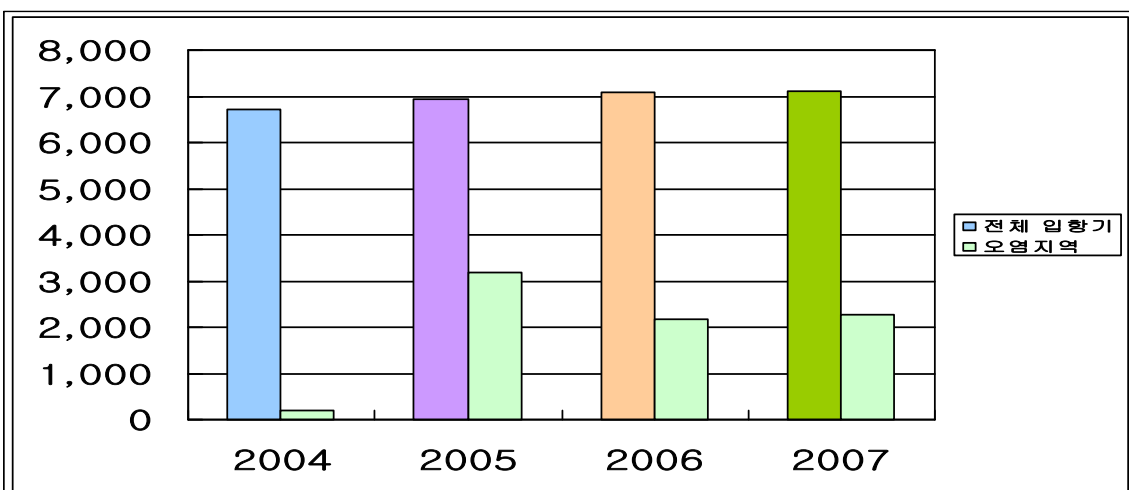
(6) 여수 취항 현황

① 연도별 여수 선박 취항 현황

○ 여수로 취항하는 연도별 선박 현황은 2004년 6,708건에서 2007년 7,117 건으로 소폭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체 취항 선박의 약 10%에 달하는 수로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오염지역으로부터 취항하는 선박은 2004년 206건에서 2007년 2,27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 급격히 증가한 이래로 두드러지는 증가세는 보이지 않으나 현 수치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상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6,708	6,945	7,091	7,117
지역별	오염지역	206 (3.1%)	3,195 (46.0%)	2,170 (30.6%)	2,270 (31.9%)
	비오염지역	6,502 (96.9%)	3,750 (54.0%)	4,921 (69.4%)	4,847 (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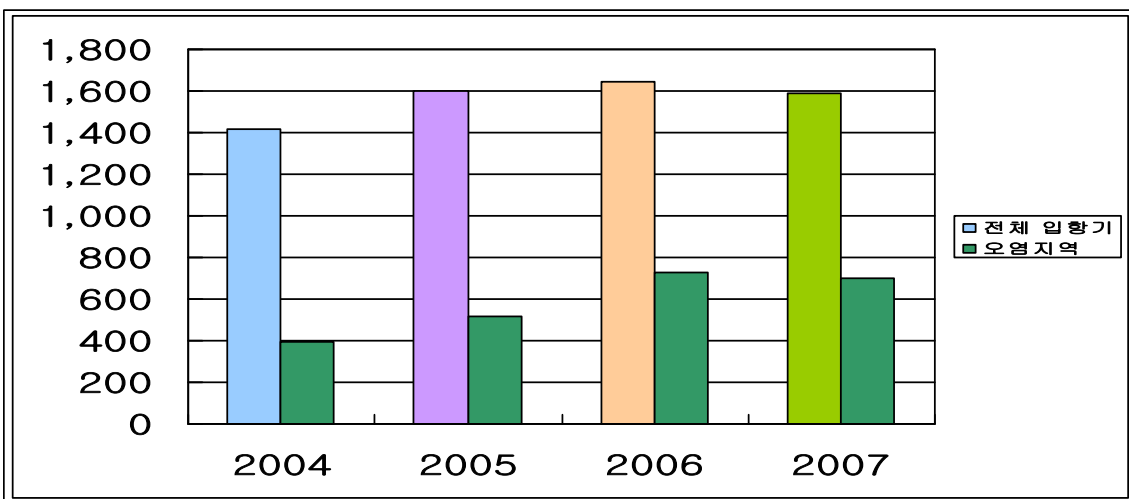
(7) 마산 취항 현황

① 연도별 마산 선박 취항 현황

○ 연도별 마산으로 취항하는 선박 현황은 2004년 1,417건에서 2007년 1,591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취항 선박의 약 2.2%에 달하는 수치임.

○ 이 중 오염지역으로부터 취항하는 선박의 수는 394건에서 701건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1,417	1,599	1,644	1,591
지역별	오염지역	394 (27.8%)	519 (32.5%)	727 (44.2%)	701 (44.1%)
	비오염지역	1,023 (72.2%)	1,080 (67.5%)	917 (55.8%)	890 (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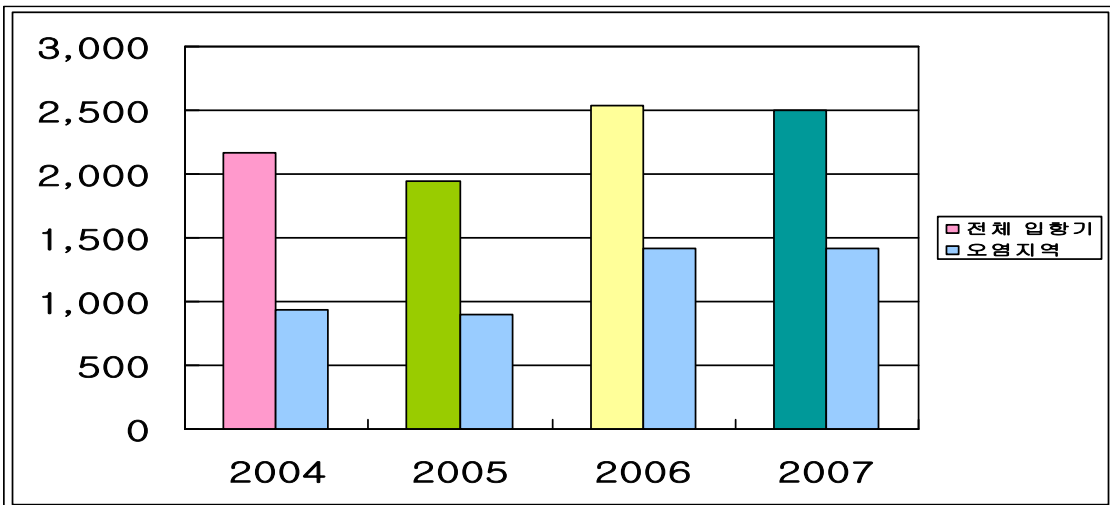
(8) 통영 취항 현황

① 연도별 통영 선박 취항 현황

○ 통영으로 취항하는 연도별 선박의 수는 2004년 2196건에서 2007년 2498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전체 취항 선박수의 약 3.5%를 차지하는 비율임

-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비율이 오염지역 56.6%, 비오염지역 43.4%로 2006년 이래로 오염지역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2,169	1,942	2,537	2,498
지역별	오염지역	936 (43.2%)	899 (46.3%)	1,414 (55.7%)	1,415 (56.6%)
	비오염지역	1,233 (56.8%)	1,043 (53.7%)	1,123 (44.3%)	1,083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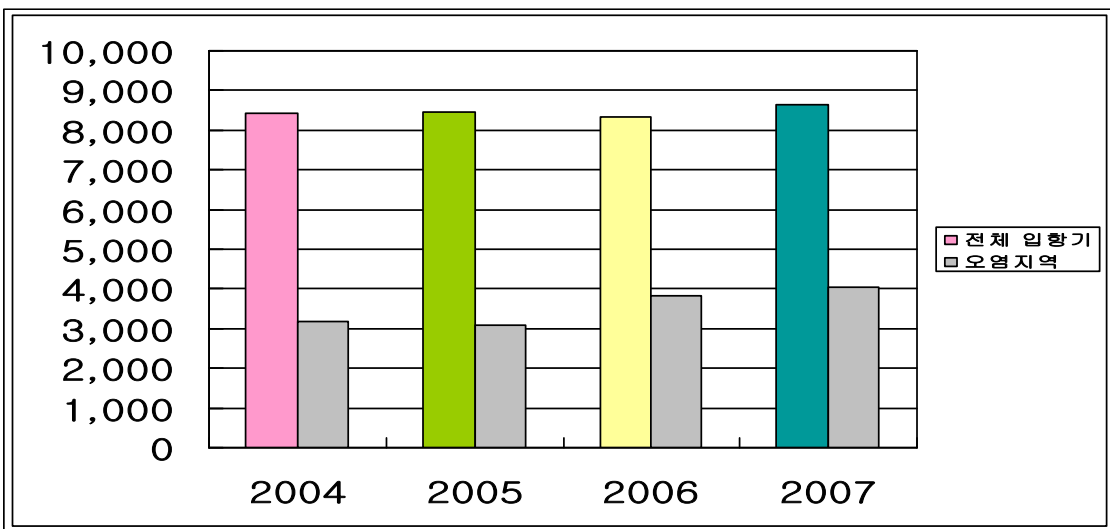


(9) 울산 취항 현황

① 연도별 울산 선박 취항 현황

- 울산으로 취항하는 연도별 선박 수는 2004년 8,412건에서 2007년 8,629 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이 수치는 전체 취항 선박의 12%를 차지하는 비율로 높은 편에 속함
- 오염지역에서 취항하는 선박의 수도 2004년 3,181건에서 2007년 4,038건으로 지난 3년간 약 천 건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울산으로 취항하는 선박 비율로도 2004년 37.8%에서 2007년 46.8%으로 10%나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8,412	8,460	8,347	8,629
지역별	오염지역	3,181 (37.8%)	3,084 (36.5%)	3,836 (46.0%)	4,038 (46.8%)
	비오염지역	5,231 (62.2%)	5,376 (63.5%)	4,511 (54.0%)	4,591 (53.2%)



② 연도별 울산항 여객선 취항 현황

○ 연도별 울산항으로 취항하는 여객의 수는 2005년 527명에서 2007년 2,30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주로 비오염지역인 일본에서 취항하는 여객선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됨

구 분			2005		2006		2007	
			운항척	여객수	운항 척	여객수	운항 척	여객수
울 산 항	소 계		2	527	2	568	2	2,308
	일본	울산↔나가사키			1척(3회)	349	1척 (11회)	1,925
		울산↔오사카			1척(1회)	219		
		울산↔시모노세키					1척(1회)	383
		울산↔요코하마	1척(1회)	290				
		울산↔하카타	1척(1회)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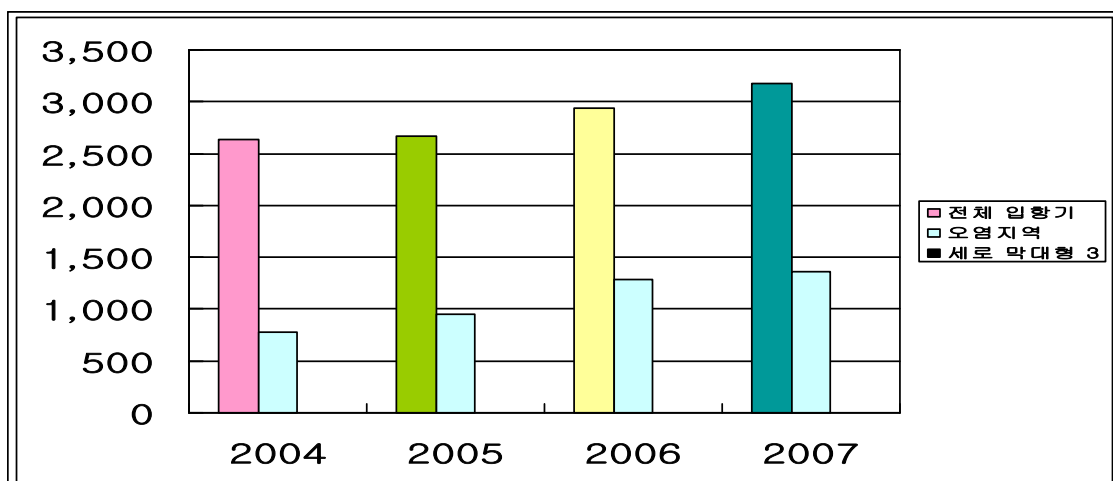
(10) 포항 취항 현황

① 연도별 포항 선박 취항 현황

○ 연도별 포항으로 취항하는 선박의 수는 2004년 2,641건에서 2007년 3,172 건으로 약 500 건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취항 선박 수의 4.4%에 달하는 수치임

○ 특히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취항이 2004년 775건에서 2007년 1,358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 비오염지역으로부터의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어,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됨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2,641	2,671	2,939	3,172
지역별	오염지역	775 (29.3%)	950 (35.6%)	1,287 (43.8%)	1,358 (42.8%)
	비오염지역	1,866 (70.7%)	1,721 (64.4%)	1,652 (56.2%)	1,814 (57.2%)



(11) 동해 취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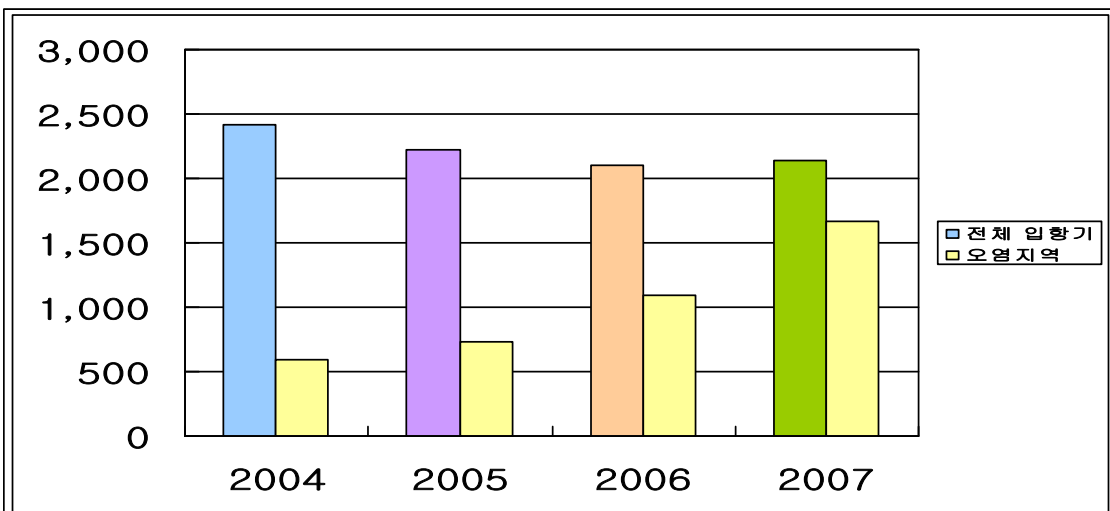
① 연도별 동해 선박 취항 현황

○ 연도별 동해로 취항하는 선박의 수는 2004년 2,420건에서 2007년 2,138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취항 선박 수의 약 3%에 달하는 수치임

○ 다만, 동해로 취항하는 선박의 거의 80% 이상이 오염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선박이기 때문에 전수를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오염지역에서 취항하는 선박의 수는 2004년 592건에서 2007년 1,669건으로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오염지역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2,420	2,226	2,106	2,138
지역별	오염지역	592 (24.5%)	730 (32.8%)	1,088 (51.7%)	1,669 (78.1%)
	비오염지역	1,828 (75.5%)	1,496 (67.2%)	1,018 (48.3%)	469 (21.9%)



(12) 제주 취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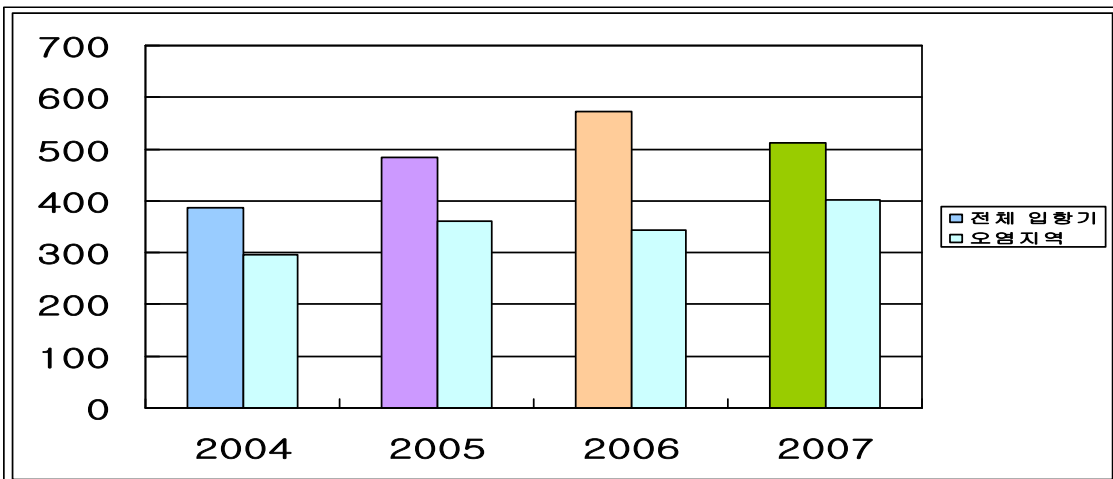
① 연도별 제주 선박 취항 현황

○ 제주로 취항하는 연도별 선박의 수는 2004년 386건에서 2007년 512건으로 약 100여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세 취항 선박량의 약 0.7%에 달하는 미미한 양으로 분석됨

○ 다만, 오염지역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선박의 수가 2004년 297건에서 2007년 401건으로 마찬가지로 약 100여건이 그대로 오염지역으로부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오염지역 관리에 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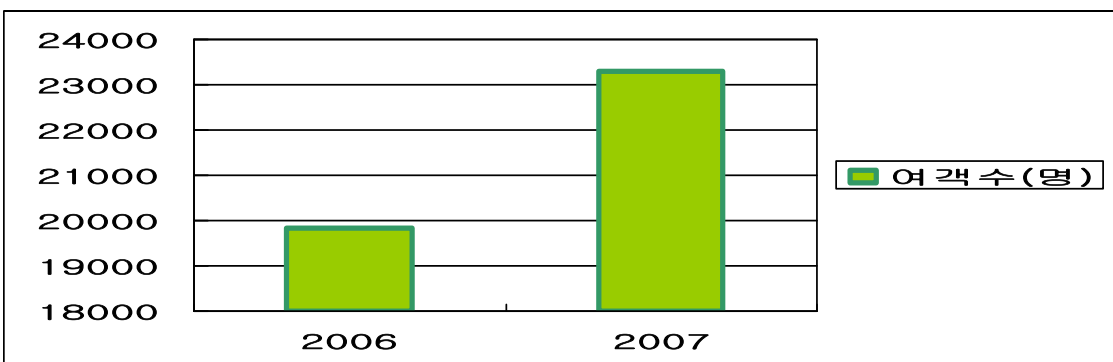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386	483	572	512
지역별	오염지역	297 (76.9%)	360 (74.5%)	343 (60.0%)	401 (78.3%)
	비오염지역	89 (23.1%)	123 (25.5%)	229 (40.0%)	111 (21.7%)



② 연도별 제주항 여객선 취항 현황

○ 제주로 취항하는 연도별 여객수는 2006년 19,833명에서 23,289명으로 증가세이나, 비교적 위생상태가 개선되어 있는 상하이와 비오염지역인 일본으로부터의 취항임

구 분			2006		2007	
			운항(척)	여객수(명)	운항(척)	여객수(명)
소 계			20	19,833	19	23,289
제주항	중국, 일본	제주↔상하이 ↔나가사키	20	19,833	19	23,289



다. 육로

(1) 연도별 전체 입국량

○ 자동차로 입국하는 연도별 건수는 2004년 27,173 건에서 2007년 89,597 건으로 지난 3년 간 거의 3배 증가하였음. 자동차로 입국하는 승객은 2004년 323,759 명에서 2007년 532,287명으로 약 2/3가량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또한 열차를 이용한 이동이 2007년 시작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27,173	58,085	61,831	89,597
검역수	자동차	27,173	58,085	61,831	89,582 (99.98%)
	열차	-	-	-	15 (0.02%)
계		323,759	408,549	355,165	532,610
인 원	자동차	323,759	408,549	355,165	532,287 (99.9%)
	열차				32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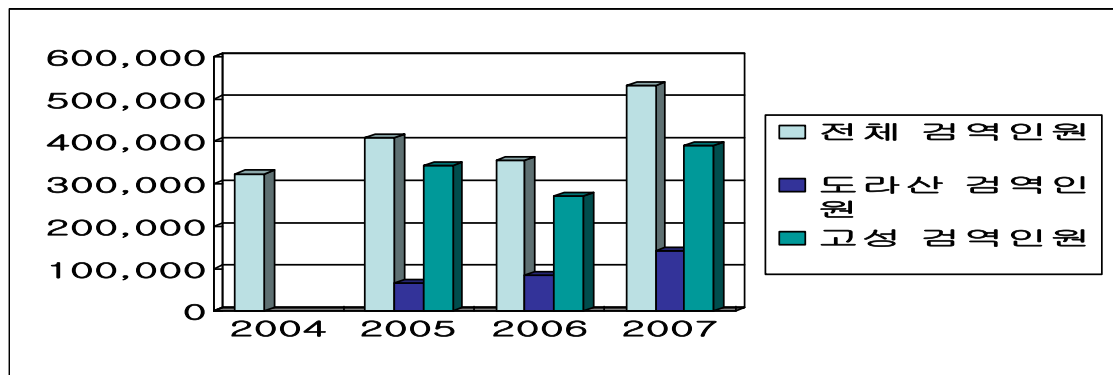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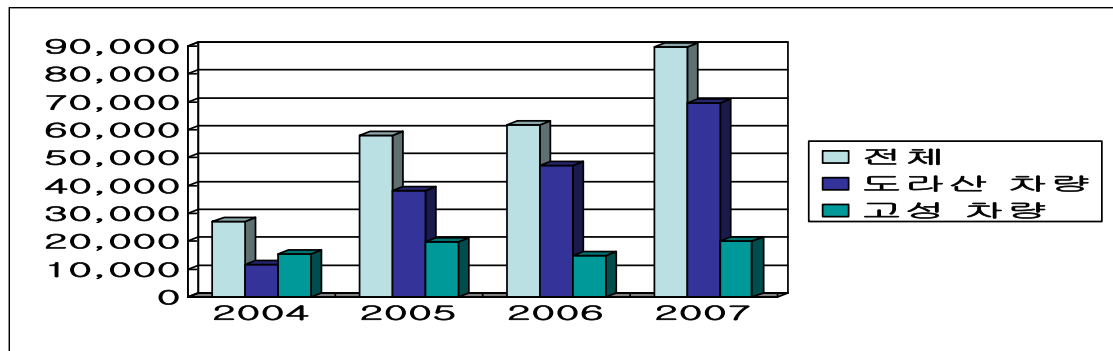
○ 육로를 통한 입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성 및 도라산의 검역수는 고성이 2004년 15,546건에서 2007년 20,015건으로 약 5000건이 증가하였으며, 도라산이 2004년 11,627 건에서 2007년 69,567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전체 검역수 89,582건 중에서 77.7%를 차지하는 등 절대수나 비중면에서 많은 증가세를 보임

○ 도라산의 경우, 출퇴근자가 있어, 상시 입국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며, 지속적인 교역의 증가로 검역수의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엄청나게 많은 검역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으므로 도라산의 경우 출퇴근자에 대한 검역조사 방법 개선이 요구됨

○ 반면 검역 인원의 경우에는 고성이 2005년 342,594 명에서 2007년 390,815 명으로 약 50,000명이 증가하였고, 도라산은 2005년 65,955 명에서 2007년 141,472명이 증가하여 절대적으로 검역 대상 인원은 고성이 많이 차지 하고 있음을 보여줌

○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검역 조사에 있어서, 단기 여행객을 대상으로하는 검역조사 방법의 대책 마련이 촉구됨

구 분 (차량)		2004		2005		2006		2007	
계		27,173		58,085		61,831		89,582	
검역수	고성	15,546	57.21%	19,824	34.1%	14,747	23.9%	20,015	22.3%
	도라산	11,627	42.79%	38,261	65.9%	47,084	76.1%	69,567	77.7%
계		323,759		408,549		355,165		532,287	
인 원	고성	-	-	342,594	83.86%	271,401	76.4%	390,815	73.4%
	도라산	-	-	65,955	16.14%	83,764	23.6%	141,472	26.6%



(2) 도라산 입국량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차량	검역수(대)	11,627	38,261	47,084	69,567
	검역 인원	-	65,955	83,764	141,472
기차	검역수(대)				14
	검역 인원				173

(3) 고성 입국량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계		15,546	19,824	14,747	20,016
차량	검역수(대)	15,546	19,824	14,747	20,015
	검역 인원	-	342,594	271,401	390,815
기차	검역수(대)				1
	검역 인원				150

2. 검역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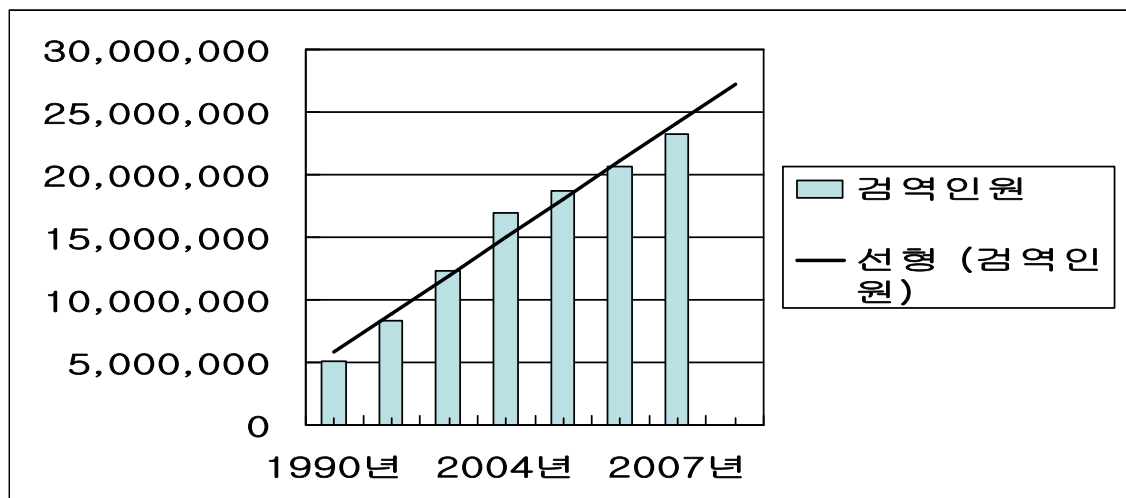
가. 전체 검역 실시 현황

(1) 검역 인원

○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을 포함한 전체 검역 실시 현황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음. 불과 20년이 채 안되는 사이에 거의 4배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5,105,995	8,300,182	12,298,908	13,588,034	16,952,372	18,699,186	20,623,665	23,257,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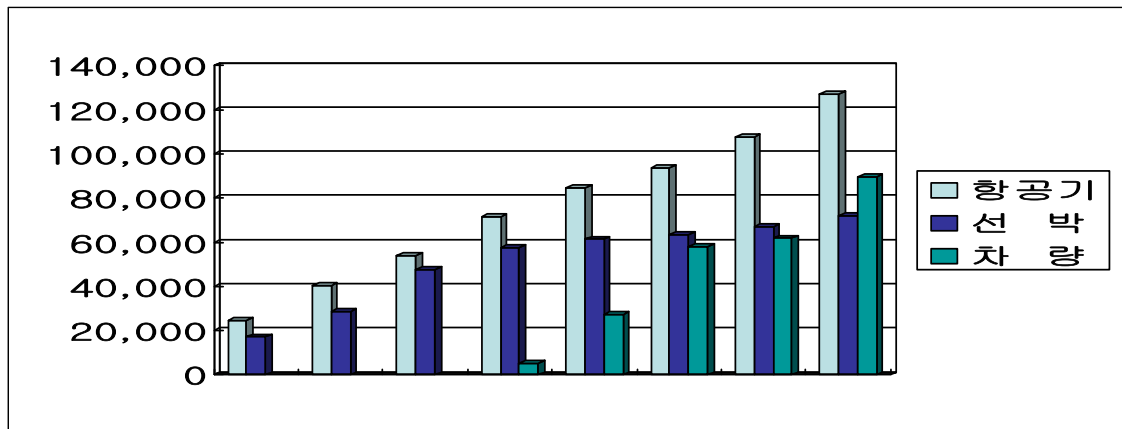
○ 1990년부터 2007년 사이의 검역인원 증가는 다음과 같이 선형을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2년에는 총 검역인원이 30,000,000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됨



(2) 운송 수단

- 지난 10년 간의 운송 수단별 검역 건수를 살펴보면,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검역 건수는 2003년 13건에서 2007년 6건으로 줄어들었으나, 검역 대상의 경우는 불과 5년이 안되는 2003년과 2007년 사이에 71,553건에서 127,332건으로 거의 2배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선박의 경우 2003년과 2007년 사이에 약간의 증감이 있기는 하였으나, 검역 선박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비록 항공기보다는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2003년 57,702건에서 2007년 72,1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육로를 통한 출입국이 이루어지는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의 검역 인원을 비교하면 또한 불과 4년 사이에 5,154명에서 89,597명으로 거의 18배나 검역 업무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효율적인 검역을 위한 효과적인 검역 방법 및 인력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비교하면, 항공기의 경우는 주로 사람 검역을 위주로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박 (운송수단)을 중점적으로 검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항공기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여행객을 모두 검역 대상으로 하여 현재와 같은 검역 업무가 증가할 경우, 과부하가 우려됨
- 항공기와 차량의 경우 그 증가세가 거의 유사할 정도로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인성 전염병을 검역질환으로 분류하여 오염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검역 인력 부족 문제 및 업무 과다로 인한 효율 저하 문제가 계속 대두할 것임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8	100	377	439	515	245	236	477(575)
	41,722	69,275	95,654	134,409	173,243	215,057	236,765	289,047
항공기	-	-	-	17	15	16	9	6
	24,576	40,561	53,949	71,553	84,694	93,586	107,791	127,332
선 박	8	100	377	422	500	229	227	471(569)
	17,146	28,714	47,540	57,702	61,376	63,386	67,143	72,118
차 량	-	-	-	-	-	-	-	-
	-	-	-	5,154	27,173	58,085	61,831	89,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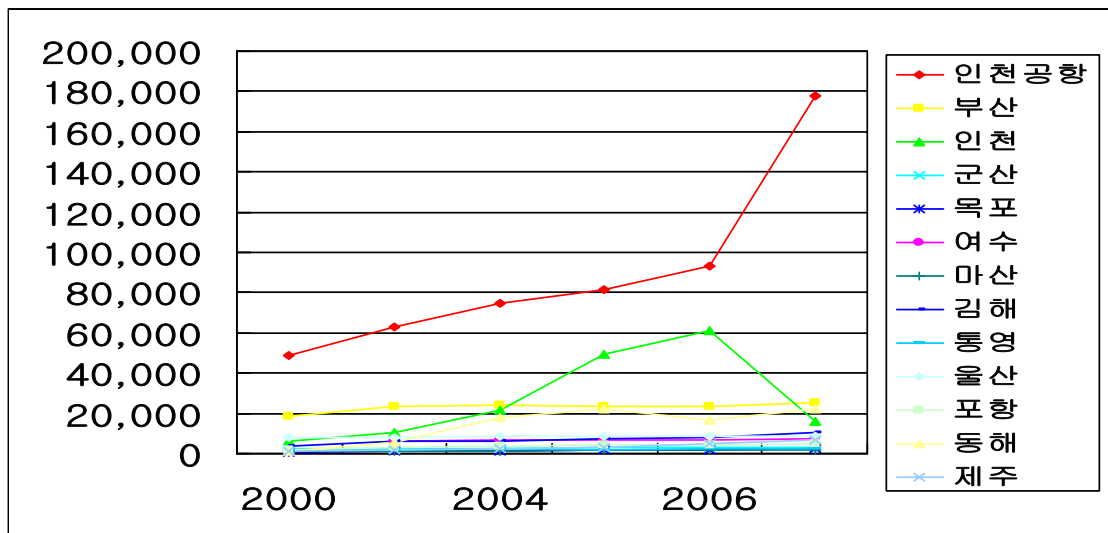


나. 각 검역소별 검역 실시 현황

○ 각 검역소별 검역 실시 현황을 비교하면 2007년 인천공항이 전체 검역 현황 중 61.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검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뒤를 이어 부산이 8.7%, 동해가 7.7% 그리고 인천이 5.6%, 김해가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단, 동해의 경우는 육로를 통한 남북간 차량 검역을 포함시킨 결과임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천	23,702	390,360	48,741	63,243	74,623	81,396	93,425	177,802
공항	56.8%	92.8%	51.0%	47.1%	43.1%	37.8%	39.5%	61.5%
부산	11,524	15,889	18,234	23,149	24,106	23,745	23,744	25,188
	27.6%	3.8%	19.1%	17.2%	13.9%	11.0%	10.0%	8.7%
인천	-	-	6,072	10,539	21,348	49,362	60,806	16,215
			6.3%	7.8%	12.3%	23.0%	25.7%	5.6%
군산	397	1,064	2,688	2,364	2,455	2,808	2,912	3,328
	1.0%	0.3%	2.8%	1.8%	1.4%	1.3%	1.2%	1.2%
목포	-	329	515	1,059	1,477	1,987	2,158	2,407
		0.1%	0.5%	0.8%	0.9%	0.9%	0.9%	0.8%
여수	2,216	3,203	-	6,344	6,708	6,945	7,091	7,117
	5.3%	0.8%		4.7%	3.9%	3.2%	3.0%	2.5%
마산	645	1,170	1,429	1,313	1,417	1,599	1,644	1,591
	1.5%	0.3%	1.5%	1.0%	0.8%	0.7%	0.7%	0.6%
김해	-	-	3,954	5,963	6,367	7,490	7,993	10,725
			4.1%	4.4%	3.7%	3.5%	3.4%	3.7%
통영	685	1,095	1,840	2,073	2,169	1,944	2,541	2,504
	1.6%	0.3%	1.9%	1.5%	1.3%	0.9%	1.1%	0.9%
울산	-	5,471	7,799	7,974	8,415	8,462	8,348	8,629
		1.3%	8.2%	5.9%	4.9%	3.9%	3.5%	3.0%
포항	829	-	1,778	2,963	3,868	4,144	4,537	4,787
	2.0%		1.9%	2.2%	2.2%	1.9%	1.9%	1.7%
동해	522	383	1,123	5,671	17,990	22,093	16,874	22,163
	1.3%	0.1%	1.2%	4.2%	10.4%	10.3%	7.1%	7.7%
제주	1,202	1,635	1,481	1,754	2,300	3,082	4,692	6,591
	2.9%	0.4%	1.5%	1.3%	1.3%	1.4%	2.0%	2.3%

- 절대적인 검역인원량으로 비교할 경우 인천공항이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검역소들의 검역인원 증가량은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인천의 경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진 바,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하여는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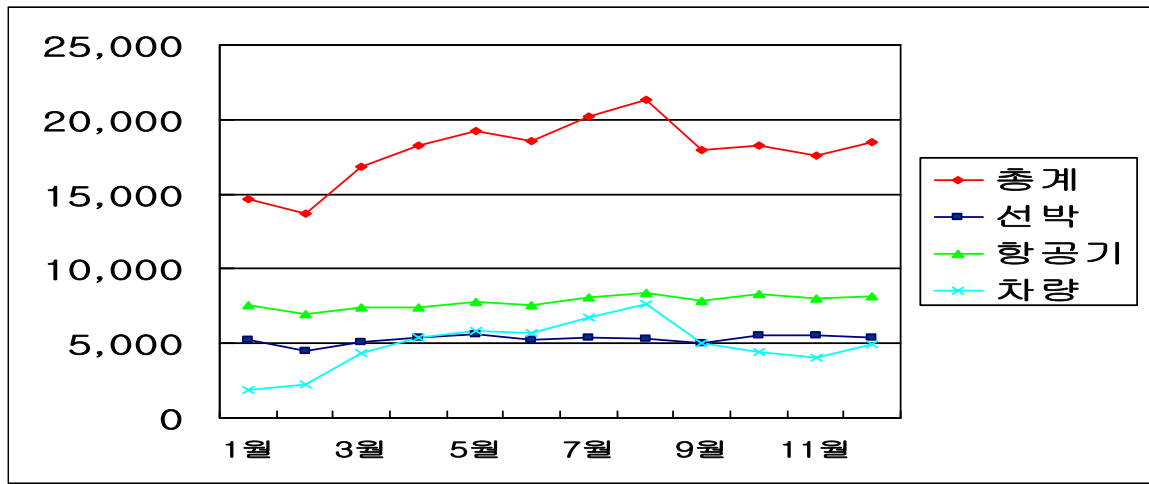


다. 월별 검역 실적

(1) 2005년

- 각 운송수단별로 2005년의 월별 검역 실적을 비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공기, 선박, 차량의 검역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국제 교류 및 교역 증가로 인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월별 특성이라 하기 어려워 보임
- 항공기 및 선박의 경우는 계절 및 월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차량의 경우에는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검역 인력 확보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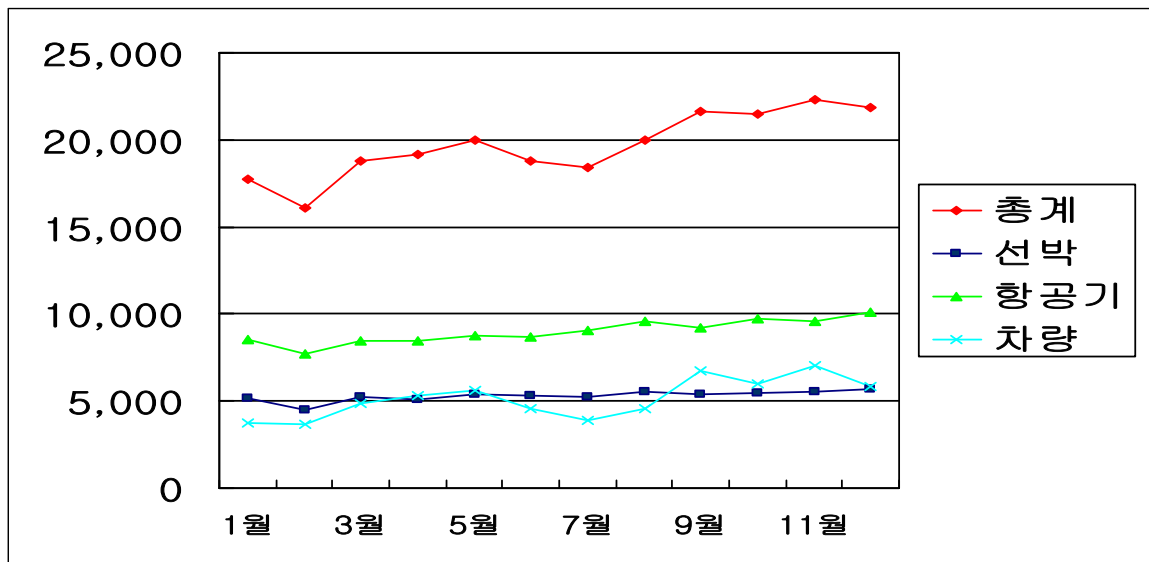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계	215,051	14,666	13,663	16,847	18,257	19,233	18,541	20,217	21,329	17,954	18,273	17,584	18,487
	100.0%	6.8%	6.4%	7.8%	8.5%	8.9%	8.6%	9.4%	9.9%	8.3%	8.5%	8.2%	8.6%
선 박	63,386	5,267	4,492	5,098	5,416	5,596	5,250	5,418	5,328	5,032	5,557	5,544	5,388
	100.0%	8.3%	7.1%	8.0%	8.5%	8.8%	8.3%	8.5%	8.4%	7.9%	8.8%	8.7%	8.5%
항공 기	93,580	7,545	6,929	7,408	7,442	7,779	7,590	8,092	8,399	7,872	8,335	8,035	8,154
	100.0%	8.1%	7.4%	7.9%	8.0%	8.3%	8.1%	8.6%	9.0%	8.4%	8.9%	8.6%	8.7%
차 량	58,085	1,854	2,242	4,341	5,399	5,858	5,701	6,707	7,602	5,050	4,381	4,005	4,945
	100.0%	3.2%	3.9%	7.5%	9.3%	10.1%	9.8%	11.5%	13.1%	8.7%	7.5%	6.9%	8.5%



(2) 2006년

- 각 운송수단별로 2006년의 월별 검역 실적을 비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공기, 선박, 차량의 검역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국제 교류 및 교역 증가로 인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월별 특성이라 하기 어려워 보임
- 항공기 및 선박의 경우는 계절 및 월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차량의 경우에는 2005년과는 반대로 7월과 8월에 감소세를 보이고, 3월과 5월 그리고 9월과 12월 사이에 증가세가 이뤄지고 있는 바, 이는 남북한 관계에 따른 변수가 작용된 것으로 판단됨
- 남북한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현 시점에는, 남북한의 정치 관계에 따라 교역량 및 교류량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계	236,160	17,714	16,101	18,818	19,127	19,952	18,788	18,398	19,956	21,625	21,497	22,334	21,850
선 박	100.0%	7.5%	6.8%	8.0%	8.1%	8.4%	8.0%	7.8%	8.5%	9.2%	9.1%	9.5%	9.3%
항공 기	63,607	5,184	4,492	5,273	5,101	5,365	5,294	5,230	5,552	5,397	5,484	5,513	5,722
차 량	100.0%	8.2%	7.1%	8.3%	8.0%	8.4%	8.3%	8.2%	8.7%	8.5%	8.6%	8.7%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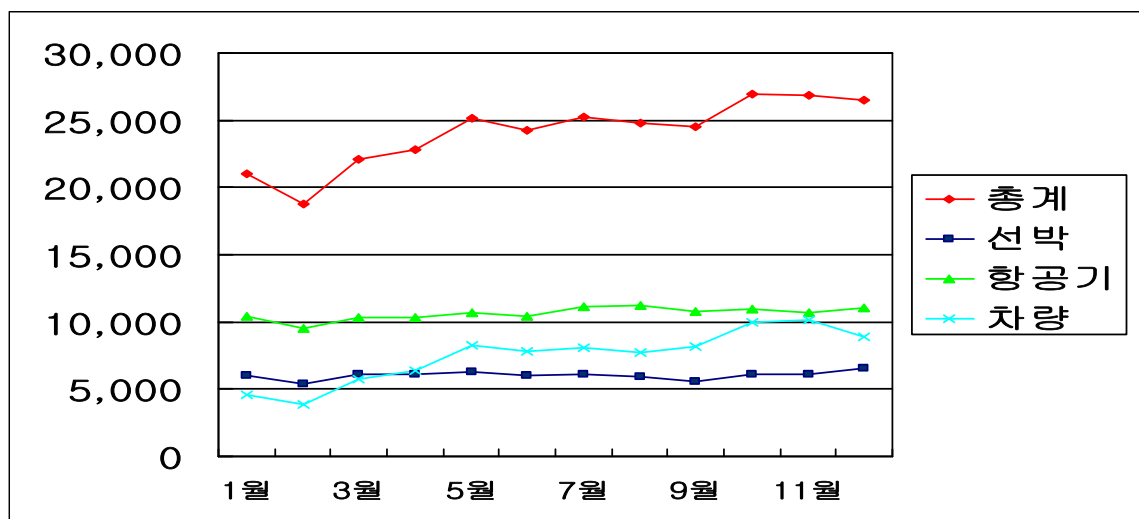


(3) 2007년

- 각 운송수단별로 2007년의 월별 검역 실적을 비교하면, 2005년 및 2006년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공기, 선박, 차량의 검역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언급하였듯이 이는 지속적인 국제 교류 및 교역 증가로 인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월별 특성이라 하기 어려워 보임
- 또한 2005년 및 2006년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및 선박의 경우는 계절 및 월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차량의 경우에는 항공기 및 선박의 경우와 달리 그 상승폭이 두드러짐. 월별로 인한 특성이 보이지는 않음

○ 그 밖에 2005년, 2006년, 2007년 모두 공통적인 특성으로 2월에 감소세를 보이는 바,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일(日)수의 부족으로 인한 경향인 것으로 보임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계	289,047	21,010	18,812	22,126	22,805	25,190	24,210	25,236	24,814	24,501	26,960	26,863	26,520
	100.0%	7.3%	6.5%	7.7%	7.9%	8.7%	8.4%	8.7%	8.6%	8.5%	9.3%	9.3%	9.2%
선 박	72,118	5,974	5,381	6,090	6,100	6,300	6,016	6,077	5,894	5,544	6,112	6,069	6,561
	100.0%	8.3%	7.5%	8.4%	8.5%	8.7%	8.3%	8.4%	8.2%	7.7%	8.5%	8.4%	9.1%
항공 기	127,332	10,412	9,549	10,321	10,318	10,659	10,419	11,097	11,186	10,769	10,919	10,659	11,024
	100.0%	8.2%	7.5%	8.1%	8.1%	8.4%	8.2%	8.7%	8.8%	8.5%	8.6%	8.4%	8.7%
차 량	89,597	4,624	3,882	5,715	6,387	8,231	7,775	8,062	7,734	8,188	9,929	10,135	8,935
	100.0%	5.2%	4.3%	6.4%	7.1%	9.2%	8.7%	9.0%	8.6%	9.1%	11.1%	11.3%	10.0%



라. 오염지역 입국

(1) 총계

○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운송수단 수는 2005년 127,805대에서 2007년 198,018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원수도 2005년 8,426,596명에서 2007년 11,620,030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구 분		총 계		
		2005	2006	2007
총 계	대 수	127,805	144,348	198,018
	인원수	8,426,596	9,422,894	11,620,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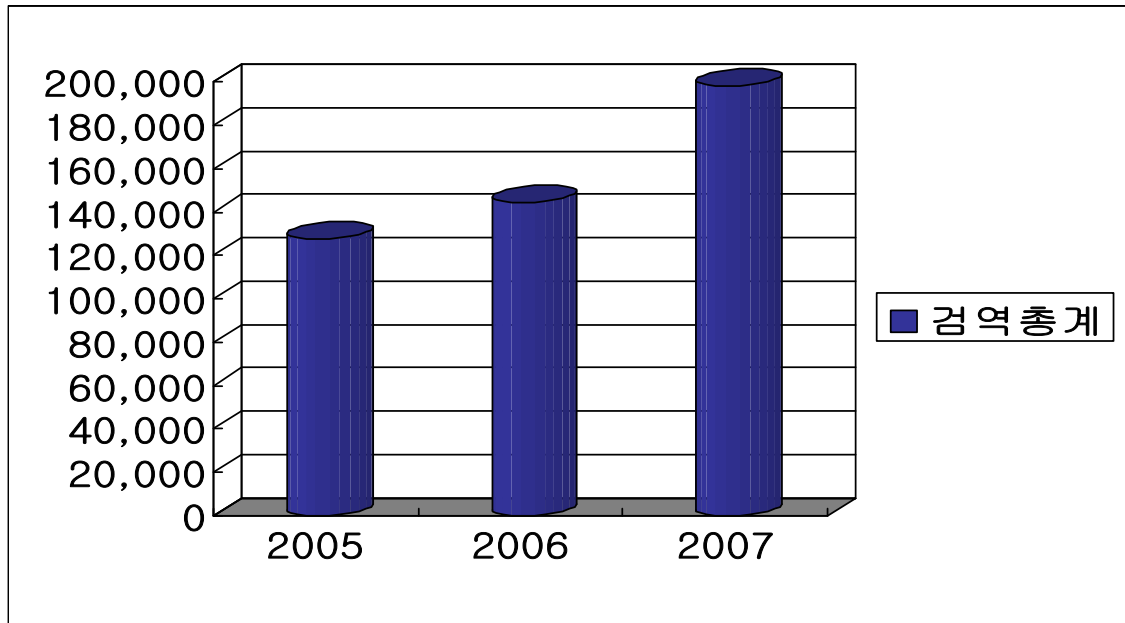


그림 38 오염지역 입국 검역 총계 (대/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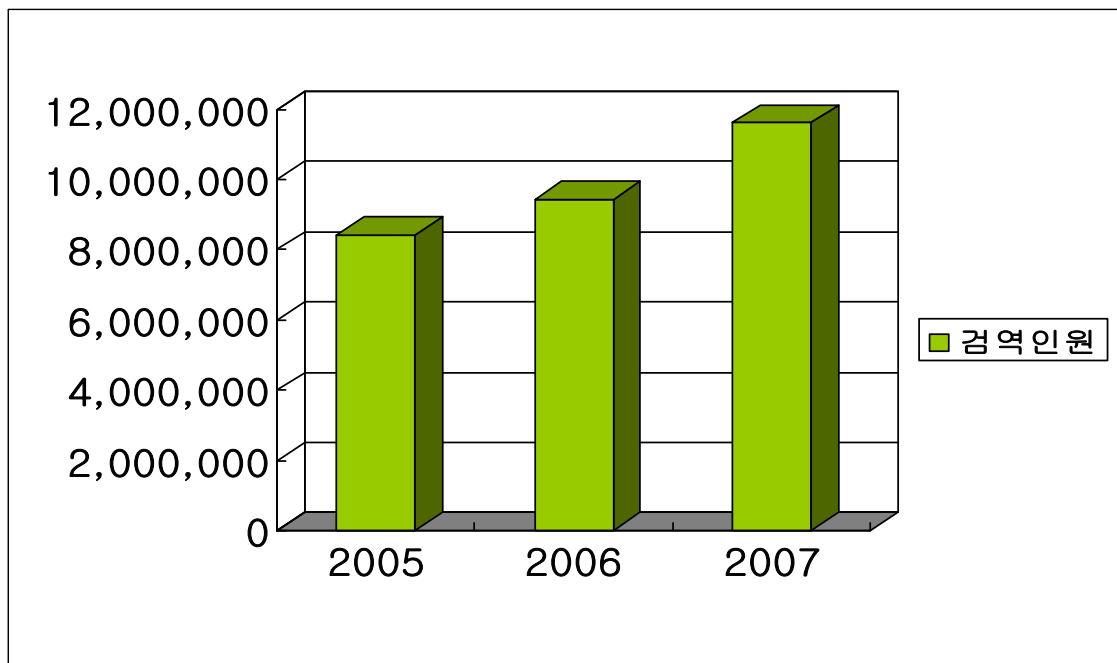


그림 39 오염지역 입국 검역 총계 (인원)

(2) 항공기 오염지역 입국 총계

- 항공기 오염지역 입국 총계는 2005년 41,046대에서 2007년 68,112대로 지난 2년간 거의 70%나 증가하였으며, 인원수는 2005년 6,965,029명에서 2007년 9,777,647명으로 으로 약 40% 증가하였음
- 2007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오염지역입국 공항은 인천공항 57,417대와 8,543,972명으로 각각 전체 오염지역입국 수의 약 84.30%와 8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김해 공항이 6,058대와 765,161명으로 각각 전체 오염지역입국 수의 8.9%와 7.83%를 차지하였음. 제주공항이 2,379대와 228,249명으로 전체 오염지역입국 수의 3.49%와 2.33%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그 밖의 공항은 1% 미만의 오염지역 입국율을 보임

구 분			총 계					
			2005		2006		2007	
항공기	소계	대 수	41,046	100%	50,516	100%	68,112	100%
		인원수	6,965,029	100%	7,962,695	100%	9,777,647	100%
	인천공항	대 수	35,140	85.61%	42,960	85.04%	57,417	84.30%
		인원수	6,233,375	89.50%	7,013,135	88.07%	8,543,972	87.38%
	목포	대 수	561	1.37%	628	1.24%	646	0.95%
		인원수	62,629	0.90%	67,305	0.85%	70,489	0.72%
	김해	대 수	3,100	7.6%	3,815	7.6%	6,058	8.9%
		인원수	469,371	6.74%	581,819	7.31%	765,161	7.83%
	울산	대 수	2	0.00%	4	0.01%	-	-
		인원수	12	0.00%	31	0.00%	-	-
	포항	대 수	1,381	3.36%	1,564	3.10%	1,604	2.35%
		인원수	152,035	2.18%	158,433	1.99%	168,942	1.73%
	동해	대 수	22	0.05%	20	0.04%	8	0.01%
		인원수	2,222	0.03%	2,235	0.03%	834	0.01%
	제주	대 수	840	2.05%	1,525	3.02%	2,379	3.49%
		인원수	45,385	0.65%	139,737	1.75%	228,249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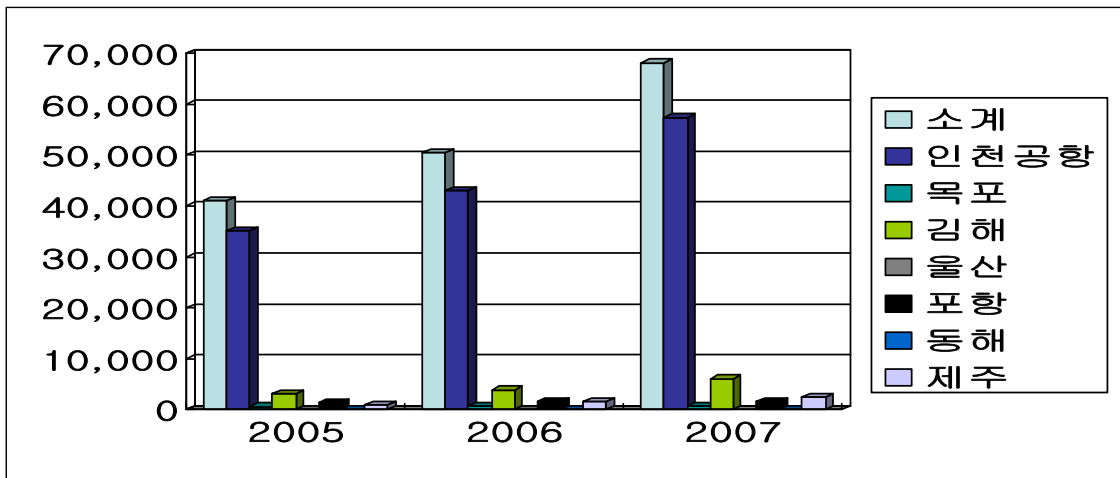


그림 40 항공 오염지역 입국 검역 비교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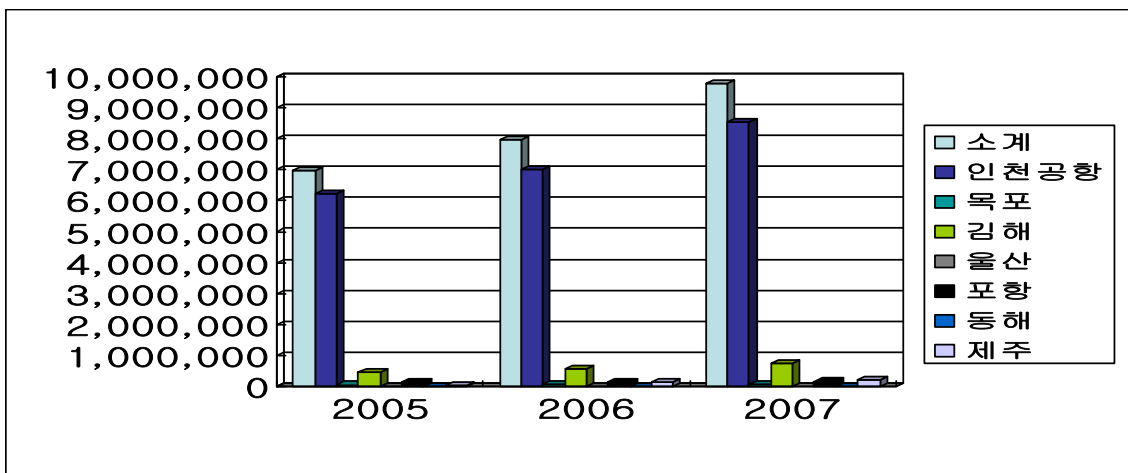


그림 41 항공 오염지역 입국 검역 비교 (인원)

(3) 선박 오염지역 입국 총계

○ 선박 오염지역 입국 총계는 2005년 28,674대에서 2007년 40,309대로 지난 2년간 거의 40%나 증가하였으며, 인원수는 2005년 1,053,018명에서 2007년 1,309,782명으로 으로 약 32% 증가하였음

○ 2007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오염지역입국 항은 인천항 13,012대와 751,818명으로 각각 전체 오염지역입국 수의 약 32.28%와 57.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부산항이 11,099대와 222,238명으로 각각 전체 오염지역입국 수의 27.53%와 16.97%를 차지하였음. 그 이외에 5% 이상의 오염지역입국 수를 보이는 항은 군산항이 2,502대와 76,820명으로 전체 오염지역입국 수의 6.21%와 5.87%, 여수항이 3,068대와 53,951명

으로 전체 오염지역입국 수의 7.61%와 4.12%, 울산항이 4,002대와 68,413명으로 전체 오염지역입국 수의 9.93%와 5.22%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총 계					
			2005		2006		2007	
선 박	소계	척 수	28,674	100%	31,001	100%	40,309	100%
		인원수	1,053,018	100%	1,105,034	100%	1,309,782	100%
	부산	척 수	9,137	31.87%	9,137	29.47%	11,099	27.53%
		인원수	185,804	17.64%	185,804	16.81%	222,238	16.97%
	인천	척 수	7,989	27.86%	7,989	25.77%	13,012	32.28%
		인원수	645,148	61.27%	645,148	58.38%	751,818	57.40%
	군산	척 수	1,832	6.39%	2,080	6.71%	2,502	6.21%
		인원수	61,285	5.82%	68,914	6.24%	76,820	5.87%
	목포	척 수	877	3.06%	930	3.00%	1,076	2.67%
		인원수	15,126	1.44%	16,582	1.50%	17,556	1.34%
	여수	척 수	3,195	11.14%	2,170	7.00%	3,068	7.61%
		인원수	58,117	5.52%	37,390	3.38%	53,951	4.12%
	마산	척 수	519	1.81%	727	2.35%	695	1.72%
		인원수	9,253	0.88%	12,114	1.10%	10,879	0.83%
	통영	척 수	1	0.00%	1,414	4.56%	1,415	3.51%
		인원수	14	0.00%	15,848	1.43%	13,643	1.04%
	울산	척 수	3,084	10.76%	3,836	12.37%	4,002	9.93%
		인원수	47,976	4.56%	65,354	5.91%	68,413	5.22%
	포항	척 수	950	3.31%	1,287	4.15%	1,358	3.37%
		인원수	14,947	1.42%	20,379	1.84%	21,116	1.61%
	동해	척 수	730	2.55%	1,088	3.51%	1,681	4.17%
		인원수	9,735	0.92%	31,639	2.86%	49,303	3.76%
	제주	척 수	360	1.26%	343	1.11%	401	0.99%
		인원수	5,613	0.53%	5,862	0.53%	24,045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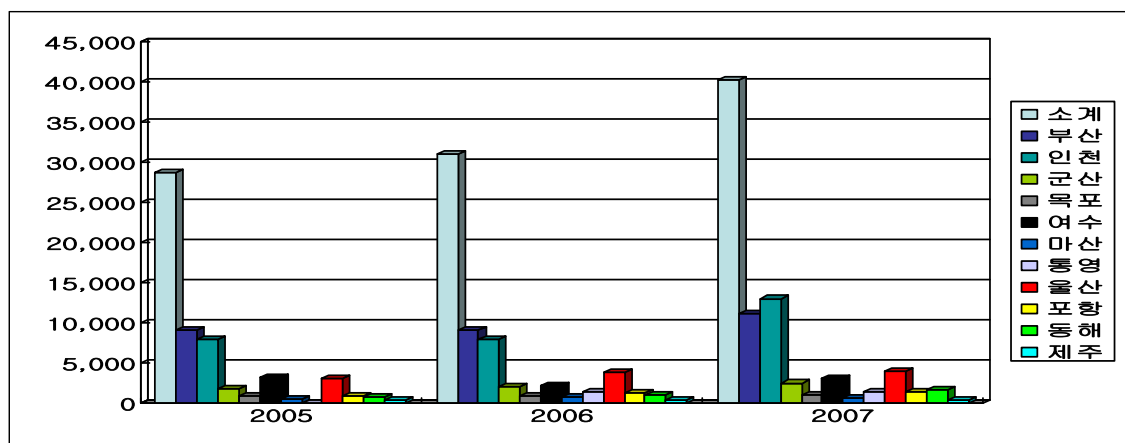


그림 42 선박 오염지역 입국 검역 비교 (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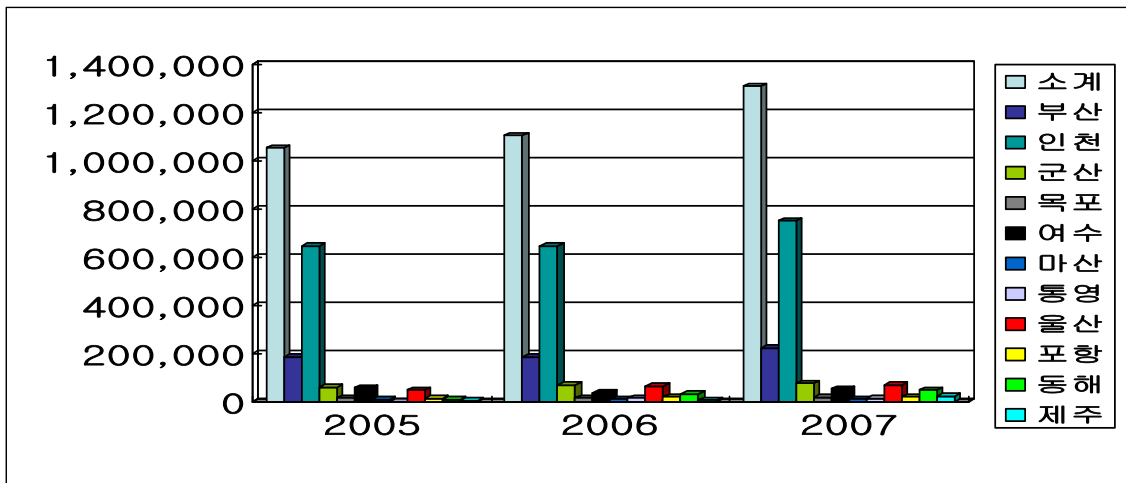


그림 43 선박 오염지역 입국 검역 비교 (인원)

(4) 차량 오염지역 입국 총계

- 차량 오염지역 입국 총계는 2005년 58,085대에서 2007년 89,597대로 지난 2년간 거의 54%나 증가하였으며, 인원수는 2005년 1,053,018명에서 2007년 1,309,782명으로 으로 약 24% 증가하였음
- 인천(도라산)은 2005년 38,261대에서 2007년 69,581대로 지난 2년간 거의 82%나 증가하였으며, 인원수는 2005년 65,955명에서 2007년 141,645명으로 으로 약 114%나 증가하였음
- 전술하였듯이, 2007년을 기준으로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입국 대수는 인천(도라산)이 77.66%로 동해(고성) 26.59%의 3배에 달하고 있어, 인천(도라산)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 인원은 동해(고성)이 73.41%로 인천(도라산)의 26.59%보다 거의 3배 가량 많음.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받아 변동 가능성 있음.

구 분			총 계					
			2005		2006		2007	
차 량	소계	대 수	58,085	100%	61,831	100%	89,597	100%
		인원수	408,549	100%	355,165	100%	532,601	100%
	인천	대 수	38,261	65.87%	47,084	76.15%	69,581	77.66%
		인원수	65,955	16.14%	83,764	23.58%	141,645	26.59%
	동해	대 수	19,824	34.13%	14,747	23.85%	20,016	22.34%
		인원수	342,594	83.86%	271,401	76.42%	390,956	7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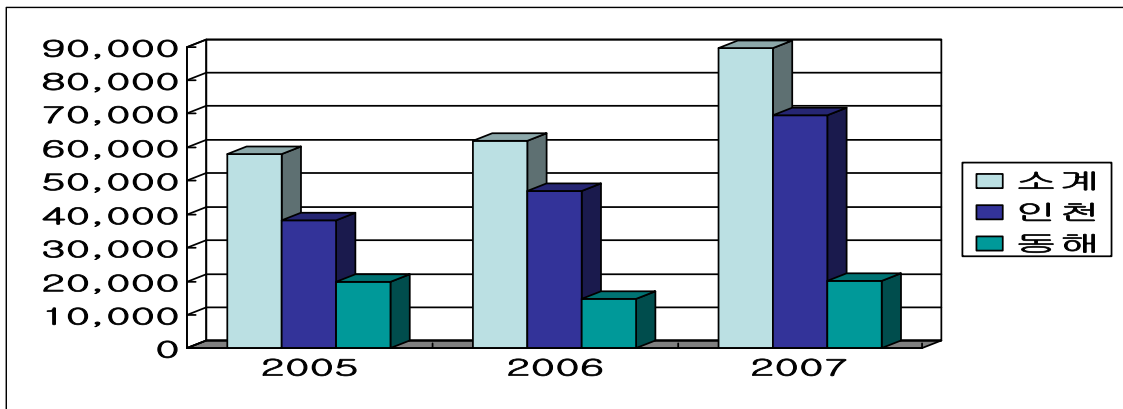


그림 44 차량 오염지역 입국 검역 비교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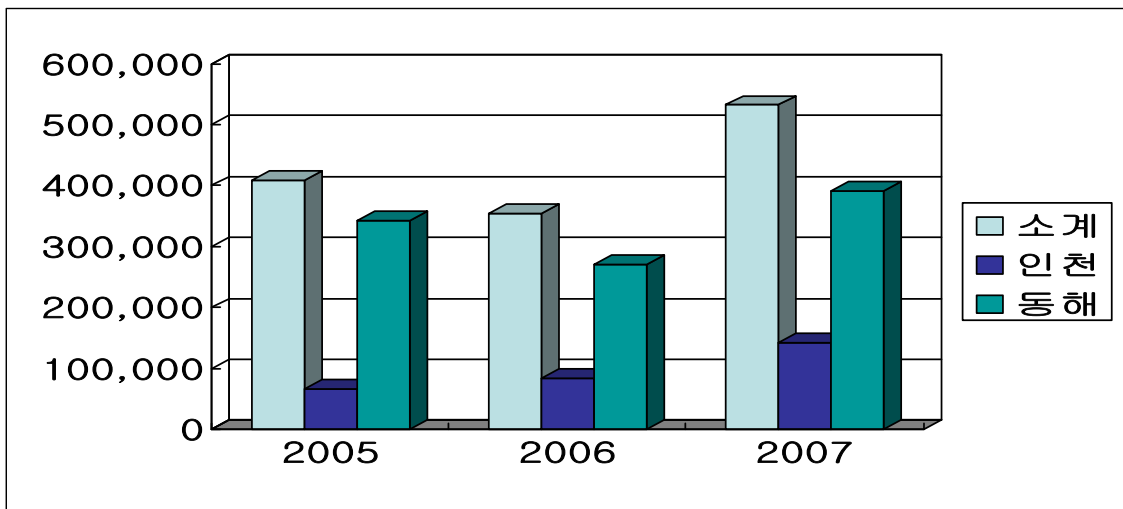


그림 45 차량 오염지역 입국 검역 비교 (인원)

(5) 주요 오염 국가별 입국 총계

- 주요 오염 국가별 입국 총계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중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오염국가로는 2007년을 기준으로 태국이 6.1%, 필리핀이 5.6%를 나타내고 있음.
- 교역량 및 교류의 증가로 인한 절대수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의 오염국가별 입국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중국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입국량 및 비율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임

구 분		총 계					
		2005		2006		2007	
총 계	대 수	64,818		74,912		94,403	
중국		52,503	(81.0%)	61,594	(82.2%)	77,386	(82.0%)
인도네시아		1,294	(2.0%)	1,370	(1.8%)	1,589	(1.7%)
태국		4,340	(6.7%)	5,062	(6.8%)	5,792	(6.1%)
필리핀		3,672	(5.7%)	4,089	(5.5%)	5,267	(5.6%)
베트남		2,351	(3.6%)	2,692	(3.6%)	3,520	(3.7%)
이집트		167	(0.3%)	105	(0.1%)	203	(0.2%)
인도		491	(0.8%)	-	(0.0%)	64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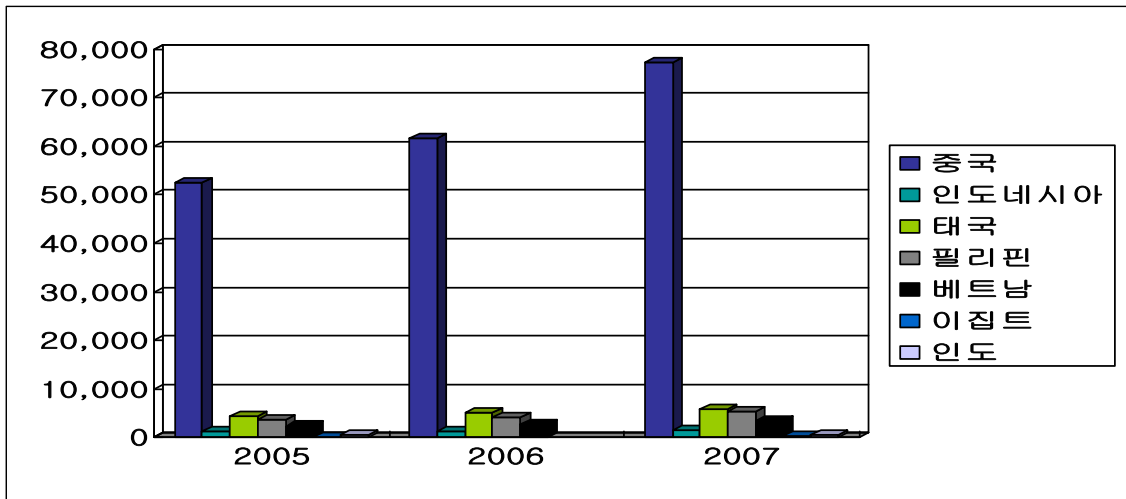


그림 46 주요 오염 국가별 입국 총계 비교 (검역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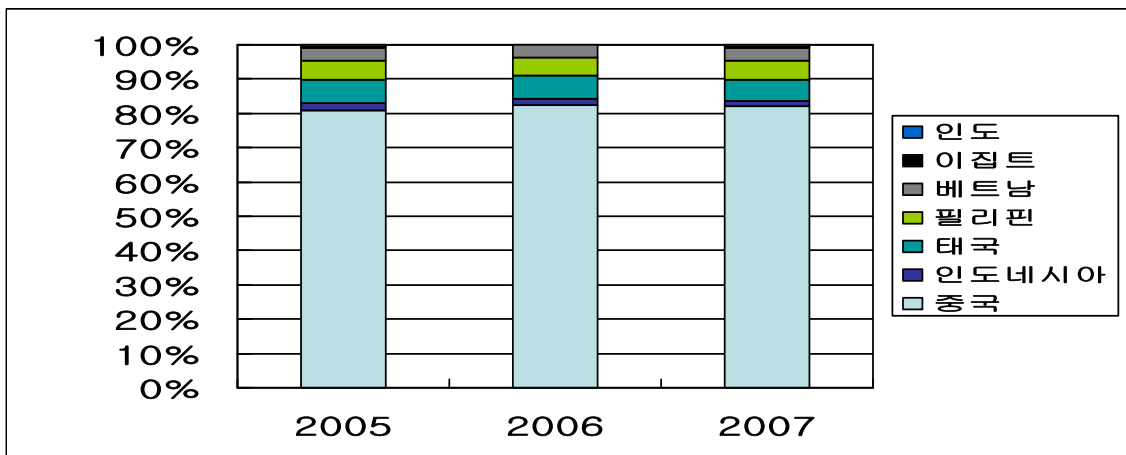


그림 47 오염 국가별 입국 비율 (대수)

- 주요 오염 국가별 입국 인원 총계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중국이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오염국가로는 2007년을 기준으로 태국이 13.1%, 필리핀이 8.3%, 베트남이 5.3%를 나타내고 있음.

구 분		총 계		
		2005	2006	2007
총 계	인원수	8,426,596	9,422,894	11,620,030
중국		5,288,768 (68.3%)	5,934,712 (68.2%)	7,243,349 (69.8%)
인도네시아		172,639 (2.2%)	177,156 (2.0%)	223,440 (2.2%)
태국		1,092,501 (14.1%)	1,315,837 (15.1%)	1,357,518 (13.1%)
필리핀		677,222 (8.7%)	760,714 (8.7%)	858,840 (8.3%)
베트남		413,847 (5.3%)	498,538 (5.7%)	554,190 (5.3%)
이집트		29,931 (0.4%)	17,897 (0.2%)	38,694 (0.4%)
인도		71,126 (0.9%)	-	99,36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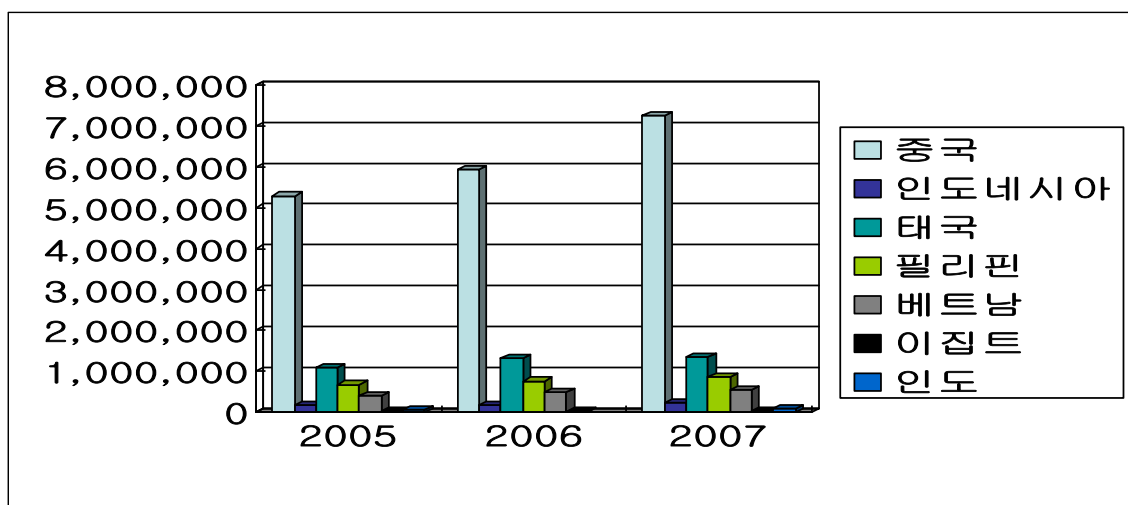


그림 48 오염국가별 입국 총계 비교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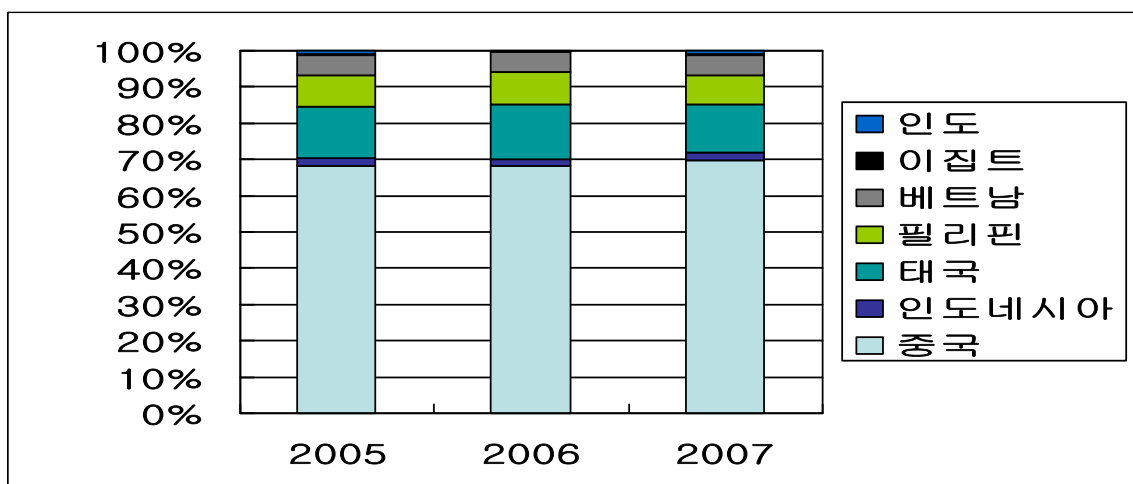


그림 49 오염 국가별 입국 비율 (인원)

3. 검역 결과

가. 검역결과 유증상자 발견 현황

- 검역결과 유증상자 발견 현황을 비교하면, 선박과 항공기가 2007년을 기준으로 선박 31,494건 항공기 30,905건으로 유사한 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항공기의 검역 실적이 더 많은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검역결과 유증상자 발견 현황은 선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선박의 위생 상태가 항공기에 비하여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상대적으로 선박에 비해 짧은 이동 시간을 가지는 항공기의 특성 상 유증상자 발견이 어렵기 때문일 수 있어, 선박과 항공기의 유증상자 발견 현황에 있어 많은 의미를 담기는 무리로 보임. 즉, 항공기의 경우 검역 업무의 과다로 인한 효율적 업무 수행의 미비로, 유증상자가 검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선박 중 가장 많은 유증상자 발견 현황을 보이는 곳은 오염지역 입국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 항이며, 공항 중 가장 많은 유증상자 발견 현황을 보이는 곳은 역시 가장 높은 오염지역 입국 비율을 보이는 인천공항과 김해 공항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오염지역 입국 비율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음

		2005	2006	2007
구 분		계	계	계
합 계		32,524	29,383	31,494
선박	소 계	461	539	499
	부 산	5	20	10
	인 천	438	496	459
	군 산		2	1
	목 포		2	
	울 산	17	2	2
	동 해	1	17	27
항공기	소 계	31,951	28,738	30,905
	인천공항	28,028	25,345	26,937
	목 포	17	17	14
	김 해	3,860	3,295	3,754
	포 향	46	80	184
	제 주		1	16
차량	소 계	112	106	90
	인 천	5	16	42
	동 해	107	90	48

나. 운송수단 내 가검물 검사 실적

- 운송수단 내 가검물 검사 실적은 연도별로 뚜렷한 증감 추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며, 전체 입국량이나 오염지역 입국량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 다만 전체적으로 항공기보다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선박에서의 가검물 검사 실적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선박에 대한 가검물 실적과 관련하여서도, 취항하는 선박의 전체량이나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양과 상관없이, 각 검역소의 특성별로 매년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임 이는 각 검역소장이나 검역소가 가검물 실적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는가가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구 분	2005년실적			2006년 실적			2007년 실적		
운송수단 가검물 총계	1,530/	121,930	(1.3%)	1,603/	100,649	(1.6%)	2,427/	120,832	(2.0%)
인천공항	192/	52,135	(0.4%)	150/	25,879	(0.6%)	203/	33,185	(0.6%)
부 산	205/	4,734	(4.3%)	230/	6,035	(3.8%)	346/	8,452	(4.1%)
인 천	78/	4,295	(1.8%)	58/	5,044	(1.1%)	137/	5,478	(2.5%)
군 산	116/	5,031	(2.3%)	278/	4,329	(6.4%)	513/	5,435	(9.4%)
목 포	108/	4,415	(2.4%)	101/	4,247	(2.4%)	164/	4,243	(3.9%)
여 수	29/	5,701	(0.5%)	15/	3,140	(0.5%)	80/	3,499	(2.3%)
마 산	31/	4,320	(0.7%)	58/	4,779	(1.2%)	122/	4,968	(2.5%)
김 해	186/	15,131	(1.2%)	159/	18,332	(0.9%)	157/	21,798	(0.7%)
통 영	174/	3,665	(4.7%)	296/	4,394	(6.7%)	344/	4,630	(7.4%)
울 산	262/	6,060	(4.3%)	139/	5,946	(2.3%)	186/	7,088	(2.6%)
포 향	121/	8,095	(1.5%)	38/	9,367	(0.4%)	79/	9,238	(0.9%)
동 해	10/	3,091	(0.3%)	74/	3,254	(2.3%)	91/	4,863	(1.9%)
제 주	18/	5,257	(0.3%)	7/	5,903	(0.1%)	5/	7,955	(0.1%)

다. 검출균 건수 및 종류

- 현재 국내 검역소의 검역 전염병 및 전염병 진단 수준은 세균성 전염병을 진단해 낼 수 있는 정도로, 대부분의 검역소가 콜레라 등 세균성 전염병 검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특이점으로는 대부분이 콜레라를 검출해 내는 경우는 거의 일년에 한 두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주지하였듯이, 항공기보다는 선박에서의 검출이 두드러짐
- 그리고 군산의 경우 지속적이며 압도적으로 콜레라 및 그 외 세균성 전염병의 검출 건수가 높았음 지역적 특색인지, 검역소의 업무 방침의 영향인지 흥미로움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천 공항	V.cholerae CTX양성	4	26	4	16	15	8	5
	V.cholerae CTX음성	-	-	-	1	21	-	3
	V.cholerae non O1	-	-	-	81	155	76	137
	V.parahaemolyticus	-	-	-	655	949	792	745
	Salmonella spp.	-	-	-	29	31	59	46
	Shigella spp.	-	-	-	-	3	-	20
	E.coli O146(EHEC)	-	-	-	-	-	-	2
	Staphylococcus aureus	-	-	-	-	6	2	1
부 산	V.paraheamolyticus	18	36	13	570	682	700	797
	V.vulnificus	-	-	-	8	15	18	39
	E.coliO-18VT음성	-	-	-	-	-	-	-
	E.coliO-26양성VT 음성	-	-	-	-	-	-	-
	E.coliO-111양성VT 음성	-	-	-	-	-	-	-
	E.coliO-117양성VT 음성	-	-	-	1	-	-	-
	E.coliO-157양성VT 음성	-	-	-	-	-	-	-
	V.cholerae	-	-	1	-	-	-	-
	non-O1 V.cholerae	-	-	-	-	7	7	17

	Salmonella spp.	-	-	-	-	-	-	2
인 천	V.cholerae	-	-	1	-	-	-	-
	장염비브리오	-	-	7	66	484	476	717
	NAG Vibrio	-	-	4	4	42	39	18
	V.vulnificus	-	-	-	-	9	7	20
군 산	V.cholerae CTX음성	-	-	-	3	-	-	1
	V.cholerae non O1	-	-	-	134	113	180	172
	장염비브리오	415	-	51	227	333	888	1,334
	비브리오 패혈증	-	-	3	104	162	106	144
	병원성 대장균	-	-	-	-	-	-	-
	E.coli 026	-	-	-	1	-	-	-
	Salmonella spp.	-	-	-	-	2	-	-
목 포	V.parahaemolyticus	-	150	380	467	931	1,108	1,411
	V.vulnificus	-	10	16	54	57	73	49
	V.cholerae	-	-	-	-	-	-	-
	non-O1 V.cholerae	-	-	-	9	174	122	570
여 수	V.parahaemolyticus	95	25	70	159	323	725	957
	V.cholerae non O1	-	5	-	3	11	17	75
	V.vulnificus	-	-	-	-	26	19	68
마 산	V.cholerae	-	-	-	-	13	77	10
	non-01(NAG)							
	V.parahaemolyticus	-	57	14	66	378	452	836
	V.vulnificus	-	-	-	-	1	11	25
김 해	V.cholerae (독소양성)	-	-	-	-	1	1	1
	V.cholerae (독소음성)	-	-	-	-	1	-	-
	V.cholerae non-01	-	-	-	2	19	10	10
	V.parahaemolyticus	-	-	-	97	135	133	134
	V.vulnificus	-	-	-	-	1	-	-
	Shigella spp.	-	-	-	1	6	-	5
	Salmonella	-	-	-	8	7	4	7
	장출혈성 대장균 (독소양성)	-	-	-	-	2	-	-

	장출혈성대장균 (독소음성)	-	-	-	2	14	11	-
통 영	장염비브리오	-	-	7	122	604	1,129	1,279
	NAG V.cholerae	-	-	-	-	6	26	38
	Shigella	-	-	-	-	-	-	-
	Salmonella	-	-	-	-	-	1	1
	V.vulnificus	-	-	-	-	5	27	28
울 산	V.cholerae	-	-	-	-	-	-	-
	V.vulnificus	-	-	-	-	40	18	80
	V.parahemolyticus	-	-	2	171	584	396	474
	NAG	-	-	-	4	28	7	64
	V.alginolyticus	-	-	-	29	88	51	65
	E.coli(비독성)					80	1	1
포 향	V.cholerae	-	3	-	-	2	-	-
	V.parahaemolyticus	-	11	-	70	151	75	161
	V.vulnificus	-	-	-	-	-	-	25
	Shigella	-	-	-	-	7	1	-
	Salmonella	-	5	-	-	-	-	2
	NAG	-	3	-	-	1	2	9
동 해	장염비브리오	-	12	5	51	113	598	631
	비브리오 패혈증	-	-	-	-	4	23	5
	비독소콜레라(NAG)	-	-	-	1	40	85	46
	살모넬라균	-	-	-	-	1	-	-
	기타	-	-	3	1	54	4	-
제 주	장염비브리오	-	27	-	46	95	195	87
	NAG	-	-	-	-	42	144	211
	Salmonella spp.	-	-	-	-	-	-	-
	V.alginolyticus	-	-	-	-	75	-	-

제3절 국외 검역 현황

1. 검역 업무 관련

가. 관련 법령

(1) 미국

- 공중보건에 관한 권한이 기본적으로 각 주정부에게 주어져 있는 미국의 경우,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도 기본적으로는 각 주정부의 고유한 권한임. 다만 연방 차원에서도 각 주 사이의 전염병을 통제하고, 이민자들의 전염병 및 검역전염병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연방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
- 이와 관련된 미국 연방 차원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3 분류로 나뉘어 짐. 우리나라의 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임
- 기본적으로 주 정부에게 검역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검역 및 전염병 관리에 관한 법은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특이 사항으로는 미국의 경우, 검역전염병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검역대상 전염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신종 전염병 및 재출현 전염병이나 생물테러 전염병과 같은 비상 사태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United States Code

-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42 USC 264-272) : 전염병관리
- Medical Examination of Aliens (42 USC 252) : 외국인 진찰 및 검사
- Aliens with Diseases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 (8 USC 1182)
: 공공위해를 미칠 수 있는 질환에 감염된 외국인(출입국관련)
- Detention of aliens for 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 (8 USC 1222)
: 신체 및 정신과 검사를 위한 외국인 관리(출입국관련)

②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Interstate Quarantine (42 CFR 70) : 미국 내 주간검역

- Foreign Quarantine (42 CFR 71) : 외국 대상 검역
- Medical Examination of Aliens (42 CFR 34)

③ Executive Orders

- Amendment to Executive Order 13295: Quarantinable Communicable Diseases (Released April 4, 2005)¹⁾

(2) 호주

① 개괄

- 미국의 주와 유사한 Commonwealth라는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호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과 같은 영역은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연방 정부의 구속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짐. 그러나 공통적으로 검역은 호주 헌법 s51(ix)에 근거하여,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책임 아래에 이루어짐

○ 호주검역 법체계

- 연방정부, 주, 지역의 법규가 서로 상호연관 : 연방정부의 연방 검역법규와 주의 검역법규가 서로 상호 연관되어 규정됨
- 연방 내에서 전혀 다른 법률적 체계 : 기본적으로 각 주정부가 서로 다른 검역법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상이하고 전혀 다른 법률적 체계 속에서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하나의 체계 내에서도 위계관계 : 검역 체계 내에서도 연방 정부에 의해 파견된 검역당국과 주 정부의 검역당국 간의 위계가 존재하고, 비상공중보건사태 발생시에는 연방 정부 검역 당국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
- 연방내에서도 여러부서에 의해 관장 : 연방 내에서도 검역은 동물 검역, 식물 검역, 인간 검역 및 운송 수단의 검역 별로 각기 농림부, 보건부 등 여러 부서에 의해 관장되고 있음
- State Regulation of Human Quarantine

- 호주의 경우 검역을 관장하는 연방 법규는 크게 다음의 틀 속에서 관리되고 있음.

1) Executive Orders specify the list of diseases for which federal quarantine is authorized, which is required by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On recommendation of the HHS Secretary, the President may amend this list whenever necessary to add new communicable diseases, including emerging diseases that are a threat to public health.

A. 검역법규

- i. 법률 : Quarantine Act 1908 (Act No. 3 of 1908 as amended, 4 October 2007, 2007년 개정)
- ii. 규칙 : Quarantine Regulations 2000 (Statutory Rules 2000 No. 129 as amended)
- iii. 고시 : Qantine Proclamation 1998
- iv. 지침
 - a. AQIS Guidelines for Airline & Aircraft Operators Arriving in Australia : 부록 참조
 - b. Pratique for overseas vessels - fact sheet : 부록 참조
 - c. Reporting an Illness: Important Quarantine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 Ship and Air Crew brochure 부록 참조

B. 기타 관련 법규

- Migration Act 1958 (2008년 9월 개정 시행 예정)
- Plant Quarantine Act (식물검역법)
- Animal Health Act (동물건강법)
- Seeds Amendment Act (종자개량법)
- Weed Management Act (잡초관리법)
- Inland Fisheries Act (내륙수산업법)
- Animal Welfare Act (동물후생법)
-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Act (농산 및 수의관련 화학약품법)
- Gene Technology Act (유전자기술관련법)
- Nature Conservation Act (자연보호법)
- Commonwealth (공공복지)
- Export Control Act (수출관리법)
- Imported Foods Control Act (수입식품관련법)
- the WHO Act 1947(Cth)

❖ 참고: 2000년 당시 호주는 WHO가입국이나 IHR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가, 2008년 현재 IHR 2005 에 서명한 상태임

② 검역법 Quarantine Act 1908

㉠ 호주검역법규의 역사

- 호주는 연방정부에 앞서 각각의 식민지역에서 검역문제를 다루었고, 따라서 연방정부보다 먼저 주 정부 차원에서 검역법을 제정·운영하였음. New South Wales에서는 1832

년, Victoria는 1865년 검역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러한 식민지 법률은 영국의 Quarantine Act 1825에 기초를 두고 있었음.

- 따라서 주 정부의 권한으로 검역의 관리가 이루어지다가, 1918-1919년 대대적인 pandemic influenza(인플루엔자 대유행)를 계기로 연방의회가 1920년 Quarantine Act 1908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검역권한을 확립하였음.

㉠ 검역법의 구성 : 호주 검역법은 크게 7장으로 구분됨

i. 제1장 총칙

- 정의 : 총칙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음
- 우월적 권한 : 공중보건 비상 사태의 발생 시, 주 법에 따른 검역 조치보다 우월한 권한이 연방 검역 당국에게 있음을 천명함.
- 오염지역의 선포 : 호주 내 혹은 해외의 어떤 지역이 전염병 유행 또는 위험 지역이라고 고시(proclaim)하여 선포함(Part IIIs(12))
- 공동 대응 권한 : 공중보건비상 사태의 발생 시, 각 연방 당국 내의 각 부처는 물론 주 정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제시함
- 특별 검역 구역 : 호주 내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청정 지역으로 특별 검역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 운송수단 이외의 시설에 관한 검역 권한 :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조치 뿐 아니라 영해의 해저에 설치된 자원 시설 및 연구 시설 등에 대하여도 검역을 실시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ii. 제2장 행정

- 호주 검역법은 인간 검역과 함께 동식물 검역도 함께 규율하고 있음
- 수상, 장관, 검역국장 및 검역관의 위임 사항을 규정함

iii. 제3장 환경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사항

- 호주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는 환경부 장관의 조언을 구하는 의무를 부과함

iv. 제4장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한 검역

- 검역에 대한 책임 : 검역 조사 및 검역증 부여와 검역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검역 시행 : 검역 시행 명령 및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화물 운송수단 사람에

대한 검역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v. 제5장 동물 및 식물 검역

- 동물과 식물의 검역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vi. 제6장 전염병 매개체의 감시 및 관리

- 전염병 매개체를 감시하고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검역관의 권한을 규정

vii. 제7장 검역 비용

- 기본적으로 검역 조사 및 소독에 드는 비용이 당사자에게 있음을 규정

viii. 집행

- 검역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권한들 - 감시 권한, 수색 및 체포 권한, 영장 발부에 관한 사항, 운송수단 정지 및 수색 권한, 소유물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함
- 검역관에게 경찰관의 권한까지도 부여하고 있음이 특이점임
-

ix. 인플루엔자 발발 시의 자문 위원회

- 신종 인플루엔자 발발 시의 자문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

x. 부칙

- 기타 검역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③ 검역규칙 Quarantine Regulation 2000

○ Regulation의 구성 : 검역 규칙은 크게 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인 규정/검역 수행방법/위반시처벌규정 등으로 구분됨

i. 제1장 총칙

- 총칙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음

ii. 제2장 운송수단 및 시설물

- 검역 질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규정하고 질병을 규정함
- 항공기,선박의 도착 보고에 관한 사항
- 검역증 및 벨래스트 워터와 기타 위생 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

iii. 제3장 호주로 입국하는 사람

- 검역관에게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

- 황열 오염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관한 특별 규정
- iv. 제4장 검역 시행
 - 서면에 의한 검역 명령과 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
 - 사람에 대한 검역 감시에 관한 사항- 시기, 진단, 비용 등
- v. 제5장 화물의 수입
 - 수입 신고에 관한 규정등을 규정하고 있음
- vi. 제6장 보고 의무의 위반
 - 보고 의무 위반 시의 벌칙 규정
 - 기본적으로 호주 검역은 검역 대상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
- vii. 제7장 부칙
 - 동식물 및 화물의 역류 및 체포 등 기타 사항을 규정함

○ 그 밖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a. s22(1) of the Act, reg8 : 선박의 장이 검역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질병의 확인 규정
- b. s35(1A) of the Act, reg14 : 황열에 대한 조치 및 기간, 검역 대상 전염병 중 황열에 대한 주의를 특히 기울이고 모기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 c. reg18, 65 : 선박선장과 항공기기장의 국경에서의 검역관에 대한 탑승자의 건강상태 보고를 보고 하도록 함
- d. reg25-37 : 일반적 위생지침(reg33-37)과 더불어 쥐의 통제와 박멸(regs25-32)과 같은 선박에 대한 위생조치에 관한 규정
- e. reg66 : 항공기 소독에 관한 규정
- h. reg74 : 황열감염지역에서 온 사람의 경우 국제황열예방접종증서가 없으면 호주로의 입국을 불허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벌금 \$200에 처함

④ 검역고시Quarantine Proclamation

㉠ proclamation의 구성

○ 각 Part는 하위의 Division으로 나누어짐.

- Parts 1,2 and 2A-서론 및 일반론
- Parts 3-인간검역
- Parts 4 and 5-인간, 동식물검역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들

- Parts 6-동물검역
- Parts 7-식물검역
- Parts 8 and 10-행정사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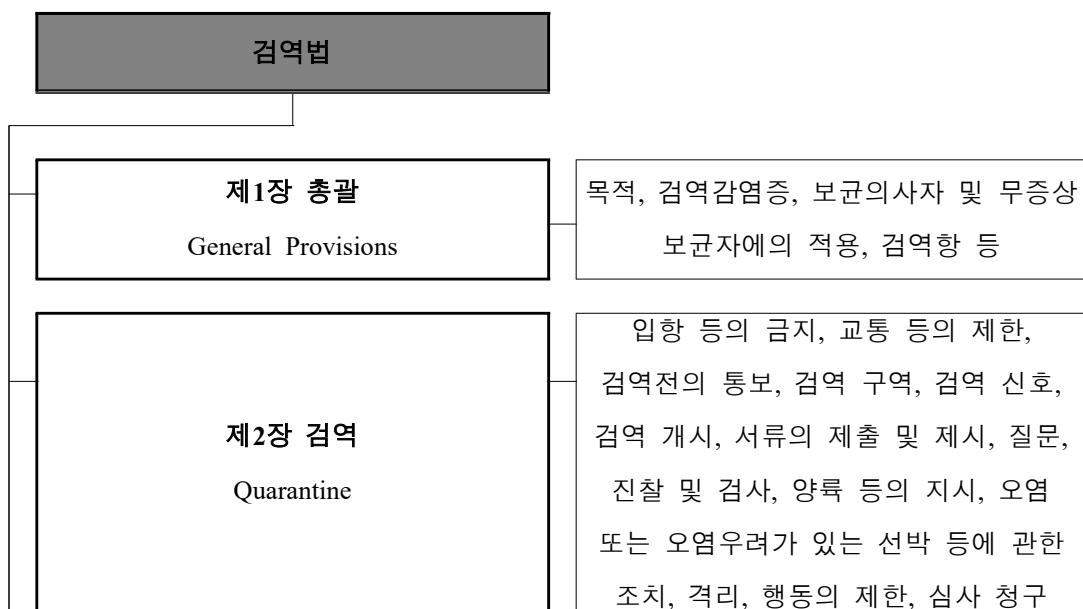
㉠ 다음의 내용을 포함

- 1999년 개정시 the Act(s13(1))에 Governor-General이 고시를 발하는 권한을 포함 (그 근거는 ss12 and 20B)

- 검역질병이 감염되었다고 고시된 지역목록
- 검역질병목록(현재 광견병과 바이러스성출혈열포함됨)
- 인체 혹은 인체일부의 반입을 위한 요구조건
- 질병을 유입시킬수 있는 생물학적 재료나 물건의 반입을 위한 요구조건

(3) 일본

- 일본의 검역 업무에 관한 내용은 일본 검역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하는 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에 일부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검역법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이나 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검역법과 그 구조나 내용이 유사함 일본의 검역법을 계수한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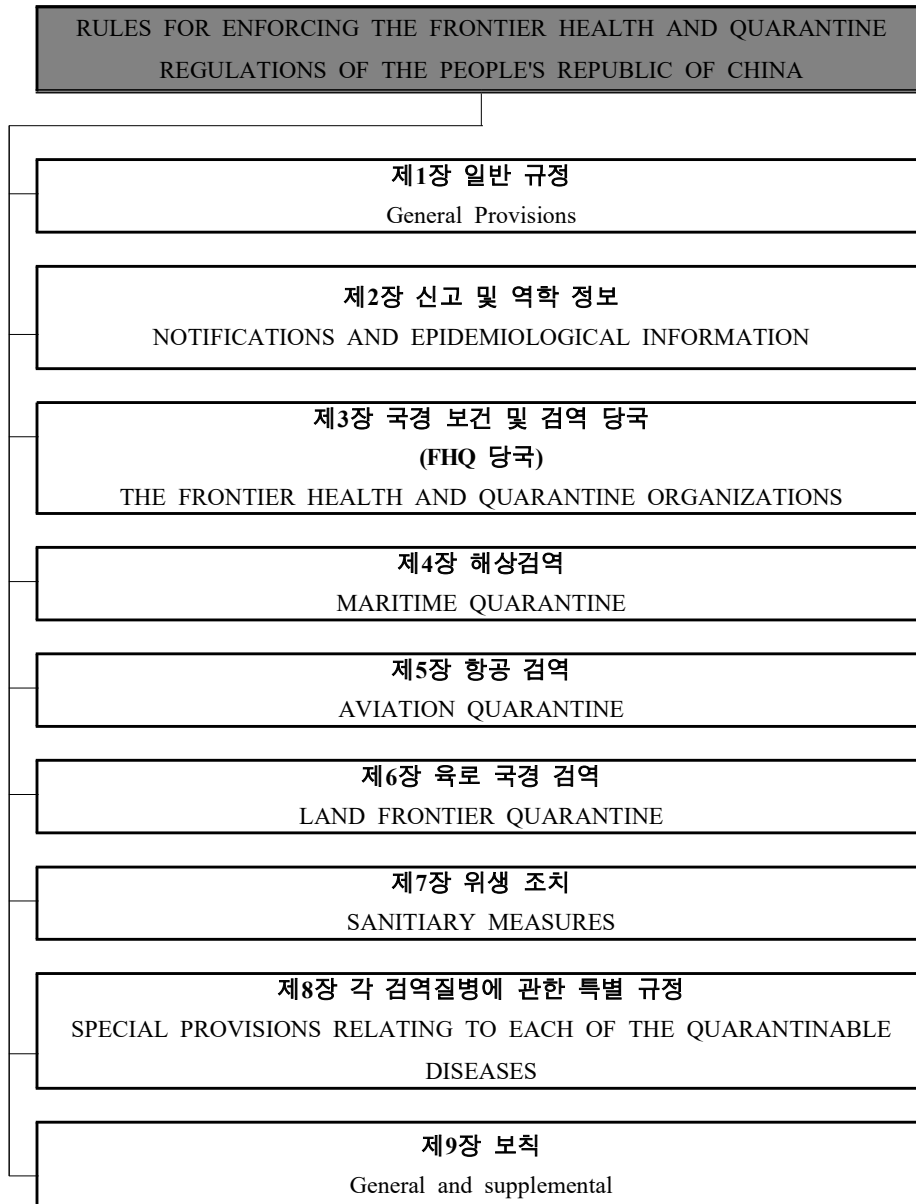
	특례, 검역증의 교부, 임시검역증의 교부, 임시 검역증의 실효, 증명서의 교부, 검역항 이외의 항에서의 검역, 긴급피난
제3장 검역소장이 행하는 그 외의 위생 업무 Other Hygiene Affairs Conducted by Quarantine Station Chief	응급 조치, 신청에 의한 검사 등, 검역 감염증 이외의 감염증에 관한 진찰 등, 도도부현 지사등과의 협력, 검역소장이 행하는 조사 및 위생 조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4장 잡칙 Miscellaneous Provisions	검역관, 출입조사관, 권한의 해석, 제복의 착용 및 신분증의 휴대, 실비의 징수, 비용의 지불 및 부담, 재심사 청구, 검역 감염증 이외의 감염증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신감염증에 관한 조치, 신감염증에 관계되는 격리, 신감염증에 의한 행동의 제한, 사무의 구분, 경과 조치, 벌칙, 성령 위임

(4) 캐나다

- 캐나다의 검역 체계는 Quarantine Act (2005, c. 20)와 그 하위 법령인 Quarantine Regulations (C.R.C., c. 1368)을 근거로 하고 있음

(5) 중국

- 중국의 검역관련사항은 중국인민공화국 국경보건및검역법(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Regulations)과 그 시행규칙(rules)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중국의 검역규칙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일반적인 규정/보건 및 검역 당국의 구성과 권한/운송수단별 검역/위생 조치/각 검역 질병별 검역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구분됨. 각 장별 검역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의 검역법은 비교적 그 제정 역사가 길지 않아 새롭게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운송수단별 검역 및 검역질병별 검역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게 그 체계가 정비되어 있음
- 근대 시기의 일본의 짜깁기식 검역법을 그대로 계수하여, 체계 상의 통일성이나 정합성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검역법규 개정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캐나다

○ Quarantine Act 2005의 목적

- 캐나다의 Quarantine Act 의 설립
- 전염병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임
- 이 법은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사용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캐나다 또는 주(州)의 권리로 국왕에 의하여 구속력이 있음

○ 장관의 권한을 규정함

- 자격이 있는 사람들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들을 분석가, 선별검사관 또는 환경보건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장관은 의료인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인, 또는 이들의 집단들을 검역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주관은 의료인을 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장관은 모든 세관원이 아닌 선별검사관, 검역관 및 환경보건관리자 모두에게 지정증표를 수여하여야 함. 증표를 받은 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가 검사하는 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과 그가 조사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함
- 장관은 캐나다 어느 곳이나 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관세법 제2조제1항의 의미에서의 세관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자는 장관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검역소를 설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장관이 고려하는 모든 지역 또는 시설 및 내부시설을 무료로 제공·유지하여야 함
- 장관은 명령으로 캐나다 어느 장소든지 검역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개정·취소·복위할 수 있음
- 장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장관의 견해로 그 장소를 일시적으로 검역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면, 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장관에게 그 장소를 제공해야 함
- 이 장소는 검역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됨
- 장관은 장관이 장소를 사용한 것에 대해 누구든지에게 보상할 수 있음
- 장관은 이 장소를 점유하기 전에 장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州)의 지방공중보건당국과 협의할 것임
- 장관은 명령으로 캐나다 어느 장소든지 입국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장관은 장관의 견해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명령이 필요하다면, 명령으로 캐나다 어느 장소든지 출국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장관은 이 법 또는 주(州)법의 집행·시행을 존중하면서 캐나다 정부나 주(州)정부의 부서·기관 또는 공중보건당국과 협정을 설립할 수 있음

나. 검역 전염병의 종류

(1) 미국

- 미국은 검역 전염병을 검역법이나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CDC의 이주 및 검역 당국(DGMQ)에게 대통령령²⁾으로 규정된 다음의 질병 중 하나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미국 시민을 포함)를 체포, 구금, 의학적 검사 또는 조건부 석방할 권한을 부여함.

- 콜레라, 의사 콜레라
- 디프테리아
- 전염성 결핵
- 페스트
- 의사 천연두
- 황열
- 라싸, 마버그, 에볼라, 콩고-크리민 및 아직 분리 또는 이름 붙여지지 않은 기타의 의사 바이러스성출혈열
- 사스
- 전국적인 유행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신종 또는 재출현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위의 대상 전염병을 개정할 수 있음.

- 미국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검역 대상 전염병을 지정하는 방식은 신종 전염병의 발발 및 생물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탄력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검역 대상 전염병에 대한 엄격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법에 규정되는 경우보다 어렵다는 단점을 가짐

(2) 호주

- 호주는 Quarantine Act 1908에서 사람에 대한 검역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사람에 대한 검역대상 전염병으로는 페스트, 콜레라, 황열, 발진티푸스, 나병, 광견병, 바이러

2) Amendment to Executive Order 13295: Quarantinable Communicable Diseases (Released April 4, 2005)

스성 출혈열이 있음.

- A. Cholera
- B.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in humans
- C. Plague
- D. Rabies
- E. Smallpox
- F. SARS
- G. Viral haemorrhagic fevers
- H. Yellow fever

○ 호주는 검역질환을 전염병에 속하는 몇몇 질병으로 인식하고, 전염병은 전달될 수 있는 광범위한 질병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 즉 전염병 및 검역전염병은 the National Notifiable Disease Surveillance Scheme 하에서 보고해야 하는 일련의 질병 군을 뜻함

○ 호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 전염병을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음 (HUMAN DISEASES WHICH MAY HAVE LINKS TO ANIMALS)

1. Vector Borne Diseases
 - Yellow fever
 - Japanese encephalitis
 - Dengue
2. Influenza
 - AI
3. Viral Hemorrhagic Fevers
 - Ebola
 - Marburg
 - etc
4. New and Emerging Viruses
 - Menagle virus
 - Hendra virus
 - Lyssavirus
 - Nipah virus

- 호주의 검역 대상 전염병³⁾ : 호주의 농림부에서는 각 전염병을 전파 대상 및 매개체 별로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염병 및 그 매개체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 조류질환
 - Diseases of Birds: Avian influenza
 - Diseases of Birds: Infectious bursal disease
 - Diseases of Birds: Newcastle disease
- 가축질환
 - Diseases of Livestock: Classical swine fever
 - Diseases of Livestock: Foot and mouth disease
 - Diseases of Livestock: Rabies
 - Diseases of Livestock: Surra
- 식물질환
 - Diseases of Plants: Eucalyptus/guava rust
 - Diseases of Plants: Karnal bunt
 - Diseases of Plants: Pine pitch canker
 - Diseases of Plants: Plum pox
- 외래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 Diseases spread by exotic mosquitoes: Dengue
 - Diseases spread by exotic mosquitoes: General
 - Diseases spread by exotic mosquitoes: Malaria
 - Diseases spread by exotic mosquitoes: West Nile fever
 - Diseases spread by exotic mosquitoes: Yellow fever
- 해양해충
 - Marine Pests: Black-striped mussel
- 동물의 해충
 - Pests of Animals: Screw-worm fly
 - Pests of Animals: Varroa mite
- 식물 및 식물제품의 해충
 - Pests of Plants and Plant Products: Asian gypsy moth
 - Pests of Plants and Plant Products: Asian longhorn beetle

3) 자료원: 호주 농림수산부 AQIS 홈페이지(www.daff.gov.au) 기준일: 2006년 5월 26일

- Pests of Plants and Plant Products: Exotic fruit flies
- Pests of Plants and Plant Products: Giant African snail
- Pests of Plants and Plant Products: Khapra beetle

○ 잡초

- Weeds: Erect tar vine
- Weeds: Hawkweed
- Weeds: Spiked pepper
- Weeds: Witchweed

(3) 일본

- 일본에서는 검역법에서 검역대상전염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법령 개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대상 검역대상질환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일본의 검역대상전염병은 아래와 같으며, 2007년 중반, 많은 논란 끝에 호흡기 성 바이러스 질환에 비하여 그 전파속도 및 범위가 제한적인 세균성 전염병인 콜레라를 제외하였음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백 4호)에 규정하는 1 유감염증

- ① 《에보라》출혈열
- ② Crimea · 콩고 출혈열
- ③ 천연두
- ④ 남미 출혈열
- ⑤ 페스트
- ⑥ 《마루부루구》병
- ⑦ 《랏사》열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백 4호)에 규정하는 신형인플루엔자등 감염증

① Pandemic influenza

② Avian influenza(H5N1)

○ 그 외, 국내에 상재하지 않는 감염증 중에 그 병원체가 국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해 정령에 정하는 것

① Dengue fever

② Malaria

(4) 캐나다

○ 캐나다는 캐나다 검역법을 통하여 캐나다의 감염성 물질 또는 생물학적 독성물질로 인해 유발되며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인간의 질병을 요주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특별한 관리 대상 전염병으로서, 특별히 검역전염병으로 명명하고 있지는 않음

① Active pulmonary tuberculosis

② Anthrax

③ hemorrhagic fever

④ Bolivian hemorrhagic fever

⑤ Botulism

⑥ Brazilian hemorrhagic fever

⑦ Cholera

⑧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⑨ Diphtheria

⑩ Ebola hemorrhagic fever

⑪ Lassa fever

⑫ Marburg hemorrhagic fever

⑬ Measles

⑭ Meningococcal meningitis

- ⑮ Meningococemia
- ⑯ Pandemic influenza type A
- ⑰ Plague
- ⑱ Poliomyelitis
- ⑲ Rift Valley fever
- ⑳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 ① Smallpox
- ② Tularemia
- ③ Typhoid fever
- ④ Venezuelan hemorrhagic fever
- ⑤ Yellow fever

(5) 중국

○ 중국은 중국 검역법규를 통하여 검역질환을 규정하고 그 잠복기도 함께 규정함

- (1) 페스트 - 6일
- (2) 콜레라 - 5일
- (3) 황열 - 6일
- (4) 천연두 - 14일
- (5) 발진티푸스 -14일
- (6) 회귀열 - 8일

(6) 고찰

○ 호주, 중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여전히 콜레라를 검역대상질환으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국제보건규칙2005와 마찬가지로 콜레라를 주요 전염병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이는 전파 속도가 호흡기성 질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리고, 대중에 대한 전파 가

능성이 적으며, 또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콜레라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선진국에서의 흐름으로 보임

다. 검역조사방법 및 절차

(1) 미국

○ 미국 당국이 규정하는 검역시스템 정의

- 미국의 모든 공항과 전염병 발생지역에서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탐지, 관리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및 글로벌 보건당국의 포괄적인 협력시스템
- 공중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협력시스템임.

○ 미국 당국이 규정하는 검역시스템 정의에 따르면, 검역은 검역 당국이 독자적으로 전염병을 통제하는 체계가 아닌, 기본적으로 협력시스템임. 따라서 미국의 검역 당국의 주요 기능은 연방 정부의 각 부처 (세관 및 이민국 등)나 지역 당국 간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 주로 타 기관의 교육 및 검역 홍보에 집중하고 있음

○ 입국자에 대한 조사 (Inspection of Arriving Persons)

- 검역당국은 미국국토안전부(DHS-법무부, 해안경비대, 세관, 이민국, 국경순찰대, 비밀경호국, 연방비상계획처 등 편입) 등의 인력이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을 담당하여, 다음의 증상을 지닌 여행객을 환자로 추정하고 색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킴

- (1) 상기된 안색, 오한 또는 계속되는 설명할 수 없는 발한이 눈에 보여 발견될 수 있는 열
- (2) 새로운, 설명할 수 없는 발진
- (3) 비정상적으로 상기되거나 창백한 안색
- (4) 황달기(비정상적으로 피부나 눈이 노란 것)
- (5) 심한 기침 또는 새로운 호흡 곤란 징후와 같은 호흡기 문제
- (6) 설사(보고에 의해서)
- (7) 눈, 코, 잇몸, 귀 또는 출혈이 계속되고 지혈되지않는 기타 상처에서의 출혈
- (8) 설명할 수 없는 기운없음 또는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에 해당할 때

○ 질병 의사자에 대한 감시 및 격리

- 다음의 경우에 DHS 공무원은 환자를 구류하고 증상 및 여행일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해야만 함. 검역소 직원이 있는 통관항에서는 검역소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고, 검역 공중보건공무원이 조사하게 됨

- 38° C 이상의 체온과 동반하여 다음의 사항을 한 가지 이상 동반한 때 : 발진, 황달, 선천적 종기 또는 2일 이상 지속되는 열
- 정상적인 활동 또는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설사 (24시간 내에 3번 이상 또는 정상보다 더 많은 경우)

- 검역당국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환자를 석방 또는 조건부 석방하거나 의사로 하여금 의학적 검사를 하고 적절한 처치를 취하게 할 수 있음

○ 방문지 확인(Check Itineraries)

- 검역당국은 외국에서 전염병 발생한 경우, 사람들이 아프건 아프지 않건 도착한 사람들의 방문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 전염병의 적절한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방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일반적인 건강 안내(Health Alert Notice)

- Health Alert Notice (CDC 75.8 서식)를 통하여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에서 도착하는 여행객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함.

○ 외국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Medical Inspection of Arriving Aliens)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검역당국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불허의 근거 : 이민 및 국적 법 212(a)조임
- 공정보건적 위험도가 큰 전염병을 가졌다고 판단된 외국인

연성하감
성병
사타구니의 육아종
HIV 감염
전염병 나병

성병성 임파 육아종

매독 (전염기)

결핵 (양성, 전염성)

- .이민 허가 또는 이민자로서의 상태 조정을 요청하는 자
- .최초 다음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 : 유행성이하선염, 유행, 풍진, 소아마비,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B형 간염, 및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가 권고한 기타 예방접종
- .그 외국인이나 타인의 재산, 안전 및 복지에 위협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동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진 자
- . 약물 남용 또는 중독된 자.

○ 공중보건상 중요한 수입되는 동물에 대한 조치

- 동물 : CDC 규칙은 개, 고양이, 거북이, 원숭이, 및 기타 동물과 인간 질병 을 야기 할 수 있는 동물 물품의 수입을 관찰함.
- 일반적인 요건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동물이 검역직원의 시각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는 것임. 전염병의 명백한 징후가 없는 동물만이 허가받을 수 있음. 질병 징후(예를 들어, 쇄약, 피부 상처, 신경계 교란, 황달 또는 설사)를 보이는 동물은 소유자의 비용으로 면허있는 수의사의 검사, 실험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함.

○ 격리 및 검역 Isolation and quarantine

- 질병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공중보건조치
- 미국 공중보건당국은 격리를 전염병 환자를 건강한 사람들과 분리하는 것이며 특정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함. 예를 들어, 결핵 환자의 병동 격리 등
- 미국 공중보건당국은 검역을 전염병에 노출된 증상없는 자가 전염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건강한 자와 분리하는 것으로 정의함. 이들은 질병이 노출되었으나 그 사실을 모르던지, 질병에 걸렸으나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 고찰

- 미국의 검역조사 및 절차는 기본적으로 주 당국의 권한이기 때문에, CDC의 검역당

국은 주로 각 부처 및 지방 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전염병환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족한 검역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겠으나, 세관이나 이민국 등 관계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이들 인력을 교육하여 비상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호주

○ 호주의 인간 검역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AQIS는 호주정부의 농림수산부 소속이며, 호주의 동물, 식물 및 인간 보건 상태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AQIS는 외국의 페스트 및 질병으로 인한 농업과 환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임.

○ AQIS는 복지부를 대신하여 승객에 대한 인간대상 검역전염병의 **screening**, 항공기의 살충 및 매개체의 **monitoring**과 관련된 감시를 포함하는 인간 검역을 행함.

○ AQIS의 항공보고프로그램은 입항하는 모든 국제항공기, 항공기의 쓰레기(배설물), 화물, 승객 및 승객이 소지한 수하물에 대한 검역 허가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전도착보고

- 검역법 1908의 27B조에 의하여 항공기의 기장은 착륙이 조작 상 가능하기 전에 열거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 최소 30분이나 AQIS의 공무원이 항공기의 장에게 알려 준 때에 보고해야 함.
- 기장은 라디오나 전자통신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1. 비정기 비행 : 항공기 identity(이름, 등록번호 등) , 도착항, 도착 예정 시간
2.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비행 중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아파하는 것이 발견된 위치
3.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비행 중 기술된 증상을 보인 위치
4. 살아있는 동물이 항공기에 탑승했던 위치
5. 동물이 비행 중 항공기 내에서 죽은 위치
6. AQIS의 요구사항에 따라 항공기 내의 살충이 이뤄지지 않은 위치

- 위에서 열거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장은 도착 이전에 Ground Handling Agent나 관련 공항의 Air Controller에게 AQIS 접촉하도록 해야 함.

- 검역법 1908은 기재된 증상이 있거나 규정된 또는 전염 질병이 발발한 경우, 검역을 하지 않은 배의 선장에게 AQIS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요구함.
- 이 의무는 선장이 검역전염병이 발생했다거나 검역대상 페스트가 기내에서 발생했다고 믿거나 의심 또는 믿거나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적용된다. (22조)

○ 검역증

- 호주에 들어온 항공기는 현재 자동 검역증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항공기가 도착하면 검역증이 자동적으로 부여됨을 의미함.
- 그러나 다음의 상황에서는 자동검역증이 적용되어서는 안됨

1. 항공기의 장이 이 문서의 5조에 열거된 정보를 AQIS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이것은 자동검역증 비정기 비행에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함.
2. 항공기의 장이 AQIS 공무원에게 22조에 따라 규정된 증상의 존재 또는 규정된 또는 전염 질병의 발생을 알렸을 경우
3. 인간 검역의 director가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검역증이 수여되서는 안된다고 지시를 내렸을 경우
4. AQIS의 공무원이 항공기 도착 전,후 항공기의 장에게 항공기가 감염되지 않았다는 만족을 할 수 없다고 권고했을 경우

- AQIS 공무원은 검역증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모든 항공기를 조사할 것임.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AQIS가 검역증을 주거나 AQIS 공무원의 허가 없이는 기내에 머물러야 함. 항공기의 장이 검역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검역법 1908년의 위반임.

○ 항공검역의 경우, 운송수단 (Regular Passenger Transport aircraft)의 장이 특별한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한 검역증이 자동적으로 승인됨

- 검역소에 보고해야 할 특별한 상황
 - 운항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 운항 중 승객이나 승무원이 사전에 언급된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살아있는 동물이 있는 경우
 - 운항 중 동물이 사망한 경우
 - 운송수단에 대한 소독계획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 항구 프로그램(Seaports Program)은 호주에 도착하는 승객, 승무원, 선박 및 모든 국

제선의 밸러스트 물과 관련된 생물안전위험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함.

○ 또한 검역조사국(AQIS)은 항구의 주변 환경에 감시를 수행함.

○ 호주 정부는 검역조사국(AQIS)을 통해서 순항선에 의해 야기된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개입의 건고한 수준과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처리된다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Sea Passenger Intervention Review 2004-05를 발표하였음

○ 도착 전 검역 요건들

- 공해(公海)로부터 호주에 도착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을 위한 도착 전 보고 검역(QPAR)을 제출해야 함. 또한 탑승객들은 Additional Quarantine Pre-arrival Report for Cruise Liners and Navy Vessels을 제출해야 한다

○ 사람 건강 문제

- DoHA는 호주 영해에서 그들의 정박 동안 모든 승객 및 승무원에게 제공되는 여행 문서(Attachment C) Been Away? Feel OK?의 형식으로 사람 건강 보고를 요구함.
- 이 브로서는 승객 및 승무원들이 그들의 여행에 뒤따르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 취해져야하는 예방책을 포함하여 중요한 사람 건강 정보를 제공함.
- DoHA,는 조인 팜플렛, Reporting an Illness --Important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 Ship and Air Crew (Attachment C4).을 개발했음

○ 도착 시 검역 조사

- 선박 도착 시에, AQIS는 선박의 상관 승무원을 만나, 검역필증 감시의 일부로서 on-board arrival briefing(승선검역)을 할 것임. on-board arrival briefing은 보통은 약 30분이 소요되고, 승객들은 선박이 AQIS에 의해 입항허가가 날 때까지 상륙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함.
- 승선한 검역관에게 on-board arrival briefing 하기 위해 참석해야하는 승무원은 선주(船主), (혹은 대리인), 승무원 장 및 선박의 의료진을 포함함.

4) <http://www.health.gov.au/internet/wcms/publishing.nsf/Content/Quarantine-1>

- on-board arrival briefing 동안, 승선한 검역관은 선박의 검역상태를 평가할 것이다, 사람 건강에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승객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승무원이 조정을 할 것임.

- 감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함.

□.□갤러리, 식료품 저장실 및 식품 저장고

□.□정수 시설

□.□벨러스트 물 관리 일지(가능할 경우)

□.□기타 다른 관련 문서 및 영역

-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은(상륙하거나 일일관광 모두) 선박이 출발할 때 검역 입국 허가 대상이 됨

- 선박에 남아있는 승객과 승무원(그리고 그들의 수하물)은 엑스레이, 탐지견(犬) 팀 및 감시를 포함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스크린될 수 있음.

○ 고찰

- 호주는 검역 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와 선박 등 운송수단별로 **schedule**을 마련하여 그 프로그램을 항공기와 선박의 장 및 관련자에게 참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역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있음

- 또한 유증상자의 신고를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신고에 의하도록 하여, 질문서 징구 등의 과도한 업무는 과감히 생략하는 대신, 안내 방송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팜플렛을 개발하여, 신고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

- 대형 여객선 등의 입출항이 많은 호주는 이들 선박의 검역 조사를 위하여 승선하여 약 30분간 선박의 장, 선내 의사 등 관련 당사자들과 간단한 보고 회의를 통해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 사항임

(3) 일본

① 검역전의 통보

○ 검역을 받으려고 하는 선박 등의 장은 해당 선박이 검역항 또는 검역비행장에 접근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검역항 또는 검역비행장에 위치한 검역소(검역 지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 이하 동일)의 장에게 검역 전염병 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 및 기타 후생노동부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② 질문

- 검역소장은 승선자, 조종사, 선박 등이 항구에 들어온 후에 승선한 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고 검역관에게 이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음.

③ 진찰 및 검사

- 검역소장은 전 조에서 규정한 사람 및 선박에 대하여 병원체 유무에 관한 검사를 하고 검역관에게 이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음.

④ 오염 또는 오염우려가 있는 선박 등에 관한 조치

-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오염지역에 있는 항구에서 발항 또는 기항하였거나, 전염병환자 또는 그 사체가 있는 선박, 선내에 페스트 균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 쥐족이 발견된 선박, 또는 검역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선박 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아래에 열거된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i) 전염병환자를 격리하거나 검역관에게 그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

(ii)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검역관에게 그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 (동 조에 규정된 특정 전염병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및 그러한 전염병 병원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iii)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고, 또는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장소를 소독하거나 검역관에게 그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 또는 병원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폐기 명령을 내리는 것

(iv)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사체(죽은 태아 포함)의 화장

(v)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장소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고 그러한 물건의 이동을 금지하는 것

(vi) 검역관 또는 기타 자격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쥐족 또는 총류를 구제하게 하는 것

(vii)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검역관에게 이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

⑤ 검역소장이 행하는 그 외의 위생 업무

응급 조치

취잡이/구제

신청에 의한 검사 등

검역 감염증 이외의 감염증에 관한 진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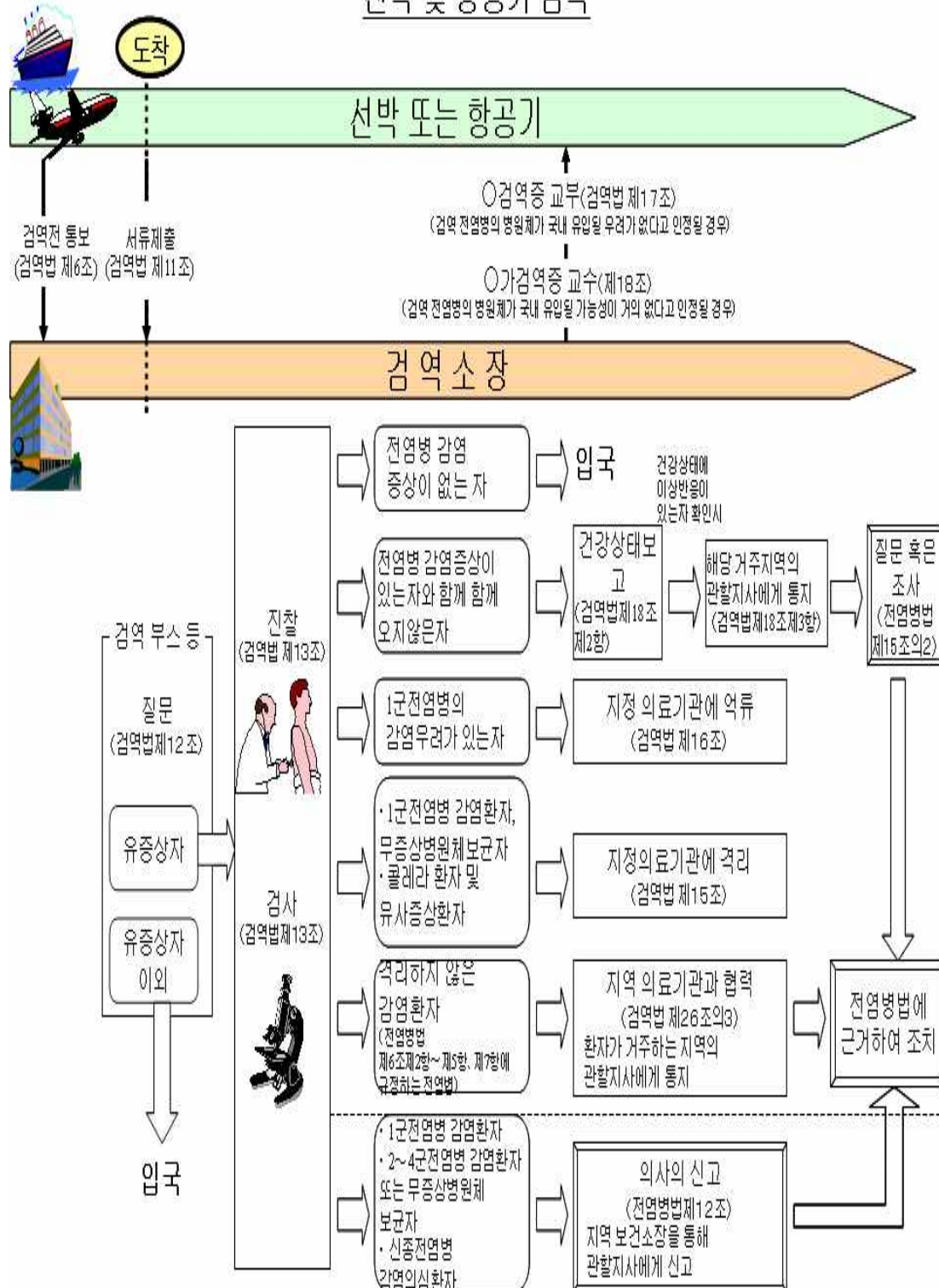
검역소장이 행하는 조사 및 위생 조치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증 및 정령에 규정된 이에 준하는 기타 감염증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충류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고 검역항 또는 검역비행장의 위생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검역항 또는 검역 비행장마다 정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한하여, 해당 구역 내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의 식품, 음료수, 오물, 더러운 물, 쥐족 및 충류의 조사를 하거나, 해당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건축물 및 그 외의 장소안의 해수, 오물, 더러운 물, 쥐족 및 충류의 조사를 하고 검역관에게 이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음.

⑥ 고찰

- 우리나라는 일본의 검역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검역체계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검역 조사 방법 및 절차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각 검역소에서 세균성 전염병 이외에 호흡기성 바이러스 질환을 진단해 낼 수 있는 최신 장비를 구비하고, 검역소 내에 격리 병상 및 격리 이동 수단이 확보되어 있어, 검역 조사 체계가 발전해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검역소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의사 인력이 비치되어 있어, 이 또한 유증상자 감별 및 전염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오염지역으로 중국이 선정되어 있기는 하나, 검역질문지의 징구 및 오염지역 관리에 대하여는 황열 오염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운송수단 및 승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따라서 오염지역 중 전염병 별로 검역 조사를 하는 방법도 우리나라의 오염지역 관리 기준의 마련에 있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임

선박 및 항공기 검역



라. 검역업무 실적

(1) 미국

- 미국의 검역소는 각 검역소가 관할 내에 있는 모든 공항 및 항구와 육상 입국 지점의 입출입에 대한 검역 업무를 담당하게 됨. 따라서 하나의 검역소에서 파견을 보내어 각 국제공항 및 국제 항구를 관할할 수 도 있고, 검역관이 없는 항도 많이 있음
- 이는 현지와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검역체계와는 매우 상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주로 교육 및 협력 업무에 주력하는 미국 검역당국의 특성에서만 도출될 수 있는 특징일 것임
-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입항·취항 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교역 및 교류량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수의 검역량을 소화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임

검역소	관할	수 치		
Atlanta	all ports in Georg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and Tennessee.	Hartsfield-Jackson Atlanta	3,782,527 승객	466 항공기 (주)
		Charlotte Douglas	997,339 승객	130 항공기 (주)
		총 항공기 이용 승객	4,867,941	
Chicago	all ports in Illinois, Indiana, Iowa, and Wisconsin, and the preclearance port of Toronto, Canada.	O'Hare	5,055,987 승객	620 항공기 (주)
		Midway	87,788 승객	19 항공기 (주)
		총 항공기 이용 승객	5,143,075	
Dallas/Ft. Worth (8/2006-7/2007)	all ports in Arkansas, Kansas,	DFW	2,530,904 명	195 항공기 (주)

	Missouri, and Oklahoma in addition to North Central Texas.	Lambert St. Louis	125,102 승객		
		Kansas City	38,032 승객		
Detroit (2006)	all ports in Michigan, Ohio, and Kentucky.	Detroit	1,480,000	182	
		Cincinnati/Northern Kentucky	352,993	2,171	
		총 항공기 입국자	1,832,993		
		도보(2003)	트럭	버스	자가
		Detroit	1,634,319	36,177	10,965,872
		Port Huron	928,000	3,866	3,821,908
		Sault Ste. Marie	63,368	15,760	1,716,087
		총	19,106,220		
El Paso	New Mexico and Southwest Texas, which corresponds to Texas Health Districts 8–11. This jurisdiction also includes the United States-Mexico border along both states and the seaports of Port Isabel and Corpus Christi.	Port of Entry	보행자	운송수단	기타
		El Paso	37 million	15.8 million	70,000 이민자
		Laredo	4.2 million	6 million	1.5 million 트럭
		Brownsville	2.9 million	6.9 million	
Houston	all ports in East Texas (Health	George Bush 국제공항	3 million 승객	952 척	
		Houston 국제항	6,300 척	150,000척 (바지선)	

	Districts 4, 5, 6, and 7) and Louisiana.	Galveston 국제항 New Orleans, Baton Rouge, and South Louisiana 통합항	617,000 승객	255 크루즈 선
			250 million톤 화물	
New York	all ports in New York, Connecticut, and Vermont. This jurisdiction also includes the preclearance ports of Montreal and Bermuda, as well as Shannon and Dublin, Ireland.	New York 항	600 크루즈 선	950,000 승객
		JFK 국내	230,003,499명	241,809 항공기
		국제공항 국제	19, 625,941명	126,964 항공기
		LaGuardia 국내	24,496,831명	
			국제	1,313,621명
		총 승객	275,808,665	
San Diego	all ports in Arizona, San Diego and Imperial Counties of Southern California, and the U.S.-Mexico border crossings in California and Arizona.	San Diego 국제공항	148,000 명	36 항공기(주)
		Phoenix Sky Harbor국제공항	866,000명	92(주)
		총 공항 입국	1,014,000	
		San Diego 크루즈 항	370,000명 예상	3-4(주)
		총 도보 입국자 (2006)	114,383,286	
San Juan (2007)	all ports in Puerto Rico and	공항/항	승객	운송수단 수
		Luis Muñoz Mariín	1,183,593	38,568

	the U. S. Virgin Islands (St. Thomas, St. Croix, and St. John).	국제공항		
		St. Thomas 국제공항	729,486	18,644
		San Juan 항	1,164,779	2,620
		St. Thomas	1,653,117	4,834
Seattle (2006)	all ports in Washington, Oregon, Idaho, and Montana; and preclearance	Seattle-Tacoma 국제공항	2,478,825 명	
		Portland 국제공항	263,327 명	
		총 승객	2,742,152 명	
		Washington 항	2,926 화물선	
	ports in Canada: Calgary, Vancouver, Victoria, Edmonton	Tacoma 항	196 cruises	1,150 cargo ship
		총 승객	735,000 명	
		Idaho 도보	458,647 명	
		Montana	1,981,378 명	
		Washington	11,929,200 명	
		총 도보인원	14,064,025 명	
Washington, DC (2006)	all port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Maryland, Virginia, and West Virginia.	Washington-Dulles 국제공항	4.8 million 명 (2006)	6(매일)

(2)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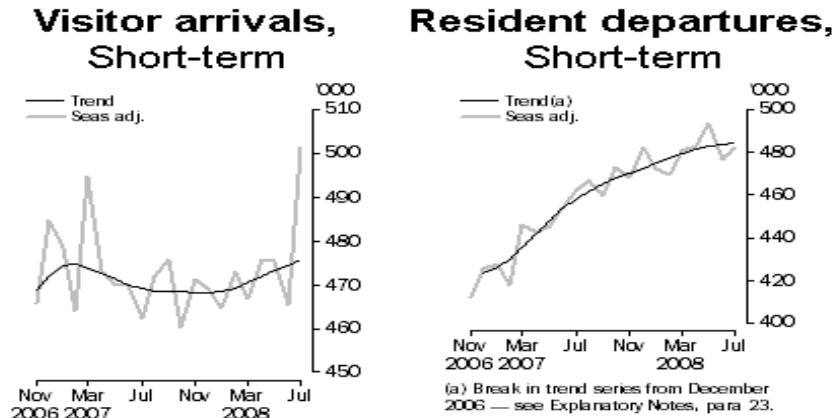
① 입출국 관련 통계⁵⁾

- 단기 방문객 도착 수 : 2008년 8월 중 호주에 입국한 단기 방문객은 475,700건 임
- 단기 거주자 출발 수 : 2008년 7월 중 호주에서 출국하는 거주자는 484,500건 임
- 이는 우리나라 연간 총 검역 인원 수인 289,047명의 2배에 달하는 방문객이 월별로 입국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검역 대상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 줌.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고려할 때, 모든 검역 대상들을 조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5)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mf/3401.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때문에 자발적인 검역 신고 및 위생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임

- 우리나라도 국제 교역의 증가로 인한 업무 과다로 버거워하고 있는 만큼, 검역대상자의 자발적인 신고 및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② 검역질환 사례 보고

- 호주의 경우 검역질환보고사례가 아주 적음. 호주 검역 규칙 2000의 개정 작업을 위한 2000년 quarantine regulation 개정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검역대상전염병의 보고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1991-1999까지 해외여행 중 감염되어 유입된 콜레라 32 건
2. 1987-1990년 사이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광견병 2 건
3. 페스트 보고 없음
4. 황열이나 바이러스성출혈열 보고 없음
 - 아프리카 경유하여 질환자로 의심되었던 사람이 1993년 황열추정환자로 보고되었으나 검역질환이 아닌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로 밝혀짐.
5. 황열대상국가에 있었거나 황열예방접종미비로 1998년 1605명, 1999년 1605명 검역 감시

(3) 일본

- 연도별 공항 및 항만 검역 현황

· 일본의 검역인원 역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엄청난 수를 기록하고 있음. 다만 연도별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다고 보다는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음

연 도	공 항 검 역		항 만 검 역	
	항공기(기)	검역인원(명)	선박(척)	검역인원(명)
2004	151,408	28,811,692	76,068	1,998,333
2005	161,162	30,145,037	76,342	2,046,333

○ 간사이 공항 검역소 항공기 검역 실태

- 간사이 공항 검역소의 항공기 검역 수는 거의 3년동안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검역인원의 증가율도 뚜렷하지 않지만, 절대량이 엄청난 것으로 보임.

	검역기 수	검역인원	증상신고자수	이질신고자수	검역실시자수
1994 (9月 ~)	5,927	1,305,444	2,430	2,256	1,048
1995	22,026	4,547,447	10,617	10,018	4,273
1996	26,383	5,648,058	10,554	9,909	3,975
1997	30,409	6,158,965	14,472	12,919	3,523
1998	31,769	6,100,325	27,157	14,827	3,136
1999	31,222	6,311,192	28,695	16,141	3,798
2000	33,832	6,762,096	28,843	16,476	6,036
2001	33,761	6,245,547	25,464	15,598	6,891
2002	30,379	5,614,123	22,324	13,305	5,080
2003	28,809	4,610,310	17,115	9,501	3,168
2004	34,057	5,798,674	24,627	13,919	6,211
2005	34,928	6,016,721	28,620	15,177	7,200
2006	35,124	6,014,586	28,479	15,264	7,727

○ 나리타공항검역소 검역실적

- 나리타공항검역소의 검역기수 및 검역인원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계속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3년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年次	검역기수	검역인원	증상신고자수	이질신고자수	검역실시자수
1992	56,116	12,272,333	24,645	17,603	8,272
1993	55,999	12,259,899	42,331	26,903	7,907
1994	56,602	13,063,054	53,037	34,751	8,416
1995	56,970	13,383,071	61,033	40,468	9,852

1996		57,751	14,021,152	62,405	40,733	8,135
1997		58,140	14,280,327	63,980	42,602	9,122
1998		59,234	13,640,120	67,071	37,355	6,017
1999		62,254	14,583,511	61,747	34,791	2,322
2000		62,796	15,508,950	59,947	34,994	1,914
2001		61,622	14,452,784	57,529	34,535	2,458
2002		75,268	16,526,136	52,491	31,448	3,900
2003		77,618	15,316,594	46,493	25,665	3,323
2004		84,296	17,733,907	61,073	37,004	4,441
2005		85,641	17,929,330	74,560	42,539	4,937
2006		86,170	18,077,096	72,575	40,887	3,107
2007		88,222	18,262,058	47,975	26,788	1,181
2008		21,745	4,484,694	6,608	3,654	3
2008	1月	7,308	1,500,824	1,956	1,025	3
	2月	6,943	1,388,894	1,979	1,012	0
	3月	7,494	1,594,976	2,673	1,617	0

마. 특이 사항

(1) 미국

- 연방 차원의 검역은 거의 실시되지 않음. 대규모의 격리 및 검역은 1918 - 1919.년에 스페인 인플루엔자가 유행한 동안에 마지막으로 실시되었었음. 최근에는 단지 몇몇 건의 공중보건사건을 통해서 연방 차원의 격리 또는 검역 명령이 발동하였었음. 1963년, 미국에 도착한 승객이 천연두 의사 케이스로 연방 검역이 발동하였었음. 2007

년, 약제 내성 결핵 여행객이 격리되었었음. 2003년 SARS 발생 시기에는, 격리 또는 검역 명령이 발동하지 않았음. 그러나 CDC 활발한 감시, 승객의 검사, 여행 보건 경고 통지를 수행하였음.

(2) 호주

○ 검역시행규칙개정을 위한 위원회 (Human Quarantine Legislation Review Steering Committee) 운용

1. Quarantine Act 1908에서의 인간검역조항과 그 관련 하위법령 및 고시의 검토와 갱신(updating)을 다룸.
2. 이 위원회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a) 외래의 전염성 질환의 병인이 되는 매개체가 호주내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목표를 확정
 - (b) 현재와 미래의 인간검역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일하고, 지속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안(achieve)
 - (c) 가능한 경우 IHR, 위생 및 식물위생기준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과 같은 국제 지침에 합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3. Steering Committee는 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수행함.
 - (a)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다음을 확인함
 - 현재의 조항
 - 애매한 조항
 - 불일치 조항(irregularities)
 - 조항의 준수, 시행, 실시 혹은 강제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
 - (b) 인간검역활동 관리의 전반적인 효율을 개선하기위한 과정(mechanism) 검토
 - (c)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것과 적절한 조사 및 형평성을 유지하며, 법률에 따른 이의 및 검토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간검역조항을 갱신
 - (d) the Competition Initiated Review of the Human Quarantine Legislation (Phase I review)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
 - (e) 인간검역활동과 관련한 다른 나라들의 법률정비 검토(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를 포함)
 - (f) 개정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식물 및 동물 검역에 대한 영향
4. 이 Review의 결과를 달성하기위한 실시방안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함. 이러한 검토(review)과정의 일부로서 제시된 페이지나 보고서는 the Government Regulatory Impact Statement Guideline과 같은 Government guidelines에 중

요한 역할을 함.

6. 이러한 검토에 착수과정에서 the Steering Committee는 중요한 국내(nationally) 이해집단 및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과 상의함..
7. the Steering Committee가 2000년 6월 3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HAC장관에게 보고하고 사본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냄.

○ 고찰

-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각 부처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임. 따라서 호주와 같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일본

- ① 일본은 각 검역소의 특성에 따라 과단위 조직 및 출장소를 설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증가하는 검역소요에 대처하고 있음

- 나리타, 칸사이 등 여행객 수요가 많은 검역소에 검역과와 위생과를 구분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각 전문 영역을 특화하고 있음
- 해항의 경우 여행객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검역위생과를 설치 운영하여 검역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운영을 하고 있음
- 출장소의 경우 검역위생과의 업무를 검역에만 한정하여 실시
- 출장소의 경우 총무과와 검역위생과는 필수적으로 구성·운영됨

- ② 검사과 및 검역식품검사센터 운영을 통한 검사관리체계의 효율화

- 전국검역소에 검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부검역소에만 검사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고도의 검사가 필요한 사항과 검역과가 설치되지 않은 검역소와 출장소의 미생물검사를 총괄하기 위한 검역식품검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함

❖ 고찰

- 각 검역소 별로 검역 업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큰 검역소를 중심으로 관할권을 구분하여,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항에는 출장소나 지소를 운영하여 검역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상대적으로 인력이 보강된 관할 검역소에는 최신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진단 검사 센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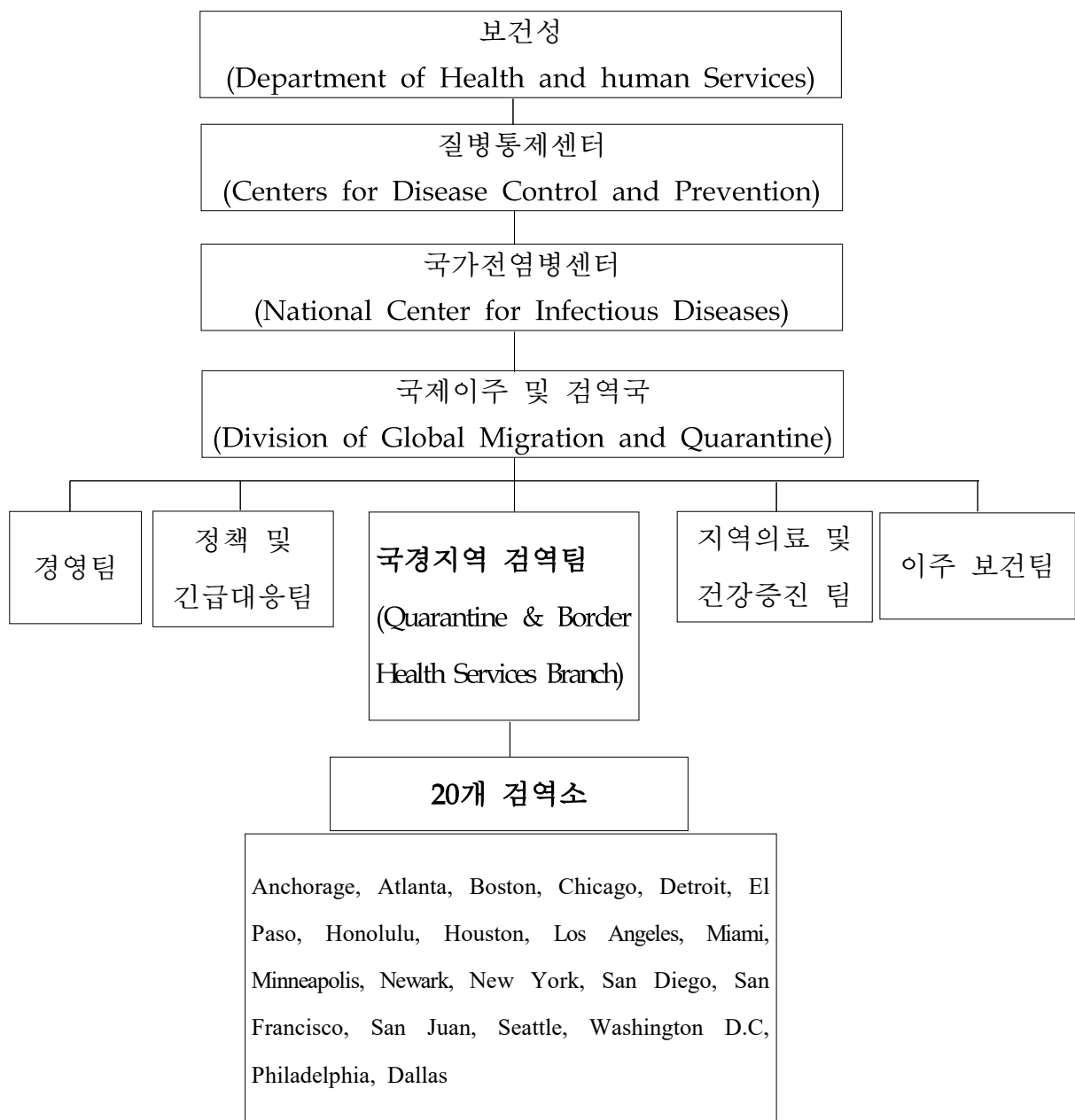
2. 검역소 조직 관련

가. 직제(조직도)

(1) 미국

□ 검역조직도

검역관련 조직도(18개 공항 및 2개 국경검역소)



□ 검역조직 현황

- 미국 보건성 장관은 미국 내의 전염병 유입,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 있음.
- 위임된 권한에 따라 CDC의 이주 및 검역 당국(DGMQ)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임을 수행함. 통관항의 검역소 운영, 미국으로 향하는 사람의 의학적 검사를 위한 기준 정립 및 주간 또는 외국 검역 규칙-사람, 동물 및 화물의 국제적 주간(국내적) 이동을 관할-의 시행함.
-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산하 국가전염병센터(NCID)의 국제이주 및 검역국(DGMQ)에서 총괄적인 검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 DGMQ는 우리나라의 검역지원팀과 같이 검역소를 총괄관리
- 국제여행 및 검역국(DGMQ)의 검역·국경지역보건팀에서 검역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미국 전지역에 걸쳐 20개의 검역소가 있음.
- “CDC 공중보건검역소”로 알려진 CDC 검역소는 주요 국제 공항에 위치하며, 각 검역소는 할당된 지리적 구역에 있는 항만에 대한 책임을 가짐.

① CDC의 역할

- 42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s 70 및 71에 의하여, CDC 미국에 도착하는 여행객 및 주 간을 여행하는 자가 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될 경우 그 자를 구류하고 진료하고 석방할 권한을 지님
- 그 권한의 일부로서, CDC는 일상적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도착하는 자 및 US 통관항에 도착하는 승객 및 승무원의 전염병 신호 또는 증상을 감시함
- 항공기 또는 선박의 장이 아픈 승객이나 승무원에 대해 알렸을 경우에는, CDC는 선내의 질병의 원인이 전염병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승객 및 승무원을 구류할 수 있음.

② 연방 정부는 다음을 수행함

- 미국으로 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 검역 또는 격리가 미 통관항에서 사용될 수 있음
- 주 사이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연방 검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 또는 지역 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주 및 지역 당국을 도울 수 있음.

③ 주 및 지역 당국(State, local, and tribal authorities)의 역할

- 주 경계 내의 격리 및 검역 시행
- 연방, 주, 지역 보건 당국은 언제나 동시에 분리되었지만, 공존하는 법적 검역 권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충돌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함.

④ 검역소

- 해외여행객들이 도착하는 공항, 항구 및 육로접경지대에 검역소는 총 20개의 검역소로 이루어져 있음. 각각의 검역소에는 의료담당, 보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환자가 국내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전염병의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함.

⑤ 검역소의 변화

- 1793년 황열 발생 후 1799년 미국 최초의 검역소와 병원이 설립
- 1944년 민간위생서비스규정이 연방정부의 검역당국을 형성
- 1967년 CDC가 연방검역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1970년 이후 전염병의 중요성이 감소됨
 - 55개에 달하던 검역소를 8개로 감축
- 9.11테러와 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세계적 질병확산에 관심 고조
 - 2004년 ~ 2007년 검역소를 8개에서 20개로 확대



⑥ DCMQ의 검역체계(System) 구축강화 추진

- 운송수단, 생물테러, 동물 및 화물을 통한 전염병의 유입 위협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21세기에 필요한 검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CDC의 역할 및 필요성이 증대

· 2003년 SARS의 출현으로 인한 대응과 출현가능한 전염병에 대한 대응계획으로 DGMQ는 U.S국경을 통한 전염병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리더쉽을 마련

(2) 호주

○ 일반적인 전염병관리로서의 검역질환 관리는 주정부의 관할이고, 국가적 대응이나 국제전염병관리는 연방정부소관임

○ 역할 및 관점

1. 일반 권한 : 주정부 및 지방 - 전염병 관리
2. 국가적 대응 : 연 방
3. 국제적 대응 : 연 방 - 국제적 감시

① 호주의 검역 관련 기관

㉠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DoHA)

- Border Health Section에서 Human Quarantine 담당
- DoHA장관이 Chief Medical Officer를 Director of Human Quarantine으로 임명
- 인간검역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 a. 입국관리기관에 대한 조언협조
 - b. 검역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정책제시
 - c. 인간검역활동을 위한 주 및 지역당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 d. 해외에서의 (질환)급증 감시(monitor overseas outbreaks)
 - e. IHR에 규정된 질병들에 대해 WHO에 정보를 제공

㉡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에서 동물, 식물 및 기타 검역
- AQIS의 활동범위는 식물 및 동물 검역임. 인간검역부문은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미미함. 그러나 DoHA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함.
 - a. 입국자들의 질병(illness)에 대한 심사 (screen arriving passengers for illness)
 - b. 황열에 대한 입국 조건 관리 (administer entry requirements for yellow fever)
 - c. 곤충 매개체 유입에 대한 모니터(monitors for importation of insect vector)
 - d. 국제선항공기의 해충박멸(disinsection of international aircraft)

e. 감염성 질환의 감시와 관리 담당 보건 공무원과 협조

- AQIS의 대부분의 업무는 사용자비용부담원칙에 따르나 인간검역은 대개 그렇지 않음.
- 일반적인 연방 재정규정에서 **Passenger Movement Act 1978 (Cth)**하에서 부과되는 통과여행객부담은 호주를 떠나는 여행객에게 부과되고, 세금수입은 여행객들이 이용하게 되는 세관, 이민국, 검역소를 업무에 사용됨.

㉔ The Australian Customs Service(Customs)

- the Master Plan for Passenger Processing하에서 세관은 국경에 발을 디딘 모든 여행객을 심사하는 책임을 지닌 기관임 항공기, 상업용, 산업용 선박 탑승자, 군인, 난민을 포함함.
-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됨. 황열예방접종증서가 없는 경우 AQIS에 연락하게 됨. 그러나 세관이 인간검역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아님.

㉕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 해외 (질환)급증에 대하여 보건공무원에게 정보를 제공, 특히 호주와 직항편이 있는 경우
- 국제적인 급증에 대응하기위해 보건 및 AQIS당국과 협조

㉖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DIMA)

- 보건당국이 제공한 권고에 대하여 DIMA는 여행객이나 이주자에 대하여 건강요구조건을 결정함
- 보건공무원이 잠재적으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사람들을 추후관찰을 도움

㉗ Defence(DOD)

- DOD는 군의 대규모 이동이나 시민들의 응급시의 대규모 이동에 책임이 있음.
- 국방부 환경보건 담당 장교는 군함과 전투기의 입항 허가증명을 관리할 수 있음.
- 국방부는 RAAF에 기초해 검역통제 적용에 AQIS와 긴밀히 함께 일하고 있음.

㉘ State and Territory health autho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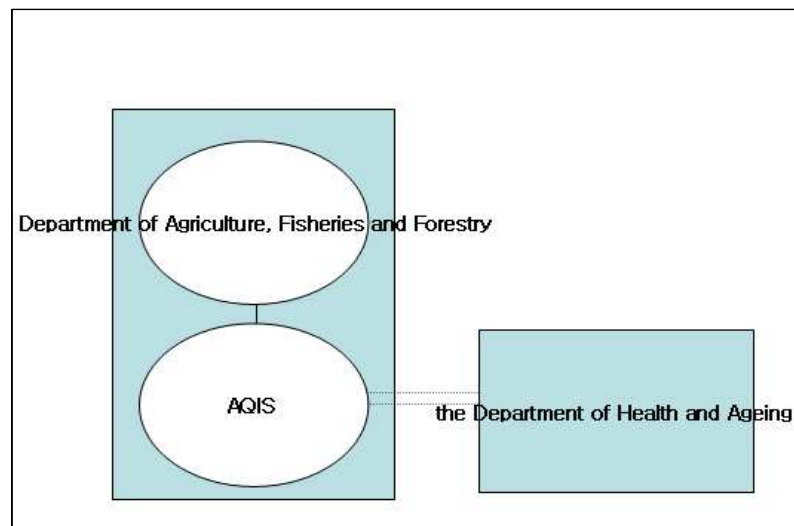
- 주 및 지방정부는 관할권내 사건의 관리책임이 있는 선임 Chief Quarantine

Officer를 파견

- 치료와 격리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 검역질병에 관한 규칙과 관리가 전염병의 일부를 다루기는 하지만, 인간검역조항의 검토는 전염성질병관리와 관련한 좀 더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함. 전염병의 일반적인 관리는 주나 지방정부에게 있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의 재설정을 요청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전염성질환의 국제적 관리와 전염성질환의 급증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포함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그 주경계내에서의 전염성질환의 관리에 대해 계속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임.

② 연방정부책임과 행정(DoHA와 AQIS)

- 총 책임자는 the Director of Human Quarantine(Commonwealth Chief Medical Officer)이며, 일반적인 일상 인간검역활동은 the Communicable Disease and Environmental Health Branch of the Population Health Division내 담당관이 수행함. AQIS가 DoHA의 위임으로 호주공항, 항만 인간검역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관리를 문서화하기 위해 DoHA과 AQIS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한 상태.



- 검역원(AQIS : the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은 농림수산부⁶⁾ 소속기관 중 하나로서, 호주는 동식물검역과 일반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검역을 동일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

6)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그림 55 호주 농림수산부의 조직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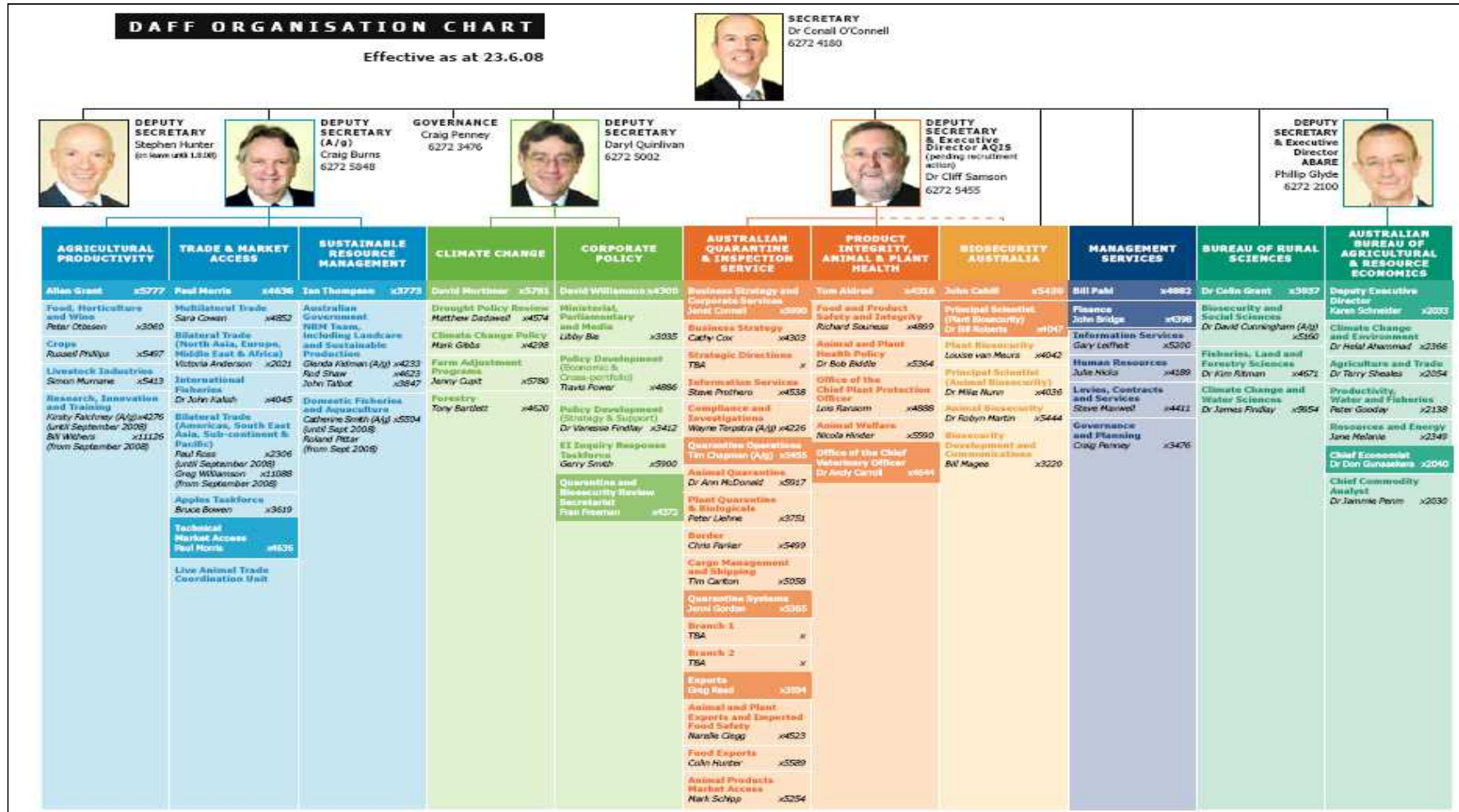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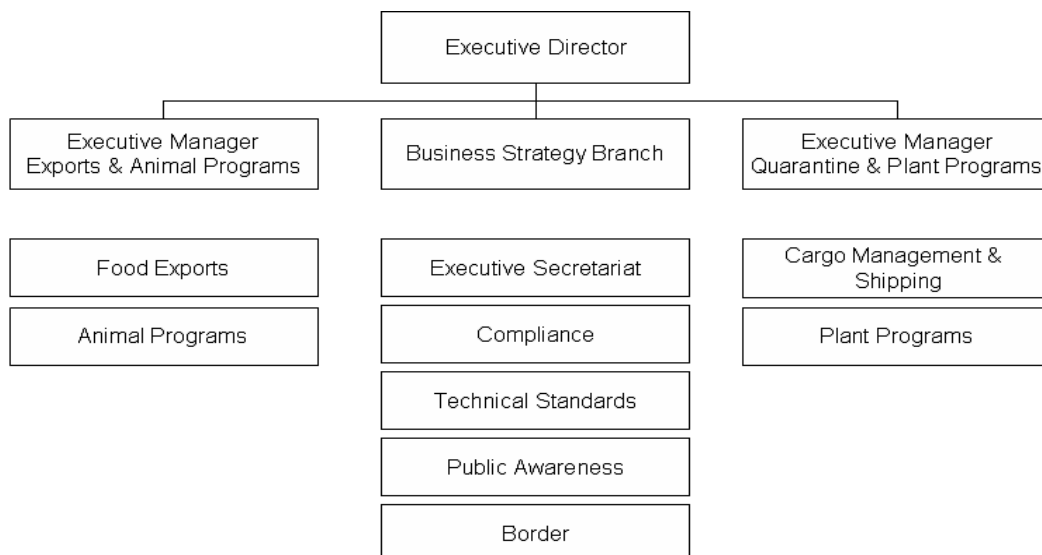


그림 56 호주 AQIS의 구성도

AUSTRALIAN QUARANTINE & INSPECTION SERVICE	PRODUCT INTEGRITY, ANIMAL & PLANT HEALTH	BIOSECURITY AUSTRALIA
Business Strategy and Corporate Services Teresa Connell x5990	Tom Aldred x4316	John Cahill x5430
Business Strategy Cathy Cox x4303	Food and Product Safety and Integrity Richard Souness x4899	Principal Scientist (Plant Biosecurity) Dr Bill Roberts x4047
Strategic Directions TBA x	Animal and Plant Health Policy Dr Bob Biddle x5364	Plant Biosecurity Louise van Meurs x4042
Information Services Steve Prothero x4538	Office of the Chief Plant Protection Officer Lois Ransom x4888	Principal Scientist (Animal Biosecurity) Dr Mike Nunn x4036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Wayne Terpstra (A/q) x4226	Animal Welfare Nicola Hinder x5590	Animal Biosecurity Dr Robyn Martin x5444
Quarantine Operations Tim Chapman (A/q) x5455	Office of the Chief Veterinary Officer Dr Andy Carroll x4644	Biosecurity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 Bill Magee x3220
Animal Quarantine Dr Ann McDonald x5917		
Plant Quarantine & Biologicals Peter Liehne x3751		
Border Chris Parker x5499		
Cargo Management and Shipping Tim Carlton x5058		
Quarantine Systems Tenni Gordon x5365		
Branch 1 TBA x		
Branch 2 TBA x		
Exports Greg Read x3594		
Animal and Plant Exports and Imported Food Safety Narelle Clegg x4523		
Food Exports Colin Hunter x5589		
Animal Products Market Access Mark Schipp x5254		

그림 57 호주검역원(AQIS)의 조직체계



○ 중앙의 AQIS를 중심으로 6개 주 및 2개 지역에 각 검역소(Quarantine Station)가 해당 지역의 검역을 관리하고 있음

- Far North
- South Queensland
- New South Wales
- Tasmania
- Victoria
- South Australia
- Western Australia
- Northern Territory

③ 주 및 지방정부

○ 각주에는 Chief Quarantine Officer(CQO)가 있음. 이들은 the Act s8A,8B, 9AA에 의해 임명되고 연방정부에 소속되어 일함. CQO의 보고에 기초해 HAC가 검역질환의 예방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주 및 지방정부는 검역질환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게 됨.

④ 상호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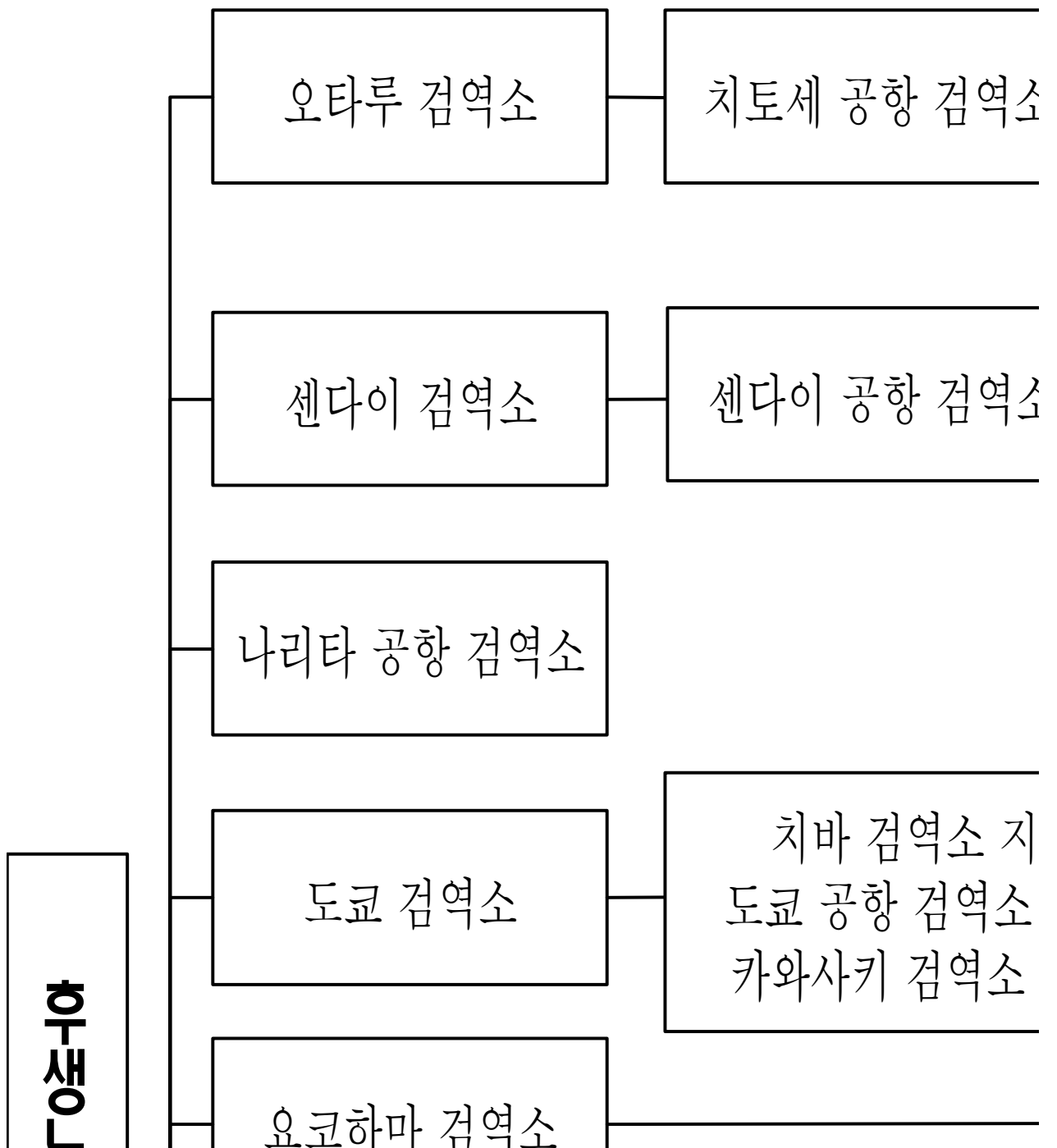
- the Communicable Diseases Network Australia New Zealand(CDNANZ) 체계 구축
- 1989년부터 가동됨. 감시 및 관리에 대한 공유
- the National Notifiable Diseases Surveillance Scheme(NNDSS): 수집,분석보고
- Commonwealth and States funding

⑤ Gateway Border Responsibilities

- 주로 AQIS가 담당
 - Passenger surveillance: 일반검시와 황열접종사항 확인
 - Pratique: 사망자나 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발급
 - Vector Control: 특히 모기와 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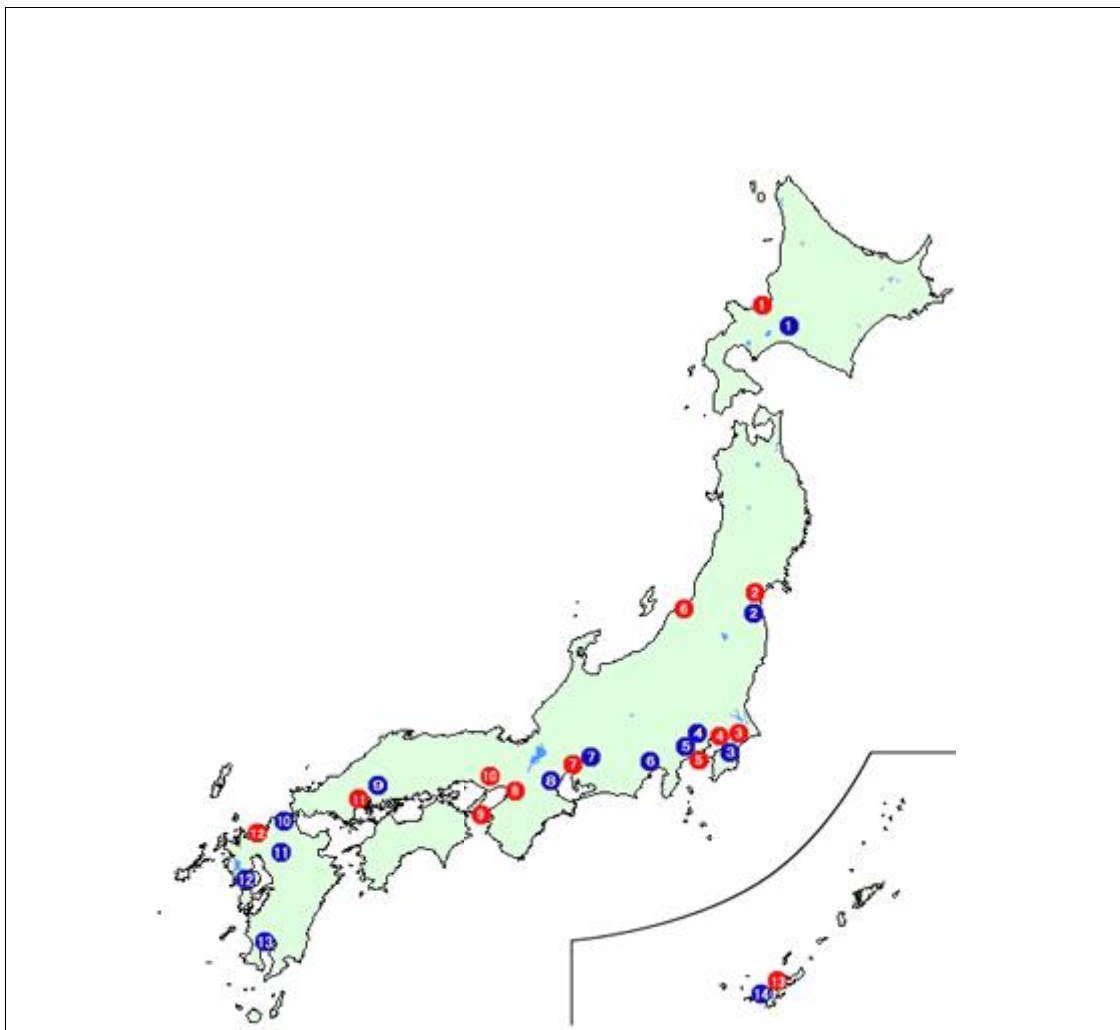
(3) 일본

- 일본의 검역 체계는 후생노동성 내에 있는 13개의 검역소와 14개의 지소 및 81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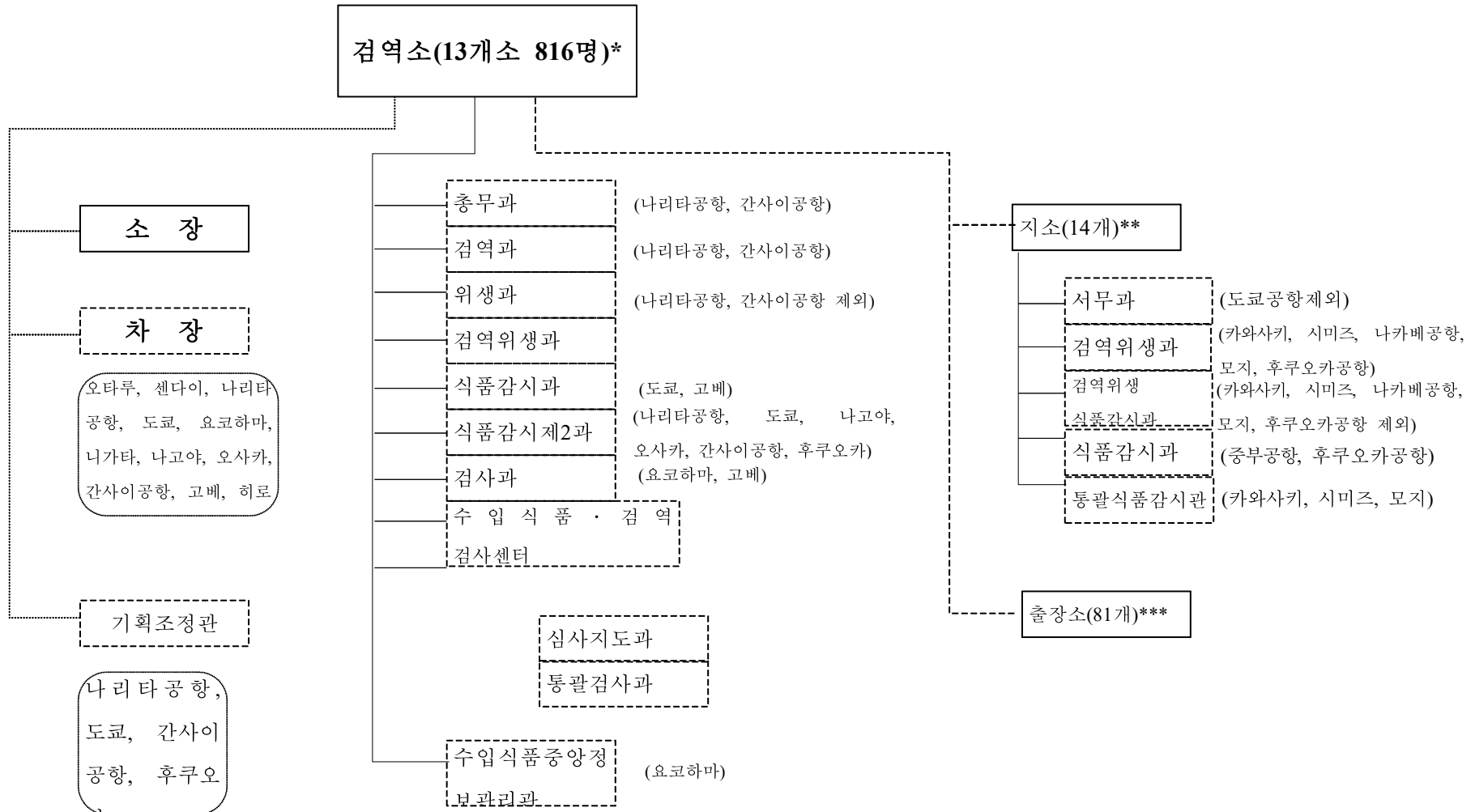


○ 검역소현황

분 류	계	항 만	공 항
본 소	13	11	2
지 소	14	7	7
출장소	81	63	18
계	108	81	27



○ 조직도



* , ** , *** 는 <검역소 - 검역지소 - 검역출장소 현황> 참고

○ 일본검역조직의 특성

① 전염병관련 업무와 수입식품업무로 이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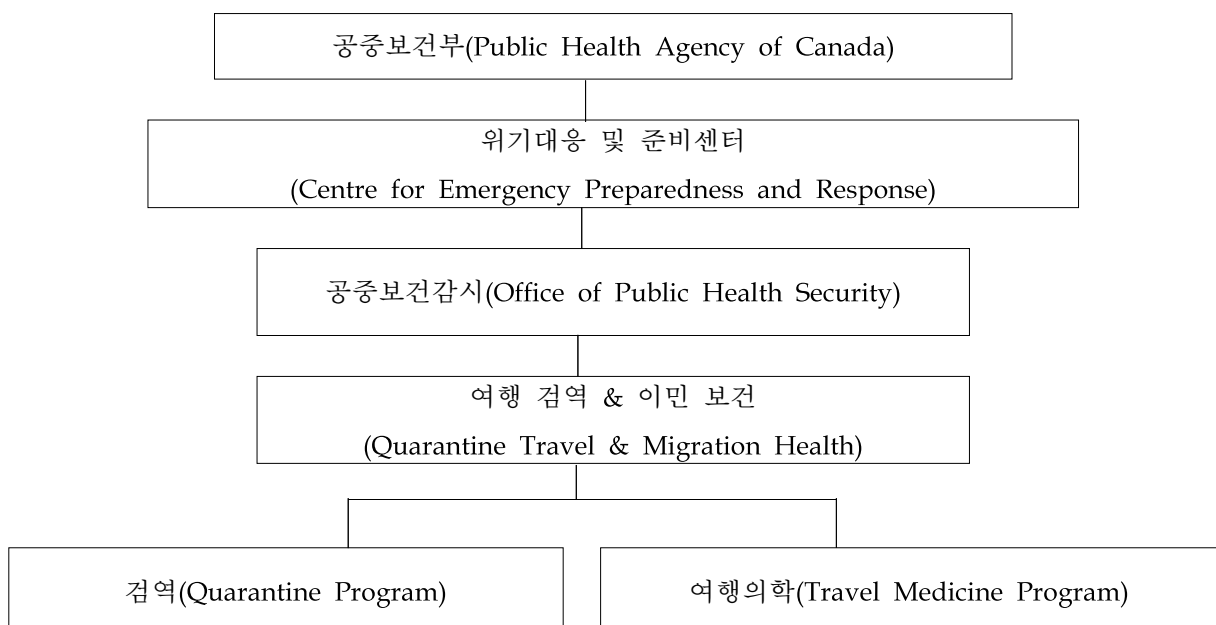
- 전염병관련업무 검역관련 사항은 후생노동성 건강국 결핵감염증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수입식품 및 검역소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국 검역소관리실에서 관리
- 정책입안 및 검역소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이외의 구체적인 업무는 분장되어 있지 않음
- 주요 업무로는 검역(10종), 예방접종(17종),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4종,검역전염병포함), 수입식품, 전염병정보제공, 홍보, 수입동물검역(동물검역소 소관 제외)등을 수행하고 있음
- ※ 최근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대응조치로 콜레라와 황열을 검역대상전염병에서 제외하고, 황열을 예방접종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검역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② 탄력적인 조직구성 운영

- 여행객수, 수입식품물량 등을 감안하여 검역조직에 차등을 두어 운영하여 미국과 같이 검역소별 조직형태가 상이함.
- 총무과, 검역과, 위생과, 검역위생과, 검사과 등 업무량 등에 따라 검역소별 조직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 조직규칙에서는 일본의 검역소와 그 위치만을 규정하고, 검역법에 검역소의 관할 항 및 검역구역을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4) 캐나다

○ 조직도



○ 캐나다의 검역 체계는 공중보건부 산하의 위기 대응 및 준비 센터에 있는 공중보건감시소의 여행 검역 및 이민 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검역 프로그램과 여행 의학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캐나다 국제공항 관련 자료



○ 캐나다의 검역소가 위치하고 있는 국제 공항은 Toronto, Vancouver, Montreal, Calgary, Ottawa, Edmonton, and Halifax international airports.로 모두 7곳임

(5) 중국

○ 검역의 주체

- 중국의 검역 당국은 국경 보건검역국(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임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 검역당국(이하 AQSIQ)는 중국의 국경항구(이하 항구로 표기)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조차 및 검역에 책임이 있음.

나. 인력(직원 구성) 및 인원

(1) 미국

○ 미국의 검역 인력은 13개의 각 검역소별로 많게는 11명에서 작게는 1명까지 그 인적 구성이 많지 않음. 이는 주로 이들의 업무가 각 부처 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기 때문임

○ 검역소별로 인적구성은 다양함.

- 인적구성 : medical officer(의학박사), officer in charge(공중보건석사이상), public health adviser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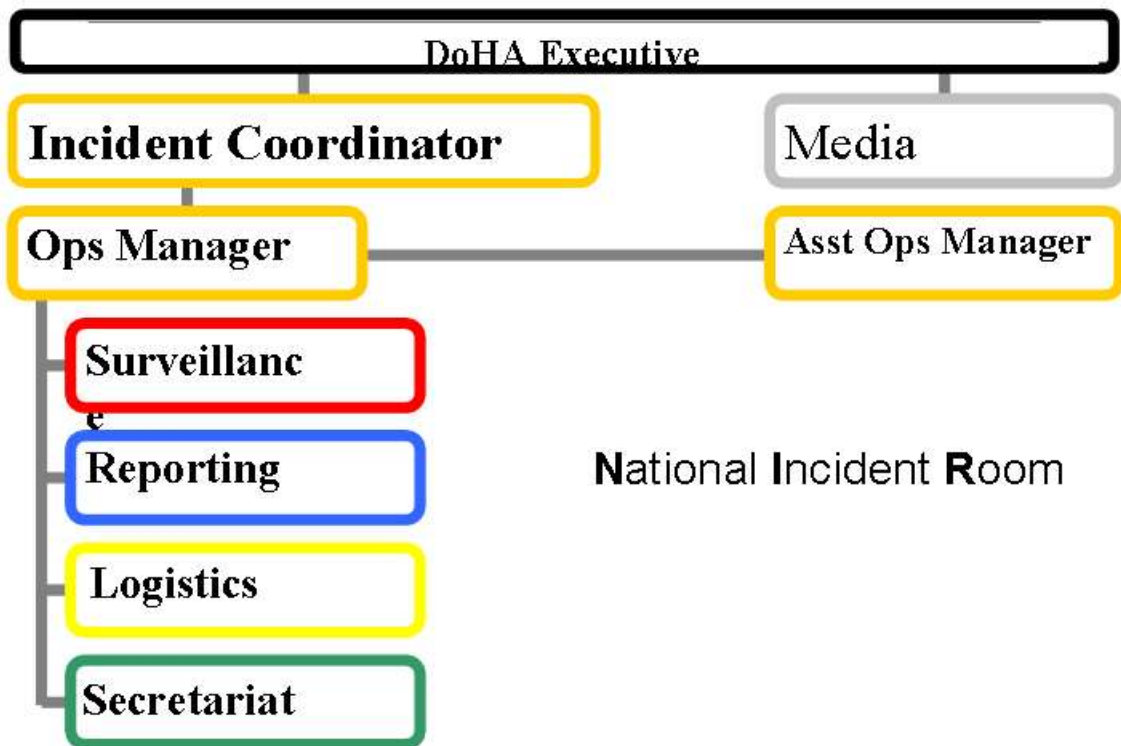
검역소	인원	인력 구성
Atlanta	4	• 책임자 Officer in Charge: Terrence D. Daley • 검역 보건 공무원 Quarantine Public Health Officers: ◆. Cynthia A. Corsino, BS (MPH Candidate) ◆. Tchernavia A. Gregory, MPH • 행정보조. Administrative Assistant: Daiscia Roseberry
Chicago	5	• 책임자 Officer in Charge: Sena Blumensadt, BA • 검역 보건 공무원 Quarantine Public Health Officers: ◆. Shannon Bachar, BSN ◆. Lisa Poray ◆. Michelle Russell, MPH • 행정 보조 Administrative Assistant: Maggie Koral, MA
Dallas/Ft. Worth	2	• 책임자 Officer in Charge: John C. Neatherlin, MPH • 검역 보건 공무원 Quarantine Public Health Officer : W. William Schluter, MD, MSPH
Detroit	3	- 책임자 Officer in Charge: Gabriel Palumbo, MBA, MPH • 검역 의료 공무원 Quarantine Medical Officer: Curi Kim, MD, MPH • 검역 보건 공무원 Quarantine Public Health Officer: Kate Boulton, BA (Trainee)
El Paso	5	• 책임자 Officer in Charge: Todd Wilson, MS, CHES • 검역 의료 공무원 Quarantine Medical Officer: Miguel Escobedo,

		MD, MPH •. 검역 보건 공무원 Quarantine Public Health Officer: Joaquin Rueda, BA •. 계약자 Contractor: Evelyn C. Swager, RN, BSN •. CSTE Fellow: Michelle Sandoval, MPH
Houston	2	•. 책임자 Officer in Charge: ♦. CAPT Jacquelyn Polder, RN, MPH •. 검역 보건 공무원 Quarantine Public Health Officer: ♦. Daniel Rodriguez, RN, MSN
New York	11	책임자 Officer in Charge: Margaret A. Becker, RN, MHA •. 검역 의료 공무원 Quarantine Medical Officer: Paul Edelson, MD •. 검역 보건 해부학자 Quarantine Public Health Analyst: Donald J. Spatz •. 검역 보건 공무원 Quarantine Public Health Officers: ♦. Moira Booth ♦. Kirsten Buckley, MPH ♦. Ellen DeMott ♦. Gregory Reitz ♦. Sheryl Shapiro, MHA (Zoonoses Team) •. 기타 직원 Additional staff: ♦. Janelle A. Anderson, CSTE Fellow ♦. Tisha Betton ♦. Gina Drake
San Diego	4	•. 책임자 Officer in Charge: David Gambill, MSC •. 검역 의료 공무원 Quarantine Medical Officer: ♦. Stephen Waterman, MD, MPH •. 검역 보건 공무원 Quarantine Public Health Officers: ♦. Miguel Ocaña, MD ♦. Jeffrey Bethel, PhD
San Juan	3	•. 책임자 Officer in Charge: ♦. Olga Joglar, MHSA •. 검역 의료 공무원 Quarantine Medical Officer: ♦. Francisco Alvarado-Ramy, MD •. 검역 보건 공무원 Quarantine Public Health Officer: ♦. Milton Martinez, MPH
Seattle	4	•. 책임자 Officer in Charge: Heather Hastings, MPH •. 검역 의료 공무원 Quarantine Medical Officer: Peter Houck, MD •. 검역 보건 공무원 Quarantine Public Health Officers: ♦. Than T. Lerner ♦. Benjamin Puesta

Washington, DC	3	• 책임자 Officer in Charge: CDR Jason Thomas, MPH • 검역 의료 공무원 Acting Quarantine Medical Officer: ♦. Andrew Plummer, MD, MPH • 검역 보건 공무원 Quarantine Public Health Specialist: ♦. Robynne Jungerman, MPH, RN

(2) 호주

○ 공중보건비상 사태시 DoHA의 응급대처체계 (NIR : National Incident Room)



○ NIR은 이상과 같은 조직으로 50명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주하는 인원은 아님.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면 DoHA내의 NIRoom으로 모여서 운영되는데 특히 유행성 질환의 대량발생시와 같은 상황에 대처(pandemic response)하기 위해 작동됨.

○ 이들은 평시에는 각자 DoHA내 자신의 각 부서내에서 근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NIR 조직에 따른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서처럼 상황발생시 임시 공간을 활용하여 상황에 따른 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NIRoom이 상시 확보되어 모든 대화면스크린, 상황보고시설, 인터넷등과 응급보건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들이 갖추어진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상황발생시 인원들은 각자의 책상

에 앉아 업무에 임하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로 사람만 없는 공간으로 NIRoom이 확보되어 있다. 이동용열감지카메라 장비 기타 간단한 검사 장비들이 공간내에 모두 갖추어져있음.

- 이들을 위한 상황발생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특색임.

(3) 일본

- 검역소인력 현황

구 분	직 종	인원수
검역소	검역관	235
	의 사	78
	간호사	45
	식품모니터 담당	328
	관리부서	133
지원부서		17
합 계		836

- 의사근무

- 나리타공항 검역부서 100명중 실검역관 50명(의사 10명, 간호사 15명,기타25명)
- 요코하나검역소: 검역소장이 의사

(4) 캐나다

- 공항내의 검역소 직원의 대부분은 공인된 간호사, 그리고 공립병원이나, 응급실, 1차 보호기관등에서 경험 있는 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의사는 내과 의사로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각 1명이 관리하고 있고 전반적인 관리는 응급상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캐나다 보건센터 내의 공중보건관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음.

다. 주요 업무

(1) 미국

① DGMQ(Global Migration and Quarantine)

- 해외로부터 미국으로 전염병이 유입, 전파 또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시행할 법적 권한을 가짐
- 법적인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이민 및 국적 법에 따른 외국인의 진료 감독
 - 해외에서 온 미국에 있는 외국인의 의료 검사 및 서류의 질 감독
 - 관할권 내에 피난자 도착 사실을 주 또는 지역 보건 당국에 통보
 - 공중보건 상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질병 증상이 있는 해외 여행객의 도착 감시
 - 출판, 팩스, 인터넷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필수 건강 정보를 제공
 - 공중보건 상에 위험이 될 수 있어 보이는 특정 동물, 원인균 및 매개체의 입국 요건 집행
 - 새로운 감염으로 인한 입국 비상 사태 및 위협에 관한 특별 프로젝트 수행
 - 전세계의 보건 데이터 수집 및 배포
 - 사망률 및 질병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자에게 시험 약물 및 면역생물학 배포 확인
 - 전염병 위협 대상이 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조사
 - 미국으로의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하여, DGMQ는 US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이전에는 이민 및 국적 서비스), 세관 및 국경 수비 (이전에는 미국 세관) 그리고 미국 어류 및 야생 서비스의 사람 및 물건 감시에 의존함
 - 이러한 기구는 공중보건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DGMQ에 알려야 함. DGMQ 직원은 그 때,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할 경우 CDC의 전문가도 포함됨
 - 적절한 조사를 위하여, DGMQ는 위에 언급된 기관의 새로운 연방 조사관들을 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계속 제공함

② 검역소의 일상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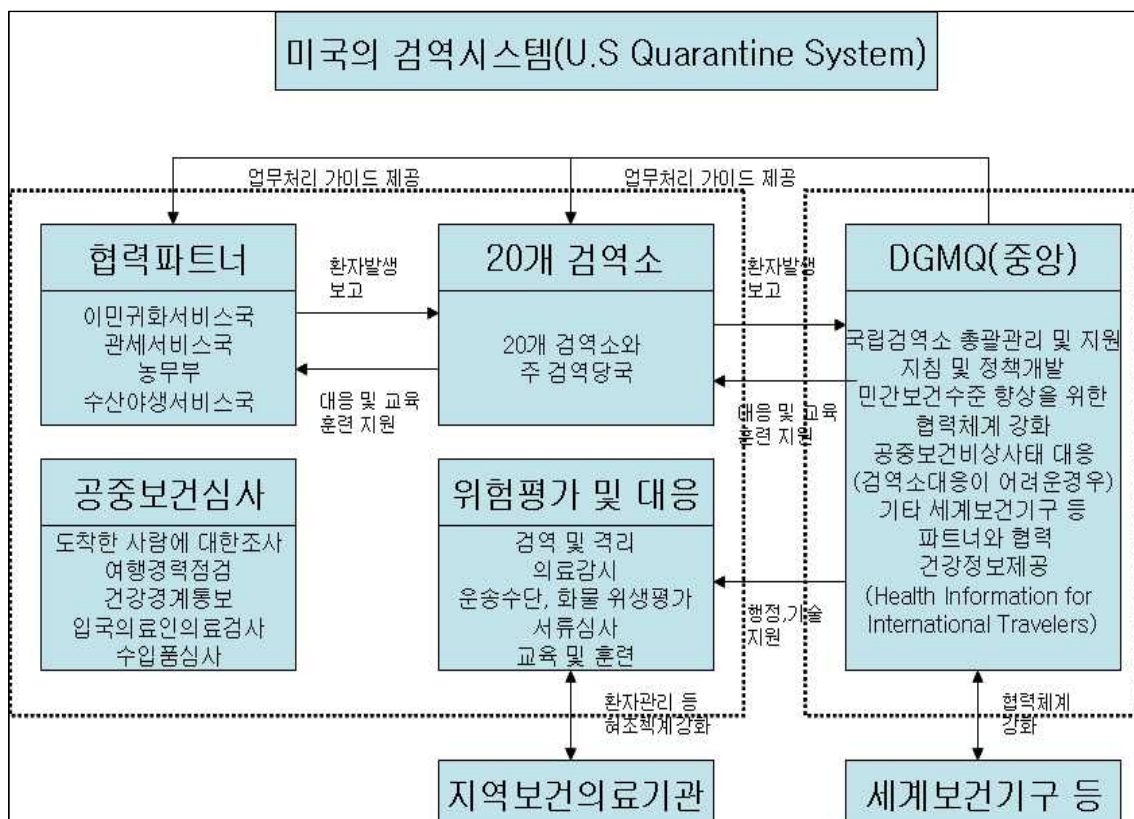
- 공항, 선박 및 국경지역에서 질병 보고시 대응
- 사람의 위생을 위협할 수 있는 동물, 동물배설물 및 유해 등을 검사
- 사람에게 전염을 매개하는 매개체로써 화물, 휴대물품 등 검사
- 예방약 및 검사약품 제공
- 여행건강 정보 제공

③ 일상적 활동의 내용

- 새로운 입국자, 이민자, 불법체류자 및 가식방된 사람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위생감시
-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의의 질병발발 지역의 이민자나 입국자의 경우 거주할 관할 보건소에 경고
- 대규모 이동이 필요한 위급상황 발생시 대응
-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
- 질병감시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④ 협력 및 대응(DGMQ)

- 파트너 에이전시에 프리젠테이션, 훈련 및 교육자료 제공
 -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대안 및 시설들을 적용 및 개발하는데 파트너들을 원조
 - 검역활동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는 연구 지원
- 각 검역소는 할당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항구, 해항 및 국제 공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 검역 직원이 모든 입국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검역소는 입국심사국, 세관 및 농업 조사관에게 공중보건 상 중요한 환자나 수입품을 살피도록 훈련시켜야 함



(2) 호주

○ 검역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다음과 같음.

- a. 검역대상자의 이동제한(PartVIIIs(70D))
- b. 개인에 대한 의료검진 요구(PartVIIIs(72))
- c. 의심사항조사(inquiries)(PartVIIIs(73))
- d. 예방접종요구(PartVIIIs(75))

○ 국경검역관리 (Border Control)

- 호주의 모든 입출경지역에서의 승객과 화물에 관한 검역관리
- 입경지역에서의 여객과 화물에 대한 검역통제는 검역의 가장 주된 업무
- 검역관들은 위험사정(risk assessment), 탐지견 활용(detector dogs), X-ray machines, surveillance 등의 기법을 사용

○ 동물검역 (Animal Quarantine)

- 호주 내로 반입되는 곤충, 어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모든 종류의 동물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검역
- 호주 내로 반입 되는 동물은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검역시설이 갖춰진 검역장소에서 일정 시간동안 체류하여야 함

○ 식물검역 (Plant Quarantine)

- 호주 내로 반입되는 열매, 씨앗, 자른 가지, 뿌리, 목재 등 식물에 대한 검역

○ 사람검역 (Human Quarantine)

- 호주의 검역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장이 작성한 승객의 건강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monitors)함

○ WHO가 승인한 살충제를 이용하여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으로부터 위탁받아 소독 수행

(3) 일본

① 과별 주요업무내용(검역소중심)

- 총무과 : 일반적인 행정사항, 통계관리
 - 전국검역소 공통
- 검역과 : 검역구역 검역에 관한 사항 및 예방접종, 검역조치
 - 나리타, 간사이 검역소만 별도로 구성
- 위생과 :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조사사업), 소독의 실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입동물 관련 사무

- 나리타, 칸사이 검역소만 별도로 구성
- 검역위생과 : 검역관련 업무 및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조사사업)
 - 나리타, 칸사이 제외 전 검역소
- 검사과 : 미생물, 이화학적 검사 주관

② 식품·검역검사 센터(요코하마, 코베)

- 전국 검역소의 검사업무(미생물 및 이화학적검사)를 총괄관리하는 식품검역검사센터
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검역소(출장소)관련검사 실시(검사과가 있는 경우 고도의 검사에 한정하여 실시)
 - 위생 미생물 학문적 및 이화학적 검사 실시
 - 식품검사업무 관리에 필요한 심사 및 지도
- 심사지도과와 통괄검사관(5명)이 배치되어 관련업무 수행

(4) 캐나다

□ 검역프로그램

- 공중보건보호를 위한 국경감시 서비스 제공
 - 의사와 간호사 검역관이 서비스 제공
 - 공항검역소 : 핼리팩스(Halifax), 몬트리올(Montreal), 오타와(Ottawa), 토론토(Toronto),
에드몬톤(Edmonton), 캘거리(Calgary), 밴쿠버(Vancouver)
- 검역서비스
 - 운송수단(비행기, 배) 및 육로에서 여행객중 환자 확인하기
 - 검역관은 출국, 입국지점에서 환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입원 및 격리시킴
 - 전염병 발현 시 오염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들을 모니터링함
 - 환자 추적/모니터링
 - 물품, 화물, 운송수단의 전염병 감염여부와 방역
- 대규모 검역소 :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 24시간 실시간 응답서비스
 - 검역보건관(MD 소지자)
 - 검역과장(RN BScN 소지자)
 - 검역관(RN BScN 소지자)
 - 검역부장
 - 사무관(토론토, 밴쿠버에만 있음)
- 소규모 검역소 : 캘거리, 오타와, 핼리팩스, 에드몬톤

- 검역관(RN BScN 소지자)

○ 검역보건관(Quarantine Medical Officer) 업무

- 전체 의학업무 지원
- 검역업무 감독
- 검역업무 개발 및 관리
- 전문가조언

○ 간호보건관(Nurse Quarantine Officers) 업무

- 여행객 중 환자의 캐나다 입·출국 관리
- 여행객 중 환자의 여행지 및 병력 관찰
- 주 검역관과 업무 연계
- 주요 업무 보고 진행(시기성)
- 주요 전염병 발현 시 여행객 감시·관찰

(5) 중국

○ 주요업무(규칙 제26조)

- (1) 검역전염병의 발생, 성행, 종료의 보고
- (2) 검역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위생 조치
- (3) 검역대상 선박, 항공기, 운송수단, 수화물 및 물건에 대한 위생조사 및 위생조치
- (4) 항구, 공항, 철도역, 국경역이나 당시 머물렀던 배, 항공기, 기차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설치류 및 곤충 병원체 검사
- (5) 사고이외의 원인으로 항구, 공항, 기차역 또는 국경역 또는 배, 항공기, 기차 기타 운송수단 내에서 죽은 사람의 검사 및 위생 조치
- (6) 항구, 공항, 기차역 또는 국경역에서 제공되는 마시는 물 및 음식에 대한 세균 검사 및 위생 감독
- (7) 항구, 공항, 철도역 또는 국경역 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검역전염병의 설치류 또는 곤충 병원체에 대한 예방 및 통제 조치 감독 및 예방조치 지시
- (8) 항구, 공항, 철도역 또는 국경역 및 배, 항공기, 기차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일상적인 위생 감독 수행
- (9) 입출국되는 시체에 대한 위생 조치 제한 및 통제
- (10) 검역증명서 발행
- (11) 공중보건당국에 의해 부여된 기타 다른 서비스의 수행

제4절 검역핵심역량 평가

1. 국제보건규칙(2005)의 분석

가. 국제보건규칙에서 요구하는 검역핵심역량

- 국제보건규칙(2005)은 전반부에서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뒤에 일상적인 검역에 해당하는 출입국시 각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루고 있음.
- 국제보건규칙(2005)의 적용대상 질병의 정의를 제1조에서 ‘원인이나 출처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현저한 손상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질환 또는 의학적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국제보건규칙(IHR)
제1부 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원칙 책임당국
제1조 (정의)
제2조 (목적과 범위)
제3조 (원칙)
제4조 (책임당국)

-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발생시 임시 권고안을 발동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일상적 또는 주기적으로 적용하는 지속 권고안을 발동할 수 있음.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

- (1) 특정 보건조치에 대한 권고는 없음.
- (2) 감염지역에서의 여행력(travel history) 심사
- (3) 의학적 검사와 실험실 분석의 증거 심사
- (4) 의학적 검사 요구
- (5)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법의 증거 심사
- (6)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조치 요구
- (7) 의심환자 대상 공중보건관찰(public health observation)
- (8) 의심환자에 대한 검역(quarantine) 및 기타 보건조치 실시

- (9) 필요한 경우 감염자 격리·치료 실시
- (10) 의심환자나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검사 실시
- (11) 의심환자나 감염자의 입국 거부
- (12)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의 입국 거부
- (13) 감염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한 출국심사 및 제한 실시

2.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소포우편물과 관련한 조치

- (1) 특정 보건조치에 대한 권고는 없음.
- (2) 적하목록과 운송경로 심사
- (3) 조사 실시
- (4) 감염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하여 출국·환승시 취하는 조치에 대한 증거 심사
- (5) 매개체와 병원소를 포함한 감염 또는 오염제거 조치의 실시
- (6) 격리 또는 검역 실시
- (7) 달리 이용 가능한 성공적인 절차가 없는 경우에 통제된 상황 아래에서 행하는 오염되거나 의심되는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의 압류 또는 파괴
- (8) 출·입국 거부

국제보건규칙(IHR)
제3부 권고안 제15조 (임시권고안) 제16조 (지속권고안) 제17조 (권고안 기준) 제18조 (사람,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소포우편물 관련 권고안)
제4부 입국지점 제19조 (일반적 의무사항) 제20조 (공항과 항만) 제21조 (육상교차점) 제22조 (책임당국의 역할)

- 국제보건규칙(2005)의 특징 중 하나는 각 국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질병 감시 역량과 대응역량을 제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 질병 감시 역량은 규칙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을 탐지·신고·보고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
- 이 규칙이 각 국가에게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해 제시하는 기간은 5년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2년에 걸쳐 2차례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됨.

- 제19조는 입국지점의 핵심 역량 개발, 입국지점의 책임 당국 지정 및 입국지점의 매개체와 병원소를 포함한 감염 또는 오염원 관련 자료를 세계보건지구에 제공하는 것을 각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핵심 역량을 갖춘 입국지점(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세계보건지구에 통보하여야 함.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 역량 요건
1. 항시 필요한 역량 1) 병든 여행자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진단시설 등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도를 제공할 역량 2)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 3) 병든 여행자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 4) 화물 검사를 위한 숙련된 인력을 제공할 역량 5) 식수원, 음식점, 항공기내식 관련 시설, 공중화장실, 적절한 고형 및 액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기타 잠재적 위험지역 등 입국지점의 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조사사업을 시행할 역량 6) 입국지점 내 또는 그 인근의 매개체와 병원소를 위한 관리 사업과 숙련된 인력을 실천 가능한 한 제공할 역량 2.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1) 공중보건위기 대처 조정자와 적절한 입국지점, 공중보건 및 기타 기관의 접촉창구를 지명하는 것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 공중보건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역량 2) 격리,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의료 및 수의과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염 여행자나 동물을 평가하고 돌볼 수 있는 역량 3)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다른 여행자와 분리하여 면접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역량 4) 감염이 의심되는 여행자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되도록 입국지점에서 떨어진 시설에서 건강격리할 수 있는 역량 5)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을 살충, 구서, 살균, 오염제거 또는 기타 조치하기 위하여 권고 조치를 적용할 역량

- 6)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여행자의 입·출국 통제조치를 적용할 역량
- 7) 감염 또는 오염되었을 수 있는 여행자의 이송을 위하여 특정히 지정된 장비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춘 숙련된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

○ 제22조는 입국지점 책임 당국(검역소)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수하물 등에 대한 감염원·오염원 감시(monitring)
- 입국지점 여행자 이용시설의 위생상태 유지
- 구서, 살균, 살충 소독 및 사람에 대한 위생조치 감독
- 운송수단 운영자에 대한 관리조치 의향 전달
- 운송수단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제거 및 안전한 처리에 대한 감독
- 국제 수로의 물을 오염시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방출 감시 및 관리
- 여행자, 수하물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 예상치 못한 공중보건사건에 대비한 효과적인 비상 방안 보유
- IHR 국가대표기관과의 연락 유지

국제보건규칙(IHR)
제5부 공중보건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23조 (출발과 도착 시 보건조치) 제2장 운송수단과 운송수단 운영자에 관한 특별조항 제24조 (운송수단 운영자) 제25조 (경유 선박과 항공기) 제26조 (경유 민간 화물차, 열차, 대형버스) 제27조 (감염된 운송수단) 제28조 (입국지점에서의 선박 또는 항공기) 제29조 (입국지점의 민간화물차, 열차, 대형버스)

○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입·출국 시에 여행자와 수하물 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보건조치의 종류와 함께 여행자에 대한 처우는 예의와 존중, 성별·사회·문화·민족·종교의 고려, 충분한 식량과 물·적절한 숙소와 의복·수하물을 비롯한 소지

물의 보호, 적절한 의학적 조치,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조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입·출국 시 취할 수 있는 보건조치
1. 여행자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 1) 연락이 가능한 여행 목적지에 대한 정보 요구 2) 감염이나 오염에 대한 접촉가능성 확인을 위한 여행 일정 관련 정보 요구 3) 여행자의 건강증명서 요구 4) 공중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의학적 검사 요구 2. 수하물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 1) 수하물에 등에 대한 조사실시(inspection) 3. 운송수단 운영자에 대한 조치 1) WHO가 권고하고 당사국이 채택한 보건조치를 따르도록 요구 2) 여행자에게 WHO가 권고하고 당사국이 채택한 보건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3) 운송수단을 매개체와 병원소를 포함한 감염원 또는 오염원이 없는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 4) 공중보건위험에 관한 증거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구서, 살균, 살충 소독 실시

국제보건규칙(IHR)
제3장 여행자에 관한 특별조항 제30조 (공중보건관찰대상 여행자) 제31조 (여행자 입국 관련 보건조치) 제32조 (여행자에 대한 처우) 제4장 상품,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적재지역에 관한 특별조항 제33조 (통과 상품) 제34조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적재지역)

○ 보건문서의 종류와 서식

-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법 증명서
- 해항보건상태신고서
- 항공기종합신고서 보건부분
- 선박위생증명서

국제보건규칙(IHR)
제6부 보건문서 제35조 (일반조항) 제36조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조치 증명서) 제37조 (보건상태신고서) 제38조 (항공기종합신고서 중 보건부분) 제39조 (선박위생증명서)

- 입국지점의 책임당국이 실시하는 보건조치 중 다음에 대한 비용은 임시 또는 영구 거주를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제외하고는 청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보건조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단일 관세(one tariff)이어야 하고, 서비스의 실제 원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여행자의 국적, 거주지 또는 체류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최소 1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사항도 함께 기술).

- (1) 모든 의학적 검사
- (2) 여행자가 도착할 때 제공하는 예방접종 또는 기타 예방법(10일 전에 비용을 공고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
- (3) 여행자에 대한 적절한 격리 수용
- (4) 실시한 조치와 실시연월일을 명시하여 여행자에게 교부한 증명서
- (5) 여행자의 수하물에 적용한 보건조치

국제보건규칙(IHR)
제7부 비용 부담 제40조 (여행자에 관한 보건조치 비용부담) 제41조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비용부담)

- 국제보건규칙(2005)는 동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국가에서 WHO의 권고안과 대등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자국의 법률로 추가적인 보건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 각 국가와 WHO의 상호 협조의 의무,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 등의 조항도 함께 담고 있음.

국제보건규칙(IHR)	
제8부 일반 규칙	국
제42조 (보건조치의 시행)	
제43조 (추가 보건조치)	
제44조 (협력과 지원)	
제45조 (개인정보의 취급)	
제46조 (생물학적 물질, 시약, 진단용 물질 수송 및 처리)	
제9부 전문가 명부, 비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국
제10부 종결 조항	

나. 향후 조치사항

- 회원국이 유보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세계보건규칙(2005)은 해당 회원국 내에서 효력을 발효하며, 이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 사업 또는 법률을 개정·수립하여야 함(제59조 제2항)
- 국제보건규칙에서 규정된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질병발생에 대한 감시와 대응 능력 및 검역 능력"을 2012년 6월까지 규칙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함
- 동 기간 내에 국내법 및 행정체계 정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1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유예를 요청하여야 함(동 규칙 §59.3)

2. 설문조사를 통한 검역핵심역량 평가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요구하는 검역핵심역량 확보 및 강화를 위하여 국내 13개 검역소의 검역 체계에 대한 현 상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검역핵심역량평가의 설문 내용은 국제보건규칙(2005) 별표 1의 ‘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평가에는 국내 13개 검역소가 참여하였으며, 평가지수는 1점(매우 나쁨)부터 10점(매우 좋음)까지 분류하였음
- 특히, 2006년 실시되었던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 역량 평가와 2007년 국제보건규칙(2005)이 발효된 이후의, 현재(2008년) 우리나라의 검역핵심 역량을 비교하여, 현 상태를 진단하고 변화를 분석하였음
- 2006년 핵심역량평가와 필요하여, 2008년 검역핵심역량은 평균 7.7 좋음으로 5.2 보통이었던 과거보다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어, 선진검역체계 구축에 많은 진보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

가. 항시 필요한 역량

- 항시 필요한 역량 평가는 총 6문항으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3문항, 인력 관련 2문항, 관련 환경에 대한 조사사업 등 1문항으로 크게 3가지에 관하여 평가하였음
- 접근성에 대한 역량 평가 결과 7.9로 좋음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06년 5.2로 보통인 것으로 평가된 것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관내 의료시설 및 격리지정병원과 각 지역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진단시설에 대한 접근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검역소 자체 내에서 진단이 가능한 검사가 주로 세균성 검사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신종전염병(호흡기성 바이러스 검사 등) 및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검사인력의 보강 및 검사실 기준 요건 개선(BSL-3 이상), 장비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사려 됨.
- 일부 지역에서 전염성 호흡기 바이러스 환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는 음압시설을 구비한 격리병상의 부족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 병든 여행자에 대한 이송 수단으로 자체 내에 구급차를 갖춘 검역소는 많지 않았으나,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소나 소방서 등의 구급차를 통해 환자 후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응급구급장비가 설비되어 있는 검역감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나, 운영 상의 어려움이 지적됨.
- 전반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접근도가 많이 상승되었다고 평가되나, 궁극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역소 단독수행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인력에 대한 역량 평가 결과 7.35로 좋음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06년 5.2로 보통인 편으로 평가된 것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2006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문 인력의 수적인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며, 화물 검사에 대한 인력 제공 역량이 각 검역소 별로 상이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인력 보강 및 지속적인 교육과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조사사업에 대한 역량 평가 결과 8.5로 좋음인 것으로 평가되어, 2006년 5.8로 보통인 편으로 평가된 것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2006년과 비교하여 조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기준이 마련되어, 비교적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다만 검역구역 내에서 반출되는 고형 및 액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음

나.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은 8.4로 좋음인 것으로 평가되어 2006년 5.7로 보통인 편으로 평가된 것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중보건 비상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역 의료 및 수의과 시설과의 협조체계와 관련된 감염자 및 동물 평가의 역량은 7.5로 좋음인 것으로 평가되어 2006년 5.7로 보통인 것으로 평가된 것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사람 · 동물 · 식물에 대한 검역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검역 체계의 특성 상, 여

전히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점검 및 총괄 기능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함

- 시설에 대한 역량 평가 결과 6.9로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어 2006년 5.1로 보통인 편으로 평가되었던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선의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음압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과 외부와 차단된 치료공간의 부족이 지적됨
- 권고 조치를 적용할 역량은 7.8로 좋음인 것으로 평가되어, 2006년 평가에서 4.3으로 나쁜 편으로 평가되었던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개선을 보인 것으로 평가됨
- 수화물, 화물, 컨테이너 등 화물에 대한 처리시설 및 소독업체가 미비한 것으로 검역소 간 운영이 상이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항공기 소독 기준안의 미비로 소독에 대한 감시 및 결과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려됨
- 여행자의 입·출국 관리를 적용할 역량은 8.2로 좋음으로 평가되어, 2006년 평가 당시 4.9로 나쁜 편으로 평가되었던 것에 비하여, 큰 폭의 개선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 감염 또는 오염되었을 여행자의 이송과 관련한 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7.7로 좋음으로 평가되었으며, 2006년 평가에서 4.6으로 나쁜 편으로 평가되었던 것에 비하여 많은 개선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 생물테러장비 등 별도의 숙련된 전문 인력 및 경험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어, 인력 육성을 위한 주기적인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질문내용	평균점수	
	2006	2008
병든 여행자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진단시설 등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도를 제공할 역량	4.8	7.9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	5.4	8.0
병든 여행자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	5.3	7.8
화물 검사를 위한 숙련된 인력을 제공할 역량	4.5	6.7
식수원, 음식점, 항공기내식 관련 시설, 공중화장실, 적절한 고형 및 액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기타 잠재적 위험지역 등 입국지점의 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조사사업을 시행할 역량	5.8	8.5
입국지점 내 또는 그 인근의 매개체와 병원소를 위한 관리 사업과 숙련된 인력을 실천 가능한 한 제공할 역량	5.8	8.0
해당 입국지점의 조정자 및 접촉창구 지명, 공중보건 및 기타 기관과 서비스 등 공중보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 적절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할 역량	5.7	8.4
격리,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역 의료 및 수의과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염 여행자나 동물을 평가하고 돌볼 역량	5.7	7.5
의심 또는 감염된 자와 면접하기 위하여 여행자로부터 떨어진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역량	5.1	6.8
평가 필요시 감염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여행자를 되도록 입국지점에서 떨어진 시설에 격리할 역량	5.1	7.0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구제, 구서, 소독, 오염제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고 조치를 적용할 역량	4.3	7.8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여행자의 입출국 관리(입출국 제한 등)를 적용할 역량	4.9	8.2
감염 또는 오염되었을 수 있는 여행자의 이송을 위하여 특정 장비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춘 숙련된 인력(별도의 전문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	4.6	7.7
전체평균	5.2	7.7

제5절 과학적 검역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 및 개선안

1. 검역조사방법 개선안

가. 전염병별 검역조사 표준안

- 검역전염병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역대상자의 각 증상이나 여행경로를 고려한 질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검역전염병을 크게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장래의 검역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앞으로 세균성 질환보다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더 검역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 그 이유는 세균성 질환의 경우 치료나 검사방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항생제발견 및 수액치료가능 이전의 근대적 세균성질환의 창궐의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역전염병의 특성을 살펴보고 검역단계에서 증상별 가능 질병의 확인이 중요하다. 세균성 질환의 경우 어느 정도 빠른 확진이 가능하여 확진과 격리 혹은 치료간의 시간적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으나, 바이러스성질환은 경증을 보이는 경우에 검체채취와 확진간에 시간적 공백의 차이가 크고 또한 세균성 질환보다는 확진이 어려워 검역에 있어 한계를 드러 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검역단계 초기에 진료에서의 문진과 시진과 같은 방법을 검역관들이 숙달함으로써 검역에 있어 그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의 위험을 초기에 차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음. 그러한 견해에서 전염병별 표준안은 접근해야 할 것임.

(1) 배경

-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매개체 감염질환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한 질병이 풍토병인 나라도 있지만, 매개체 및 병원체의 유입 및 재유입이 우려되는 국가도 있음.
- 5가지 주요 매개체 감염질환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음

질병	오염 국가	위험 인구	사망율	질병율
말라리아	90	2,300,000,000	150만 - 270만	연간 30억-50억건
뎡기/DHF	100	2,500,000,000	25,000	연간 1000만-2500만건
임파성	76	1,100,000,000	-	감염자 10억

필라리아				
리슈마니아증	88	350,000,000	-	연간 1200만
브라질 수면병	21	100,000,000	45,000	연간 300만

- 현재 검역조사 및 소독 기준은 세균성 전염병 쪽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바이러스 및 진균성 전염병 등의 검역조사 및 소독에 관한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항공기 집중 공략 사항은 사스나 조류독감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한 관리일 것임. 따라서 사스나 조류 독감 등 관련 전염병 위주로 검역조사 및 소독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전염병별 특징

- 현재 검역전염병을 콜레라, 페스트, 황열 및 이에 SARS와 AI를 추가한다고 할때, 대별하면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눌 수 있음. 앞으로 근대적 검역전염병의 개념을 넘어, 검역대상 질병군이 계속 확대되어 간다고 볼 때, 개별질병별 방침에 더불어 세균성, 바이러스성의 범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각 질병분류에 따른 전반적인 요점을 살펴봄으로써 검역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음. 다음의 표는 예방, 소독, 확산가능성에 대한 각 질병분류별 특징임. 개별 검역 전염병에 대한 설명 및 이해 또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 전염병 분류별 특징

	세균성 전염병	바이러스성 전염병
예방	개인위생관리 및 매개체박멸	호흡기 증상자 조기발견
소독	살충, 살균 소독 위주	공조기구 청결 및 살균
대량확산	크지 않다	크다

○ 검역질환별 특징

	콜레라	황열	페스트	SARS	AI
병 원 체	V.Cholerae	yellow fever virus	Y.pestis	Corona virus	AI virus
vector/경로	ballast water 분변/식수	모기	벼룩(쥐)/ 호흡기	비말/환자체액호흡기	감염조류접촉/분변/배설 물호흡기
증 상	과다한 물설사 구토/발열/복통	발열/오한/두통/요통/전 신근육통/오심/구토	발열/기침/ 호흡곤란/	1주:발열,권태감,근육통, 두통,오한 2주:호흡곤란/설사	발열/기침/근육통
진 단	변,구토물,직장 검체에서 균동정	혈액에서 바이러스동정/PCR혹은 IgM특이항체검출 혹은 항체가 증가	림프절,혈액,가래툰에서 균동정	임상적으로의심되면서, PCR양성,혈청검사양성, 바이러스분리	비인후도말바이러스분 리나,유전자검출PCR
우 선 확 인	설사	열	열	기침/열	기침/열
주 의	장내배설물에 대한 철저한 격리	증상자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호흡기격리 분비물격리	엄격한격리	의료인개인보호구착용
격 리 기 간	항생제치료종료48시간 부터 24시간간격 2회대변검사음성시까지	아프리카/남미방문자 예방접종증명서 없는 경우 6일. 증상자 5일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항생제치료개시 48시간까지		국소발생시는 격리가능(이외에는의미 없음)

(3) 개별 검역전염병별 특성

- 전염병별 특성의 고찰은 검역전염병의 의학적인 내용을 정확히 살펴봄으로써 검역현장에서 의료인이 부재한 경우에도 검역대상자의 증상과 대상질병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필요함.

① 콜레라

㉠ 병원체

- Vrio Cholerae균은 $1.0-5.0 \times 0.3-0.6\mu\text{m}$ 의 그람음성간균으로, 한 개의 편모가 있어서 운동성이 활발하며 아포나 협막은 없음. 현재 분리된 콜레라균의 생물학적형(biotype)에는 인도지방 등에서 유래한 진성콜레라균(Classical)과 이의 생물학적 변이형인 엘토르(El Tor)형이 있으며, 주요 혈청군으로는 O1과 1992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발견된 O139(V. cholerae Bengal)가 있음. 공통으로 편모(H)항원을 가지며, 군체(O)항원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혈청군으로 분류됨. O1 혈청군은 다시 Ogawa형, Inaba형, Hikoshima형의 세가지 혈청형으로 분류됨. pH 6.0 이하나 56℃에서 15분간 가열하면 균이 죽는다. 끓는 물에서는 순간적으로 죽으며, 실온에서는 약 2주, 물에서는 수일간, 그리고 하천과 해수에서는 더 오래 생존함. 냉장이나 냉동상태에서는 증식되지는 않으나 균이 죽지 않음.

㉡ 전파양식

- 콜레라균은 주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과일, 채소 특히 연안에서 잡히는 어패류를 먹어 감염되며, 장례식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집단발생이 일어날 수 있음.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속에 배설된 콜레라균에 의해 경구감염도 가능함. 환자의 균 배출기간은 약 2-3일 정도로 짧고, 감염에는 1억-1000억개에 이르는 많은 수의 균이 필요하므로 직접 접촉전파는 유행에 큰 구실을 하지 못함. 잠복기는 6시간에서 길게는 5일정도이며, 대개 24시간 내외에 발생함.

㉢ 증상 및 증후

- 전형적인 증상은 잠복기가 지난 후 과다한 물설사가 갑자기 시작되고, 구토가 동반될 수 있으며, 설사로 인한 순환기계 허탈 증세와 쇼크를 나타낼 수 있음. 보통 복통은 없음. 심한 경우 쌀뜨물 같은 설사와 함께 구토, 발열, 복부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극심한 설사로 인해 심한 탈수현상을 초래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음. 무증상 감염자나 만성보균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El Tor형은 무증상 또는 경미한 감염의 빈도가 높다. 치료하지 않는 경우 전형적인 환자의 25-50%에서 치명적일 수 있으나, 최근의 El Tor 형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경우 사망률은 1% 미만임.

㉔ 진단 및 치료

○ 전형적인 임상 증상, 위험지역으로의 여행력 및 실험실적 검사를 근거로 진단함. 설사변, 구토물, 직장에서 채변한 검체에서 콜레라균을 분리, 배양하여 확진하며, 면역혈청학적 시험, 박테리오파아지형별 등이 진단에 이용됨. 콜레라 환자는 격리하여 치료함. 콜레라에 의한 설사 환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치료가 부족한 수액 및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임. 가능하면 경구로 보충수액을 섭취하도록 하며, 심한 경우에 한하여 수액주사를 사용함. 항생제 사용은 병의 중증도를 경감시키고 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어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8세 미만 : 박트림이나 에리스로마이신
- 8세 이상 : 테트라사이클린(500 mg을 1일 4회), 독시싸이클린(300 mg 1회), 시프로플록사신(1 g, 1일 1회 또는 250 mg, 1일 1회), 박트림(TMP 160 mg-SMX 800 mg, 1일 2회), 3일간 투여
- 임신부 : 에리스로마이신

㉕ 환자 관리

○ 환자는 격리치료하며, 장내배설물에 대한 철저한 격리가 필요함. 현재는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격리하고 있음. 환자 또는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은 3% 크레졸로 소독해야 함.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면 장기 보균이 드물기 때문에 추적 배양검사는 필요 없음. 확진된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음식물, 식수를 같이 섭취한 공동폭로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5일간 발병여부를 감시해야 함. 예방적 화학요법은 2차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해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독시사이클린을 3일간 투여해야 함.

㉖ 예 방

○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의 섭취를 금하는 것임.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음식물을 준비하거나 취급할 때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먹어야 함.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특히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손을 씻어야 함.

㉔ 예방접종

- 예방접종은 면역효과가 불충분하고 비용효과가 낮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고 있음. 현재의 사균백신은 단기간(3-6개월)동안 부분적인 효과(50%)에 그친다. 불현성감염은 방지하지 못하고 유행억제를 위해서는 별로 유용하지 못함. 현재 새로운 경구백신이 연구개발중에 있으며, 약독생백신은 사용되고 있음.

㉕ 전염병 신고

- 1)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2) 신고시기 : 즉시 신고
-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콜레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대변, 구토물 등)에서 *V. cholerae* O1·O139 분리동정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콜레라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해당 병원체가 분리동정된 자

② 페스트

㉖ 병원체

- 페스트는 *Yersinia pestis*균에 의한 급성 열성 전염병임.

㉗ 전파양식

- 페스트는 원래 쥐벼룩에 의해 야생설치류에서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감염된 쥐벼룩에 물려 감염되며, 감염된 야생동물을 취급하거나 페스트 환자가 배출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 될 수 있음. 림프절 페스트와 패혈증 페스트의 잠복기는 1-6일이며, 페스트의 잠복기는 1-3일임.

㉘ 증상 및 증후

- 림프절 페스트는 쥐벼룩에 물린 다음 1~6일 후에 물린 자리에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 종창,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빈맥, 저혈압 등이 나타남. 페스트는 패혈증

페스트에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나거나 폐 페스트 환자가 배출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 (잠복기 : 1~3일)되며 폐렴증세와 오한을 동반한 발열, 두통, 객혈 등이 나타남. 폐 혈증 페스트는 1~6일의 잠복기 후에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하여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파종성혈관내응고, 급성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쇼크로 진행되는 치명적인 경과를 보임. 합병증은 치료지연시 파종성 혈관내응고, 급성 호흡부전, 뇌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㉔ 진단 및 치료

- 림프절, 혈액, 가래 등에서 *Y. pestis* 분리 동정하여 확진할 수 있음. 폐혈증페스트는 일반혈액도말검사서 특징적인 간균(bacilli) 관찰이 가능하며, 수막염 환자의 경우는 뇌척수액검사에서 다형핵백혈구의 증가와 특징적인 간균 관찰이 가능함. 항체검사로 항체의 4배 이상 증가, 또는 감소로 진단할 수 있음. 치료는 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 박트림 등의 항생제를 투여하며, 항균요법은 발병한지 15 시간 이내에 시작해야만 효과가 있음. 보통 10일 정도의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며, 임상적 호전이 있을 후 최소한 3일 이상 투여해야함.

㉕ 환자 관리

- 폐 페스트는 항생제 치료 개시 후 48시간까지 철저한 호흡기 격리를 함. 림프절 페스트는 치료 개시 후 48시간까지 환자 분비물 격리를 함.

㉖ 예 방

- 페스트는 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예방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서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임. 폐(肺)페스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나 근접접촉(close contact) 한 사람은 예방목적으로 7일간 Tetracycline이나 chloramphenicol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함.

㉗ 예방접종

- 백신은 예방 효과가 불충분하여서 일반인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페스트균에 노출위험성이 많은 실험실 요원과 페스트 감염 위험 직업에 종사 하는 자에게 권장됨.

㉘ 전염병 신고

- 1) 신고범위 : 환자

2) 신고시기 : 즉시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페스트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림프절, 혈액, 객담, 뇌척수액 등)에서 균 분리동정

③ 황열

가 병원체

- Flaviviridae과의 flavivirus속, yellow fever virus

나 전파양식

- 바이러스를 가지는 모기에 물렸을 때에 감염되는데 정글형과 도시형의 2가지 전파양식이 있음. 정글형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열대지역에서 모기-윙충이의 순환고리로 유지되는 것으로, 인간은 숲 속에서 감염되는 기회 숙주임. 도시형은 인간-A.aegypti의 순환고리로 유지됨. 예전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지만, 근래에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자이레, 탄자니아에 이르기까지 유행지역이 형성되어 있음.

다 증상 및 증후

- 잠복기간은 3~6일간이며 갑작스럽게 발열, 오한, 두통, 요통, 전신 근육통, 허탈,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상대적 서맥이 특징임. 황달은 초기에는 경미하지만 진행되면 심해지고, 단백뇨나 무뇨도 생길 수 있음. 백혈구 감소는 초기부터 나타나지만 제 5일째에 가장 현저해짐. 대부분은 이 시기를 지나면 회복됨. 일부는 수 시간 ~수일의 회복기 후에 예후가 불량한 출혈경향이 있는 중독 증상기에 들어가며, 비강출혈, 잇몸출혈, 각혈이나 혈변, 간부전, 신부전을 초래함. 증상이 생긴 후 7~10일 사이에 쇼크와 혼수로 사망하는데, 황달이 생긴 경우 사망률은 20~50%에 이른다. 유행지역의 전체 사망률은 5% 이하로 경증형도 많음.

라 진단 및 치료

-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혈액과 간조직에서 각각 ELISA법과 특이항체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함. 검체에서 PCR법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도 있으며, IgM 특이항체를 검출하거나 연속하여 채취한 혈청에서 항체가의 증가로 진단할 수 있음. 특별한 치료법은 없음.

㉞ 환자 관리

- 국제 검역전염병으로 WHO 감시하에 있음. 증상이 생긴 후 적어도 5일간은 모기에 게 물리지 않도록 함. 환자와 거주지 근처에 살충제를 뿌리고, 다른 감염자가 없는지 조사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접종함.
- 유행지에서 원숭이류는 적어도 7일간은 검역소에 둬.

㉟ 예 방

- 모기가 생기는 장소를 줄이는 등 모기 예방을 하고, 모기에 게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이나 곤충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주의함. (유행지에서는 환자를 모기장속에 수용함.)
- 연령이 9개월 이상이면 약독화 생백신을 투여함. 한번 투여로 99%에서 평생면역(적어도 30~35년간)이 생긴다. 항체는 투여 후 7~10일이면 나타남. 유행지역에 가는 사람은 10년 이내의 접종 혹은 재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음. 9개월 이하에서는 백신에 의한 뇌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여하지 않음. 특히, 4개월 이하에서는 금기임. 생백신이 금기가 되는 경우는 황열병 생백신에도 적용됨. 태아에서 이상을 초래한 예는 보고가 없지만, 임신 초기에는 되도록 접종하지 않는 것이 좋음. 무증상 HIV감염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음.
- 아프리카와 남미의 유행지역에 가는 사람은 황열병의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며 증명서가 없으면 6일간의 검역기간이 필요함. 증명서는 백신접종 10일 후부터 10년간 유효함.

㊱ 예방접종

- 연령이 9개월 이상이면 약독화 생백신을 투여함. 한번 투여로 99%에서 평생면역(적어도 30~35년간)이 생긴다. 항체는 투여 후 7~10일이면 나타남. 유행지역에 가는 사람은 10년 이내의 접종 혹은 재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음. 9개월 이하에서는 백신에 의한 뇌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여하지 않음. 특히, 4개월 이하에서는 금기임. 생백신이 금기가 되는 경우는 황열병 생백신에도 적용됨. 태아에서 이상을 초래한 예는 보고가 없지만, 임신 초기에는 되도록 접종하지 않는 것이 좋음. 무증상 HIV감염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음.

㊲ 전염병 신고

- 1) 신고범위 : 환자
- 2) 신고시기 : 즉시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황열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
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검출
 -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④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병원체

-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전염병

㉡ 역학적 특징

○ 세계현황

- 조류 인플루엔자는 정상적으로는 조류에서 유행하는 질병이나 인간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일어났고 특히 1997년 홍콩과 2003년 이후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와 유럽국가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지부티, 이집트)에서 H5N1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2006년 9월 19일 현재 10개국 에서 247명이 발생하여 144명이 사망

- 국내현황 : 국내 인체 감염사례는 확인 된 바 없음

○ 전파경로

- 대부분의 인체감염사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며, 2006년 9월말 현재 매우 드물게 사람간의 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나 향후 바이러스의 변이 등을 통해 사람간의 전파가 용이해질 가능성도 있음

㉢ 임상적 소견

○ 잠복기

- 7일 (3 내지 10일)

○ 임상증상

-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Influenza-like illness)부터 안구감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까지 다양함

- 사망률 : 56%

㉠ 검사실 소견

○ 검사방법

- 검체(비·인후 도말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비·인후 도말 등)에서 유전자 검출 (두 가지 서로 다른 PCR target 이용)
 - 검체(비·인두 도말 등)에서 바이러스 항원 검출
 - 항체검사 : · 발증 후 7일 이내 채취한 급성기 혈청과 회복기 혈청에 대한 A/H5N1형 중화시험 결과 중화항체가의 4배 이상의 상승. (회복기 혈청의 중화항체가는 1:80 이상이어야 함)
- 발증 14일 이후에 채취한 단일 혈청에서 A/H5N1형 마이크로중화 항체가가 1:80 이상이며 다른 혈청검사 양성 결과 (예, 말 혈구를 이용한 혈구응집억제시험 항체가 1:160 이상 또는 H5 특이 웨스턴블롯 양성)

㉡ 검사의뢰방법

- ※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검체를 보냄
(담당부서-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 전화 02-380-2101~08, 모사전송 02-389-2014)
- 검체
- 배양검사 : 인후도찰물, 비강흡입물 등 호흡기 검체
 - 항체검사 : 발증 14일 이후에 채취한 단일 혈청이나 2주 간격의 paired 혈청
(1 ~ 2 mL)
- 운송 : 생물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 포장한 후 운송
- 배양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보내고 72시간 내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70℃에 보관하는 것이 좋음
 - 항체검사용 혈청 : 4℃를 유지하여 보냄

㉢ 치료

- 대증 치료
- 항바이러스제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환자관리

-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력이 낮고 사람간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 환자가 국소적으로 소수 발생하는 경우는 격리가 가능하나 이후 사람간 전파가 용이

해 질 경우 격리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되지 못함

- 생존률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 접촉자 관리

- 인플루엔자 유행 단계별 관리(2006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 참조)

㉠ 예방

○ 유행 바이러스 주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

○ 손씻기 등 개인위생 강화, 의료인의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병원체

-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는 2002년 11월 부터 중국 광둥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전염병으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을 보이는 증후군임.

㉢ 전파양식

- 사스의 전파는 주로 비말(작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사스 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배출되는 호흡기 비말에 의해 전파가 됨.. 또한 환자의 체액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음. 따라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함.

<사스 역학적 특징>

- 병원감염이 사스 유행의 특징이었음
- 환자의 대부분은 성인이며, 소아에서도 드물게 발병함
- 평균 잠복기는 5일임(2~10일, 더 길게 보고된 경우도 있음)
- 발병전에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음

㉔ 증상 및 증후

○ 발병 첫째주

- 처음에는 인플루엔자 의사 증상이 발생함
- 주요 증상은 발열, 권태감,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이며, 특이적인 증상이나 증후는 없음
- 발열이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초기에 발열이 없을 수도 있음

○ 발병 둘째주

- 기침(초기에는 객담없는 마른 기침), 호흡곤란, 설사가 발병 첫 주에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발병 2주째에 흔하게 나타남
- 중증 환자는 급속히 호흡부전이 진행되어 약 20%에서는 집중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산소부족을 겪게 됨
- 많은 환자에서 혈액 또는 점액이 없는 대량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고함
- 전염은 주로 두번째 주에 발생함

○ 노인, 소아, 임신부의 사스

- 노인 : 발열이 없거나 혹은 세균성 패혈증/폐렴이 동반되는 등 비전형적인 증상이 문제가 되었음. 만성질환이 있고 보건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함에 따라 병원감염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커짐
- 소아 : 사스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였고, 증상도 경미하였음
- 임신부 : 사스에 감염되면 임신초기에는 유산이 될 수 있으며, 임신후기에는 모성사망을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짐

○ 임상결과

-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사스의 치명률은 연령군에 따라서 0%에서 50%이상으로 추정되며, 전반적인 사스 치명률은 약 11%로 추정됨
- 치명률이 높은 경우는 남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임

○ 방사선 소견

- 대부분 환자들은 발병초기 3-4일에 호흡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부방사선 또는 CT소견상 변화가 관찰되었음. 전형적인 소견으로는 일측성 말초부위에 반점형 경화(patchy consolidation)소견을 보이다가 다발성 병변 또는 젓빛유리모양(ground-glass appearance) 소견을 보임. 일부 부위는 편위(shifting 소견을 보임.
- 발병 후기에는 가끔 자연적 기흉, 기종격동(pneumomediastinum), 흉막하 섬유증

(sub-pleural fibrosis) 그리고/혹은 낭성변화(cystic change)를 보임

○ 혈액학적, 생화학적 소견

- 사스에 특이적인 혈액학적 또는 생화학적 지표는 없음. 그러나 여러 연구를 통하여 다음 소견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1) 혈액학적 소견

- 림프구감소증(lymphopenia)이 가장 흔한 소견이며, 발병기간동안 진행됨
- 때로 혈소판감소증(thrombocytopenia)과 APTT 지연 소견이 관찰됨

2) 생화학적 소견

- 흔히 LDH가 증가하며, 어떤 보고에서는 LDH 증가가 불량한 예후와 관련있다고 제시함
- ALT, AST, CPK의 상승이 보고됨
- 또한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저칼슘혈증과 같은 비정상적인 혈청 전해질이 증상 발현 동안 혹은 입원기간동안 보고됨

㉔ 진단 및 치료

○ 사스 발생이 없는 단계 사례정의

1) 추정환자(Probable case)

① 임상적 기준에서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i) 발열($\geq 38^{\circ}\text{C}$)이 있으면서 (AND)

(ii) 하부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숨참)이 1개 이상 있으면서 (AND)

(iii) 방사선소견상 폐렴 또는 호흡곤란증후군(RDS)에 부합되는 폐침윤소견이 있거나 (OR), 부검 소견상 특별한 원인없이 폐렴 또는 호흡곤란증후군(RDS)의 병리소견을 보이면서 (AND)

(iv) 해당 질환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진단이 없는 경우

② 실험실적 기준이 양성인 경우

○ 사스발생단계(사스 주의/경보/비상단계)의 사례정의

1) 추정환자(Probable case)

다음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① 임상적 기준에서 원인불명의 중증 호흡기질환을 보이며

- (i) 38도 이상 발열이 있으면서(AND)
- (ii)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저산소증)이 하나 이상 있으면서(AND)
- (iii) 다음중 1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 방사선학적으로 폐렴 소견이 있거나
 - 호흡부전증(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 있거나
 - 특별한 원인없이 폐렴이나 호흡부전증에 부합하는 부검소견을 보이는 경우
- ② 역학적 기준을 충족하며
 - 발병전 10일이내에 사스감염위험지역의 여행력(환승 포함)이 있거나 (OR)
 - 발병전 10일이내에 사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 ③ 실험실적 기준이 양성 또는 미확인(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진행중인 경우)

2) 의심환자(Suspect cases)

다음 2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 ① 임상적 기준에서 원인불명의 중등증 호흡기질환을 보이며
 - (i) 38도 이상 발열이 있으면서(AND)
 - (ii) 호흡기질환 임상소견(기침, 호흡곤란, 저산소증)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② 역학적 기준을 충족하며
 - 발병전 10일이내에 사스감염위험지역의 여행력(환승 포함)이 있거나 (OR)
 - 발병전 10일이내에 사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 ③ 실험실적 기준이 양성 또는 미확인(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진행중인 경우)

○ <실험실적 사례정의(Laboratory case definition of SARS) : 양성>

임상적으로 사스가 의심되면서 다음의 실험실적 진단기준에서 1개 이상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

- (1) PCR 양성 : 정확한 방법에 의해 PCR이 양성인 경우
 - 적어도 두종류의 다른 임상검체에서 양성이거나(예를 들어 비인두도말과 대변)
 - 동일한 임상검체에 대해 질병의 이환기간 동안 2회 이상 양성이거나
 - 원래의 임상검체에서 추출한 새로운 RNA추출물을 이용하여 PCR을 반복검사하거나 두가지 다른 분석법을 사용한 경우
- (2) 혈청검사 양성(Seroconversion by ELISA or IFA)
 - 급성기 혈청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회복기 혈청검사에서 양성으로 양전되었거나
 -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검사에서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한 경우

(3) 바이러스 분리(Virus isolation)

- 임상검체의 세포배양검사에서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가 분리되었으며, AND PCR 확인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 환자 관리

- 사스의심 또는 추정환자는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지정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됨.
-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격리와 관리가 필요함.

㉮ 예 방

- 아직까지는 백신이나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 예방을 위해서는

- 1) 감염위험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
- 2) 손씻기를 철저히 하여 직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함.

㉮ 예방접종

- 아직까지 백신이나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4) 전염병별 검역조사 쟁점

- 전염병별 검역조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각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vector**에 대한 고찰임. 따라서 어떠한 **vector**가 검역대상전염병이나 기타 중요한 전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르는 **vector control**이 검역업무에서 중요한 영역이 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매개체로 볼 수 있는 것이 쥐, 곤충(해충), 인간, **ballast water**, 음용수, 하수등을 들 수 있음.
- 호주 보건복지부(DoHA)는 이러한 매개체를 주로 쥐, 모기 및 인간이라고 판단함. 이러한 매개체가 전염시키는 질병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매개체	전파되는 질병
쥐	페스트 라싸열 크레미안-콩고열
모기	황열 웨스트나일열 리프트밸리열 뎡기열
인간	천연두 폴리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SARS 국제적 질병 전파 우려가 있는 잠재적인 병원체

- 동물성 매개체(쥐, 모기)를 통제 및 조사하고 인간 전염병 매개체에 대한 검역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
- 인간 전염병 매개체에 대한 관리는 사전 도착 보고서 및 검역관의 관찰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다음은 호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매개체별 조사 기준임

① 쥐매개체

- 쥐 침입 단계는 다음을 사용하여 증명서에 기록되어야 함⁷⁾

7) AQI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Routine Vessel Inspection (Attachment 10, Table 1 : 쥐 표식의 존재)

단계	지표
Nil	새로운 쥐똥이 없거나 모든 살아있는 쥐가 발견되지 않음
Nil	오래된 쥐똥 및 사용되지 않은 등지만 있을 것
적음	2 장소 이상에서 새로운 생쥐(mouse) 똥
중간	2 장소 이상에서 새로운 쥐(rat) 똥
많음	3 장소 이상에서 새로운 생쥐 또는 쥐 똥/ 살아있는 생쥐 또는 쥐 발견

② 곤충매개

- 모기 및 고인 단물에 있는 그 번식지는 관리되어야 함. 모기 침입 단계는 다음을 사용하여 증명서에 기록되어야 함.⁸⁾

단계	지표
Nil	어느 장소에서도 살아있는 모기가 발견되지 않음
적음	2 이하의 장소 또는 오염장소에서 발견된 1-50 마리의 모기 (Aedes aegypti 또는 Aedes albopictus 제외)
중간	한 장소에서 50마리 이상 또는 3이상의 장소 또는 오염장소에서 1-50 마리의 모기
중간	1마리 이상의 Aedes aegypti 또는 Aedes albopictus 종 모기
많음	2 이상의 장소에서 51마리 이상의 모리

③ 세균성 전염병 (음식매개, 음용수매개)

- 호주 검역당국은 세균성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음식과 음용수로 파악하고 운송수단 내(특히 선박 위생)의 다음 시설 - Ballast Tanks, 음용수탱크, 하수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Ballast Tanks

- 콜레라의 잠재적 매개체가 되는 곳으로 파악됨
- Vibrio cholerae를 포함한 뱌러스트 물이 조개 방목장 근처에 가져가 버릴 경우, 이것은 잠재적으로 인간에게 콜레라를 전염시킬 수 있다고 보고됨. 따라서 함부로 뱌러스트 물을 버리는 것은 제한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검역관은 선박의 뱌러스트

8) AQI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Routine Vessel Inspection (Attachment 10, Table : 바퀴벌레를 제외한 벌레 표시의 존재)

일지를 검사해야 할 것임.

- 선박의 장은 AQIS 밸러스트 관리 안내에 따라야 하고, 정확하게 밸러스트 일지를 기록하고 밸러스트 물 관리를 수행해야 함. 선박의 장이 지시에 위반하여, 항구에 위험성이 큰 밸러스트 물을 버린 경우, 선박위생관리증명서가 발부되어야 함

□ 음용수

- 음용수는 잠재적인 콜레라 매개체이며 많은 기타 수인성 질병의 매개체임. 특히, 음용수탱크는 부적절하게 건조된 경우, 모기 출처가 될 수 있음
- SOLAS 협약 요건에 기반한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IMO) 건조 증명서를 구하여 음용수 탱크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심사함. 선박은 해당 선박의 종류에 따른 국제 요건을 만족시키고, 승객 및 승무원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적절한 시설을 선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검역관은 배의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IMO) 건조 증명서가 갱신되었음을 확인해야 함. IMO 건조 증명서는 배의 국적 등록을 하는 당국이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ociety(예를 들어 Lloyd's Register, American Bureau of Shipping, Bureau Veritas 등)에서 관리함
- 각국은 SOLAS 협약에 관한 자국의 입법 수단을 가지고 있음. 호주의 경우, 각 선박은 다음의 문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선박의 장은 IMO 건조 기준에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제시 요청받음.

화물선	화물선 안전 건조 증명서
여객선	여객선 조사 증명서
어 선	어선 조사 증명서
일부 화물선	화물선 조사 증명서

- 해당 증명서는 5년동안 유효하며, 매 12달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 갱신 기간은 발급일 전후 3달 이내이며, 따라서 증명서는 마지막 배서일로부터 15개월간 유효함

□ 하수

- 호주에서는 선내의 하수에 관하여는 특정 증명서가 현재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2008년 10월에 모든 국제 선박은 MARPOL International Sewage Pollution Prevention (ISPP) 증명서를 보유하도록 요구될 것임

④ 인간매개

- 검역당국의 인간 검역 활동 (특히 사전 선박 도착 보고서(QPAR) 및 환자 체크리스트(PIC)은 인간 매개체를 발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됨
-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숙지되어야 할 증상 및 징후 관련 정보를 교육 및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증상및 징후와 이에 따른 질환분류

검역의 초기 단계에서 검역대상자를 검역하게 되는 검역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이 아님. 따라서 초기에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진료와 진단을 내릴 수 없음. 또한 의료인이라하더라도 현장에서 대상질환을 직접 확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앞으로 검역업무에 있어 의료인의 투입과 확진 장비가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우선 각 개별 검역관이 대상자의 증상과 징후를 파악하여 어느 정도 질병 분류에 따른 검역전염병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조기에 대처를 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요한 증상에 따른 질병군을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수 있음.

① 열

- .감염(바이러스,세균,마이코박테리아,곰팡이,기생충)
- .신생물(임파종양,백혈병,신장암,간암)
- .결합조직질환(SLE,혈관염,류마티스,측두동맥염)
- .열사병
- .악성고열
- .갑상선중독발작
- .약물

② 호흡곤란:

- 후두, 기관지의 감염 및 이물질,
- 종양,COPD, 천식,폐색전증,폐암,폐허탈,
- 기흉,흉수,혈흉,일산화탄소중독,호흡에 따른 통증, 심장성 폐부종, 급성 심근경색,
- 심낭압전,빈혈,복부팽만,불안

③기침:

- 급성: 기관지염, 폐렴, 부비동염, 폐부종, 이물질, 독성물질흡입, 알러지, 인두염(바이러스, 세균), 천식, 위식도역류, ACE억제제(혈압약), 귀의이물이나 이지
- 만성: 기관지염(흡연), 만성부비동염, 기종, 암(기관지, 두경부, 식도), TB, 유육종증, 곰팡이감염,
- 기관지확장증, 종격동 임파선질환, 흉부동맥류, 위식도역류, ACE억제제(혈압약)

④구토:

- 충수돌기염, 급성담낭염, 급성담낭질환, 위궤양, 위염, 췌장염, 위팽만(당뇨성 무긴장증, 유문폐쇄)장폐쇄, 복막염, 장염(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급성전신성 감염(특히 아동), 간염, 독소(음식물), 중추신경계질환(뇌압상승이 두통 없이 구토를 유발하기도 한다: 종양, 출혈성뇌질환, 수두증, 뇌막염, 전정미로염, 메니에르병, 편두통), 급성심근경색, 심부전, 내분비질환(당뇨성케톤산증, 부신발증), 고칼슘증, 고칼륨증, 저칼륨증, 신우신염, 신장결석, 요독증, 간부전, 임신, 골반내염증, 약물, 심리성, 포피린증, 방사능치료

⑤복통:

- 불특정광범위 통증: 장 혈관협착, 초기충수돌기염, 장염, 당뇨성 케톤산증, 선천성 혈관부종, 위장염, 장간막혈전증, 장간막 임파선종, 복막염, 포피린증, 지중해성빈혈, 요독증, 신결석, 신경색, 췌장염, 위상단: 좌상단, 하복부, 우하단 각각 통증부위따라 대동맥파열, 담낭질환, 간염, 신농양, 십이지장궤양, 췌장염, 등.

⑥설사:

- 정상 일3회-주3회(1일정상배설량:20-250g)
- 급성설사:90%는 감염성(바이러스, 세균기생충), 약제(항생제, 콜린성제제, 마그네슘함유 제산제, quinidine, reserpine, guanethine, metoclopramide, bethanechol)나 독소(음식물등), 충수돌기염, 계실염, 위장관출혈, 허혈성장질환, 음식물불내성, 변폐쇄, 위막성 장염등

⑦만성설사:

- 위절제술이나 미주신경절제술후, 줄링거엘리슨증후군, 국소장염, 궤양성장염, 흡수장애, 계실염, 악성종양, 선종, 가스트린분비종양, 장의 림프종, 기능성대장증상, 위막성장염, 내분비 질환, 방사선장염, Whipple's disease, 아밀로이드증, AIDS

⑧두통:

- 군발성, 긴장성, 편두통, 외상성, 운동성, 혈관성(고혈압, 생리), 안구긴장, 녹내장, 치통, 악관절기능부전, 뇌종양, 뇌막염, 삼차신경통, 측두동맥염, 저혈당, 혈관염, 약물(혈관확장제), 부비동염, 등

⑨혈변:

- 소화기장관출혈, 치질, 게실염, 혈관이형성, 폴립, 악성종양, 염증성장질환, 허혈성 장염

(5) 전염병 검역조사 표준안

- 검역대상전염병이 의심되거나 혹은 검역대상자의 증상과 상태로 보아 의료적 접근이 요구되거나 검역현장에서 의료인의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빠른 조치를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문진유형을 검역관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검역과 관련된 조치나 의료적 조치를 예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보의 파악은 유선상으로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조기의 대처를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전염병 검역 조사 방법
1. 간단한 문진과 신체검진 ① 본인확인 : 이름/나이/성별 ② 증C) : 어디가 아프세요?(언제부터) ③ 현병력(P상(CI): 언제부터 그러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말씀해보세요 어디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동반증상은 더 아프던지/ 덜 아플때 증상의 양상: 계속, 간헐적, 점점 더, 점점 덜 약먹었으면 그 뒤의 변화: 약드시고 어떠세요

2. 과거력(Past medical Hx) ① 진단력: 뭐 특별히 병같은 것 있으세요. 혈압이나 당뇨, 알레르기 ② 섭취력: 뭐 특별히 드신 것 있으세요 ③ 여행/방문력: 어디 특별히 다녀오신데 있으세요(itinerary확인과 함께) ④ 복용력: 약드시는 것 있으세요 ⑤ 병원력: 최근 병원내원력이나 검사력:최근(기간)에 병원 가신 적 있으세요 3. 증상의 확인 증상 및 징후와 이에 따른 질환분류참조 4. 신체검진 ① 발열확인:귀체온계 ② 맥박:손목외측 요골동맥 ③ 호흡횟수 ④ 의식 :말귀 잘 못알아듣는다(눈뜬다/못뜬다) /반응없음. ⑤ 흉부/복부: 전/후/좌/우/상/하단
참고 사항
전염병분류 1군 전염병 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장티푸스/콜레라/파라티푸스/페스트 2군 전염병 B형 간염/디프테리아/백일해/수두/유행성이하선염/일본뇌염/파상풍/폴리오/풍진/홍역 3군 전염병 결핵/공수병/레지오넬라증/렙토스피라증/발진열/브루셀라증/비브리오패혈증/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신증후군출혈열/인플루엔자/쯔쯔가무시증/탄저/한센병/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 4군 전염병 뎅기열/두창/라싸열/리슈마니아증/마버그열/바베시아증/보툴리눔독소증/신종전염병증후군 아프리카수면병/야토병/에볼라열/요우스/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주혈흡충증/중증급성호

흡기증후군(SARS)/큐열/크립토포리디움증/핀타/황열

지정 전염병

A형 간염/C형 간염/광동주혈선충증/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노로바이러스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마실루스세레우스균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사상충증/살모넬라균감염증/샤가스병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예르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유극악구충증/이질아메바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캠필로박터균 감염증/크로이츠펔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클로스트리듐 퍼프리젠스 감염증/포충증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

❖ 호주의 입국 질병 체크 리스트

- 호주는 검역질환에 대한 감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승객들 및 검역관들로 하여금 활용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전염병 검역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병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물론, 검역질환 의심자에 대한 사전 검역 조사의 일환으로 검역관의 업무 도구로도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입국자를 위한 질병 체크리스트9)

질문1, 2나 3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도, 검역질환이나 주요한 질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의심되면 검역관은 의사와 연락을 취하여 문제가 있는 통과객에 대한 조치를 위한 지시나 대처방법의 자문을 구하여야 함.

황열

질문1. 해당 통과객이 지난 6일내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예 > 질문 2로 가시오

아니오 > 질문 4로 가시오

질문2. 해당 통과객이 황열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예 > 질문 3로 가시오

아니오 > 질문 4로 가시오

질문3. 해당 통과객이 황열오염국가로 선언된 국가를 지난 6일내에 방문한적이 있고,
아래 증상을 호소하는가?

발열/오한/두통/요통/전신근육통/오심/구토

예 > 통과객의 황열감염가능성이 있음.

아니오 > 질문 4로 가시오

바이러스성 출혈열(VHF)

질문4. 해당 통과객이 지난 21내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예 > 질문 5로 가시오

아니오 > 질문 6로 가시오

질문5. 해당 통과객이 아래 증상 대부분을 호소하는가?

출혈, 열, 두통, 인후두통증, 근육통, 위통, 피부발진, 설사, 구토

예 > **Action** **검역관**에게 연락

아니오 > 질문 6로 가시오

페스트

질문6. 해당통과객이 아래 증상 대부분을 호소하는가?

열, 두통, 인후두통증, 오한, 근육통, 구역, 사타구니, 겨드랑이, 목주위에 통증있는
종창이 있는가?

예 > 질문 7로 가시오

아니오 > 질문 8로 가시오

질문7. 해당 통과객이 지난 7일내에 미국남서부, 멕시코,베트남,미얀마,러시아,카자흐스탄,
몽골,브라질,페루,볼리비아,중국,인도네시아,동부, 남부 아프리카를 여행한적 있는가?

예 > 통과객이 페스트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Action **검역관**에게 연락

아니오 > 질문 8로 가시오

SARS및 고병원성 AI

질문8. 통과객이 잦은 호흡, 호흡곤란, 기침과 같은 호흡기증상을 동반하면서 38도이상의
고 열이 있는가?

예 > 질문 9로 가시오

아니오 > 검역질환가능성이 낮아다.

질문9. 해당 통과객이 a) 지난 10일간 WHO에 의해 SARS우려가 있다고 선언한 국가나
중국을 여행하였거나 b) 지난7일내에 아시아나 동부 유럽 혹은 사람이나 동물에
고병원성인 AI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적이 있는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는가?

예 > SARS나 고병원성 AI가능성이 있음.

Action 검역관에게 연락. 해당여행객의 상태가 심각하다면, 해당 통
과객을 의료설비를 갖추어 격리해야함.

아니오 > 검역질환가능성이 낮다.

나.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표준안

(1) 쟁점

- 현재 검역조사 및 소독기준의 경우, 1900년대 초반에 규정된 일본의 검역법에 근간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박에 치우쳐 만들어져 있으며, 항공기 및 기타 운송수단의 경우에는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추가되어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사람에 대한 검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항공기가 127,332명이 입국하고 있고, 선박의 경우에는 72,118명이 입국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는 항공기를 통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2007년 기준 89,597명이 검역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선박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공기 및 차량 등 운송수단 별 검역조사 표준안 및 소독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항공기의 경우 소독을 잘못하게 되면 비행기의 부식을 가져올 수도 있어 소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사별로 따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국가에서 항공기에 대한 소독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소독명령을 내리고 관리해야 할 것임

(2) 운송수단별 특징

- 운송수단별 특징에 대한 고찰은 검역에 있어 앞서의 질병별 고찰과 더불어,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고찰임. 근대 검역의 시작이 장기간의 항해를 마친 후에 항구로 들어오는 선원들이나 승객의 원인불명의 고열이나 설사가 주요한 문제였다면, 현대 혹은 현재의 검역의 주안점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항공기를 통해 들어오는 승객들의 발열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근대의 검역에서는 검역현장에서의 검역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통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었지만, 현대의 경우는 시간적으로나 대상에 대한 통제권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어려움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검역업무의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적절히 해결하면서 검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결국 운송수단별로 적절한 가능성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음.

○ 검역질환(콜레라/황열/페스트, SARS/AI) 및 운송수단별(선박/항공/육로) 특징

	특징	세균성	바이러스성	기타
선박	승객수감소 물류수송위주 공간이 넓다	1.페스트(쥐벼룩) 1.콜레라(ballast water)	가능	바퀴벌레는검역질환 매개가능성낮음 대처시간에 일정여유가 있다
항공기	승객수 증가 여객수송위주 공간이 좁다	1.페스트(호흡기)	1.호흡기성바이러스질환 SARS,.AI 2.기타바이러스질환 황열(모기)및 기타 바이러스성전염병	사람간 호흡를 통한 감염 대처시간이 짧다
육로	증가(남북교류)			검역질환외 말라리아가능성

(3) 선박 검역조사

① 선박 검역조사 필요성

- IHR의 가입국으로,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IHR 메커니즘을 사용함.
IHR의 질병 확산 통제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국제 선박에 대한 감시와 조사임
- 선박은 항공기 및 차량에 비하여 점차 이용율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 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는 질병 매개체의 운송 수단.
- 인체 감염 조류 독감(HPAIH)과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와 같은 질병의 해외 창궐과 국제순항선 출항의 최근 증가는 호주 항구에 순항선이 들어올 때에 승객의 입국허가를 위한 확실한 검역 개입 과정을 요함.

② 호주 선박 위생 검역조사 중점 사항

- 선박 위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를 집중적으로 선박 검역 조사 대상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음

□ 주방

- 음식 준비 장소 및 식사 장소 포함
- 매개체의 존재, 매개체를 유인할 수 있는 상태를 조사함
- 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용기에 있는 식품 및 음식물 쓰레기의 존재

□ 식료품 저장소

- 매일 음식물을 보관하는 장소 (찬장과 벽장)
- 식료품 저장소의 밀봉되지 않은 음식은 쥐를 유인할 수 있음

□ 창고

- 음식이 보관된 건조한 창고, 벽장, 냉장실.
- 식품의 존재, 쥐를 유인 또는 은신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에의 상대적으로 적은 출입
- 모기도 선내에 운반되거나 일부 신선한 음식에 은신할 수 있음

□ 화물칸/화물

- 화물이 보관된 장소. 화물칸은 적은 출입과 고인 물의 존재로 매개체를 은신할 수 있음. 화물칸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매개체에게 적대적인 경향이 있음
- 화물 컨테이너도 매개체가 은신할 수 있음. 선박 위생 증명서에 직접 일부가 되지는 않음
- 화물칸이 실제로 검사할 수 없고, 화물칸에 쥐 또는 모기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경우, 매개체 표식 및 병원체 칸에 "N/A"를 기입함

□ 객실

- 관리자 및 승무원 객실 및 승객 객실 포함. 식당 구역 이외의 공용 장소 및 시설(세탁실, 화장실 등)
- 매개체를 유인하거나 은신하는 경향이 없는 출입이 잦은 지역이며, 모든 객실을 검사할 필요가 없음.

□ 갑판

- 이물화물창, 후미, 저장실, 덮힌 장소 및 로프 벽장 포함
- 이 장소는 매개체를 유인할 수 있는 조건 및 물질을 포함 (특히 고인물의 병원체나 쥐가 등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 엔진실

- 엔진 통로의 좁은 길 및 선체 공간을 포함. 그러한 장소의 온기는 쥐를 유인할 수 있음 (특히 추운 장소를 여행하는 선박의 경우)

□ 의료시설

- 의료 저장실, 선박의 병원/병실. 매개체와 병원체의 조사임.

□ 고인 물

- 배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고인 단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 고체 및 의료 폐기물

- 검역 폐기물은 쥐 또는 새가 접근가능해서는 안됨. 가장 적합한 시설은 잠겨진 폐기물실 또는 폐기물 보관 시설임

③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선박위생관리증명서 부분의 조사를 위한 지침¹⁰⁾

- WHO에서는 IHR(2005)를 개정하면서 도입된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에 대한 이용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선박 등 위생조사 표준안을 발표하였음
-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Part 1과 Part 2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Part 2는 대형 여객선 등의 경우 준수해야 할 위생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WHO의 Part 1. IHR(2005)의 부록 3의 조사 영역을 위한 안내선박 등 위생조사 표준안
1. 주방 : 음식 또는 매개체를 통한 국제적인 질병 확산의 예방 1.1 음식을 다루는 동안 사용되는 부엌 설비, 부속품 및 장비에 대한 일상적인 기본이 되는 청소 및 관리 계획이 있는가? 증거 : 먼지, 더러운 장비 정보를 얻기 위하여 청소 일지 확인 및, 승무원을 인터뷰할 것 1.2 주방일을 맡고 있는 승무원이 - 식품별로 요구되는 최고/최저 온도 요건 및 상호오염을 피하기 위한 절차와 같은 식품 보관 및 준비 방법이나 청소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가? 증거 : 식품 보관 및 준비에 대한 문제점, 주방 문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승무원을 인터뷰할 것 1.3 주방 승무원 개인의 위생이 깨끗하고, 손을 씻는 시기 및 방법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증거 : 손을 씻지 않는 것, 정확하지 않은 손 씻기 또는 불결한 행동 및 식품간의 상호 오염이 가능한 행동 후 손을 씻지 않는 것 1.4 주방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면장소가 최소 하나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적절한 물품(종이타월/핸드드라이어, 비누, 휴지통) 이 구비되어 있는가? 증거 : 위에 언급된 것들의 미비 1.5 주방기구, 냄비, 프라이팬 및 식품이 닿는 장비 부분이 적절히 청소되고 소독/살균되

10) Interim technical advice for inspection and issuance of ship sanitation certificates, WHO, 2007

는가?

증거 : 잔여물의 존재(물기, 기름기, 음식물 및 음식을 다루고 난 후의 기타 잔여물)

1.6 쥐 또는 곤충을 꼬이게 하는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가?

증거 : 장비 위, 테이블 밑의 음식물 찌꺼기

1.7 쥐 또는 곤충 질병 매개체/숙주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주방 공간이 있는가?

증거 : 쉽게 청소할 수 없어서 쥐 또는 곤충이 숨을 수 있는 더러운 장소

1.8 음식을 다루는 장소가 오직 요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가?

증거 : 관련없는 장비 또는 직원의 존재, 기타 선박 활동과의 비차단.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는 승무원을 인터뷰할 것

1.9 안전한 온수, 냉수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는가? 음식 준비 및 요리하는 동안 온수 및 냉수가 항상 제공되는가?

증거 : 음식 준비 및 요리하는 동안 주방에 온수 및 냉수 부족, 물 부족, 선내 또는 실험실 샘플 결과

1.10 주방일을 하는 승무원이 황달, 설사, 구토, 열, 감염된 피부 상처, 종기, 또는 코, 눈, 귀에서 나오는 고름과 같은 전염병 증상을 보이는가?

증거 : 선내에 있는 승무원, 또는 여행을 위한 승선 이전에 있었던 승무원에게 위에 기재된 증상이 있는 것. 질병 치료를 나타내는 의료 일지, 승무원 인터뷰 사용할 것

1.11 배기장치가 있는지, 주방 기구 및 주방 직원에게 적합한지?

증거 : 선박 바닥이나 벽에 눈에 보이는 수증기 물방울, 요리사들이 높은 열과 수증기로 심하게 땀을 흘리는 것, 수증기로 오염된 식품 또는 식품이 닿는 표면

1.12 조명이 적절히 제공되는가?

증거 : 식품 조리대 및 장비의 청결함을 조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오염 및 해충의 증거/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히 빛을 비춰져야 함.

1.13 모든 식품을 다루는 장소가 청소가 용이하고, 쥐나 곤충매개체/숙주의 은닉처가 되

지 않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불침투성 물질로 만들어졌는가?

증거 : 부적절한, 하자있거나 오염된 물질, 매개체-숙주의 존재

2. 식료품 저장소 및 창고 : 식품 및 매개체를 통한 국제적인 질병 확산의 예방

2.1 모든 식품 창고는 청소가 용이하고, 쥐나 곤충매개체/숙주의 은닉처가 되지 않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불침투성 물질로 만들어졌는가?

증거 : 부적절한, 하자있거나 오염된 물질, 매개체-숙주의 존재

2.2 음식은 바닥으로부터 (대략 6" 또는 15cm) 안전한 거리에 보관되고, 물의 유입 및 기타 잠재적인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는가?

증거 : 바닥에 닿은 음식 또는 바닥 위에 있을 경우에는, 고여있는 물이나 기타 오염원에 접촉

2.3 식품은 장시간동안 적정 온도 이외의 상태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썩기 쉬운 식품 보관을 위해 권고되는 전형적인 온도의 예는 다음과 같음.

2.3.1 따뜻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식품은 대체로 최소 62.8°C (145°F)의 온도의 뜨거운 상태에 위치해야 하고, 필요할 때까지 그 온도를 유지하여야 함.

2.3.2 모든 썩기 쉬운 식품이나 음료수는 준비하는 동안 또는 준비 후 바로 서빙하기 위한 순간을 제외하고, 4°C (40°F) 이하에서 보관함. 그러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때는, 4°C (40°F)가 적절함.

과일과 채소는 대체로 냉장실에 보관되어야 함. 이상적으로, 고기 및 생선은 주로 0 내지 3°C (32 내지 37°F)에 보관하고, 우유 및 유제품은 4°C (40°F), 과일과 채소는 7-10°C (45-50°F)에서 보관함.

많은 실제적인 목적을 으로 인하여, 냉장 공간이 제한된 경우, 고기 및 고기제품, 생선 및 어류 제품, 우유 및 유제품, 달걀과 달걀 제품은 5°C (41°F) 이하에서 저장될 수 있고, 과일과 채소는 10°C (50°F) 이하에서 저장될 수 있음.

2.3.3 냉동식품은 -12°C (10°F) 이하에서 보관된다.

증거 : 상한 음식, 너무 높은 온도.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승무원을 인터뷰하십시오.

2.4 음식이 불순물(화학 또는 기타 물질)없이 안전한가, 지방, 지역 또는 국가의 법과 규칙에 따른 출처로부터 음식을 얻었는가?

증거 : 식품불순물, 오염 또는 부패물의 존재, 지방, 지역 또는 국가의 법과 규칙에 따르지 않은 식품 출처

2.5 저장 시스템은 이물, 먼지, 유해한 증기, 불필요한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및 식품 간 오염을 예방해야만 함.

증거 : 식품 및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함께 저장된 다른 식품간의 접촉으로 인해 오염, 먼지, 유해한 증기, 불필요한 화학물질의 존재

3. 화물칸: 화물의 오염 또는 감염의 국제적인 확산 예방

3.1 모든 화물칸, 특히 소모품을 실은 부분은 물이나 곤충 또는 쥐 매개체와 기타 오염원, 감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화물칸은 소모품을 실은 경우에는 오염 또는 부패의 증거를 잘 관찰해야함.

증거 : 물이나 기타 오염원의 유입, 곤충, 쥐의 유입

3.2 화물칸은 보통 조사를 위해 비워져 있거나, ballast water나 기타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화물칸 조사가 가능한 상태 혹은 그렇게 처리된 상태로 있어야 함.

증거 : 화물칸에 화물 및 기타 물질의 존재는 조사의 방해가 될 수 있음.

4. 처소, 승무원 및 직원 : 사람과 사람 간의 국제적인 질병 확산의 예방

4.1 승무원의 처소는 승무원의 숙박시설 및 음식과 음식조달에 관한 ILO 협약에 담겨진 승무원 숙박시설의 협약을 준수하여야 함.

승무원의 처소는 벌레 또는 쥐의 은신처를 제공해서는 안되고(만약 국지적인 매개체 및 감염원의 침입이 존재한다면, 객실 외부의 감시가 고려되어야 함.), 깨끗하고 환해야 함.

증거 : 벌레 및 쥐의 존재, 선실 밖의 매개체 방어 감시책의 미비(만약 필요한 경우, 또는 적절한 매개체가 방어되는 경우, 매개체 및 감염원의 국지적 오염), 불충분한 조명 및 청소

4.2 승무원의 병은 의료 일지에 기록되어야 함.

증거 : 승무원의 질병이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경우, 승무원을 인터뷰하거나 만약 서면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선박건강상태신고서를 요청하라.

5. 음용수

5.1 모든 탱크, 수도관, 밸브, 음용수를 다루기 위한 장비는 그 목적을 위해 독점되어야 하며, “음용수 전용”이라는 꼬리표를 명확히 붙여야 함. 배관에 컬러 부호가 사용될 수 있음.

증거 : 음용수를 다루기 위한 것을 나타내지 않거나, 이 목적을 잘 확인하기 어려운 탱크, 수도관, 밸브, 장비. 비음용수에 연결된 음용수도관

5.2 음용수 탱크는 선체 또는 비음용수나 기타 액체 또는 물질을 담은 탱크나 배관으로 구분되어서는 안된다.

증거 : 상호 오염의 존재 또는 비음용수나 기타 액체 또는 물질을 담은 다른 탱크나 배관과 격리되지 않은 음용수 탱크 벽

5.3 음용수 탱크는 내부에 보관된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물질을 건조되어야 함.

증거 : 물 탱크를 건조하는데 사용된 물질 때문에, 물탱크의 물질 또는 관리하기 어려운 높은 위험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존재

5.4 음용수는 먼지, 벌레, 쥐 또는 기타 오염원이나 과도한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위치해야 함.

증거 : 먼지, 벌레, 쥐 또는 기타 오염원이나 과도한 열의 존재

5.5 음용수 탱크는 용이한 조사 및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접근을 위한 조사 덮개를 가져야 하며, 독립적인 배수 시스템을 갖춰야 함.

증거 : 청소와 관리를 위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사 덮개 및 독립 배수 시스템의 부재, 먼지 또는 기타 잔류물의 존재

5.6 음용수 시스템은 세균 및 기타 오염원을 적절히 제거하기 위하여 할로겐화/염소화

시스템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해야 함.

증거 : 세균 및 기타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부재

5.7 물을 싣을 때, 수질검사보고서를 요청해야하며, 선내 수질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선내 검사 키트는 항구 수질 보고서를 얻을 수 없을 경우, 수질검사 표준 방법을 충족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음.

증거 : 정기적인 수질검사보고서 또는 선내 검사 키트의 결과 기록 부재

5.8 음용수 시스템은 “역류” 예방 설비가 설치되어야 함.

증거 : 오염의 존재 및 역류 예방 설비의 부재

6. 하수: 누수 또는 침수를 통해 승무원 오염으로 인한 국제적인 질병 확산 예방

6.1 하수 시스템은 누수방지설비를 해야하며, 상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시스템과 분리되어야 함.

탱크는 침수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이어야 함. 하수 처리 공장은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함. 항구의 제한된 지역이나 배 밑바닥에 배출되어서는 안된다.

증거 : 누수, 침수 또는 상호오염의 증거. 정보를 얻으려면 디자인 및 설계도와 승무원 증언을 활용할 것

7. 밸러스트 탱크 : 배출을 통한 국제적인 질병 확산 예방

7.1 밸러스트 탱크는 밸브가 잠겨져 있어야 하며, IHR 및 선박 밸러스트 물과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에 따라, 위험 평가가 이뤄져, 항구 및 보건 당국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되어서는 안된다.

증거 : 잠겨져 있지 않은 밸브, 허가받지 않은 배출

8. 고체 폐기물 및 의료 폐기물 : 배출을 통한 국제 질병 확산의 예방

8.1 저장 구역은 해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음식물 쓰레기 및 건조 쓰레기)

8.2 전염성 의료 폐기물의 보관 장소가 있어야 함.

8.3 고체 폐기물, 음식물 및 의료 폐기물의 배출은 배출에 관한 국제·지역 규칙 및 명령에 따라 행해져야 함.

증거 : 불법적/안전하지 않은 배출 또는 폐기물의 저장.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항해일지, 회사 계약서, 승무원 인터뷰를 활용하라.

9. 고인 물 : 곤충 매개체의 국제적인 이동 예방

9.1 고인 물은 벌레의 유충이 있을 수 있어, 존재해서는 안된다. 구조선 덮개, 배밑바닥, 갑판배수구, 갑판위 천막, 뿔통, 대기처리공장은 사용 중이 아닌 경우에 조사되어야 함.

증거 : 고인물의 존재

10. 엔진실 : 매개체 및 숙주의 국제적 이동 예방

10.1 엔진실은 쥐 또는 벌레가 없어야 함. 엔진 덮개 및 단열재는 벌레 및 쥐의 침입을 조사해야 함.

증거 : 쥐 또는 벌레 침입의 증거

11. 의료 설비 : 사람과 사람간의 질병 전파 예방

11.1 아픈 승무원의 검사와 치료를 위해 지정된 장소는 다른 승무원의 활동과 분리되어야 하며, 환하고 청결하고 사적인 검사/치료 설비는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음용수 및 세면장소가 적절히 구비되어 관리되어야 함. 치료 일지와 바늘 및 생의학적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설비가 구비되어야 함.

설비의 복잡성에 따라 작업 매뉴얼이 구비되어야 하며, 만약 자격 있는 의료인 승무원이 선내에 없는 경우, 보건 응급 사건이 발생할 시에 응급 의학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외부 원조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어야 함.

증거 :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공간, 의료일지, 장비. 적절히 보관되지 않은 의약품,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생의학 폐기물 및 바늘, 오염 매개체 및 기타 오염원의 존재

Part 2. IHR(2005)의 부록 3의 조사 영역을 위한 안내 :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선박위생관리증명서의 첨부

위 Part 1에 포함된 각 조사 영역에 관한 정보에 덧붙여, 대형 선박을 조사하는 검역관은 부록 3의 첨부에 있는 다음 조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음식

1.1 공급처

모든 식품은 관련 보건 당국이 승인하거나 요건이 만족된 해안 공급자에게 얻어야 함. 식품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부패 및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인간이 소비하기에 안전해야 함.

원료 및 재료는 만약 기생충,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 살충제, 수의학 약품, 독소, 불류 과정 또는 처리 과정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제거될 수 없는 부패물질 또는 이물질이 있다면, 이상적으로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원료의 설명서를 명확히 하고 적용할 수 있음. 원료 및 재료의 저장은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저장 순서로 해야 함.

1.2 저장

1.2.1 냉장칸은 적절한 온도로 차가운 식품과 냉동 식품을 보관해야하며, 기록을 보관해야 함.

1.2.2 화학물질 또는 유독 화학 약품은 분리되어서 저장되어야 하며, 설비를 보호해야 하며, 식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된다.

1.2.3 식품은 오염 또는 침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지정된 안전 장소에 보관되어야 함.

1.2.4 식품은 물 튀김, 먼지 기타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바닥 위 15 cm/6에 있어야 함.

1.3 준비

1.3.1 서면으로 된 청소 및 관리 정책과 절차가 선내의 식품 감염 또는 오염이 될 수 있는 주방의 주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함.

1.3.2 주방일을 하는 직원은 음식 다루는 일과 준비에 대한 훈련 과정을 마치고 얻은 자격증이 있어야 함. 이 훈련은 갱신되어야 하며 훈련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야 함.

1.3.3 식품 보관 온도에 관한 일지가 보관되어야 함.

1.3.4 모든 표면, 기구 및 부속품은 그 사용-예를 들어 비흡수성, 쉽게 청소되고, 적절히 봉해지거나 해충/쥐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적절해야 함.

1.3.5 식품은 안전한 공급처에서 구입해야 하며, 적절히 보관, 준비, 접대되어야 함.

1.3.6 모든 주방, 음식 준비 또는 취급 장소는 세면대에 접근하기 쉬고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누, 일회용 종이 타월 및 휴지통이 구비되어야 함.

1.3.7 손씻는 장소는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고, 항상 접근 가능해야 함.

1.4 서비스

1.4.1 부페테이블에 전시된 식품-카운터 위, 서비스라인 내부, 샐러드 바 아래에 있는지는 적절한 덮개로 보호되거나, 승무원이나 손님의 오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시되어야 함.

1.4.2 포장되지 않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셀프서비스뷔페 또는 샐러드 바의 운영은 서빙 기구와 식품/음료수의 오염을 막기 위한 처리 방법을 마련해야 함.

1.4.3 식품은 창고에서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바닷물, 뱃바닥에 끈 더러운 물, 오수, 수력 또는 연료 라인과 같은 원천으로부터 이동되어야 함.

1.4.4 전시 시, 서비스 장소나 뷔페에서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유지되어야 함.

2. 물

2.1 공급자

2.1.1 연안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음용수의 질은 선내에 들이기 전에 평가되어야 함. 항구 및 지역 관련 당국은 물의 안전 정도를 조사해야 함. 이 조사는 선내 물 관리 절차의 일상적 부분이어야 함. 수질은 물을 가져온 항구에서 수질 보고서나 수질 검사 표준법에 따른 선내 수질 키트로 최소한 확인해야 함.

2.1.2 선내의 증발기 또는 역삼투압 시스템으로 물을 만드는 배는, 이 시스템을 오염된 지역, 항공 또는 정박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선박은 다용도 탱크 트럭이나 다용도 바지선과 같은 의심스런 연안 공급자로부터 물을 가져와서는 안되며, 해당 트럭 및 바지선이 관련 보건 당국으로부터 승인받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직 음용수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해야 함.

선박 수질 관리 절차는 선박 수질 시스템의 수령, 처리, 보관, 인도가 수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벽한 위생 상태에서 이뤄짐을 확인해야 함.

2.1.4 음용수 수도관은 오직 그 목적으로만 축조되고 사용되어야 함.

2.2 저장

2.2.1 음용수는 탱크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축조, 위치, 보호되는 탱크에 저장되어야함.

2.2.2 연안 또는 선내 생산 공장이 채우는 물 탱크를 정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처리는 물에 적합해야 하며, 음용수질을 위한 지침 2004(WHO 2004) 또는 기타 관련 당국의 요

건을 만족하는 효율적인 음용수 생산 운영 자격이 있어야 함.

만약 염소화가 사용되었다면, 충분히 접촉 시간이 확보되어야하고, 탱크에 염소 잔여물을 제거되어야 함.

2.2.3 탱크에서 나오는 음용수가 기술 시스템 종점까지관이 연결되어 있다면, 승인된 역류 예방 장치가 음용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함.

2.2.4 음용수 탱크는 선체 또는 기타 비음용수탱크와 같은 벽을 공유해서는 안된다.

2.2.5 비음용액체를 나르는 수도관 시스템은 음용수 탱크 내부를 통과해서는 안된다.

2.3 분배

2.3.1 음용수 분배 시스템은 음용수 분배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미음용수, 산업용 액체 또는 가스와 상호 연결된 곳에 역류 방지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

2.3.2 역류 방지기는 조사되어야 하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함.

2.3.3 분배되는 음용수는 최종 수요자가 마실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더 처리되어야 함.

3. 폐기물

3.1 모든 고체 음식 및 의료 폐기물은 이 목적을 위하여 확인되는 명확히 표시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함.

3.2 모든 화물 및 쓰레기 배출은 서면으로 된 회사 정책 및 폐기물 관리 계획의 절차에 포함되어야 함. 이 계획은 방문한 항구의 폐기물 관리를 대신하여 지역 규칙 또는 프로토콜을 고려하여야 함.

3.3 폐기물은 승인된 폐기물 관리 회사 또는 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배출되어야 함.

4. 수영장 및 스파

4.1 수영장 및 월풀은 WHO 안전한 휴양 용수 환경을 위한 지침, Vol.2 수영장, 스파 및 유사 휴양 용수 환경 -2004를 만족해야 함.

4.2 수영장 및 월풀 스파는 에어갭 또는 승인된 역류 방지 장치를 통해 공급되는 바닷물 또는 음용수로 공급되어야 함.

4.3 그 어떤 수영자도 풀이 바닷물 상태로 흘러 들어와서, 감염 위험이 없지 않다면,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화학물(예를 들어 염소처리)이나 물리적 수단(예를 들어, 여과, UV 방사)로 비활성화하는 살균 처리를 하기 전에 풀을 사용할 수 없음.

4.4 서면 또는 전자적 작동, 소독처리, 관리 문서는 제작자의 권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5. 의료 시설

5.1 장비 및 의료 설비

5.1.2 적절한 의료 장비 및 설비는 최상의 작동 및 위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작자의 권고에 따라 작동 및 관리되어야 함.

5.2 작동

5.2.1 자격증 있는 의료 스태프(의사/간호사) 또는 기타 이러한 시설에서 일하도록 지정된 승무원은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함.

5.2.2 잘 정리되고 읽기 쉬게 갱신된 의료 일지가 이 시설 내에 구비되어야 함. 일지는 병 사례, 승객/승무원 및 처치법을 열거해야 함. 일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환자의 첫 방문일, 이름, 나이 및 성별
- 2) 승객 또는 승무원 표시
- 3) 승무원 지위 또는 업무
- 4) 객실 호수
- 6) 방별 날짜/시간
- 7) 질환 증상
- 8) 표본 수집 또는 기타 취해진 조치에 관한 기록

5.2.3 의료 일지는 조사 중에 접근 가능해야 함.

5.2.4 진료/치료 장소 내에 적절한 손 씻는 시설이 있어야 함.

5.3 약품

5.3.1 약품은 훈련받고 승인된 자에 의해서 승객 또는 승무원에게 처치되어야 하며, 적절한 기록이 보관되어야 함.

5.4 개인 의료 및 건강 정보의 기밀성

5.4.1 위의 문서 등에 있는 승객, 승무원 등에 관한 개인 의료 및 건강 정보는 관련 법 및 규칙에 따라 기밀로 처리 및 관리되어야 함.

6. 기타 지역

6.1 모든 동물 및 그 폐기물에 관한 위생 관리 조치가 구비되어야 함.

6.2 여객선을 위한 배설물 처리 절차가 고려되어야 함.

6.3 승객의 객실 : 승객의 숙박시설을 매개체 및 병원균(곤충 또는 쥐 매개체)을 포함한 감염 또는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IHR(2005)에 따른 모든 가능한 조치가 구비되어야 함.

④ 고찰

- 우리나라의 선박 검역 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예규인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에 의거하여 검역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생검사표의 각 항목에 대한 채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그리고 그 채점 요령에 대하여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상의 별표에 마련된 채점 요령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검토한 호주의 선박 위생 검사나 국제보건규칙 상의 선박 위생 검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보건데, 현재의 선박 등 위생검사 지침 상에 나타나고 있는 채점 요령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검역관의 주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형태인 충분/부족 또는 양(良)/불량(不良) 등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음
- 또한 충분/부족 또는 양(良)/불량(不良)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표가 없으며, 선박의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확인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지 않음
-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역 조사의 합격/불합격에 대한 여부를 채점표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 점임. 그 이유는 쥐나 해충의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경우 바로 검역 조사 불합격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고정된 채점표에 의하게 함으로써 검역관의 재량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임
- 장기적으로는 검역관이 조사해야 하는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고, 충분/부족 또는 양/불량의 명확한 척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을 마련하여 선박 검역조사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항공기 검역조사

① 항공기 검역조사 중점 사항

- 항공기의 검역조사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위생 상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경우처럼 위생 상태가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음
- 특히 항공기의 경우, 문제가 되는 조사 쟁점은 황열 매개체인 모기의 존재 유무와 콜레라를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 매개될 수 있는 주방, 화장실, 식음료 관리 및 승무원

의 위생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WHO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특별히 다음의 장소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항공기 청소시에 다음의 **dirt traps**에 특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하며, 철저히 청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 Catering equipment runners
 - Bar box recesses
 - Floor of catering container compartments
 - Sink Drain pipes (자주 막히는 곳)
 - Drinking-fountain wastes and bottle top remover recesses
 - Toilet compartment cupboards
 - First-aid stowage holds
- 현재 국제적으로 항공기 위생 검사 지침을 따로 확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조사되지 않고 있음. 항공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검역전염병은 황열이나 바이러스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주로 위생이 문제되어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에 대한 위생 검역 조사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선박의 경우 장기간 외부와 단절되어 운행하기 때문에 세균성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크며, 위생 상태에 대한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선박의 위생 상태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선박의 경우, 문제가 되는 질환도 세균성 전염병인 경우가 많으므로 위생 검역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항공기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전염병은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라 할 수 있겠음.
- 특히 우리나라의 항공기 검역 전염병 검역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은 주로 항공기 가검물 채취에 의한 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나 가검물 채취를 통한 검역 조사는 오염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과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 왔던 검역 조사 방식을 고수하여, 업무과다로 인한 검역 조사의 효율성 저하가 지적되고 있는 바, 과감히 항공기의 경우 전파가능성이나 파급효과가 낮은 세균성 질환에 대한 검역 조사 비율을 줄이고, 바이러스성 질환의 검역 조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임

다. 검역질문서 개선 방안

(1) 검역질문서 개선의 필요성

- 검역질문서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은 크게 2가지로 구별됨. 첫째는 검역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의 개선이며, 둘째는 검역대상자(승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간소화방안 마련임
- 현재 검역질문서는 오염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검역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말미암아, 각 검역소별로 상이하게 운용하고 있는 현실임.
- 공항 업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검역질문서 징구는 그 효용성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검역질문서의 효용성을 묻는 통계가 도라산이나 고성에서 제시된 바 있으나, 유증상자 중 검역전염병인 콜레라 검출은 없고 다만 말라리아만 검출되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임
- 이러한 검역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질문서 체계 개선안을 돌이켜보면, 검역질문서는 거시적으로 콜레라, 수인성질병에 대한 검역 여부 결정의 문제로 환원되고, 현실적으로는 주요 콜레라 오염국가로서 엄청난 검역대상량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오염지역 관리 문제로 대별될 수 있음. 결국 콜레라 등 수인성질병에 대한 검역을 배제하게 될 경우, 검역질문서징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임.
- 검역 대상자 편의 도모를 위한 검역 질문서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은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육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인원이 2007년 기준 532,610명에 이르게 됨에 따름.
- 특히, 당일 입·출경자의 경우 중복되는 서식 요구 절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역질문서의 징구를 생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듯 검역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검역질문서를 생략 및 전산화하는 한편, 현재의 검역 질문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검역질문서 효율성 재고 방안

① 제1안 : 자발적 신고 체제로 전환

- 장기적으로는 오염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에 대한 건강질문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오염지역을 직접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의 각 운송수단의 장이 증상자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라 사료됨.

1.질문지폐지및 기장이나 선장이 발생시 개별보고 (호주)

2.여객기/여객선은 도착전 안내방송

(검역병 및 증상, 법규안내 및 자발신고권유방송)

○ 호주항공의 호주입국시 검역 방송

본 방송은 호주 정부에 의한 중요한 검역 방송입니다.

호주는 페스트 및 기타 질병의 해외로부터의 유입으로 인한 호주 환경, 주요 농업 및 국민 건강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 위반시 강한 벌칙이 내려지는 엄격한 검역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검역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식물 및 동물성 물질을 “출국 승객 카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과일, 고기 및 유제품, 생선 및 해산물, 먹을수 있도록 포장되고 가공된 물건 및 식물 가지, 씨앗과 나무, 식물 및 가족, 뼈나 조개껍질과 같은 동물성 물건로 만들어진 기념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도착 지역에 위치한 검역 쓰레기통에 이들 물건을 처분해야하며, 기내에서 제공된 음식물은 기내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Been Away? Feel OK?' 팜플렛에는 중요한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에 참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이 정보를 읽어주십시오.

만일 이 팜플렛을 받지 못한 경우 승무원에게 요청하여 주십시오. 호주 검역법률은 항공기의 senior officer에게 아픈 승객이나 승무원을 호주 도착 전에 검역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편함을 느낀다면, 승무원의 주의를 위해 이것을 가져와야합니다.

당신의 입국 승객 카드를 완성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이것은 법적 서류이며 허위 신고는 벌금 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당신의 수하물은 x-ray될 것이며, detector dog team의 조사 및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호주의 경우 다음의 언어로 기내 방송을 제공하고 있음

• . Arabic	• . Japanese
• . Cantonese	• . Korean
• . French	• . Mandarin
• . German	• . Spanish
• . Hindi	• . Thai
• . Italian	• . Vietnamese

② 제2안 : 현 체계 유지 방안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강질문지 회수방식을 유지한다고 할 때 보다 실질적인 검역전염병감시를 위해서는 오염지역위주의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오염지역 범위 내에서 특히 전반적인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하위지정하여 질문서의무제출 출발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 운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사료됨.

- ① 오염지역지정 지역중 전반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제출
- ② 기타 오염지역 출발자중 유증상자는 자발적 제출

(3) 검역질문서 서식 간소화 방안

① 제1안

○ 주안점: 질문지를 약간 단순화시킨 형태

❖ 제1안의 type 1

○ 이용수단의 식별항목과 본인 확인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고, 기존의 질문지에서 대상 검역전염병의 증상 중 가장 특징적인 열과 설사를 제외한 다른 증상들에 대한 확인은 생략하여 질문지에 대한 대상자의 답변의 명확성을 꾀함.

건강상태질문서(Health Questionnaire)

주민등록번호/旅券番號/PASSPORT:

이름/姓名/ NAME: 나이/年齡/ AGE :

성별/性別/ SEX : 전화/電話/Tel :

한국내주소/韓國內住所/CONTACT ADDRESS IN KOREA:

과거 10일간 열이나 설사가 있었으면 √표 해주십시오.

1.열/發熱/FEVER() 2.설사/腹(泄)瀉/DIARRHEA()

3.기타/其他/the others()

검역질문서 작성 기피 혹은 허위작성시 검역법 제9조및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영문

If you make a false statement concerning your health or fail to fill out the Health Questionnaire, you may face a sentence of up to one year of imprisonment or up to 5million won in fin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수정안

If you make an offence to knowingly give false information and/or fail to comply with reporting requirement The maximum penalty is one year's imprisonment or 5million won in fines

❖ 제1안의 type2

- 기존 질문지에서 이용수단의 식별항목(이용편명 등)을 생략하지 않고 나머지는 1type과 동일

건강상태질문서(Health Questionnaire)

이용편명/한자/영문:

주민등록번호/旅券番號/PASSPORT:

이름/姓名/ NAME: 나이/年齡/ AGE :

성별/性別/ SEX : 전화/電話/Tel :

한국내주소/韓國內住所/CONTACT ADDRESS IN KOREA OR DESTINATION

:

과거 10일간 열이나 설사가 있었으면 √표 해주십시오.

1.열/發熱/FEVER () 2.설사/腹(泄)瀉/DIARRHEA()

3.기타증상/其他症狀/other symptoms()

검역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허위작성시 검역법 제9조및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f you make a false statement concerning your health or fail to fill out the Health Questionnaire, you may face a sentence of up to one year of imprisonment or up to 5million won in fin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수정안

If you make an offence to knowingly give false information and/or fail to comply with reporting requirement The maximum penalty is one year's imprisonment or 5million won in fines

② 제2안

○ 주안점: 본인확인란만 간략하게 하고 기존 증상 보고란은 그대로 유지함

건강상태질문서(Health Questionnaire)

이용편명/한자/영문:

주민등록번호/旅券番號/PASSPORT:

이름/姓名/ NAME: 나이/年齡/ AGE :

성별/性別/ SEX : 전화/電話/Tel :

한국내주소/韓國內住所/CONTACT ADDRESS IN KOREA OR DESTINATION
:

과거10일동안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있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설사/腹瀉/DIARRHEA□ 구토/嘔吐/VOMITING□ 복통/腹痛/ABDOMINAL PAIN□

발열/發熱/FEVER□ 기침/□ 호흡곤란/呼吸困難/DIFFICULTY IN BREATHING□

잦은호흡/呼吸急促□ 기타증상/其他症狀/other syptoms□

검역질문서 작성 기피 혹은 허위작성시 검역법 제9조및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make an offence to knowingly give false information and/or fail to comply with reporting requirement The maximum penalty is one year's imprisonment or 5million won in fines

③ 제3안

○ 주안점 : 호주의 방식을 인용하여 입국 신고서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안

Incoming passenger card • Australia		YOU MUST ANSWER EVERY QUESTION – IF UNSURE, ✕ Yes	
PLEASE COMPLETE IN ENGLISH WITH A BLUE OR BLACK PEN			
▶ Family/surname			
▶ Given names			
▶ Passport number			
◆ Flight number or name of ship			
▶ Intended address in Australia			
State			
▶ Do you intend to live in Australia for the next 12 months?		Yes	No
▶ If you are NOT an Australian citizen:			
Do you have tuberculosis?		Yes	No
Do you have any criminal conviction/s?		Yes	No
DECLARATION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I understand failure to answer any questions may have serious consequences.		YOUR SIGNATURE Day Month Year	
		1. Goods that may be prohibited or subject to restrictions, such as medicines, steroids, firearms, weapons of any kind or illicit drugs? Yes No 2. More than 2250mL of alcohol or 250 cigarettes or 250g of tobacco products? Yes No 3. Goods obtained overseas or purchased duty and/or tax free in Australia with a combined total price of more than AUD\$900, including gifts? Yes No 4. Goods/samples for business/commercial use? Yes No 5. AUD\$10,000 or more in Australian or foreign currency equivalent? Yes No 6. Any food - includes dried, fresh, preserved, cooked, uncooked? Yes No 7. Wooden articles, plants, parts of plants, traditional medicines or herbs, seeds, bulbs, straw, nuts? Yes No 8. Animals, parts of animals and animal products including equipment, eggs, biologicals, specimens, birds, fish, insects, shells, bee products, pet food? Yes No 9. Soil, or articles with soil attached, ie. sporting equipment, shoes, etc? Yes No 10. Have you visited a rural area or been in contact with, or near, farm animals outside Australia in the past 30 days? Yes No 11. Have you been in Africa or South America in the last 6 days? Yes No	
		TURN OVER THE CARD English	

○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질문지 작성 및 수거하도록 함

○ 세관신고지에 열, 설사 유무와 결핵확인란을 삽입하여 세관원을 통하여 접수 후 파악하도록 하여, 검역관이 관계 기관과의 교육 및 홍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2. 검역 소독방법 개선안

가. 전염병별 소독 표준안

(1) 쟁점

- 전염병별 소독에 대한 표준안은 전염병별 예방을 의미하므로 결국 각 전염병의 매개체에 대한 소독과 예방을 의미함. 따라서 살균, 살충, 구서가 그 소독의 주안점이 됨. 바이러스와 기생충질환에 대한 소독은 살균과 살충에 동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매개체 및 병원체는 육해공을 통해 국가 사이에 전파될 수 있음. 병원체는 감염자 또는 감염 매개체에서 전염될 수 있음
- WHO는 공항 및 해항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Aedes aegypti*, *Aedes albopictus*, *Aedes polynesiensis*, *Aedes scapularis*, *Aedes togoi*, *Anopheles gambiae*, *Anopheles albimanus*, *Anopheles barbirostris*, *Anopheles subpictus*, *Culex pipiens*, *Culex quinquefasciatus*, *Culex annulirostris*, *Culex sitiens*, *Culex tritaeniorhynchus*, *Mansonia uniformis*와 같은 모기의 중요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기타 집파리과(Musdicae) 및 노린재과(바퀴벌레, Reduviidae)와 같은 곤충도 모니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다수의 예를 보면, 주로 풍토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감염이 되거나, 감염된 여행자 또는 기타 감염자를 문 매개체로 인하여 감염되는 경우가 많음. 최소한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감염된 매개체가 실제로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운반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음

(2) 전염병과 그 매개체

① 말라리아

- 주로 열대 지역에 있는 90여개의 국가에 서식하는 *Anopheles* 모기에 의해 전파. 말라리아 비오염 국가 중에서도 많은 국가가 취약하고 감수성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감염된 말라리아 매개체 또는 인간 말라리아 케이스가 새로운 지역에 운송될 위험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말라리아 구분이 용이함

- imported malaria : 다른 국가를 방문하여 말라리아가 인간에게 감염된 경우
- introduced malaria : imported case에서 국부(지역)적으로 감염된 경우
- airport malaria : 말라리아 지역으로부터 온 항공기에서 반입된 감염된 *Anopheles*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감염이, 말라리아가 풍토병이 아닌 국가의 사람이나 항공기 승객관 관련된 경우
- runway malaria : 말라리아 지역에서 정차하는 동안 공항에서 감염된 *Anopheles* 모기에 의해 불려 감염된 자에게 병을 얻은 경우

② 페스트

- 선페스트는 쥐벼룩에게서 전염됨. 인간 페스트는 최근 인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탄자니아, 페루 및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 페스트는 항공기, 선박 기타 운송수단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IHR(1983) 52.60은 쥐 또는 페스트가 국제 운송수단에 있을 경우에 취해야할 조치를 규정함. 이 소독 절차는 특히 항공기 내의 벼룩에 관련한 것임

③ 황열 Arboviral diseases

㉠ Dengue and dengue haemorrhagic fever

- 주로 *Aedes aegypti* 모기에 의해 전파. 100여개 이상의 열대 및 아열대 국가에 존재. 1950년대 아시아에서 발발한 이후 그 전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사망률 5%
- *Aedes* 중에서 치명적인 모기는 *Stegomyia*와 *Finlaya*임. 그림 1과 2가 *Aedes aegypti* 와 *Aedes albopictus*의 분포를 나타내고 3은 Dengue의 일반적 분포, 그림 4는 1970년에서 1995년 사이의 황열 분포를 나타냄

㉡ Yellow fever

-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 *Aedes aegypti*, *Aedes africanus*, *Aedes simpsoni*, *Aedes taylori*를 포함하는 10종 이상의 모기종이 바이러스를 전파

㉢ 일본 뇌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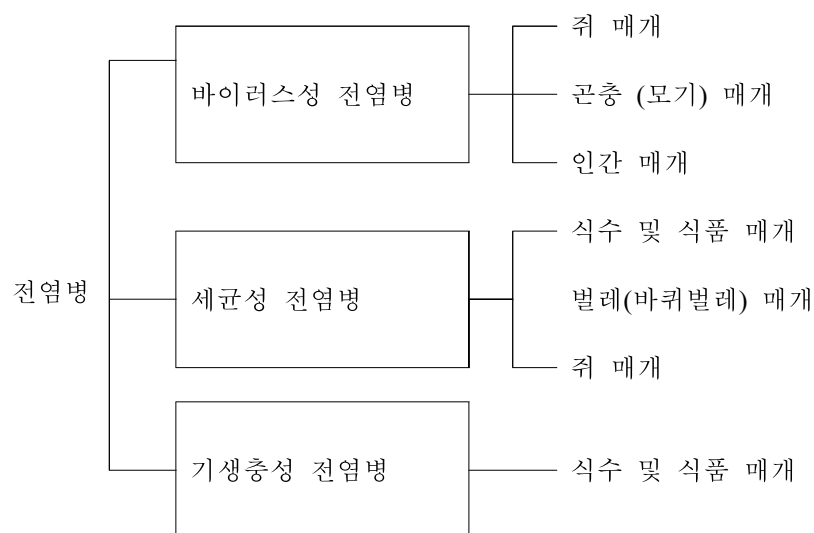
- 높은 사망률로 인하여,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공중보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심각한 질병임. 주요 매개 모기 종은 빨간집모기(rice paddy breeding *Culex tritaeniorhynchus*)임

④ 기타 인간 매개체감염질환

- 쥐페스트를 제외하고, 진드기 등 체외기생충의 질병에 관한 우려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그것은 직접적으로 항공기에 탑재되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곤충에 대한 공항 주변의 관리는 잠재적인 동물 숙주나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통해 이뤄짐
- 기타 전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요 곤충매개 인간 전염병이 있음. 폐 필라리아와 같은 것인데, 전파를 위해서는 감염된 매개체와의 반복적인 접촉이 요구되기 때문에 항공 운송수단을 통해 국제적으로 전파될 위험이 매우 제한적임
- 기타 leishmaniases, trypanosomiases 및 onchocerciasis와 같은 곤충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은 많은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음. 이는 복잡한 인수공통 숙주 관계, 관련 매개체의 협소한 생물학적 지위, 제한된 전파 가능성 때문임

(3) 매개체 관리와 전염병 관리

- 매개체를 관리하는 것이 곧 전염병을 관리하는 것임



(4) 전염병 매개체별 소독 표준안

- 주지하다시피 전염병 매개체를 대상으로 검역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전염병별 소독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염병 매개체별 검역 소독의 방법 및 기준이 확립되어야 함

전염병 매개체별 검역 소독의 방법 및 기준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을 하는 사람의 안전 및 소독 시행 주변 지역의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1. 청 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2. 소 각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독 가능한 방법이 없는 등 소각하여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함.
3. 살 균	가. 운송수단 · 운송수단의 모든 부분은 페놀성 살균 세제로 세척함으로써 살균될 수 있음. 나. 화물 또는 그의 일부 (a) 페놀성 살균 세제를 사용한 세척 (b) 압력 증기 소독 ·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안의 공기를 배제하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증기소독할 경우 오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c) 포름알데히드 증발 다. 물과 물 용기 · 오염된 물과 물 용기는 할로젠화/염소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잔여 할로젠이 최소 50mg/L (ppm)으로 4시간 동안 집중 소독하여야 함. · 긴급 상황에서는 한 시간동안 200 mg/L (ppm)의 잔여 할로젠으로 응급 소독

할 수 있음.

- 소독 조치 후에는 잔여 할로젠이 5.0 mg/L (ppm) 이하가 되도록 씻어내려야 함.
- 식수는 잔여 할로젠이 최소 2.0 mg/L (ppm)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로젠화 하여야 함.

라. 사람의 수하물 및 의류 또는 침구를 포함한 개인물품

(a) 페놀성 살균 세제를 사용한 세척

(b) 압력 증기 소독

단, 세척 또는 증기로 인해 물품이 손상될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증발로 살균될 수 있음.

(c) 일광소독

의류·침구·용구·도서·서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위에 따른 소독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하여야 함.

마. 조리도구 및 식기

(a) 끓는 물 소독

(b) 요소 용액에 담그는 소독

(c) 압력 증기 소독

바. 오염된 폐기물

오염된 폐기물은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지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으로 살균되어야 함.

사. 약물 소독

약물 소독의 경우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함.

-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아. 식품 살균

각 음식은 다음의 온도와 시간을 준수하여 요리하여, 병원균을 살균하여야 함.

- (1) 껍질이 있는 달걀은 63°C (145°F)에서 15초 이상 조리
- (2) 조류나 육류는 68°C (155°F)에서 15초 이상 조리
- (3) 기타 74°C (165°F)에서 15초 이상 조리

자. 기생충 살균

날 음식은 다음의 온도와 시간을 준수하여 냉동함으로써 박멸할 수 있음.

- (1) -20°C (-4°F) 에서 168시간 (7일) 이하 냉동
- (2) -35°C (-31°F)에서 15시간 이하 급속 냉동

4. 살충

가. 물리·환경적 방법

- (1) 서식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함.
-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트랩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함.

나. 화학적 방법

-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하여야 함.
-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함.
 - (a) 분무 소독
해충이 서식하는 운송수단 또는 그 부분, 또는 그 내부 상품 또는 화물은 스프레이 또는 분말로 살균되어야 함.
 - (b) 가스 소독
-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하여야 함.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하이드로젠시안나이트(HCN)	2g/m ³ 이상	2시간이상
메틸브로마이드(MB)	48g/m ³ 이상	24시간이상
셀파렐브로마이드(SO ₂ F ₂)	48g/m ³ 이상	24시간이상

다. 생물학적 방법

- (1) 모기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포식하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함.
-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함.

5. 구 서

· 쥐가 서식하는 것이 발견된 운송수단은 검역관의 감독 아래 구서되어야 함.

가. 위생적 처리

-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 또는 뚜껑을 덮어 먹이제공을 방지하여야 함.
-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에 쥐의 은신처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함.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서처리를 하여야 함.

다. 가스 소독을 이용하여 쥐를 방제함.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하이드로젠 시안나이트(HCN)	2g/m ³ 이상	2시간이상

나. 운송수단별 소독 표준안

- 운송수단들은 운송수단별 검역조사표준안에서 살펴보았듯이 검역업무와 관련하여 그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각 운송수단들은 그 수단에 따르는 주요 매개체도 어느 정도 차별을 둘 수 있으며, 또한 위생상태나 구조적 측면에서도 각각 상이함. 따라서 운송수단의 특성과 구조를 고려한 소독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1) 항공기 소독

① 쟁점

- 국제 항공기의 발달은 인간, 동물, 식물 질병의 확산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요구할 정도로 증가하였음. 곤충 매개체는 질병을 항공기내의 사람에게는 물론, 항공기가 머물렀던 장소의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며, 항공기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에 곤충 매개체를 유입시킬 수 있음
- 많은 나라들이 착륙 전에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승객이 기내에 있을 때 소독을 시행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음. 항공기에서 스프레이 소독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주는 위험에 대한 관심이 WHO의 조언이 필요하게 될 정도로 증가됨. 또한 항공기 관련 국제 기구 및 대중 사이에 항공기 소독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② WHO의 항공기 소독 권고안

- WHO에서 1995년부터 논의된 항공기 소독과 관련된 쟁점(일반적으로 미 교통부가 다루는 것)에 대한 비공식 자문임
- 따라서 본 자문위원회는 특히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를 평가하고 다음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도록 요구되었음
 - 1) 항공기 소독의 필요성 여부
 - 2) 만약 필요하다면, 실행 방법
 - 3) 권고될 수 있는 화학물 및 방법
- IHR(1983) 제83조의 검토 결과 해당 규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결과적으로 회원국은 자국의 공중보건, 농업 또는 환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영역 내에서 작동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승객이 기내에 있는 동안 스프레이로 통해 항공기의 기내 및 조정실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제한하여야 함.

○ WHO의 권고안

- 첫 번째 권고안 : 1961년 살충제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의 11번째 보고서의 부록 6으로 발간
- 두 번째 권고안 : 1969년 국제보건규칙 첫 번째 판

- 세 번째 권고안 : 1985년 WHO 역학주보(WHO,1985b) 스프레이 소독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 항공기 소독 기술의 진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역학 주보에 권고안을 발표하도록 함
- 네 번째 권고안 : 1985년 WHO 역학주보(WHO,1985c) 항공기 소독의 잔여물 처리
- 다섯 번째 권고안 : 1985년 WHO 역학주보(WHO,1985d) 항공기 소독 절차 과정
- 여섯 번째 권고안 : 1987년 WHO 역학주보(WHO,1987) 나머지 소독 방법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제출, 8주간 내의 소독 주기 권고

㉔ 소독방법

○ 소독 방법은 2가지로 분류

1. 비행 전 또는 비행 중의 스프레이 소독
2. 잔류성 살충제

1. 에어로졸을 사용한 스프레이

(a) WHO가 권고하는 “Blocks away”

- 승객이 탑승한 후, 탑승구가 닫힌 상태에서 이륙 전에 시행함
- 승무원이 기내를 걸어다니며, 규정된 적량의 승인된 에어로졸 발포
- 소독전 승객에게 소독 과정 중에 수초 동안 눈을 감거나 얼굴을 가리도록 안내해야 함
- 스프레이 소독이 수행되는 도중에는 항공기 공기 조절 장치를 꺼야하며, 승무원은 화장실, 주방, 옷장, 사물함 등 곤충이 서식가능한 장소에 발포해야만 하며, 사용한 스프레이 깡통은 도착 후 검역당국의 조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만 함.
- 화물칸 및 조종실은 출발전에 스프레이하여야 함-조종실은 승무원 탑승 전에 할 것

(b) 비행전 top-of-descent 스프레이

-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기내를 제외하고 “blocks away”와 유사하게 잔류성 살충성분이 포함된 에어로졸을 사용하여 발포할 것
- 스프레이하는 동안 사물함을 열고, 승객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주어야 함
- 비행전 스프레이는 항공기가 공항 도착을 위하여 하강하기 시작할 때, 하강 시점에서 수행하는 비행 중 스프레이 소독 외에 허가될 수 있음
- “blocks away” 처치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 모든 빈 깡통은 모아둘 것
- “blocks away” 조치는 WHO에서 권고하였고, 몇몇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음. 지 조치는 보통 비행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중에 이루어짐. 그러나 스프레이 소독은 깊숙이에 있는 곤충에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는 잔류성 살충제(permethrin 기피제, 페메트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적절한 처치 분량은 부록 3에 참조

- “blocks away” 방법 및 하강시 소독 방법은 부록 4 참조. 하강시 소독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하강 시작하자마자 기내에 스프레이해야 함. 소독하는 동안, 공기순환시스템은 끌 것
- 예비스프레이 처치와 함께하는 “blocks away” 또는 하강시 소독은 효과적이며, 실행하기도 간편함. 주요한 불편은 스프레이하는 동안 기내에 있는 승객에 관한 것임.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탑승 전 스프레이법이 고안되었음. 이 경우 빠르게 작용하는 (d-phenothrin)과 잔류성 살충제(permethrin)의 혼합물이 사용됨. 스프레이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모든 선반 및 화장실을 열어놓은 채로 빠르게 발포됨. 잔류성 살충성분으로 탑승 이후에 들어오는 곤충도 관리됨

2. Residual treatment

- 이 방법의 경우, 항공기의 음식 준비 공간을 제외한 내부표면을, 정기적으로 잔류성 살충제로 스프레이하는 것임.
- 처치는 8주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WHO가 제안하는 방법과 살충제를 사용하여야 함
- 처치 장소를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형광성 염료가 첨가될 수도 있음
- 잔류성 살충 방법은 최대한 효율, 안전을 보장해야만 함. 8주 동안 성분이 효과를 발휘해야하며, 승무원이나 승객이 에어로졸 스프레이에 노출될 필요는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는 항공기 운영이나 비용적인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방법을 모든 항공사들이 차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항공사들이 효과적으로 살충을 시행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선택을 하도록 동의함. 재정적 고려는 항공기 소독 방법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함.

㉠ 현재 사용되는 약품(preparations)

(a) Aereosols

1. 현재 사용되는 항공기 소독 약품은 WHO가 권고한 2 가지 성분, 즉 d-phenothrin 과 permethrin(cis/trans 비율 25/75)과 천연 pyrethrin을 기초로 함. WHO가 권고하는 성분의 단독 사용이 강조됨.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기타 성분의 경우에는 평가서가 제출되어야 함. d-phenothrin과 permethrin의 차이는 주로 잔류 효과임. permethrin은 잔류성 pyrethroid이며 d-phenothrin은 비잔류성 pyrethroid임.
2. 현재 사용되는 약품은 프레온 11과 12, 프레온22 및 CO₂를 기본 추진제로 사용함. 이 추진제들은 현재 적절하다고 사료되지 않음. 대체물인 HFC134a 및 HFC227ea에 대한 실험이 필요함

3. 현재 사용되는 용매는 WHO가 승인한 매우 적은 양인 0.067%의 석유 증류액이 사용됨. 만약 새로운 적당한 추진제가 사용되려면, 다른 적절한 용매에 대한 실험을 해야 함

4. 항공기 소독을 위한 에어로졸 회사는 많지만, 적절한 상품을 등록하도록 장려해야 함

(b) 잔류성 스프레이

○ 현재 사용되는 잔류성 스프레이는 유화된 응축액인 페메트린 (cis/trans 비율 25/75)을 기본으로 함. 가능한 적은 냄새가 나는 조합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적당한 화학식을 개발해야 할 것임

○ Aerosols - 유효성분을 포함한 물질

2% d-phenothrin

또는 2% permethrin (cis/trans 비율 25/75)

또는 2% d-phenothrin + 2% permethrin

잔류성 스프레이 - 다음 성분이 포함된 유화 응축액

permethrin (cis/trans 비율 25/75)

③ WHO 항공기 위생을 위한 지침 (Guide to hygiene and sanitation in aviation)

○ WHO에서는 항공기 위생을 위한 소독 및 살균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60년대에 발표된 내용이어서 현재 실정 및 항공기의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항공기 살균 방법¹¹⁾

○ 항공기 내부의 일반적인 청소 과정에서 유효한 살균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항공기 화장실에 화학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사용되는 방법 및 물질은 전염병의 성질에 달려있음.

○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는 100mg/l의 농도로 희석된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과 5% 포르말린(formalin) 용해액임-(물속에서 40% 포르말데히드 (formaldehyde) 가스 용해액)

11) Guide to hygiene and sanitation in aviation. WHO 1977

□ 승객칸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은 콜레라와 같은 음식 매개 질병 또는 수인성 질병에 감염된 사람이 발생한 오염 항공기 소독에 자주 사용됨.
- 방수 장갑을 착용할 것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다음의 장소를 걸레질할 것
- (1) 화장실 칸의 모든 표면
- (2) 주방의 모든 표면과 음식물 용기
- (3) 기내의 모든 음식 테이블, 좌석 팔걸이, 재떨이
- 걸레질 후 30분이 경과한 후, 남아있는 염소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말릴 것

□ 항공기 용수 시스템

- 항공기 용수는 특별히 지정된 화장실 수레로 완벽하게 배수시켜서, 하처리 시스템으로 배출할 것
- 항공기 내 용수 시스템은 차아염소산염으로 처리할 것

□ 화장실 시스템

- 살균제가 포함된 화학액으로 화장실 시스템을 최소 2시간 동안 소독할 것
- 이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시키고, 물을 흘러내릴 것

□ 좌석 직물커버

- 감염자가 앉았던 좌석과 감염자의 앞 열, 뒷 열, 옆 좌석의 직물 커버는 벗겨내고, 1시간 동안 살균액에 담귀둘 것
- 공기 건조시킨 후에 적절히 표시하여, 드라이 크리닝 시킬 것
- 이러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커버를 소각하여 폐기하는 것은 현명한 대안이 될 것임
- 다른 좌석의 커버와 카펫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한 후, 먼지는 소각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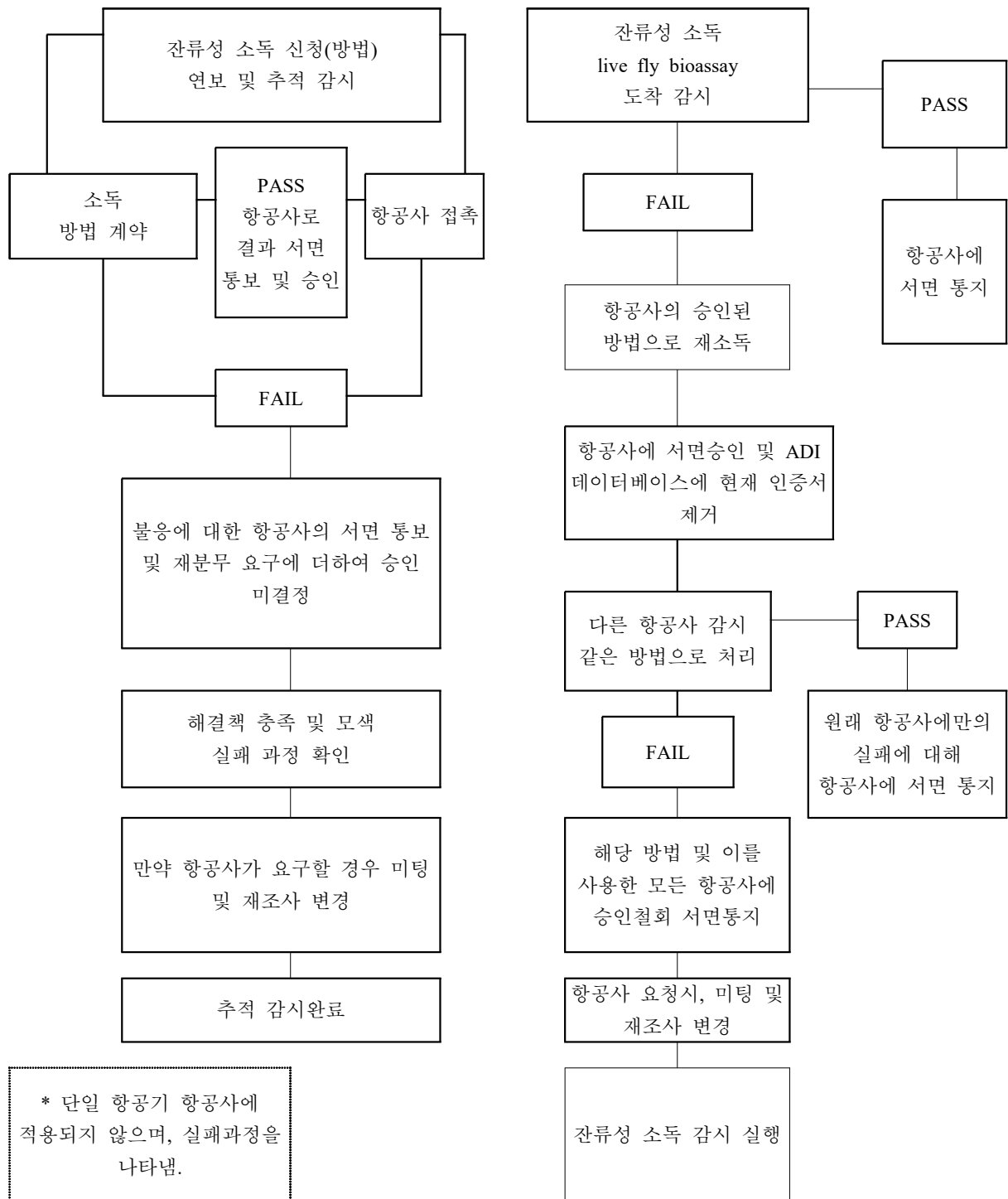
□ 모든 단단한 표면 (이미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

- 포르말린(formalin) 용액으로 걸레질할 것
- 30분이 경과한 후, 따뜻한 물로 지워낼 것
- 작업중에는 방수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할 것

④ 호주 항공기 소독 지침 (Schedule of Aircraft Disinsection Priocedures)

- 호주와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의 농업산림부(Agriculture and Forestry, MAF) 검역팀 (Quarantine Service, MQS)와 뉴질랜드와 호주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항공기 구제 장치 (aircraft arrangements)를 관리하는 호주 검역 감시팀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 간의 공동으로 항공기 소독 지침을 개발하였음
- 뉴질랜드 생물안전법 1993(Biosecurity Act 1993)과 호주 검역 규정 2000의 규정 23은 항공기의 기장(master), 혹은, 만약 기장이 항공기를 작동할 수 없다면, 항공기의 조작자는, 질병 매개체와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역관에게 승인된 방법으로 항공기 처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만 함.
- 호주의 항공기 소독지침은 항공회사의 직원이 항공기와 조작방법에 적절하고, 페스트와 질병 매개체를 구제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으로 유래되었음.
- 승인된 기내 구제 방법으로는 다음의 4가지가 있음.
 - i. 잔류성 소독(Residual)
 - 모든 영역의 잔류성 소독은 이 문서의 Section 4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여 적용된다. 이 방법의 승인은 MQS/AQIS의 구제 감시 승낙 협정을 만족하는 협상을 조건으로 함.
 - ii. 탑승 전(前) 소독
 - 호주나 뉴질랜드로 들어오기 전 마지막 항에서 잔류성분이 있는 소독 약품을 사용하여 조종실, 화장실, 선반 및 옷장, 주방, 승무원휴게실 및 기내에 하는 비행 전 분무 소독
 - iii. 하강시 소독
 - 하강시 소독은 비행 전과 하강시의 분무 소독의 2 부분으로 구성됨
 - 조종실, 화장실, 선반 및 옷장, 주방 및 승무원휴게실에의 잔류성분이 있는 소독 약품을 사용한 입항 전 마지막 항에서 하는 비행 전 소독
 - 하강시 승객이 있는 기내에 분무 소독 - 최저한의 용량
 - 분무 소독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부록. Schedule of Aircraft Disinsection Priocedures 참조.
 - iv. 도착시 소독
 - 잔류성 소독, 하강시 또는 탑승전 소독 방법으로 정확하게 소독, 살충하지 않은 항공기나 유효한 살충 증명서가 없는 항공기는 검역관의 감독 하에 도착하여 소독해야 함

○ 호주 항공기 소독 순서도 (Non-compliance Flowcharts)



⑤ 항공기 검역 소독 표준안

- 항공기 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 : 본 표준안은 WHO의 항공기 소독 지침 및 호주 항공기 소독 지침을 참조하고 구성하였음

항공기 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
1. 의무 항공기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질병 매개체와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역소장이 승인한 방법으로 항공기 소독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만 함. 본 소독 기준은 항공회사가 항공기와 그 조작법에 균형을 이루면서 질병 매개체를 구제하는 세부 절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정당성 국제 항공기의 구제 이유는 인간 질병 매개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검역질병매개체를 제거하기 위함임. 소독은 해충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불문하고 모두 그 표적으로 함. 3. 기내 살충 방법 (1) 잔류성 일반 살충 (Residual disinsection) (2) 탑승 전 스프레이 소독 : 국내로 들어오기 전 마지막 항에서 잔류성분이 있는 소독 약품을 사용하여 조종실, 화장실, 선반 및 옷장, 주방, 승무원휴게실 및 기내에 하는 비행 전의 분무 소독 (3) 하강 시 스프레이 소독 : 비행전과 하강시의 분무 소독의 2 부분으로 구성되는 소독. 비행전 소독은 조종실, 화장실, 선반 및 옷장, 주방 및 승무원휴게실에의 잔류성분이 있는 소독 약품을 사용하여, 입항 전 마지막 항에서 비행 전에 하는 소독이며, 하강 시 소독은, 목적지에 착륙하기 위하여 하강할 때에 승객이 있는 기내에서 하는 분무 소독임. (4) 도착 시 소독 : 승인된 소독 방법으로 정확하게 소독, 살충하지 않은 항공기나 유효한 소독 증명서가 없는 항공기의 경우 검역관의 감독 하에 도착하여 소독함. ※ 잔류성 일반 소독 이외의 소독은 항공사의 자율에 맡긴다. ☐ 잔류성 일반 살충 (Residual disinsection) 조종실, 화장실 및 사물함을 포함한 기내 및 화물칸에 하는 잔류성 소독은 검역소 및

각각의 항공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각 항공사들은 항공기 소독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그 내용으로는 처치된 항공기 명부, 처치 완료일 등 포함할 것)
소독이 완료되었음이 증명된 항공기는 잔류성 소독 증명서를 발부받는다.

가) 화학식

잔류성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화학식은 다음의 공식에 기초하여 마련된 2%의 퍼메드린 유상액임.

- 유화성 응축액 2 : 38 증류수 - 40%

- 유화성 응축액 2 : 18 증류수 - 20%

※ 습윤성 가루 및 현탁 응축액은 유화성 응축액을 대신할 수 없음.

나) 용량¹²⁾

기내 및 화물칸의 내부 표면을 처치하기 위해서 다음 정도의량을 필요로 함.

B747 : 33 리터

A330/340 : 18 리터

B767/A310 : 12 리터

B777 : 19 리터

DC10 : 16 리터

B737 : 7 리터

B727 : 6 리터

B737 : 7 리터

○ 기타의 항공기는 검역 당국에 문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소독 방법

소독 방법은 압축 공기 스프레이건, 연무 또는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검역소장은 에어로졸(퍼메드린 2%)을 전기적으로 민감한 장소나 조종석에도 분무하도록 할 수 있음.

라) 소독 비율

○ 2% 유제를 입방미터당 10ml의 비율로 분무해야 함.

※ 처치 비율 방법 변경은 검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마) 소독 절차

(a) 승객칸

- 항공기 준비에는 개방 및 제거와 모든 락커와 수납장, 보관함을 청소하고, 모든 커튼과 창문블라인드를 열어둡. 카펫이 있는 경우에는 이도 제거함. 천정과 벽, 락커, 커튼, 화장실, 주방, 커튼 뒤 벽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 분무함. 문과 락커의 양 측면도 분무함. 운항중 필요시 카펫은 재분무함.(주의: 확성기나 응급처치키트, 산소통, 소화기와 같은 항구이 보존된 장비는 제거하지 않음. 창문이나 계기판, 오버헤드계기판, 회로기판에 분무하는 것은 피해야함. 이동트레이와 같은 주방기기는 조치할 필요가 없음.)
- 분무가 끝나면, 분무기의 휘발성물질을 제거하기위해 최소한 한시간동안 에어컨디셔너를 가동시켜야 함. 거울이나 일부 표면의 경우는 분무방울을 닦아내야 함. 기타 다른 표면에서는 분무액이 제거된 경우, 살충막을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함.
- 실제로 살충막이 제거된 구역은 보충적으로 ‘터치업(touch-up)’ 스프레이를 시행함. 그러나 조치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내부세척이나 오염된 품목의 교체는 전체 프로그램맥락에서 중요치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재조치할 필요가 없음.

(b) 짐칸

- 짐칸과 천장 바닥에 분무함. 측면이나 바닥공간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구함.

바) 소독 간격

- 소독은 8주 이내의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함.

사) 작업자 안전

- 분무작업시에는 전신작업복, 분진마스크, 캔형 호흡기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함.

4. 기내 살균 방법

- 항공기 내부는 유효한 화학 살균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소독하여야 함.
- 살균제는 100mg/l의 농도로 희석한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과 5% 포르말린(formalin) 용해액-(물속에서 40%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가스 용해액)을 사용함.

□ 승객칸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다음의 장소를 걸레질할 것
- 방수 장갑을 착용할 것

- (1) 화장실 칸의 모든 표면
- (2) 주방의 모든 표면과 음식물 용기
- (3) 기내의 모든 음식 테이블, 좌석 팔걸이, 재떨이

- 걸레질 후 30분이 경과한 후, 남아있는 염소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말릴 것

□ 항공기 용수 시스템

- 항공기 용수는 특별히 지정된 화장실 수레로 완벽하게 배수시켜서, 하처리 시스템으로 배출할 것
- 항공기 내 용수 시스템은 차아염소산염으로 처리할 것

□ 화장실 시스템

- 살균제가 포함된 화학액으로 화장실 시스템을 최소 2시간 동안 소독할 것
- 이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시키고, 물을 흘려내릴 것

□ 좌석 직물커버

- 감염자가 앉았던 좌석과 감염자의 앞 열, 뒷 열, 옆 좌석의 직물 커버는 벗겨내고, 1시간 동안 살균액에 담귀둘 것
- 공기 건조시킨 후에 적절히 표시하여, 드라이 크리닝 시킬 것
- 이러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커버를 소각하여 폐기하는 것은 현명한 대안이 될 것임
- 다른 좌석의 커버와 카펫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한 후, 먼지는 소각시킬 것

□ 모든 단단한 표면 (이미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

- 포르말린(formalin) 용액으로 걸레질할 것
- 30분이 경과한 후, 따뜻한 물로 지워낼 것
- 작업중에는 방수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할 것

5. 감독

- 소독은 항공기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 또는 관리하여야 함. 검역소장은 소독 효과를 계속 감독할 권한이 있음.

○ 항공기 검역 소독 증명서

모든 승객칸 및 승무원칸 :

All Passenger and crew compartment :

모든 화물칸 :

All cargo compartments :

본 항공기 _____ (항공기등록번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항공기 소독에 관한 비공식 자문’에 따라 _____ (소독 일자)에 피메드린으로 소독하였습니다.
this aircraft _____ (Aircraft Registration) were treated with permethrin on _____ (Date of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Report of the Informal Consultation on Aircraft Disinsection'.

청소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피메드린 잔류량의 상당 부분이 없어졌을 경우, 재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위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8주 이내에 재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The treatment must be renewed if cleaning or other operations remove a significant amount of the permethrin residue, and in any case within 8 weeks of the above date.

만료 일 : _____ (소독일로부터 8주일 후)

Expiry Date : _____ (8 calendar weeks from the date of treatment)

서 명 : _____

(Signed)

교부 담당자 : _____

(Designation)

증명서 발급일 : _____

(Date of Issue of certificate)

국 립 검 역 소
National Quarantine Station

(2) 선박 소독

① 쟁점

-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국제 해운업을 통해 운송됨. 오늘날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고 모든 종류의 화물을 운반하는 50,000 여척의 상업선박이 있음.
- 국제 선단이 150개국 이상에 등록되어 있고 모든 국적의 1백만명 이상의 뱃사람이 배치되어 있음. (www.shippingfacts.com)
- 1970년에서 2000년 사이에, WHO는 선박과 관련된 100여건 발병 사건의 검토를 통해 1/3 이상이 음식물매개 전염과 관련되었음을 확인하였음. (http://www.who.int/water_sanitation_health/diseases/shipsancompendium/en/index.html)
- 우리나라의 선박에 대한 검역 소독은 기타 운송수단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소독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상에 규정된 내용만을 가지고, 소독대행업체에 맡겨져 이루어지고 있음
- 올바른 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한 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선박의 경우는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② 표준안

선박 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	
1. 의무	선박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질병 매개체와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역소장이 승인한 방법으로 선박 소독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만 함.
2. 정당성	국제 선박의 구제는 질병의 전염 및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검역질병매개체를 제거하기 위함임.
3. 선내 살충 및 구서 방법	
□ 살 충	

(a) 분무 소독

해충이 서식하는 운송수단 또는 그 부분, 또는 그 내부 상품 또는 화물은 스프레이 또는 분말로 살균되어야 함.

i. 화학식

잔류성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화학식은 다음의 공식에 기초하여 마련된 2%의 퍼메드린 유상액임.

- 유화성 응축액 2 : 38 증류수 - 40%

- 유화성 응축액 2 : 18 증류수 - 20%

※ 습윤성 가루 및 현탁 응축액은 유화성 응축액을 대신할 수 없음.

ii. 소독 방법

소독 방법은 압축 공기 스프레이건, 연무 또는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검역소장은 에어로졸(퍼메드린 2%)을 전기적으로 민감한 장소나 조종석에도 분무하도록 할 수 있음.

iii. 소독 비율

2% 유제를 입방미터당 10ml의 비율로 분무해야 함.

(b) 가스 소독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하이드로젠시안나이트(HCN)	2g/m ³ 이상	2시간 이상
메틸브로마이드(MB)	48g/m ³ 이상	24시간 이상
셀파렐브로마이드(SO ₂ F ₂)	48g/m ³ 이상	24시간 이상

□ 구서

· 쥐가 서식하는 것이 발견된 운송수단은 검역관의 감독 아래 가스 소독을 이용하여 쥐를 방제함.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하이드로젠 시안나이트(HCN)	2g/m ³ 이상	2시간 이상

4. 선내 살균 방법

○ 선내의 각 부분은 유효한 화학 살균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소독하여야 함.

□ 식수

- 식수는 잔여 할로젠이 최소 2.0 mg/L (ppm)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로젠화하여야 함.

□ 식수 탱크

-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식수 탱크 소독 방법
 - ① 탱크에 있는 모든 물을 제거할 것
 - ② 급수 라인 등 모든 탱크 표면을 적당한 세제로 닦을 것
 - ③ 식수를 사용하여 탱크 표면을 철저히 씻어낼 것
 - ④ 탱크 표면을 최소 200 mg/L (ppm) 염소 용액으로 소독 할 것
 - ⑤ 최소 2시간 동안 염소 용액을 적셔 놓을 것
 - ⑥ 염소 레벨이 5.0 mg/L (ppm) 이상인지 확인하고 탱크를 채울 것

□ 주방

음식 준비 장소 및 식사 장소 포함하여, 살충 및 살균하고 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용기에 있는 식품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제거함.

□ 식료품 저장소 및 창고

매일 음식물을 보관하는 장소 (찬장과 벽장)을 포함하고 살충 및 살균하고, 쥐나 벌레나 드나들지 않도록 밀폐함.

□ 갑판

이물화물창, 후미, 저장실, 덮힌 장소 및 로프 벽장 포함하여 살충 및 살균하고, 특히 고 인물의 병원체나 쥐가 둥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함.

□ 고인 물

배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고인 단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 고체 및 의료 폐기물

검역 폐기물은 쥐 또는 새 가 접근가능해서는 안됨. 가장 적합한 시설은 잠겨진 폐기물 실 또는 폐기물 보관 시설임

5. 감독

- 소독은 선박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 또는 관리하여야 함. 검역소장은 소독효과를 계속 감독할 권한이 있음.

(3) 열차 및 차량 검역 소독

① 개괄

-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열차를 이용한 대규모의 승객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오염지역인 북한을 왕복하는 열차 및 차량에 대한 소독 문제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음
- 현재 철도의 경우 국제적인 교류가 없고, 남북간의 왕래에 한정적으로 검역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철도의 특성상 국내의 철도는 철도청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의 소독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② 열차 소독안

열차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
1. 의무 열차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질병 매개체와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역소장이 승인한 방법으로 열차 소독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만 한다.
2. 정당성 열차 구제 이유는 국제적인 열차 교류확대의 가능성 및 현재의 남북간 열차교류를 통한 인간 질병 매개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검역질병매개체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소독은 해충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불문하고 모두 그 표적으로 한다.
3. 차내 소독 방법 조종실, 화장실 및 사물함을 포함한 기내 및 화물칸에 하는 일반 소독은 검역소 및 열차운행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각 열차들은 열차항공기 소독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해당 소독 열차 명부, 처치 완료일시 등 포함할 것) 소독이 완료되었음이 증명된 열차는 소독 증명서를 발부받는다. (1) 일반 살충 (disinsection) (2) 도착 시 소독 :승인된 소독 방법으로 정확하게 소독하지 않은 열차나 유효한 소독 증명서가 없는 열차의 경우 검역관의 감독 하에 도착하여 소독한다.

4. 일반 정기 살충 (disinsection)

가) 살충(disinsection)

살충에 사용되는 약제는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26호, 2005.5.26)에 따라 허가받은 약제를 사용하여 질병관리본부 매개모기방제지침에 따라 소독을 시행한다.

나) 살충 방법

소독 방법은 압축 공기 스프레이건, 연무 또는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살충 절차

(a) 승객칸

- 열차 준비에는 개방 및 제거와 모든 락커와 수납장, 보관함을 청소하고, 모든 커튼과 창문블라인드를 열어둔다. 카펫이 있는 경우에는 이도 제거한다. 천정과 벽, 락커, 커튼, 화장실, 주방, 커튼 뒤 벽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 분무한다. 문과 락커의 양 측면도 분무한다. 운행중 필요시 카펫은 재분무한다.(주의: 확성기나 응급처치키트, 산소통, 소화기와 같은 항구이 보존된 장비는 제거하지 않는다. 창문이나 계기판, 회로기판에 분무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이동트레이와 같은 주방기기는 조치할 필요가 없다.

(b) 짐칸

- 짐칸과 천장 바닥에 분무한다. 측면이나 바닥공간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라) 살충 간격

- 살충소독은 4주 이내의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작업자 안전

- 분무작업시에는 전신작업복, 분진마스크, 캔형 호흡기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5. 차내 살균 방법

- 열차 내부는 유효한 화학 살균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 살균제는 100mg/l의 농도로 희석한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과 5% 포르말린(formalin) 용해액-(물속에서 40% 포르말데히드(formaldehyde) 가스 용해액)

을 사용한다.

- 살균소독은 매일 실시한다.

□ 승객칸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다음의 장소를 걸레질할 것
- 방수 장갑을 착용할 것

- (1) 화장실 칸의 모든 표면
- (2) 주방의 모든 표면과 음식물 용기
- (3) 차내의 모든 음식 테이블, 좌석 팔걸이, 재떨이

- 걸레질 후 30분이 경과한 후, 남아있는 염소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말릴 것

□ 열차 용수 시스템

- 열차 용수는 완벽하게 배수시켜서, 하수처리 시스템으로 배출할 것
- 열차내 용수 시스템은 차아염소산염으로 처리할 것

□ 화장실 시스템

- 살균제가 포함된 화학액으로 화장실 시스템을 최소 30분 동안 소독할 것
- 이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시키고, 물을 흘려내릴 것

□ 좌석 직물커버

- 감염자가 앉았던 좌석과 감염자의 앞 열, 뒷 열, 옆 좌석의 직물 커버는 벗겨내고, 1시간 동안 살균액에 담귀둘 것
- 공기 건조시킨 후에 적절히 표시하여, 드라이 크리닝 시킬 것
- 이러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커버를 소각하여 폐기하는 것은 현명한 대안이 될 것임
- 다른 좌석의 커버와 카펫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한 후, 먼지는 소각시킬 것

□ 모든 단단한 표면 (이미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

- 포르말린(formalin) 용액으로 걸레질할 것
- 30분이 경과한 후, 따뜻한 물로 지워낼 것
- 작업중에는 방수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할 것

6. 감독

- 소독은 열차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검역소장은 소독 효과를 계속 감독할 권한이 있다.

③ 차량 소독안

차량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

1. 의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질병 매개체와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역소장이 승인한 방법으로 차량 소독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만 한다.

2. 정당성

차량 구제 이유는 육로를 통한 국제적인 교류확대의 가능성 및 현재의 남북간 차량왕래를 통한 인간 질병 매개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검역질병매개체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소독은 해충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불문하고 모두 그 표적으로 한다.

3. 차내 소독 방법

정기적으로 국경을 왕래하는 각 차량은 그 차량의 장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독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해당 소독 차량 명부, 처리 완료일시 등 포함할 것) 소독이 완료되었음이 증명된 차량은 소독 증명서를 발부받는다.

(1) 일반 살충 (disinsection)

- (2) 도착 시 소독 :승인된 소독 방법으로 정확하게 소독하지 않은 열차나 유효한 소독 증명서가 없는 열차의 경우 검역관의 감독 하에 도착하여 소독한다.

4. 일반 정기 살충 (disinsection)

가) 살충(disinsection)

살충에 사용되는 약제는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26호, 2005.5.26)에 따라 허가받은 약제를 사용하여 질병관

리 본부 매개모기방제지침에 따라 소독을 시행한다.

나) 살충 방법

살충 방법은 압축 공기 스프레이건, 연무 또는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살충 절차

(a) 승객칸

- 차량 준비에는 개방 및 제거와 모든 탑승칸을 청소하고, 모든 커튼과 창문블라인드를 열어둔다. 카펫이 있는 경우에는 이도 제거한다. 천정과 벽, 락커, 커튼, 화장실, 주방, 커튼 뒤 벽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 분무한다. 문과 락커의 양 측면도 분무한다. 운행중 필요시 카펫은 재분무한다.

(b) 짐칸

- 짐칸과 천장 바닥에 분무한다. 측면이나 바닥공간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라) 살충 간격

- 살충소독은 4주 이내의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무살충: 월 1회)

마) 작업자 안전

- 살충작업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5. 열차내 살균 방법

- 검역전염병질환자발생시 차량 내부는 유효한 화학 살균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 살균제는 100mg/l의 농도로 희석한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과 5% 포르말린(formalin) 용해액-(물속에서 40% 포르말데히드(formaldehyde) 가스 용해액)을 사용한다.

□ 승객칸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다음의 장소를 걸레질할 것
- 방수 장갑을 착용할 것

(1) 화장실 칸의 모든 표면(화장실이 있는 경우)

(2) 차내의 모든 좌석 팔걸이, 재떨이

- 걸레질 후 30분이 경과한 후, 남아있는 염소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말릴 것

□ 좌석 직물커버

- 감염자가 앉았던 좌석과 감염자의 앞 열, 뒷 열, 옆 좌석의 직물 커버는 벗겨내고, 1시간 동안 살균액에 담귀둘 것
- 공기 건조시킨 후에 적절히 표시하여, 드라이 크리닝 시킬 것
- 이러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커버를 소각하여 폐기하는 것은 현명한 대안이 될 것임
- 다른 좌석의 커버와 카펫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한 후, 먼지는 소각시킬 것

□ 모든 단단한 표면 (이미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

- 포르말린(formalin) 용액으로 걸레질할 것
- 30분이 경과한 후, 따뜻한 물로 지워낼 것
- 작업중에는 방수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할 것

6. 감독

- 소독은 열차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검역소장은 소독 효과를 계속 감독할 권한이 있다.

*정기적으로 왕래하지 않는 차량의 소독은 검역전염병자나 유사증상자의 의심이 있는 경우, 검역소장의 판단하에 차량검역소독지침에 따라 소독을 지시할 수 있다.

3. 무전검역 및 승선검역 체계 개선안

가. 무전검역 및 승선검역 체계 개선의 필요성

- 지금의 검역법의 원형인 일본의 검역법을 계수한 해공항검역법은 근대적인 검역 방식이 그 모형이기 때문에, 초기 제정 당시부터 항만 및 선박검역을 위주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원형에 변화가 거의 없는 채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검역 체계는 항공기를 통한 교류가 더욱 활발한 현대 사회와는 달리 국제 교류의 수단으로 선박이 주를 이루던 근대 시대의 유물이라는 시기적인 특성과 해양으로 둘러 싸여 국제 교류에 있어 필연적으로 선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섬나라 일본으로부터 계수되었다는 장소적 특성을 가짐
- 그러나 우리나라 검역 체계의 시기적, 장소적 특징은 현대 사회의 한반도라는 특징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음. 즉 현대 사회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항공기 입항 수 127,332건, 선박 취항 수 72,118건으로 선박이 주를 이루었던 근대와는 달리 항공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승선 검역에 의존하여 검역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50년 전 과거와 비교하여 그 절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한반도라는 장소적 특징으로, 일본과 달리 대륙과 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분단이라는 현실 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50년 전 과거에는 육상 운송 수단에 대한 검역 조사가 필요도 없었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남북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 및 문화적, 정치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육상 운송 수단에 대한 검역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과거의 선박 위주 특히 승선 검역 위주의 검역 방식에 현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안주할 수 없게 되었음
- 따라서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승선검역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무전검역을 선박 검역의 원칙으로 상정하여, 무전검역을 확대하고 승선검역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검역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나. 무전검역 확대 및 승선검역축소의 배경

① 항공기 여객수송의 확대와 선박을 통한 여객의 상대적 감소

: 항공기를 통해 검역 대상 지역인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수는 2007년 기준 9,777,647명이었으며, 선박을 통해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수는 1,309,782명으

로 거의 9배에 달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단순히 검역 인력을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최소 9배는 많은 검역인원이 항공기 검역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옴. 그러나 현재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승선 검역 위주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비효율적인 방식임

② 세균성질환의 감소와 대처능력의 증대

: 짧은 기간의 잠복기를 가지고 대량으로 전파되어 항공기를 통한 국제적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이러스성 질환과는 달리, 선박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질병은 콜레라 등 세균성질환임. 그러나 콜레라 등 세균성 질환의 의학 기술의 발전 및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달리 그 발병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대량 전파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이와 같은 세균성 질환에 대한 인식에 따라 WHO와 일본은 각기 2005년 IHR의 개정과 2007년 검역법의 개정을 통해 콜레라를 검역질환에서 제외시켰음.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세균성 질환이 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선박의 경우, 비효율적인 승선검역 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미를 잃고 있음

③ 국제물류수송에서 선박의 입항과 관련된 시간의 단축을 통한 경쟁력제고

: 국제 교역량의 증가에 있어 선박의 중요성은 여객의 운송이 아닌 무역을 통한 국제물류수송에 있음. 시간소모적, 비용소모적, 노동소모적인 승선 검역 방식을 무전 검역 체계로 변경함으로써 선박의 입항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노동력의 절약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④ 선박검역에서의 국제적인 인간검역비중의 축소 및 동식물 비중확대

	미국	호주	일본
승선검역 및 무전검역 상황	승선검역 시행 없음	농림수산부산하 AQIS에서 무전검역에 적합지 않은 경우 승선 검역을 실시하나, 대부분 동식물위주의 검역	무전검역위주로 승선검역도 병행시행

: 전세계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검역 체계에서 동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역 체계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 가고 있는 추세임. 일례로 호주의 경우 승선검역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인간검역보다는 농림수산부 산하 AQIS가 동식물검역위주로 선박검역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인간검역을 위한 승선검역비중은 낮다고 할 수 있음. 즉 인간 검역의 경우 승선검역을 통한 검역 조사의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임

⑤ 효율적인 검역조직운동을 위한 불필요한 업무의 지양

: 검역량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이지만, 검역인원의 증가는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검역 방식은 기존의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음.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검역 전염병의 유입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검역 기관을 지역에 국한하여 전염병 유입을 방어하는 노동집약적 소극적 방어 체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통한 외부 감시 체계 및 질병의 적극적 예방 및 홍보·교육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함

⑥ 검역의 선진화

: 검역규칙 제 14조의 12항 위생조치를 승선검역의 판단기준으로 중요하게 고려함으로써 선박의 자율적 위생관리 강화를 통하여 선박 검역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함

다. 무전검역 및 승선검역 체계 개선 방향

○ 무전검역 확대 및 승선검역축소의 필요성에 따라, 무전검역 및 승선검역 체계 개선 방향은 다음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의 검역은 무전검역을 우선으로 함.
- 선박의 장이나 기타 선박의 대리인이 승선 검역을 원하는 경우 승선검역을 시행할 수 있음. 승선검역을 원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승선 검역에 앞서 검역규칙 제14조 무전검역의 신청에 따라야 함.
- 검역소장은 신청된 무전검역 전문 중 검역규칙 제14조 제1항 8호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그 전염병 환자의 유무와 환자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9호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그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 11호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 14호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지역을 해당 전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방문한 경우, 12호의 배 안에서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 등의 위생조치가 미비된 경우 승선검역을 수행할 수 있음.

4. 오염지역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가. 오염지역선정 기준 개선의 필요성

- 각 공항 별로 오염지역 대상 운영 기준이 명확치 않아 운영 현황이 상이함으로 인해 오염지역 운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오염지역 대상 운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검역인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검역소장에 의한 탄력적인 대처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공항별로 운영사항(오수채취 및 질문서 징구 유무)이 상이한 점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불만이 크므로 정리를 요함

검역소 별 오염지역 운영 현황			
검역소명	오염지역	질문서 징구	항공기 오수채취
김해공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O	O
	중국	O	X
인천공항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O	O
	캄보디아, 이라크, 미얀마, 태국, 베트남, 피지	O	X
	중국	X	X
제주공항	필리핀	O	O
	중국	O	X
포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O	O
	중국	O	O
목포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북한	O	O
	중국	O	O
동해	태국, 러시아	O	O
	중국	O	O

- 선박의 경우 오염지역에서 오는 선박은 승선검역을 원칙으로 하나, 중국 등 오염지역에서 오는 선박의 증가로 인해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검역조사방법이 상이하여 대처가 필요함.

나. 오염지역선정 기준 변경의 배경

- 국제수송의 장거리화 및 경유지의 확대, 또한 중국과의 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의 오염지역기준과 검역업무의 유지는 현실적으로 업무의 과다한 양적 팽창과 더불어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수준 있는 검역의 국제화를 방해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오염지역의 선정에 있어 국제정보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 및 실질적 판단이 중요하고 이를 통합관리 하는 것이 상황에 따른 전반적인 대처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기존의 오염지역선정에서, 중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오염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교류의 규모나 앞으로의 교류증가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현실은 검역업무의 의미 없는 양적 증가와 더불어 실제로는 비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검역업무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음.
- 또한 앞으로의 검역전염병이 기존의 세균성 질환에서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감시와 예방으로 옮겨간다고 볼 때, 콜레라와 같은 세균성 질환중심의 후진국형 질환감시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염지역선정을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지정 혹은 변경하기 위해 오염지역선정 기준의 변경이 요구됨.

다. 오염지역선정 기준 개선안

- 따라서 기존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고려됨

오염지역은 아래 사항 및 기타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전염병의 발생 및 그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에 의해 보고된 지역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1. 검역전염병 발생지역으로 WHO역학주보에 등재된 지역
 2. 검역전염병의 발생지역으로 미국 CDC에 등재된 지역
- 출발지 향이나 공항만을 개별 혹은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특정지역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오염지역에 포함된 항만, 공항만을 개별지정 혹은 인접 범위 중 일정 반경이내의 항만, 공항을 묶어 주 검역감시대상 출발지로 지정

라. 중국에 대한 오염지역선정 개선안

(1) 제1안

○ 중국에 대한 오염지역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음.

1. 현재 중국 및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은 중국을 개별하위구역으로 분류하여 검역하고 있지 않음.
2. 중국과 관련하여 기존 검역질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콜레라)
3. 중국과 관련하여 TB(결핵)에 대한 감시가 검역과 관련하여 법령에 없더라도 추가되어야 함.
4. 중국의 경우 각 공항 별 방문자 수와 기존의 증상자수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따른 대책을 오염지역선정에 참고하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오염지역 운영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1) 내국인 단기 중국여행자(5-6일 이내 및 7일- 15일방문자로 구분)
 - 2) 내국인 장기 중국거주자(1개월)
 - 3) 중국인 및 기타국적 입국자(조선족포함)으로 개략 분류
- 내국인 단기 중국여행자의 경우는 현재의 일반적인 여행경로(여행사상품)을 중심으로 한 기준경로 위주의 검역과 오염지역지정 및 증상시 보건소 및 기타 국내의료기관을 통한 **postborder evaluation**을 강화
- 내국인 장기 중국거주자의 경우에는 **border** 에서의 증상파악위주 및 건강검진수준의 권유
- 중국인 및 기타국적 입국자(조선족포함)의 경우 **preborder**수준에서의 질문지나 승무원들을 통한 증상파악 및 보고
- 검역대상에 따른 검역수행의 중점과 관련하여 그 이유는 현재의 인력으로 증가하는

으로만 수집되어 있어 분석의 한계가 있으나, 인천항의 경우를 볼 때, 취항율이 10%를 넘는 국제 항만은 일조, 영성, 위해의 순으로 나타났음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취항하고 있는 중국 지역은 다음과 같음

대한항공 운행 지역		아시아나 운행 지역	
광저우	옌지	구이린	선양
다롄	옌타이	항저우	다롄
베이징	징저우	시안	옌타이
상하이/홍차오	지난	창춘	칭다오
샤먼	창사	톈진	하얼빈
선양	칭다오	광저우	웨이하이
선전(심천)	쿤밍	상하이	베이징
시안	톈진	하이커우	선전
		충칭	난닝
		옌지	창사
		청두	난징

(4) 제4안

- 현재 중국을 오염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의 어려움은, SARS 및 AI의 경우, 중국이 그 발생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발표하고 있어, 그 지역의 검역 관리가 가능하지만, 콜레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역을 발표하고 아니하여 중국 전체가 오염지역으로 관리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실제로 일본의 경우는 각 검역전염병별로 오염지역을 선포하여 여행객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검역 중점 대상 지역으로는 각 전염병별로 선포된 오염지역을 모두 검역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황열의 경우만을 검역중점대상으로 하여 질문서 징구를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SARS와 AI의 경우는 중국이 지정한 오염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역을 검역 중점 대상 지역으로 관리하되, 콜레라의 경우를 기준으로 중국을 오염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거나, 콜레라를 대상으로 한 검역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5.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 법령에 근거하여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업무는 삭제하고, 각 검역소별 업무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검역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상 내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근거 : 검역법 제27조 (검역구역 안의 보건위생관리), 검역업무안내 (2008)

검역법 제27조(검역구역 안의 보건위생관리) ①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역 업무를 지원하는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1.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3.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의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 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시시기 : 검역전염병 또는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실시내용

-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 검역구역내 보균자 색출검사
- 운송수단 내 적재되는 식품 및 식수의 검사
-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 검역구역 내 전염병원균 분포상태조사

□ 주요 검토 내용

가. 전반적인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업무의 축소

- 업무의 효율과 미래의 검역업무방향을 고려할 때, 업무지침상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이외의 검역의 고유업무가 아닌 경우 개정지침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선진 각국의 검역업무의 현황을 볼 때, 앞으로 우리의 검역업무의 방향은 입출국과 관련된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이의 확산 및 검역질환의 국제적 수준의 질적 관리를 지향해야 할 것임.
- 대부분의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해당 기관이나 업체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검역의 고유한 업무라기보다는 근대 검역의 초창기 지방자치단체나 각 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던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현재 호주를 비롯한 선진각국은 이러한 보건위생관리는 지방주 정부(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사업체(공항관리공사나 업체)가 대국민 혹은 고객에 대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여 다루고 있음.
- 또한 법 제 27조 1항에서도 검역구역내 검역전염병이나 전염병 유행이나 유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보건위생관리의 업무에 관하여 각 검역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체를 검역소장이 지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검역본연의 업무에 합당함

나. 검역구역 내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 2008년 업무 지침 상으로는 검역소장이 취약지역에 대한 인구, 면적 및 취약요인 등을 분석하여 방역사업 개시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검역구역내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됨
- 소독기간
 - 검역소 : 4-5월(2주 1회 이상), 6-9월(1주 1회 이상)
 - 보건소 : 4-5월(2주 1회 이상), 6-9월(1주 1회 이상)
- 소독방법

- 검역소 : 분무 및 살균소독(필요시 연막소독 실시, 주로 분무소독)
- 보건소 : 분무, 살균, 연막소독 실시

○ 검역법 제37조의 내용에 따라, 검역구역 내의 위생관리는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지침 상으로 5-9월 사이에 전국 검역소가 유행 우려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검역소장의 재량사항인지 혼돈이 있음.

○ 법 해석상 검역소장의 재량사항임이 분명하고,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관련하여 검역소장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고 하나, 그 내용이 관할 보건소와 중복되는 일이 많아 협의·조정이 필요한 등 과도한 검역 업무 이외에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과감히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업무지침에 담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육로 검역구역의 방역 소독

○ ‘2007남북정상선언’ 이후 보건상태가 열악한 북한지역과의 남북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말라리아의 전염이 발생·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나, DMZ 지역은 현실적으로 보건소의 행정관할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DMZ 지역의 말라리아 예방활동을 육로 검역소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DMZ 지역의 경우 검역소장으로 하여금 검역구역 내에 연막살충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상 내용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라. 구역내 검역관련 홍보

○ 검역 또는 전염병질환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 및 보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에 관한 지속적인 안내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오염지역방문후 설사증상 동반시 좌변기 사용 금지
- 오염지역방문후 발열시 안내데스크(information)를 통한 발열확인(귀체온계) 권고
- 입국후 발열 및 설사등의 미확인 증상이 발병시 인근 보건소나 병의원을 통한 진료 권고
- 시기별 감염성질환 주의 사항 안내

마. Ballast Water의 관리

-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의 아랫 부분에 싣게 되는 Ballast Water는 검역 전염병의 매개가 되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특히 Ballast Water는 선박 내의 보건 위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또한 오염된 Ballast Water가 밖으로 배출될 경우, 검역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고위험성 생물체의 유입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 국제 사회는 선박 위생 및 검역 구역 내의 위생 관리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Ballast Water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Ballast Water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호주에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Ballast Water 관리 요강(mandatory ballast water management requirements)¹³⁾,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Ballast Water Convention, IHR 및 선박 Ballast Water과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이 바로 그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Ballast Water 배출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바, 국제적인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해외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Ballast Water 배출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Ballast Water 관리 방법

각 선박의 다음의 Ballast Water 관리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① 국내 항구 또는 바다에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배출하지 않기

영해에 ballast water를 배출할 필요가 없는 선박은 ballast water 관리를 특별히 수행할 필요가 없지만,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영해 내로 운반하는 것은 되도록 자제해야 함. 고위험성 ballast water 배출에 대한 허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음.

② Tank-to-Tank 교환

영해 내에서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운반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는 합법임. 또한 영해 내에서 선박 안에서 탱크와 탱크를 통한 고위험성 ballast water

13) 자세한 내용은 부록 10. 호주 mandatory ballast water management requirements 참조

이동도 허가될 수 있음. 이 방법을 사용하는 선박의 장은 ballast water 교체 작업 동안 허가되지 아니한 ballast water 배출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히 관리해야함. 위반 시에는 상당한 제재가 있음

③ 바다에서 전체 ballast water 교체

i) 연속 교환법 (비우기/채우기) - Sequential exchange(empty/refill) method

ii) flow through 법 - Flow through method

iii) 희석법 - Dilution method

각 방법은 고위험성 ballast water의 95%이상의 용적 교환 성과를 나타냄. ballast water교체는 영해 밖에서 이뤄져야 하며, 가능한 육지에서 멀리 그리고 최소 200m 깊이에서 이뤄지도록 권고됨

○ 연속 교환법 (비우기/채우기)

이 방법은 심해에서 깨끗한 물을 채우기 전에, 바다에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탱크 (한번에 1개 또는 2개씩)에서 비우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 방법에 의한 ballast water의 혼합에 있어 고위험성 ballast water가 5% 미만이 되게 해야함 (모든 배들은 그 안정성 및 중량과 출렁임 때문에 바다에서 ballast water 탱크를 모두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 Flow-Through Method

95% 이상의 교환을 위해서 각 탱크에 각 탱크 최대 용량의 최소 300% 이상의 심해의 깨끗한 물을 펌핑하여 흘려보내는 것. 물을 흘려 보내기 전에, 탱크에는 오직 일부의 고위험성 ballast water가 남겨져 있을 것

○ 희석법

유조선과 같은 선박의 경우 여분의 piping/pumping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러한 선박은 ballast water를 탱크 한쪽에서 끌어들이고, 동시에 반대편쪽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음. 각 탱크의 최대 용적 300% 이상의 물을 쏟아부어야 함

제6절 검역업무지침 개정안

○ 검역업무지침의 체계 변경

: 기존의 지침은 운송수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검역 업무 내용을 망라하여 정리하고 있어, 각 공항, 해항, 육상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검역 업무의 내용이 분명히 차별화되지 않았음. 각 운송수단별로 차별화된 검역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역 업무를 총괄 부분에 위치시키고, 각 특성을 지니는 공항, 해항, 육상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검역 업무를 분리하여 지침 상에 반영하였음

○ 운송수단별 검역 조사 및 검역 소독 방안 마련

: 선박의 관한 검역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존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WHO 및 미국과 호주, 네덜란드 등의 각 운송 수단별 선진 검역 조사 방법 및 검역 소독 방법을 도입시켜 이를 지침 상에 반영하였음

○ 전염병별 검역 방안 제시

: 기본적으로 전염병이라는 질환을 다루는 검역관의 업무의 특성 상, 각 검역전염병 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 지식을 지침 상에 반영하고, 호주의 질병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각 질환의 특성에 따라 질병을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도구를 지침 상에 반영함

○ 오염지역의 선정 방안 변경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으로 하여 해외 전염병 감시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오염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오염지역을 선정하도록 함

○ 검역구역내의 보건·위생 관리의 내용 삭제

: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검역구역내의 보건·위생 관리 내용은 검역법 상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검역소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조사, 식품 및 식수의 검사,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등 실제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검역소의 여건 상 불가능하거나 보건소 등의 업무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경우임. 기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보건·위생 관리의 내용을 과감히 삭제하여 검역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였음

○ Ballast Water의 관리

: 선박 내에 적재되는 Ballast Water는 선박 내의 보건 위생을 위해서는 물론, 국내 생태계로의 위해 생물 및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하여, 그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이해에 근거하여 Ballast Water 배출을 관리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음

목 차

I. 검역업무 기본방침

1. 목 적
2. 검역대상 전염병
3. 검역조사 대상
4. 기본방향
5. 검역관의 권한
6. 검역관의 제복 등

II. 검역 업무

1. 총 괄
 - 가. 검역업무의 일반 흐름도
 - 나. 검역통보
 - 다. 검역장소
 - 라. 검역시각
 - 마. 검역관 승선, 탑승 또는 승차
 - 바. 검역조사
 - 사. 검역조사 생략
 - 아. 검역조사결과 조치사항
 - 자. 오염지역 선정
2. 공항 검역
3. 해항 검역
4. 육로 검역
5. 도보 검역
6. 승무원·승객에 대한 검역
7. 전염병별 검역
8. 군용운송수단의 검역
9. 외국 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예방접종 등 조치
10.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III. 기 타 업 무

1. 검역구역내의 보건·위생관리
2. Ballast Water의 관리
3. 수입폐선 및 고철화물 소독
4.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및 관리

IV. 행 정 사 항

1. 사업계획
2. 주요업무실적 보고
3. 검역대 사양
4. 검역조치관련 벌칙조항
5. 기타사항

I. 검역업무 기본방침

1. 목 적

가. 최근 들어 세계는 과거 사라졌던 전염병이 재출현하는가 하면,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여행객 및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가간 전염병 확산기회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의 승객·승무원 및 화물에 대한 검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로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

2. 검역대상 전염병

가. 콜레라·페스트·황열

나.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 및 동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03. 11. 27 고시

3. 검역조사 대상

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운송수단

나.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운송 수단의 승객·승무원 또는 하물(하물)

다. 육로로 걸어서 입국하려는 사람과 그가 지닌 물건

4. 기본방향

가. 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조사 철저

나.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검역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

다. 안전사고 예방

5. 검역관의 권한

검역소장, 검역관 등 검역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대상 운송수단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검역 및 전염병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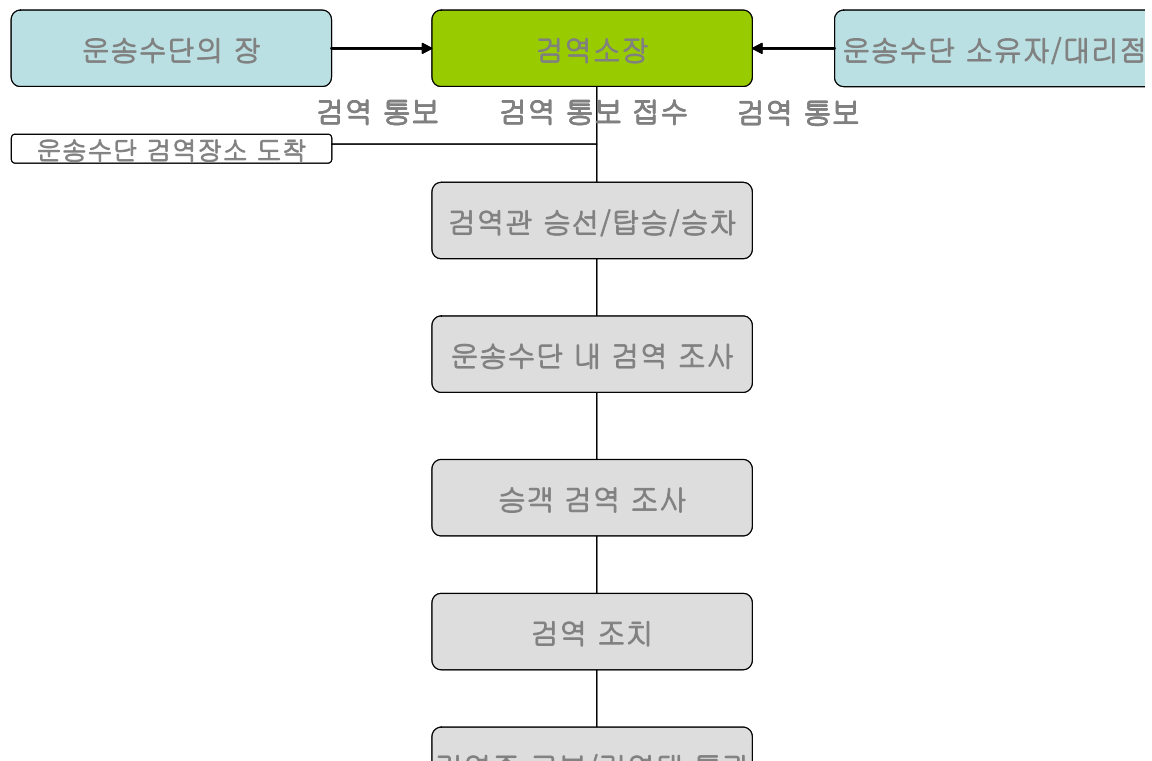
6. 검역관의 제복 등

검역소장, 검역관 등 검역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직무 수행시에는 반드시 규정된 제복착용 및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검역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함.

II. 검역 업무

1. 총 관

가. 검역업무의 일반 흐름도



나. 검역통보

검역장소에 접근하는 운송수단은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대리점을 통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 등에 관하여 검역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검역장소

- 1) 입항하는 모든 운송수단의 검역은 검역장소에서 이뤄져야 함.
- 2) 검역소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검역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 또는 정차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당해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함.
 - 검역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 일기가 불순한 경우
 - 운송수단 내에 긴급이송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타당성 없는 사유 또는 검역소장의 지시 없이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하였을 경우 검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장소로 회항 또는 이동할 것을 명령·경고하여야 함.

라. 검역시각

- 1)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검역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는 일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즉시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들어온 선박이라도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선박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물 하역 및 선적작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 2) 선박이외의 운송수단의 경우 도착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일 검역관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 또는 대기시킬 것을 조건으로 승객과 화물의 하역을 허가할 수 있음.
- 3)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경우 당해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출발예정 시간을 통보받아 출발예정시간 이전까지 검역을 완료하여야 함.

마. 검역관 승선, 탑승 또는 승차

- 1) 검역관은 검역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대상 운송수단에 승선, 탑승 또는 승차할 수 있음.
- 2) 승선, 탑승 또는 승차시 준비물
 - 가검물 채취 및 위생검사용 물품 : 펌프수, 채변봉, 카메라, 손전등, 샘플컵 등
 - 승무원·승객조사용 물품 : 체온계, 면봉, 의료용 장갑 등
 - 검역관련 각종 서식 : 검역증, 임시검역증, 보건상태신고서, 소독시행명령서, 위생 검사표, 검역질문서 등
- 3) 검역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운송수단에는 검역관 등 검역공무원 및 도선사, 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승선, 탑승 또는 승차하여서는 안되며, 승객·승무원은 내리지 못하고 화물은 싣거나 내릴수 없음. 또한 사전허가없이 승선·탑승·승차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

바. 검역조사

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함.

-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
- 2)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 3) 운송수단의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하물·식료품·음료수 또는 선용품(선용품)
- 4) 검역전염병을 옮기는 쥐·벌레의 유무와 번식상태

사. 검역조사 생략

- 1)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의 사유로 일시 정박, 착륙 또는 정차하는 운송수단에 한하여 검역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할 수 있음. 단, 검역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선박 및 차항지가 국내항인 경우는 제외함.
 - 전부생략
 -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항행 또는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일부생략
 - 엔진고장 등의 수리를 위한 경우
 - 도착 또는 출발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2) 운송수단의 장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회사·대리점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고자 할 때에는 도착하기 36시간 이내에 붙임1호서식의 『검역조사생략신청서』를 도착하고자 하는 검역장소의 관할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3)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생략신청이 있을 경우 검역조사생략신청서를 심사한 후 즉시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함.
 - 전부생략 : 검역조사생략신청서 심사 및 필요시 무작위 위생검사 등 실시
 - 일부생략 : 검역조사생략신청서 심사, 보건상태신고서 제출·확인 및 필요시 무작위 위생검사 등 실시

아. 검역조사결과 조치사항

- 1) 검역조사결과 검역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심이 되는 운송수단 및 검역구역 등에 대한 조치
 -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오염 운송수단의 감시
 - 오염 운송수단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며, 오염 운송수단과 그 주변에는 통제기간, 통제사유 등이 표시된 붙임11호서식의 접근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여 검역관 등 관계자이외 타인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오염 운송수단이 건전한 상태로 된 때에는 그 감시를 해제함.
 -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물건의 소독, 폐기 및 이동의 금지조치

- 운송수단에 적재된 물건중 소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과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의심)된 장소에 대한 소독 및 사용제한

2) 운송수단 및 이에 적재된 물품과 검역구역내의 시설, 건물, 물품 및 기타장소에 소독을 하고 쥐·벌레 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 건물, 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 또는 쥐·벌레잡이를 명령하는 것

○ 소독이나 쥐, 벌레잡이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소독시행명령서)에 의함.

○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 소유자 또는 해운대리점,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독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검역관은 소독시행명령서를 운송수단의 장에게 발급하고, 그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대리점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검역소장은 소독명령시 하역일정, 출발일자 등을 고려하여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소독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소독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발할 수 없음.

○ 검역소장은 소독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독업무대행자(자율소독후 증명서 발급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소독시행 전·후에 소독실시계획서 및 소독결과보고서를 제출(항공기의 경우는 소독실시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토록 하고,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과 소독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지속적으로 소독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인 경우는 그 자격기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쥐잡이 또는 벌레잡이 등의 소독결과보고서에 의한 소독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쥐 또는 벌레가 발견되는 등 재소독이 필요한 경우 “아. 검역조사결과 조치사항 2)”의 절차에 의한 조치를 다시 취할 수 있으며, 소독시행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쥐잡이 소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교부함.
- 위생검사 실시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선박이 선적지에 귀항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소 독 기 준>

1. 가스소독기준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소독대상
하이드로젠시안나이트(HCN)	2g/m ³ 이상	2시간이상	쥐, 벌레
메틸브로마이드(MB)	48g/m ³ 이상	24시간이상	벌레
셀파렐브로마이드(SO ₂ F ₂)	48g/m ³ 이상	24시간이상	벌레

※ 검역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화물 소독의 경우는 수입국의 소독기준에 의함.

※ 벌레잡이 소독은 분무소독을 기본으로 하되, 바퀴벌레의 성충 및 알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분무소독 또는 훈연소도고가 독먹이제 사용을 병행하며, 바퀴벌레 등의 위생해충이 대량 발견되는 등 보건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 및 위해해충이 발견되어 분무소독 명령을 받은 선박이 6월이내 재입항시에도 벌레서식이 재확인된 경우는 가스소독을 실시토록 함

2. 기타 소독기준

제1호의 가스소독을 제외한 살충·살균소독방법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며, 사용약품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허가를 득한 살충·살균제를 사용하고 약제별 사용기준을 준수함.

※ 2008 살충·살균·구서를 위한 방역소독 지침 참조

3) 검역증 교부

검역조사결과 위생검사성적이 60점이상으로 운송수단의 승무원 승객 및 화물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검역증을 교부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음.

- 검역법시행규칙 제2조(검역조사의 생략 등)에 의한 검역조사 전부생략 운송수단
- 항공기
- 남북을 왕래하는 운송수단
- 군용운송수단

4) 임시검역증 교부

검역조사결과 위생상의 문제, 재검역 또는 재설문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당해 조건을 명기한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시검역증을 교부함.

○ 조건부 검역해제를 받은 자는 지정한 시일과 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역 또는 재설문 등에 응하여야 함.

- 임시검역증이 교부된 운송수단이 당해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임시검역증을 회수하고 검역증을 교부함.

<임시검역증 교부가 가능한 경우>

- 쥐 또는 쥐의 서식 흔적이 있는 경우
- 위생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전문적인 소독이 필요한 경우.
- 전염병원균의 오염 또는 의심이 되어 살균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 위생검사성적이 60점미만이나,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검역장소에 도착한 경우
- 기타 재검역(자체소독지시사항 확인 등) 또는 재설문(의심환자의 재설문 등)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하는 경우

5) 회항지시

도착 운송수단에 대한 적당한 검역조치를 시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 검역소장은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제시하여 다른 검역항으로 회항 조치할 수 있음.

[참고 1-4] 검역시 환자발생에 따른 업무흐름도

자. 일반 전염병의 검역조치

- 1)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검역전염병 환자나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를 발견하였거나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진찰·검사·소독,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음.
- 2) 검역소장은 외국에서 전염병(의심)환자가 입국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에 이 사실을 보고함.

차. 피난장소 도착시 조치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검역장소이외의 장소에 도착, 착륙 또는 정차한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도착시 통보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함.

※ 오염국에서 출발하였거나 오염국을 경유한 운송수단은 관할 검역소장의 검역조사를 받도록 함.

카. 오염지역 선정

오염지역은 아래 사항 및 기타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전염병의 발생 및 그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에 의해 보고된 지역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1. 검역전염병 발생지역으로 WHO역학주보에 등재된 지역
2. 검역전염병의 발생지역으로 미국 CDC에 등재된 지역

출발지 향이나 공항만을 개별 혹은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항 검역

가. 검역통보

검역장소에 접근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도착통보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 등에 관하여 검역소장에게 아래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 1) 운송수단의 명칭·등록번호 및 국적
- 2) 최초의 출발지, 국내에 들어오기 직전에 머물렀던 나라·지명 및 연·월·일
- 3) 승무원 및 승객의 수
-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심되는 자 또는 그로 인한 사망자 유무 및 사망자수

나. 검역조사

- 1)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항공기종합신고서,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제출시점 : 운송수단의 장이 도착 또는 착륙후 즉시 제출
- 제시서류 : 항공일지 등 검역조사를 위해 검역관이 요구하는 서류

2) 적재물품에 대한 조사 :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식품, 음용수, 기내용품, 적재화물의 오염여부

3) 위생검사

- 도착한 운송수단내의 오수 등 가검물 채취·검사
- 전염병 매개동물 및 매개곤충의 서식여부 확인·조사
- ※ 쥐 및 해충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위생검사 불합격시)에는 소독시행명령서 발급

다. 항공기 검역소독

항공기 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
1. 의무 항공기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질병 매개체와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역소장이 승인한 방법으로 항공기 소독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만 함. 본 소독 기준은 항공회사가 항공기와 그 조작법에 균형을 이루면서 질병 매개체를 구제하는 세부 절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정당성 국제 항공기의 구제 이유는 인간 질병 매개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검역질병매개체를 제거하기 위함임. 소독은 해충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불문하고 모두 그 표적으로 함. 3. 기내 살충 방법 (1) 잔류성 일반 살충 (Residual disinsection) (2) 탑승 전 스프레이 소독 : 국내로 들어오기 전 마지막 항에서 잔류성분이 있는 소독 약품을 사용하여 조종실, 화장실, 선반 및 옷장, 주방, 승무원휴게실 및 기내에 하

는 비행 전의 분무 소독

(3) 하강 시 스프레이 소독 :비행전과 하강시의 분무 소독의 2 부분으로 구성되는 소독. 비행전 소독은 조종실, 화장실, 선반 및 옷장, 주방 및 승무원휴게실의 잔류 성분이 있는 소독 약품을 사용하여, 입항 전 마지막 항에서 비행 전에 하는 소독이며, 하강 시 소독은, 목적지에 착륙하기 위하여 하강할 때에 승객이 있는 기내에서 하는 분무 소독임.

(4) 도착 시 소독 :승인된 소독 방법으로 정확하게 소독, 살충하지 않은 항공기나 유효한 소독 증명서가 없는 항공기의 경우 검역관의 감독 하에 도착하여 소독함.

※ 잔류성 일반 소독 이외의 소독은 항공사의 자율에 맡긴다.

□ 잔류성 일반 살충 (Residual disinsection)

조종실, 화장실 및 사물함을 포함한 기내 및 화물칸에 하는 잔류성 소독은 검역소 및 각각의 항공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각 항공사들은 항공기 소독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그 내용으로는 처치된 항공기 명부, 처치 완료일 등 포함할 것)
소독이 완료되었음이 증명된 항공기는 잔류성 소독 증명서를 발부받는다.

가) 화학식

잔류성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화학식은 다음의 공식에 기초하여 마련된 2%의 퍼메드린 유상액임.

- 유화성 응축액 2 : 38 증류수 - 40%
- 유화성 응축액 2 : 18 증류수 - 20%

※ 습윤성 가루 및 현탁 응축액은 유화성 응축액을 대신할 수 없음.

나) 용량

기내 및 화물칸의 내부 표면을 처치하기 위해서 다음 정도의 량을 필요로 함.

B747 : 33 리터	A330/340 : 18 리터
B767/A310 : 12 리터	B777 : 19 리터
DC10 : 16 리터	B737 : 7 리터
B727 : 6 리터	
B737 : 7 리터	

○ 기타의 항공기는 검역 당국에 문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소독 방법

소독 방법은 압축 공기 스프레이건, 연무 또는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검역소장은 에어로졸(피메드린 2%)을 전기적으로 민감한 장소나 조종석에도 분무하도록 할 수 있음.

라) 소독 비율

○ 2% 유제를 입방미터당 10ml의 비율로 분무해야 함.

※ 처치 비율 방법 변경은 검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마) 소독 절차

(a) 승객칸

- 항공기 준비에는 개방 및 제거와 모든 락커와 수납장, 보관함을 청소하고, 모든 커튼과 창문블라인드를 열어둠. 카펫이 있는 경우에는 이도 제거함. 천정과 벽, 락커, 커튼, 화장실, 주방, 커튼 뒤 벽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 분무함. 문과 락커의 양 측면도 분무함. 운항중 필요시 카펫은 재분무함.(주의: 확장기나 응급처치키트, 산소통, 소화기와 같은 항구이 보존된 장비는 제거하지 않음. 창문이나 계기판, 오버헤드 계기판, 회로기판에 분무하는 것은 피해야함. 이동트레이와 같은 주방기기는 조치할 필요가 없음.)
- 분무가 끝나면, 분무기의 휘발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최소한 한시간동안 에어컨디셔너를 가동시켜야 함. 거울이나 일부 표면의 경우는 분무방울을 닦아내야 함. 기타 다른 표면에서는 분무액이 제거된 경우, 살충막을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함.
- 실제로 살충막이 제거된 구역은 보충적으로 '터치업(touch-up)' 스프레이를 시행함. 그러나 조치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내부세척이나 오염된 품목의 교체는 전체 프로그램맥락에서 중요치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재조치할 필요가 없음.

(b) 짐칸

- 짐칸과 천장 바닥에 분무함. 측면이나 바닥공간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구함.

바) 소독 간격

- 소독은 8주 이내의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함.

사) 작업자 안전

- 분무작업시에는 전신작업복, 분진마스크, 캔형 호흡기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함.

4. 기내 살균 방법

- 항공기 내부는 유효한 화학 살균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소독하여야 함.
- 살균제는 100mg/l의 농도로 희석한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과 5% 포르말린(formalin) 용해액-(물속에서 40% 포르말데히드(formaldehyde) 가스 용해액)을 사용함.

□ 승객칸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다음의 장소를 걸레질할 것
- 방수 장갑을 착용할 것

(1) 화장실 칸의 모든 표면

(2) 주방의 모든 표면과 음식물 용기

(3) 기내의 모든 음식 테이블, 좌석 팔걸이, 재떨이

- 걸레질 후 30분이 경과한 후, 남아있는 염소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말릴 것

□ 항공기 용수 시스템

- 항공기 용수는 특별히 지정된 화장실 수레로 완벽하게 배수시켜서, 하처리 시스템으로 배출할 것

- 항공기 내 용수 시스템은 차아염소산염으로 처리할 것

□ 화장실 시스템

- 살균제가 포함된 화학액으로 화장실 시스템을 최소 2시간 동안 소독할 것
- 이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시키고, 물을 흘러내릴 것

□ 좌석 직물커버

- 감염자가 앉았던 좌석과 감염자의 앞 열, 뒷 열, 옆 좌석의 직물 커버는 벗겨내고, 1시간 동안 살균액에 담궈둘 것
- 공기 건조시킨 후에 적절히 표시하여, 드라이 크리닝 시킬 것
- 이러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커버를 소각하여 폐기하는 것은 현명한 대안이 될 것임
- 다른 좌석의 커버와 카펫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한 후, 먼지는 소각시킬 것

□ 모든 단단한 표면 (이미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

- 포르말린(formalin) 용액으로 걸레질할 것
- 30분이 경과한 후, 따뜻한 물로 지워낼 것
- 작업중에는 방수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할 것

5. 감독

- 소독은 항공기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 또는 관리하여야 함. 검역소장은 소독 효과를 계속 감독할 권한이 있음.

3. 해항 검역

가. 검역장소

- 1) 검역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은 황색기를 게양하고 검역장소에 닻을 내린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
- 2) 검역소장은 아래의 선박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의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
 - 검역전염병 오염지역 또는 유행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으로부터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에 의한 환자 또는 사망자가 있는 선박
 -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지역을 방문한 선박으로서 해당 전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도착한 선박
 -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쌓여 있는 선박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서 정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선박
 -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모기·바퀴벌레·파리 등의 해충(이하 "위생해충"이라 한다)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이 우려되는 선박
 -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 밀항자가 있는 선박
- 3) 선박의 검역조사(무전검역 합격선박에 대한 사후위생검사 포함)결과 전염병원균이 검출되었으나, 이미 외국으로 출항하여 검역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검역소장은 동 선박의 국내 재입항시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 또는 소독 등의 필요한 검역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 4) 검역장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나. 검역통보

검역장소에 접근하는 선박은 도착 24시간 전(단, 북한 왕래선박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에 외항선 도착·출발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 등에 관하여 검역소장에게 아래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다만, 요트의 경우 검역통보없이 입항할 수 있으나,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함.

- 1) 운송수단의 명칭·등록번호 및 국적
- 2) 최초의 출발지, 국내에 들어오기 직전에,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머물렀던 나라·지명 및 연·월·일
- 3) 승무원 및 승객의 수
-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심되는 자 또는 그로 인한 사망자 유무 및 사망자수
- 5) 검역장소 도착예정일시

다. 검역조사

- 1)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보건상태신고서,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제출시점 : 운송수단의 장은 도착 후 즉시 제출하되, 승선검역대상 선박의 경우는 승선검역관에게 제출함.
 - 제시서류 : 항해일지 등 검역조사를 위해 검역관이 요구하는 서류
- 2) 적재물품에 대한 조사 :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식품, 음용수, 선내용품, 적재화물의 오염여부
 - Ballast water 오염여부
- 4) 위생검사
 - 도착한 운송수단내의 오수 등 가검물 채취·검사
 - 위생검사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 (선박의 경우)
 - 전염병 매개동물 및 매개곤충의 서식여부 확인·조사
 - ※ 쥐 및 해충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위생검사 불합격시)에는 소독시행명령서 발급

라. 무전검역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의 검역은 무전검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선박의 장이나 기타 선박의 대리인이 승선 검역을 원하는 경우 승선검역을 시행할 수 있음. 승선검역을 원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승선 검역에 앞서 검역규칙 제14조 무전검역의 신청에 따라야 함.

1) 승선검역 가능 선박

- 가)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에 의한 환자나 사망자가 있었던 선박
- 나)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이 있는 선박
- 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서 정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선박
- 라) 배 안에서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 등의 위생조치가 미비된 경우

2) 무전검역의 신청

- 가) 무전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의 장 또는 해운대리점은 도착하고자 하는 항에 도착하기 36시간 이내에 검역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표4의 「무전검역통보전보요령」에 의해 검역소장에게 무전검역을 신청하여야 함.
 - 나) 무전검역 접수는 근무시간기준(단, 5~9월은 근무시간 종료후 2시간 이내까지)으로 하되, 긴급한 화물의 수송 등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유·무선으로 「무전검역통보전보요령」에 의한 무전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 다) 무전검역을 신청한 후 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박의 장 또는 해운대리점은 즉시 검역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라) 선박의 장은 무전검역신청사항에 대하여 검역소장으로부터 조회가 있을 때에는 즉시 회답하여야 함.
 - 마) 검역신청, 통보 및 회답은 해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해운대리점을 거쳐 할 수 있음.
 - 바) 해운대리점이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검역을 신청하는 전문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의 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함.
- 검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착·출발신고서(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교환방식(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어야 한다)에 의한 전자문서

3) 무전검역의 심사통지

가) 검역소장은 무전검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검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무전검역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함. 이 경우 무전검역의 심사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

나) 심사결과 당해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장에게 도착후 검역증을 교부한다는 뜻을 통보하여야 함.

다) 무전검역심사결과 합격통지후 당해 선박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재심사를 행하여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합격을 취소함과 동시에 승선검역을 실시한다는 뜻을 당해 선박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무전검역 신청이 해운대리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해운대리점을 경유하여 통보함.

마) 검역전산망이 설치된 검역소는 도착통보, 무전검역의 신청 및 무전검역 심사결과 통지를 검역전산망에 의하여 행할 수 있음.

4) 무전검역후 검역증 교부 및 서류접수

가) 무전검역으로 도착한 선박의 검역조사 합격시점은 당해 선박이 검역장소에 도착하여 검역관에게 검역에 필요한 서류(보건상태신고서, 항해일지 등)를 제시하여 검역증을 발급받는 시점으로 봄.

나) 무전검역 합격으로 입항한 선박으로부터 접수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음.

다) 선박의 장은 도착후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보건상태신고서 등

○ 제시서류 : 항해일지 등

5) 무전검역 업무대행

해운대리점은 다음사항을 대행할 수 있음.

○ 무전검역을 위한 서류제출 행위

○ 검역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선박의 장,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는 행위 등

마. 무전검역 선박의 보건위생관리

- 1) 무전검역으로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검역전염병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역조사에 준한 위생검사를 실시함.
 - 검역전염병 오염지역 경유선박으로써 전염병감시기간이 경과한 선박
 -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교부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그 유효기간이 2주 이내로 남은 선박
 - 적재화물의 성상으로 보아 전염병매개유입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
 - 기타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 2) 위생검사결과 위생상태 불량, 쥐 또는 위생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소독이나 쥐·벌레잡이 및 개선지시가 이행될 때까지 선박의 출발을 유보 조치함.
- 3) 무전검역 선박에 대한 사후 위생검사는 검역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지제9호서식의 위생검사표에 의함.

바. 특수선박 등의 검역조사

- 1)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 등에 관한 업무에 제공된 운송수단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운송수단과 접촉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
- 2) 운송수단의 장은 그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역장소로 갈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운송수단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인근의 검역소장이나 검역지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야 함.

- 3) “2)항”의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이나 검역소지소장은 지체없이 그 장소로 검역관을 파견하여 당해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 선박검역소독

선박 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	
1. 의무	선박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질병 매개체와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역소장이 승인한 방법으로 선박 소독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만 함.
2. 정당성	국제 선박의 구제는 질병의 전염 및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검역질병매개체를 제거하기 위함임.
3. 선내 살충 및 구서 방법	□ 살 충 (a) 분무 소독 해충이 서식하는 운송수단 또는 그 부분, 또는 그 내부 상품 또는 화물은 스프레이 또는 분말로 살균되어야 함. i. 화학식 잔류성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화학식은 다음의 공식에 기초하여 마련된 2%의 퍼메드린 유상액임. - 유화성 응축액 2 : 38 증류수 - 40% - 유화성 응축액 2 : 18 증류수 - 20% ※ 습윤성 가루 및 현탁 응축액은 유화성 응축액을 대신할 수 없음. ii. 소독 방법 소독 방법은 압축 공기 스프레이건, 연무 또는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검역소장은 에어로졸(퍼메드린 2%)을 전기적으로 민감한 장소나 조종석에도 분무하도록 할 수 있음.

iii. 소독 비율

2% 유제를 입방미터당 10ml의 비율로 분무해야 함.

(b) 가스 소독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하이드로젠시안나이트(HCN)	2g/m ³ 이상	2시간 이상
메틸브로마이드(MB)	48g/m ³ 이상	24시간 이상
셀파렐브로마이드(SO ₂ F ₂)	48g/m ³ 이상	24시간 이상

□ 구서

· 쥐가 서식하는 것이 발견된 운송수단은 검역관의 감독 아래 가스 소독을 이용하여 쥐를 방제함.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하이드로젠 시안나이트(HCN)	2g/m ³ 이상	2시간 이상

4. 선내 살균 방법

○ 선내의 각 부분은 유효한 화학 살균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소독하여야 함.

□ 식수

· 식수는 잔여 할로젠이 최소 2.0 mg/L (ppm)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로젠화하여야 함.

□ 식수 탱크

·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식수 탱크 소독 방법

- ① 탱크에 있는 모든 물을 제거할 것
- ② 급수 라인 등 모든 탱크 표면을 적당한 세제로 닦을 것
- ③ 식수를 사용하여 탱크 표면을 철저히 씻어낼 것
- ④ 탱크 표면을 최소 200 mg/L (ppm) 염소 용액으로 소독 할 것
- ⑤ 최소 2시간 동안 염소 용액을 적셔 놓을 것
- ⑥ 염소 레벨이 5.0 mg/L (ppm) 이상인지 확인하고 탱크를 채울 것

□ 주방

음식 준비 장소 및 식사 장소 포함하여, 살충 및 살균하고 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용기에 있는 식품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제거함.

□ 식료품 저장소 및 창고

매일 음식물을 보관하는 장소 (찬장과 벽장)을 포함하고 살충 및 살균하고, 쥐나 벌레나 드나들지 않도록 밀폐함.

□ 갑판

이물화물창, 후미, 저장실, 덮힌 장소 및 로프 벽장 포함하여 살충 및 살균하고, 특히 고 인물의 병원체나 쥐가 둥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함.

□ 고인 물

배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고인 단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 고체 및 의료 폐기물

검역 폐기물은 쥐 또는 새 가 접근가능해서는 안됨. 가장 적합한 시설은 잠겨진 폐기물 실 또는 폐기물 보관 시설임

5. 감독

- 소독은 항공기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 또는 관리하여야 함. 검역소장은 소독 효과를 계속 감독할 권한이 있음.

4. 육로 검역

가. 검역통보

검역장소에 접근하는 육상 운송수단은 도착 2시간 전에 열차·자동차 검역통보서(별지 제 2호의2서식)에 따라,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 등에 관하여 검역소장에게 아래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 1) 운송수단의 명칭·등록번호 및 국적
- 2) 최초의 출발지, 국내에 들어오기 직전에 머물렀던 나라·지명 및 연·월·일
- 3) 승무원 및 승객의 수

-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심되는 자 또는 그로 인한 사망자 유무 및 사망자수

나. 검역조사

1)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열차·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단, 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으로 보건상태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제출시점 : 운송수단의 장은 도착 후 즉시 제출
- 제시서류 : 운행일지 등 검역조사를 위해 검역관이 요구하는 서류

2) 적재물품에 대한 조사 :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식품, 음용수, 차내용품, 적재화물의 오염여부

3) 위생검사

- 도착한 운송수단내의 오수 등 가검물 채취·검사
- 위생검사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
- 전염병 매개동물 및 매개곤충의 서식여부 확인·조사
- ※ 쥐 및 해충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위생검사 불합격시)에는 소독시행명령서 발급

다. 열차 및 차량 검역 소독

열차 등 차량 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
1. 열차 등 차량(이하 차량 등) 소독 방법 정기적으로 국경을 왕래하는 각 차량은 그 차량의 장(운행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독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해당 소독 차량 명부, 처치 완료일시 등 포함할 것) 소독이 완료되었음이 증명된 차량은 소독 증명서를 발부받는다. (1) 일반 살충 (disinsection) (2) 도착 시 소독 : 승인된 소독 방법으로 정확하게 소독하지 않은 열차나 유효한 소독 증명서가 없는 열차의 경우 검역관의 감독 하에 도착하여 소독한다.

2. 일반 정기 살충 (disinsection)

가) 살충(disinsection)

살충에 사용되는 약제는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26호, 2005.5.26)에 따라 허가받은 약제를 사용하여 질병관리 본부 매개모기방제지침에 따라 소독을 시행한다.

나) 살충 방법

살충 방법은 압축 공기 스프레이건, 연무 또는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살충 절차

(a) 승객칸

- 차량 준비에는 개방 및 제거와 모든 탑승칸을 청소하고, 모든 커튼과 창문블라인드를 열어둔다. 카펫이 있는 경우에는 이도 제거한다. 천정과 벽, 락커, 커튼, 화장실, 주방, 커튼 뒤 벽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 분무한다. 문과 락커의 양 측면도 분무한다. 운행중 필요시 카펫은 재분무한다.

(b) 짐칸

- 짐칸과 천장 바닥에 분무한다. 측면이나 바닥공간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라) 살충 간격

- 살충소독은 4주 이내의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무살충: 월 1회)

마) 작업자 안전

- 살충작업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 차량 등 살균 방법

- 검역전염병질환자발생시 차량 내부는 유효한 화학 살균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 살균제는 100mg/l의 농도로 희석한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과 5% 포르말린(formalin) 용해액-(물속에서 40%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가스 용해액)을 사용한다.
- 살균소독은 매일 실시한다.

□ 승객칸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다음의 장소를 걸레질할 것
- 방수 장갑을 착용할 것

(3) 화장실 칸의 모든 표면(화장실이 있는 경우)

(4) 차내의 모든 좌석 팔걸이, 재떨이

- 걸레질 후 30분이 경과한 후, 남아있는 염소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말릴 것

□ 좌석 직물커버

- 감염자가 앉았던 좌석과 감염자의 앞 열, 뒷 열, 옆 좌석의 직물 커버는 벗겨내고, 1시간 동안 살균액에 담귀둘 것
- 공기 건조시킨 후에 적절히 표시하여, 드라이 크리닝 시킬 것
- 이러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커버를 소각하여 폐기하는 것은 현명한 대안이 될 것임
- 다른 좌석의 커버와 카펫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한 후, 먼지는 소각시킬 것

□ 모든 단단한 표면 (이미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

- 포르말린(formalin) 용액으로 걸레질할 것
- 30분이 경과한 후, 따뜻한 물로 지워낼 것
- 작업중에는 방수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할 것

4. 감독

- 소독은 차량 등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검역소장은 소독효과를 계속 감독할 권한이 있다.

*정기적으로 왕래하지 않는 자동차의 소독은 검역전염병자나 유사증상자의 의심이 있는 경우, 검역소장의 판단하에 차량검역소독지침에 따라 소독을 지시할 수 있다.

5. 도보 검역

육로를 통해 도보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그 지참한 물건을 포함한다)은 입국에 앞서 국경에 설치한 검역소에서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받은 후가 아니면 입국할 수 없음.

가. 검역신고

- 도보로 입국한 자는 건강상태 등을 기재한 개인검역신고서(별지 제33호서식)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할 수 있음.
- 개인검역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검역질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나. 검역시각·조사

- 검역관은 도보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 도착 즉시 검역전염병 및 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이 의심되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검역관은 도보로 입국한 자의 휴대품(짐 등)에 대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검역증 및 임시검역증 교부의 생략

도보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의 판단으로 검역증 및 임시검역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 검역조사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송수단의 조치사항에 준하여 처리함.

6. 승무원·승객에 대한 검역

가. 검역 조사

- 제출서류 : 검역질문서(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제출시점 : 승무원·승객은 도착 또는 착륙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가검물 채취 : 검역질문서에 증상표시를 한 승객·승무원 및 비오염국에서 입국하였더라도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검물을 채취
- ※ 운송수단의 항행 또는 운행중에 전염병이외의 질환이나 사고로 사망한 승무원 또는 승객의 시체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수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역확인 조치를 취함.
 - 사망경위서 확인 (작성자 : 운송수단의 장)
 - 오염지역 경유 운송수단에 준한 검역조사 실시

- 시체검안이 실시될 경우에는 시체검안서 제출·확인

나. 검역조사결과 조치사항

1) 검역조사결과 검역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심이 되는 자에 대한 조치

○ 검역전염병(의심)환자의 격리

- 검역소가 지정한 격리병사 또는 국·공립병원이나 격리수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격리·수용.

- 격리기간 : 검역전염병(의심)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병원체 감염자(보균자)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않을 때까지 격리하며, 격리기간중에는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타인과 접촉할 수 없음.

※ 검역전염병(의심)환자를 병원후송 또는 격리조치할 때는 검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검역전염병 병원체감염 의심자에 대한 감시

- 검역전염병 병원체감염이 의심되어 감시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국후 체류하는 지역의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의심되는 전염병의 잠복기간동안 당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감시토록 함.

- 감시기간 : 콜레라 120시간, 페스트 144시간, 황열 144시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40시간, 기타 전염병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보건소장은 피감시대상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감시대상자의 입국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함.

○ 검역전염병에 감염(의심)된 시체(사태포함)의 검사를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화장 등의 조치

※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는 유족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유족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유족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함.

<물품수입의 제한>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은 방부처리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장조치가 되지 아니한 것은 수입을 허가할 수 없음.

○ 시체 또는 유골, 유물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검역소장에게 붙임14호서식의 유해검역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시체 및 유골은 화장하여 분골상태로 수입할 때는 제외)

1. 사망진단서
2. 방부처리증명서
3. 항공화물운송장(AWB) 또는 선하증권(B/L)

○ 검역소장은 유해검역조사 결과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15호서식의 유해검역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병원체감염여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 예방접종이 필요한 자에 대한 예방접종

다. 검역조치에 따른 격리·감시통지

- 1) 검역소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격리수용한 때에는 그 사실을 피격리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2) 검역소장은 감시를 요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피감시자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대상자 및 보호자 : 격리통지서(별지 제11호서식)
 - 관할 보건소 : 감시대상자 통보서(별지 제12호서식)

7. 전염병별 검역

가. 검역질환별 특징

	콜레라	황열	페스트	SARS	AI
병 원 체	V.Cholerae	yellow fever virus	Y.pestis	Corona virus	AI virus
vector/경로	ballast water 분변/식수	모기	벼룩(쥐)/ 호흡기	비말/환자체액호흡기	감염조류접촉/분변/배설 물호흡기
증 상	과다한 물설사 구토/발열/복통	발열/오한/두통/요통/전 신근육통/오심/구토	발열/기침/ 호흡곤란/	1주:발열,권태감,근육통, 두통,오한 2주:호흡곤란/설사	발열/기침/근육통
진 단	변,구토물,직장 검체에서 균동정	혈액에서 바이러스동정/PCR혹은 IgM특이항체검출 혹은 항체가 증가	림프절,혈액,가래툰에서 균동정	임상적으로의심되면서, PCR양성,혈청검사양성, 바이러스분리	비인후도말바이러스분 리나,유전자검출PCR
우 선 확 인	설사	열	열	기침/열	기침/열
주 의	장내배설물에 대한 철저한 격리	증상자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호흡기격리 분비물격리	엄격한격리	의료인개인보호구착용
격 리 기 간	항생제치료종료48시간 부터 24시간간격 2회대변검사음성시까지	아프리카/남미방문자 예방접종증명서 없는 경우 6일. 증상자 5일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항생제치료개시 48시간까지		국소발생시는 격리가능(이외에는의미 없음)

나. 질병 체크리스트

질병 체크리스트
질문1, 2나 3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도, 검역질환이나 주요한 질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의심되면 검역관은 의사와 연락을 취하여 문제가 있는 통과객에 대한 조치를 위한 지시나 대처방법의 자문을 구하여야 함.
황열 질문1. 해당 통과객이 지난 6일내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예 > 질문 2로 가시오 아니오 > 질문 4로 가시오 질문2. 해당 통과객이 황열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예 > 질문 3로 가시오 아니오 > 질문 4로 가시오 질문3. 해당 통과객이 황열오염국가로 선언된 국가를 지난 6일내에 방문한적이 있고, 아래 증상을 호소하는가? 발열/오한/두통/요통/전신근육통/오심/구토 예 > 통과객의 황열감염가능성이 있음. 아니오 > 질문 4로 가시오 콜레라 질문4. 해당 통과객이 지난 5일내에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 예 > 질문 5로 가시오 아니오 > 질문 6로 가시오 질문5. 해당 통과객이 아래 증상 대부분을 호소하는가? 과다한 물설사, 구토, 발열, 복통 예 > 콜레라감염가능성이 있음. 아니오 > 질문 6로 가시오 페스트

질문6. 해당통과객이 아래 증상 대부분을 호소하는가?

열, 두통, 인후두통증, 오한, 근육통, 구역, 사타구니, 겨드랑이, 목주위에 통증있는
종창이 있는가?

예 > 질문 7로 가시오

아니오 > 질문 8로 가시오

질문7. 해당 통과객이 지난 7일내에 미국남서부, 멕시코,베트남,미얀마,러시아,카자흐스탄,
몽골,브라질,페루,볼리비아,중국,인도네시아,동부, 남부 아프리카를 여행한적 있는가?

예 > 통과객이 폐스트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아니오 > 질문 8로 가시오

SARS및 고병원성 AI

질문8. 통과객이 잦은 호흡, 호흡곤란,기침과 같은 호흡기증상을 동반하면서 38도이상의
고 열이 있는가?

예 > 질문 9로 가시오

아니오 > 검역질환가능성이 낮다.

질문9. 해당 통과객이 a) 지난 10일간 WHO에 의해 SARS우려가 있다고 선언한 국가나
중국을 여행하였거나 b) 지난7일내에 아시아나 동부 유럽 혹은 사람이나 동물에
고병원성인 AI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적이 있는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는가?

예 > SARS나 고병원성 AI가능성이 있음.

Action 해당여행객의 상태가 심각하다면, 해당 통과객을 의료설비를
갖추어 격리해야함.

아니오 > 검역질환가능성이 낮다.

8. 군용운송수단의 검역

내·외국의 군용운송수단의 군의(군의관)가 아래사항을 증명할 경우,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운송수단내에 검역전염병환자와 의사환자가 없다는 것
- 운송수단이 출발 또는 머물렀던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었다는 것
- 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가 없다는 것

9. 외국 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예방접종 등 조치

가. 예방접종 신청

- 1)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이내의 예방접종 여부 및 질병유무(고혈압, 당뇨, 임신, 수유 등)를 확인하여야 함.
- 2)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검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3)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9호서식

나. 예방접종 및 주의사항 고지

- 1)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자는 약품에 따라 접종방법 및 용량,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품의 사용설명서 내용을 숙지하고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2)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자는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3)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자는 예방접종을 받는자 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함.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1)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함.
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 또는 공공기관(예방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26호서식(예방접종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함.

※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
 -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

○ 필수요건

-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공공기관

다)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신청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증명서 양식에 담당의사가 예방접종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예방접종을 마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별지 제25호서식에 검역소장의 인을 날인하여 교부함.

2) 증명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에 별지 제29호서식 규정에 의한 증명인과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 확인인을 날인함.

라.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관리

- 1)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행한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필증명서를 교부함.
- 2)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행한 검역소장 및 예방접종기관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함.

마. 예방접종증명서발급 등 수수료

1)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예 방 접 종	콜 레 라	1 회	2,500원
	황 열	1 회	15,000원
증 명 서 교 부 수 수 료		1 매 당	1,000원

2)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무연고 이주자 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자
-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하는 자와 외국인으로서 생계가 곤란하여 구호를 받고 있다가 출국하는 자
-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

<예방접종 백신 관리>

- 백신 수령시 제조년월일, 제조회사, 제품(lot)번호, 유효기간, 수량 및 재고량을 확인함.
- 접종전까지 백신의 효능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보관함.
- 백신의 보관법을 확인한 후 보관함.
- 육안상 용액에 이물질이 있거나 성상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사용을 금지함.
- 예방접종백신을 폐기처분한 때는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에 보고함.

10.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가.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및 교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 등 소유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①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소독 ②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 ③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진찰과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그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내지 제26호서식에 의해 이를 교부하여야 함.

-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송수단은 검역구역내에서 위생검사를 받아야 함.
- 위생검사결과 쥐(쥐의 서식흔적 포함) 또는 위생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조치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은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위생검사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소독명령을 받은 자는 직접 또는 소독대행업자나 해운대리점을 통하여 소독시행 전·후에 『소독실시계획서』 및 『소독결과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독조치가 이행되었을 때 검역소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나. 수출물품(화물)에 대한 검역증명서 신청 및 교부

- 1)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또는 대행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소독을 하고 벌레를 없애도록 하며, 또한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함.

2) 검역소장은 수출물품의 소독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검역소장은 수출물품의 소독업무대행자가 소독업무를 행하는 경우 소독실시계획 및 소독실시결과를 작성·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소독실시계획서(붙임2호서식), 소독결과보고서(붙임3호서식)

○ 화물소독실시계획서(붙임5호서식), 화물소독결과보고서(붙임6호서식)

다. 검역조치 및 증명서발급 수수료

1) 위생검사 및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위 생 검 사	○ 선 박	
	총톤수 { 500톤이하	4,400원
	501~1,000톤	6,600원
	1,001~10,000톤	11,000원
	10,001~20,000톤	15,000원
	20,000톤 초과	22,000원
	○ 항공기	
	최대이륙 { 200톤이하	톤당 110원
	중 량 { 200톤초과	22,000원
위생검사관련 증명서 교부수수료		1건당 1,000원

2) 검역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소독에 소요된 실비를 징수함.

3) 검 사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에 의함.

4) 기 타

○ 상기표에 의하지 아니한 검역조치를 실시한 때에는 그 실비와 공과잡비를 징수함.

다만, 검역소에서 실시할 때에는 실비만 징수함.

○ 보건소 및 국·공립 의료기관에 의뢰한 때에는 당해기관의 수수료징수규정에 의함.

III. 기 타 업 무

1. 검역구역내의 보건·위생관리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 또는 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역구역내의 운송수단·시설·건물·물품 기타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당해 사업주에게 협조요청 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가. 구역내 검역관련 안내문 부착

- 내용: 검역 또는 전염성질환 유증상자의 자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안내
 - 가) 오염지역방문후 설사증상 동반시 좌변기 사용 금지
 - 나) 오염지역방문후 발열시 안내데스크(information)를 통한 발열확인(귀체온계) 권고
 - 다) 입국후 발열 및 설사등의 미확인 증상이 발병시 인근 보건소나 병의원을 통한 진료권고
 - 라) 시기별 감염성질환 주의 사항 안내

나.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관내 보건기관과 전염병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 기술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전염병발생 및 확산예방
 - 콜레라 등 전염병이 발생·확산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인근 보건소와 적극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
 - 지역별 전염병발생추이 등에 대한 정보교류
 - 유사시 공동방역대책 협의
 - 지역사회 방역사업 추진·평가
 -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협조
- 2) 전염병예방 홍보강화
 - WHO주보, CDMR 등을 통한 국외전염병 발생확인 및 정보제공

- 국외전염병 발생정보를 관내 선박대리점, 여행사 등에 제공하여 해당지역 여행·방문객들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2. Ballast Water의 관리

- 검역소장은 선박 내의 Ballast Water를 통한 국제적인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해외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Ballast Water 배출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Ballast Water가 관리되는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음

1. Ballast Water의 배출

각 검역소장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선박이 다음의 Ballast Water 관리 방법을 선택하여 Ballast Water를 배출하는지 감독할 수 있음

① 국내 항구 또는 바다에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배출하지 않기

영해에 ballast water를 배출할 필요가 없는 선박은 ballast water 관리를 특별히 수행할 필요가 없지만,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영해 내로 운반하는 것은 되도록 자제해야 함.

② Tank-to-Tank 교환

영해 내에서 선박 안에서 탱크와 탱크를 통한 고위험성 ballast water 이동도 허가될 수 있음. 이 방법을 사용하는 선박의 장은 ballast water 교체 작업 동안 허가되지 아니한 ballast water 배출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히 관리해야함.

③ 바다에서 전체 ballast water 교체

i) 연속 교환법 (비우기/채우기) - Sequential exchange(empty/refill) method

ii) flow through 법 - Flow through method

iii) 희석법 - Dilution method

각 방법은 고위험성 ballast water의 95%이상의 용적 교환이 이뤄져야 함. ballast water교체는 영해 밖에서 이뤄져야 하며, 가능한 육지에서 멀리 그리고 최소 200m 깊이에서 이뤄져야 함

○ 연속 교환법 (비우기/채우기)

심해에서 깨끗한 물을 채우기 전에, 바다에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탱크(한번에 1개 또는 2개씩)에서 비우고, 물을 채우되 ballast water의 혼합에 있어 고위험성 ballast water가 5% 미만이 되게 해야 함

○ Flow-Through Method

95% 이상의 교환을 위해서 각 탱크에 각 탱크 최대 용량의 최소 300% 이상의 심해의 깨끗한 물을 펌핑하여 흘려보내는 것. 물을 흘려 보내기 전에, 탱크에는 오직 일부의 고위험성 ballast water만 남겨져 있어야 함

○ 회석법

유조선과 같이 여분의 piping/pumping이 장착된 경우, ballast water를 탱크 한쪽에서 끌어들이고, 동시에 반대편쪽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음. 각 탱크의 최대 용적 300% 이상의 물을 쏟아부어야 함

2. Ballast Tank의 침전물

Ballast 탱크의 침전물은 호주 바다에 배출되어서는 안됨

3. 수입폐선 및 고철화물 소독

가. 수입폐선의 검역

검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결과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 또는 매개 우려가 있어 소독을 필요로 할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쥐잡이소독(HCN 훈증소독) 또는 분무소독(살충 또는 살균소독) 실시

나. 수입고철화물 검역

- 1) 검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결과 해당선박 또는 화물에 쥐·벌레의 서식흔적이 있거나 전염병병원체에 오염 또는 오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조치
- 2) 수입고철중 각종 병원체나 위생해충의 유입이 우려되는 고철에 대하여는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검역소장은 다음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것

가) 수입고철소독기준 및 소독방법 등의 적정이행 여부

나) 고철소독을 이행한 후 “하역장 주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에 대한 소독”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식물검역소 고시제2006-3호(2006.5.10)에 의한 소독이행 확인으로 같음.

다) 각종 병원체나 위생해충의 유입이 우려되는 수입고철의 소독은 선박내 또는 부두(하역장, 야적장 포함)에서 소독처리 실시여부

라) 동 화물의 작업장 주변에 대한 위생적인 청결상태를 유지여부

3) 고철수입자 및 소독업무대행자 준수사항

- 가) 수입되는 고철은 하역시와 야적장으로 이송후 위생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함.
- 나) 수입고철을 하역장에서 야적장으로 이송후 하역장 저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와 야적장에서 제련공장으로 이송후 야적장 저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에 대한 소독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식물검역소 고시제2006-3호(2006. 5. 10)에 의한 소독이행 확인으로 같음함.
- 다) 고철하역장 및 고철야적장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함.
- 라) 고철수입자는 소독업무대행자와 소독계약을 체결시 계약내용에 고철소독과 흙 및 쓰레기소독을 구분계약토록 하며, 소독업무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관할 검역소장에게 통보함.
- 마) 고철수입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소독작업 이행여부를 확인함.
- 바) 소독업무대행자는 매회 붙임7호서식의 『수입고철소독계획서』 및 붙임8호서식의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를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함.
- 사) 고철수입자는 관할 검역소장의 소독업무 지도·감독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도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4) 수입고철 소독기준

가) 살충소독기준

원제 1ℓ 당 살포기준(희석비율이 100배인 경우)				고철 1,000톤 기준
약품명	원제량	살포량	살포면적	살포면적
살충제	1ℓ	40cc/m ²	2,500m ²	16,500m ²

나) 세부 살충소독기준

○ 고철톤수(량)에 대한 살포면적(m²) 산출기준

- 고철소독면적은 500톤(3,000m²)단위로 산출하되, 500톤 단위기준 이하 또는 이상의 잔여 톤수에 대한 고철소독 면적산출은 250톤을 기준으로 절상절하하여 500톤단위로 살포면적을 산출함.
- 고철하역시 소독면적은 6,000m²로 한다
- 고철야적장 이송후 하역장소(부두) 소독면적은 고철톤수에 관계없이 3,000m²로 함.
- 고철야적장 이송후 야적장 및 그 주변 소독면적은 고철톤수에 관계없이 7,500m²로 함.

- 1,000톤미만의 고철소독의 경우 1,000톤을 기준으로 소독 실시

※ 수입 컨테이너화물(고철) 소독기준은 관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소독기준 및 소독방법에 따른다.

※ 하역장소 및 야적장 면적이 소독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독면적에 대한 기준은 검역소장이 판단하여 정함.

※ 고철이 1,0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철의 적재방법에 따라 하역장소 및 야적장 등의 면적기준은 관할 검역소장이 판단하여 정함.

예시) 희석비율이 100배인 경우

고철톤수	살포면적(m ²)	원제량(ℓ)
1,000	16,500 (6,000+3,000+7,500)	6.6
1,500	19,500 (9,000+3,000+7,500)	7.8
2,000	22,500 (12,000+3,000+7,500)	9.0
10,000	70,500 (60,000+3,000+7,500)	28.2
30,000	190,500 (180,000+3,000+7,500)	76.2

4.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및 관리

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소독업무대행자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소독업의 신고) 규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1인이상

2) 선박 및 수출·입 화물소독에 필요한 시설·장비·약제 보유

※ 소독에 필요한 시설·장비·HCN, MB 약제의 보유는 관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소독업무대행자 자격요건 및 소독기준 이행여부의 판단

1)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소독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소독업무를 대행한 자가 관계법령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지속적으로 소독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인 경우는 그 자격기준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2) 지도·감독사항

○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준수여부 확인

- 소독업무 실적과 약품사용량 등 수급내용 확인
- 기타 검역관련 소독업무대행에 따른 업무지도 등

3) 소독실시 확인 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지도감독결과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소독업무대행을 소홀히 한 경우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함.

IV. 행 정 사 항

1. 사업계획

- 가. 검역소장은 검역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연도별, 계절별 운송수단의 도착·출발 대(척)수, 예방접종인원, 세균검사건수 등을 분석한 사업계획을 1월 15일까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 나. 사업목표량은 인력, 보유장비, 기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량을 설정함.
- 다. 사업수행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표에 따라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업무실적 보고

검역소장은 「국제검역상황」(분기, 연보)을 매분기 및 연도말 익월 10일까지 붙임12호서식에 의거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에 보고함.

3. 검역대 사양

검역소장은 검역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붙임 10호의 검역대 사양을 참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

4. 검역조치관련 벌칙조항

- 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1.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도착 또는 출발한 운송수단의 장
 -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에 따른 회항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6. 제20조에 따른 검역소장의 회항명령을 어긴 자
7. 제34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이나 물건(열차·차량 등 수송 수단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

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물건을 수용장소에서 반출하거나 수용장소에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역법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하는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라.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100
2. 법 제9조를 위반하여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수단에 승선 또는 탑승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50
3.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격리기간중에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다른 사람과 타인과 접촉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3호	50
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4호	100
5.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5호	100

5. 기타사항

검역질문서 보존기간은 유증상을 표시한 것은 12개월 보존하고, 증상표시가 없는 것은 1개월 보존함.

제7절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개정(안)

1.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개정안 제1안

- 채점을 통해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되, 위생검사표의 판정 기준 및 지침 상의 채점 요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음.

선박등위생검사지침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검역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한 위생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식의 기재방법, 채점의 요령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검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무전검역대상선박의 위생검사) ①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는 무전검역을 행하는 검역소에서 실시한다.

②위생검사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표 2부를 작성, 그중 1부는 검사를 행한 검역소에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증명서에 첨부하여 당해 선박에 비치토록 이를 교부한다.

③증명서에 부여하는 교부번호는 무전검역을 행하는 검역소부호, 연호 및 발행번호의 3단을 그 순서로 나열하되, 연호는 서력년호의 하2행으로 하고, 발행번호는 각 검역소의 발행순을 3행으로 표시한다.

제 3 조(위생검사상황기록부등) ①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상황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증명서 교부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조(채점 및 판정의 표기방법) ①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표의 각 항목(1~5항)에 대한 채점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a : (양호한 상태)

b : (불량한 상태)

c : (극히 불량한 상태)

②기준점은 “a”에 두며, 검사결과 불비 또는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b” 또는 “c”에 배정된 점수를 감한다.

③위생검사의 결과 득점에 따라 증명서 또는 기록부 등의 판정란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80점이상 “우수”(GOOD)

80점이상 60점이상 “양호”(FAIR)

제 5 조(개선지시등) ①검사 진행중 또는 결과에 따라 감점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선장 또는 담당책임자에게 그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할 것을 지시하고 그 방법을 지도하여야 한다. 위생검사에 합격한 선박이라 하더라도 감점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한 같다.

②개선지시를 받은 사항이 검사완료시까지 개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감점을 취소할 수 있다.

③검사진행중에 불량 또는 불비된 점이 많이 발견되어 불합격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반드시 전항목에 행하여야 한다.

제 6 조(채점요령) 이 지침에 의한 채점요령은 “별표” 채점요령에 의한다. 다만, 100톤미만인 선박의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표중 지도번호 20번 내지 24번과 27번 및 28번에 한하여 간이시설을 갖추어 당해선박의 위생상태가 확보될 수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감점을 아니할 수 있다.

<별표>

채 점 요 령

선박검사의 위생검사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매개동물의 방제관리
- ☐ 주방 및 식품관리
- ☐ 음용수 관리
- ☐ 기타위생관리

1. 매개동물의 방제관리

A. 쥐의 서식여부

쥐의 서식은 살아 있는 쥐의 유무로 판단한다.

- a: 살아 있는 쥐가 발견되자 않는 경우
- c: 살아 있는 쥐가 발견되는 경우

B. 쥐의 잔여흔적 여부

거실, 조리실, 식품 창고등 쥐의 먹이가 되는 물건의 보관 또는 저장장소를 중심으로 쥐의 잔여흔적(쥐똥 이나 죽은 쥐, 잔여물 등)이 있는 공간이 있는지의 유무로 판단한다.

- a: 쥐의 잔여흔적이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 b: 쥐의 잔여흔적이 있는 공간이 2곳 이상인 경우

- c: 쥐의 잔여흔적이 식품이나 음용수 등이 보관된 장소를 1곳 이상 포함하여 3곳 이상인 경우

C. 쥐막이 줄

2개 이상의 쥐막이 줄의 유무 및 그 관리상태와 선박접안시의 사용유무로 판단한다.

- a: 양호한 상태의 쥐막이 줄을 2개이상 보유하고 선박접안시 사용하고 있음
- b: 양호한 상태의 쥐막이 줄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선박접안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c: 쥐막이 줄이 2개미만 이거나,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

D. 쥐틀 및 쥐약

선박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쥐틀 5개이상 및 분말쥐약 500g과 액체쥐약 500cc이상의 구비여부로 판단한다.(현재 분말쥐약과 액체쥐약의 경우는 구서를 위해 사용한 양을 제외하고 현재 사용가능한 잔여량을 말한다)

- a: 쥐틀 5개이상, 분말쥐약 500g이상, 액체쥐약 500cc이상이 구비된 경우
- b: 각각이 구비되어 있으나 그 잔량이 부족한 경우
- c: 각각이 일절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잔량이 없는 경우

E. 해충의 서식유무

모기, 바퀴, 파리, 벼룩, 빈대, 이 등 전염병의 매개가 되는 위생해충 서식의 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하되, 그 표본으로 모기의 개체수 및 기타 열거된 해충의 발견 유무로 판단한다.

- a: 모기 및 기타 열거된 해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 b: 1m²당 모기 한 마리이상 이거나, 기타 열거된 해충의 흔적이나 발견이 있는 경우
- c: 선원의 자체적인 구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전문적인 살충작업이 필요한 경우

F. 살충제

상비량은 선박의 크기를 감안하여 에어졸(300ml)일때는 최소 12개이상, 유제원액일때는 최소 1L이상을 비치하고, 이의 사용숙지여부로 적절성을 판단한다.

- a: 살충제의 양이 충분하고, 적절한 사용 방법의 숙지가 되어 있는 경우
- b: 살충제의 양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사용방법의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c: 살충제의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식품 및 주방 위생관리상태

A. 식품보관상태

식품의 보관은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는 그 유효기간 준수의 여부와 부패여부를 보아 판단하고, 냉장고의 상태는 계절별 설정온도에 따른 실제 냉장고내 온도의 유지여부 및 청결도에 따라 판단한다.

식품의 상태

- a: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부패한 식품이 없는 경우
- b: 유효기간을 준수하였으나 부패한 식품이 있는 경우
- c: 유효기간을 위반하였거나 부패한 식품이 있는 경우

냉장고의 상태

- a: 설정온도와 실제 냉장고내 온도가 +/- 1도 이내인 경우고, 늘어붙은 음식물의 흔적이 없는 경우
- b: 설정온도와 실제 냉장고내 온도가 +/- 1도 이내인 경우이나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늘어붙은 음식물의 흔적이 있는 경우나 주기적인 청소가 없는 경우)
- c: 설정온도보다 실제 냉장고내 온도가 2도 이상의 높고, 육안으로도 청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설정기준온도 냉동식품: -12 ℃ 이하

육류,어류: 0-3 ℃ 이하

유제품 : 5-7 ℃ 이하

과실,야채: 7-10 ℃ 이하

B. 식기, 조리기 상태

소독시설이라 함은 소독용 기기 또는 식기를 세척하기위한 증기방식의 기기의 유무로 판단하고, 식기류의 보관장소는 그 독립적인 밀폐된 보관소의 유무와 상관없이 청결 및 방충시설이 유지되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소독시설

- a: 소독시설이 있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b: 소독시설은 있으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c: 소독시설이 없는 경우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상태

a: 찌꺼기가 없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b: 찌꺼기가 일부 있고 건조하지 않은 경우

c: 제대로 세척이 되지않아 재 세척을 요구할 정도의 상태인 경우

C. 조리종사자의 위생상태 및 태도

조리종사자의 위생상태는 조리복의 유무(모자, 가운 혹은 앞치마 등)와 조리시 개인 청결유지상태의 준수(조리전 후 및 화장실 사용후 손씻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a: 완전한 조리복장이 구비되어 있고, 조리종사자의 개인청결이 준수되는 경우

b: 조리복장이 구비되어 있으나 착용하지 않거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조리종사자의 개인 위생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

c: 조리복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이 극히 불량한 경우

D. 조리실

a: 조리실의 위생 상태가 양호하다.

c: 조리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E. 손씻기시설

손씻기를 할 수 있는 수도가 있는지 의 유무로 판단한다.

a: 손씻기를 할 수 있는 수도꼭지나 이동식 꼭지가 있다.

b: 손씻기를 할 수 있는 수도꼭지나 이동식 꼭지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c: 손씻기를 할 수 있는 수도꼭지나 이동식 꼭지가 없다

3. 음용수관리

A 탱크 및 배수관

a: 탱크의 사용이 전용이다.

c: 탱크의 사용이 겸용이다.

B. 계량기

a: 계량식(gauge방식) 있음

계량기구의 보관은 방진,건조한 나무상자 등에 보관되어 있으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a: 계량기의 보관(rod방식)상태가 양호하다.

c: 계량기의 보관(rod방식)상태가 불량하다.

C. 소독제의 양

소독제의 양은 크로루칼기 5kg이상이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a: 충분하다.

b: 구비되어 있으나 양이 부족하다.

c: 구비되어 있지 않다.

4. 화장실관리

화장실관리는 수세시설 및 비누등 개인위생관리 용품의 구비 유무 와 청결로 판단한다.

A. 관리

a: 화장실의 유수량이 충분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및 용품이 있는 경우

c: 화장실의 유수량이 부족하거나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및 용품이 없는 경우

B. 청결

a: 화장실의 관리 상태가 a이면서 청결한 경우

b: 화장실의 관리 상태가 a이면서 청결하지 않은 경우

c: 화장실의 관리 상태가 c이면서 청결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위생관리

기타 관리 상태는 전반적인 선내의 위생관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하역중인 경우, 하역으로 인한 바닥등의 불결한 상태는 판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A. 선내전반의 청결 및 정돈상태

- a: 선내 전반의 청결상태가 양호한 경우
- b: 선내 전반의 현재 청결상태의 일시적인 관리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 c: 선내 전반의 청결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여 일시적인 작업으로 청결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

B. 일반소독제의 비치

- a: 선내의 일반적인 소독을 위한 소독제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다.
- b: 선내의 일반적인 소독을 위한 소독제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다

C. 예방접종

전염병의 국내유입 우려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한다.

- a: 예방접종이 완료된 경우
- c: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별지 서식

위생검사표 SANITARY INSPECTION RECORD

국립검역소
Q. STATION

검사연월일
DATE

선명 VESSEL		선종 TYPE		총톤수 G.T		순톤수 N.T	
국적 NATIONALITY				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호 Q. OFFICER	
1. 매개동물의 방제관리 VERMIN	(지도번호)	(40)		3. 음료수 관리 POTABLE WATER	(12)		
A. 쥐의 서식(살아있는쥐) RATS	없음 NONE 있음 YES	(1)c	불합격 FAIL ED	A. 배수관 WATER PIPING	탱크 TANK 파이프 PIPE	전용 EXCLUSIVE 검용 COMBINED	(25)c -3
B. 쥐의 잔여물(똥, 죽은 쥐) FAULT OF RAT PROOF	없음 NONE 적음 FEW 많음 MANY	(2)b -3 (3)c -5		B. 주수구 FILLING 통기구 AIR		양호 GOOD 불량 NOT GOOD	(26)c -2
C. 쥐 막이 기구 RAT GUARDS	소유수 및 활용 NUMBER & USAGE	양호 GOOD 보통 FAIRLY GOOD 불량 NOT GOOD 충분 (6)b	(4)b -3 (5)c -2 (6)b -3	B. 계량기 WATER GAUGE	계기식 GAUGE SYSTEM 사운딩 ROD SYSTEM	있음 YES 양호 GOOD 불량 NOT GOOD	(27)c -2
				C. 소독제 DISINFECTANTS		충분 ENOUGH 부족 SHORTAGE 없음	(28)b -3 (29)c -5
				PORTABLE			

D. 쥐틀 및 쥐약 RAT TRAPS POISONS	ENOUGH 부족 SHORTAGE (7)c 없음 NONE	-5	4. 화장실관리 LAVATORIES	수량 및 비누 FLO W & S O A P 양호 GOOD 불량 NOT GOOD (30)c	(10)
E. 해충의 서식 INSECTS	없음 NONE 적음 FEW 많음 MANY (8)b (9)c	-20 불합격	A. 수세시설 BASIN	수량 및 비누 FLO W & S O A P 양호 GOOD 불량 NOT GOOD (30)c	-3
F. 살충제 INSECTICIDES	충분 ENOUGH 부족 SHORTAGE 없음 NONE (10)b (11)c	-3 -5	B. 청결 CLEANLINESS	양호 GOOD 보통 FAIRLY GOOD (31)b 불량 NOT GOOD (32)c	-2 -5
2. 식품관리 FOODS		(28)	5. 기타 위생관리 OTHER HYGIENIC CONTROL		(10)
A. 식품보관 STORAGE OF FOODS	보관상태 STORAGE 양호 GOOD 보통 FAIRLY GOOD 불량 NOT GOOD (12)b (13)c	-1 -2	A. 선내전반정돈 ARRANGEMENTS AND SWEEP	양호 GOOD 보통 FAIRLY GOOD (33)b 불량 NOT GOOD (34)c	-2 -5
	냉장고상태 TEMPERATURE 양호 GOOD 보통 FAIRLY GOOD 불량 NOT GOOD (14)b (15)c	-1 -3	B. 일반소독제 GENERAL DISINFECTANTS	충분 ENOUGH 불충분 SHORTAGE (35)c	-2
	소독시설 DISINFECTORS 양호 GOOD 보통 FAIRLY GOOD 불량 NOT GOOD (16)b (17)c	-1 -2	C. 예방접종 VACCINATION CERTIFICATE	양호 GOOD 불비 IMPERFECTION (36)c	-3
B. 식기조리기 취급 KITCHEN UTENSILS	식기류 및 조리기구 상태 UTENSILS & TABLEWARE 양호 GOOD 보통 FAIRLY GOOD 불량 NOT GOOD (18)b (19)c	-2 -4	선장의 서명 Signature		
C. 조리원 COOKS	청결태도 및 조리복 MANNER & COOKING WEAR 양호 GOOD 보통 FAIRLY GOOD 불량 NOT GOOD (20)b (21)c	-1 -3	Signed _____ 선장 Master		
D. 조리실청결 GALLEY CLEANLINESS	양호 GOOD 불량 NOT GOOD (22)c	-5	비고 Remarks :		
E. 손씻기시설 HAND-WASHING FACILITIES	있음 YES 근처에 있음 N E A R BY 없음 NONE (23)b (24)c	-2 -5			
※ 참고사항 : 1. 항공기 및 차량은 이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2. 기재요령은 전막등 위생검사지침을 참고할 것					

2. 선박 등 위생검사지침 개정안 제2안

- 기존의 채점표 및 채점 양식을 유지하되, 채점 요령에 있어서 객관적인 검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형태임

<별표>

채 점 요 령

1. 매개동물의 방제관리

A. 쥐의 서식

쥐의 서식여부 — ☐ 살아 있는 쥐가 발견되자 않는 경우 (無)-a
☐ 살아 있는 쥐가 발견되는 경우(有)-c(불합격)

※ 쥐의 서식의 흔적은 보이나 검사하는 시점에서 선내에서 쥐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a로 채점한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5-A 선내전반의 정돈상태가 불량하다고 간주하여 감점한다.

B. 쥐의 잔여흔적 여부

쥐잔여흔적이 있는 공간의 유무 — ☐ 쥐의 잔여흔적이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無)-a
☐ 쥐의 잔여흔적이 있는 공간이 2곳 이상인 경우(少)-b(-3)
☐ 쥐의 잔여흔적이 식품이나 음용수 등이 보관된 장소를 1곳 이상 포함하여 3곳 이상인 경우(多)-c(-5)

※ 거실, 조리실, 식품창고등 쥐의 먹이가 되는 물건의 보관 또는 저장장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C. 쥐막이 줄

소유수 — ☐ 양호한 상태의 쥐막이 줄을 2개이상 보유 충분-a
☐ 쥐막이 줄이 2개미만 이거나,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 부족-c(-3)

활용상태 — ☐ 선박접안시 사용하고 있음 양(良)-a
☐ 선박접안시 사용하지 않고 있음불량(不良)-c(-2)

※ 선박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쥐막이줄의 수가 2개이상 있으면 충분하나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선박을 접안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등은 감점의 대상으로 한다.

D. 쥐틀 및 쥐약

쥐틀의 수

쥐약의 량 및 정비상황	—	쥐틀 5개이상, 분말쥐약 500g이상, 액체쥐약 500cc이상이 구비된 경우-a
		각각이 구비되어 있으나 그 잔량이 부족한 경우부족-b(-3)
		각각이 일절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잔량이 없는 경우 없음 -c(-5)

※ 선박의 대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쥐틀 5개이상과 분말 쥐약 500g, 액체 500cc이상이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현재 분말쥐약과 액체쥐약의 경우는 구서를 위해 사용한 양을 제외하고 현재 사용가능한 잔여량을 말한다)

E. 위생해충서식유무

바퀴 및 기타해충	—	모기 및 기타 열거된 해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無)-a
		1m2당 모기 한 마리아상 이거나, 기타 열거된 해충의 흔적이나 발견이 있는 경우(少數)-b(-15)
		선원의 자체적인 구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전문적인 살충작업이 필요한 경우-c(-20)

※ 바퀴, 모기, 파리, 벼룩, 빈대, 이 등의 위생해충 서식유무를 검사하여 “C”는 선원들의 구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전문적인 살충작용을 요하는 상태를 뜻한다.

F. 살충제의 량	—	살충제의 양이 충분하고, 적절한 사용 방법의 숙지가 되어 있는 경우 충분-a
		살충제의 양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사용방법의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족-b(-3)
		살충제의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없음-c(-5)

※ 상비량은 선박의 대소를 감안하여 에어졸(300ml들이)일 때에는 12~25개 유제 원액일 때에는 1~2ℓ 이상을 비치하고 또한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식품관리

A. 식품보관

식품의 청결도(냉장고포함) —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부패한 식품이 없는 경우 양(良)-a
 유효기간을 위반하였거나 부패한 식품이 있는 경우 불량(不良)-c(-2)

냉장고의 온도 — 설정온도와 실제 냉장고내 온도가 +/- 1도 이내인 경우고, 늘어
 은 음식물의 흔적이 없는 경우 양(良)-a
 설정온도보다 실제 냉장고내 온도가 2도 이상의 높고, 육안으로
 청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불량(不良)-c(-2)

기준 냉동식품 : -12℃이하

육류·어류 : 0~3℃이하

유제품 : 5~7℃이하

과실·야채 : 7~10℃이하

B. 식기·조리기 취급

소독시설 — 소독시설이 있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양호-a
 소독시설은 있으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또는 소독시설이 없는
 경우 불량-c(-2)

식기류의 보관상황 —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양(良)-a
 건조하지 않은 경우 불량(不良)-c(-2)

조리기구의 청결상태 — 찌꺼기가 없고, 양-a
 제대로 세척이 되지않아 재 세척을 요구할 정도의 상태에
 경우불량-c(-3)

※ 소독시설이라 함은 소독용 기기 또는 식기를 세척하기 위한 증기의 열탕을 말
 한다. 식기류의 보관장소는 문짝이나 망문이 없어도 청결하게 되어 있고 조리
 실 식당등에 방충시설이 되어 있으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C. 조리원의 위생개념

청결태도	- 조리종사자의 개인청결이 준수되는 경우양(良)-a - 조리종사자의 개인 위생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불량(不良)-c(-3)
조 리 복	- 완전한 조리복장이 구비 있음-a - 조리복장이 구비되어 있으나 착용하지 않거나 조리복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c(-2)
D. 조리실	
청결태도	- 위생 상태가 청결함 양(良)-a -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않음 불량(不良)-c(-5)
E. 수세 시설	
수도꼭지·이동식꼭지	- 손씻기를 할 수 있는 수도꼭지나 이동식 꼭지가 있다. 있음-a - 손씻기를 할 수 있는 수도꼭지나 이동식 꼭지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근처에 있음-b(-2) - 손씻기를 할 수 있는 수도꼭지나 이동식 꼭지가 없다없음-c(-5)
3. 음용수관리	
A. 배수관	
탱 크 파이프	- 탱크의 사용이 전용이다 전용-a - 탱크의 사용이 겸용이다. 겸용-c(-3)
주수구 통기구	- 관리가 양호한다. 양(良)-a -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불량(不良)-c(-2)
B. 계량기	
계량식-계량식(gauge방식) 있음-a	
측량기의 보관 (사운딩식)	- 계량기의 보관(rod방식)상태가 양호하다. 양(良)-a - 계량기의 보관(rod방식)상태가 불량하다.불량(不良)-c(-2)
※ 계량기구의 보관은 방진·건조한 나무상자 등에 보관되어 있으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 C. 소독제의 량 —
 충분하다. 충분-a
 구비되어 있으나 양이 부족하다. 부족-b(-3)
 구비되어 있지 않다.없음-c(-5)

※ 크로루칼기 5kg이상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4. 화장실 관리

A. 수세시설

- 유 수 량 —
 화장실의 유수량이 충분 충분-a
 화장실의 유수량이 부족불충분-c(-3)

- 비 누 등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및 용품이 있는 경우 충분-a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및 용품이 없는 경우 청결불충분-c(-2)

- B. 청 결 —
 화장실의 관리 상태가 a이면서 청결한 경우 충분-a
 청결하지 않은 경우 불충분-c(-5)

5. 기타 위생관리

- A. 선내 전반의 정돈 —
 선내 전반의 청결상태가 양호한 경우 양(良)-a
 선내 전반의 현재 청결상태의 일시적인 관리가 양호하
 않은 경우보통-b(-2)
 선내 전반의 청결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여 일시적인
 업으로 청결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
 불량(不良)-c(-5)

※ 하역중의 선박을 검사할 때에는 하역장소, 하역으로 인한 통로, 바닥등의 불결
 상태는 판정요건에서 제외한다.

- B. 일반소독제 비치 —
 선내의 일반적인 소독을 위한 소독제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다. 충분
 선내의 일반적인 소독을 위한 소독제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다불충분(-2)

- C. 예방접종 —
 예방접종이 완료된 경우 양(良)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불량(不良)(-3)

※ C는 전염병의 국내유입 우려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외에는 참고적으로 검사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검역지침개정을 위한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국내 각 검역소의 검역추이 및 경향 분석을 통한 개정의 재고사항 파악, 둘째, 해외 각국의 검역 자료의 수집과 각국 검역기관의 조직 및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이해, 셋째, 선진국가 검역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방문 및 해당 국가의 검역업무수행에서의 고려점 파악, 넷째, IHR2005에 따른 국제적인 검역체계개선과 관련된 각국의 노력 파악을 들 수 있음.
- 국내 각 검역소의 검역추이 및 경향 분석과 개정의 재고사항 파악을 통해서, 첫째, 항공기를 통한 입국자의 지속적 증가와 둘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의 증가를 파악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항만의 검역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증가는 공항과 항만에 걸쳐 동일하게 걸쳐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증가는 주요 오염지역인 태국, 필리핀등의 국가로부터의 입국자 증가를 동반하면서 전체적으로 오염지역국가로부터의 입국증가추세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음.
- 이러한 오염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의 증가라는 현상은 기존의 검역체계에서 이루어지던 업무의 양적인 급격한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와 함께 이들 입국자의 입국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검역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여짐. 따라서 이러한 점이 결국 본 검역지침개정작업의 재고점으로 파악되었음.
- 해외각국의 검역자료수집과 각국 검역기관의 조직및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자료수집은 해외 각국의 검역관련기관의 홈페이지상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인간검역이 동식물 검역과 분리된 경우는 해당 인간검역관련부서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동식물과 인간검역을 동일한 기관에서 다루는 경우는 인간검역에 관하여서만 자료를 활용하였음. 이와 더불어 각국의 검역법령들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였으며, 검역업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도 고려하였음. 각국의 조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각국은 첫째, 인간검역과 동식물 검역을 분리하고 있는 경우와 동식물검역을 인간검역과 함께 다루는 국가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분리하여 관리하는 국가의 경우 인간검역은 한국과 동일하게 보건관련 정부기관과 그 산하 질병관리기관에서 검역업무의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동식물은 농림수산물관련 정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관리되는 경우는 보건관련부처에서 담당함을 살펴볼 수 있었음. 인간검역의 수행과정에서 호주의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은 DoHA(the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의 위임을 받은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가 수행하나 AQIS는 DoHA가 아니라 농림수산물부소속으로 이중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됨을 살펴볼 수 있었음.
- 현장방문을 위하여 호주의 경우 DoHA의 검역담당부서인 Border Health Section, 일본

의 경우 후생노동성 소속의 나리타공항검역소 및 요코하마항만검역소를 선택하여 접촉을 취하였고, 이들 기관의 방문을 통하여 검역업무에 임하는 각국 기관의 담당관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각국의 검역업무가 갖는 문제점 및 재고점을 파악하였음. 이러한 방문은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이를 통한 검역업무의 현장수행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과 각국의 검역기관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 및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실제 방문과정에서 검역업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 또한 인식되었음.

- 끝으로 IHR 2005와 관련하여 각국들은 IHR2005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개념을 각국의 법령개정 혹은 검역업무에 반영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음. 한국과 같이 일본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전염성질환이나 검역질환의 국제적인 확산이나 각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기타 직접적인 법령개정이 미비한 국가들 또한 IHR2005에 서명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 그 기준을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음. IHR 2005을 반영하여 각 국가들이 기울이고 있는 전염병확산의 방지와 검역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하는 노력들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병행되어야 할 주제들로서 이러한 두가지 방향의 검역업무의 추진방향은 결국 검역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음.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이러한 검역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존지침검토와 개정이 본 연구의 결과로서 반영되어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 및 고찰에 있어 특히 해외 각국을 참조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각국들이 검역 및 검역업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을 대부분 법 및 시행령과 규칙이나 고시에서 다루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검역관련 업무들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업무지침이라는 하위의 위임된 행정지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직접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임. 즉 법령에서 구체적인 수준의 검역업무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검역의 대상 당사자들에게 검역과정에서 준수하고 보고해야 할 양식이나 내용을 담아 가이드라인(guideline)의 형태로 제공하여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검역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검역기관이 검역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 자발적인 보고 자발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임. 둘째, 이와 함께 입국과 출국과 관련한 여타 기관들 즉 세관이나 출입국관리국(혹은 이민국)과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통하여-증상자의 보고를 공조할 수 있도록-, 검역업무의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인간검역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인간검역담당부서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임. 또한 검역구역의 관리는 지역의 지방자치관할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이의 시행이 입출국자를 고객으로서 서비스 및 효율의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음.

셋째, 전염성 혹은 검역질환의 추이와 관련하여 호흡기성 바이러스질환의 급증 및 파급 효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근대적 인원배치위주의 검역보다는 앞서 언급한 자율적 보고와 더불어 검역소 특히 공항검역소의 경우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체계를 갖추어 의료진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검토의 방향과 일치하는 검역업무의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존의 질환중 콜레라의 경우 개정예정인 법령에서도 검역대상 질환으로 법정되어 있는 까닭에 그 관리가 중요하기는 하나 일본의 경우 검역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앞으로의 검역의 주요대상이 항공기 및 호흡기 그리고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그 관리의 중요도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콜레라 중심의 평시감시체계는 발생시 조치체계로 개선발전시키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위해 요구된다고 보여짐. 이와 함께 우리의 경우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국내이주자나 이민자들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이나 호주등의 국가에서 이들의 입국시 중요한 관리대상 질환으로 검역지정병과 상관없이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결핵에 대한 감시,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봄.

제5장 연구성과

- 앞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 및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임. 첫째, 직접적으로는 검역지침개정을 통하여 기존 지침의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이와 더불어 IHR 2005에 따른 해당 각 법령의 개정에 합당한 검역지침의 완성을 통하여, 특히 기존에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있던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검역업무에 있어 현장에서의 업무관리 및 파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역지침을 가능케 하였음. 둘째, 해외검역기관 현장방문 및 선진 각국 및 주변국의 검역정보를 최대한 폭넓고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검역업무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과 해당국의 검역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의 검역업무의 방향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 혹은 우리의 검역업무가 가진 장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방문국의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간 교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적 접촉경로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음. 셋째, 국내 검역업무의 수준을 검토하고 해외 각국의 검역업무 수행을 파악해 봄으로써 현장에서의 업무의 질적 양적 관리를 위한 설정의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검역역량강화나 업무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업무개편 및 조직개선을 위한 근거들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넷째, 검역질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통하여 질병별 및 운송수단별 검역지침을 연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들 각각에 좀 더 합당한 검역수행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 및 그 고찰, 연구의 성과가 바탕이 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검역업무지침이 그 수행에 있어 점진적이나 발전적인 검역업무의 개선을 이루고, 국제적인 기준과 해외 선진각국의 검역수준을 능가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봄.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없음

제7장 참고문헌

- _____,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자료집.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4.
- _____, 보건국제법과 WHO.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의자료집. 2005.
- _____,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 보고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6.
- _____,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조기 통제 및 피해 최소화 전략의 법적·윤리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6.
- _____,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법의 하위법령 개정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8.

대한감염학회:감염학,군자출판사,2007

대한미생물학회편: 최신 진단미생물학 제3개정판, 서흥출판사, 2000.

질병관리본부. 2005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2005.

질병관리본부. 2005년 전염병관리사업지침. 2007.

국립보건원. 사스(SARS) 관리지침. 2007.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지침. 2007.

질병관리본부. 검역업무 안내. 2008.

American College of Legal Medicine. Legal Medicine. Mosby. 2007

Coughlin. Case Studies in Public Health. American Public Health Assn. 2006

Judith E. Tintinalli. Emergency Medicine. McGraw Hill. 2007

Fauci.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I. McGraw Hill. 2007

Fauci.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II. McGraw Hill. 2007

Richard A. Goodman. Law in Public Health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Steinbock, Bonnie (EDT). New Ethics for the Public's Health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7
Lawrence O. Gostin. Public Health Law: Power, Duty, Restrai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Lawrence O. Gostin. Public Health Law and Eth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vel and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http://www.fnih.org/>
<http://www.nih.go.jp/niid/index-e.html>
<http://www3.niaid.nih.gov/>
<http://www.hpa.org.uk/>
<http://www.nih.gov/>
<http://www.cdcfoundation.org/>
<http://www.who.int/>
http://www.who.int/topics/international_health_regulations/en/
<http://www.who.int/csr/ihr/travel/en/index.html>
www.cdc.gov
<http://www.cdc.gov/ncidod/dq/index.htm>
www.cdc.gov/nceh/vsp
www.cdc.go.kr
www.aqis.go.au
www.health.gov.au
www.daffa.gov.au
www.doha.gov.au
www.abs.gov.au

한국 검역법, 한국 검역규칙, 한국 검역법 시행령

일본 검역법, 검역규칙, 검역법 시행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하는 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중국 검역규칙 (RULES FOR ENFORCING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국제선박 검역 행정 지침 (Administrative Measures for Entry and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on Ships of International Sails)

호주 Quarantine Act 1908

Quarantine Regulation 2000

2000년 quarantine regulation 개정안 보고서
 AQIS cruise vessels guidelines
 AUSTRALIAN QUARANTINE GUIDELINES FOR CRUISE VESSEL AGENTS AND OPERATORS
 Guidelines for airline & aircraft operators arriving in AU
 Guidelines for cruise vessel agents/operators
 Guide to Completing the Quarantine Pre-Arrival Report (Pratique) Form for Vessel Clearance
 Quarantine pre-arrival report for vessels
 Schedule of Aircraft Disinsection Priocedures
 호주 선박 위생 증명
 Mandatory Ballast Water Management Requirements
 미국 PUBLIC HEALTH SCREENING AT U.S. PORTS OF ENTRY
 Building the Quarnatine System
 Vessel Sanitation Program Operations Manual
 WHO IPCS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Report of the Informal Consultation on Aircraft Disinsection
 WHO Guide to Hygiene and Sanitation in Aviation
 Guidance on inspection areas for Annex 3 IHR(2005) : Model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Interim technical advice for inspection and issuance of ship sanitation certificates
 Water and sanitation on ships and aircrafts
 Sanitation on ships: compendium of outbreaks of foodborne and waterborne disease and Legionnaires's disease associated with ships, 1970-2000
 캐나다 Quarantine Act [2005, c. 20], Quarantine Regulation 2007
 네델란드 Schedule of Requirements Ship Sanitation

제8장 첨부서류

○ 없음

부록 1. 호주에 도착하는 항공사 및 항공기 오퍼레이터를 위한 지침

AQIS Guidelines for Airline & Aircraft Operators Arriving in Australia Version 1.2	호주에 도착하는 항공사 및 항공기 오퍼레이터를 위한 지침 version 1.2																				
<table><tr><td>1. Contact Details</td></tr><tr><td>2. Disclaimer</td></tr><tr><td>3. Version Control</td></tr><tr><td>4. Introduction</td></tr><tr><td>5. Pre-arrival Reporting Requirements</td></tr><tr><td>6. Pratique</td></tr><tr><td>7. Approval to Land Aircraft in Australia</td></tr><tr><td>8. Quarantine In-flight Announcement</td></tr><tr><td>9. Aircraft Disinsection</td></tr><tr><td>10. Quarantine Waste</td></tr></table>	1. Contact Details	2. Disclaimer	3. Version Control	4. Introduction	5. Pre-arrival Reporting Requirements	6. Pratique	7. Approval to Land Aircraft in Australia	8. Quarantine In-flight Announcement	9. Aircraft Disinsection	10. Quarantine Waste	<table><tr><td>1. Contact Details</td></tr><tr><td>2. Disclaimer</td></tr><tr><td>3. Version Control</td></tr><tr><td>4. Introduction</td></tr><tr><td>5. Pre-arrival Reporting Requirements</td></tr><tr><td>6. Pratique</td></tr><tr><td>7. Approval to Land Aircraft in Australia</td></tr><tr><td>8. Quarantine In-flight Announcement</td></tr><tr><td>9. Aircraft Disinsection</td></tr><tr><td>10. Quarantine Waste</td></tr></table>	1. Contact Details	2. Disclaimer	3. Version Control	4. Introduction	5. Pre-arrival Reporting Requirements	6. Pratique	7. Approval to Land Aircraft in Australia	8. Quarantine In-flight Announcement	9. Aircraft Disinsection	10. Quarantine Waste
1. Contact Details																					
2. Disclaimer																					
3. Version Control																					
4. Introduction																					
5. Pre-arrival Reporting Requirements																					
6. Pratique																					
7. Approval to Land Aircraft in Australia																					
8. Quarantine In-flight Announcement																					
9. Aircraft Disinsection																					
10. Quarantine Waste																					
1. Contact Details																					
2. Disclaimer																					
3. Version Control																					
4. Introduction																					
5. Pre-arrival Reporting Requirements																					
6. Pratique																					
7. Approval to Land Aircraft in Australia																					
8. Quarantine In-flight Announcement																					
9. Aircraft Disinsection																					
10. Quarantine Waste																					
1. Contact Details Please visit the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 website www.aqis.gov.au for further information or contact the AQIS Airports Program’s national or regional offices.	1. Contact Details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AQIS의 웹사이트 www.aqis.gov.au를 방문하거나 AQIS 항공 프로그램의 국가 또는 지역 사무실로 접촉하십시오.																				
2. Disclaimer • . The requirements in this document are subject to change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 to check they have the latest version and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legislation. See www.aqis.gov.au for the latest version.	2. Disclaimer (권리 포기) • 이 문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법률의 준수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최신 버전은 www.aqis.gov.au에서 확인하십시오.																				
• . The requirements contained in this document are those of AQIS only and do not include the requirements of any other Australian Government agency.	• 이 문서에 포함된 요구사항은 오직 AQIS의 것이며, 다른 호주 정부 기관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Links to other websites are provided for the user's convenience and do not constitute endorsement of all material at those sites, or any associated organisations, products or services.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웹사이트의 연계를 제공하지만, 다른 사이트의 모든 내용을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 소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 . If you use automatic language translation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you do so at your own risk.	• 만약 이 문서와 관련하여 자동 언어 번역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 . AQIS may revise this Disclaimer at any time by updating this posting.	• AQIS는 이 포스팅이 업데이트 될 때 이 권리 포기(disclaimer)를 개정할 수 있다.																														
• . In addition please refer to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s general Disclaimer.	• 덧붙여, 농림수산부의 일반 disclaimer를 참고하십시오																														
3. Version Control Updates will occur automatically on the AQIS website and this page will summarise the amendments as they occur. The specific sections updated are described in the revision table below:	3. Version Control 업데이트는 AQIS의 웹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이 페이지는 업데이트될 때마다 개정안을 요약한다. 업데이트된 그 구체적인 조항은 아래의 개정표와 같다.																														
<table><tr><th>Version</th><th>Date</th><th>Author</th><th>Description of Change</th><th>Section</th></tr><tr><td>1.1</td><td>April 08</td><td>Aimie Wilkinson/ Heather Rockwell</td><td>First Draft</td><td>All</td></tr><tr><td>1.2</td><td>May 08</td><td>DAFF Corporate Legal Unit</td><td>CLU Clearance</td><td>All</td></tr></table>	Version	Date	Author	Description of Change	Section	1.1	April 08	Aimie Wilkinson/ Heather Rockwell	First Draft	All	1.2	May 08	DAFF Corporate Legal Unit	CLU Clearance	All	<table><tr><th>Version</th><th>Date</th><th>Author</th><th>Description of Change</th><th>Section</th></tr><tr><td>1.1</td><td>April 08</td><td>Aimie Wilkinson/ Heather Rockwell</td><td>First Draft</td><td>All</td></tr><tr><td>1.2</td><td>May 08</td><td>DAFF Corporate Legal Unit</td><td>CLU Clearance</td><td>All</td></tr></table>	Version	Date	Author	Description of Change	Section	1.1	April 08	Aimie Wilkinson/ Heather Rockwell	First Draft	All	1.2	May 08	DAFF Corporate Legal Unit	CLU Clearance	All
Version	Date	Author	Description of Change	Section																											
1.1	April 08	Aimie Wilkinson/ Heather Rockwell	First Draft	All																											
1.2	May 08	DAFF Corporate Legal Unit	CLU Clearance	All																											
Version	Date	Author	Description of Change	Section																											
1.1	April 08	Aimie Wilkinson/ Heather Rockwell	First Draft	All																											
1.2	May 08	DAFF Corporate Legal Unit	CLU Clearance	All																											
4. Introduction This document provides a basic guide to airlines and aircraft operators who intend to fly into Austral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outlines the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	4. 서설 이 문서는 호주로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사와 항공기의 오퍼레이터에게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여기의 정보는 호주 정부의 법에 의해 항공기 입항																														

requirements for aircraft clearance in accordance with Australian Government legislation, namely:	허가를 위해 AQIS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다.
• . Quarantine Act 1908 • . Quarantine Regulations 2000 • . Quarantine Proclamation 1998 • . Quarantine (Christmas Island) Proclamation 2004 • . Quarantine (Cocos Island) Proclamation 2004 • . Quarantine Service Fees Determination 2005	• 검역법 1908 • 검역 규칙 2000 • 검역 성명서 1998 • 크리스마스 섬 검역 성명서 2004 • 코코 섬 검역 성명서 2004 • 검역 수수료 결정 2005
AQIS is part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nd plays an essential role in maintaining Australia's animal, plant and human health status.	AQIS는 호주정부의 농림수산부 소속이며, 호주의 동물, 식물 및 인간 보건 상태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AQIS is Australia's first line of defence, reducing the risk to our agriculture industries and environment against exotic pests and diseases. Quarantine controls at Australia's borders are governed by the Quarantine Act 1908. These controls aim to minimise the risk of exotic pests and diseases entering Australia and help protect our agriculture export industries as well as our environment, tourism industries and lifestyle.	AQIS는 외국의 페스트 및 질병으로 인한 농업과 환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이다. 호주 국경의 검역은 검역법 1908에 의하여 행해진다. 이러한 통제는 호주로 들어오는 외국의 페스트 및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환경, 관광산업 및 삶의 양식은 물론 농업 수출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QIS administers human quarantine functions on behalf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DoHA) including the screening of arriving passengers for human quarantinable diseases, surveillance activities relating to aircraft disinsection and vector monitoring.	AQIS는 복지부를 대신하여 승객에 대한 인간대상 검역전염병의 screening , 항공기의 살충 및 매개체의 monitoring 과 관련된 감시를 포함하는 인간 검역을 행한다.
The AQIS Airports Program is responsible for the quarantine clearance of all incoming international aircraft, aircraft waste, cargo, passengers and their accompanied baggage.	AQIS의 항보고프로그래는 입항하는 모든 국제항공기, 항공기의 쓰레기(배설물), 화물, 승객 및 승객이 소지한 수하물에 대한 검역 허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Pre-arrival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section 27B of the Quarantine Act 1908 commanders of aircraft are required to report prescribed information before landing, as close to top of descent as is operationally practicable, but in any case at least 30 minutes before the aircraft is on chocks (at a complete standstill) or at any other time notified to the commander of the aircraft by an AQIS officer. A commander may issue the report by radio communication or telecommunication.* Prescribed information, listed in regulation 12 of the Quarantine Regulations 2000, includes:	5. 사전도착보고 검역법 1908의 27B조에 의하여 항공기의 기장은 착륙이 조작 상 가능하기 전에 열거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 최소 30분이나 AQIS의 공무원이 항공기의 장에게 알려 준 때에 보고해야 한다. 기장은 라디오나 전자통신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역규칙 2000의 12조에 열거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for non-scheduled flights**, the identity of the aircraft, port of arrival and estimated time of arrival;	1. 비정기 비행 : 항공기 identity(이름, 등록번호 등) , 도착항, 도착 예정 시간
2. where any person onboard the aircraft has died during the flight or is found to be suffering from an illness;	2.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비행 중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아파하는 것이 발견된 위치
3. where any person onboard the aircraft presented with a prescribed symptom*** during the flight;	3.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비행 중 기술된 증상을 보인 위치
4. where any live animals are onboard the aircraft;	4. 살아있는 동물이 항공기에 탑승했던 위치
5. where any animal has died onboard the aircraft during the flight; or	5. 동물이 비행 중 항공기 내에서 죽은 위치
6. where the arrangements for disinsection**** of the aircraft have not been undertaken in accordance with AQIS requirements.	6. AQIS의 요구사항에 따라 항공기 내의 살충이 이뤄지지 않은 위치
In the event that any of the above has occurred a commander of an aircraft must ensure his or her	위에서 열거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장은 도착

Ground Handling Agent or the Air Controller at the relevant airport contacts AQIS prior to the aircraft's arrival. A commander of an aircraft must also report any changes to the above information.	이전에 Ground Handling Agent나 관련 공항의 Air Controller에게 AQIS 접촉하도록 해야 한다. 항공기의 기장은 또한 위 정보 중 어떠한 변경이라도 보고해야만 한다.
The Quarantine Act 1908 also requires the master of a vessel that is not performing quarantine to immediately notify an AQIS officer if a prescribed symptom*** presents or a prescribed or infectious disease breaks out onboard. The obligation also applies if the master believes, suspects or has reason to believe or suspect that a quarantinable disease has broken out or a quarantinable pest is onboard (section 22).	검역법 1908은 기재된 증상이 있거나 규정된 또는 전염 질병이 발발한 경우, 검역을 하지 않은 배의 선장에게 AQIS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요구한다. 이 의무는 선장이 검역전염병이 발생했다거나 검역대상 페스트가 기내에서 발생했다고 믿거나 의심 또는 믿거나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적용된다. (22조)
* Please note that failure to comply with a requirement to report under section 27B, or giv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s an offence under the Act. A commander of an aircraft may also be asked by an AQIS officer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above prescribed matters.	*27B조에 의한 보고 요구를 준수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AQIS의 공무원은 항공기의 장에게 위에 규정된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 Non-scheduled flight, of an aircraft, has the meaning given by the Air Navigation Act 1920.	** 비정기비행은 항공법 1920에 의한 정의를 따른다.
*** Prescribed symptoms are listed in regulation 6(1) of the Quarantine Regulations 2000. Further information about prescribed symptoms is available on the AQIS website: 'Reporting an Illness: Important Quarantine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 Ship and Air Crew brochure'. Please refer to the DoHA website to order copies of the brochure for your airline.	*** 규정된 증상은 검역규칙 2000의 규칙 6(1)에 열거되어 있다. 규정된 증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AQIS 웹사이트: '질병 보고 : 국제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을 위한 중요한 검역 정보 책자'에서 얻을 수 있다. 항공사를 위한 책자를 주문하려면 복지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More information on disinsection can be found in section 9 of this document.	**** 살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이 문서는9조에서 얻을 수 있다.
6. Pratique	6. 검역증

Pratique, in practice, is a kind of permission given to an aircraft arriving in Australia to disembark passengers, crew or cargo* after determining it is free from any illness, death, biological material or vectors of quarantine concern.	검역증은 검역 우려가 있는 질병, 사망, 생물학적 물질 또는 병원체가 없음이 확인된 후 승객, 승무원 또는 화물을 착륙하도록 호주에 도착한 항공기에 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Aircraft entering Australia are currently operating under a system of automatic pratique, which means pratique is automatically granted at the time an aircraft arrives.	호주에 들어온 항공기는 현재 자동 검역증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항공기가 도착하면 검역증이 자동적으로 부여됨을 의미한다.
However, automatic pratique does not apply, and is taken never to have applied, under the following situations:	그러나 다음의 상황에서는 자동검역증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1. the commander of the aircraft has given prescribed information (listed in section 5 of this document) to an AQIS officer - this means that automatic pratique will not apply to non-scheduled flights; or	1. 항공기의 장이 이 문서의 5조에 열거된 정보를 AQIS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이것은 자동검역증 비정기 비행에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2. the commander of the aircraft has notified an AQIS officer under section 22 about the presence of a prescribed symptom, or the breaking out of a prescribed or infectious disease onboard the aircraft (also listed in listed in section 5 of this document); or	2. 항공기의 장이 AQIS 공무원에게 22조에 따라 규정된 증상의 존재 또는 규정된 또는 전염 질병의 발생을 알렸을 경우 (이 문서의 5조에 열거됨)
3. the Director of Human Quarantine has given a direction, before the aircraft arrives, that pratique is not taken to have been granted;** or	3. 인간 검역의 director가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검역증이 수여되서는 안된다고 지시를 내렸을 경우
4. an AQIS officer advises the commander of the aircraft, before or after the aircraft arrives, that he or she is not satisfied that the aircraft is free from infection.	4. AQIS의 공무원이 항공기 도착 전,후 항공기의 장에게 항공기가 감염되지 않았다는 만족을 할 수 없다고 권고했을 경우

AQIS officers will meet all aircraft when pratique is not automatically granted. All passengers and crew must remain onboard until pratique is granted by AQIS or unless authorised by an AQIS officer. Failure by a commander of an international aircraft to fulfil pratique requirements is a breach of the <i>Quarantine Act 1908</i>. * Note that cargo will still be subject to quarantine after it is landed and it must only be landed and moved in accordance with sections 44A and 44B the <i>Quarantine Act 1908</i>. ** The <i>Quarantine Regulations 2000</i> prescribe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Director of Quarantine can give a direction that pratique is taken not to have been granted, and also prescribe the conditions that a Director of Quarantine must take into account.	AQIS 공무원은 검역증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모든 항공기를 조사할 것이다.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AQIS가 검역증을 주거나 AQIS 공무원의 허가 없이는 기내에 머물러야 한다. 항공기의 장이 검역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검역법 1908년의 위반이다. * 화물은 착륙 후 여전히 검역 대상이 될 것이며 검역법 1908의 44A 및 44B 조에 따라 착륙 및 이동되어야 한다. **검역규칙 2000은 Director of Quarantine가 검역증이 발부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Director of Quarantine이 고려해야만 하는 요건 또한 규정하고 있다.
7. Approval to Land Aircraft in Australia	7. 항공기의 호주 착륙 승인
7.1 Proclaimed First Ports of Entry and Landing Places	7.1 최초의 입국항 및 착륙 장소 선언(공포)
The <i>Quarantine Act 1908</i> (the Act) requires:	검역법 1908은 요구한다:
• overseas aircraft to land at proclaimed first ports of entry (section 20); and	• 공포된 최초의 입국항에 착륙하려는 해외 항공기(20조)
• overseas aircraft to land at proclaimed landing places (section 20A).	• 공포된 착륙 장소에 착륙하려는 해외 항공기(20A조)
Please note that it is an offence for the master of an aircraft (section 20) or the commander of an aircraft (section 20A) to land aircraft in contravention of	이 조항에 위배하여 20조의 항공기의 장이나 20A조의 장이 항공기를 착륙하려고 하는 하는 것은 위

these sections.	법행위임을 주의하라.
First ports and landing places that have been proclaimed are listed in section 9 of the <i>Quarantine Proclamation 1998</i> (the Proclamation).	공포된 최초의 항 및 착륙장소는 검역 선언 1998 9조에 열거되어 있음.
7.1.1 Proclaimed First Ports of Entry and Landing Places Permanently Staffed by AQIS	7.1.1 AQIS가 영구히 근무하는 공포된 최초의 입국 항 및 착륙 장소
The following ‘proclaimed first ports of entry and landing places’ are permanently staffed by AQIS:	다음의 ‘공포된 최초의 입국항 및 착륙 장소’는 AQIS가 영구히 직원을 둔다.
• . Adelaide Airport • . Brisbane Airport • . Cairns Airport • . Darwin Airport • . Coolangatta Airport, Gold Coast • . Tullamarine Airport, Melbourne • . Perth Airport • . Kingsford-Smith Airport, Sydney	• 아델라이드 공항 • 브리즈번 공항 • 케언스 공항 • 다윈 공항 • 쿨랑가타 공항, 골드 코스트 • 툴라마린 공항, 멜버른 • 퍼스 공항 • 킹스포드-스미스 공항, 시드니
7.1.2 Proclaimed First Ports of Entry and Landing Places Not Permanently Staffed by AQIS	7.1.2 AQIS가 영구히 근무하지 않는 공포된 최초의 입국항 및 착륙 장소
Ten or More Passengers and Crew	10명 이상의 승객 및 승무원
Australian airports that are proclaimed first ports of entry and landing places that are not permanently staffed by AQIS are serviced for international arrivals under a request for service arrangement. The Australian Customs Service through the National Passenger Processing Committee (NPPC) co-ordinates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agencies involved in processing passengers and crew travelling on charter	AQIS가 영구히 근무하지 않는, 최초의 입국항 및 착륙 장소로 공포된 호주 공항은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적인 도착에 대해 업무가 행해진다. the National Passenger Processing Committee (NPPC)를 통한 호주 세관서비스는 전세기 및 순회 비행으로 여행하는 승객 및 승무원의 수속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업무를 통합(조정)한다.

and itinerant flights. A written request to the NPPC is required four weeks prior to arrival. The request must be sent to the address listed below:	NPPC에게 하는 서면 요청은 도착 전 4주가 필요하다. 그 요청은 아래에 열거된 주소로 보내야 한다.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67 461 502 837"> The Chairman National Passenger Processing Committee National Passenger Program Australian Customs Service 5 Constitution Ave Canberra ACT 2601 </td><td data-bbox="509 461 786 837"> Phone: +61 2 6275 6248 Fax: +61 2 6275 6989 Email: cfapplic@customs.gov.au </td></tr> </table>	The Chairman National Passenger Processing Committee National Passenger Program Australian Customs Service 5 Constitution Ave Canberra ACT 2601	Phone: +61 2 6275 6248 Fax: +61 2 6275 6989 Email: cfapplic@customs.gov.au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09 461 1144 837"> The Chairman National Passenger Processing Committee National Passenger Program Australian Customs Service 5 Constitution Ave Canberra ACT 2601 </td><td data-bbox="1150 461 1428 837"> Phone: +61 2 6275 6248 Fax: +61 2 6275 6989 Email: cfapplic@customs.gov.au </td></tr> </table>	The Chairman National Passenger Processing Committee National Passenger Program Australian Customs Service 5 Constitution Ave Canberra ACT 2601	Phone: +61 2 6275 6248 Fax: +61 2 6275 6989 Email: cfapplic@customs.gov.au
The Chairman National Passenger Processing Committee National Passenger Program Australian Customs Service 5 Constitution Ave Canberra ACT 2601	Phone: +61 2 6275 6248 Fax: +61 2 6275 6989 Email: cfapplic@customs.gov.au				
The Chairman National Passenger Processing Committee National Passenger Program Australian Customs Service 5 Constitution Ave Canberra ACT 2601	Phone: +61 2 6275 6248 Fax: +61 2 6275 6989 Email: cfapplic@customs.gov.au				
Fewer than Ten Passengers and Crew	10명 미만의 승객 및 승무원				
For non-scheduled flight arrivals at proclaimed first ports of entry and landing places NPPC approval is not required, however, notification of prescribed information is still required under the <i>Quarantine Act 1908</i> (see section 5 in this document). There will be other Government agencies that need to be notified of your arrival as well. It is the responsibility of your Ground Handling Agent to contact the closest AQIS regional office to make arrangements for an aircraft's arrival.	공포된 최초의 입국항 및 착륙 장소에 도착하는 비 정기 비행은 NPPC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규정된 정보의 통지는 여전히 검역법 1908에 따라 필요하다. (이 문서의 5조를 보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도착 통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정부 기관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의 Ground Handling Agent는 항공기의 도착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AQIS 지역 사무실과 연락할 책임이 있다.				
7.2 Aircraft Arriving into Non-Proclaimed First Ports of Entry and Landing Places	7.2 공포되지 않은 최초의 입국항 및 도착 장소에 도착하는 항공기				
Under section 20AA of the <i>Quarantine Act 1908</i>, the Minister (or a delegate) may give permission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in writing for the entry of:	검역법 1908 20AA조에 따라 장관 (또는 대표자)는 다음의 입국에 대한 서면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 . an overseas aircraft at a port that has not been proclaimed to be a first port of entry; or	• 최초의 입국항으로 공포되지 않은 항에의 외국 항공기 입국																												
• . an overseas aircraft at a landing place that has not been proclaimed.	• 공포되지 않은 착륙 장소에의 외국 항공기 입국																												
Ten or More Passengers and Crew	10명 이상의 승객 및 승무원																												
Australian airports that are not proclaimed first ports of entry and landing places are serviced for international arrivals under a request for service arrangement. The Australian Customs Service through the NPPC co-ordinates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agencies involved in processing passengers and crew travelling on charter and itinerant flights. A written request to the NPPC is required four weeks prior to arrival. The request must be sent to the address listed below:	최초의 입국항 및 착륙장소로 공포되지 않은 호주 공항은 서비스 요청에 따라 국제적 도착에 대해 서비스된다. NPPC를 통한 호주 세관서비스는 전세기 및 순회 비행으로 여행하는 승객 및 승무원의 수속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업무를 통합(조정)한다.																												
<table border="1"> <tr> <td>The Chairman National</td><td>Phone: +61 2</td></tr> <tr> <td>Passenger Processing</td><td>6275 6248</td></tr> <tr> <td>Committee National</td><td>Fax: +61 2</td></tr> <tr> <td>Passenger Program</td><td>6275 6989</td></tr> <tr> <td>Australian Customs</td><td>Email:</td></tr> <tr> <td>Service 5 Constitution</td><td>cfapplic@custo</td></tr> <tr> <td>Ave Canberra ACT 2601</td><td>ms.gov.au</td></tr> </table>	The Chairman National	Phone: +61 2	Passenger Processing	6275 6248	Committee National	Fax: +61 2	Passenger Program	6275 6989	Australian Customs	Email:	Service 5 Constitution	cfapplic@custo	Ave Canberra ACT 2601	ms.gov.au	<table border="1"> <tr> <td>The Chairman National</td><td>Phone: +61 2</td></tr> <tr> <td>Passenger Processing</td><td>6275 6248</td></tr> <tr> <td>Committee National</td><td>Fax: +61 2</td></tr> <tr> <td>Passenger Program</td><td>6275 6989</td></tr> <tr> <td>Australian Customs</td><td>Email:</td></tr> <tr> <td>Service 5 Constitution</td><td>cfapplic@custo</td></tr> <tr> <td>Ave Canberra ACT 2601</td><td>ms.gov.au</td></tr> </table>	The Chairman National	Phone: +61 2	Passenger Processing	6275 6248	Committee National	Fax: +61 2	Passenger Program	6275 6989	Australian Customs	Email:	Service 5 Constitution	cfapplic@custo	Ave Canberra ACT 2601	ms.gov.au
The Chairman National	Phone: +61 2																												
Passenger Processing	6275 6248																												
Committee National	Fax: +61 2																												
Passenger Program	6275 6989																												
Australian Customs	Email:																												
Service 5 Constitution	cfapplic@custo																												
Ave Canberra ACT 2601	ms.gov.au																												
The Chairman National	Phone: +61 2																												
Passenger Processing	6275 6248																												
Committee National	Fax: +61 2																												
Passenger Program	6275 6989																												
Australian Customs	Email:																												
Service 5 Constitution	cfapplic@custo																												
Ave Canberra ACT 2601	ms.gov.au																												
Fewer than 10 Passengers and Crew	10명 미만의 승객 및 승무원																												
Where fewer than ten passengers and crew are onboard, no request to the NPPC is required. Accordingly, an application form must be submitted	10명 미만의 승객 및 승무원이 탑승한 곳은 NPPC에 대한 요청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서는 the Airports Program 국가 사무소에 도착 전 최소 5																												

to the Airports Program national office at least five working days prior to arrival and is available to download Word [152kb] PDF [71kb] or via the AQIS website. There will be other Government agencies that need to be notified of your arrival as well.	일의 근무일에 제출되어야 하며, 워크나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AQIS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도착 통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정부 기관이 있을 수 있다.
7.3 Aircraft Carrying Cargo (Animals, Plants or Other Goods)	7.3 화물을 운반하는 항공기 (동물, 식물 또는 기타 물건)
The Act requires that imported animals, plants or other goods may only be landed at a port declared by the Proclamation to be a port at which they may be landed unless a Director of Quarantine gives written permission (section 20D).	법은 수입 동물, 식물 및 기타 물건이 오직 검역 director의 서면 허가 없이도 착륙될 수 있는 공항으로 공포된 항에서만 내릴 수 있도록 요구한다. (20D조)
For the landing of imported animals, plants or other goods at a port/landing place for which they are not currently declared by Proclamation, a written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to a Director of Quarantine. Applications must be faxed or emailed to the AQIS Sea Cargo Unit at least ten working days prior to arrival. Failure to do so may prevent a permission being granted, and result in a delay in the goods being cleared by quarantine or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if imported animals, plants or goods are landed without permission. During this delay, the goods may be required to either remain on the vessel or be held in a Quarantine Approved Premises storage area. The 20D application form is available to download Word [167b] PDF [46kb] or visit the AQIS website.	현재 공포되지 않은 항/착륙장소에 수입된 동물, 식물 또는 기타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역 director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서는 도착 전 최소 10일 근무일에 AQIS의 Sea Cargo Unit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방해될 수 있으며 검역이 완료되는 것이 지체되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동물, 식물 또는 기타 건을 하역할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
In the event that 20D permission cannot be or is not granted, the master, owner or agent of the vessel	이 지체 기간 동안 물건은 선박 내에 있거나 Quarantine Approved Premises storage area에 머무르도록 요구된다. 20D 신청양식은 워드,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AQIS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20D 허가가 내려질 수 없거나, 내려지지 않는 경

should consider alternative arrangements, such as:	우, 선박의 장,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1. Quarantine clearance of the goods at a declared port, prior to moving them to the non-declared port; or	1. 비선언 항으로 물건을 이동하기 전에 선언 항에서 물건에 대한 검역 완료
2. Quarantine bonding of the goods onboard the vessel in circumstances where: a. the vessel will be returning overseas; or b.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goods is a declared port.	2. a. 선박이 국외로 돌아가야 할 경우 b. 물건의 최종 목적지가 선언된 항구인 경우에 선체 내 화물에 대한 검역 보증금
8. Quarantine In-flight Announcement	8. 검역 비행 내 방송
8.1 Flights from all Countries	8.1 모든 국가로부터의 비행
Section 74AA of the <i>Quarantine Act 1908</i> states:	검역법 1908의 74AA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i>The master of the vessel shall give notice, or cause notice to be given, to all persons travelling on the vessel (including members of the crew) of the quarantine measures required under the laws of the Commonwealth, being notice the content and form of which have been approved by the Director of Human Quarantine and the Director of Animal and Plant Quarantine.</i>	선박의 장은 승무원을 포함한 선박으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주 법률에 의해 요청되는 검역 수단을 알리고,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호주 법률은 인간검역 director 및 동,식물 검역 director가 승인한 내용 및 양식을 통지한다.
It should be noted that for the purpose of quarantine legislation, the term ‘vessel’ means aircraft or ship.	검역법의 목적에 따라 ‘선박’은 항공기와 선박을 의미함을 주의해야 한다.
Fines of up to \$5,500 may apply to the commander of the aircraft for failing to deliver (or ensuring it is delivered) an approved quarantine in-flight announcement.	검역 기내 방송을 하지 않은 항공기의 장에게는 최대 5,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The in-flight announcement should be aired on all international flights prior to arrival in Australia. A video/DVD is available free of charge, in any	기내 방송은 호주 도착 전 모든 국제항공기에 방송되어야 한다. 비디오/DVD는 당신의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언어 어떤 형태로든 무료로 입수할

nominated format and in any language your airline require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would like to order a copy of the video/DVD, please contact the Airports Program national office.	수 있다. 만일 질문이 있거나 비디오/DVD 사본을 요청하고 싶을 경우, the Airports Program national office에 연락하십시오.
In the event that the video/DVD cannot be shown, airlines need to ensure that their crew make a verbal announcement on flights to Australia. The approved verbal announcement script is as follows and unauthorised editing is prohibited:	비디오/DVD를 볼 수 없는 경우, 항공사는 승무원이 호주로 가는 항공기에서 구두 방송을 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승인된 구두 방송 원고는 다음과 같으며 허가되지 않은 편집은 금지된다.
“This is an important Quarantine announcement from the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 has strict quarantine controls, backed up by strong penalties for breaking the law, to help minimise the risk to Australia's unique environment, important agricultural industries and human health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pests and diseases from overseas. To fulfil Australian Quarantine regulations, you must declare everything you can eat and all other plant or animal material on your Incoming Passenger Card. This includes all fruit, meat and dairy products, fish and seafood, edible packaged and processed goods; and plant cuttings, seeds, and souvenirs made with wood, plant or animal products such as hides, bones and shells. Otherwise, you should dispose of these items in the Quarantine bins located in the arrival area. Anything edible supplied to	본 방송은 호주 정부에 의한 중요한 검역 방송입니다. 호주는 페스트 및 기타 질병의 해외로부터의 유입으로 인한 호주 환경, 주요 농업 및 국민 건강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 위반시 강한 벌칙이 내려지는 엄격한 검역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검역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식물 및 동물성 물질을 “출국 승객 카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과일, 고기 및 유제품, 생선 및 해산물, 먹을수 있도록 포장되고 가공된 물건 및 식물 가지, 씨앗과 나무, 식물 및 가죽, 뼈나 조개껍질과 같은 동물성 물건로 만들어진 기념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도착 지역에 위치한 검역 쓰레기통에 이들 물건을 처분해야하며, 기내에서 제공된 음식물은 기내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you onboard must be left behind.

There is also important human health information in the 'Been Away? Feel Ok?' pamphlet. Please take the time to read this information as it refers to your health. If you have not received one of these pamphlets, please ask a member of the crew. Australian quarantine laws require that a senior officer of an aircraft reports certain ill passengers or crew members to a Quarantine officer prior to arrival in Australia. If you are feeling unwell you should bring this to the attention of a crew member.

Please take particular care in completing your Incoming Passenger Card. It is a legal document, and false declarations may result in on-the-spot fines or prosecution.

On arrival your baggage may be x-rayed, inspected or checked by a detector dog team."

'Been Away? Feel OK?' 팜플렛에는 중요한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에 참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이 정보를 읽어주십시오.

만일 이 팜플렛을 받지 못한 경우 승무원에게 요청하여 주십시오. 호주 검역법률은 항공기의 senior officer에게 아픈 승객이나 승무원을 호주 도착 전에 검역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편함을 느낀다면, 승무원의 주의를 위해 이것을 가져와야합니다.

당신의 입국 승객 카드를 완성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이것은 법적 서류이며 허위 신고는 벌금 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당신의 수하물은 x-ray될 것이며, detector dog team의 조사 및 검사를 받게 됩니다.

A translated version of the verbal announcement is available in the following languages:

• . Arabic	• . Japanese
• . Cantonese	• . Korean
• . French	• . Mandarin
• . German	• . Spanish
• . Hindi	• . Thai
• . Italian	• Vietnamese

구두 방송의 번역 버전은 다음의 언어의 경우 제공됩니다.

• . Arabic	• . Japanese
• . Cantonese	• . Korean
• . French	• . Mandarin
• . German	• . Spanish
• . Hindi	• . Thai
• . Italian	• Vietnamese

Please contact the Airports Program national office if 번역 버전이 필요하면 the Airports Program national

a translated version is required. A copy of the ‘Been Away? Feel Ok?’ pamphlet is available on the DoHA website or to order stock for your airline please contact:	office로 연락해주세요. ‘Been Away? Feel Ok?’ 팜플렛 사본은 DoHA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으며, 재고품을 주문하려면 다음에 연락해 주세요.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67 488 462 734"> National Mailing and Marketing PO Box 7077 Canberra Mailing Centre ACT 2610 Australia </td><td data-bbox="470 488 782 734"> Phone: +61 2 6269 1000 Fax: +61 2 6260 2770 Email: nmm@nationalmailing.com.au </td></tr> </table>	National Mailing and Marketing PO Box 7077 Canberra Mailing Centre ACT 2610 Australia	Phone: +61 2 6269 1000 Fax: +61 2 6260 2770 Email: nmm@nationalmailing.com.au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05 488 1101 734"> National Mailing and Marketing PO Box 7077 Canberra Mailing Centre ACT 2610 Australia </td><td data-bbox="1109 488 1420 734"> Phone: +61 2 6269 1000 Fax: +61 2 6260 2770 Email: nmm@nationalmailing.com.au </td></tr> </table>	National Mailing and Marketing PO Box 7077 Canberra Mailing Centre ACT 2610 Australia	Phone: +61 2 6269 1000 Fax: +61 2 6260 2770 Email: nmm@nationalmailing.com.au
National Mailing and Marketing PO Box 7077 Canberra Mailing Centre ACT 2610 Australia	Phone: +61 2 6269 1000 Fax: +61 2 6260 2770 Email: nmm@nationalmailing.com.au				
National Mailing and Marketing PO Box 7077 Canberra Mailing Centre ACT 2610 Australia	Phone: +61 2 6269 1000 Fax: +61 2 6260 2770 Email: nmm@nationalmailing.com.au				
8.2 Flights from New Zealand	8.2 뉴질랜드로부터 오는 항공기				
An additional in-flight quarantine announcement (verbal only), is required to be provided to passengers and crew, under section 74AA of the <i>Quarantine Act 1908</i>, on all flights from New Zealand to Australia. The additional in-flight announcement will support the new Incoming Passenger Card, Form 15NZ, that is used on flights from New Zealand only, requiring passengers to declare items that may have been exposed to freshwater lakes and streams overseas, being a likely source of the significant aquatic pest - <i>Didymo alga (Didymosphenia germinata)</i>.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오는 모든 비행에 대한 검역법 1908의 74AA조에 따라 추가적인 기내 검역 방송(구두로만)이 제공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기내 방송은 오직 뉴질랜드에서 오는 항공기에만 사용되는 새로운 Incoming Passenger Card인 15NZ 서식을 지원할 것이며, 수중 페스트 -<i>Didymo alga (Didymosphenia germinata)</i>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담수호수 및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시내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물품을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is an additional verbal in-flight announcement that is to be provided in conjunction with the current approved quarantine in-flight video/announcement. Importantly, this announcement does not replace, nor does the legal instrument revoke, the requirement for the master of	추가적인 구두 기내 방송은 현재 승인된 검역 기내 비디오/방송과 함께 제공되어야 함을 주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항공기의 장에게 현재 승인된 통지를 하도록 하는 요건을 (검역 기내 비디오/방송)대신하지 않는다.				

the aircraft to cause the current approved notice (quarantine in-flight video/announcement) to be given.	
The approved verbal announcement script is as follows and unauthorised editing is prohibited:	승인된 구두 방송 원고는 다음과 같으며 승인되지 않은 편집은 금지된다.
“This is an important Quarantine announcement from the Australian Government for passengers arriving on flights from New Zealand. To help minimise the risk to Australia’s unique environment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freshwater pests from overseas such as Didymo algae, you must declare, on your Incoming Passenger Card, all items which may have been in contact with freshwater streams, lakes and waterways including; sporting, recreational or fishing equipment - such as fishing rods and nets, waders, watercraft, lifejackets, wetsuits, hiking boots or similar items. Ensure that you present these items to a Quarantine officer for inspection after you have collected your baggage. Please take particular care in completing your Incoming Passenger Card. It is a legal document, and false declarations may result in on-the-spot fines or prosecution.”	본 방송은 뉴질랜드에서 오는 항공기로 들어오는 승객을 위한 호주 정부의 중요한 검역 방송입니다. Didymo algae와 같은 해외로부터 오는 담수 페스트의 유입에 의해 야기되는 호주 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신은 Incoming Passenger Card에 낚시대, 그물, 방수바지, 배, 구명재킷, 잠수용 고무옷, 하이킹 부츠 또는 유사한 물품과 같은 스포츠, 휴양 또는 낚시 장비를 포함한 담수 시내, 호수 및 수로에 접촉하였던 모든 물품을 신고해야만 한다. 수하물을 가져온 후에는 조사를 위해서 검역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을 확인하라. Incoming Passenger Card을 작성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법적인 문서이며 허위 신고는 벌금 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9. Aircraft Disinsection	9. Aircraft Disinsection
Regulation 23 of the Australian Quarantine Regulations 2000 states:	호주 검역 규칙 2000의 23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The commander of an overseas aircraft (or, if the	해외 항공기의 장(또는 장이 오퍼레이터가 아닐 경

commander is not the operator of the aircraft, the operator of the aircraft) must make arrangements for the disinsection of the aircraft in a manner, and within a time, approved by a Director of Quarantine.’*	우, 항공기의 오퍼레이터)는 검역 director가 승인한 방법과 기한 내에 항공기 소독을 해야한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fines ‘disinsection’ as ‘the procedure whereby health measures are taken to control or kill the insect vectors, of human diseases present in baggage, cargo, containers, conveyances, goods and postal parcels’. For example, insect vectors include mosquitos. AQIS administers disinsection requirements on behalf of DoHA.	WHO는 ‘살충’을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탈 것, 물건 및 우편 소포에 있는 인간 질병의 곤충 매개체를 죽이거나 관리하는 어떠한 절차’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곤충 매개체는 모기를 포함한다. AQIS는 DoHA를 대신하여 살충 요건을 운영한다.
International aircraft are disinsected to help protect Australia from a range of vectors of human diseases and pests of animals and plants. AQIS and the Minist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Biosecurity New Zealand (MAFBNZ) jointly developed the AQIS/MAFBNZ Schedule of Aircraft Disinsection Procedures which details aircraft disinsection requirements based on the WHO's recommendations. To assist airlines with differing operational requirements, several options for achieving effective disinsection for cabins and holds are available:	국제 항공기는 다양한 인간 질병 매개체 및 동식물 해충으로부터 호주를 보고하기 위해서 살충해야 한다. AQIS 및 뉴질랜드 농림 생물 안전부는 WHO의 권고에 기초하여 항공기 살충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항공기 살충 절차(Aircraft Disinsection Procedures)의 AZIS/MAFBNZ Schedule를 만들었다. 항공사들이 운행 요건과 차별화하도록 원조하기 위해서 객실 및 짐칸의 효과적인 소독을 위한 몇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 . Residual (conducted in the absence of passengers)	• (승객이 없을 때 수행되는) 잔여
• . Pre-embarkation (conducted in the absence of passengers)	• (승객이 없을 때 수행되는) 선-적재
• . Pre-flight and Top of Descent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passengers)	• (승객이 있을 때 수행되는) 비행전 및 top of descent
• . On-arrival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passengers)	• 승객이 있을 때 수행되는 on-arrival

Please refer to the AQIS/MQS Schedule of Aircraft Disinsection Procedures on the AQIS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on disinsection. Approval to perform some methods of disinsection is dependant on airlines entering into an arrangement with either AQIS or MAFBNZ. The arrangement outlines the application of a particular set of procedures and the supervision, monitoring and testing of the airlines compliance with those procedures. If an airline or airline operator has not satisfactorily negotiated an arrangement with either AQIS or MAFBNZ, then the on-arrival disinsection method will be undertaken on a Fee for Service basis in line with the <i>Quarantine Fees Determination 2005</i>. Airlines must contact either the Airports Program national office or MAFBNZ for further details on these arrangements. * Please note that failure to comply with regulation 23 is an offence, attracting a fine of up to \$5,500.	살충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AQIS 웹사이트에 있는 the AQIS/MQS Schedule of Aircraft Disinsection Procedures를 참조하세요. 일정한 살충법을 사용에 대한 승인은 AQIS 또는 MAFBNZ와 협의하려는 항공사에 달려있다. 협의는 Aircraft Disinsection Procedures에 따라 항공사가 특정 절차, 항공기에 대한 감독, 감시, 실험에 대한 신청을 개괄한다. 항공사나 항공사 오퍼레이터가 AQIS 또는 MAFBNZ와 합의를 만족스럽게 협상하지 못했을 경우, 살충은 검역수수료결정 2005에 나열된 서비스 기본 요금으로 수행될 것이다.
10. Quarantine Waste All cabin, galley and hold waste onboard the aircraft must be collected, transported, stored and/or treated by approved service providers signed onto AQIS compliance agreements or under AQIS supervision on a Fee for Service basis in line with the <i>Quarantine Fees Determination 2005</i>.* Quarantine waste may be derived from: • . waste, sweepings, organic galley and accommodation refuse from aircraft; • . refuse or sweepings from the holds of aircraft;	10. Quarantine Waste 모든 항공기 내에 있는 객실, 요리실, 화물 및 짐칸의 쓰레기는 수거, 운송, 보관되어야 하고(하거나), 검역수수료결정 2005에 나열된 서비스 기본 요금으로 AQIS 순응 계약에 서명하거나 AQIS 감독 하에 승인된 서비스업자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검역 폐기물은 다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 쓰레기, 항공기로부터 나온 주방 및 숙박설비에 서 나온 쓰레기 • 항공기의 화물칸에서 나온 쓰레기

• . unconsumed prepared meals and other partly consumed food;	• 소비되지 않은 남은 음식 및 소비된 남은 음식
• . any non-washable items, other waste or materials which may have come into contact with quarantine waste;	• 물에 녹지 않는 물건, 검역 폐기물과 접촉했던 다른 쓰레기 또는 물체
• . animal and plant materials (including floral arrangements and animal or plant waste); or	• 꽃다발이나 동식물성 쓰레기를 포함한 동식물성 물질
• . materials used to pack and stabilise imported goods.	• 수입 물품을 포장하고 고정시키는데 사용되었던 물건
For more information on approved service providers contact your closest AQIS regional office and ask for the compliance agreement team or contact the Airports Program national office for any other queries.	승인된 서비스업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가장 가까운 AQIS 지역 사무실에 연락해서 the compliance agreement team에게 요청하거나 기타 다른 질문에 대해서 the Airports Program national office에 연락하세요.
* Under the <i>Quarantine Act 1908</i>, waste is treated as a type of goods and may only be landed at a port that is proclaimed for the landing of waste (see section 7.3 in this document).	* 검역법 1908에 따라, 폐기물은 일종의 물건으로 취급되며, 쓰레기 하역을 위해 공포된 항에만 하역되어 집니다. (이 asn서의 7.3조 참조)
The <i>Quarantine Regulations 2000</i> also require masters of vessels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prevent any person from removing or discharging waste without the master's permission (see regulation 26).	검역규칙 2000은 또한 선박의 장에게 그 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치우거나 배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규칙 26 참조)
Waste is one of the prescribed matters that an AQIS officer can ask a master to answer questions about (section 28 and regulation 18).	폐기물은 AQIS 공무원이 선박의 장에게 대답하도록 질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물건이다. (28조 및 규칙 18)

부록 2. 호주 크루즈 선박의 대리인 및 운영자를 위한 안내

AUSTRALIAN QUARANTINE GUIDELINES FOR CRUISE VESSEL AGENTS AND OPERATORS	
1. BACKGROUND The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 aims to reduce the biosecurity risk to Australia's animal, plant marine and human health status and maintain market access through delivery of effective quarantine and export services.	1. 배경 호주 검역조사국(AQIS)은 효율적인 검역과 전문가 활동을 통하여 시장을 유지하고, 호주의 동물 및 해양 식물과 인간보건상태의 생물안전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Seaports Program contributes to this by assessing and managing the biosecurity risks associated with vessels, passengers, crew and ballast water of all international vessels arriving in Australia. AQIS also conducts surveillance activities within port environments.	항구 프로그램(Seaports Program)은 호주에 도착하는 승객, 승무원, 선박 및 모든 국제선의 밸러스트 물과 관련된 생물안전위험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한다.
The recent growth in international cruise vessel arrivals and the overseas outbreaks of diseases such as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in Humans (HPAIH) and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a robust quarantine intervention process for the clearance of passengers when entering Australian ports off cruise vessels.	또한 검역조사국(AQIS)은 항구의 주변 환경에 감시를 수행한다. 인체 감염 조류 독감(HPAIH)과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와 같은 질병의 해외 창궐과 국제순항선 출항의 최근 증가는 호주 항구에 순항선이 들어올 때에 승객의 입국허가를 위한 확실한 검역 개입 과정을 요한다.
Added demands are placed on AQIS resources with the intermingling of domestic passengers with international passengers and the growing interest in eco-tourism which seeks to take passengers to isolated, non-proclaimed ports (ports without adequate permanent infrastructure or resources to process international passenger arrivals).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비고시항(충분한 상설 하부구조 혹은 국제 승객 도착 과정 수단이 없는 항), 격리된 승객을 찾는 에코 투어리즘에 관심이 증대되고, 국제 승객을 포함하는 국내 승객의 혼재에 관련된 정책은 검역조사국(AQIS)의 소관이다.
The Australian Government, through AQIS, released the Sea Passenger Intervention Review 2004-05 with	호주 정부는 검역조사국(AQIS)을 통해서 순항선에 의해 야기된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개입의 건

the aim of ensuring that the increasing risk posed by cruise vessels is addressed through an appropriately resourced and consistent level of intervention. To assist the cruise vessel industry with meeting AQIS requirements, AQIS has developed a DVD package containing:	고한 수준과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처리된다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Sea Passenger Intervention Review 2004-05를 발표했다. 검역조사국(AQIS)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순항선 산업을 돕기 위해서, 검역조사국(AQIS)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DVD 패키지를 개발했다.
o A Pre-Arrival DVD -- 90 second presentation, and	o. 도착 전 DVD -- 90 초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o A background DVD -- A shorter DVD without sound, for playing on a loop at non sound locations eg purser's desk. The DVD package is available from the Public Relations Section of AQIS on email (pr@aqis.gov.au). Information booklets and brochures can be accessed from AQIS through AQIS public relations: www.aqis.gov.au/whatcanti .	o. DVD 배경 -- 무음의 더 짧은 DVD, 예를 들어 사무장 책상과 같은 무음의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DVD 패키지는 검역조사국(AQIS)의 홍보부(Public Relations Section)의 이메일(pr@aqis.gov.au)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보 팸플렛과 소책자는 검역조사국(AQIS)의 홍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www.aqis.gov.au/whatcanti .
Throughout this document the term quarantine risk material (QRM) refers to any item that poses a risk of introducing into Australia any exotic weed, pest or disease, it is commonly used in reference to foodstuffs. Other QRM include some souvenirs with plant and animal content, plants, items with feathers and seeds etc.	시중일관 이 검역 위험 물질 조항 문서는 외래 식물, 페스트 혹은 질병이 호주에 전파되는 위험을 야기시키는, 흔히 식료품에 사용되는 품목에 적용된다. 다른 QRM은 동.식물 내용, 식물, 조류 및 종자와 같은 토산품도 포함한다.
2. QUARANTINE PRE-ARRIVAL REQUIREMENTS	2. 도착 전 검역 요건들
All vessels arriving in Australia from international waters are required to submit a Quarantine Pre-arrival Report for Vessels - Pratique (QPAR). Passenger vessels are also required to submit an Additional Quarantine Pre-arrival Report for Cruise	공해(公海)로부터 호주에 도착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을 위한 도착 전 보고 검역(QPAR)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탑승객들은 Additional Quarantine Pre-arrival Report for Cruise Liners and Navy Vessels을 제출해야 한다-정박 세부항목들(부가적

Liners and Navy Vessels --Berthing Details (Additional QPAR -- Berthing Details). Vessel Masters or their Agents are required to send the QPAR and Additional QPAR -- Berthing Details to AQIS between 12 and 96 hours prior to their intended arrival time at the first Australian port.	인 QPAR--정박 세부항목들). 선주(船主) 혹은 승객들은 QPAR과 추가적인 QPAR을 제출해야 한다 --첫 호주 항구에 계획된 도착시간 전 12시간 및 96시간 내에 AQIS의 정박 세부항목
If a passenger vessel intends to visit a non-proclaimed port, permission from AQIS must be sought via the 20AA application form at least 10 days prior to arrival. Cruise Agents are encouraged to gain an indication from AQIS prior to finalising itineraries about whether or not approval is likely to be granted when formal 20AA forms are submitted 10 days prior to arrival.	만약 어떤 탑승객이 비고시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AQIS의 허가가 도착 전 적어도 10일 전에 20AA 신청서를 통해 신청해야만 한다. 순항선 승객들은 공식적인 20AA 신청서가 도착 전 10일 전에 제출되었을 때 승인여부에 대해서 여행목적지에 앞서 AQIS의 조치를 받는 것이 장려된다.
See Section 10 for more information on visiting non-proclaimed ports.	비 고시항 방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ection 10을 보라.
If a vessel is carrying live plants, an AQIS Live Plants Vessel Log also needs to be submitted with the QPARs prior to the vessel's arrival at its first Australian port. The completed AQIS Live Plants Vessel Log should then be retained on board the vessel and produced on request by AQIS officers at subsequent ports of call. The AQIS Live Plants Vessel Log is included in this document as Attachment A.	만약 선박이 생(生)식물을 운반한다면, AQIS Live Plants Vessel Log은 또한 첫 호주 항구에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QPARs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완료된 AQIS Live Plants Vessel Log은 선박 선내에 보관되어야만 하고, 다음 항구에 AQIS 조사관에 의해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해야만 한다. AQIS Live Plants Vessel Log는 이 문서에서 첨부물 A에 포함된다.
Both QPARs can be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at www.aqis.gov.au/shipping and are available from the opening page of the Maritime Awareness Kit CD.	QPARs은 모두 인터넷 www.aqis.gov.au/shipping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Maritime Awareness Kit CD의 공개 페이지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3. QUARANTINE ANNOUNCEMENT	3. 검역 고시 검역법 1908의 Section 74AA 의해, 호주에 도착한

Under Section 74AA of the Quarantine Act 1908, it is a requirement that the Master of a vessel arriving in Australia give notice to all people travelling on the vessel (including members of the crew) of the quarantine requirements under the laws of Australia. The current penalty for failing to give this notice is A\$5,500.	선주(船主)는 호주 법에 따라 검역 요건에 의해 선박에서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승무원을 포함하여)에 대해 통지를 해야 한다. 이 지시를 어길 경우 벌금은 A\$5,500이다.
The following notice should be relayed to all passengers and crew prior to arrival at the first and all subsequent ports of call in Australia. The announcement should also be made in any other language relevant to the passengers and crew.	아래의 통지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모든 두 번째 도착하는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승객과 승무원에게 알려져야만 한다. 고시는 또한 승객과 승무원에게 적절한 다른 언어로 제작되어야만 한다.
Australian Quarantine Announcement Australia has strict quarantine control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of weeds, pests and diseases – protecting Australia’s unique environment, important agriculture industries and human health. To fulfil Australian quarantine regulations, you must declare all food, plant or animal material on your Incoming Passenger Card. This includes meat, fruit and dairy products, packaged and processed food, plant cuttings, seeds, and souvenirs made with wood, plant or animal material. All food items should be left onboard the cruise vessel or disposed of in the quarantine bins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gangway.	호주 검역 고시 호주는 종자, 페스트 및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검역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호주의 특별한 환경, 중요한 1차 산업 및 인간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 검역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당신은 Incoming Passenger Card에 모든 음식, 식물 혹은 동물 재료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육고기, 과일 그리고 일상 용품, 포장된 그리고 가공식품, 재단된 식물, 종자, 그리고 목재로 만들어진 기념품, 식물 혹은 동물 재료를 포함합니다. 모든 식품 품목은 순항선의 기내에 장착된 혹은 통로 바닥에 설치된 미처리 검역 상자에 두어야만 합니다.

Your baggage will be x-rayed or screened by quarantine officers on arrival, and be subject to random checks by detector dog teams. Please take particular care in completing your Incoming Passenger Card. It is a legal document, and false declarations may result in on-the-spot fines or prosecution’. There is also important human health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Been Away? Feel OK? pamphlets. Please take the time to read this information as it refers to your own personal health. Each passenger should be issued with one of these pamphlets - if you do not have one, please ask for one from the ship’s crew.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당신의 수하물은 엑스 레이 혹은 검역관에 의해 스크린될 것이며, 탐지견(犬)팀에 의해 무작위로 조사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Incoming Passenger Card에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법적 문서이고, 거짓 진술은 현장에서 벌금 혹은 소추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Been Away? Feel OK?에 포함된 사람 건강 정보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개인 건강이 정보를 살펴보는 것처럼 이 정보를 숙독해 주십시오. 승객은 각자 이런 파플렛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선박의 승무원에게 요청하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 addition to the quarantine announcement, it would be beneficial to include information about Australia’s strict quarantine regulations in the daily newsletters provided to passengers. For this purpose, AQIS has produced an A4-sized fact sheet How to Cruise through Quarantine (Attachment B) which can be printed out or supplied to Agents and vessels through the AQIS Public Relations section on pr@aqis.gov.au.	검역 고시 외에, 승객에게 제공되는 일상 주보에서 호주의 강력한 검역 규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이로운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AQIS는 AQIS 홍보팀의 pr@aqis.gov.au을 통해서 승객에게 제공되거나 인쇄될 수 A4 크기의 문서 How to Cruise through Quarantine (Attachment B)를 제공한다.
4. HUMAN HEALTH ISSUES DoHA requires human health advice in the form of	4. 사람 건강 문제 DoHA는 호주 영해에서 그들의 정박 동안 모든

travel sheets Been Away? Feel OK? (Attachment C) be provided to all passengers and crew during their stay in Australian waters. This brochure provides important human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precautionary measures that passengers and crew should take in the event they fall ill following their journey.	승객 및 승무원에게 제공되는 여행 문서 (Attachment C) Been Away? Feel OK?의 형식으로 사람 건강 보고를 요구한다.
AQIS recommends that both Been Away? Feel OK? which can be ordered from National Mailing and Marketing (Attachment C) and the How to Cruise through Quarantine fact sheets form part of the information folder in each cabin.	이 브로셔는 승객 및 승무원들이 그들의 여행에 뒤따르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 취해져야하는 예방책을 포함하여 중요한 사람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DoHA, in conjunction with AQIS, has developed an advisory pamphlet, Reporting an Illness --Important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 Ship and Air Crew (Attachment C). This pamphlet advises crew of the symptoms of diseases of concern for quarantine and can be ordered from the DoHA website (http://www.health.gov.au/internet/wcms/publishing.nsf/Content/Quarantine-1).	AQIS는 Been Away? Feel OK? which can be ordered from National Mailing and Marketing (Attachment C) 과 각 선실에서 정보 폴더의 문서 일부에 How to Cruise through Quarantine 모두를 권고한다.
5. QUARANTINE INSPECTION ON ARRIVAL	AQIS와 관련하여, DoHA,는 조언 팜플렛, Reporting an Illness --Important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 Ship and Air Crew (Attachment C).을 개발했다. 이 팜플렛은 검역 질병 증상을 승무원에게 조언 하며, DoHA 홈페이지 (http://www.health.gov.au/internet/wcms/publishing.nsf/Content/Quarantine-1)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On the vessel's arrival, AQIS will meet with the vessel's senior crew and conduct an on-board arrival briefing as part of the Pratique inspection. The on-board arrival briefing normally takes about 30 minutes and passengers are not to be given permission to disembark until the vessel has been cleared by AQIS.	5. 도착 시 검역 조사 선박 도착 시에, AQIS는 선박의 상관 승무원을 만날 것이고, 검역필증 감시의 일부로서 on-board arrival on-board arrival을 할 것이다. on-board arrival briefing은 보통은 약 30분이 소요되고, 승객들은 선박이 AQIS에 의해 입항허가가 날 때까지 상륙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다.
Crew that are required to attend the on-board	승선한 검역관에게 on-board arrival briefing 하기

arrival briefing with the boarding quarantine officer include the Staff Captain (or representative), Chief Purser, and the Ship's Medical Officer.	위해 참석해야하는 승무원은 선주(船主), (혹은 대리인), 승무원 장 및 선박의 의료진을 포함한다.
During the on-board arrival briefing, the boarding quarantine officer will assess the vessel's quarantine statu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human health, and discuss arrangements with the crew for passenger processing requirements.	on-board arrival briefing 동안, 승선한 검역관은 선박의 검역상태를 평가할 것이다, 사람 건강에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승객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승무원이 조정을 할 것이다.
The inspection will include a check of:	감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Galleys, pantries and provision stores;	☐ 갤러리, 식료품 저장실 및 식품 저장고
☐ waste facilities;	☐ 정수 시설
☐ ballast water management logs (if applicable); and	☐ 밸러스트 물 관리 일지(만약 가능하다면); 그리고
☐ any other relevant documents and areas.	☐ 다른 관련 문서 및 영역
All passengers and crew (both disembarking and day tripping) will be subject to quarantine clearance when departing the vessel. Passengers and crew (and their baggage) leaving the vessel will be screened using a range of measures including X-rays, detector dog teams and inspection by AQIS officers. Passenger and crew clearances will be undertaken at the first and all subsequent ports of call while the vessel is in Australia. Visitors to the vessel will also be subject to quarantine clearances.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은(상륙하거나 일일관광 모두) 선박이 출발할 때 검역 입국허가 대상이 될 것이다. 선박에 남아있는 승객과 승무원(그리고 그들의 수하물) AQIS 조사관에 의해 엑스레이, 탐지견(犬) 팀 및 감시를 포함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스크린될 수 있다. 승객과 승무원 입국허가는 선박이 호주에 정박하는 동안 첫 혹은 모든 다음 항구에서 보증될 것이다. 선박 방문객은 또한 검역입국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PASSENGER AND CREW CLEARANCE	6. 승객과 승무원의 입국 허가
Disembarking Passengers and Crew	승객과 승무원 하선
All disembarking passengers must complete an Australian Incoming Passenger Card (IPC)	모든 하선하는 승객은 반드시 호주 입국 승객 카드(Australian Incoming Passenger Card, IPC, 부록

(Attachment D) and declare any items of quarantine concern. Passengers and crew disembarking in Australia will be subject to AQIS and Customs screening and questioning, and their luggage will be inspected via X-ray, detector dogs or quarantine officers.

Day Tripping Passengers

All day tripping passengers will be subject to quarantine clearance and must present their hand luggage for inspection, if requested. Passengers temporarily leaving the vessel for day tours may be inspected or screened by X-ray, detector dogs and/or quarantine officers. Day tripping passengers should also be reminded that no food is permitted to leave the vessel — only bottled drinking water is allowed.

Vessel Masters and Agents must liaise and work with AQIS in facilitating the movement of passengers and crew off the vessel, to allow adequate quarantine clearance time. By allowing adequate time, departure delays will be minimised. It is suggested that passengers leaving on tours depart the vessel at least 30 minutes prior to the planned departure time of the tour.

Gangway Watches

AQIS officers will maintain gangway watches while the vessel is at any Australian port, to provide quarantine clearances for any passengers and crew who are departing the vessel.

AQIS will risk assess the vessel and monitor the passenger and crew awareness and complianc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time and duration of the

D 참조)를 작성해야 하며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해야만 한다. 호주 하선 승객과 승무원은 AQIS와 관세청의 스크리닝과 질문에 응해야 하며, 수화물은 X레이, 탐지장치 혹은 검역 조사관을 통하여 검사될 것이다.

일일 관광객

모든 일일 관광객은 요청 시, 검역 입국 허가에 응해야 하며, 검사를 위해 수하물을 반드시 공개해야만 한다. 일일 관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송수단을 떠나는 승객은 X 레이, 탐지장치 그리고/혹은 검역 조사관에 의해 검사되거나 스크린될지도 모른다. 일일 관광객은 병에 담긴 음료수 이외에는 어떠한 음식도 운송수단에서 가지고 내릴 수 없음을 또한 상기해야 한다.

운송수단 장과 대행자는 승객과 승무원이 운송수단에서 하선 시에 이용하기 쉽고 충분한 검역 입국 허가 시간을 확보하도록 AQIS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고 작업해야만 한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 지연은 최소화해야 한다. 여행객은 계획된 여행 출발 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전에 운송수단에서 출발하도록 제안했다.

출입구 관찰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검역 입국 허가를 하는 호주 항구에 운송수단이 있는 동안 AQIS 조사관은 출입구 관찰을 계속할 것이다.

AQIS는 출입구 관찰의 적절한 시간과 기관을 결정하기 위해 운송수단 평가를 감행할 것이며, 승객과 승무원의 인식과 승낙을 모니터할 것이다.

gangway watches.

7. STORES AND FOOD ITEM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pply to stores and provisions on cruise vessels while in Australian ports and waters:

☐. ☐all food must be retained onboard the vessel while in Australian ports and waters –

- no food may be taken ashore;

☐. ☐passengers must not be provided with lunch or snack packs to take ashore;

☐. ☐passengers must be advised not to remove any food items from the vessel (this requirement should be promulgated through announcements, in the vessels newsletters and in-cabin information packs); and ☐

☐the vessel must comply with any direction given by AQIS in relation to stores/food items.

8. WASTE ARRANGEMENTS

All waste (including food waste) onboard the vessel, unless formally released from Quarantine, will be deemed quarantine waste and must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AQIS

requirements. Treatment and disposal of waste must also be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73/78) regulations and any relevant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requiremen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pply to all passenger vessel waste while in Australian ports and waters:

☐. ☐waste may only be removed from the vessel by an AQIS approved collector or under AQIS

7. STORES AND FOOD ITEMS

호주 항만과 영해 안의 선박에 stores와 provisions에는 다음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호주 항만과 영해 안에 있는 동안 모든 식품은 선박에 내장되어 유지되어야만 하며 어떠한 식품도 양륙할 수 없다.

승객은 식사나 간식을 가지고 양륙할 수 없다.

승객은 운송수단으로부터 식품을 폐기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이러한 요구사항은 운송수단의 회보와 공고를 통하여 공표되어야만 한다).

운송수단은 반드시 stores/food item에 대하여 AQIS에 의해 전달된 지시사항에 응해야만 한다.

8. 폐기물 장치

정식으로 검역에서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수단 내부의 모든 폐기물은 검역될 것이며, AQIS 요구사항에 따라야만 한다. 폐기물 처리와 처분은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73/78) 규정과 관련 주 또는 준주 정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만 한다.

호주 항만과 영해의 모든 선박 폐기물은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폐기물은 AQIS에서 승인된 수집자 혹은 AQIS 감독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

supervision;

☐ ☐ waste includes animal waste, organic refuse and galley scraps;

☐ ☐ all waste must be maintained and stored in a manner satisfactory to AQIS requirements -- any food waste on deck must be secured so that it is inaccessible to birds or animals (i.e. bagged and tied shut in secured and lidded bins);

☐ ☐ any arrangements for segregation of waste must be pre-approved by AQIS; and

☐ ☐ galley grinders and swing bins must not be used within 12 nautical miles of the Australian coast.

9. ANIMALS AND PLANTS ON VESSELS

Any animals (including birds and fish) onboard the vessel must be reported to AQIS on the QPAR. The reporting requirement also applies to any pets that passengers or crew may have with them during the voyage.

Note: Any Australian animals taken onboard

an international vessel will be considered an international animal, and subject to full quarantine requirements.

If an animal is to remain aboard the vessel during the vessels Australian itinerary then a quarantine officer will request the master to complete a Reporting Requirements for Animals on Vessels or Masters Declaration during the pratique inspection.

An AQIS officer will check any animal and advise the requirements for bonding and subsequent inspections of the animal on the vessel while it is in any Australian port. Fee for service will be

폐기물에는 동물 폐기물, 유기 폐기물과 galley scraps이 포함된다.

모든 폐기물은 AQIS 요구사항에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유지되거나 저장되어야 한다. - 갑판 위의 식품 폐기물은 조류나 동물의 접근이 어렵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하게 보관되며 뚜껑이 달린 통에 넣어 봉해야 한다.) 폐기물 분리를 위한 장치는 AQIS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galley grinders와 swing bins는 호주 해안으로부터 12 해상 마일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9. 운송수단 안의 동물과 식물

운송수단 안의 (조류 및 어류를 포함한) 동물은 AQIS에 보고되어야만 한다.

보고 요구사항은 항해 동안 승객이나 승무원이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에도 또한 적용된다.

주의: 국제 운항선 안의 호주 동물은 국제 동물로 간주되며, 정식 검역 요구사항에 대상이 된다.

AQIS 조사관은 동물을 확인할 것이며 호주 항만에 있는 동안 운송 수단에 동물의 적절한 조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알려줄 것이다.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이러한 각각의 점검사항에 대해 부과될

charged for each of these checks. Animals are not to be taken off the vessel whilst in Australian ports or waters.	것이다. 동물은 호주 항만이나 영해 안에 있는 동안 운송수단에서 내릴 수 없다.
All live plants onboard a vessel must be detailed in an AQIS Live Plants Vessel Log (Attachment A), which must be sent to AQIS with the Additional Quarantine Pre-arrival Report for Cruise Liners and Navy Vessels -- Berthing Details form prior to the vessel's arrival at its first port of call. Potted plants, deck gardens and golfing greens are a concern for AQIS as they have the potential to harbour exotic pests, weeds and diseases. AQIS suggests the following options be implemented while the vessel is in port to minimise any quarantine risks associated with plant material: ☐.☐ move potted plants securely indoors from decks; ☐.☐ fully cover plants, deck gardens and golfing greens with a suitable insect-proof net or mesh cover; and ☐.☐ avoid where possible the watering of plants, deck gardens or golfing greens whilst in port. AQIS will confirm these arrangements at the time of the Pratique inspection.	화분에 심은 식물, deck gardens과 golfing greens은 harbour exotic pests, 잡초 및 질병 가능성이 있기에 AQIS에 대상이 된다. 식물 제재와 연관된 검역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항만에서 운송수단이 있는 동안 AQIS는 다음의 선택사항을 이행하도록 제안한다. 갑판으로부터 실내로 안전하게 화분에 심은 식물을 이동하라.
10. VESSELS INTENDING TO VISIT NON-PROCLAIMED PORTS Passenger vessels intending to visit non-proclaimed ports must first seek approval from AQIS and Customs at least 10 days prior to arrival. AQIS approval must be sought by lodging an Application	10. 비고시항 방문을 계획한 선박 비고시항 방문을 계획한 선박은 첫째로 도착 전 적어도 10일 전에 세관 및 AQIS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AQIS 승인은 호주 비고시항에 들어가기 위한 승인 신청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for Permission to Enter an Australian Non-proclaimed Port form. This form and a list of Australian proclaimed first ports of entry are on the AQIS web site at www.aqis.gov.au/shipping. The application should include evidence of the approval from the Australian Customs Service. AQIS will consider each request and, if approved, will provide written approval for the vessel to visit the non-proclaimed port/s. Applications to visit non-proclaimed ports will be assessed by AQIS on a case-by-case basis, and any approval will detail the conditions that the vessel will be required to meet during its visit. The vessel is required to provide or meet all transport, accommodation and incidental costs for a quarantine officer to attend the vessel for the duration of the visits. The AQIS fee for service costs and rates charged for transport, accommodation etc shall be agreed with AQIS prior to service. Agents receiving permission for vessels to enter non-proclaimed ports must provide the full set of conditions in writing to the master. The master must be able to produce this complete document when requested by AQIS.	Enter an Australian Non-proclaimed Port form에 요구한다. 이 양식 및 호주의 승인된 첫 번째 항구 목록은 AQIS 웹사이트 www.aqis.gov.au/shipping에 있다. 신청서는 호주 세관청(Australian Customs Service) 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AQIS는 각 요구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만약 승인된다면, 비고시항을 방문하려는 선박에 서면 승인을 제공할 것이다. 비고시항 방문신청서는 사례별 기준에 의해 AQIS이 평가할 것이고, 어떤 승인은 선박이 방문하는 동안 충족하는 요구되는 조건을 열거할 것이다. 운송수단은 방문 기간 동안 운송수단에 동행하는 검역 조사관에게 모든 운송, 숙박시설과 임시비용을 제공하거나 충족하도록 요구된다. 운송 및 숙박시설 등에 부담되는 서비스 비용과 비율에 대한 AQIS 요금은 서비스 전에 AQIS와 협정되어야 한다. 비고시항에 들어오는 선박을 위해 허가를 받는 대리인은 선주(船主)에게 서면으로 전부 일련의 상태를 제공해야만 한다. 선주(船主)는 AQIS에 의해 요청될 시 이 완성한 문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부록 3. US 통관항의 공중보건감시 연방 검역관을 위한 지침

PUBLIC HEALTH SCREENING AT U.S. PORTS OF ENTRY A Guide for Federal Inspectors Revised July 2007	US 통관항의 공중보건감시 연방 검역관을 위한 지침 2007년 7월 개정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as statutory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the introduction, transmission, and spread of communicable diseases in the United States. Under its delegated authority,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ivision of Global Migration and Quarantine works to fulfill this responsibility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the operation of Quarantine Stations at ports of entry,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medical examination of persons destined for the U.S., and administration of interstate and foreign quarantine regulations, which govern the international and interstate movement of persons, animals, and cargo. The legal foundation for these activities is found in Titles 8 and 42 of the US Code and relevant supporting regulations. See Attachment 1 for a fact sheet with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se legal authorities.	복지부 장관은 미국 내의 전염병 유입,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 있다. 위임된 권한에 따라 CDC의 이주 및 검역 당국(DGMQ)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책임을 수행한다. 통관항의 검역소 운영, 미국으로 향하는 사람의 의학적 검사를 위한 기준 정립 및 주간 또는 외국 검역 규칙-사람, 동물 및 화물의 국제적 주간(국내적) 이동을 관할-의 시행한다. 이러한 업무의 법적 근거는 US Code 8편 및 42편과 관련 규칙에 있다. 이러한 법적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가진 보고서는 첨부 1을 확인하라.
These authorities empower the Division of Global Migration and Quarantine to apprehend, detain, medically examine, or conditionally release individuals (including U.S. citizens) suspected of having any one of the following diseases as specified by the Executive Order of the President:	이들 당국은 DGMQ에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다음의 질병 중 하나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미국 시민을 포함)를 체포, 구금, 의학적 검사 또는 조건부 석방할 권한을 부여한다.
Cholera and Suspected Cholera Diphtheria	콜레라, 의사 콜레라 디프테리아

Infectious Tuberculosis Plague Suspected Smallpox Yellow Fever Suspected Viral Hemorrhagic Fevers, such as Lassa, Marburg, Ebola, Congo-Crimean, and others not yet isolated or named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Influenza caused by novel or re-emergent influenza viruses that are causing, or have the potential to cause, a pandemic	전염성 결핵 페스트 의사 천연두 황열 라싸, 마버그, 에볼라, 콩고-크리민 및 아직 분리 또는 이름 붙여지지 않은 기타의 의사 바이러스 성출혈열 사스 전국적인 유행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신종 또는 재출현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CDC Quarantine Stations, also known as “CDC Public Health Quarantine Stations,” are located at major international airports; each quarantine station has responsibility for all ports in an assigned geographic area (see pg. 11). You should know which Quarantine station has jurisdiction over your port. Historically, Quarantine Stations have been referred to in the port community simply as “PHS” or “Public Health.” As organizational names and assignments have changed over the years, that tradition has remained.	“ CDC 공중보건검역소”로 알려진 CDC 검역소는 주요 국제 공항에 위치하며, 각 검역소는 할당된 지리적 구역에 있는 항만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11 페이지 참조) 당신은 어떤 검역소가 당신의 항만에 관할권을 갖는지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검역소는 항만 공동체 내에서는 간단히 “PHS” 또는 “Public Health”로서 불려졌다. 조직적 명칭 및 할당이 수년동안 변화되어왔지만, 전통이 남아 있다.
Foreign quarantine regulations require that the death or illness of an arriving international passenger or crew member be reported, prior to arrival, by the captain of the arriving ship or airplane to the quarantine station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port of entry. In practice, however, illnesses are not always reported as required. The following guidelines should be observed by all inspection personnel.	국외 검역 규칙은 도착한 국제 승객 또는 승무원의 사망이나 질병을 도착 전에 도착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그 통관항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검역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로 질병이 항상 요구된 것처럼 보고되지는 않는다. 다음의 지침은 모든 검역 인력이 준수해야 한다.

I. Inspection of Arriving Persons	I. Inspection of Arriving Person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personnel should observe all travelers for obvious signs and symptoms of illness such as (1) fever which could be detected by visualizing a flushed complexion, shivering, or profuse, unexplained sweating; (2) new, unexplained rash; (3) unusually flushed or pale complexion; (4) jaundice (unusual yellowing of skin or eyes); (5) respiratory problems such as severe cough, or new onset of difficulty breathing; (6) diarrhea (by report); (7) bleeding from eyes, nose, gums, ears or other wounds that appear to be actively bleeding and not clotting; or (8) neurological symptoms such as unexplained weakness or paralysis. A person is considered to be ill in terms of foreign quarantine regulations when signs/symptoms meet the following criteria:	미국국토안전부(DHS-법무부, 해안경비대, 세관, 이민국, 국경순찰대, 비밀경호국, 연방비상계획처 등 편입) 인력은 모든 여행객이 (1) 상기된 안색, 오한 또는 계속되는 설명할 수 없는 발한이 눈에 보여 발견될 수 있는 열 (2) 새로운, 설명할 수 없는 발진, (3) 비정상적으로 상기되거나 창백한 안색 (4) 황달기(비정상적으로 피부나 눈이 노란 것) (5) 심한 기침 또는 새로운 호흡 곤란 징후와 같은 호흡기 문제 (6) 설사(보고에 의해서) (7) 눈, 코, 잇몸, 귀 또는 출혈이 계속되고 지혈되지 않는 기타 상처에서의 출혈 (8) 설명할 수 없는 기운없음 또는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징후/증상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때 외국 검역 규칙에 따라 아픈 사람으로 추정된다.
Temperature of 100° F (38° C) or greater, which is accompani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ash, jaundice, glandular swelling, or which has persisted for 2 days or more. Diarrhea severe enough to interfere with normal activity or work (three or more loose stools within 24 hours or a greater than normal number of loose stools).	38° C 이상의 체온과 동반하여 다음의 사항을 한 가지 이상 동반한 때 : 발진, 황달, 선천적 종기 또는 2일 이상 지속되는 열 정상적인 활동 또는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설사 (24시간 내에 3번 이상 또는 정상보다 더 많은 경우)
If these criteria are met, DHS personnel should detain ill passengers and crew, and ask for details about symptoms and itinerary. At a port of entry where a quarantine station is staffed, that quarantine station should be notified and a quarantine public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DHS 직원은 환자를 구류하고 증상 및 여행일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야만 한다. 검역소 직원이 있는 통관항에서는 검역소가 통지를 받고, 검역 공중보건공무원이 조사할 것이다.

health officer will investigate. If there is no quarantine inspector at your port, notify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see pg. 11). The quarantine station will release or conditionally release the ill person, or, if the circumstances warrant, arrange for a physician to conduct a medical examination and recommend appropriate action.	항에 검역 조사관이 없다면, 적절한 검역소에 통지하시오. (11 페이지 참조) 검역소는 상황이 된다면, 환자를 석방하거나 조건부 석방하고, 또는 의사가 의학적 검사를 하고 적절한 처치를 취하도록 조정할 것이다.
II. Check Itineraries	II. Check Itineraries (방문지 확인)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check the itinerary of arriving persons whether or not they are ill because of a known communicable disease outbreak abroad. Specific itineraries may be associated with a need for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If this situation should arise, CDC will provide specific instructions. The person may be given printed information or be referred to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외국에서 전염병 발생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아프건 아프지 않건 도착한 사람들의 방문지를 확인하는 것이 때때로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문지는 적절한 예방법을 위해 필요하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CDC는 상세한 지도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쇄된 정보를 받거나 적절한 검역소에 회부될 수 있다.
III. Health Alert Notice	III. Health Alert Notice
A Health Alert Notice (Form CDC 75.8) provides general guidance for travelers arriving from areas where they may have been exposed to a communicable disease. When directed to do so, issue a Health Alert Notice to each arriving person or to each adult in a family group. On occasion disease specific Health Alert Notices may be developed (i.e., SARS) and distributed.	Health Alert Notice (CDC 75.8 서식)은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에서 도착하는 여행객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그렇게 하도록 지시 받은 때, Health Alert Notice를 각각의 도착하는 사람이나 가족 단위에서는 각 어른에게 발부하시오. 때때로 특정 질병 Health Alert Notice(SARS)가 전개되거나 배포될 수도 있다.
IV. Medical Inspection of Arriving Aliens	IV. Medical Inspection of Arriving Aliens
Basis for Inadmissibility: The health-related grounds of inadmissibility of aliens under section 212(a) of	입국불허의 근거 : 이민 및 국적 법 212(a)조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불허의 건강관련 근거는 다음의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provide for the inadmissibility of any alien who:	외국인의 경우 해당된다.
• Is determined to have a communicable disease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 Currently, these are: Chancroid Gonorrhea Granuloma Inguinal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Infection Leprosy, infectious Lymphogranuloma Venereum Syphilis, infectious stage Tuberculosis - active, infectious	• 공정보건적 위험도가 큰 전염병을 가졌다고 판단된 외국인. 현재, 다음과 같다. 연성하감 성병 사타구니의 육아종 HIV 감염 전염병 나병 성병성 임파 육아종 매독 (전염기) 결핵 (양성, 전염성)
•.Seeks admission or adjustment of status as an immigrant and who has not been vaccinated against at least the following diseases: mumps, measles, rubella, polio, tetanus, diphtheria, pertussis,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and hepatitis B, and any other vaccinations recommended by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이민 허가 또는 이민자로서의 상태 조정을 요청하는 자 및 최초 다음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 : 유행성이하선염, 유창, 풍진, 소아마비,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B형 간염, 및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가 권고한 기타 예방접종
•.Has or had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with associated behavior that poses or may pose a threat to the property, safety, or welfare of the alien or others; or • Is a substance abuser or addict.	•.그 외국인이나 타인의 재산, 안전 및 복지에 위협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동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진 자 •. 약물 남용 또는 중독된 자.
Procedures to Follow: Inspectors should immediately advise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when an immigrant or a nonimmigrant “K” or “V” arrives without medical documents or with incomplete	후속 절차 :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K 또는 V가 의료 기록이 없거나 불완전한 의료 기록으로 도착하였을 때, 조서관은 즉시 적절한 검역소에 통지해야만 한다.

medical documents. Do not keep the alien's chest X-ray film. This is an important medical document that the alien should retain as part of his or her permanent health records.	외국인의 흉부 x-ray 필름을 보관하지 마시오. 이것은 외국인이 그의 영구적인 의료 기록의 일부분으로서 보유해야 하는 중요한 의료 문서이다.
Refer to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all aliens for whom a Form CDC 75.40, "Medical Hold" should be issued. Candidates for a "Medical Hold" are:	CDC 75.40 서식 "Medical Hold(의학적 보류)"를 발부받은 모든 외국인 - 적절한 검역소에 의뢰하십시오. "Medical Hold"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 Aliens who are not routinely required to have a medical examination and who, upon arrival in the U.S., exhibit a physical condition that may render them inadmissible under section 212(a) of the Act;	• 통상적으로 의학적 검사를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미국 도착 시에 법 212(a)조에 따라 입국불허를 받을 수 있는 신체 상태를 보이는 외국인
• Aliens who are not routinely required to have a medical examination and who, upon arrival in the U.S., exhibit variations in behavior which may indicate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that may pose a threat to the property, safety, or welfare of the alien or others and who may be inadmissible under section 212(a) of the Act;	• 통상적으로 의학적 검사를 하도록 요구받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미국 도착 시에 그 외국인 또는 타인의 재산,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나타내는 또는 행동 상의 변화를 보이는 외국인
• Aliens who require a medical examination overseas [immigrants, refugees, fiancée)s of U.S. citizens and their minor children ("K" nonimmigrants), and nonimmigrant spouses of Legal Permanent Residents (LPR's) and their children ("V" nonimmigrants)], but who arrive without evidence or with incomplete evidence of having had one performed, or with one that has expired (1 year for normal examination findings). Satisfactory evidence can consist of a properly completed Form DS-2053, "Medical	• 해외의 의학 검사가 요구되는 외국인 [(이민자, 피난민, 미국 시민의 약혼녀 및 그들의 미성년자 자녀("K" 비이민자) 와 영주권자의 비이민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V" 비이민자)]으로서 검사 증명서 없이 또는 검사가 수행되었다는 불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또는 만기된 (1년) 증거를 가지고 도착한 외국인 완벽한 증거는 적절히 작성된 DS-2053 서식 "이민

Examination for Immigrant or Refugee Applicant” (or the older Form OF-157) and supporting worksheets DS-3024, DS-3025 and DS-3026, with results of chest X-ray and serologic tests for syphilis and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infection indicated. Chest X-ray and serologic tests are required for aliens 15 years of age and older. Form DS-3025, “Vaccination Worksheet,” is not required for nonimmigrant visa K’s and V’s or for refugees.	자 또는 피난민을 위한 의학 검사 신청 지원자”(또는 더 오래된 OF-157서식) 및 보충 조사표 DS-3024, DS-3025, DS-3026와 함께 흉부 X-ray 결과와 매독 및 HIV 감염에 대한 혈청 검사 결과로 구성된다. 흉부 x-ray 및 혈청 검사는 15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요구된다. DS-3025 서식 “예방접종 조사표”는 비자 K 및 V 비이민자 또는 피난민에게는 요구되지 않는다.
Procedures to Follow: Aliens with a Class A condition or a Class B TB condition. These aliens should have an annotation in their visa, if applicable, as follows:	추후 절차 : A급 상태 또는 B급 TB 상태에 있는 외국인 이 외국인들은 비자에 주석이 기입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 Class A or Class B Condition • Requires Attention of USPHS at Port of Entry	• A급 또는 B급 상태 • 통관항의 USPHS 의 주의가 요구된다.
The inspector should check all DS-2053 forms, whether or not the "Attention USPHS" annotation is present, to see if a Class A or B TB condition is indicated on the form but the annotation has been omitted.	조사관은 “USPHS 주의”가 있건 없건, A급 또는 B급 상태가 서식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DS-2053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When quarantine station personnel are not available to process aliens with these medical conditions, retain a copy of the DS-2053 and supporting worksheets, DS-3024, DS-3025, and DS-3026. On the reverse side of the DS-2053, write the alien's U.S. address, sponsor's name, address, phone number, arriving flight and date, port of entry, and th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nspector's name. A photocopy of the	검역소 직원이 이러한 의학적 상태를 가진 외국인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DS-2053, 보충 조사표, DS-3024, DS-3025 및 DS-3026의 사본을 보유해야 한다. DS-2053의 반대 면에는 외국인의 US 주소, 보증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도착 항공기 및 날짜, 통관항과 세관 및 국경 수비 조사관의 이름이 기재하

alien's immigrant visa (OF-155B), if applicable, is satisfactory in lieu of transcribing this information on the reverse of the DS-2053 provided that the address is correct on the OF-155B and that the flight number, date of arrival and phone number are recorded on the OF-155B prior to making the photocopy. The OF-155B and/or DS2053 plus 3 worksheets (DS-3024, DS-3025 and DS-3026) with requested information should be given, mailed, or sent by fax to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시오. 가능하다면, 제출된 DS-2053 반대 면에 정보를 복사하는 것 대신에 OF-155B 상에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고 항공기 번호, 도착일 및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외국인 이민 비자(OF-155B)의 사진 복사를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 요청된 정보가 있는 3개의 조사표(DS-3024, DS-3025, DS-3026)와 함께 OF-155B 및(또는) DS2053는 적절한 검역소에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야 한다.
Procedures for Class A Cases With Section 212(g) Waivers: If the alien has a Class A communicable disease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 the following should be given or mailed to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212(g)조 철회에 따른 A급 case 절차 만약 외국인이 공중보건상 중요한 A급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사항이 적절한 검역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1) copies of the DS-2053 and 3 worksheets 2) OF-155B if applicable 3) both sides of the I-601 waiver application, properly stamped and annotated by the waiver-approving official to show that the waiver has been approved. A copy of the attachment form to the I-601 for HIV infection with statements to be completed by waiver applicants who are HIV infected should also be given or mailed to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1) DS-2053 및 3 조사표 사본 2) 가능하다면 OF-155B 3) I-601 기권 신청 양 면에는 철회가 승인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철회-승인 공무원이 적절하게 도장 찍고 주석이 붙여져야 함 HIV 감염된 철회 신청자가 작성한 문서인 HIV 감염 I-601 첨부서식의 사본은 적절한 검역소에 제출 또는 우송되어야 한다.
Contac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or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US 세관 및 국경 수비대에 연락하십시오.
If the alien has a Class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with associated harmful behavior, a copy (front and back) of USPHS/CDC Form 4.422-1,	만일 외국인이 유해한 행동과 연관된 A급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졌다면, USPHS/CDC 서식 4.422-1 “철회 신청을 보충하는 진술서”의 양면 사

"Statements in Support of Application for Waiver," should be given or mailed to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along with the DS2053 and 3 worksheets, OF-155B, if applicable, and I-601.	본이 DS2053 및 3 조사표, 가능하다면 I-601과 함께 적절한 검역소에 제출되거나 우송되어야 한다.
Notes: There is no waiver provision in the law for aliens applying for immigrant visas who are excludable under section 212(a)(1)(A)(iv) for substance abuse or addiction. If an alien arrives with a visa indicating Class A substance abuse or addiction, please refer to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주석 : 약물 남용 또는 중독에 대한 212(a)(1)(A)(iv)조에 따라 배제된 외국인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에 철회 조항이 없다. 만약 A급 약물 남용 또는 중독을 나타내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도착할 경우, 적절한 검역소에 문의하십시오.
Local health department follow-up of aliens' health conditions is critically important to the public health; providing accurate addresses and phone numbers to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this follow-up process.	지역보건부의 외국인 건강 상태 추적은 공중보건에 매우 중요하며, 정확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절한 검역소에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추적 과정의 필수 요소이다.
Special Procedures for Aliens Medically Certified As Class A, But Who Arrive Without a Waiver: Normally, any prospective immigrant, refugee, or K or V nonimmigrant who is found to be inadmissible under section 212(a)(1) of the Act through the medical examination will not be issued a visa or travel authorization unless and until he or she has been granted a waiver of inadmissibility (and in the case of a K or V nonimmigrant, two such waivers - one under section 212(d)(3)(A) for the nonimmigrant admission and a conditional one under section 212(g) for his or her later adjustment to LPR status).	A급으로 증명되었으나 철회 증서 없이 도착한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절차 : 일반적으로 의학 검사를 통해 법 212(a)(1)에 따라 입국불허된 장래의 이민자, 피난민 또는 K나 V 비이민자는 입국불허 철회가 내려지지 않으면 또는 그때까지 비자가 발부되거나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K 또는 V 비이민자의 경우, 비이민자 승인에 관한 212(d)(3)(A)조에 따른 철회와 LPR 상태 조정에 의한 212(g)조에 따른 조건부 철회-와 같은 2 철회)
However, should a Class A alien apply for admission with such documentation but without such waiver,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Inspector's Field	그러나 A급 외국인은 그러한 철회없이 그러한 문서와 함께 승인을 신청해야만고, 조사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Manual (IFM), section 17.9(c)(4).	Manual (IFM), section 17.9(c)(4).
Special Procedures for Refugees Arriving at a Port of Entry Without USPHS Staff: Refugees and asylees normally arrive at ports where quarantine inspectors are assigned, but this may not always be the case.	USPHS 직원 없는 통관항에 도착하는 피난민을 위한 특별 절차 : 피난민 및 망명자는 보통 검역 조사가 배치된 항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
Notify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of all refugees and asylees entering the U.S. for the first time. If a quarantine inspector is not available to process the refugee or asylee, you will be asked to obtain a copy of the DS-2053 and applicable supporting worksheets (DS-3025, “Vaccination Worksheet,” is not required). You also should ob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normally by making copies of documents carried by the refugee or asylee. This informa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at all refugees and asylees receive a health screening and any appropriate immunizations or treatment at the place of resettlement:	먼저 US에 들어오는 모든 피난민 및 망명자들에게 대해 적절한 검역소에 알려야 한다. 만약 검역관이 피난민 및 망명자를 관리할 수 없을 경우, DS-2053 및 가능한 보충 조사표 (DS-3025, “예방접종 조사표,”는 요구되지 않는다)의 사본을 얻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당신은 또한 다음의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주로 망명자 또는 피난민이 가져온 서류를 복사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모든 피난민 및 망명자가 건강 screening을 받았고 적절한 예방접종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
Name of Refugee Sex Date of Birth Country of Birth Language Spoken “A” Number Sponsor’s Name Sponsor’s Address Sponsor’s Phone Number Sponsoring Agency Date of Arrival Flight and Block Time Port of Arrival	피난자의 이름 성별 생일 탄생국 언어 “A” 번호 보증인 이름 보증인 주소 보증인 전화번호 보증 기관 도착일자 비행 및 폐쇄 시간 도착 항

Special Procedures Regarding Parolees: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determine the tuberculosis status of parolees and to contact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for instructions before the parolee is released.	망명자에 관한 특별 절차 : 망명자가 석방되기 전에 망명자가 결핵을 지녔는지, 적절한 검역소에 지도를 받기 위해 연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V. Importations of Public Health Importance	V. 공중보건상 중요한 수입
Animals: CDC regulations govern the importation of dogs, cats, turtles, monkeys, other animals, and animal products capable of causing human disease.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the most common animals are described below. Pets taken out of the U.S. are subject, upon return, to the same regulations as those entering for the first time. The requirements of other agencies, such a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may also have an impact on the entry of these animals or animal products into the U.S. The general requirement is that all animals intended for importation into the U.S. shall be visually examined by inspecting personnel. Only those that have no obvious signs of infectious diseases may be admitted. Animals that show signs of illness (e.g., emaciation, lesions of the skin, nervous system disturbances, jaundice or diarrhea) shall be examined, tested, or treated by a licensed veterinarian at the owner's expense. Quarantine station personnel can be an informational resource about these issues and should be contacted.	동물 : CDC 규칙은 개, 고양이, 거북이, 원숭이, 및 기타 동물과 인간 질병 을 야기할 수 있는 동물 물품의 수입을 관할한다. 대부분의 동물 수입에 필요한 요건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US 밖으로 나간 애완동물은 돌아올 경우, 처음 들어오는 애완동물들처럼 같은 규칙의 대상이 된다. 미 농림부나 미 임수산부와 같은 다른 기관의 요건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동물이나 동물 물품의 통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요건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동물이 검역직원의 시각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염병의 명백한 징후가 없는 동물만이 허가받을 수 있다. 질병 징후(예를 들어, 쇠약, 피부 상처, 신경계 교란, 황달 또는 설사)를 보이는 동물은 소유자의 비용으로 면허있는 수의사의 검사, 실험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검역소 직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보원이 될 수 있으며, 연락받아야 한다.
When handling any items that must be seized and	체포 및 화장되어야 하는 물건을 다룰 때에는, 예

incinerated, precautions (gloves and a mask at a minimum) must be observed. Dogs: Regardless of age, dogs may be released without restriction if they appear to be healthy and have been exclusively in a rabies-free area (http://wwwn.cdc.gov/travel/yellowBookCh4-Rabies.aspx) for at least 6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arrival or since birth. Dogs arriving from countries other than those listed as rabies-free may be admitted if they meet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방법(최소 장갑 및 마스크)을 준수해야만 한다. 개: 연령에 상관없이, 출생 후 또는 이전 도착 최소 6개월 간 광견병 안전지역 (http://wwwn.cdc.gov/travel/yellowBookCh4-Rabies.aspx)에 있었던 개나 건강해 보이는 개는 제한없이 석방될 수 있다. 광견병 안전지역으로 열거된 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도착하는 개들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입국 허가될 수 있다.
• Greater than 3 months of age • Free of gross evidence of infectious disease • Accompanied by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rabies. This certificate shall: Identify the dog Be signed by a licensed veterinarian Specify the expiration date, which should not be earlier than the date of arrival; if the expiration date is not indicated on the certificate, it shall be valid for only 1 year from the date of issue. Specify the date of vaccination,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30 days prior to the date of arrival.	• 3개월 이상의 나이 • 전염병 증거가 없음 •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음. 이 증명서는 다음이 있어야 함 개의 신원 확인 면허있는 수의사가 서명 만료일 특정 (도착일보다 먼저 만료되어서는 안 됨. 만일 만료일이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발행일로부터 오직 1년만 유효함) • 예방접종일 특정 (도착 이전 30일 이내가 아니어야 함)
An example of a rabies vaccination certificate is attached to this document and can be found online at the following address: http://www.cdc.gov/ncidod/dvrd/rabies/professional/publications/compendium/rabies2b.pdf For a dog that is subject to the rabies vaccination requirement and appears to be healthy, but does not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의 예시는 이문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다음 주소의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cdc.gov/ncidod/dvrd/rabies/professional/publications/compendium/rabies2b.pdf 광견병 예방접종 요건의 대상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위에 개괄된 유효한 광견병 증명서를 가지지

have a valid rabies certificate as outlined above, CDC form 0.1288 (available online at http://www.cdc.gov/ncidod/dq/pdf/animal/dog_quarantine_notice_08-04-06-cdc7537.pdf) must be completed and forwarded to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see pg. 11) for distribution. The form must be signed by the individual responsible for the imported dog. CDC 75.37 is to be prepared when: • The dog is greater than 3 months old and has no certificate: Release the dog provided the owner agrees to place the dog in confinement immediately upon arrival at destination and have it vaccinated against rabies within 4 days. The dog must then be confined for an additional 30 days following vaccination. Confinement is defined as restriction of the animal to a building or other enclosure, in isolation from other animals and people, except for contact necessary for its care. If the dog is allowed out of the enclosure, the owner must muzzle the dog and use a leash. • The dog is greater than 3 months old and has a certificate showing a vaccination done less than 30 days prior to arrival: The owner is required to confine the dog for the balance of 30 days. • The dog is less than 3 months old: The owner is required to confine the dog until it is 3 months old, then have it vaccinated and confined for 30 additional days. A vaccination certificate presented for a puppy less than 3 months old cannot be accepted.	않은 개를 위해서는, CDC 0.1288 서식을 작성해서 적절한 검역소에 전송되어야 한다.(http://www.cdc.gov/ncidod/dq/pdf/animal/dog_quarantine_notice_08-04-06-cdc7537.pdf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음) 서식은 수입되는 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이 서명해야만 한다. CDC 75.37은 다음의 경우 준비된다.: • 3개월 이상되고 증명서가 없는 개 : 목적지에 도착 즉시 개를 감금하고 4일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것에 동의한 개는 석방된다. - 개는 예방접종 후 추가적인 30일 동안 감금되어야 한다. 감금은 보살핌을 위해 필요한 접촉을 제외한 기타 동물 및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건물이나 울타리에 동물을 구속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만약 개가 울타리 밖으로 나오려면, 소유자는 부리망을 씌우고 목줄을 사용해야만 한다.
• 3개월 미만의 개 : 소유자는 3개월이 될 때까지 개를 감금하고 예방접종 후 추가적인 30일 동안 감금해야 한다. 3개월 미만 강아지가 가진 예방접종 증명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Cats : Cats are subject only to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entry as stated above. No rabies vaccination or health certificate is currently required	고양이 : 고양이는 위에 설명된 일반 통관 요건에만 그 대상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 또는 건강 증명서는 현재 통관에서 요구되지 아니한다.

for entry.	
Monkeys and Other Nonhuman Primates: Live monkeys and other nonhuman primates may not be imported for use as pets under any circumstances. They may only be imported into the U.S. for bona-fide scientific, educational, or exhibition purposes. Importers must be registered with CDC and are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specific disease control measures while the animals are imported and cleared, transported to the importer's facilities, and quarantined for a 31-day period. Registered importers must also hold a special permit, issued by CDC, to import cynomolgus, rhesus, or African green monkeys.	원숭이 및 기타 인간아닌 영장류 : 살아있는 원숭이 및 기타 인간 아닌 영장류는 어떤 상황에서는 애완동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될 수 없다. 이것들은 오직 선의의 과학적, 교육적 또는 전시 목적으로만 미국에 수입될 수 있다. 수입자는 CDC에 등록해야만 하며, 동물이 수입되고 입항되고 수입자의 시설로 운송되고 31일 동안의 검역 기간동안 특정한 질병 관리 수단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등록된 수입업자는 cynomolgus, 붉은털원숭이나 아프리카초록원숭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CDC가 발부한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Verify Importer Status: Contact the appropriate quarantine station see pg. 11) when primates are presented for entry to verify that the importer is currently registered as an importer of nonhuman primates and that, if required, a special permit has been issued.	• 수입업자 상태 확인 : 영장류가 통관하고자 할 때, 인간이 아닌 영장류의 수입업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특별 허가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검역소에 연락하십시오.
• Illegally Imported Monkeys: If a monkey owned by a passenger arrives hand-carried or as baggage, isolate the animal and call the quarantine station for advice immediately. DO NOT handle the animal or allow others near its enclosure.	• 불법으로 수입된 원숭이 : 만약 승객이 소유한 원숭이가 손수 운반되거나 수하물로 도착한다면, 그 동물을 격리하고 즉시 조언을 받기 위해서 검역소에 전화하십시오. 동물을 손으로 만지거나 다른 이들이 울타리 근처로 가게 하지 마시오.
• Seizure: Inadmissible nonhuman primates are seized and re-exported to the country of origin, donated to facilities approved by CDC, or destroyed. Form CDC 75.10d is to be used. Quarantine station staff will provide guidance.	• 몰수 : 입국불허된 인간이 아닌 영장류는 몰수되어 원래 국가로 재수출되거나 CDC가 승인한 시설에 기증되거나, 박멸된다. CDC 75.10d 서식이 사용되어 진다. 검역소 직원이 안내할 것이다.

부록4. 중국 검역 규칙

RULES FOR ENFORCING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 I GENERAL PROVISIONS	PART I 일반 규정
[Article 1] These rules are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제1조 이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 보건 및 검역(FHQR)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관한 것이다.
[Article 2] Definitions: "Infected person" means a person who is suffering from a quarantinable disease, or who is preliminarily diagnos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s having been infected with such a disease; "Suspect" means a person who is consider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s having been exposed to infection of a quarantinable disease and is considered capable of spreading that disease; "Inspection" means medical examination and sanitary inspection made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Under surveillance" means a person or persons put under surveillance at a special place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for examination and inspection;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means a person coming at the designated time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nearby or other medical	제2조 정의 감염자는 검역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 또는 FHQ 당국이 그러한 질병에 감염되었다고 임시적으로 진단한 사람을 의미한다. 감염의사자는 FHQR 당국이 검역 질병에 노출되어 그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다고 고려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조사는 FHQR당국에 의해 의해 행해지는 의학적 검사 및 위생학적 조사를 의미한다. 감시중인 자란 FHQR 당국이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특정 지역에 감시하기 위해 데려다 놓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각적 의학적 검사는 그가 위치한 장소에 있는 기타 의료기관 또는 FHQR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가까운 FHQR 당국이나 기타 의료 기관에 지정된

organization for examination, or to be examin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r other medical organization at the place where he is located;	시간에 오는 자를 의미한다.
"Port" means a seaport frequented by ships on international voyages or any port situated on a boundary river;	항구란 국제 여행에 의한 배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항구 또는 국경에 있는 강에 위치한 항구를 의미한다.
"Airport" means any airport of entry or departure for international air traffic;	공항이란 국제 항공기의 입출항을 하는 공항을 의미한다.
"Railway station" means a railway station at the frontier for trains entering or leaving the frontier to stop;	철도역이란 국경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기차들이 정박하는 국경에 있는 철도역을 의미한다.
"Frontier post" means a post on the frontier for road vehicles other than trains, and persons on foot entering or leaving the frontier;	국경역이란 기타 이외의 육로 교통수단이나 국경을 드나드는 도보 여행객을 위한 국경에 있는 역을 의미한다.
"Ship" means any means of transport on the water;	배란 물을 이용한 운송수단을 의미한다.
"Aircraft" means any means of transport in the air;	항공기란 공중 상의 운송수단을 의미한다.
"Road vehicle" means any means of transport on land;	육로 운송수단이란 육로 상의 운송수단을 의미한다.
"Baggage" means the personal effects of a passenger or of a member of communication personnel;	화물이란 승객 또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의 소유물을 의미한다.
"Day" means an interval of twenty-four hours.	하루(日)는 24시간의 간격을 의미한다.

[Article 3] For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the incubation period of a quarantinable disease is: (1) Plague -- six days; (2) Cholera -- five days; (3) Yellow fever -- six days; (4) Smallpox -- fourteen days; (5) Typhus -- fourteen days; (6) Relapsing fever -- eight days.	제3조 이 규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역 전염병의 잠복기는 다음과 같다. (1) 페스트 - 6일 (2) 콜레라 - 5일 (3) 황열 - 6일 (4) 천연두 - 14일 (5) 발진티푸스 -14일 (6) 회귀열 - 8일
[Article 4] A ship, an aircraft, a train, or any road vehicle other than a train and any person entering the territory on foot through the land frontier, shall be subject to entry quarantine inspection at the first port, airport, railway station, or frontier post of arrival respectively.	제4조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배, 항공기, 기차 또는 기차 이외의 다른 육로운송수단이나 도보자는 각각 처음 도착하는 항구, 공항, 기차역 또는 국경역에서 입국 검역 조사의 대상이 된다.
[Article 5] A ship, an aircraft, a train or any road vehicle other than a train going abroad, or any person leaving the territory on foot through the land frontier, shall be subject to departing quarantine inspection at the last port, airport, railway station, or frontier post of departure respectively; but medical examination of the crew members of a foreign ship and sanitary inspection of the ship shall be carried out at the request of the ship's master.	제5조 외국으로 나가는 배, 항공기, 기차 또는 기차 이외의 다른 육로운송수단이나 국경으로 통해 나가는 도보자는 각각 마지막 떠나는 항구, 공항, 기차역 또는 국경역에서 입국 검역 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외국배의 승무원의 의학적 검사 및 배의 위생 검사는 선장의 요청에 의해 수행된다.
[Article 6] When a quarantinable disease or a suspected quarantinable disease occurs, or a person dies of a cause other than an accident, at a port,	제6조 항구, 공항, 기차역 또는 국경역 또는 배, 항공기 기차 및 기타 육로운송수단 내에서 검역 전염병 또는 검역의심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사고

an airport, a railway station, or a frontier post, or on board a ship, an aircraft, a train, or any other road vehicle staying thereat, provisional quarantine shall be applied on the spot.	이외의 원인으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잠정적인 검역이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Article 7]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in finding any infected person, shall immediately put him in isolation, and precautions shall be taken on isolation to prevent any other person from being infected; The diagnosed case of a quarantinable disease and the suspect shall be admitted and isolated separately. The period for isol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organization applying the iso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medical examination.	제7조 FHQ 당국은 감염자를 발견하면, 그를 즉각적으로 격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검역전염병으로 진단된 경우 또는 의사자는 따로 수용 격리되어야 한다. 격리 기간은 의학적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격리를 하는 기관이 결정한다.
[Article 8]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treat any suspect according to provisions contained in part VIII of these Regulations; or, in case of a suspect for whom no treatment provided in Part VIII of these Regulations is appropriate, may apply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or place him under surveillance or any necessary sanitary measures as the occasion requir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e incubation period of the very infectious disease, reckoned from the date on which he left the infected environment.	제8조 FHQ 당국은 이 규칙 part VIII에 있는 규정에 따라 의사자를 치료해야만 하며, part VIII가 제공하는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의사자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감시 또는 필요한 위생 조치에 따라 그가 감염환경을 떠난 날로부터 고전염성 질병의 잠복기를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의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
[Article 9]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prevent any infected person or	제9조 FHQ 당국은 감염자 또는 의사자가 영토를 떠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suspect from leaving the territory, but shall allow departure of any suspect who has come from abroad and submitted to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upon his arrival; if he leaves the territory on board a ship, an aircraft, or in a road vehicle,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notif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hip, the aircraft or the road vehicle, or record the fact on the certificate concerned.	온 의사자나 배, 항공기 또는 육로운송수단으로 영토를 떠날 경우, 그 도착에 대해 의학적 검사를 제출한 의사자는 그 출발을 허가하여야 한다. FHQ 당국은 배, 항공기, 운송수단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관련 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만 한다.
[Article 10]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apply disinfection, disinsecting, or any other necessary sanitary measures to baggage or goods transported into or out of the country which the organization considers to be contaminated or suspected to be contaminated, or which is likely to serve as the vector of a quarantinable disease.	제10조 FHQ 당국은 당국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하거나 또는 검역질병의 병원체일 것으로 고려하는 외국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화물 또는 물건에 대해 소독, 살충 또는 기타 필요한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한다.
[Article 11] No sanitary measures shall be applied to goods which are in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ut which are transported from abroad and shall make no transshipment within its territory, unless any incident of epidemiological significance requires such.	제11조 외국에서 수송되는 것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를 통해 이송되는 물건은 위생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역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면 영토 내에서 옮겨진지 아니한다.
[Article 12] Any person undertaking transportation of a corpse or coffin into or out of the country shall produce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 death certificate or other appropriate certificate, and he is allowed to transport the corpse or coffin into or out of the country only after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is	제12조 외국에서 들어오(나가)는 시체 또는 관의 수송을 하는 사람은 FHQ 당국에 사망 증명서 또는 기타 적절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FHQ 당국이 그 증명서에 만족하고 입국 또는 출발 허가를 발부한 후에만 나라를 입출국할 수 있다.

satisfied with the certificate and has issued an entry or departure permit to him.	
[Article 13] The corpse of a person who died of any cause other than an accident at a port, an airport, a railway station, or a frontier barrier, or on board a ship, an aircraft, a train, or any other road vehicle staying thereat shall not be removed until it has been examin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nd a permit issued for its removal into or out of the country.	제13조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항고, 공항, 철도역 또는 국경 또는 배, 항공기, 기차 또는 기타 육로 교통수단에서 죽은 자의 시체는 그것이 FHQ 당국의 검사를 받고 국가 내외로의 제거가 허가될 때까지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Article 14]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when it considers that the human excrements, refuse, waste water, and bilgewater from a ship will contaminate the water of a bay or a river, may prohibit the discharge or removal of the above-mentioned matters in the port or may apply sanitary control over them.	제14조 FHQ 당국은 배에서 인간의 배설물, 쓰레기, 오수 및 bilgewater가 만이나 강의 물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항구에 위에 언급된 물질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것들에 대해 위생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Article 15] Sanitary conditions shall be maintained at any port, aircraft, railway station, and frontier port, and on board a ship, aircraft, train staying thereat, persons in charge of the above-mentioned places and means of transport shall improve and dispose the unsanitary conditions that are capable of spreading any quarantinable disease;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the right to supervise and to direct the above-mentioned matters.	제15조 위생 상태는 항구, 비행기, 철도역, 국경역, 및 배, 항공기 기차와 위에 언급된 장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운송수단은 검역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비위생 상태를 개선해야만하며, FHQ 당국은 위에 언급된 일을 지시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Article 16] In the event of an epidemic of a quarantinable disease at home or abroad,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제16조 국내외의 검역전염병 유행에 대하여, 중국의 공중보건국은 다음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검역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기 위하여 즉각적으

of China shall immediately report to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orders to take the following quarantine measures partly or wholly: (1) To designate the area concerned on the land frontier or on the boundary river as a blockade area; (2) To subject certain baggage or goods to disinfection and disinsecting before it is to be transported into or out of the country; (3) To prohibit certain baggage or goods from being transported into or out from the country; (4) To designate the first port of entry; any ship coming from an infected local area abroad, unless in wreckage or for particular reason, shall not be allowed to enter any other port without being quarantined at the first port of entry; (5) To designate the first approved airport for landing; any aircraft coming from an infected area abroad, unless in wreckage, shall not be allowed to land at any other airports without being quarantined at the first port for landing.	로 중국인민공화국의 국무회의(state council)에 보고해야한다. (1) 국경지역 또는 강 경계에 대한 봉쇄지역으로 지정 (2) 수하물 또는 물건이 입국,출국 되기전에 소독 또는 살충 대상 지정 (3) 국 내외 수송이 되는 특정 수하물 또는 물건 금지 (4) 입국항구 지정, 난파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오염지역으로부터 오는 배는 입국항의 검역없이 다른 항으로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함. (5)착륙을 위한 입국공항 지정, 난파가 아니라면 오염지역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항공기도 첫 번째 입국공항의 검역없이는 기타 다른 공항으로 착륙이 허가 되지 아니함
[Article 17] If an epidemic of pulmonary plague occurs in a country neighboring up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land, and when there is reliable evidence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sease	제17조 만일 육로로 중국과 인접한 국가에서 페페스트가 유행하고, 중국 영토 내로 질병이 전염될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FHQ 당국은 지역 국경수비당국 및 자치위원회와 상의한 후에 즉각

into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local frontier defense administration or the country or the municipals people's commission, may immediately take joint emergency measures of blockading the frontier communication, and at the same time report immediately by the most rapid means through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the frontier defense administration to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적으로 합동하여 국경의 교통을 봉쇄하고 동시에 즉각적으로 가장 빠른 수단으로 통해 공중보건국 및 국경수비당국을 통해 인민중화국의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Article 18] Whe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pplies quarantine inspection on a ship, aircraft or road vehicle,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hip, aircraft or road vehicle has the obligation to cooperate as closely as possible.	제18조 FHQ 당국이 배, 항공기 또는 육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를 할 경우, 배, 항공기 또는 육로 운송수단의 담당자는 가능한 밀접하게 협력할 의무가 있다.
[Article 19] Whe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fficer desires to know the course of the voyage so as to ascertain the state of health of the person to be quarantined, he may examine his voyage certificate.	제19조 FHQ 당국의 공무원이 검역대상이 된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행 경로를 알고자 할 경우, 그는 여행 증명서를 검사할 수 있다.
[Article 20] Whe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is carrying out quarantine inspection at a port, an airport, a railway station, or a frontier post, the relevant organization shall cooperate and provide the necessary premises for office work, medical examination and sanitary treatment.	제20조 FHQ 당국이 항구, 공항, 기차역, 또는 국경역에서 검역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 기관은 공무, 의학검사 또는 위생치료를 위해 필요한 건물을 제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PART II NOTIFICATIONS AND EPIDEMIOLOGICAL INFORMATION	PART II 신고 및 역학 정보

[Article 21] When a quarantinable disease or a suspected quarantinable disease has been discovered, or a person dies of a cause other than an accident, at a port, airport, a railway station, or a frontier post, or on board a ship, an aircraft, a train, or other means of transport staying thereat, the persons in charge of such port, airport, railway station, or frontier port, or of such a ship, aircraft, train or other means of transport shall notif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immediately.	제21조 검역전염병 또는 의사 검역전염병이 발견되거나, 사고이외의 원인으로 항구, 공항, 기차역 또는 국경역 또는 배, 항공기, 기차 기타 운송수단 내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러한 항구, 공항, 기차역 또는 국경역이나 그 배, 항공기, 기차 또는 기타 운송수단의 담당자는 FHQ 당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Article 22]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notify immediately the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when a quarantinable disease or a suspected quarantinable disease has been discovered; in the case of plague, or cholera, or yellow fever or smallpox, it shall also immediately notify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the most rapid means.	제22조 FHQ 당국은 페스트, 콜레라, 황열, 천연두와 같은 검역전염병 또는 의사 검역전염병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지역 보건예방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즉시 중화인민공화국 공중보건당국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23] The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shall notify immediatel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ituated within its jurisdiction, when a quarantinable disease or a suspected quarantinable disease has been discovered within its jurisdiction.	제23조 검역전염병 또는 의사 검역전염병이 관할 지역 내에 발견될 경우, 지역보건예방당국은 즉시 관할권내에 위치한 FHQ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24] When an epidemic of a quarantinable disease occurs at a certain area within or without the country,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declare such area	제24조 검역전염병의 유행이 국내외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공중보건당국은 그러한 지역을 <u>오염지역</u>으로 선언할 수 있다.

an infected area.	
PART III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S	PART III 국경 보건 및 검역 당국(FHQ 당국)
[Article 25]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s include the health and quarantine offic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its seaport, airport and on the frontier, as well as the outpost quarantine stations of the above-mentioned offices. The establishment, amalgamation, or withdrawal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ffices shall be repor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to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approval; the establishment, amalgamation, or withdrawal of quarantine stations shall b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제25조 FHQ 당국은 항구, 공항, 국경에 있는 보건 및 검역소는 물론 위에 언급된 사무소의 변경 검역소를 포함한다. 국경보건검역소의 설립, 합병 또는 철수는 공중보건당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회의에 승인을 받기 위해 보고해야 하며, 검역소의 설립, 합병 또는 철수는 공중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rticle 26] The functions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re: (1) To report the occurrence, prevalence and termination of quarantinable diseases; (2) To apply medical examination and sanitary measures to persons to be quarantined; (3) To apply sanitary inspection and sanitary measures to shops, aircraft, vehicles, baggage and goods to be quarantined; (4) To examine a port, an airport, a railway station, or a frontier post, or a ship, an aircraft, a train or	제26조 FHQ 당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검역전염병의 발생, 성행, 종료의 보고 (2) 검역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위생 조치 (3) 검역대상 선박, 항공기, 운송수단, 수화물 및 물건에 대한 위생조사 및 위생조치 (4) 항구, 공항, 철도역, 국경역이나 당시 머물렀던 배, 항공기, 기차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대한

any other vehicle staying thereat, for rodent and insect vectors of quarantinable disease; (5) To examine and apply sanitary measures on the corpse of a person who died of any cause other than an accident at a port, an airport, a railway station, or a frontier post, or on board a ship, an aircraft, a train or any other vehicle staying thereat; (6) To make bacteriological examination and sanitary supervision of the drinking water and food supplied by a port, an airport, a railway station, or a frontier post; (7) To supervise the preventive and control operations on rodent and insect vectors of a quarantinable disease done by the port, airport, railway station or frontier post authority, and to direct their preventive measures; (8) To carry out other routine sanitary supervision over a port, an airport, a railway station, or a frontier post, and a ship, an aircraft, a train, or any other vehicle staying thereat; (9) To apply restriction and control in sanitary respect over a coffin transported into or out of the country; (10) To issue quarantine certificates; (11) To carry out other services assigned by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검역전염병의 설치류 및 곤충 병원체 검사 (5) 사고이외의 원인으로 항구, 공항, 기차역 또는 국경역 또는 배, 항공기, 기차 기타 운송수단 내에서 죽은 사람의 검사 및 위생 조치 (6) 항구, 공항, 기차역 또는 국경역에서 제공되는 마시는 물 및 음식에 대한 세균 검사 및 위생 감독 (7) 항구, 공항, 철도역 또는 국경역 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검역전염병의 설치류 또는 곤충 병원체에 대한 예방 및 통제 조치 감독 및 예방조치 지시 (8) 항구, 공항, 철도역 또는 국경역 및 배, 항공기, 기차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일상적인 위생 감독 수행 (9) 입출국되는 시체에 대한 위생 조치 제한 및 통제 (10) 검역증명서 발행 (11) 공중보건당국에 의해 부여된 기타 다른 서비스의 수행
[Article 27] The organization, personnel leadership and standards of facilities, as well as the uniforms and marks of the quarantine officers, and the form of quarantine certificates shall be specified by the	제27조 검역관의 유니폼 및 마크와 같은 기구, 인력, 시설 기준과 검역증명서 서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중보건당국에 특정한다.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 IV MARITIME QUARANTINE	PART IV 해상검역
[Article 28] The quarantine of entering ships shall be applied at the quarantine anchorage of a port. The quarantine anchorage shall be designated by the frontier health organiz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port affairs administration, and shall be reported to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respectively for reference.	제28조 입항하는 배의 검역은 검역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검역장소는 해상당국과 상의하여 FHQ 당국이 지정하며, FHQ 당국은 공중보건당국 및 교통통신당국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29] The port affairs administration in charge of the port quarantine shall, prior to the arrival of a ship which is subjected to entry quarantine, inform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s early as possible about the following details: (1) The name and nationality of the ship, and the scheduled time and date of arrival at the quarantine anchorage; (2) The port of sailing and the last port of call; (3) The number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on board the ship.	제29조 그 항구의 검역을 담당하는 해상당국은 검역 대상이 되는 배가 도착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다음의 사항을 FHQ 당국에 알려야 한다. (1) 배의 이름, 국적, 검역장소에의 도착일 및 시간 (2) 출발항구 및 마지막 항구 (3) 배에 탑승한 승무원 및 승객의 수
[Article 30] If during its voyage, a case of quarantinable disease or suspected quarantinable disease is discovered, or a person died of any cause other than an accident on board a ship which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the master of the ship shall inform by telegram the frontier health and	제30조 여행기간동안, 검역전염병 또는 의사검역 질병이 발견되었거나 입국 검역 대상이 된 배 내에서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선장은 검역항에 배가 도착하려는 예정 시간 전에 가능한 빨리 FHQ 당국에 다음의 사항을 무전으로 알려야 한다.

quarantine organization, as early as possible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arrival of the ship at the quarantine port, of the following: (1) The name and nationality of the ship, and the scheduled time and date of arrival at the quarantine anchorage; (2) The port of sailing and the last port of call; (3) The number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on board the ship; (4) The names of the disease or main symptoms, and the number of cases and deaths; (5) Whether or not the ship has a surgeon on board.	(1)배의 이름, 국적, 검역장소에의 도착일 및 시간 (2) 출발항구 및 마지막 항구 (3) 배에 탑승한 승무원 및 승객의 수 (4) 질병명 또는 주요 증상 및 증상과 사망 건수 (5) 배에 의사 탑승 유무
[Article 31] Any ship which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must hang up the quarantine signal, and wait for inspection at the quarantine anchorage. It is not allowed to lower the quarantine signal until an entry pratique has been issued to it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he quarantine signal of a ship is in day time to fly on the foremast a signal flag of international code express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1) "Q" flag signifies that the ship is not infected, requesting the issuance of an entry pratique; (2) "QQ" flag signifies that the ship is infected or suspected, requesting immediate quarantine; In the night time, signal lamps shall be hung perpendicularly on the foremast or other more	제31조 입국 검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배는 검역 신호를 달고 검역장소에서 검역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 FHQ 당국이 입국 검역증을 발부할 때까지 검역 신호를 내리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배의 검역 신호는 낮 시간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만국선박부호의 깃발을 앞돛대에 걸어야 한다. (1)"Q" 깃발은 입국 검역증 발부를 요청하는 오염되지 않은 배라는 것을 나타낸다. (2)"QQ"는 배가 오염되었거나 의심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검역을 요청함을 의미한다. 밤 시간에는 신호 램프를 앞돛대 또는 기타 돌출된 장소에 똑바로 매달아야 한다.

prominent place: (1) Three red lamps signify that the ship is not infected, requesting the issuance of an entry pratique; (2) Four lamps in the order of red, red white, and red signify that the ship is infected or suspected, requesting immediate quarantine.	(1) 3개의 빨간색 램프는 입국 검역증 발부를 요청하는 오염되지 않은 배라는 것을 나타낸다. (2) 빨강, 빨강, 흰색과 빨강의 순서로 된 4개의 램프는 배가 오염되었거나 의심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검역을 요청함을 의미한다.
[Article 33] Except those permit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no person is allowed to embark on a ship with the quarantine signal, and no baggage or goods are allowed to be loaded or unloaded, nor another ship is allowed to approached it. Except in wreckage, no person on board the ship is allowed to disembark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fter the ship has been given entry pratique, but i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noted on the pratique sanitary measures or restrictions to which the ship is submitted, even though the quarantine signal has been lowered, it shall still abide by the items noted on the pratique.	제33조 FHQ 당국에 의해 허가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검역 신호가 있는 배에서 정박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며, 화물이나 물건이 선적 또는 양륙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또는 다른 배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허가되지 않는다. 난파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에 있는 그 누구도 FHQ 당국의 허가 없이 상륙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배가 입국 검역증을 받은 후라도, 만일 FHQ 당국이 배가 검역위생조치 또는 제한을 받아야 함을 알게 된다면, 검역 신호가 내려졌더라도 검역증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rticle 34] The master of a ship which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upon the embarkation of a frontier quarantine health officer, shall complete and deliver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which shall be signed by the master and counter-signed by the ship's surgeon if one is carried.	제34조 입국 검역 대상이 된 배의 선장은 FHQ 공무원의 승선하면, 선장이 사인하고 배에 의사가 있다면 의사가 함께 사인한 선박보건신고서를 작성하여 FHQ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35]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while applying entry quarantine inspection to a ship, may demand the list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and examine the Deratting Certificate or 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 inventory of the holds, journal of voyage and other documents relating to quarantine. When the frontier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fficer desires any further information as to the health conditions on board during the voyage, he may make inquiries of the ship master and the ship's surgeon. The ship master and the ship's surgeon shall reply in truth to the above-mentioned inquiries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fficer organization orally or in written form. A written reply shall be signed by the master and countersigned by the ship's surgeon if one is carried.	제35조 FHQ 당국은 배에 입국 검역조사를 하는 동안 승무원 및 승객의 명단을 요청할 수 있고, 구제 증명서 또는 구제면제증명서, 화물목록, 여행일지 및 검역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FHQ 공무원이 여행 동안 선내에 건강 상태와 같은 기타 정보를 요구할 경우, 그는 선장 및 배의 의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선장 또는 배의 의사는 서면 또는 구두로 FHQ 당국 공무원이 위에 언급한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한다. 서면 대답은 선장 및 배의 의사(있을 경우에만)가 함께 사인해야 한다.
[Article 36] After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carried out the inspection on any entering ship, a pratique shall immediately be issued to a healthy ship; if sanitary measures or restrictions shall be applied to the ship, they shall be specified in the pratique; to an infected or suspected ship, besides the port affairs administration being duly informed, and after the specified sanitary measures have been carried out, an entry pratique shall be issued.	제36조 FHQ 당국이 입국하는 배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는 검역증이 즉시 검강한 배에 발부되어야 하며, 만약 위생 조치 또는 제한이 배에 취해져야 한다면 감염 또는 의심되는 배에 검역증 내용을 특정하는 한편, 해상당국에 정식으로 알려야 하며, 특정된 위생 조치가 이행된 후에는 입국 검역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Article 37] The entry inspection of ships shall be carried out during the interval between sunrise and sunset; if the port affairs administration and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consider it necessary, or if the master request and there is sufficient light on board the ship,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also carry out inspection during the interval after sunset and before sunrise.	제37조 배의 입국 조사관은 일출 및 일몰 사이 동안 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해상당국 및 FHQ 당국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선장이 요구하거나 선내에 충분한 빛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당국은 일몰 후 일출 전에 사이에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Article 38] When a ship coming from abroad, for certain reason, is forced to anchor at a port or at the coas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ere there is no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he ship master shall report by telegram to the nearest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r to the nearest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or to the port affairs administration, or to the Local People's Commission. The port affairs administration, or the People's Commission, after receiving such a report, shall immediately transmit it to the nearest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r the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r the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after receiving such a report, shall immediately send officers to the ship in question for quarantine inspection.	제38조 특정 이유로 외국에서 오는 배가 FHQ 당국이 없는 중국의 해안 또는 항구에 닻을 내려야 할 경우, 선장은 가장 가까운 FHQ 당국 또는 지역 보건예방당국, 해상당국 및 지역인민위원회에 무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해상당국 또는 인민위원회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후에는 즉시 그것을 가까운 FHQ 당국 당국이나 지역 보건예방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FHQ 당국 또는 지역 보건예방당국은 그러한 보고를 받은 후에 즉시 공무원을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을 위하여 배에 보내야 한다.

The persons on board the ship, except when the ship is in a condition of wreckage, are not allowed to disembark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r the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배가 난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 FHQ 당국 또는 지역 보건예방당국의 허가 없이 정박할 수 없다.
[Article 39] Whe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found any ship on arrival, which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to be infected with yellow fever, and there are Aedes aegypti on board, and that the infected person has not been isolated in good time, the ship must submit to the 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and shall not be allowed to depart forthwith before the sanitary measures have been completed.	제39조 FHQ 당국이 입국검역 대상이 되거나, 황열에 감염되거나, 선내에 황열병 매개 곤충이 있거나 적절히 격리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는 선박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배는 규칙 내에 있는 위생 조치를 따라야 하며, 위생 조치가 끝나기 전에 떠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Article 40] Except in the case as provided for in Article 39, if any ship which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is unwilling to submit to the sanitary treatment provided for in these Regulations, it shall hang up quarantine signal and immediately return to the open sea. Such a ship under quarantine shall be allowed to take on fuel, water, and stores; baggage and goods, or passengers requesting landing,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submit to 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in these Regulations, shall also be allowed to be unloaded or to disembark.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port affairs administration of the above-mentioned condition whenever it occurs.	제40조 제39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입국 검역 대상이 된 배가 이 규칙에 규정된 위생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검역 신호를 달고 즉시 공해로 되돌아 가야 한다. 그러한 검역 하에 있는 배는 연료, 물 및 식량 및 화물과 물건을 실을 수 있고 이 규칙에 규정된 위생조치를 준수한 상태에서 또한 짐을 내리거나 양륙이 허가된다. FHQ 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상당국에 위에 언급된 상태를 알려야 한다

[Article 41] Before the departure of any ship, which is subject to departing quarantine, the port affairs administration at the port where quarantine inspection is applied shall inform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f the following as early as possible: (1) The name and nationality of the ship, and the scheduled time and date of departure; (2) The port of destination and the first port of call; (3) The number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제41조 출발 검역의 대상이된 모든 배의 출발전에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상당국은 FHQ 당국에 가능한 빨리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배의 이름, 국적, 출발일 및 시간 (2) 목적지항구 및 첫번째 항구 (3) 배에 탑승한 승무원 및 승객의 수
[Article 42]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fficer, while applying quarantine inspection to a ship, may make inquires of the ship master or the ship's surgeon about the health conditions on board, and the master or the ship's surgeon shall reply in truth to such inquires, he may demand the list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he may examine the Deratting Certificate or the 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s in relation to quarantine.	제42조 배에 검역 조사를 하는 동안, FHQ 당국 공무원은 선내의 보건 상태에 관하여 선장 또는 배의 의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선장 또는 배의 의사는 그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승무원 및 승객의 명단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은 쥐잡이 증명서 또는 쥐잡이면제증명서나 검역과 관련된 기타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Article 43] Any ship which has been inspec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except that it has not submitted to sanitary examination and its crew members have not been medically examined, shall be given a pratique for departure either immediately or after the necessary sanitary treatment has been comple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amination; if any ship is unable to	제43조 FHQ 당국이 조사한 모든 배는 위생 검사가 준수되지 않거나, 승무원이 의학적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발을 위한 검역증을 즉시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위생 조치를 끝낸 후에 검역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생 조치 때문에 예정된 시간에 배가 출발

depart on the scheduled time on account of the sanitary treatment, the port affairs administration shall be informed.	하지 못할 경우, 해상당국에 알려야 한다.
PART V AVIATION QUARANTINE	PART V 항공 검역
[Article 44] No matter capable of causing any epidemic disease shall be thrown or allowed to fall from an aircraft when it is in flight.	제44조 유행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비행 중 항공기에서 던져지거나 떨어뜨리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Article 45] The airstation at the airport where quarantine inspection is applied shall, before the arrival of any aircraft which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inform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f the following as early as possible: (1) The nationality, the type and distinguishing sign (the number) of the aircraft and the scheduled time of arrival; (2) The station of departure and the transit station; (3) The number of its crew members and passengers on board the aircraft.	제45조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공항에 있는 비행장은 입국 검역 대상인 모든 항공기의 도착 전에 FHQ 당국에 가능한 빨리 다음을 알려야 한다. (1) 항공기 국적, 종류, 인식표식(항공기번호), 도착 예정시간 (2) 출발역 및 통과역 (3)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 및 승객의 수
[Article 46] If a case of quarantinable disease or a suspected quarantinable disease has been found, or a person has died of any cause other than an accident on board an aircraft which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the pilot in command shall do his best to report by telegram through the airstation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f the following, before the aircraft arrives at the airport: (1) The nationality, the type and distinguishing sign	제46조 검역전염병 또는 의사검역전염병이 발견되거나 입국 검역의 대상이 된 항공기 내에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 항공기의 장은 비행장을 통해서 무선으로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FHQ 당국에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항공기 국적, 종류, 인식표식(항공기번호), 도

(the number) of the aircraft and the scheduled time of arrival; (2) The station of departure and the transit station; (3) The number of its crew members and the passengers on board the aircraft; (4) The name of disease or main symptoms, and the number of cases or deaths.	착 예정시간 (2) 출발역 및 통과역 (3)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 및 승객의 수 (4) 질병명 또는 주요 증상 및 증상과 사망 건수
[Article 47] On arrival of any aircraft which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at the airport where quarantine inspection is applied, quarantine officers shall embark the aircraft first for application of quarantine inspection.ㄹ The pilot in command or the authorized agent must deliver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 General Declaration of Health, passenger manifest, cargo manifest and other sanitary certificates. No person other than those permit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be allowed to embark or disembark the aircraft, nor are any baggage or goods allowed to be loaded or unloaded, until the quarantine officers complete the inspection. Any passenger who has passed through the inspection shall produce a quarantine certificate to the quarantine organization in a designated area, and reply to the inquires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fficer orally or in writing.ㄹ During this period of time, no person is allowed to leave the designated area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제47조 검역 조사가 이루어지는 공항에서 입국 검역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의 도착에 있어, 검역관이 먼저 검역 조사를 위하여 탑승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장 또는 허가받은 대리인은 FHQ 당국에 항공기보건상태신고서, 승객명단, 화물명단 및 기타 위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HQ 당국이 허가한 이외의 자는 검역관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승선 또는 상륙이 허가되지 아니하며, 어떤 화물 또는 물건도 선적 또는 하역되지 아니한다. 조사를 통과한 모든 승객은 지정된 장소에서 검역 당국에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FHQ 당국 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이 기간동안 누구도 FHQ 당국의 허가없이 지정된 지역을 떠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Article 48] After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completed the entry quarantine inspection to any entry aircraft, a notification shall immediately be given to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the aircraft; if sanitary measures shall be applied to the aircraft, or the aircraft is considered to be infected or suspected with quarantinable disease, a notification of sanitary treatment or restrictions shall immediately be given to the airstation and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the aircraft; within the specified time for sanitary treatment, no other people are allowed to embark or disembark the aircraft nor any baggage or goods are allowed to be loaded or unloaded.	제48조 FHQ 당국이 입국 항공기의 검역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항공기의 장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야 하며, 만약 위생 조치가 항공기에 취해져야 하거나 항공기가 검역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된다면 위생 조치 또는 제한에 대한 고지가 비행장 또는 항공기의 장에게 주어져야 한다. 위생조치를 위한 특정 기간 내에 다른 누구도 항공기에 승선 또는 착륙할 수 없으며, 화물 또는 물건이 선박 또는 하역될 수 없다.
[Article 49] When an aircraft coming from abroad is, for a certain reason forced to land at an airport or any other place where there is no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able organization, the pilot in command or other responsible person shall do his best to report to the nearest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r to the nearest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or to the airstation, or to the People's Commission. The airstation or the People's Commission, after receiving such a report, shall immediately transmit it to the nearest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r the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제49조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항공기가 특정 이유로 FHQ 당국이 없는 공항 또는 기타 지역에 착륙해야할 경우, 항공기의 장 또는 기타 적합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FHQ 당국 또는 가장 가까운 지역 보건예방당국 또는 비행장이나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행장 또는 인민위원회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후에 즉시 그것을 가장 가까운 FHQ 당국 또는 지역보건예방당국에 전달해야만 한다.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r the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after receiving such a report, shall immediately proceed to the aircraft in question for applying quarantine inspection. Except for the purpose of making report to the organization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no person on board the aircraft shall leave the vicinity of the aircraft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r the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nor are baggage and goods allowed to be removed; but when the pilot in command or any other responsible person must take emergency measure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crew and the passengers, he may not be restricted by this rule.	FHQ 당국 또는 지역보건예방당국은은 그러한 보고를 받은 후에 즉시 검역 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조항내에 규정된 기관에 보고를 할 목적을 제외하고,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은 FHQ 당국 또는 지역보건예방당국의 허가 없이 항공기 부근을 떠나서는 안되며, 화물 또는 물건을 치울 수 없다. 그러나 항공기의 장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람이 승무원 및 승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응급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는 이 규칙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50] When, after applying quarantine inspectio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considers that an aircraft, which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is infected with yellow fever, the aircraft must submit to 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in these Regulations, and shall not be allowed to depart forthwith before the sanitary treatment has been completed.	제50조 검역 조사를 한 후에 FHQ 당국이 입국 검역대상이 된 항공기가 황열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항공기는 이 규칙에 규정된 위생 조치를 준수해야만 하며, 위생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떠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Article 51] Except in the case as provided for in Article 50, if any aircraft which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is unwilling to submit to the sanitary treatment provided for in these Regulations, it shall depart immediately from the airport.	제51조 제5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 검역의 대상이 된 항공기가 만약 기꺼이 이 규칙에 규정된 위생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공항을 즉시 떠나야 한다.

Such an aircraft while in quarantine shall nevertheless be permitted to take on fuel, water and stores; baggage and goods, or passengers requesting to leave the aircraft,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submit to 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in these Regulations shall also be allowed to unloaded the baggages and goods or to disembark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airstation of the above-mentioned condition whenever it occurs.	그러한 검역 하에 있는 항공기는 연료, 물 및 식량 및 화물과 물건을 실을 수 있고 이 규칙에 규정된 위생조치를 준수한 상태에서 또한 짐을 내리거나 양륙이 허가된다. FHQ 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상당국에 위에 언급된 상태를 알려야 한다
[Article 52] Before the departure of any aircraft which is subject to departure quarantine, the airstation at the airport where quarantine inspection is applied shall deliver a General Declaration, passenger manifest and goods manifest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s early as possible, and inform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he following: (1) The nationality, the type and the distinguishing sign (the number) of the aircraft, and the scheduled time of taking flight; (2) The transit station and the station of destination; (3) The number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제52조 출발 검역의 대상이되는 모든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공항의 비행장은 보건상태신고서, 승객명단 및 화물리고을 가능한 빨리 FHQ 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FHQ 당국에 다음을 알려야 한다. (1) 항공기 국적, 종류, 인식표식(항공기번호), 비행 예정시간 (2) 환승역 및 목적역 (3)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 및 승객의 수
[Article 53] After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completed the departure quarantine inspection, if any aircraft is unable to take flight on	제53조 FHQ 당국이 출발 검역 조사를 완료한 후에, 만약 항공기가 위생 조치 때문에 예정된 시간에 이륙하지못한 비행기가 있다면, 비행장에 알려

the scheduled time on account of the sanitary treatment, the airstation shall be informed.	야 한다.
[Article 54]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while applying quarantine inspection to an aircraft, may make inquires to the pilot in command (or other responsible person) about the health conditions on board. The pilot in command or other responsible person shall reply in truth to such inquires.	제54조 FHQ 당국은 비행기에 검역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비행기의 장에게 항공기 내의 보건상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비행기의 장 또는 기타 적절한 사람이 그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여야 한다.
PART VI LAND FRONTIER QUARANTINE	PART VI 육로 국경 검역
[Article 55] Before the arrival of a train bound to receive entry quarantine, the master of the station at which quarantine inspection is carried out shall notify beforehand the frontier health organization as early as possible of the following: (1) The number of the train; (2) The scheduled time of arrival; (3) The station of departure; (4) The number and the nationality of the passengers; (5) The list of train composition.	제55조 입국 검역을 받기 위한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검역조사가 이뤄지는 역장은 가능한 빨리 다음의 사항을 FHQ 당국에 알려야 한다. (1) 기차 번호 (2) 도착예정시간 (3) 출발역 (4) 승객의 수 및 국적 (5) 기차 조립 리스트
[Article 56] Before the departure of a train bound to receive departure quarantine, the master of the station at which quarantine inspection is carried shall notif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s early as possible of the following: (1) The number of the train;	제56조 출발 검역을 받기 위한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검역조사가 이뤄지는 역장은 가능한 빨리 다음의 사항을 FHQ 당국에 알려야 한다. (1) 기차 번호

(2) The scheduled time of departure; (3) The station of destination; (4) The number and the nationality of the passengers; (5) The list of train composition.	(2) 출발예정시간 (3) 목적지역 (4) 승객의 수 및 국적 (5) 기차 조립 리스트
[Article 57] Any train bound to receive entry quarantine, on arrival at the station at which quarantine inspection is carried out, the master of the train and other responsible person shall report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n the health conditions of the people in the train, either orally or in a written form; and shall reply in truth to the inquiries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fficer about the sanitary condition of the train.	제57조 입국 검역을 받기 위한 기차는 검역조사가 이뤄지는 역에 도착하는데 있어서, 기차의 장 또는 기타 적합한 사람은 FHQ 당국에 기차 내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구두 또는 서식으로 보고해야만 하며, 기차의 위생 상태에 대하여 검역관에게 질문을 성실하게 대답하여야 한다.
[Article 58] If, during the journey, a quarantiable disease is discovered or suspected, or a person dies of any cause other than an accident on board a train bound to receive entry or departure quarantine, the master of the train shall, on arrival of the train at the station for quarantine inspection, notify immediatel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f the information.	제58조 여행동안 만약 검역전염병이 발견되거나 의심 또는 입국 또는 출발 검역을 받고자하는 기차 내에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열차의 장은 검역조사가 이뤄지는 역에 기차가 도착함에 있어, FHQ 당국에 즉시 정보를 알려야 한다.
[Article 59] On arrival of a train bound to receive entry quarantine at the station for quarantine inspection, before the quarantine inspection is carried out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no person is allowed to get on or off the train except those permit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nor any baggage	제59조 검역조사 전에 검역조사를 하는 역에 입국 검역을 받고자 하는 기차가 도착할 경우, 누구도 FHQ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탑승 또는 내려서는 아니되며, 화물이나 물건을 싣거나 내려서는 아니된다.

or goods to be loaded or discharged.	
[Article 60] Whe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found any case of quarantinable disease in the train which is subject to entry or departure quarantine inspection, or the train is unable to start on the scheduled time on account of sanitary treatment, the master of the station shall be informed; if it is inconvenient for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o apply sanitary treatment to the train at the platform where it is parked, the station master shall choose within the station an appropriate place for this purpose.	제60조 FHQ 당국이 입국 또는 출발 검역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차에 검역 전염병을 발견하였거나, 기차가 위생 조치 때문에 예정 시간에 출발할 수 없을 경우, 역장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FHQ 당국이 정차된 플랫폼에서 기차가 위생조치를 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역장은 이 목적을 위해서 역 내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야만 한다.
[Article 61] Any other road vehicles or travellers entering or leaving a land frontier, subject to entry or departure quarantine, shall receive entry or departure quarantine inspection in a place designa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nd they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designated plac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제61조 입국 또는 출발 검역의 대상이 되는 국경을 떠나거나 들어오고자 하는 육상수단이나 여행자는 FHQ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입국, 출발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하며, FHQ 당국의 허가없이 지정한 장소를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다.
[Article 62] Any other road vehicles and travellers entering or leaving a land frontier, that are subject to entry quarantine, shall declare their health condition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either orally or in a writer form;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make medical examination of the persons and sanitary inspection to the baggage and other effect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infected	제62조 입국검역의 대상이 되는 국경을 떠나거나 들어오고자 하는 육상수단이나 여행자는 FHQ 당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강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FHQ 당국은 검역전염병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의학검사 및 화물 또는 소유물에 대한 위생 검사를 할 수 있다.

with quarantinable disease.	
[Article 63] Whe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found any case of yellow fever in a train or other road vehicle which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or any traveller entering the frontier on foot to be infected with yellow fever, they must submit to 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in these Regulations, and shall not be allowed to depart forthwith before the sanitary treatment has been completed.	제63조 FHQ 당국이 입국 검역 대상이 되는 기차 또는 육상수단이 황열에 감염되었음을 발견하거나, 도보로 들어오는 여행자가 황열에 감염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된 위생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생 조치가 완료되기전에 출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다.
[Article 64] Except in the case as provided in Article 63, if any train, other road vehicle or traveller entering the frontier on foot, that i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is unwilling to submit to the sanitary treatment provided for in these Regulations, it shall immediately leave the frontier of our country. Such a train or road vehicle under quarantine shall be allowed to take on fuel, water and stores; baggage and goods, or passengers requesting to leave the vehicl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submit to sanitary treatment provided for in these Regulations, shall also be allowed to be unloaded or to disembark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g organizatio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responsible person of the station and other department concerned of the above-mentioned condition whenever it occurs.	제64조 제6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 검역 대상이 되는 기차, 육상수단 및 도보여행자가 이 규칙에 규정된 위생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중국 국경을 떠나야 한다. 그러한 검역 하에 있는 기차 또는 육상수단은 연료, 물 및 식량 및 화물과 물건을 실을 수 있고 FHQ 당국은 규칙에 규정된 위생조치를 준수한 상태에서 승객이 운송수단을 떠나거나 또한 짐을 내리거나 양륙을 허가할 수 있다. FHQ 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역의 적합한 사람이나 기타 관련 당국에 위에 언급된 상태를 알려야 한다

PART VII SANITARY MEASURES	PART VII 위생 조치
[Article 65] Disinfection, disinsecting and deratting shall be so carried out by the personnel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s: (1) Not to cause injury to any person's health; (2) Not to produce any deleterious effect on the structure of a ship, an aircraft, or a road vehicle, or on its operating equipment; (3) To avoid all risk of fire; (4) To avoid any undue damage to baggage or goods.	제65조 소독, 살충, 및 구서는 다음을 준수하여 FHQ 당국의 직원이 행해야 한다. (1)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유발하지 말 것 (2) 배, 항공기 및 육상수단 또는 그 작동 설비에 해로운 효과를 끼치지 않을 것 (3) 모든 화재 위험을 피할 것 (4) 화물 또는 물건에 과도한 손해를 피할 것
[Article 66]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not repeat any sanitary measure which has been applied at a previous port, airport or railway station, unless: (1) After the departure of a ship, an aircraft or a train from the port, airport or railway station where the measures were applied, an incident of epidemiological significance has occurred in that port, airport or railway station or on board the ship, aircraft or train, and further application of any such measure is thus needed; (2)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sanitary measures so applied at a previous port, airport or railway station were not practically effective.	제66조 FHQ 당국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의 항구, 공항, 또는 기차역에서 행해진 위생 조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1) 조치가 취해진 항구, 공항 또는 기차역에서 배, 항공기 및 기차가 출발한 후, 역학으로 중요한 사건이 항구, 공항 또는 기차역에서 발생하였거나, 배, 항공기 및 기타 내에 발생하여서 그러한 조치가 더 필요한 경우 (2) FHQ 당국이 이전 항구, 공항 또는 기차역이 실제로 효과적인 위생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Article 67] When the treatment of a quarantinable	제67조 검역전염병에 대한 조치가 내륙 여행을

disease is being made for a ship or an aircraft making an inland voyage, any person, disembarking or not, who, in the opinion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ould be subjected to surveillance or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shall be submitted, without discrimination, to the regulations in part VIII concerning persons disembarking.	하는 배 또는 항공기에 취해질 때, 감시 또는 의학적 검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은 차별없이 취해질 경우 상륙하는 사람에 관한 part VIII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rticle 68] Any person subjected to surveillance shall accept the treatment at the place designa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but the person may be placed under surveillance on board a ship with permission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master requires the member(s) of the crew to be thus treated in the ship; or (2) The passenger himself, with the master's permission, requires to be thus treated in the ship and there is a surgeon with facilities for disinfection on board the ship.	제68조 감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은 FHQ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FHQ 당국의 허가에 따라 선박 내에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1) 선장이 승무원이 배 안에서 치료받도록 요구할 경우 (2) 선장의 허가 아래, 승객 본인이 배안에서 치료받도록 요구하고 배 안에 소독 장치가 있고 의사가 있을 경우
[Article 69] If symptoms indicative of a quarantinable disease appear in a person during the period of surveillance,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immediately place him in isolation; other persons under surveillance in contact with him shall be subjected to the necessary sanitary measures; their period of surveillance shall be recounted from the time the sanitary measures are completed.	제69조 검역전염병을 나타내는 증상이 감시 기간 동안 사람에게 나타날 경우에는 FHQ 당국은 즉시 그를 격리해야 한다. 감시 기간 동안 그와 접촉했던 다른 사람은 필요한 위생 조치의 대상이 되며, 그들의 감시 기간은 위생 조치가 완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Article 70]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issue to the person subjected to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a record of surveillance for that purpose, and the person shall fill in the record of surveillance; if necessary, the record of surveillance may be issued to him after he has given a written pledge for fulfilling the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related details in his travelling certificates may also be recorded and kept for reference.	제70조 FHQ 당국은 의학적 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그 목적을 위한 감시 기록을 발부해야만 하며, 그 사람은 감시 기록을 기록해야만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감시 기록은 의학적 검사의 이행을 위한 서면 서약을 제출한 후에 그에게 발부될 수 있다. 그의 여행 증명에 관한 관련 사항 또한 기록되고 참고 자료로 보관될 수 있다.
[Article 71] The person subjected to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shall, carrying the record of surveillance with him, accept the medical examination at the time and place designa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if the result of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is "healthy", he shall return the record of surveillance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when the period of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expires.	제71조 의학 검사 대상자는 그에 관한 감시 기록을 가지고, FHQ 당국이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의학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의학검사 결과가 건강이라고 나온다면 의학 검사 기간이 만료되는 때 그는 그 감시 문서를 FHQ 당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Article 72] When a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 sanitary epidemiological station and other medical institution visited by a person subjected to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it shall treat him as an emergency case and give him free medical examination, the results of which shall be noted down in the record of surveillance. If he is found to be infected by a quarantinable	제72조 FHQ 당국, 위생 역학소 및 의학검사대상이 되는 사람이 방문한 기타 의료기관은 응급케이스로 그를 치료하고 무료 의학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감시 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검역전염병 도는 의사자가 발견될 경우, 필

disease or suspected, necessary sanitary measures shall be adopted immediately; the record of surveillance shall be taken back from him and kept for reference; the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and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which has issued the record of surveillance shall be informed of this situation.	요한 위생 조치가 즉각 취해져야 한다. 감시 기록을 돌려 받아 참고자료로 보유하도록 하고, 지역보건예방당국 및 감시 기록을 발부한 FHQ 당국에 그 상태를 알려야 한다.
[Article 73]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by the most rapid means notify its counterpart at the place where the person being subjected to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is to make a stop, or the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of the person's name, sex, nationality, the title and number of the person's travelling certificate, address, the place where the person comes from, the cause of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and when the period begins and expires.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or the local health and preventive administration and medical institution being notified of the above-mentioned information, shall promptly inquire into the health state of the person subjected to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or take necessary measures.	제73조 FHQ 당국은 가장 빠른 수단으로 의학검사 대상이 된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 있는 상대당국, 지역보건예방당국에 그 사람의 이름, 성별, 국적, 여행증명명목 및 번호, 주소, 온 곳, 의학검사 원인 및 기간이 시작 및 만료되는 때를 알려야 한다. 위에 언급된 정보를 받은 FHQ 당국 또는 지역보건예방당국 및 의료기관은 즉시 의학 검사 대상이 된 자에게 건강 상태를 질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rticle 74] Mail, newspapers, books, and other printed matter shall not be subject to any sanitary measure.	제74조 우편, 신문, 책, 기타 인쇄물은 여타 위생 조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ostal parcels shall be subject to sanitary measures if they contain: (1) Matters which, according to paragraph (2) in Article 16 of these Regulations, should be disinfected and or (2) Fish, shellfish, fruit, vegetables or beverages transported from a cholera-endemic area and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considers it necessary to subject them to disinfection; or (3) Any other matter which, according to a provisional rule by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ould be subject to sanitary measures.	우편 소포는 다음의 경우 위생 조치의 대상이 된다. (1) 이 규칙 제16조에 제2 단락에 따라 소독되어야 하는 물건 (2) 콜레라유행지역에서 수송된 생선, 조개, 과일, 채소 또는 음료와 FHQ 당국이 소독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것 (3) 인민공화국의 공중보건당국이 임시규칙에 따라 위생 조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기타 물건
[Article 75] The master of any ship for international voyages shall, at an interval of six months, apply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for regular inspection of the ship so as to see that the ship is free from rats;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apply to the ship a deratting or exempt it from such a treat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nspection; and it shall issue to the ship a Deratting Certificate or a 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 respectively, which shall be valid for a period of six months reckoned from the date of issue.	제75조 국제 항해를 위한 배의 선장은 6개월마다 FHQ 당국에 그 배가 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인 선박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FHQ 당국은 배에게 구서를 명하거나, 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러한 조치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배에 쥐잡이 증명서 또는 쥐잡이면제 증명서를 각각 발부할 수 있으며, 발부일로부터 6개월 간 유효하다.
[Article 76] To a ship making voyages between coastal ports, or on a boundary river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apply inspection as to see or inquire about whether it is free from rats; it shall supervise and direct the ship	제76조 연안 항구 사이 또는 경계 강에서 항해하는 배들에게 FHQ 당국은 쥐가 있는지 보거나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다. 쥐를 박멸 또는 예방하기 위해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다.

administration to carry out the prevention or eradication of rats.	
[Article 77] Whe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considers it necessary to apply to a deratting to a ship for international voyages by means of fumigation, if the Deratting Certificate or the 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 of the ship is still valid,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notify the master of the reasons for such treatment, except that the ship is infected or suspected with plague.	제77조 FHQ 당국이 국제선에 훈증을 이용한 구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쥐잡이 증명서 또는 쥐잡이 면제증명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FHQ 당국은 선장에게 그 배가 페스트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심이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Article 78] The inspection or the deratting of a ship shall be carried out when the holds are as empty as possible. If, for some reasons, the inspection or the deratting by means of fumigation cannot be carried out at the designated time, and the ship is proceeding to a port where measures of such kind would be facilitated,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permit the existing Deratting Certificate or 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 to be valid for a month longer and make a note to that effect on the existing certificate.	제78조 조사 및 구서는 소유물이 충분히 비었을 때 수행되어야 하며, 만약 몇가지 이유로 훈증을 이용한 조사 또는 구서가 지정된 시간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배는 그러한 종류의 처치가 용이한 항구로 이동되어야 한다. FHQ 당국은 1개월 동안 유효한 쥐잡이 증명서 또는 쥐잡이면제증명서를 발부하고 그 증명서에 그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
[Article 79]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issue a 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 if it is satisfied that the number of rodents on board is negligible after an inspection has been carried out on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holds are empty; or	제79조 FHQ 당국은 만약 다음의 조건에 따라 조사를 한 후에 선박 내의 설치류의 수가 대수롭지 않아서 만족할 경우 쥐잡이면제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1) 짐칸이 비었을 경우

(2) The holds contain only ballast or other material, unattractive to rodents, of such a nature or so disposed as to make a thorough inspection possible. A 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 may be issued for an oil-tanker with full holds.	(2) 짐칸에 오직 설치류에게 적당하지 않은 ballast 또는 기타 물질만이 있거나 가능한 철저한 검사를 하여 처리되었을 경우 쥐잡이면제증명서는 가득 찬 유조선에도 발부될 수 있다.
[Article 80]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hold the master of a ship anchoring at a port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following measures: (1) Effective rat proofing boards or other such facilities shall be used on the ropes; (2) If not necessary, ladders and gangboards shall not be set up; if they must be set up at night, lamps with high intensity shall be used. (3) If dead rats are discovered or rodents are caught on board, they shall be referred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for examination.	제80조 FHQ 당국은 선장에게 다음의 조치가 취할 능력이 있는 항구에 정박하도록 할 수 있다. (1) 효과적인 쥐 방지 갑판이나 기타 그러한 시설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2)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사다리 및 트랩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밤에 설치되어야 한다면 매우 강력한 램프가 사용되어야 한다. (3) 만약 죽은 쥐가 발견되거나 설치류가 선내에서 잡혔을 경우, FHQ 당국의 검사를 위해 알려야 한다.
[Article 81] For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the valid immunization periods of vaccination are as follows: (1) Cholera: six months reckoned from the sixth day after vaccination; or six months reckoned from the date of revaccination made within six months of the previous vaccination; (2) Yellow fever: ten years reckoned from the tenth day after vaccination; or ten years reckoned from the date of revaccination made within ten years of	제81조 이 규칙의 목적을 위, 예방접종의 유효한 면역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콜레라 : 예방접종 6일 후부터 6달 또는 이전 예방접종으로부터 6달 이내에 재예방접종한 날로부터 6달 (2) 황열 : 예방접종 10일 후로부터 10년 또는 이전 예방접종 10년 이내에 재예방접종한 날로부터 10년

the previous vaccination;	
(3) Smallpox: three years reckoned from the eighth day after the first successful vaccination; or three years reckoned from the date of revaccination.	(3)천연두 : 첫 번째 성공적인 예방접종 8일 후부터 3년 또는 재예방접종날로부터 3년
[Article 82]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f necessary, may establish a rule requiring any person from a foreign country or a foreign area, on entering the territory, to produce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cholera or one against smallpox, or both at the same time.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subject any person unable to produce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cholera to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or surveillance,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five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his last exposure to an infected environment.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vaccinate a person unable to produce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smallpox unless he is sufficiently protected by a previous attack of smallpox and has visible scars;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may be applied to a person who refuses to be vaccinated, for a period of fourteen days reckoned from the date (if he enters the territory on board a ship, an aircraft or a train) of his departure from the last port, airport or railway station, or from the date (if he enters the territory	제82조 공중보건당국은 필요한 경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FHQ 당국에 유효한 콜레라 및 천연두 또는 둘 다에 관한 유효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FHQ 당국은 유효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오염환경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기간동안 의학적 검사 또는 감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FHQ 당국은 그가 만약 충분히 이전의 천연두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니거나, 눈에 보이는 상처를 가지지 않는 한, 유효한 천연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시킬 수 있다. 마지막 항구, 공항 또는 철도역에서 출발한 날(그가 배, 항공기 또는 기차로 들어왔을 경우)로부터 또는 출발일로부터(그가 육로로 들어왔을 경우) 14일 동안 예방접종을 거부한다면 의학적 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by land) or arrival.	
PART VIII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EACH OF THE QUARANTINABLE DISEASES	PART VIII 각 검역질병에 관한 특별 규정
CHAPTER I PLAGUE	제1장 페스트
[Article 83] A ship or an aircraft on arrival shall be regarded as infected if: (1) It has a case of human plague on board; or (2) A plague-infected rodent is found on board; or (3) A case of human plague has occurred on board six days after embarkation.	제83조 도착한 선박 또는 항공기는 다음의 경우 감염된 것으로 간주된다. (1) 선내에 인간 페스트 케이스가 있는 경우 (2) 페스트에 감염된 설치류가 발견된 경우 (3) 인간페스트 케이스가 승선 후 6일에 선내에 발생하였던 경우
[Article 84] A ship on arrival shall be regarded as suspected if: (1) It has no case of human plague on board, but such a case has occurred on board within the first six days after embarkation; or (2) There is evidence of an abnormal mortality among rodents on board, of which the cause is not yet known.	제84조 도착한 선박은 다음의 경우 의사 감염으로 간주된다. (1) 선내에 인간 페스트 케이스는 없으나, 승선 후 첫 6일이내에 선내에 그러한 케이스가 발생한 경우 (2) 아직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선내에 설치류의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Article 85] On arrival of an infected ship or aircraft, the following sanitary measures shall be applied: (1) Isolation of any infected person; (2) Disinsecting of any suspect and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six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제85조 오염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도착한 경우, 다음의 위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 감염된 사람의 격리 (2) 출발일로부터 6일 이하의 기간동안 의심자에 대한 소독 및 의학적 검사; 같은 기간 동안의 상륙한 의사자에 대한 감시, 이 기간동안 의무 완수

surveillance for a like period may be applied to any suspect disembarking; during this period, no member of crew on board the ship, except that it is for his duty and is permit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be allowed to disembark;	및 FHQ 당국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내의 승무원은 누구도 상륙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3) Disinsecting and, if necessary, disinfection of any baggage, any used article of the infected person or suspect and any other article which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reason to believe to be contaminated;	(3) 살충 및 필요한 경우 화물, 감염자 및 의사자가 사용한 물건, FHQ 당국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기타 물건에 대한 소독
(4) Disinsecting and, if necessary, disinfection of any part of the ship or aircraft having been occupied by an infected person and any part which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reason to suspect to be contaminated;	(4) 살충 및 필요한 경우 감염자가 사용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분에 대한 소독, FHQ 당국이 오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기타 부분에 대한 소독
(5) If there are infected rodents on board a ship or an aircraft, it shall be deratted; if there are rodents on board a ship, it shall also be deratted whe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deems it necessary; the above-mentioned deratting may be carried out, if necessary, in quarantine.é Before the holds are emptied for a complete deratting, one or more preliminary derattings of a ship with the cargo in situ, or during its unloading, shall be carried out.é If a complete deratting cannot be secured because only part of the cargo is due to be unloaded, this part of cargo shall be unloaded on condition that proper measures are taken to prevent the escape of rodents, or the ship is placed in quarantine.	(5)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 감염된 설치류가 있을 경우, 구서되어야 함. 배 안에 설치류가 있을 경우에도 FHQ 당국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구서해야한다. 위에 언급된 구서는 필요한 경우 검역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 화물칸이 구서를 완료하기 위해서 비워지기 전에, 화물을 포함하여 한번 이상의 예비 구서가 화물이 내려지는 동안 이뤄져야 한다. 만약 완벽한 구서가 화물의 단지 일부가 내려져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화물의 일부는 설치류의 도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상태 또는 그 배가 격리된 상태에서에서 내려야 한다.
(6) The unloading of the ship shall be carried out under observation of the frontier health and	(6) 배에서 짐을 내리는 작업은 FHQ 당국의 관찰 하에 이뤄져야 하며, 짐을 내리는 스태프들이 감염

quarantine organization and precautions shall be taken to prevent the unloading staff from being infected.é If necessary,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or surveillance,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six days reckoned from the date the unloading ended, may be applied to the unloading staff members.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하역이 끝난 날로부터 6일 이하의 기간동안 의학적 검사 또는 감시가 하역 스태프들에게 이뤄질 수 있다.
[Article 86] A suspected ship shall be subject to the 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from paragraph (2) to (6) inclusive in Article 85 of these Regulations.	제86조 의심되는 배는 이 규칙 제85조에 포함된 (2)에서 (6)항에 규정된 위생 조치 대상이 된다.
[Article 87] To a healthy ship or aircraft, but one which has come from a plague-infected local area, i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considers it necessary, the following sanitary measures may be applied: (1) Placing under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or under surveillance of any suspect who embarks,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six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ship or aircraft left the infected local area.é During this period, no member of the crew on board the ship, except that it is for his duty and is permit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be allowed to disembark; (2) Deratting of the ship or aircraft in exception cases.	제87조 페스트오염지역으로부터 왔으나, 보건상태가 좋은 선박 또는 항공기는 만약 FHQ 당국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다음의 위생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염지역을 떠난 날로부터 6일 이하의 기간 동안, 탑승한 의심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감시 이 기간 동안, 의무 또는 FHQ 당국의 허가없이선박 내의 승무원은 누구도 착륙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구서
[Article 88] If on arrival of a train or a road	제88조 기차 또는 육로 운송수단의 도착에 인간

vehicle a case of human plague is discovered, the following sanitary measures shall be applied: (1)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3), (4), and (6) in Article 85 of these Regulations; (2) Disinsecting of any suspect and placing him under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or surveillance,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six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3) If necessary, deratting of the train or road vehicle.	페스트가 발견될 경우, 다음의 위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 이 규칙 제85조 제1항, 3항, 4항 및 6항에 규정된 조치 (2) 감염자에 대한 소독 및 도착일로부터 6일 이하의 기간동안 의학적 검사 또는 감시 (3) 필요한 경우 기차 및 육상수단의 구서
CHAPTER II CHOLERA	제2장 콜레라
[Article 89] A ship shall be regarded as infected if, on arrival, it has a case of cholera on board during a period of five days before arrival. A Ship shall be regarded as suspected if a case of cholera has occurred on board during the voyage, but a fresh case has not occurred during a period of five days before arrival.	제89조 도착 전 5일동안 선내에 콜레라가 있는 경우, 선박이 감염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박은 여행기간 동안 선내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새로운 발병이 도착 전 5일 동안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의사 감염으로 간주된다.
[Article 90] An aircraft shall be regarded as infected if, on arrival, it has a case of cholera on board. An aircraft shall be regarded as suspected if a case of cholera has occurred on board during the voyage but the case has disembarked before arrival of the aircraft.	제90조 항공기는 도착에 있어 기내에 콜레라가 있는 경우, 감염된 것으로 간주된다. 항공기는 여행기간 동안 기내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환자가 항공기 도착 전에 상륙하지 않았을 경우, 의사 감염으로 간주된다.
[Article 91] On arrival of an infected ship or aircraft, the following sanitary measures shall be	제91조 감염된 선박 또는 항공기는 도착에 따라 다음의 위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applied: (1) Isolation of an infected person; (2) Surveillance of any passenger or member of the communication personnel who disembarks,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five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disembarkation;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for a like period to those who produce valid certificates of vaccination against cholera.é During a period of five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no member of the crew on board the ship, except that it is for his duty and is permit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be allowed to disembark; (3) Disinfection of any baggage, any other used article of an infected person or a suspect, and any article or food, which is consider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o be contaminated; (4) Disinfection of any part of the ship or aircraft having been occupied by an infected person and any part which is consider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o be contaminated; (5) Removal, after disinfection, of contaminated drinking water or any drinking water suspec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o be contaminated; sanitary drinking water shall not be replaced until the containers are disinfected; (6) Human excreta, waste water, waste, matter and bilgewater taken on in an infected area shall not be discharged or unloaded without previous disinfection; (7) The unloading of the ship shall be carried out under observation of the frontier health and	(1) 감염된 사람의 격리 (2) 상륙일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동안 상륙한 운송수단의 직원 및 승객에 대한 감시; 유효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한 자에 대한 같은 기간 동안의 의학적 검사; 도착일로부터 5일동안 의무 완수 및 FHQ 당국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내의 승무원은 누구도 상륙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3) 화물, 감염자 및 의사자가 사용한 물건, FHQ 당국이 오염되었다고 여기는 기타 물건 및 음식에 대한 소독 (4) 살충 및 필요한 경우 감염자가 사용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분에 대한 소독, FHQ 당국이 오염되었다고 여기는 기타 부분에 대한 소독 (5) 소독 후에 오염된 마시는 물 및 FHQ 당국이 오염되었다고 의심하는 마시는 물의 제거, 위생적인 마시는 물이 오염인자가 소독될때까지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6) 인간의 배설물, 오수, 쓰레기, 오염지역에서 실린 물건 및 bilgewater는 사전의 소독 없이 버려지거나 내려져서는 안된다. (7) 배에서 짐을 내리는 작업은 FHQ 당국의 관찰 하에 이뤄져야 하며, 짐을 내리는 스태프들이 감염

quarantine organization and precautions shall be taken to prevent the unloading staff from being infected.é If necessary,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or surveillance,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five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the unloading ended, may be applied to the unloading staff members.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하역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동안 의학적 검사 또는 감시가 하역 스태프들에게 이뤄질 수 있다.
[Article 92] The following sanitary measures shall be applied to a suspect ship or aircraft: (1)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ovided for from paragraphs (3) to (7) inclusive in Article 91 of these Regulations; (2)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five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shall be applied to any passenger or member of the communication personnel, who disembarks; during this period, no member of the crew on board the ship, except that it is for his duty and is permit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be allowed to disembark; surveillance,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five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leaving the infected area, may also be applied to any passenger or member of the communication personnel who, on disembarking the aircraft, is unable to produce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cholera.	제92조 다음의 위생 조치들이 의심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취해져야 한다. (1) 이 규칙 제91조에 포함된 (3)항에서 (7)항에 규정된 조치 (2) 도착일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동안 상륙한 운송수단의 직원 및 승객에 대한 의학적 검사; 같은 기간동안 의무 완수 및 FHQ 당국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내의 승무원은 누구도 상륙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오염지역을 떠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항공기의 상륙에 있어 유효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운송수단의 승무원 및 승객에게는 감시가 행해질 수 있다.
[Article 93] To a healthy ship or aircraft, but one which has come from a cholera/endemic area, i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considers	제93조 콜레라유행지역으로부터 왔으나, 보건상태가 좋은 선박 또는 항공기는 만약 FHQ 당국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다음의 위생조치가 취해질

it necessary, the following sanitary measures may be applied: (1)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s (5) and (6) in Article 91 of these Regulations; (2)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five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leaving an infected area, may be applied to any passenger or member of the communication personnel who disembarks; during this period, no member of the crew on board the ship, except that it is for his duty and is permitt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be allowed to disembark; surveillance for a like period may also be applied to any passenger or member of the communication personnel who, on disembarking, is unable to produce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cholera.	수 있다. (1) 이 규칙 제91조에 제5항과 제6항에 규정된 조치 (2)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염지역을 떠난 날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 동안,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대한 의학적 검사; 이 기간 동안, 의무 또는 FHQ 당국의 허가 없이는 선박 내의 승무원은 누구도 착륙할 수 없다. 같은 기간 동안 항공기의 상륙에 있어 유효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운송수단의 승무원 및 승객에게는 감시가 행해질 수 있다.
[Article 94] On arrival of a train or a road vehicle, which has on board a case of cholera, the following sanitary measures shall be applied: (1)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3), (4), (5) and (7) in Article 91 of these Regulations; (2) Surveillance of any suspect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five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for a like period may be applied to any suspect who produces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cholera.	제94조 차량 내에 콜레라가 있는 기차 또는 육로 운송수단의 도착에는, 다음의 위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 이 규칙 제91조 제1항, 3항,4항,5항 및 7항에 규정된 조치 (2) 도착일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동안 의심자에 대한 감시; 같은 기간 동안 유효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의사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
[Article 95] On arrival of an infected or suspected ship or aircraft, of a train or a road vehicle on	제95조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도착이나 콜레라가 발견된 기차 또는 육

which a case of cholera has been discovered, or of a ship, an aircraft, a train, or a road vehicle coming from an infected area, disinsecting may be applied whe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deems it necessary.é Any fish, shellfish, fruit, vegetables or beverages, being carried on board the above-mentioned ship, aircraft, train, shall not be unload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unless such foods or beverages are packed in sealed containers and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ha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y are contaminated.é If such food or beverage is unloaded, arrangements, according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shall be made for its safe disposal.	상운송수단의 도착 또는 오염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선박, 항공기, 기차 및 육로운송수단의 도착에 있어, FHQ 당국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살충이 행해질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선박, 항공기, 기차 안에 운송되는 생선, 조개, 과일, 야채 및 음료는 만약 그러한 음식 및 음료가 밀봉된 용기안에 포장되지 않았거나 FHQ 당국이 그것들이 오염되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면 FHQ 당국의 허가 없이 내려져서는 아니된다. 만약 그러한 음식 또는 음료가 내려진다면, FHQ 당국에 따른 조정이 안전한 처분을 위해서 이뤄져야 한다.
CHAPTER III YELLOW FEVER	제3장 황열
[Article 96] Any person coming from an infected local area, on entering the territory, shall produce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yellow fever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place under surveillance a person who is unable to produce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yellow fever, until a period of six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his leaving the infected environment has elapsed, or until his certificate becomes valid, whichever occurs first.	제96조 오염지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유효한 황열예방접종증명서를 FHQ 당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FHQ 당국은 오염 환경을 떠난 날로부터 6일의 기간이 지날 때 또는 그의 증명서가 유효해질 때까지 유효한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에게 감시를 행할 수 있다.
[Article 97] On arrival, an aircraft coming from an	제97조 오염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비행기는 도

infected local area shall produce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 certificate demonstrating that mosquito eradication by insecticide had been carried out immediately before it took off from that area.	착에 있어 FHQ 당국에 살충제에 의한 모기 박멸 이 그 지역에서 이룩하기 바로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FHQ 당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Article 98] On arrival, a ship shall be regarded as infected if it has a case of yellow fever on board, or if a case has occurred on board during the voyage.	제98조 도착시 선내에 황열이 발생하였거나 여행 동안 선내에 그 황열이 발생하였었던 선박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된다.
A ship shall be regarded as suspected if it has left an infected local area less than six days before arrival, or, if arriving within thirty days of leaving such an area, and Aedes aegypti or other vectors of yellow fever are found on board.	도착 전 6개월 이내에 오염지역을 떠났거나, 그런 지역을 떠난지 30일 이내에 도착하고 황열병 매개 곤충이나 기타 병원체가 선내에 발견된 경우 그 선박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
[Article 99] On arrival, an aircraft shall be regarded as infected if it has a case of yellow fever on board. An aircraft shall be regarded as suspected if, on arrival, it is unable to produce a certificate of disinsecting specified in Article 97, or, i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is not satisfied with the certificate and finds live mosquitoes on board.	제99조 도착에 있어 항공기가 선내에 황열병 케이스가 있다면 감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항공기가 도착에 있어 제97조에 규정된 살충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FHQ 당국이 그 증명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내에 살아있는 모기를 발견할 경우 항공기가 의사감염으로 간주된다.
[Article 100] The following sanitary measures shall be applied to an infected ship or aircraft: (1) Isolation of any infected person; (2)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96 of these Regulations shall be applied to any passenger or	제100조 다음의 위생 조치가 감염된 선박 및 항공기에 취해져야 한다. (1) 감염된 사람의 격리 (2) 이 규칙 제96조에 규정된 조치가 유효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운송수단의

member of the communication personnel who, on disembarking, is unable to produce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yellow fever, (3) Complete extermination of any <i>Aedes aegypti</i> and other vectors of yellow fever on board; the ship shall, until it has been disinfected, be required to keep at least four hundred meters from land and other ships; (4) The unloading of the ship shall be carried out after it is disinfected; if the ship is unloaded before it is disinfected, the unloading shall be carried out under observation o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nd precautions shall be taken to prevent the unloading staff from being infected; if necessary, surveillance for a period of six days, reckoned from the date the unloading ended, may be applied to the unloading staff members.	직원 및 승객에게 취해져야 한다. (3) 선내에 황열매개곤충 및 기타 병원체에 대한 철저한 박멸; 살충이 완료될 때까지 선박은 육지 및 기타 다른 선박과 최소 400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배에서 짐을 내리는 작업은 FHQ 당국의 관찰 하에 살충이 끝난 후에 이뤄져야 하며, 짐을 내리는 스태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하역이 끝난 날로부터 6일동안의 감시가 하역 스태프들에게 이뤄질 수 있다.
[Article 101] A suspected ship or aircraft shall be subject to the 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from paragraph (2) to (4) inclusive in Article 100 of these Regulations.	제101조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이 규칙 제100조에 포함된 제2항에서 4항에 규정된 위생 조치 대상이 된다.
[Article 102] If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considers it necessary, the 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in Article 100 of these Regulations, may be applied to a healthy ship or aircraft, but which has come from a yellow-fever-endemic area.	제102조 FHQ 당국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이 규칙 제100조 제3항에 규정된 위생 조치가 황열 유행지역에서 들어왔으나 보건상태가 양호한 선박 및 항공기에 취해질 수 있다.
[Article 103] On arrival of a train on which a case	제103조 황열이 발견되거나 황열감염지역으로부터

of yellow fever has been discovered, or which has come from a yellow-fever-infected local area, the 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4) in Article 100 of these Regulations shall be applied; thorough mosquito extermination shall be carried out throughout the train and the 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96 shall be applied to any passenger or member of the communication personnel who is unable to produce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yellow fever.	터 오는 기차가 도착할 경우, 이규칙 제10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위생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기차 내에 철저한 모기 박멸이 이뤄져야 하며, 제96조에 규정된 위생 조치가 유효한 황열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승객 및 승무원에게 취해질 수 있다.
CHAPTER IV SMALLPOX	제4장 천연두
[Article 104] A person coming from an smallpox-infected area, who has left the infected local area less than fourteen days before his entering the territory, shall on arrival produce to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a valid certificate of vaccination against smallpox, except that he is sufficiently protected by a previous attack of that disease and has visible scars.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apply vaccination to any person who is unable to produce such a certificate, or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or vaccination followed by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surveillance may be applied to those who refuse to be vaccinated; the period of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or surveillance shall not be more than fourteen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his departure from the infected local area.	제104조 국내로 들어오기 전 14일 이내에 천연두 오염지역을 떠난, 천연두오염지역에서 오는 자는 도착에 있어 그 질병으로 인한 이전의 공격에 충분히 보호받았고 눈에 보이는 흉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천연두 예방접종증명서를 FHQ 당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FHQ 당국은 그러한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거나, 의학적 검사 또는 의학적 검사에 뒤따르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거부한 자에게는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 의학적 검사 또는 감시 기간은 오염지역으로부터 그가 출발한 날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Article 105] A ship or an aircraft shall be regarded as infected if, on arrival, it has a case of smallpox on board, or if such a case has occurred on board during the voyage.	제105조 도착에 있어 선내에 천연두가 발생하거나, 여행 기간동안 선내에 천연두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된다.
[Article 106] The following sanitary measures shall be applied to an infected ship or aircraft: (1) Isolation of any infected person; (2) To offer preventive vaccination to any passenger or member of the communication personnel who is not sufficiently protected against smallpox, and apply vaccination to those who are willing to accept it; (3) Surveillance and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for any passenger or member of the communication personnel who disembarks; in determining the period of surveillance or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take into account the previous vaccinations of the individual and possibility of his having been exposed to infection; but the period shall not be more than fourteen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4) Disinfection of any baggage, any other used article of an infected person or suspect, and any article which is consider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o be contaminated; (5) Disinfection of any part of the ship or aircraft having been occupied by an infected person and any part which is consider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o be contaminated.	제106조 오염된 선박 또는 항공기는 다음의 위생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 감염된 사람의 격리 (2) 천연두에 충분한 면역이 없는 운송수단의 직원 및 승객에 대한 예방접종 제공 및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예방접종; (3) 감시 또는 의학적 검사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상륙하는 운송수단의 직원 및 승객에 대한 감시 및 의학적 검사 FHQ 당국은 감염에 노출된 개인의 이전 접종 및 발병가능성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도착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감염자 또는 의사자가 사용한 화물 및 기타 물건과 FHQ 당국이 오염되었다고 여기는 기타 물건에 대한 소독 (5) 감염의사자가 사용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부분 및 FHQ 당국이 오염되었다고 여기는 기타 부분에 대한 소독
[Article 107] On arrival of a train or a road vehicle having on board a case of smallpox, the	제107조 차량내에 천연두가 발생한 기차 및 육상수단의 도착에 있어서 이 규칙 제106조 제1항,2

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2), (4) and (5) in Article 106 of these Regulation shall be applied; surveillance and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may be applied to any passenger or member of the communication personnel; in determining the period of surveillance or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may take into account the previous vaccination of the individual and possibility of his having been exposed to infection; but the period shall not be more than fourteen days,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항, 4항 및 5항에 규정된 위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감시 및 의학적 검사가 승객 및 승무원에게 취해질 수 있다 감시 또는 의학적 검사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FHQ 당국은 감염에 노출된 개인의 이전 접종 및 발병가능성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도착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CHAPTER V TYPHUS AND RELAPSING FEVER	제5장 발진티푸스 및 회귀열
[Article 108] On arrival of a ship, an aircraft, or a train, which has on board a case of typhus or relapsing fever, the following sanitary measures shall be applied: (1) Isolation of the infected person; (2) Disinsecting of any suspect, medical examination on the spot may be applied to any suspect,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e incubation period of the respective infectious disease,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3) Disinsecting, and if necessary, disinfection of the clothes, baggages of an infected person or a suspect, and any other article likely to spread typhus or relapsing fever; (4) Disinsecting, if necessary, disinfection of any part of the ship, the aircraft, or of the train, having been occupied by an infected person and any part which is considered by the 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organization to be contaminated.	제108조 선 내에 발진티푸스 및 회귀열이 발생한 선박, 항공기 또는 기차에 도착에 있어서 다음의 위생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1) 감염된 사람의 격리 (2) 의심자에 대한 소독 및 의학적 검사가 도착일로부터 각 전염병의 잠병기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의사자에게 취해질 수 있다. (3) 살충, 필요한 경우 감염자 또는 의사자의 의복 및 화물과 발진티푸스 또는 회귀열이 전파될 수 있는 기타 물건에 대한 소독 (4) 살충 필요한 경우 감염자가 사용한 선박, 항공기 또는 기차의 일부분 및 FHQ 당국이 오염되었다고 여기는 기타 부분에 대한 소독

부록5. 중국 국제선박 행정검역조치

Administrative Measures for Entry and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on Ships of International Sail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장 일반 규정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entry and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on ships of international sails to facilitate their entry in and exit from the por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se Measures are form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u>Frontier Health and Quarantin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u> and its rules for implementation, <u>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Entry and Exit Animal and Plant Quarantine</u> and its regulations for implementation, <u>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Import and Export Commodity Inspection</u> and its regulations for implementation, and <u>the Procedures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Ships Entering and Exiting Por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u>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항구에 대한 입출국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의 입출국 조사 및 검역 행정업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지침은 중국의 국경보건및검역법을 및 그 법의 시행규칙, 중국의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시행규칙, 중국 수출입 물건 조사 법률 및 그 시행규칙, 중국 항구에 입출항하는 국제 항해선박에 관한 절차에 따라 공식화된 것이다.
Article 2 Ships of international sai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hips) mentioned in the Measures are referred to the ships of foreign origin which enter and exit frontier por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hips of Chinese origin which sail international navigation routes.	제2조 지침에 언급되는 국제 항해선박(추후 선박으로 표기)은 중국의 국경 항구로 입출항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 및 외국을 항해하는 중국국적 선박을 의미한다.
Article 3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QSIQ) shall be in charge of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ships entering and	제3조 검역당국(이하 AQSIQ)는 중국의 국경항구(이하 항구로 표기)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조차 및 검역에 책임이 있다.

exiting frontier por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rts). The local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set up by AQSIQ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nd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ships entering and exiting the ports in regions under their jurisdiction.	AQSIQ가 세운 지역 입-출국 조사 및 검역당국(이하에서는 조사및검역소)는 관할권 내에 있는 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조사 및 검역, 감독 및 관리에 책임이 있다.
Article 4 Inspection and quarantine on ships of international sails entering and exiting the ports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of the Measures.	제4조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국제항해선박의 조사 및 검역은 지침에 규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Chapter II Entry Inspection and Quarantine	제2장 입국 조사 및 검역
Article 5 Ships entering the country shall be subject to quarantine inspection and going through formalities of entry inspection and quarantine at designated places at the first port of their arrival.	제5조 중국에 들어오는 선박은 검역 조사 대상이 되며 그들이 처음 도착하는 항구에 지정된 장소에서 입국 조사 및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Article 6 The owner or the agent of a ship should declare to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concerned and fill in the declaration form of entry quarantine 24 hours before its arrival at the port (before exiting the previous port if the voyage takes less than 24 hours). If any changes happen to the ship movement or to the declared contents, the owner or the agent of the ship should promptly make correction to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concerned.	제6조 선주 또는 선박의 대리인은 관련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항구 도착 전 24시간에 입국 신고를 이행해야한다.(만약 여행이 24시간 이내라면 이전 항구에서 나오기 전) 만약 배의 이동 및 신고내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선주 또는 대리인은 즉시 관련 검역당국에 정정을 해야 한다.

Article 7 For ship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inspection, in the course of navigation, if a quarantinable epidemic disease, a disease suspected to be quarantinable, or a death due to an unidentified cause other than accidental harm is discovered, the owner of the ships must make an immediate report to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of the entry port.	제7조 입국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경우, 항해 중 만약 검역질병, 검역이 되야할 것으로 의심되는 질병 또는 사고 이외의 확인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이 발견될 경우, 선주 또는 대리인은 즉시 입국 항구에 검역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8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concerned shall carry out examination to the declared contents in order to decide on the way of quarantine as follows, and shall inform the owner or the agent of the ships promptly: (1) anchorage quarantine; (2) telecommunications quarantine; (3) berthing quarantine; (4) accompanying quarantine.	제8조 관련 검역당국은 다음의 검역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고된 내용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즉시 선주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승선 검역 (2) 전자검역 (3) 계류 검역 (4) 수반 검역
Article 9 Anchorage quarantine shall be implemented by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on ships with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1) Having come from areas where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is epidemic; (2) Having come from animal and plant epidemic areas that are specifically required by the state; (3) carrying people who have or are suspected to have contracted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or bodies of those who have died due to an unidentified cause other than accidental harm; (4) carrying cargoes of live animals; (5) discovering unusual deaths of rodents; (6) being old and disused ships; (7) not having a valid Deratting/Exemption from Deratting Certificate;	제9조 정박검역은 다음의 조건의 경우, 배위에서 검역당국이 실행한다. (1) 검역전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으로부터 온 경우 (2) 국가가 특별히 요구하는 동식물 전염병지역에서 온 경우 (3) 검역전염병 또는 사고이외의 확인되지 않은 원인으로 죽은 자의 사체에 접촉하거나 의심되는 자를 실은 경우 (4) 살아있는 동물 화물을 실은 경우 (5) 특이한 설치류의 죽음이 발견된 경우 (6) 오래되고 폐기된 배인 경우 (7) 유효한 쥐잡이/면제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8) applying for anchorage quarantine inspection by the ship; (9) operational need of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8) 그 배가 선박 검역 조사를 신청한 경우 (9) 검역당국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Article 10 For ships with a valid Conveyance Sanitation Certificate issued by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of the state, and without any of the conditions as mentioned in Article 9, telecommunications quarantine shall be implemented by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upon application of ships or their agents. With the permission for telecommunications quarantine granted by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ips shall assume the implementation of telecommunications quarantine. Ships or their agents shall go through the entry inspection and quarantine formalities 24 hours prior to their arrival.	제10조 검역당국이 발부한 유효한 선박위생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제9조에 언급된 상황이 아닌 선박은 선박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검역당국이 전자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당국이 수여한 전자검역 허가증을 받은 선박은 전자 검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선박 또는 그 대리인은 도착전 24간에 입국검역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Article 11 For ships without a valid Conveyance Sanitation Certificate, and without any of the conditions as mentioned in Article 9, or not possible to implement anchorage quarantine due to weather and tidal reasons, berthing quarantine shall be implemented by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upon application of ships or their agents.	제11조 유효한 선박 위생증명서가 없고 제9조에 언급된 상황이 없는 선박 또는 날씨 또는 조류를 원인으로하여 승선 검역을 할 수 없는 선박은 선박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으로 검역당국이 임시 검역을 한다.
Article 12 For special ships like cruise ships, military vessels, ships carrying very important persons for visit purposes, as well as those ships und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ith patient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on board, with urgent needs to load and unload special supplies, requiring emergency repairs, etc., accompanying quarantine	제12조 크루즈, 군용선박, 방문목적의 VIP를 모신 선박, 선내에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거나 특별한 물건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또는 긴급한 수리 등이 필요한 것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동반 검역이 선박 또는 대리인의 신청으로 행해진다.

shall be implemented upon application of ships or their agents.	
Article 13 Ships subject to entry quarantine shall hoist quarantine signals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Quarantine signals shall not be removed before the issue of entry quarantine certificate or notification of completion of quarantine inspection by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No persons other than navigation pilots and those authorized by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all be allowed to get on board the ships; no loading and unloading of goods, luggage, postal parcels, etc., shall be allowed; no other ships shall be allowed to get close; no persons on board shall be allowed to leave the ship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unless the ship is in distress. The navigation pilot shall not guide the ship away from the quarantine anchorag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before the quarantine inspection is completed.	제13조 입국 검역 대상이 되는 선박은 요구에 따라 검역 신호를 달아야 한다. 검역 신호는 입국 검역 증명서 또는 검역당국에 의한 검역조사가 완료되었음이 고지되기 전에는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항해사 또는 검역당국이 허가한 자 이외의 자는 누구도 배에 승선하거나 물건, 화물, 소포, 우편 등을 선적 및 하역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선박이 조난 당하지 않은 한, 다른 선박이 가까이 가거나 선 내에 사람이 검역 당국의 허가 없이 배를 떠나는 것도 허가되지 아니한다. 항해사는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검역당국의 허가없이 검역장소에서 배를 뺄서는 안된다.
Article 14 In going through the entry inspection and quarantine formalities, ships or their agents shall submit to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General Declaration, Cargo Declaration, Crew List, Passenger List, Ship Stores Declaration, Ballast Water Report and the cargo manifest. Information such as Deratting/Exemption for Deratting Certificate,	제14조 입국검역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선박 또는 대리인은 검역당국에 선박보건상태신고서, 입항신고서, 화물신고서, 승무원명부, 승객명단, 선박용품신고서, Ballast Water 보고서 및 화물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취잡이/면제증명서, 선박위생상태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증명서 및 선박의 로고북과 같은 정보 또는 검역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될 수 있다.

Conveyance Sanitation Certificate, Vaccination Certificate, Health Certificate and Ship's Log Book shall also be submitted upon request of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officers.	
Article 15 Boarding quarantine to be implemented by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all be conducted with the company of ship officers and in accordance with rules and procedures for inspection and quarantine implementation.	제15조 검역당국이 행하는 승선검역은 선박 회사 직원과 함께 검역당국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Article 16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all issue the Ship Entry Health and Quarantine Certificate to entry ships that are determined to be without infection; shall issue the Ship Entry Health and Quarantine Certificate to ships that are determined to be infected, suspected to be infected or coming from infected areas, and subsequently are required to implement sanitary measures or subject to other restrictions, after the corresponding sanitary measures or specified sanitary work items that are required are carried out; shall issue the Conveyance Quarantine Certificate upon request of the persons-in-charge or agents of ships coming from animal and plant epidemic areas when it is determined to pass after the quarantine inspection; shall furnish ships requiring the implementation of sanitary measures with the Notice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Measures, and then issue the Conveyance Quarantine Certificate upon request of ships after the authorities are satisfied with the measures.	제16조 검역당국은 감염되지 않았다고 결정된 배를 입항하기 위하여 검역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당국은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또는 오염지역으로부터 오는 선박에게 검역증을 발부하고 차후 위생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수행해야 할 상응하는 위생 조치 또는 특정 위생 업무 후에 기타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검역당국은 동식물 전염병지역에서 오는 선박의 책임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검역조사가 통과된 경우 검역증을 발부할 수 있다. 검역당국은 위생 조치 시행을 요구하는 배에게 검역 지침 통지를 제공하고 당국이 그 조치에 만족한 후에는 선박의 요청에 따라 검역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Chapter III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제3장 출항 조사 및 검역

Article 17 Ships exiting the country shall be inspected and quarantined at the port of departure and go through the formalities for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제17조 출국하는 선박은 출발 항구에서 조사 및 검역을 받고 출항 조사 및 검역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Article 18 The owner or the agent of a ship exiting the country shall declare to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and go through the formalities for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within four hours before the ship exits the port. If any changes happen to the personnel or goods, or the ship does not exit the port within 24 hours due to other special circumstances after going through the formalities,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formalities again. If the time of stay is less than 24 hours, the owner or the agent of a ship may, with the agreement of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go through the formalities of exiting the port while going through the formalities of entering the port.	제18조 출항하는 배의 선주 또는 대리인은 검역 당국에 신고하고 배가 항구를 떠나기 전 4시간 이내에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승무원, 물건에 변화가 있거나 절차를 밟은 후 특별한 기타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항구를 떠나지 못하였을 경우,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만약 머무는 시간이 24시간 이내라면 선주 또는 대리인은 당국의 동의하에 입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출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Article 19 For ship holds used for carrying the outbound perishable foods and frozen goods shall apply for fitness inspection before loading and obtain inspection certificates. No permission shall be granted for loading and shipment until the relevant conditions are complied with. Ships carrying plants, animal and plant products and other quarantine objects out of the country shall conform to the state regulations on animal and plant epidemic prevention and quarantine and obtain Means of Transport	제19조 썩기 쉬운 음식 및 냉동 물건을 외국으로 가져가는데 사용된 화물칸의 경우 선적전에 적응도 조사를 신청해서 조사증을 얻어야 한다. 관련 조건이 준수되기 전까지 선적에 대한 허가는 주어져서는 안된다. 식물, 동물 및 식물성 물품 및 기타 검역 대상물건을 실은 선박은 동식물 전염병 예방 및 검역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수송 검역증을 얻어야 한다.

Quarantine Certificate. For those need to be carried out treatments of disinfection and disinfestation, only those undergo such treatments and obtain Means of Transport Quarantine Treatment Certificate shall be allowed for loading and shipment.	소독 및 구제 처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처치를 하고 운송수단 검역처리증명서를 얻은 경우에만 선적이 허가된다.
Article 20 When going through the formalities for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the owner or the agent of a ship shall submit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General Declaration, Cargo Declaration, Crew List, Passenger List and cargo manifest (provision of such information is exempt if they are submitted during entry and there is no change) to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Relevant inspection and quarantine certificates shall be submitted under circumstances set out in Article 19.	제20조 출항 검역 절차를 이행할 때, 선주 또는 대리인은 선박보건상태신고서, 입항신고서, 화물신고서, 승무원명단, 승객명단, 화물선적명단(그 것들이 입항하는 동안 제출되었고, 변화가 없다면 그러한 정보에 대한 규정이 면제된다)을 검역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검역증은 제19조에 규정된 조건 하에 발부되어야 한다.
Article 21 For approved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information submitted by a shipowner or board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stipulations,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all issue Conveyance Exiting Health and Quarantine Certificate and endorse the ship exiting formalities contact list.	제21조 선주가 제출한 승인된 출항 검역 정보 또는 관련 조항에 따른 선박 검역을 위해서 선주검역당국은 선박 출항 검역증을 발부하고 선박 출항 절차 접촉 리스트를 배서하여야 한다.
Chapter IV Quarantine Treatment	제4장 검역조치
Article 22 Ships found to be in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shall implement sanitary measures: (1) having come from an area where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is epidemic; (2) being contaminated by a quarantinable infectious	제22조 다음 상태에 있는 선박은 위생 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검역전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온 경우 (2) 검역전염병 또는 감시 대상인 전염병에 의해

disease or infectious disease to be monitored; (3) revealing the presence of medical vectors which affect human health and exceed state health standards; (4) revealing the presence of Category I and Category II infectious animal diseases and parasitic diseases or dangerous plant diseases, insects and weeds, or ordinary diseases or insects in amounts exceeding the stipulated standards; (5) carrying bulk wastes and old items or decayed items that would be harmful to public health; (6) carrying live animals into the country and intending to carry live animals out of the country; (7) bringing dead bodies, coffins and human remains into the country; (8) being old and disused ships; (9) being other ships that AQSIQ requests to implement sanitary measures.	오염된 경우 (3) 인간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국가 보건 수위를 넘는 의학적 병원체의 존재가 드러난 경우 (4) 제1군 및 제2군 동물성 전염병과 기생충질환 또는 위험한 식물성 질환 및 곤충, 잡초나 일반 질환 또는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의 곤충의 존재가 드러난 경우 (5)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대량의 쓰레기, 고물 및 부패된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 (6) 나라 안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나라 밖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려고 할 경우 (7) 사체, 시체 및 인간의 유해를 나라안으로 가져오려고 할 경우 (8) 오래되거나 폐기된 선박 (9) AQSIQ가 위생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기타 선박
Article 23 A person on board having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shall be placed in isolation. The quarantinable epidemic suspect shall be kept for check-up detention or on-site clinical check-up not exceeding the incubation period of such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제23조 검역전염병을 가진 선내의 사람은 격리되어야 한다. 검역 의사자는 그러한 검역전염질병의 잠복기를 초과하기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위해 구류되거나 현지의 임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Article 24 Epidemic animals on board shall be returned or slaughtered and destroyed. Animals suspected of having infectious disease shall be placed in isolation. Animals and plants, their products and other quarantine objects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country shall be sealed up or destroyed.	제24조 선 상의 전염성 동물은 돌려보내지거나 도살, 폐기되어야 한다. 전염질병을 가졌다고 의심되는 동물은 격리되어야 한다.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 동물, 식물, 그들의 물건 또는 기타 검역 대상물은 봉인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Article 25 If ballast water that comes from epidemic	제25조 오염지역에서 가져거나 국가가 특별히 위

areas and specifically required by the state to implement sanitary measures needs to be discharged, corresponding sanitary measures shall be conducted before the discharge.	생조치를 해야 하는 ballast water는 폐기되거나 폐기전에 상응하는 위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Domestic refuses, swills and wastes of animal or plant nature on board shall be kept in sealed containers with covers. Necessary sanitary measures shall be conducted before moving of them.	선내의 쓰레기, 오물, 동물의 쓰레기나 식물은 뚜껑이 있는 봉인된 용기에 보관되어야 한다. 필요한 위생 조치가 옮겨지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Article 26 Companion animals on board shall be placed in isolation in designated areas by shipowner. Companion animals, ship borne animals and plants and their products that really need to be brought away from the ship shall be handl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quarantine stipulations.	제26조 선내의 애완동물은 선주가 지정한 장소에 격리되어야 한다. 애완동물, 배에서 태어난 동물 및 식물과 배에서 멀리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들의 물건은 관련 검역 규정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Chapter V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제5장 감독 및 관리
Article 27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all exercis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ver ships navigating in or staying at ports to give advice for improvement wherever sanitary conditions are unsatisfactory and factors exist that may spread infectious diseases and pests, and shall supervise and give instruction on the necessary quarantine measures to be taken.	제27조 검역당국은 항해하거나 항구에 머무르는 배에 대한 위생 상태가 불만족스럽거나 전염병 및 해충이 성행할 요인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개선안을 하도록 감독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검역 조치가 취해지도록 감독 및 지도한다.
Article 28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all accept and process applications from shipowners or their agents for relevant certificates, such as Deratting/Exemption from Deratting Certificate (or Extension Certificates), Conveyances Sanitation Certificate and so on.	제28조 검역당국은 쥐잡이/면제증명서 (또는 확장 증명서), 선박위생증명서 등과 같은 관련 증명서에 대한 선주 및 대리인의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Article 29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no ship at ports shall purposely dispose of any ballast water, garbage and waste matter, and no unit or individual shall purposely disembark from any ship with animals and plants, their products and other quarantine objects for private use on board the ship. When staying at and navigating within the country, no ship shall purposely unseal and use any product sealed up by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without permission.	제29조 검역당국의 허가없이 항구에 있는 선박은 의도적으로 ballast water, 쓰레기 오물을 버려서는 안되며, 개인은 선내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동물, 식물, 기타 물건 및 기타 검역 대상물건을 가지고 선박에서 의도적으로 상륙해서는 안된다. 국내에 머무르거나 항해하는 때, 선박은 의도적으로 봉인을 풀어서는 아니되며, 허가없이 검역당국이 봉인한 물건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Article 30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all exercis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ver animal and plant bedding materials on board the ships, and loading and unloading shall not be allow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제30조 검역당국은 선내에 동물 및 식물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하며, 하역 또는 승역은 검역당국의 허가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Article 31 Ships shall be equipped with the insecticide-spreading instruments and installations for disinfecting, treatment with insecticides and deratting and they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제31조 선박은 살충제분무기구 및 소독 및 살충 처리 및 구서를 위한 설비가 갖춰져야 하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rticle 32 Ships from the epidemic areas within the country, or when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a disease suspected to be quarantinable or a death due to an unidentified cause other than accidental harm is discovered during the navigation in the country, persons in charge of the ships must report to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of the port of arrival for provisional quarantine inspection.	제32조 국내에 오염지역으로부터 오는 선박 또는 검역전염병, 검역의사질병 또는 사고 이외의 알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국내에서 항해 중 발견될 경우, 선박의 책임자는 도착 항구의 검역당국에 임시검역조사를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33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all implement health registration administration on units engaged in supply of food and drinking water for ships and the units engaged in ship sanitary measures, collection and disposal of domestic refuses, swills, wastes of animals or plant nature on board; and shall implement registration record administration on units engaged in ship agency service and shipping supplies services. Their employees shall be trained and examin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제33조 검역당국은 배에 마시는 물 및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 및 선박 위생 조치, 선박 내 쓰레기 오물, 동식물 쓰레기를 수집 및 폐기하는 업체에 대한 보건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검역당국은 선박 대리 서비스 및 해운공급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 기록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고용인들은 검역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훈련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록6. 일본 검역법

Quarantine Act(Act No. 201 of 1951)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장 총칙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that are not native to Japan from entering the country via marine vessels or aircrafts as well as to ensure that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to prevent other infectious diseases involving vessels or aircrafts.	제1조 (목적) 이법의 목적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감염증의 병원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박 또는 항공기와 관련된 기타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The term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as used in this Act shall mean the infectious diseases listed below: (i) Class I infectious diseases prescribed i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Medical Care for Infectious Patients Act(Act No. 114 of 1998) (ii) In addition to the diseases listed in the previous item, diseases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as requiring examination (whether or not there are any disease-causing pathogens that are not native to Japan) in order to prevent such disease-causing pathogens from entering the country.	제2조 (검역감염증) 이 법에서 사용되는 검역감염증이란 아래에 열거된 감염증을 의미한다. (i)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1군 감염증 (ii) 전 호에 열거된 질병 이외에,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감염증 병원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정령에서 규정하는 질병
Article 2-2 (Application of this Act to Suspected Disease Carriers and Disease Carriers Who Have No Symptoms) (1)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a suspected disease carrier of the infectious disease listed in Item 1 of the preceding article, as such persons are deemed infectious patients. (2)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someone who is a carrier of th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listed in Item 1 of the preceding article, but has no symptoms, as such persons are deemed infectious	제2-2조 (보균의사자 및 무증상 보균자에의 적용) (1) 전 조의 제1호에 열거된 감염증 보균의사자는 감염증 환자로 간주하고, 이 법률을 적용한다. (2) 전 조의 제1호에 열거된 감염증 보균자이지만 증상이 없는 자는 전조의 제1호에 열거된 감염증환자로 간주하고 이법률을 적용한다.

patients as listed in Item 1 of the preceding article.	
Article 3(Quarantine Port, etc.) The term "quarantine port" or "quarantine airport" as used in this Act shall mean ports or airports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respectively.	제3조 (검역항 등) 이법에서 사용하는 검역항 또는 검역비행장은 각각 정령에서 규정하는 항 또는 비행장을 의미한다.
Chapter II Quarantine	제2장 검역
Article 4(Prohibition of Entry into Port etc.)The master or aircraft captain (including a person who fulfills a duty on behalf of them.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of a marine vessel or aircraft listed below (hereinafter called as "vessel from abroad" or "aircraft from abroad" respectively) shall not put such a vessel into port in Japan (into Honshu, Hokkaido, Shikoku,Kyushu, or their neighboring islands, as specified by an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nor shall such aircraft land on the ground or on the enter waters, including waters in the ports, in Japan except quarantine airports, before a quarantine certificate or a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including notices listed in Article 17-2.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except Article 9) is delivered;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the master of a marine vessel from abroad puts the vessel into a quarantine area specified in Article 8-1 or any area specified by Article 8-3 in order to go through quarantine, or puts the vessel into port (except the quarantine area specified by Article 8-1 or any area specified by Article 8-3) in order to allow a person prescribed in Item 1 of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article to come ashore or unload cargo pursuant to the instructions in Article 13-2,	제4조 (입항 등의 금지) 아래에 열거된 항공기 또는 선박(이하 각각 외항선 또는 외항기)의 장(장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은 검역증 또는 임시 검역증(제17-2조에 열거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동일하다)을 교부받기 전에는, 해당 선박을 일본(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 및 후생노동부령에서 규정하는 이에 부속된 섬의 구역 내)의 항에 수용하거나, 해당 항공기를 검역 비행장 이외의 국내의 장소(항의 수면을 포함한다)에 착륙 또는 착수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외항선의 장이 검역을 받기 위해서 제8-3조에 규정된 지역 또는 제8-1조에 규정된 검역 구역에 선박을 수용하거나 다음 조항의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상륙 또는 제13-2조의 지시에 따른 화물의 육양을 위해서 해당 선박을 항구(제8-1조에 규정된 검역 구역 또는 제8-3조에 규정에 규정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선박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r the aircraft captain of the aircraft from abroad lands an aircraft land or a marine vessel enters waters with the permission of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including a chief of quarantine station's branch office or field office.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 Marine vessels or aircraft that arrive in Japan after departure from any foreign port or after visiting any foreign port. (ii) Marine vessels or aircraft that have picked someone up or loaded any items from other marine vessels or aircrafts that have come from foreign ports or have visited any foreign ports (except vessels or aircrafts to which quarantine certificates or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s have been delivered) .	또는 검역소장(검역 지소 또는 출장소의 장 포함. 이하 동일)의 허가로 외항기 또는 선박의 장이 착륙 또는 착수하는 것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i) 외국항에서 출발하거나 외국항을 방문한 후 일본에 도착한 선박 또는 항공기 (ii) 외국항을 들렀거나, 외국항에서 온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사람을 갈아타게 하였거나 물건을 운반했었던 선박 또는 항공기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발부받은 선박 또는 항공기 제외)
Article 5(Restriction of Traffic, etc.) With respect to a marine vessel or aircraft from abroad (hereinafter referred to as "vessel, etc."), no one shall come ashore or unload any cargo from a marine vessel, nor shall anyone disembark from an aircraft or leave the quarantine area in the airport as specified by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or take out any object from such aircraft or quarantine area, in each case, before a quarantine certificate or a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however, to cases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y: (i) When a person comes ashore or unloads items for a marine vessel, or a person disembarks from an aircraft or leaves the quarantine area in the airport specified by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or takes an item out from such aircraft or quarantine area, after	제5조 (교통 등의 제한) 외국에서 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는(이하 선박 등), 누구도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이 발부되기전에 선박에서 상륙 또는 화물을 양륙해서는 아니되며 해당 항공기에서 내리거나 검역소장이 지정한 공항 내의 검역구역을 떠나고 그 항공기 또는 검역구역에서 물건을 내려서는 안된다. 다만, 아래에 열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검역감염증에 명백히 감염되지 않았음을 검역소장이 확인한 후에, 해당 선박으로부터 상륙하거나 물건을 양륙하는 것, 검역소장이 지정한 공항 내의 검역 구역을 떠나는 것, 또는 그러한 항공기 또는 검역구역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것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has confirmed that they are definitely not infected by any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ii) When such cargo is unloaded or taken out pursuant to the instructions specified in Article 13-2.	(ii) 제 13-2조에 규정된 지시에 따라 화물을 양륙하거나 운반할 때
(iii) When permission is given by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in acknowledged emergency situations.	(iii) 긴급상황으로 인정되어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Article 6(Notification before Quarantine) The master of a vessel, etc. intending to invoke quarantine procedures shall, when approaching a quarantine port or quarantine airport, give notice in an appropriate manner, as to whether or not there exists any quarantinable infectious patients or any deceased persons and so to any other matters specified in an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to the chief of the quarantine station (including branches or quarantine station field offic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located in the quarantine port or in the quarantine airport, as the case may be.	제6조 (검역전의 통보) 검역을 받으려고 하는 선박 등의 장은 해당 선박이 검역항 또는 검역비행장에 접근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검역항 또는 검역비행장에 위치한 검역소(검역 지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장에게 검역 감염증 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 및 기타 후생노동부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Article 7 Deletion	제7조 삭제
Article 8(Quarantine Area)	제8조 (검역 구역)
(1) Masters of marine vessels shall put the vessel into the quarantine area when the vessel goes through quarantine, except when they receive a notice as specified in Article 17-2.	(1) 제17-2조에 규정된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검역을 받으려고 하는 선박의 장은 해당 선박을 검역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2) Captains of aircraft from abroad shall move the aircraft to the quarantine area immediately after landing at the quarantine airport or on the water.	(2) 외국에서 온 항공기의 장은 해당 항공기를 검역비행장에 착륙 또는 착수한 후에는 즉시 해당 항공기를 검역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3) In the cases prescribed in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if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instructs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to move the vessel to a place other than the quarantine area for reasons such	(3) 전 2항에 규정된 경우에, 만약 날씨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검역소장이 해당 선박 등을 검역 구역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선박 등의 장은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as the weather,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shall follow these instructions. (4) One or more quarantine area shall be specified for each quarantine port or quarantine airport pursuant to Paragraph 1 and Paragraph 2, and notice shall be given of these by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4) 제1항 및 제2항의 검역 구역은 후생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검역항 또는 검역 비행장마다 1 이상을 결정, 고시한다.
Article 9(Quarantine Signal) When a marine vessel enters a quarantine area or any place specified by provision in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for quarantine purpose, the master of such marine vessel shall, until a quarantine certificate or a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has been received, display a quarantine signal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an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The same shall apply in the case where a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expir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9-1 or a notice of invalidation of a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is given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9-2 while the marine vessel lays at anchor in port, to the period from the time when the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expires or a notice of invalidation of the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is given to the time when the master moves the vessel out of the port or when an issued quarantine certificate or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is received.	제9조 (검역 신호) 목적을 받기 위하여 선박이 검역구역 또는 전 조의 제3항에 규정된 장소에 들어갈 때에는, 선박의 장은 검역증 또는 임시 검역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후생노동부령이 정하는 검역 신호를 내걸어야 한다.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제19-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검역증이 만료되거나 제19-2항의 규정에 따라 발부된 임시 검역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 검역증이 만료 또는 실효 통지 시부터 선장이 선박을 항외에 퇴거시키거나 다시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발부받기까지의 기간 까지도 같다.
Article 10(Start of Quarantine)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start quarantine service promptly when the vessel etc. enters the quarantine area or the place specified in the	제10조 (검역 개시) 거친 날씨 등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 등이 검역 구역 또는 제8조 제3항의 규정된 장소로 들어온 경우에 검역소장은

provisions in Article 8-3, unless this is not possible for reasons such as bad weather; provided, however, that the chief may postpone such quarantine service until sunrise if the vessel enters the area after sunset.	신속히 검역을 개시하여야 한다. 단, 일몰 후에 들어온 선박에 관하여는 일출 시까지 검역을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Article 11(Submission and Presentation of Documents)	제11조 (서류의 제출 및 제시)
(1) The master of a vessel, etc. shall submit a report, as prescribed, showing vessel name or registration number, port of departure, ports of call and other matters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in order to go through quarantine; provided, however, that for quarantine after the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expired, this shall apply only to cases where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o demands.	(1) 검역을 받기 위해서, 선박 등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선박 등의 명칭, 등록번호, 발항지명, 기항지명 및 그 외 후생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 검역증이 만료된 후에 검역의 경우, 검역소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request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to submit the documents listed in Item 1 through Item 3, and to present documents listed in Item 4 and Item 5 shown below:	(2) 검역소장은 선박 등의 장에게 아래에 열거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4호 및 제5호에 열거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i) List of crew	(i) 승무원 명부
(ii) List of passengers	(ii) 승객 명부
(iii) Cargo temporary restraining order	(iii) 적하 목록
(iv) Logbook or Flight logbook	(iv) 항해 일지 또는 항공 일지
(v) Other necessary documents for quarantine	(v) 그 외 검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Article 12(Questions)	제12조 (질문)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make necessary inquiries of persons on board, the pilot and any person who comes on board after the vessel, etc. calls into the port, and may assign a quarantine officer for this task.	검역소장은 승선자, 조종사, 선박 등이 항구에 들어온 후에 승선한 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고 검역관에게 이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Article 13(Medical Examination and Inspection)	제13조 (진찰 및 검사)
(1)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examine a person and the vessel etc. prescribed in the preceding	(1) 검역소장은 전 조에서 규정한 사람 및 선박에 대하여 병원체 유무에 관한 검사를 하고 검역관에

article to see whether or not there are any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and may assign a quarantine officer to the job. (2) With respect to the examination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carry out an autopsy or may assign a quarantine officer to do the job, if necessary, in order to conduct an examination as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In this case, if an autopsy is need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e of death, or it is obvious that the aims of autopsy will not be achieved if an answer from the bereaved families is delayed because where they family is residing is not known, or they live in a distant place, it is not necessary for a quarantine station chief to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bereaved families.	게 이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2) 전 항에 규정된 검사의 경우, 검역소장은 필요할 경우 전 조에 규정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체를 해부하거나 검역관에게 이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부가 필요하거나 그 유족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먼 거리에 거주하여 유족의 승낙 여부가 연체되면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 때에는 검역소장은 유족의 승낙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Article 13-2(Instructions for Unloading etc.)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give instructions to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to unship or produce the cargo for an examination a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if it is deemed difficult to carry out an examination of the cargo on board as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제13-2조 (양륙 등의 지시) 검역소장은 만약 선박등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 전 조에 규정된 검사를 선박에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화물을 검역소장이 지시하는 장소로 양륙하거나 운반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다.
Article 14(Measures for Infected or Potentially Infected Vessels etc.) (1)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take all or some of the measures listed below, in so far as they are reasonably necessary for vessels etc. that left from or made calls at ports in any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infected area, or vessels etc. that have infectious patients or carry deceased, or vessels etc. in which rats carrying or potentially carrying pest bacillus are found on board, or vessels etc. that are	제14조 (오염 또는 오염우려가 있는 선박 등에 관한 조치) (1) 검역소장은 검역감염증오염지역에 있는 항구에서 발항 또는 기항하였거나, 감염증환자 또는 그 사체가 있는 선박, 선내에 페스트 균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 취족이 발견된 선박, 또는 검역감염증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선박 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아래에 열거된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nfected or potentially infected by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i) Isolate a patient with an infectious disease listed in Article 2-1, or assign a quarantine officer to the job.	(i)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감염증환자를 격리하거나 검역관에게 그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
(ii) Restrict the activities of a suspected patient with the infectious disease listed in Article 2-1, or assign a quarantine officer the job. (This is limited only to situations where certain infectious diseases specified in the same article occur abroad and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at such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may enter the country and have a serious impact on the lives and health of the citizens of Japan).	(ii)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감염증에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검역관에게 그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 (동 조에 규정된 특정 감염증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및 그러한 감염증 병원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iii) Disinfect an object or an area that is infected or potentially infected by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or assign a quarantine officer to the job, or give an order for disposal if it is difficult to get rid of the disease-causing pathogens completely.	(iii) 검역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고, 또는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장소를 소독하거나 검역관에게 그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 또는 병원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폐기 명령을 내리는 것
(iv) Cremate a corpse including (a dead fetus) that is infected or potentially infected by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the Act on Graveyards, Burial Services, etc.(Act No. 48 of 1948).	(iv)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역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사체(죽은 태아 포함)의 화장
(v) Prohibit or restrict the use of an object or an area that is infected or potentially infected by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or prohibit the transfer of such an object.	(v) 검역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장소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고 그러한 물건의 이동을 금지하는 것
(vi) Have a quarantine officer or another qualified person exterminate rats or insects.	(vi) 검역관 또는 기타 자격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쥐족 또는 충류를 구제하게 하는 것
(vii) Immunize someone who it is thought needs this, or assign a quarantine officer to the job.	(vii)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검역관에게 이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
(2)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give instructions	(2) 검역소장은 전조의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to the master of a vessel etc. to bring the vessel to another quarantine port or quarantine airport, after clearly explaining the reasons for such an action, if it is deemed impossible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listed in Item 1 through Item 3 or Item 6 of the preceding paragraph due to inadequate equipment in the quarantine station.	에 열거된 조치를 행함에 있어서, 해당 검역소의 설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장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 후에 다른 검역항 또는 검역 비행장에 회항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Article 15 (Isolation)	제15조 (격리)
(1) Isolation prescribed in Article 14-1 (1) shall be conducted by admitting such a person to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for specified infectious diseases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of specified infectious diseases prescribed in the Act o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 and Medical Care of Infectious Patient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or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of Class 1 specified infectious diseases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for Class 1 infectious diseases prescribed in the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provided, however, that isolation may be conducted by admitting such a person to a hospital or a clinic that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considers appropriate, excepting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s for specified infectious diseases and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s for Class 1 infectious diseases,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including emergencies.	(1)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격리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또는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동법에 규정하는 제1종 감염증 지정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에 입원을 위탁하여 한다.
(2)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lift the isolation immediately after it is confirmed that the patient with an infectious disease listed in Article 2-1 is no longer a carrier of the disease-causing pathogens while such patients are isolated.	단, 긴급 상황 등 그 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또는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검역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에 그 격리를 위탁할 수 있다.
(3) Administrators of hospitals or clinics used in the cases referred to in Item 1 shall inform the	(2) 검역소장은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감염증환자가 격리되고 있는 동안 더 이상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격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위탁을 받은 병원 또는 진료소의 관리자는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감염증 환자가 제14조

quarantine station chief when it is confirmed that, among isolated patien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4-1 (1),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 listed in Article 2-1 are not carriers of such disease-causing pathogens any longer.	제1항에 따라 격리되고 있는 동안 더 이상 그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Persons who are isol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4-1 (1) or his/her guardian (a person who exercises parental authority or a carer.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may make a request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to lift the isolation.	(4)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된 자 또는 그 후견인(친권 또는 후견권을 행하는 사람. 이하 동일)는 검역소장에게 격리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confirm whether or not such an isolated patient with an infectious disease listed in Article 2-1 is a carrier of th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when such a request is made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the preceding paragraph.	(5) 검역소장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 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감염증 격리 환자가 병원체 보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rticle 16(Restriction of Activities)	제16조 (행동의 제한)
(1) Restriction of activities prescribed in Article 14-1 (2) shall be conducted by admitting such a person to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of specified infectious diseases or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of Class 1 infectious diseases, specifying the period of time; provided, however, that such restriction of activities may be conducted by admitting such a person to a hospital or a clinic that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considers appropriate, except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s for specified infectious diseases and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s for Class 1 infectious diseases, or by keeping them on board and providing accommodation for them within the vessel with approval of the master of the vessel.	(1)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행동의 제한은 기간을 정하여,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또는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입원을 위탁한다. 단, 응급 상황 등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또는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외에 검역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에 그 입원을 위탁하거나 선박의 장의 동의를 얻어 선박 내에 수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The period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2) 전 항의 기간은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질병 중

shall be no longer than 144 hours for pests, one of the diseases listed in Article 2-1, and shall be no longer than 504 hours for diseases other than pests listed in the same paragraph, but shall be no longer than the period of time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cubation period for each infectious disease.	하나인 페스트의 경우에는 144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고, 페스트 이외에 동호에 열거된 질병에 관해서는 504 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각 감염증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정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lift the restriction immediately it is confirmed that such a person whose activity is restricted pursuant to Item 1 is no longer a carrier of the particular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3)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행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해당 제한과 관계되는 감염증 병원체를 보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각 그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4) Administrators of hospitals or clinics used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inform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of it when it is confirmed that such a person whose activity is restri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4-1 (2) is not a carrier of the relevant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4) 전 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병원 또는 진료소의 관리자는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해당 제한과 관계되는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The person whose activity is restri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4-1 (2) or his/her guardian may make a request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to lift the restriction of activities.	(5)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후견인은 검역소장에게 그 활동의 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6)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confirm whether or not the person whose activity is restricted is a carrier of the relevant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when such a request is made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6) 검역소장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 제한의 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활동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해당 활동 제한에 관계되는 감염증 병원체 보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Article 16-2(Special Provisions for Application for Examination)	제16조의 2 (심사 청구 특례)
(1) A person who has been isol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4-1 (1) or his/her guardian may, if more than thirty days have elapsed since the	(1)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격리되고 있는 자 또는 그의 후견인은 만약 격리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났다면 해당 격리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후생노동부장관에게 심사 청구

start of the isolation, apply for an examination of the isolation (including re-examination; and the same shall apply in Paragraph 2 and Paragraph 3) to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in writing or verbally.	(재심사 청구 포함, 제2항 및 제3항에 동일 적용한다.)를 할 수 있다.
(2)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shall make a decision within 5 days from the date of such applications for examination, if said application for examination is done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2) 후생노동부장관은 전 항의 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심사 청구가 있던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3) If a person who has been isol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4-1 (1) or his/her guardian applies for examination to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Appeal Law(Act No. 160 of 1962) before thirty days have elapsed since the start of the isolation,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shall make a decision regarding the case within 35 days from the day of his/her isolation him/her under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paragraph.	(3)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격리된 사람 또는 그 보호자가 격리 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행정 불복 심사법에 따라 후생노동부장관에게 심사 청구를 했을 때는, 후생노동부장관은 동호의 규정에 의해 격리된 때부터 기산하여 35일 이내에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한다.
(4) If a person who has been isol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4-1 (1) or his/her guardian applies for examination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Appeal Law before thirty days have elapsed, and then more than thirty days elapse,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transfer the case to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and shall give notice to the applicant for examination.	(4)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격리된 사람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불복심사법에 기초하여 해당 격리 기간이 30일이 지나기 전 또는 30일이 지난 때에 심사 청구를 하였다면, 검역소장은 사건을 후생노동부장관에게 이송하고 그 취지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When the case is transferred pursuant to the provision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rovisions in Paragraph 3 shall apply to such cases as if the examination were applied for to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from the start.	(5)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이 이송된 때에는 처음부터 후생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청구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shall hear the views of the council and others (institutions set forth in Article 8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Law: Act No. 120 of 1948)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beforehand when the Minister determines the case pursuant to Item 2 or Item 3 (limited to cases where more than thirty days have elapsed from the start of the isolation).	(6) 후생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재결 또는 제3항의 재결(격리 기간이 30일 이상 지난 사람에게 제한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령에 규정된 심의회 등(국가 행정 조직법 제8조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rticle 17(Delivery of Quarantine Certificate) (1)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deliver a quarantine certificate to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if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no risk that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will enter the country. (2) In cases where the master of a vessel gives notification of matters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pursuant to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in addition to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6,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give notice regarding delivery of the quarantine certificate to the master of the vessel beforehand if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no risk that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may enter the country via such a vessel.	제17조 (검역증의 교부) (1) 검역소장은 검역 감염증의 병원체가 국내에 침입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선박 등의 장에게 검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선박의 장이 제6조에 규정에 따른 통보 이외에 후생노동부령에 따라 후생노동부령이 규정한 사항을 통보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검역감염증의 병원체가 선박을 통해서 국내에 침입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사전에 해당 선박의 장에게 검역증 교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rticle 18(Delivery of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1) Even if it is impossible to deliver the quarantine certificate,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deliver a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to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specifying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little or no risk that the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will	제18조 (임시검역증의 교부) (1) 검역증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검역소장은 검역감염증의 병원체가 국내로 들어올 위험이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특정하여 선박 등의 장에게 임시 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다.

enter the country.	
(2) In the case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demand that a suspected patient of the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whose activity is not restricted present a passport as prescribed in Item 5 of Article 2 of the Immigration-Control and Refugee-Recognition Law(Cabinet Order No. 319 of 1951), and have him/her report the details of their residence in Japan - contact address, name, travel schedule and other details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as well as demanding a report of his/her body temperature and other physical conditions within the period specified by the paragraph, or to ask questions. A quarantine officer may be assigned to this job.	(2)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검역소장은 검역 감염증의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어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게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에 관련 법에 규정된 여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사람의 국내에서의 거처, 연락처 및 이름, 여행 일정 및 동향이 규정한 기간 내에 해당 사람의 체온 및 기타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과 같은 기타 후생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나 질문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검역관에게 이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 If any health problems are found following the report or quest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give notice of the instructions and other matters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to a governor who has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such person's residence (mayor or headman for a city or a special ward where a public health center is established; the same shall apply in Article 26-3) , as well as instructing such a person to go for a check-up in a public health center or other medical institution, and giving advice about prevention measures concerning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3) 전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질문에 따라 건강 상태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검역소장은 해당 사람에게 보건소 또는 그 외의 의료 기관에 진찰을 받도록 지시하고 그 외 검역 감염증의 예방 조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동시에, 해당 사람의 거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보건소가 설치된 도시 또는 특별구의 시장 또는 구청장. 제26조의 제3항에도 적용된다.)에 후생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시 또는 기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19(Invalidation of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제19조 (임시 검역증의 실효)

(1) If a quarantinable infectious patient is found, or any person dies from such a disease in the vessel to which a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has been delivered, and within the period specified by the provision in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such a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will be invalidated. In such cases,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hief of the nearest quarantine station. (2)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who delivered the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may void it only within the period specified by the provisions in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if it is recognized that additional measures to those listed in each item of Article 14-1 are required in respect of the vessel. In such cases,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inform the master of the vessel immediately. (3) In cases where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are invalid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if such a vessel still lays at anchor in the port, or such an aircraft is still on the ground in the country (including waters in the port),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who received the notification specified by the provisions in Paragraph 1, or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who delivered the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may give instructions to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to move the vessel into a quarantine area or other specified area, or to move the vessel out of the port, or to let the aircraft to take off from the airport or water.	(1) 만약 임시검역증이 발부되고 전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있는 선박에서 감염감염증 환자가 발견되거나 그러한 질병으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임시검역증은 실효된다. 그러한 경우에 선박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인근의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임시검역증을 발부한 검역소장은 해당 선박에 관하여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 조의 제1항 규정된 기간 내에 한해서 해당 임시 검역증을 실효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검역소장은 즉시 해당 선박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검역증이 실효된 경우에, 만약 해당 선박이 여전히 정박해 있거나 해당 항공기가 국내의 장소(항구의 수면을 포함한다)에 정지 중이라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 또는 해당 임시 검역증을 교부한 검역소장은 해당 선박 등의 장에게 해당 선박을 검역구역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을 항 외에 퇴거시키거나 해당 항공기를 공항에서 이륙 또는 이수시키는 지시를 할 수 있다.
Article 20(Delivery of Certificate)	제20조 (증명서의 교부)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deliver the	검역소장은 제14조 제1항의 각 호에 열거된 조치 또는 동조 제2항의 지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 선박

certificate relating to the measure listed in each item of Article 14-1 or the instructions given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4-2, when requested by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or any other person concerned.	등의 장이나 기타 관련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Article 21(Quarantine in any Port except Quarantine Ports)	제21조 (검역항 이외의 항에서의 검역)
(1) The chief of the vessel that meets all the requirements listed below may move the vessel into any port except quarantine port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in Article 4; provided, however, that this entry into port is allowed following the prior obtaining of permission from the nearest quarantine station chief of the port.	(1) 아래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선박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항 이외의 항으로 수용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인근 검역소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만 허가된다.
(i) The vessel did not set off from an area, or visit any port in an area along the way before arrival,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as one where certain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are prevalent or are threatened.	(i) 검역 감염증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후생노동부령이 지정하는 외국 지역에서 발항 또는 기항한 선박이 아닐 것
(ii) The vessel doesn't have any person or any object on board from a vessel or an aircraft that has left or visited any foreign area specified in the preceding item (except vessels or aircraft with quarantine certificates or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s delivered).	(ii) 전 호(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받은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외국 지역을 방문하거나 출발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사람을 갈아타게 하거나 물건을 운반하지 아니하였을 것
(iii) No one has had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during the voyage.	(iii) 항행 중 검역감염증 화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iv) Any doctor or any person with a qualification equivalent to that of a doctor under foreign legislation is on board as ship's doctor.	(iv) 의사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의로서 승선해 있을 것
(v) The vessel is provided with a deratization certificate or other certificate delivered (issued within the preceding 6 months by a quarantine station chief	(v) 선박이 쥐잡이증명서 또는 더 이상 쥐잡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기타 증명서(검역소장 또는 이와 동일한 외국 기관이 6개월 이내에 발

or any foreign institute equivalent to this), confirming that no further deratization is required.	행한 것)을 가질 것
(2) The master of the vessel shall give notification of the matters listed in each item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d other matters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in order to apply for a permit prescribed in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2) 선박의 장이 전항 단서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후생노동부령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및 전 항의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decide promptly whether or not permission shall be granted, and then notify the chief of the vessel of his decision, when such an application for permit is done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1.	(3)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 때에는 신속히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것을 해당 선박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 master of the vessel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move the vessel immediately to an area of the port specified by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4) 제1항에 규정된 선박의 장은 해당 선박을 즉시 검역소장이 지정하 항구의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5) The provisions in Article 9 and Article 10 shall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 vessel prescribed in Paragraph 1 moves into the area specified by the provisions in the preceding paragraph.	(5)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전항에 규정된 장소로 이동하 경우에 준용한다.
(6)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discontinue quarantine service at the port, offering reasons to the master of the vessel,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vessel prescribed i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s infected or potentially infected by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bring the vessel into a certain quarantine port and conduct examinations or inspections pursuant to Article 13.	(6) 검역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해당 선박을 특정 검역항에 회항하게 한 다음 제13조에 따라 진찰 또는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선박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그 항에서의 검역을 중단할 수 있다.
(7) The master of the vessel shall move the vessel out of the port immediately when quarantine service	(7)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항 이외의 항에서의 검역이 중단된 때에는 즉시 해당 선박의 장은 해당 선박을 항외에 퇴거하여야 한다.

at ports other than quarantine ports is discontinu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the preceding paragraph.	
(8) The provisions in Article 20 shall be applied when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discontinues quarantine serv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6.	(8) 제20조의 규정은 검역소장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중단한 때에 준용한다.
Article 22 (Special Provisions for Vessels to which Item 2 of Article 4 is applicable)	제22조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관하 특별)
(1) The master of a vessel or the aircraft captain of an aircraft to which Item 2 of Article 4 is applicable (other than vessels or aircraft to which Item 1 of Article 4 applies at the same time) may move the vessel to any port except quarantine ports for quarantine service or have the aircraft land on the ground or on the water except at quarantine airports(including the waters of port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in Article 4, if it is impossible for the vessel or aircraft to make long-passage due to performance problems or it is impossible to get to the quarantine port or quarantine airport for any other reason.	(1)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동시에 동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장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성능이 장거리 항행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 외의 이유에 의하여 검역항 또는 검역 비행장에 이르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검역항 이외의 항에 수용하거나 해당 항공기를 검역 비행장 이외의 국내 장소(항의 수면을 포함한다.)에 착륙 또는 착수시킬 수 있다.
(2) The master of the vessel or the aircraft captain of the aircraft shall give notice as to whether or not there is a patient with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whenever and wherever they fall under the provisions in Item 2 of Article 4 and other matters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to the chief of the nearest public health center, when the master of the vessel or the aircraft captain of the aircraft pr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moves the vessel to any port other than quarantine ports or has the aircraft land on the ground(including the waters of ports)other than	(2) 전 항에 규정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해당 선박을 검역항 이외의 항에 수용하거나 해당 항공기를 검역 비행장 이외의 국내 장소(항의 수면을 포함한다)에 착륙 또는 착수하게 한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은 즉시 근처의 보건소장에게 검역 감염증 환자의 유무, 제4조 제2호에 해당시의 일시 및 장소, 그 외 후생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quarantine airports in the country;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master of the vessel or the aircraft captain of the aircraft gives notification of these matters to the chief of the nearest quarantine station beforehand.	단,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사전에 근처의 검역소장에게 이러한 사항을 통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The chief of a public health center who receives notice, as pr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may tak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inspection, sterilization and any other necessary preventive measures for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for a vessel or aircraft.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검사, 소독 및 그 외 검역 감염증의 예방 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For the vessels or aircraft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the chief of the public health center may also give a permit as specified in Item 3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5.	(4) 제1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하여, 보건소장은 제5조의 단서 제3호에 규정된 허가를 할 수 있다.
(5) The provisions in Article 4 and Article 5 shall not be applied to vessels or aircraft prescribed in Paragraph 1, if the chief of the public health center confirms that no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will enter the country via the vessel or the aircraft.	(5) 보건소장이 검역감염증의 병원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침입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6) The provisions in Article 9 and Article 10 shall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 master of the vessel prescribed in Paragraph 1 moves the vessel into any port other than quarantine ports after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Paragraph 2, and shall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 aircraft captain of the aircraft prescribed in Paragraph 1 lands the aircraft on the ground or on the water (including waters in the port) in the country, other than at quarantine airports, after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 in Paragraph 2.	(6) 제9호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후에 검역항이외의 항에 수용한 경우 및 제1항에 규정된 항공기의 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한 후 검역비행장 이외의 국내의 장소(항의 수면을 포함한다)에 착륙 또는 착수하게 한 경우에 준용한다.
Article 23(Emergency Evacuation)	제23조 (긴급피난) (1) 검역증 또는 임시 검역증이 없는 선박의 장이

(1) If the master of a vessel with no quarantine certificate or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delivered moves the vessel into any port in the country or lands an aircraft on the ground or on the water(including waters in the port), except at quarantine airports, in order to evacuate to a safer place due to an emergency situation, the master of the vessel shall move the vessel into a quarantine area or an area specified by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or move the vessel out of the port or have the aircraft take off or the leave the waters immediately after such an emergency situation is over.	응급 상황에서 안전한 장소로 피하기 위하여 선박 등을 국내의 항에 수용하거나 검역 비행장 이외의 국내의 장소(항의 수면을 포함한다)에 착륙 또는 착수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한 응급상황이 종료된 즉시 해당 선박을 검역 구역 또는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회항, 또는 항외로 퇴거, 또는 해당 항공기를 이륙 또는 이수시켜야 한다.
(2) In the cas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f it is impossible to move the vessel into the quarantine area, or to move it out of the port, or have the aircraft take off or leave the waters for unavoidable reasons,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shall give notification as to whether or not there is a quarantinable infectious patient, the names of the places of departure, the names of places called into along the way, and other matters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or to the chief of the public health center if no quarantine station is available.	(2) 전 항의 경우에 있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해당 선박을 검역 구역 등에 수용, 항외 퇴거 시키거나 해당 항공기를 이륙 또는 이수시킬 수 없을 때에는 선박 등의 장은 검역소장 또는 검역소가 없을 때에는 보건소의 장에게, 검역감염증 환자 유무, 발항지명, 기항지명 및 후생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chief of the quarantine station or the public health center who receives such notification may tak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examinations, sterilization, or other necessary preventive measures in respect of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3) 그러한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은 검사, 소독 및 그 외 검역감염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The chief of the public health center may also issue a permit as prescribed in Paragraph 3 of the	(4) 보건소장은 또한 제2항의 선박에 대하여 제5조 단서 제3호에 규정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provision in Article 5 to the vessel etc. prescribed in Paragraph 2. (5) The provision of Article 5 shall not apply to vessel etc. prescribed in Paragraph 2 if the chief of the quarantine station or the public health center confirms that there is almost no risk that the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may enter the country, as long as the vessel etc. stays there. (6)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four paragraphs shall apply to crippled vessels near the seashore other than ports in the country. (7)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with no quarantine certificate or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delivered shall immediately give notification as to whether or not there is a quarantinable infectious patient, or other matters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to a chief of the nearest public health center or a mayor of the relevant municipality, if anyone comes ashore from the vessel, unships any objects, or leaves the aircraft or carries objects off the aircraft for unavoidable reasons due to an emergency situation.	(5) 제5조의 규정은 만일 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이 해당 선박이 그곳에 머무는 한 검역감염병원체가 국내에 침입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선박 등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전 4항의 규정은 국내의 항 이외의 해안에서 파손된 선박에 준용한다. (7)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받지 못한 선박 등의 장은 응급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부득이 해당 선박으로부터 상륙 또는 물건을 양륙하였거나, 해당 항공기에서 떠났거나 물건을 운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근처의 보건소장 또는 시읍면장에게 검역감염증화자의 유무 또는 기타 후생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Chapter III Other Hygiene Affairs Conducted by Quarantine Station Chief	제3장 검역소장이 행하는 그 외의 위생 업무
Article 24(Emergency Measures) Under quarantine,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take necessary preventive measures including medical examinations, sterilization, or shall assign a quarantine officer to the job on if urgently needed if it is found that there is an infectious patient or a person has died from such a disease, except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specified in Paragraph 3 through	제24조 (응급 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을 행함에 있어 만약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증 이외의 감염증 환자 또는 사망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해당 선박 등이 그러한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 또는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진찰, 소독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거나 검역관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

Paragraph 5 and Paragraph 7 of Article 6 of the Act o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Medical Care of Infectious Patients, or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vessel etc. is infected or potentially infected by such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다.
Article 25(Deratization) Under quarantine,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orde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deratize it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vessel has not got rid of rats thoroughly;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the master of the vessel presents a deratization certificate (issued within six months by a chief of a quarantine station or a foreign institution equivalent to it) proving that rats have been thoroughly exterminated or that no further deratization is required.	제25조 (쥐잡이/구제) 검역소장은 검역을 행함에 있어 해당 선박 내에 쥐족의 구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장에게 쥐잡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장이 쥐가 철저히 박멸이 이뤄졌다는 또는 더 이상의 구제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쥐잡이 증명서(검역소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기관이 6개월 내에 발부하였을 것)를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6(Examination, etc. by Application) (1)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respond to a request from a master / aircraft pilot or an owner of a vessel or an aircraft who pays a fee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based on actual costs, for examination of the vessel or the aircraft regarding whether or not there are any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or sterilization, extermination of rats or insects, or a medical examination or the immunization of crews etc or for a certificate concerning these matters, unless it affects quarantine operations of the quarantine station. (2)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respond to the request from a person who is going abroad by paying a fee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based on actual costs for a medical examination of the	제26조 (신청에 의한 검사 등) (1)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장이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증 병원체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또는 쥐족이나 총류의 구제, 승무원 등에 대한 진찰 및 예방접종 및 이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한 때에는 검역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것에 응할 수 있다. (2) 검역소장은 외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병원체 유무 검사와 같은 검역감염증에 관한 진찰, 예방접종 또는 이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as to whether or not there are any disease-causing pathogens, or the immunization, or for a certificate concerning these matters, unless it affects quarantine operations of the quarantine station.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검역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수 있다.
(3)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respond to the request from a person who is going to export cargos by paying a fee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based on the actual costs for examination as to whether or not there are any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in the cargo, or sterilization, or the extermination of insects, or a certificate concerning these matters, unless it affects the quarantine operations of the quarantine station.	(3) 검역소장은 화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출하려는 화물에 대한 검역 감염증 병원체 유무 검사, 소독, 총류의 구제 또는 이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검역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수 있다.
Article 26-2 (Medical Examination on Infectious Disease other than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respond to the request from a person who is going abroad or a person prescribed in Article 12, by paying a fee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based on the actual costs for a medical examin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other than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as specified in Paragraph 3 through Paragraph 7 of Article 6 of the Act o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Medical Care of Infectious Patients, an examination as to whether or not there are disease-causing pathogens, or immunizations, or a certificate concerning these matters, unless it affects the quarantine operations of the quarantine station.	제26조의 2 (검역 감염증 이외의 감염증에 관한 진찰 등) 검역소장은 외국에 가려는 사람 또는 제12조에 규정된 사람이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검역감염증 이외의 감염증에 관한 진찰, 병원체 유무에 관한 검사 또는 이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검역소의 검역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수 있다.
Article 26-3(Collaboration with Governors etc.)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give notice of matters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제26조의 3 (도도부현 지사등과의 협력) 검역소장은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26조 제1항 또는 전조에 규정된 진찰 결과에 기초하여, 후생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찰을 받은 자

Labour and Welfare Ministry to a governor who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residence of such a person (current residence if there is no place of residence or if it is not known where it is located) if it becomes clear that the person who has such a checkup is a carrier of the disease-causing pathogens of an infectious disease as prescribed in Paragraph 2 through Paragraph 5 or Paragraph 7 of Article 6 of the Act o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Medical Care of Infectious Patients, except the case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heckup specified in Paragraph 1 of Article 13, Article 24, Paragraph 1 of Article 26 or the preceding article.	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 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7항에 규정된 감염증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거주지가 없거나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게 후생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27 (Investigation and Hygiene Affairs Conducted by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1)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conduct investigations into food, drinking water, sewage and other waste, filthy water, rats and insects in vessels or aircrafts only within the area of each quarantine port or quarantine airport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or conduct investigations of seawater, sewage and other waste, filthy water, rats and insects in facilities, buildings and other places located in such areas, or may assign a quarantine officer to the job,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are insects that can transmit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causing pathogens or other diseases equivalent to those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and to clarify the hygiene conditions with respect to such diseases in the quarantine port or quarantine airport. (2)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exterminate rats	제27조 (검역소장이 행하는 조사 및 위생 조치) (1) 검역소장은 검역감염증 및 정령에 규정된 이에 준하는 기타 감염증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총류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고 검역항 또는 검역비행장의 위생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검역항 또는 검역 비행장마다 정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한하여, 해당 구역 내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의 식품, 음료수, 오물, 더러운 물, 쥐족 및 총류의 조사를 하거나, 해당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건축물 및 그 외의 장소 안의 해수, 오물, 더러운 물, 쥐족 및 총류의 조사를 하고 검역관에게 이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2) 검역소장은 전항에 규정된 감염증이 유행 또는

or insects, clean up or sterilize vessels or aircrafts in the area or facilities, buildings or other places located in the area, or may do check-ups on workers there or exterminate insects from them, or may assign a quarantine officer or a person considered as appropriate for the job, only within the area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infectious disease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prevails or is potentially prevalent. (3)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give notification of the measures taken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promptly to the chief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body.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정령이 정한 지역 내에 한하여, 그 구역 내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 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 건축물, 그 외의 장소에 대한 쥐족 또는 총류의 구제, 청소 또는 소독 및 해당 구역 내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진단, 그들에 대한 총류를 구제하게 하거나 검역관 또는 그 외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검역소장은 전항의 조치를 행함에 있어 그 취지를 신속히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rticle 27-2(Collec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1)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provide a person who is going abroad or who has come from abroad with information about the occurrence of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in such countries and about preventive methods, as well as making this information generally available. (2)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collect, organize, and analyze information regarding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in order to provid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in an appropriate manner.	제27조의 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 검역소장은 외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에게 그 나라의 검역감염증의 발생 정보 및 예방법을 제공하고, 이 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검역소장은 전 항에 규정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하여 검역감염증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Chapter IV Miscellaneous Provisions	제4장 잡칙
Article 28(Quarantine Officer) Quarantine officers who are involved in the services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be assigned to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제28조 검역관 이 법률이 정하는 사무에 관련된 검역관은 후생노동부에 둔다.
Article 29(Right of Entry and Inspection)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and a quarantine officer	제29조 (출입조사권) 검역소장 및 검역관은 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

may enter facilities, buildings and other places prescribed in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Article 27, in order to perform duti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s necessary.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 선박, 항공기,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시설, 건축물, 그 외의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Article 30(Interpretation of Power and Authority)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and the quarantine offic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not be interpreted as extending to criminal investigation.	제30조 (권한의 해석) 이 법률에 따른 검역소장 및 검역관의 권한은 범죄수사에까지 확장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Article 31(Obligation to Wear a Uniform and to Carry an Identification Card) (1) Quarantine station chiefs and quarantine officers shall wear uniforms and carry identification cards with him/her when he/she conducts his/her duties, and shall present them upon the request of the person concerned. (2) The uniforms of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and the quarantine officer shall be specified by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제31조 (제복의 착용 및 신분증의 휴대) 검역소장 및 검역관은 직무를 행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검역소장 및 검역관의 복제는 후생노동부장관이 정한다.
Article 32(Collection of Actual Costs) (1)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collect the actual costs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from an owner or a master of a vessel etc. in the cases prescribed below: (i) Measure pursuant to Item 3, Item 4 or Item 6 of Paragraph 1 of Article 14 is taken. (ii) Measure pursuant to Item 1 or Item 2 of Paragraph 1 of Article 14 is taken. (2)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collect the actual costs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from the relevant people other than the crews of a vessel etc. when measures pursuant to Item 1 or Item 2 of Paragraph 1 of Article 14 are taken.	제32조 (실비의 징수) (1) 검역소장의 아래에 규정된 경우에는 선박 등의 소유자 또는 장으로부터 정령이 정하는 실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i)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 (ii)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 (2) 검역소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선박 등의 승무원 이외의 관련자에게 정령이 정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not collect all or part of the actual costs from such a person who has to pay the actual cos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in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if it is recognized that such a person cannot bear all or part of such costs for economic reasons.	(3) 검역소장은 전 2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로부터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4) The provisions in the preceding three paragraphs shall apply to cases where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or the chief of the public health center takes necessary measur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3 of Article 22 or Paragraph 3 of in Article 23 (including cases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6 of Article 23).	(4) 전 3항의 규정은 제22조의 제3항 또는 제23조의 제3항 (제23조 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Article 33(Payment and Share of Cost) Costs for measures undertaken by the chief of the public health cent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3 of Article 22 or Paragraph 3 of Article 23 (including cases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6 of Article 23) shall be paid by a relevant prefecture, city or special ward in which the public health center is located, and then shall be borne by the national treasury.	제33조 (비용의 지불 및 부담) 제22조의 제3항, 제23조의 제3항(제23조의 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보건소장이 취한 조치에 대한 비용은 해당 보건소가 설치된도도부현, 시 또는 특별구가 지불하고 이 때 국고에서 이것을 부담하여야 한다.
Article 33-2(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A person who disagrees with a decision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examination of the measure conducted by the chief of a branch or a dispatched office of the quarantine station may apply for re-examination to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제33조의 2 (재심사 청구) 검역지소 또는 출장소의 장이 한 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 재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후생노동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rticle 34 (Application of this Act to Infectious Diseases except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제34조 (검역 감염증 이외의 감염증에 관한 이 법의 적용)

All or part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Chapter 2 and this chapter (except the provisions from Article 34-2 to Article 40) shall apply to the case, by specifying the type of disease and limiting it to a period of less than one year, where any infectious disease occurs other than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except infectious diseases specified as new infectious disease in Paragraph 1 of the following article), and there is a risk that such disease-causing pathogens may enter the country and may then affect the lives and the health of the citizens of Japan if quarantine is not imposed. In this case, a special provision on the period of restriction of activities shall be created by such Cabinet Ord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cubation period of the infectious disease.	외국에 검역감염증 이외의 감염증 (다음 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감염증 제외)이 발생하고 검역을 하지 않으면 그 병원체가 국내에 들어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감염증의 종류를 지정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조의 2, 제2장 및 본 장(제34조의 2에서 제40조 제외)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활동 제한 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을 해당 감염증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정령에 의해 만들 수 있다.
Article 34-2(Measures pertaining to New Infectious Disease) (1)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may give instructions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to place patients suspected of having the new infectious disease under medical supervision, to meet any urgent needs in the prevention of the emergence of the new infectious disease or spreading of such disease, if a new infectious disease (being a new infectious disease as specified by the Act o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Medical Care of Infectious Patients, and an infectious disease other than new infectious diseases specified by a Cabinet Order pursuant of Article 53 of the Act) occurs abroad. In this case,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assign a quarantine officer to the job. (2) In the case medical checkups are conducted	제34조의 2 (신감염증에 관한 조치) (1) 후생노동부장관은 외국에 신감염증(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신감염증 및 동법 제53조에 따라 정령이 정하는 신감염증 이외의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신감염증의 발생 또는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감염증 의사 환자를 진찰하도록 검역소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이 업무를 행하도록(진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2) 검역소장은 제13조의 제1항, 제24조, 제26조의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3, Article 24, Paragraph 1 of Article 26, Article 26-2, or the preceding paragraph,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give notification of a suspected patient's name, age, sex and other matters specified by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immediately to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제1항, 제26조의 2 또는 전 조에 따른 진찰에 있어서, 즉시 후생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람의 이름, 연령, 성별, 그 외 후생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3)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may consider such new infectious disease as an infectious disease listed in Item 1 of Article 2 and undertake all or some of the measures specified by Article 13, Article 13-2, Item 1 through Item 6 of Paragraph 1 of Article 14, Article 17, Article 18, Paragraph 2 and Paragraph 3 of Article 19 and Article 20,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when the chief gives notification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3) 검역소장은 전 항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후생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신감염증을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감염증으로 간주하고, 제13조, 제13조의 2,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제20조에 규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4)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9 shall apply to such new infectious diseases for a vessel etc. to which the provisional quarantine certificate is delivered pursuant to the preceding paragraph. (5)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shall hear the views of the Health Science Council beforehand when the Minister gives instructions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pursuant to the provision in Paragraph 3.	(4)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검역증을 발부받은 선박 등에 관해서는 해당 신감염증에 대하여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후생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지시를 한 때에는 사전에 후생과학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rticle 34-3(Isolation pertaining to New Infectious Diseases) (1) Isolation prescribed by Article 14-1 (1) that is conducted by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pursuant to the provision in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done by admitting a person to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for the specified infectious disease;	제34조의 3 (신감염증에 관계되는 격리) (1) 전조의 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제14조의 1항 제1호에 규정된 격리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입원을 위탁해야 한다.

provided, however, that such isolation may be conducted by admitting such a person to a hospital other than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for specified infectious diseases that a quarantine station chief considers appropriate for unavoidable reasons including emergencies.	단, 응급상황 등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역소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병원에서 그 입원을 위탁할 수 있다.
(2)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lift the isolation of such a person immediately on the order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after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danger of the new infectious disease pertaining to the isolation spreading.	(2) 검역소장은 해당 격리와 관계되는 신감염증이 전파될 위험이 없다고 확인된 때에는 후생노동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격리되고 있는 자의 격리를 해제하여야 한다.
(3) The administrator of the committed hospital pursuant to Paragraph 1 may express an opinion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that there is no danger of the new infectious disease pertaining to the isolation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spreading.	(3) 제1항의 위탁을 받은 병원의 관리자는 전조의 제3항에 따른 격리와 관련된 신감염증이 전파될 위험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역소장에게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 The person isolat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or his/her guardian may make a request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to lift the isolation.	(4) 전 조의 제3항에 따라 격리된 자 또는 그 후견인은 검역소장에게 격리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confirm whether or not there is any danger that such an isolated person can spread the new infectious disease pertaining to the isolation, under orders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when the request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is made.	(5) 검역소장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 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후생 노동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격리로 관계되는 신감염증이 전파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shall hear the views of the Health Science Council prior to Minister giving instructions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r the preceding paragraph.	(6) 후생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지시를 내리기 전에 후생 과학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rticle 34-4(Restriction of Activities pertaining to New Infectious Disease)	제34조의 4 (신감염증에 의한 행동의 제한)
(1) The restriction of activities, prescribed by Article 14-1 (2), conducted by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3 of Article 34-2 shall be done by admitting a person to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of specified infectious diseases;	(1) 제34조의 2의 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행하는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행동의 제한은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에 입원을 위탁한다.
provided, however, that it may be conducted by admitting a person to a hospital other than a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of specified infectious diseases that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considers appropriate for unavoidable reasons including emergencies.	단, 응급 상황 등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이외에 검역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병원에 그 입원을 위탁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the restrictions pr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lift the restriction of activities of such a person under the orders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immediately after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threat of the new infectious disease pertaining to the restriction spreading.	(2) 전항에 규정된 행동 제한의 경우에, 검역소장은 해당 제한과 관계되는 신감염증이 전파될 위험이 없다고 확인된 때에는 후생노동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그 자의 행동 제한을 해지하여야 한다.
(3) The Administrator of the hospital used pursuant to Paragraph 1 may express an opinion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that there is no threat that the new infectious disease pertaining to a person whose activity is restrict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34-2 will spread.	(3) 제1항의 위탁을 받은 병원의 관리자는 제34조의2의 제3항에 따른 행동 제한과 관련된 신감염증이 전파될 위험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역소장에게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 The person whose activity is restrict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34-2 or his/her guardian shall make a request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to lift the restriction.	(4) 제34조의2의 제3항에 따라 행동이 제한된 자 또는 그 후견인은 검역소장에게 그 제한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5)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shall confirm, under the order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5) 검역소장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 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후생 노동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행동 제한과 관계되는 신감염증이 전파될 위

whether or not there is any threat that the person whose activity is restricted will spread the new infectious disease pertaining to the restriction when the request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is made.	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 shall hear the views of the Health Science Council beforehand when the Minister gives instructions to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pursuant to Paragraph 2 or the preceding paragraph.	(6) 후생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지시를 내리기 전에 후생 과학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rticle 34-5(Classification of Functions) (1) The functions to be handled by a prefecture, city or special ward that has a public health cent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through Paragraph 5 of Article 22, Paragraph 2 through Paragraph 5 of Article 23 (including cases where provisions in Paragraph 6 of Article 23 apply), and Paragraph 7 of Article 23, and Article 26-3 shall be statutory delegated functions of Item 1 specified by Article 2-9 (1) of the Local Autonomy Act (Act No. 67 of 1947). (2) The functions to be handled by the municipali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7 of Article 23 shall be statutory delegated functions of Item 1 specified by Article 2-9 (1) of the Local Autonomy Act.	제34조의 5 (사무의 구분) (1) 제22조의 제2항 내지 제5항, 제23조의 제2항 내지 제5항(제23조의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포함) 및 제 23조의 제7항, 제26조의 3에 따라 보건소를 설치하는 도도부현, 시, 특별구가 처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제1호 법령위탁사무이다. (2)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이 처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령위탁사무이다.
Article 34-6(Transitional Measures) In cases where an order is issued, revised or abolish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necessary transitional measures (including transitional measures relating to penal provisions) may be	제34조의 6 (경과 조치)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제정하고,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소요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

provided to the extent deemed reasonably necessary for such issuance, revision or abolition.	다.)를 정할 수 있다.
Article 35(Penal Provision)	제35조 (벌칙)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shall be jailed for up to 1 year or fined up to one million yen.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 Any person who breaches the provisions in Article 5	(i)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ii) Any person who breaks the terms of their isolation or activity restriction.	(ii) 격리 또는 활동 제한 조항을 위반한 사람
Article 36	제36조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shall be jailed for up to six months or fined up to fifty thousand yen.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 Any person who,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in Paragraph 1 of Article 11, has not submitted a report as prescribed or has submitted a report containing false details.	1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
(ii) Any person who has not submitted or presented a document upon request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2 of Article 11, or who has submitted or presented a document containing false details.	2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에 따른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지 못하고, 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사람
(iii) Any person who has not answered, or who has answered falsely, quest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2.	3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사람
(iv) Any person who has refused, prevented or avoided a medical checkup (including cases where it is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3 of Article 34-2) or an examin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13 (including cases where it is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 in the same paragraph) conducted by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or the quarantine officer.	4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소장 또는 검역관이 행하는 진찰(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 포함한다.)또는 검사(동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v) Any person who has refused, prevented or avoided measures conducted by a quarantine station chief or quarantine offic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Item 1 through Item 3 and Item 6 or Item 7 of Paragraph 1 of Article 14 (including cases where measures ar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3 of Article 34-2).	5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검역소장 또는 검역관이 행하는 조치(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 포함)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한 사람
(vi) Any person who has violated the measures in Item 5 of Paragraph 1 of Article 14 (including cases where measures ar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3 of Article 34-2)	6 제14조 제1항 제5호의 처분(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 포함)에 위반한 사람
(vii) Any person who has not presented a passpo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2 of Article 18 (including cases where they ar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3 of Article 34-2), has not reported or reported falsely (including cases where it is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the same paragraph), or has not answered or answered falsely.	7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제시(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 포함), 또는 보고(동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고, 또는 질문(동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 포함)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사람
(viii) Any person who has refused, prevented or avoided measures that are conducted by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or the quarantine offic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24	8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소장 또는 검역관이 행하는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ix) Any person who has refused or prevented entry by, or has evaded, a quarantine station chief or the quarantine officer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29	9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검역소장 또는 검역관의 출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x) Any person who has refused, prevented or avoided a medical checkup conducted by the quarantine station chief or the quarantine offic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1 of Article 34-2	10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소장 또는 검역관이 행하는 진찰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Article 37	제37조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shall be fined up to fifty thousand yen. (i) Any person who has violated the provision in Article 4 (ii) Any person who has violated the provisions in Paragraph 1 of Article 19 (including cases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4 of Article 34-2) (iii) Any person who has violated an ord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3 of Article 19 (including cases where it is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3 of Article 34-2) (iv) Any person who has given false notification regarding the matters listed in each item of Paragraph 1, and then receives a permit when he/she applied for permit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Paragraph 1 of Article 21 (v) Any person who has violated the provisions in Paragraph 7 of Article 21 (vi) Any person who has violated the provisions in Paragraph 2 of Article 22 (vii) Any person who has violated the provision in Paragraph 1 or Paragraph 2 of Article 23 (including cases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6 of Article 23) or Paragraph 7 of Article 2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5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 제19조 제1항(제34조의 2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3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사람 4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경우, ,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를 해 그 허가를 받은 자 5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6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7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동조 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Article 38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shall be fined up to two hundred thousand yen. (i) Any person who has violated the provision of Article 9 (including cases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5 of Article 21 and Paragraph 6 of Article 22) (ii) Any person who has violated the order pursuant	제38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1조 제5항 및 제22조 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사람

to the provision of Article 25	
Article 39	제39조
If a representative of a juridical person or agent, employee or other staff of a juridical person or an individual, has committed an infraction of the provisions in Article 35 through Article 38 with regard to the business of the juridical person or individual, not only the offender, but also said juridical person or individual shall be also be punished by the fine prescribed in the respective articles.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 및 개인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주는 그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Article 40	제40조
In the case of Article 34, the penal provision of the preceding five articles pertaining to the provisions that are applied pursuant to the Cabinet Order shall be also applied.	제34조의 경우에, 해당 정령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하여는 전5조의 벌칙의 규정도 또한 준용된다.
Article 41(Delegation pursuant to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제41조 (성령 위임)
The Ordinance of the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shall provide fo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and other execution of this Act except delegation to the Cabinet Order pursuant to this Act.	이 법률에 정령으로 위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실행을 위한 절차 및 기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 노동부령에 정한다.

부록7. WHO : 항공기 살충 권고안

I. Introduction

- WHO에서 1995년부터 논의된 항공기 소독과 관련된 쟁점(일반적으로 미 교통부가 다루는 것)에 대한 비공식 자문임
 - 국제 항공기의 발달은 인간, 동물, 식물 질병의 확산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요구할 정도로 증가하였음. 곤충 매개체는 질병을 항공기내의 사람에게서는 물론, 항공기가 머물렀던 장소의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며, 항공기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에 곤충매개체를 유입시킬 수 있음
- WHO 전문가 위원회는 오랫동안 항공기로 인한 질병매개체의 전염에 관심을 가져왔음. 이에 대한 결론 및 권고가 1985년 각 국가에 WHO 권고안으로서 발표된 바 있음. 그 이후 소독에 에어로졸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클로로플루오로카본 가스에 관한 관심이 그 사용을 재고하도록 하고 있음
- 많은 나라들이 착륙 전에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승객이 기내에 있을 때 소독을 시행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음. 항공기에서 스프레이 소독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주는 위험에 대한 관심이 WHO의 조언이 필요하게 될 정도로 증가됨. 또한 항공기 관련 국제 기구 및 대중 사이에 항공기 소독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자문위원회는 특히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를 평가하고 다음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도록 요구되었음
 - 1) 항공기 소독의 필요성 여부
 - 2) 만약 필요하다면, 실행 방법
 - 3) 권고될 수 있는 화학물 및 방법

II. Global perspective

1. Nature and extent of the problem

-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매개체 감염질환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한 질병이 풍토병인 나

라도 있지만, 매개체 및 병원체의 유입 및 재유입이 우려되는 국가도 있음.

○ 5가지 주요 매개체 감염질환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음

질병	오염 국가	위험 인구	사망율	질병율
말라리아	90	2,300,000,000	150만 - 270만	연간 30억-50억건
뎅기/DHF	100	2,500,000,000	25,000	연간 1000만-2500만건
임파성 필라리아	76	1,100,000,000	-	감염자 10억
리슈마니아증	88	350,000,000	-	연간 1200만
브라질 수면병	21	100,000,000	45,000	연간 300만

2. International movement of vector-borne disease 매개체 감염질환의 국제 동향

- 매개체 및 병원체는 육해공을 통해 국가 사이에 전파될 수 있음. 병원체는 감염자 또는 감염 매개체에서 전염될 수 있음
- 공항 및 해항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Aedes aegypti*, *Aedes albopictus*, *Aedes polynesiensis*, *Aedes scapularis*, *Aedes togoi*, *Anopheles gambiae*, *Anopheles albimanus*, *Anopheles barbirostris*, *Anopheles subpictus*, *Culex pipiens*, *Culex quinquefasciatus*, *Culex annulirostris*, *Culex sitiens*, *Culex tritaeniorhynchus*, *Mansonia uniformis*와 같은 모기의 중요성이 증명되고 있음
- 기타 집파리과(Muscidae) 및 노린재과(바퀴벌레, Reduviidae)와 같은 곤충도 모니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다수의 예를 보면, 주로 풍토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감염이 되거나, 감염된 여행자 또는 기타 감염자를 문 매개체로 인하여 감염되는 경우가 많음. 최소한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감염된 매개체가 실제로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운반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음

III. 인간 질병과 그 매개체

1. 말라리아

- 주로 열대 지역에 있는 90여개의 국가에 서식하는 *Anopheles* 모기에 의해 전파. 말라리아 비오염 국가 중에서도 많은 국가가 취약하고 감수성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감염된 말라리아 매개체 또는 인간 말라리아 케이스가 새로운 지역에 운송될 위험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말라리아 구분이 용이함
 - imported malaria : 다른 국가를 방문하여 말라리아가 인간에게 감염된 경우
 - introduced malaria : imported case에서 국부(지역)적으로 감염된 경우
 - airport malaria : 말라리아 지역으로부터 온 항공기에서 반입된 감염된 *Anopheles*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감염, 말라리아가 풍토병이 아닌 국가의 사람이나 항공기 승객과 관련된 경우
 - runway malaria : 말라리아 지역에서 정차하는 동안 공항에서 감염된 *Anopheles*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자에게 병을 얻은 경우

2. 페스트

- 선페스트는 쥐벼룩에게서 전염됨. 인간 페스트는 최근 인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탄자니아, 페루 및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 페스트는 항공기, 선박 기타 운송수단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IHR(1983) 52.60은 쥐 또는 페스트가 국제 운송수단에 있을 경우에 취해야할 조치를 규정함. 이 소독 절차는 특히 항공기 내의 벼룩에 관련한 것임

3. 황열 Arboviral diseases

가. 뎅기열 Dengue and dengue haemorrhagic fever

- 주로 *Aedes aegypti* 모기에 의해 전파. 100여개 이상의 열대 및 아열대 국가에 존재. 1950년대 아시아에서 발발한 이후 그 전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사망률 5%
- *Aedes* 중에서 치명적인 모기는 *Stegomyia*와 *Finlaya*임. 그림 1과 2가 *Aedes aegypti* 와 *Aedes albopictus*

의 분포를 나타내고 3은 탕기열의 일반적 분포, 그림 4는 1970년에서 1995년 사이의 황열 분포를 나타냄

나. 황열 Yellow fever

-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 *Aedes aegypti*, *Aedes africanus*, *Aedes simpsoni*, *Aedes taylori*를 포함하는 10종 이상의 모기종이 바이러스를 전파

다. 일본 뇌염

- 높은 사망률로 인하여,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공중보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심각한 질병임. 주요 매개 모기 종은 빨간집모기(*rice paddy breeding Culex tritaeniorhynchus*)임

4. 기타 인간 매개체감염질환

- 쥐페스트를 제외하고, 진드기 등 체외기생충의 질병에 관한 우려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그것은 직접적으로 항공기에 탑재되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곤충에 대한 공항 주변의 관리는 잠재적인 동물 숙주나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통해 이뤄짐
- 기타 전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요 곤충매개 인간 전염병이 있음. 페 필라리아와 같은 것인데, 전파를 위해서는 감염된 매개체와의 반복적인 접촉이 요구되기 때문에 항공 운송수단을 통해 국제적으로 전파될 위험이 매우 제한적임
- 기타 leishmaniases, trypanosomiasis 및 onchocerciasis와 같은 곤충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은 많은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음. 이는 복잡한 인수공통 숙주 관계, 관련 매개체의 협소한 생물학적 지위, 제한된 전파 가능성 때문임

IV. 매개체 관리

- IHR(1983) 제83조의 검토 결과 해당 규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결과적으로 회원국은 자국의 공중보건, 농업 또는 환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영역 내에서 작동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승객이 기내에 있는 동안 스프레이로 통해 항공기의 기내 및 조정실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 WHO의 권고안

- 첫 번째 권고안 : 1961년 살충제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의 11번째 보고서의 부록 6으로 발간
- 두 번째 권고안 : 1969년 국제보건규칙 첫 번째 판
- 세 번째 권고안 : 1985년 WHO 역학주보(WHO,1985b) 스프레이 소독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 항공기 소독 기술의 진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역학 주보에 권고안을 발표하도록 함
- 네 번째 권고안 : 1985년 WHO 역학주보(WHO,1985c) 항공기 소독의 잔여물 처리
- 다섯 번째 권고안 : 1985년 WHO 역학주보(WHO,1985d) 항공기 소독 절차 과정
- 여섯 번째 권고안 : 1987년 WHO 역학주보(WHO,1987) 나머지 소독 방법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제출, 8주간 내의 소독 주기 권고

1. 소독방법

○ 소독 방법은 2가지로 분류

1. 비행 전 또는 비행 중의 스프레이 소독
2. 잔류성 살충제

1. 에어로졸을 사용한 스프레이

(a) WHO가 권고하는 "Blocks away"

- 승객이 탑승한 후, 탑승구가 닫힌 상태에서 이륙 전에 시행함
- 승무원이 기내를 걸으며, 규정된 적량의 승인된 에어로졸 발포
- 소독전 승객에게 소독 과정 중에 수초 동안 눈을 감거나 얼굴을 가리도록 안내해야 함
- 스프레이 소독이 수행되는 도중에는 항공기 공기 조절 장치를 꺼야하며, 승무원은 화장실, 주방, 옷장, 사물함 등 곤충이 서식가능한 장소에 발포해야만 하며, 사용한 스프레이 깡통은 도착 후 검역 당국의 조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만 한다.
- 화물칸 및 조종실은 출발전에 스프레이하여야 함-조종실은 승무원 탑승 전에 할 것

(b) 비행전 top-of-descent 스프레이

-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기내를 제외하고 "blocks away"와 유사하게 잔류성 살충성분이 포함된 에어로졸을 사용하여 발포할 것
- 스프레이하는 동안 사물함을 열고, 승객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주어야 함
- 비행전 스프레이는 항공기가 공항 도착을 위하여 하강하기 시작할 때, 하강 시점에서 수행하는 비행 중 스프레이 소독 외에 허가될 수 있음
- "blocks away" 처치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 모든 빈 깡통은 모아둘 것
- "blocks away" 조치는 WHO에서 권고하였고, 몇몇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음. 지 조치는 보통 비행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중에 이루어짐. 그러나 스프레이 소독은 깊숙이에 있는 곤충에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는 잔류성 살충제(permethrin 기피제, 페메트린)을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적절한 처치 분량은 부록 3에 참조
- “blocks away” 방법 및 하강시 소독 방법은 부록 4 참조. 하강시 소독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하강 시작하자마자 기내에 스프레이해야 함. 소독하는 동안, 공기순환시스템은 끌 것
- 예비스프레이 처치와 함께하는 “blocks away” 또는 하강시 소독은 효과적이며, 실행하기도 간편함. 주요한 불편은 스프레이하는 동안 기내에 있는 승객에 관한 것임.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탑승 전 스프레이법이 고안되었음. 이 경우 빠르게 작용하는 (d-phenothrin)과 잔류성 살충제(permethrin)의 혼합물이 사용됨. 스프레이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모든 선반 및 화장실을 열어놓은 채로 빠르게 발포됨. 잔류성 살충성분으로 탑승 이후에 들어오는 곤충도 관리됨

2. Residual treatment

- 이 방법의 경우, 항공기의 음식 준비 공간을 제외한 내부표면을, 정기적으로 잔류성 살충제로 스프레이하는 것임.
- 처치는 8주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WHO가 제안하는 방법과 살충제를 사용하여야 함
- 처치 장소를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형광성 염료가 첨가될 수도 있음
- 잔류성 살충 방법은 최대한 효율, 안전을 보장해야만 함. 8주 동안 성분이 효과를 발휘해야하며, 승무원이나 승객이 에어로졸 스프레이에 노출될 필요는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는 항공기 운영이나 비용적인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방법을 모든 항공사들이 차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항공사들이 효과적으로 살충을 시행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선택을 하도록 동의함. 재정적 고려는 항공기 소독 방법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함.

2. 현재 사용되는 약품(preparations)

(a) Aereosols

1. 현재 사용되는 항공기 소독 약품은 WHO가 권고한 2 가지 성분, 즉 d-phenothrin과 permethrin(cis/trans 비율 25/75)과 천연 pyrethrin을 기초로 함. WHO가 권고하는 성분의 단독 사용이 강조됨.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기타 성분의 경우에는 평가서가 제출되어야 함. d-phenothrin과 permethrin의 차이는 주로 잔류 효과임. permethrin은 잔류성 pyrethroid이며 d-phenothrin은 비잔류성 pyrethroid임.

2. 현재 사용되는 약품은 프레온 11과 12, 프레온22 및 CO₂를 기본 추진제로 사용함. 이 추진제들은 현

제 적절하다고 사료되지 않음. 대체물인 HFC134a 및 HFC227ea에 대한 실험이 필요함

3. 현재 사용되는 용매는 WHO가 승인한 매우 적은 양인 0.067%의 석유 증류액이 사용됨. 만약 새로운 적당한 추진제가 사용되려면, 다른 적절한 용매에 대한 실험을 해야 함

4. 항공기 소독을 위한 에어로졸 회사는 많지만, 적절한 상품을 등록하도록 장려해야 함

(b) 잔류성 스프레이

○ 현재 사용되는 잔류성 스프레이는 유화된 응축액인 페메트린 (cis/trans 비율 25/75)을 기본으로 함. 가능한 적은 냄새가 나는 조합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적당한 화학식을 개발해야 할 것임

○ Aerosols - 유효성분을 포함한 물질

2% d-phenothrin

또는 2% permethrin (cis/trans 비율 25/75)

또는 2% d-phenothrin + 2% permethrin

잔류성 스프레이 - 다음 성분이 포함된 유화 응축액

permethrin (cis/trans 비율 25/75)

부록 3. 잔류성 살충 절차

1. 항공기 조종실, 화장실, 사물함 등을 포함하여 항공기의 기내 및 화물칸의 잔류성 살충은 해당 장소에서 정확한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부해야 함. 검역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근 소독한 항공기 명부, 소독날짜를 포함하여야 함. 그렇게 처치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독 증명서를 발부해야 함

2. 화학식- 잔류성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화학식은 다음의 공식에 기초하여 마련된 2%의 페메트린 유상액임

- 유화성 응축액 2 : 38 증류수 - 40%

- 유화성 응축액 2 : 18 증류수 - 20%

3. 용량- 기내 및 화물칸의 내부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정도의량을 필요함

B747 : 25 리터

B767 : 11 리터

DC10 : 16 리터

B737 : 7 리터

4. 처치 수단 : 제안되는 처치 수단은 압축 공기 스프레이건이나 압축분무기임. 전기적으로 민감한 장소에 분무할 경우에는 에어로졸이 사용될 수 있음.
5. 처치 비율 - 이를 달성하기위해서 2%유제를 입방미터당 10ml의 비율로 분무해야 한다. 분무장비가 초당 10ml로 사용되는 경우, 분무가 매초당 입방미터를 커버하게 된다면 적당한 분사량(correct deposit)이 될 것이다. 목적은 동일한 패턴으로 모든 표면에 입자를 조밀하게 분무하는 것이고,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고일 정도가 되어서도 안된다.
6. 소독조치횟수-소독조치는 두 달이상의 간격이 있어서는 안된다. 조치가 인증조건을 충족시켜야하는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나 해외운항에 앞서 제시되는 정도이상으로 잔여살충제 필름이 제거된 경우 잔여소독인증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된다. 항공기가 해외로 운항 중 조치미비가 확인되면 24시간내에 그 조치가 이행되었던 적절한 당국에 고지되어야한다.

승객칸

7. 하부면-항공기 준비에는 개방 및 제거와 모든 락커와 수납장, 보관함을 청소하고, 모든 커튼과 창문블라인드를 열어둔다. 카펫이 있는 경우에는 이도 제거한다. 천정과 벽, 락커, 커튼, 화장실, 주방, 커튼 뒤벽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 분무한다. 문과 락커의 양 측면도 분무한다. 운항중 필요시 카펫은 재분무한다.(주의: 확성기나 응급처치키트,산소통,소화기와 같은 항구이 보존된 장비는 제거하지 않는다. 창문이나 계기판,오버헤드계기판, 회로기판에 분무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이동트레이와 같은 주방기기는 조치할 필요가 없다.)
8. 분무가 끝나면, 분무기의 휘발성물질을 제거하기위해 최소한 한시간동안 에어컨디셔너를 가동시켜야 한다. 거울이나 다른 표면의 경우는 분무방울을 닦아내야 한다. 다른 표면에서 분무액이 닦일때마다 살충필름을 유지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9. 실제로 닦여진 구역은 보충적으로 '터치업(touch-up)' 스프레이를 시행한다(살충필름을 제거하기위해 닦여나간 곳) 그러나, 조치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내부세척이나 오염된 품목의 교체는 전체 프로그램맥락에서 중요치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재조치할 필요가 없다.

짐칸

10. 짐칸과 천장 바닥에 분무한다. 측면이나 바닥공간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작업자 안전

11. 분무작업간에 전신작업복, 분진마스크, 캔형호흡기를 착용하도록 권고된다.

인증과 관리

12. 조치는 항공기조작자나 잔여살충협정 조항에 일치하는 대리인에 의해 이행되거나 해당권한이 있는 항공기 조작자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매뉴얼내에 기술되어 있어야하며, 조치의 효율성테스트를 위한 적절한 형식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권한은 효율성을 모니터하는 권한과 테스트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13. 모든 조치받은 항공기는 검역관에 의해 요구되는 검사조치를 증명해주는 인증을 수행해야한다.

부록8. 호주 Schedule of Aircraft Disinsection Priocedures

1. 서언

이것은 뉴질랜드의 농업산림부(Agriculture and Forestry, MAF) 검역팀(Quarantine Service, MQS)와 뉴질랜드와 호주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항공기 구제 장치(aircraft arrangements)를 관리하는 호주 검역 감시팀(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 간의 공동 문서이다.

1.1. 입법 권한

뉴질랜드 생물안전법 1993(Biosecurity Act 1993)과 호주 검역 규정 2000의 규정 23은 항공기의 기장(master), 혹은, 만약 기장이 항공기를 작동할 수 없다면, 항공기의 조작자는, 질병 매개체와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역관에게 승인된 방법으로 항공기 처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1.2. 일반 조건들

이 항목은 항공회사의 직원이 항공기와 조작방법에 적절하고, 페스트와 질병 매개체를 구제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으로 유래되었다.

1.3. 정당성

국제 항공기의 구제 이유는 인간 질병 매개체의 범위로부터 호주와 뉴질랜드를 보호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동물 및 식물 해충을 검역하기 위함이다. 표본조사들은 현재 국제 항공기에서 결정적으로 그런 해충들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며, 질병은 이런 해충에서 창궐된다. 승인된 소독은 해충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표적으로 한다.

아래 절차들은 해외로부터 호주와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구제를 유지하고 조종실과 관련된 항공기의 작동 및 의무를 설명한다.

1.4. 승인된 기내 구제 방법

1.4.1. 잔류성 소독(Residual)

모든 영역의 잔류성 소독은 이 문서의 Section 4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여 적용된다. 이 방법의 승인은 MQS/AQIS의 구제 감시 승낙 협정을 만족하는 협상을 조건으로 한다.

1.4.2. 탑승 전(前) 소독

호주나 뉴질랜드로 들어오기 전 마지막 항에서 잔류성분이 있는 소독 약품을 사용하여 조종실, 화장실, 선반 및 옷장, 주방, 승무원휴게실 및 기내에 하는 비행전 분무 소독

1.4.3. 하강시 소독

하강시 소독은 비행전과 하강시의 분무 소독의 2 부분으로 구성됨

조종실, 화장실, 선반 및 옷장, 주방 및 승무원휴게실에의 잔류성분이 있는 소독 약품을 사용한 입항 전 마지막 항에서 하는 비행 전 소독

하강기 승객이 있는 기내에 분무 소독 - 최저한의 용량

1.4.4. 도착시 소독

잔류성 소독, 하강시 또는 탑승전 소독 방법으로 정확하게 소독, 살충하지 않은 항공기나 유효한 살충 증명서가 없는 항공기는 검역관의 감독 하에 도착하여 소독하여야 함

2. 기내 및 화물칸의 잔류성 살충

- 조종실, 화장실 및 사물함을 포함한 기내 및 화물칸에 잔류성 소독은 검역소 및 각각의 항공사가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이 협의에는 각 항공사들이 항공기 소독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도록 하여야 함(그 내용으로는 처리된 항공기 명부, 처리 완료일 등 포함할 것)
- 그렇게 처리된 항공기는 잔류성 소독 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함

2.1. 화학식

- 잔류성 분무 소독에 사용되는 공식은 cis-trans 비율 25/75의 유효한 2% 페메드린 유상액임. 이것은 - 83 parts 증류수에 85% 유화성 응축액 2 parts 혼합물 또는 48 parts 증류수에 50% 유화성 응축액 2 parts 혼합으로 할 수 있음
- ※ 습윤성 가루 및 현탁 응축액은 유화성 응축액을 대신할 수 없음

2.2. 용량

- 기내 및 화물칸의 내부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정도의량을 필요함

B747 : 33 리터

A330/340 : 18 리터

B767/A310 : 12 리터

B777 : 19 리터

DC10 : 16 리터

B737 : 7 리터

B727 : 6 리터

B737 : 7 리터

- 기타의 항공기는 검역 당국에 문의할 것

2.3. 처치 수단

- 잔류성 소독은 반드시 검역당국이 승인한 기관이 처리해야만 함.
- 제안되는 처치 방법은 압축 공기 스프레이건, 연무 또는 압축 분무기임. 검역당국은 에어로졸(퍼메드린 2%)을 전기적으로 민감한 장소나 조종석에 분무하도록 할 수도 있음

2.4. 처치 비율

- 카펫 및 화물칸 바닥을 제외한 내부 기내에는 평방미터 당 0.2g의 비율이 요구되며, 카펫 및 화물칸 바닥은 평방미터 당 0.5g 요구됨. 소독 잔유 성분이 바닥에 평균 0.5g/m² 가 되도록 할 것. 이것은 모든 표면에 고르게 분사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5. 처치 비율의 응용

- 처치 비율 방법 변경은 검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2.6. 처치 절차

- 내부 표면 : 모든 사물함, 찬장, 보관함을 열어 청소하고, 커튼과 창문 블라인드는 모두 열 것. 카펫이 있다면 치울 것. 천장, 벽, 사물함, 커튼, 화장실, 조정실, 주방, 커튼 뒤의 벽의 모든 표면에 분무할 것. 문 양쪽과 사물함 뚜껑에도 분무할 것
- 반복적으로 상당한 양의 청소가 이뤄지는 부분은 퍼메드린 에어로졸 “touch up” 스프레이가 요구됨. 청소로 살충 성분이 제거되기 쉬운 장소인 벽 구석, 사물함 뚜껑, 화장실, 주방 등임
- 카펫의 재배치나 벽이나 시트의 제거 또는 추가와 같은 항공기 변형은 그 부분의 재처치가 필요함
- 그러나 처치 상태 이외의 상대적으로 약한 정도의 내부 청소 및 물품 재배치의 경우는 재처치가 요구되지 않음

- 화물칸 : 화물칸 벽, 천장, 바닥에 분무할 것. 옆 벽과 바닥의 움푹한 곳은 특별히 신경 쓸 것

2.7. 처치 간격

- 처치는 8주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는 안 됨. 증명서가 요구하는 정도를 만족할 정도의 처치를 할 수 없거나, 청소 단계에서 살충 필름이 제거된 경우, 잔류 소독 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8. 감독 및 증명서

- 처치는 항공기 조종사 또는 그 대리인이 수행 또는 관리하여야 함. 검역당국은 또한 효과를 계속 감독할 권리가 있음
- 잔류 소독 증명서는 검역당국이 승인한 기관에서만 발부되어야 함.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 소독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음.

○ 항공사의 분무 소독

분무 소독은 MQS/AQIS에서 승인한 에어로졸을 포함하여 완료해야만 한다.

항공기 구제에 해당하는 압축 불활성 가스는 호주 국립 등록 당국 그리고/혹은 뉴질랜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만 한다.

(승인된 압축 불활성 가스는 HFC134a 혹은 134a 그리고 HCFC 141b의 혼합체이다.)

모든 분무 용기는 호주 Standard AS2278을 따라야만 한다.

요구된 분무 형식들

- 1) Pre-spray: 퍼메트린(permethrin) 2%
(Pre-spray 하에 열거된 분무의 양은 Pre-spray, Pre-embarkation 혹은 Arrival spray에 요구된 것이다.)
- 2) Top of Descent d. 퍼메트린 2%
- 3) Hold Spray: 퍼메트린 2%와 d. 퍼메트린 2% 혼합

(열거되지 않은 항공기 형식에는, 항공기의 구제 요구사항 권고를 MQS/AQIS로부터 받아야한다).

Airbus A300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200g	2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200g	Pre-spray는 비행 갑판와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Airbus A310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100g	1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200g	Pre-spray는 비행 갑판와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Airbus A318/A319/A320/A321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100g	1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100g	Pre-spray는 비행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Airbus A330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300g	2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300g	Pre-spray는 비행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Airbus 340 (A340-600을 제외한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300g	2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300g	Pre-spray는 비행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Airbus A340-600 모델에만 적용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300g	200g		300g	300g
화물수송기	50g	300g	Pre-spray는 비행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300g	300g

Antonov AN124&AN22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화물수송기	100g	700g	화물수송기에만 적용 화물칸이 없음. Pre-spray는 비행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강하 시작 고도(Top of Descent)는: 항공기 상갑판 100그램 항공기 주갑판 600그램

British Aerospace BAe 146 (100/200/300)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100g	1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1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Boeing B707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100g	1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1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Boeing B717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100g	1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1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Boeing B727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100g	1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1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Boeing B727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	100g	1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1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Boeing B747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100/200/300/400	400g	400g	Combi 혹은 SP 아님.	300g	300g

Boeing B747 COMBI

Model	Cabin Pre-spray	Cabin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주요 조종실	300g	300g	주갑판은 항공 기 후부에 짐 칸이 있음.	300g	300g
주갑판 짐칸			150g (Hold Spray)		

Boeing B747 SP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300g	300g		150g	150g

Boeing B747 Freighter 모든 모델**Pre-embarkation**

Model	Pre Embarkation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 수송기	400g	주갑판과 위층 선실은 50g 주갑판은 350g	300g	300g

Boeing B 747 Freighter 모든 모델**Pre-spray & 탑승 하강 고도 분무**

Model	Pre-spr 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 수송기	100g	4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 장실에만 해당.	300g	300g

Boeing B 757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100g	1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1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Boeing B 767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200g	2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2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Boeing B 777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300g	300g		300g	300g

Boeing KC135 Stratotanker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만 해당		100g	화물칸 없음(이 영역은 연료탱크만 포함)		

Fokker F28/F100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100g	1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1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Ilyushin IL76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만 해당		200g	화물칸 없음		

Lockheed D5 Galaxy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승객수송기만 해당		700g	승객수송기만 해당. 화물칸 없음. 강하 시작 고도(Top of Descent)는: 항공기 상압판 100그램 항공기 주압판 600그램

Lockheed C17 Globemaster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만 해당		200g	화물칸 없음		

Lockheed C130 Starlifter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만 해당		200g	화물칸 없음		

Lockheed L-1011 Tristar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200g	2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200g	Pre-spray는 항공기 압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Lockheed P3 Orion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만 해당		100g	화물칸 없음		

McDonnell Douglas DC8 (시리즈 10~50)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100g	100g	시리즈 10대에서 50대에 적용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100g	Pre-spray는 항공기 압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McDonnell Douglas DC8 (stretched series 60&70)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Hold
승객수송기	100g	100g	시리즈 60대와 70대에만 적용	각 화물칸
			대부분 이런 항공기는 4개의 객실 아래 화물칸이 있음.	150g
화물수송기	50g	1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McDonnell Douglas DC9/MD80에서 MD90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100g	1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1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McDonnell Douglas DC10 (시리즈 10과 30)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200g	200g	DC 10은 후부 짐칸과 큰 짐칸 사이에 벽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bulkhold는 분리하여 150g 분무가 요구된다.	150g	150g
화물수송기	50g	200g	Pre-spray는 항공기 갑판과 화장실에만 해당.	150g	150g

McDonnell Douglas KC 10 Extender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만 해당		200g		150g	150g

McDonnell Douglas MD11 모든 모델

Model	Pre-spray	TOD Spray	Comments	Front Hold	Rear Hold
승객수송기	200g	200g		150g	150g
화물수송기	200g	200g		150g	150g

부록9. 네덜란드 Schedule of Requirements Ship Sanitation

네덜란드 Schedule of Requirements Ship Sanitation
▶ 주방 □ 위생 및 식품 안전 지식 확인 사항 주방 일꾼들이 개인 위생, 청소, 위생적 준비 방법, 온도 및 저장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최소 요건으로 주방 일꾼들이 다음의 경우에 있어 물과 액상 비누로 손을 씻는지 확인할 것 - 일을 시작할 때 및 휴식 시간 후 - 하던 작업이 변했을 때 - 날 식품을 다룬 후 - 화장실에 다녀온 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 한 후 - 음식 서빙 전
확인 사항 교육 및 갱생 교육 코스가 구비되어있는지 증명할 것 각 직원들이 수료한 식품안전에 관한 주방 일꾼들을 위한 훈련, 지도 및 갱생 교육 코스를 기록할 것
□ 식품 수령 확인 사항 식재료를 받을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을 기록할 것 식품이 깨끗한지, 상처는 없는지, 품질이 좋은지, 배에 실을 당시에 WHO Standard 2.3.3에 있는 온도였는지 확인하고 일지에 기록할 것 품질유지기간 및 유효일을 기록할 것 기준 미달인 식품은 수령하지 말 것 식품 저장에 있어,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하라는 원칙을 채택할 것 식품 수령 시에 해충의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일지에 기록할 것
□ 저장과 음식 준비 확인 사항 일주일에 한번 냉장 및 냉동고의 온도를 확인하고, 일지에 기록할 것

식품을 포장해 놓고, 품질유지기간을 식품에 부착해 놓을 것

음식 준비대가 깨끗한지 확인할 것

부드럽고 씻을 수 있는 물질만을 사용할 것

냉장 식품 및 냉동 식품을 냉장고 또는 냉동고 밖에서 오래 두지 말 것 (최대 30분)

날 음식은 그 중심부까지 75°C (167°F)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거나 요리할 것. 스테이크 같은 내부 오염 우려가 없는 식품은 제외. 이 식품은 45°C (113°F) 이상으로 가열해야 함

7°C (44°F) 이하의 온도로 5시간 이내동안 식힐 것

□ Service

확인 사항

뷔페, 서빙 구역 및 샐러드 바의 음식에 뚜껑(sneeze-guard)을 덮어두는지 확인할 것

가능하면 음식은 포장할 것

젓가락, 포크 또는 기타 서빙 기구를 요리 옆에 비치해 두고,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

외부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밀폐된 칸에 음식을 보관할 것

뜨거운 요리는 60°C (140°F)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 서빙할 것

차가운 요리는 7°C (44°F)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 서빙할 것

□ 세수대

확인사항

주방에 세수대를 마련할 것. 이것은 직원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함

세수대에는 비누, 일회용 핸드타월 및 화장지통 또는 핸드 드라이어를 비치할 것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주방 및 기타 식품 준비 및 처리 장소에는 분리된 세수대를 설치하고, 계속 사용할 것

세수대에는 비누, 일회용 핸드타월 및 화장지통 또는 핸드 드라이어가 비치된 것을 확인할 것

세수대는 오로지 손을 씻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표시할 것

세수대는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2.6 Cleaning, Maintenance and Waste

Check List

청소 절차 및 청소 일정에 따라 청소 및 작업할 것

작업 후에는 주방을 청소하고 남아 있는 음식이 없음을 확인할 것

열거된 청소 목록의 사항을 시행하고, 해당 사항을 체크할 것

주방 관리 계획표에 시행하고 따를 것

주방 및 장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것

식품을 포장하고 봉하여서 해충이 꼬이지 않게 할 것

사전에 정해진 쓰레기 저장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작업할 것

쓰레기 용기를 밀봉하고, 넘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비울 것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각 장소마다 청소 및 살충 시기와 방법을 표시하고 이것을 청소 계획표에 기록할 것

각 장소마다 물품의 교체 및 관리 빈도 수를 표시하고, 관리 계획표에 기록할 것

☐ 2.7 Construction and Layout

Check List

주방 설계 및 장비 위치가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해충이 달아날 수 없도록 할 것

주방 바닥이 불침투성이고 청소하기 쉬도록 할 것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표면과 재질이 양호하고, 매끄럽고, 세척가능한지 확인할 것

식품 접촉 표면은 질이 고르고, 독성이 없을 것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방을 축조하고 밀폐할 것

☐ 2.8 Personal Hygiene

Check List

주방에서는 오직 음식 준비와 관련된 업무만을 할 것

음식 준비 장소에는 승인된 일꾼들만이 출입할 것

☐ 2.9 Drinking Water

Check List

주방에는 온냉 식수 공급 장치를 설치할 것

식품 준비 및 처리에는 식수만을 사용할 것

☐ 2.10 Ventilation and Extraction Systems

Check List

환기 장치가 바르게 사용되고 있고,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물방울 응결을 막을 것

□ 2.11 Lighting

Check List

주방의 조명이 식품이나 주위 환경의 더러움이나 식품 오염을 조사하는데 적절한 지 확인할 것

▶ 3 PANTRY AND STORES

□ 3.1 Structural Condition

Check List

내부의 위생상태가 청결하고, 구조적으로 튼튼한지 확인할 것

내부가 매끄러운 불침투성 재질로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할 것

□ 3.2 Food Storage

Check List

식품은 바닥에서 최소 15 cm (6 in) 위에 보관할 것

창고에서 품질유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냉장, 냉동, 건조 식품)

식품 및 포장지 상하지 않았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물이 창고에 들어갈 수 없는지, 오염이 발생할 수 없는지 확인할 것

식품을 포장하고 밀봉해서 이물질, 먼지, 위험한 증기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화학물질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

날 음식과 준비된 음식을 분리해서 보관할 것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냉장 장소 (냉장고 및 냉동고 등)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할 것

식품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 1개의 온도계가 있는지 확인할 것

냉장 식품은 최소 4°C (40°F). 아래에서 보관할 것

냉동 식품은 최소 -12°C (10°F). 아래에서 보관할 것

보관 장소의 온도를 매주 확인하여 기록할 것

식품 저장 장소에 청소 용품 또는 유사 물품을 보관하지 말 것

식품을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다른 물건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식품에 품질유지기간을 붙일 것

☐ 3.3 Temperature

Check List

뜨거운 요리는 60°C (140°F) 이상에서 보관할 것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육류 및 생선 가공품은 4°C (40°F) 이하에서 보관할 것

과일, 채소는 7°C (44°F)에서 10°C (50°F) 사이의 건냉한 곳에 보관할 것

냉동 식품은 -12°C (10°F) 이하에서 보관할 것

냉장 식품은 7°C (44°F)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꺼내놓지 말 것

4 HOLDS

☐ 4.1 Holds

Check List

창고를 날씨 상태, 물, 해충의 유입으로부터 보호할 것

화물은 공개된 창고에서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오염 및 해충의 신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4.2 During Inspection

Check List

조사하는 동안 가능한 창고를 비웠는지 확인할 것

철저한 조사를 방해하지 않은 물건만을 보관할 것

밸라스트 워터가 철저한 조사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만 있는지 확인할 것

5 QUARTERS, CREW MEMBERS AND OFFICERS

☐ 5.1 Layout Requirements for Crew Accommodation

Check List

승무원 숙박시설은 ILO C133 conventions³ (1970)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숙박 장소가 깨끗하게 잘 관리되는지 확인할 것

오염의 신호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승무원 숙박시설의 조명이 주변의 더러움이나 해충을 조사하는데 적절한지 확인할 것

3 C133 Accommodation of Crews Convention ILO, 1970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C133>)

6 POTABLE WATER

☐ 6.1 Construction and Materials

Check List

식수용으로 제작된 탱크, 호수, 밸브 및 장비를 사용할 것

식수용 파이프는 분명히 구별가능한 표시를 할 것. 이것은 글자 표시 (마시는물) 또는 색깔로 구별할 수도 있다.

□ 6.2 Drinking Water Tanks

Check List

식수 탱크가 선체 또는 다른 탱크 및 식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이프와 같은 벽을 공유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탱크 오염의 결과로 식수에 상호 오염되지 않게 할 것

스테인리스스틸과 같은 오염을 막는 재질의 탱크를 사용할 것

식수용 탱크 주변을 깨끗하고 해충 유입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작업이나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오염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탱크를 둘 것

식수용 이외의 파이프가 식수 탱크를 통과해서는 안됨

온도가 20°C (68°F). 이하가 유지되는 장소 내에 탱크를 둘 것

조사, 관리 및 청소 목적의 조사 해치가 있는지 확인할 것

녹, 먼지 기타 오염원을 확인하고 발견될 경우 제거할 것

물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밸브를 탱크에 설치할 것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식수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

식수 조사 결과는 특수목적의 일지책에 기록하였음을 증명할 것

매일 식수내의 잔여 염소량을 확인하여 기록할 것

결핍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 조치가 효과적임을 확인할 것

일지에 식수가 공급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기록할 것

물이 다른 기계 장치에서 식수 공급 장치로 역류할 수 없음을 시스템 도식으로 증명할 것. 이것은 관련 장소에 위치한 역류불가 밸브나 역류를 예방하는 기타 시스템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

역류 불가 밸브가 잘 기능하는지 매 6달마다 확인하고, 서면으로 검사 결과를 기록할 것

조사 해치가 조사하는 동안 접근가능한지 확인할 것

□ 6.3 Drinking Water Systems

Check List

식수를 정화하고 미생물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선내에 저장된 식수가 충분한 수질인지에 관한 질 관리 보고서를 증명할 것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 계획된 방법에 따라 수질 테스트 수행 절차를 기록할 것

일지에 수질테스트 결과를 기록할 것

수질이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이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

취해진 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것

역류방지 밸브 또는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 다른 장비로부터 식수에 역류되지 않도록 할 것

□ 6.4 Drinking Water Quality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식수의 질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기록할 것

일지에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할 것.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취해진 방법을 증명할 것

식수가 보호되는 방법을 증명할 것

급수 호스 연결 장치가 오직 식수용 호스에만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것. 다른 종류의 호스에 연결가능해서는 안됨.

식수용 급수 호스를 적절히 표시할 것

7 SEWAGE

□ Sewage System

Check List

하수구 시스템이 잘 건조되고 견고하며, 누수방지 및 다른 시스템과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

하수 용량이 적절하지 확인할 것

누수를 예방하고, 넘치지 않도록 할 것

하수가 버려진 장소를 기록할 것

오수 처리 장치가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기능하는지 확인할 것

8 BALLAST TANKS

선박은 매년 수백만톤의 밸라스트 워터를 전세계로 싣고 다님

밸라스트 워터는 프로펠러를 물 아래에 있게 하고, 적절한 안정성 및 안전을 위해서 필요함.

선내의 밸라스트 워터는 그 운반 및 이후의 폐기로 인해 세계의 다른 지역의 물들이 혼합되게됨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밸라스트 워터가 바다에서의 배의 안전을 보장한다

고 하더라도, 원래 장소 이외의 위치에 그것을 버리는 것은 환경 및 경제 문제를 약기할 수 있음. 밸

라스트 워터는 원래 지역과 다른 곳에 버려질 경우, 다른 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미생물 및 병원체를 가지고 있음. 전염병이 밸라스트 워터에 있는 병원성 미생물로 인해 확산될 수

있음.

☐ 8.1 Ballast Water Valves

Check List

밸라스트 워터 밸브는 밀폐된 장소에 비치해야 함

우연한 또는 승인되지 않은 밸라스트 워터 폐기를 예방할 것

지역 항구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밸라스트 워터를 버릴 것

IHR 및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

Ballast Water and Sediments의 요건에 따라 진행할 것

IMO 868-207 서식 및 선박 등록 서류를 제시할 것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 Ballast Water and Sediments

(http://www.imo.org/Conventions/mainframe.asp?topic_id=867)

9 SOLID AND MEDICAL WASTE

☐ 9.1 Waste Storage

Check List

쓰레기 보관 장소 및 용기가 해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것

☐ 9.2 Medical Waste

Check List

의료 폐기물은 분리되고 봉합된 쓰레기 용기에 보관할 것

상호 오염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것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특수목적 용기 및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보관할 것

이 쓰레기 보관 장소 및 시설이 밀봉과 해충의 유입으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할 것

쓰레기 보관 장소 및 시설을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문자 또는 색깔을 이용하여 표시할 것

일반 쓰레기와 의료폐기물을 적절히 분리되는지 확인할 것

어떤 지역이 어떤 쓰레기를 위한 지역인지 확실히 표시할 것

☐ 9.3 Waste Disposal

Check List

의료 쓰레기 폐기는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쓰레기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쓰레기 처리 회사와의 계약 및 등록 수단을 사용하여 증명할 것

□ 9.4 Waste Disposal Plan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쓰레기 관리 계획이 비치되어 있음을 증명할 것

이 계획에 따라 쓰레기가 보관 및 폐기되어야 하는 방법을 쓰레기 관리 계획에 기록할 것

쓰레기 관리 계획이 항상 접근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것

10 STANDING WATER

□ 10.1 Standing Water Locations

Check List

정기적으로 구멍보트, 하수구, 공기 정화 시스템 주위의 고인 물이 있는지 확인할 것

있다면 고인물을 제거할 것

11 ENGINE ROOMS

□ 11.1 Engine Room

Check List

정기적으로 엔진실, 엔진덮개 및 절연물질을 점검하고 해충 유입의 신호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2 MEDICAL FACILITIES

□ 12.1 Medical Rooms and Facilities

Check List

아픈 승무원을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할 것. 이것은 일시적인 공간일 수도 있음.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것

방이 깨끗한지 확인할 것

적절한 프라이버시를 확인할 것

장비 및 재료가 매끄럽고 씻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이것은 그것들이 적절히 청소될 수 있음을 확인함

정기적으로 의료 설비를 관리하고 이것을 일지에 기록할 것

청소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 후에 의료 설비를 살균할 것

세수대에서 액상 비누, 일회용 타월 및 식수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

수행된 모든 의료적 처치를 기록할 것

의료장비지시서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외부의 의학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의료 바늘을 공인(예를 들어 UN 공인)된 바늘 용기에 보관할 것

의료 폐기물은 분리 및 밀봉된 쓰레기 용기에 보관할 것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장비가 깨끗하고 결점 및 녹이 없고 흠이 없음을 확인할 것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을 위한 관리 계획을 비치하였음을 증명할 것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청소 및 살균할 것

진료 장소에 비누, 일회용 핸드 타월, 쓰레기통 또는 핸드 드라이어를 포함한 적절한 세수대를 설치할 것

□ 12.2 Performing Medical Procedures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의료진이 응급 치료에 대한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것

□ 12.3 Medication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의약품은 자격있고 능력있는 직원만이 투여하여야 함

투여된 모든 의약품을 재고품 목록표에 기록할 것

의약품 저장 수명이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것

제약회사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보관할 것

□ Illness Registration

Check List

모든 승무원의 질병을 기록할 것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의료진이 진료 기록을 충분히 알고, 접근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것

일지에 치료받은 사람의 질병 및 처방된 약물을 기록할 것

일지가 조사 기간 동안 항상 접근 가능한지 확인할 것

일지를 항상 안전하게 보관할 것

일지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것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야 함

일지를 최신으로 유지할 것

일지에는 최소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할 것

- 1) 환자의 첫 방문일, 환자 이름, 나이, 성별
- 2) 승객 또는 승무원 여부
- 3) 승무원의 지위
- 4) 객실 호수
- 5) 발병 시기 및 시간
- 6) 질환 증상
- 7) 샘플 또는 기타 관련 조치에 관한 기록

☐ 12.5 Infectious Diseases

Check List

주방 직원이 전염병 증상 또는 기타 급성 의학적 문제를 보일 경우에 대응하는 법을 기록할 것

직원들이 그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증명할 것

황달, 구토, 설사, 멀미, 열, 피부 감염 또는 종기 또는 귀/눈/코의 고름이 있는 직원이 주방에서 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확인할 것

☐ 12.6 Patient Confidentiality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개인진료정보를 기밀로 처리할 것

개인비밀정보와 관련한 동의가 적절함을 제시해야한다.

의료진이 개인비밀정보와 관련한 동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음을 확인할 것

13 SWIMMING POOLS AND SPAS ON PASSENGER SHIPS

☐ 13.1 Technical Requirements

Check List

안전한 휴양 수질 환경에 관한 WHO가이드라인-수영장, 온천 및 유사 휴양 수질 환경 2004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준수를 확인해야한다.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위험분석을 확인해야한다.

- 수영장의 종류
- 주변구역
- 고객행동
- 개인책임
- 물의 투명도
- 잠재적인 미생물학적 생물학적 위험
- 잠재적인 화학적 위험
- 잠재적인 신체적 물리적 위험

위험분석에따라 잠재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개략 설정한다. 그 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정기적 수질관리
- 세척및 소독
- 유지
- 안전

□ 13.2 Water Supplies

Check List

수영장이나 스파에서의 역류방지 밸브의 위치

이것은 공기잠금방식이나 역류방지밸브 혹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능

수영장을 사용하기전에 바닷물을 소독

이 방법은 화학적으로 수행된다. 염소나, 물리적 방법, UV처치나 여과

소독은 수영장이나 월풀이 고유량(빠른 유속) 펌프시스템으로 작동이 원활하면서 오염이 없음을 매일 확인할수 있는 경우는 요구되지않는다.

오염에 대해 매일 확인한다(미생물, 물리적, 화학적)

기입장에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영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입장에 유지활동을 기록하여야 한다.

14 OTHER AREAS

☐ 14.1 Transportation of Animals and Pets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선상에 동물의 출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위생과 관련된 규칙을 분명히 해야한다.

동물과 관련해 선상에서 기본적으로 위생과 관련된 규칙에 관해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애완동물이나 동물에 대해 지정된 한계구역에 관하여 서면으로 된 지시사항을 승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목적지 국가로부터 허락을 득함이 없이는 하선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동물소유자는 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정보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 14.2 Faecal Contamination Incidents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요구가 있는 경우, 분변오염사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개관이 필요하다

모든 승무원이 이러한 과정에 익숙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 14.3 Infestation Control

Additional Requirements for Large Ships

Check List

통합애완동물관리 계획이 어떻게 해충의 발생을 예방하거나/고 퇴치할 수 있는 지를 설명하는데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그 발생위치가 그들의 출현을 감시해야하고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시오

부록10. 호주 Mandatory Ballast Water Management Requirments

호주 Mandatory Ballast Water Management Requirments
2001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ballast water를 통해서 호주 해양 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수상 생물로 인한 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밸라스트 워터 관리 요강(mandatory ballast water management requirements, 이하 요강)을 도입함 밸라스트 워터 관리 요강(mandatory ballast water management requirements)은 검역법 1908을 근거로 하여 집행되고 있음 AQIS가 호주 영해 밖에서 들여지는 ballast water를 규제하고 있으며, 호주 해안선으로부터 12 해리 내에 있는 지역에서 버려지는 외국의 ballast water 관리 작업이 호주 ballast water 관리 요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업무임 호주 ballast water 관리 요강은 선박 내의 ballast water와 그 침전물로 인한 위해 수생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Ballast Water Convention에 따른 것임 호주 ballast water 관리 요강에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Ballast Water Convention을 보다 개선하여서, 더 실용적임 ballast water를 관리하는 선원은 무엇보다, 선박과 그 승무원들의 안전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순차적인 교환(비우기/채우기) 방법을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더 그러함. 작업의 매 단계에서의 선박의 안정성, 중압과 출렁임 등이 작업 시행 전에 미리 계측되어야 함 Mandatory ballast water management requirements :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호주 내에 있는 항만과 바다에 버리는 것은 금지됨 고위험성 ballast water (High Risk Ballast Water) 호주 연방 정부 요건 : AQIS는 호주 영해 밖의 항구 및 해안에서 들여진 모든 염수를 호주 안으로 외래 해충을 유입시키는 “고위험성”이라고 간주함 다음의 ballast water는 저위험성이라고 간주함 ① 상대밀도 1.002 또는 15℃ 및 1000hPa 기압 이하에서 가져 온 담수 ② 승인된 장소 (mid-ocean)에서 승인된 방법으로 교환된 ballast water ③ 최소 95% 이상이 mid-ocean에서 가져온 ballast water ④ 최소 95% 이상이 호주 영해에서 가져온 ballast water

호주 주 정부 요건 :

AQIS는 호주 영해 또는 호주 영토 내의 항구에서 가져온 ballast water의 관리는 규제하지 않음. Victoria 주와 territory들은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70에 의하여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빅토리아 주 정부의 환경보호국)이 관할 하에, 호주 국내의 ballast water 관리에 대해 부가적인 요건을 마련하고 있음

AQIS는 빅토리아 항 내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ballast water를 규제하는 권한을 가짐

EPA Victoria는 빅토리아 항구에 방문하는 모든 선박에게 ballast water 신고서 및 선내의 ballast water 공급 일지를 제출하도록 함. 호주 내의 ballast water 배출은 EPA의 서면 승인 없이는 빅토리아 바다에서 허락되지 않음

빅토리아 바다 (해안에서 12해리)에 호주 ballast water를 버리려면, 빅토리아주 요강에 따라야 하며, www.epa.vic.gov.au/ballast_water에서 그 요강을 참조할 수 있음

호주에 방문하는 모든 선박의 장은 방문하려고 하는 모든 호주 주/territory 정부의 ballast water 관리 요강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

Ballast water management options

각 선박은 ballast water 관리 계획 (ballast water management plan, 이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vessel's Classification Society의 보증을 받아야 함. 관리 계획은 선원들에게 낱씨, 배의 중량, 안정성 및 출렁임에 따라 ballast water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함

선원은 다음의 ballast water 관리 방법을 선택, 사용할 수 있음

① 호주 항구 또는 바다에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배출하지 않기

호주 바다에 ballast water를 배출할 필요가 없는 선박은 법에 따른 ballast water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없지만,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영해 내로 운반하는 것은 되도록 자제해야 함

고위험성 ballast water 배출에 대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반복적으로 ballast water 관리 요강을 위반한 선박의 경우에는, 자비로, 호주 항구의 도착 및 출발 시에 고위험성 ballast water가 호주 방문 기간 동안에 배출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해양 조사관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음

② Tank-to-Tank 교환

호주 내로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운반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는 합법임. 또한 영해 내에서 선박 안에서 탱크와 탱크를 통한 고위험성 ballast water 이동도 허가될 수 있음. 이 방법을 사용하는 선박의 장은 ballast water 교체 작업 동안 허가되지 아니한 ballast water 배출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히 관리해야함. 위반 시에는 상당한 제재가 있음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 및 기타 전문 선박의 경우에는 그 안정성 및 중량 때문에 모든 ballast water를 선박 위에서 교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함. 교역을 위한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주 항구 및 바다에서 ballast water를 배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따라, AQIS는 이런 종류의 선박은 다음 종류의 탱크로 ballast water를 교체하도록 권고함

-호주 영해 내에서 배출할 필요가 있는 탱크

-하역 작업으로 인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선박 내에서 교체될 필요가 있는 탱크. 교체를 위한 원인 탱크나 교체 탱크 모두 오직 저위험성 ballast water만을 보관하고 있을 것.

③ 바다에서 모든 ballast water 교체

연속 교환법 (비우기/채우기) - Sequential exchange(empty/refill) method

flow through 법 - Flow through method

희석법 - Dilution method

각 방법은 고위험성 ballast water의 95%이상의 용적 교환 성과를 나타냄. ballast water교체는 영해 밖에서 이뤄져야 하며, 가능한 육지에서 멀리 그리고 최소 200m 깊이에서 이뤄지도록 권고됨

연속 교환법 (비우기/채우기)

이 방법은 심해에서 깨끗한 물을 채우기 전에, 바다에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탱크(한번에 1개 또는 2개씩)에서 비우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 방법에 의한 ballast water의 혼합에 있어 고위험성 ballast water가 5% 미만인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 (모든 배들은 그 안정성 및 중량과 출렁임 때문에 바다에서 ballast water 탱크를 모두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Flow-Through Method

95% 이상의 교환을 위해서 각 탱크에 각 탱크 최대 용량의 최소 300% 이상의 심해의 깨끗한 물을 펌핑하여 흘려보내는 것. 물을 흘려 보내기 전에, 탱크에는 오직 부분적으로는 고위험성 ballast water가 채워져 있을 것

희석법

유조선과 같은 선박의 경우 여분의 piping/pumping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러한 선박은 ballast water를 탱크 한쪽에서 끌어들이고, 동시에 반대편쪽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음.이러한 경우도 가능하며, 각 탱크의 최대 용적 300% 이상의 물을 쏟아부어야 함

AQIS가 ballast water 교환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ballast water 교환 작업에 관한 실시간 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뤄짐

실제 고려 사항

선장은 연속 교환 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을 주의하여야 함

탱크의 깊이와 남은 용량을 탱크가 비워진 상태에서 기록하여야 함. 그렇게 해야만 호수에 버려진 ballast water의 구성을 호수 항구에 도착하여 AQIS가 확인할 수 있음. ballast water 배출의 기준은 관리된 물 최소 95%와 관리되지 않은 물 최대 5%의 비율임

선장은 flow through ballast water 교체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을 주의하여야 함

탱크는 한번에 하나씩 또는 유사한 짝으로 처리될 수 있음. 예를 들어 Double Bottom Tanks 1 Port와 Starboard는 단일한 압력원을 사용하여 동시에 펌프될 수 있음

유사하지 않은 탱크의 짝(DBT 1P와 DBT 2S)는 같이 처리될 수 없음. 그 이유는 같은 압력원을 사용하여 유사하지 않은 탱크가 함께 처리될 경우에는 펌프를 통해서 동일한 양의 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기 얼마나 다른 양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님. (동일한 line에서 2개 이상의 펌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압력원을 구성함)

각 탱크를 통해 쏟아져 들어가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ballast water 펌프의 배급양과 배급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함. 실제 선박의 ballast water 펌프의 배급율은 다음의 요인에 의함

펌프나 파이프 등의 마손

배 후미의 깊이

펌프로부터 수평, 수직 거리 (마찰과 중력)

선박의 트립(선미의 균형=펌프의 오르막=전체 중력)

ballast 지름(직경)의 변화

충분한 물이 호수 ballast water 관리 요강에 따라 탱크를 통해 쏟아져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원들은 다음의 ballast water 펌프의 배급율을 검사하고 기록해야만 함 :

Fore Peak Tank (FPT)는 대부분의 배에 있어 ballast water 펌프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탱크이며, 대개의 FPT는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이 있음. 대부분의 ballast 주요 파이프들은 펌프와 FPT 사이에 직경 감소와 방향 변화가 있음. 이러한 요소들은 FPT에 들어가는 시간 당 물의 양이 펌프에 덜 들어가게 할 수 있으므로, 선원들은 홀러넵칠 때까지 forepeak를 채우고 작업 시간을 맞춰서 ballast 펌프를 검

사하는 것이 좋음

하나 이상의 ballast 펌프가 있을 경우, 각 펌프를 각각 검사해야 함. 두 개의 펌프가 함께 사용될 경우, 함께 사용되는 두 개의 펌프를 각각 분리해서 검사해야 함 - 함께 작동되는 두 개의 펌프에 의해 운반되는 양이 각각의 운반율의 합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일 수 있음. FPT를 채우는데 두 개의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탱크에 수행될 경우에는 복합된 탱크 테스트도 가능함 - 예 TSTs 1P와 S

인정된 펌프 검사가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AQIS는 원래 측정된 양에서 배의 수명에 따라 1%씩 감한 양을 펌프의 운반율로 간주함

Ballast Water Test

선박명 :

등록항 :

시작된 일자 :

검사한 Ballast Pump ID :

검사된 펌프의 원래 평가된 용량 :

검사에 사용된 Tank에 관한 사항

(Fore Peak Tank는 단일 펌프, Foreward Upper Wing Tank는 통합 펌프(combined pump)가 선호됨)

1) 최대 탱크 용량(m^3) :

2) 최초의 양 (m^3) :

3) 펌핑이 시작된 시각 :

4) 넘쳐 흐른 시각 :

5) 펌핑 시간 (4번-3번)

6) 펌핑된 양 (1번-2번)

7) 시간 당 펌프의 운반율 (6번/5번)

선장의 서명/인

검역소장 서명/인

Pump는 매 12 개월마다 최소한 검사되어야 한다

안전 고려사항

안전 문제(기상, 해양 상태 또는 운행 불가능 등)로 인해서 전체 **ballast water** 교체가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 선장은 가능한 빨리, 호주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보고해야 함. 이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도착 신고보다 늦어서는 안되며, 사전 도착 신고는 호주 항구에 도착하기 전 12-96시간 사이에 검역당국에 전달되어야 함

Ballast Water 관리 대체 방법

위에 규정되지 않은 **ballast water** 대체 관리 방법을 사용하기 원하는 선박은 그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검역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구조적 문제로 요강을 준수할 수 없는 선박은 영해에 도착하기 전에 서면으로 검역당국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함. 위에 승인된 방법에 따라 **ballast water** 관리를 하지 않거나 검역당국의 면제없이 호주 항구에 도착한 선박은 호주 항구 또는 바다에 **ballast water**를 배출하는 것이 금지됨

Ballast Water Reporting

해외에서 호주로 도착하는 모든 선박은 사건 도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의 내용을 요구함

선박 명세

인간의 건강 상태

선내의 동물/ 조류

검역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으로부터 오는 선박의 최근 방문지

사전 도착 신고서에는 호주 **ballast water** 관리 요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신고할 것을 요구

선장은 **ballast water**가 교체된 항구, 해양 교체 및 호주에서 배출하려는 장소에 관한 AQIS Ballast Water Management Summary를 작성해야 함. AQIS Ballast Water Management Summary는 바다에서 이루어진 **ballast water** 관리에 관한 실시간 기록을 요약한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사전 도착 신고할 필요 없음. 검역관이 승선한 경우에 검사가 이루어지며, 선박은 2년 동안 이를 보관하고,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해야 함

탱크 비우기

Ballast 탱크의 침전물은 호주 바다에 배출되어서는 안됨

선박에 고정된 펌프를 사용해서 Ballast 탱크를 비우는 것은 인정되나, 비고정 펌프를 사용해서

Ballast 탱크를 비우는 것은 허가되지 않음. 수동으로 Ballast 탱크의 침전물을 제거하는 경우, 호주 항구 /바다에 버려서는 안됨. Ballast 탱크의 침전물은 검역 폐기물로서 호주 항구에 양륙되거나, 12해리 밖의 최소 200— 깊이의 깊은 바다 (가능한 육지에서 200해리 밖이 더 바람직)에 버릴 수 있음

Ballast water 교체 계산

Ballast water 교체는 깊은 바다의 깨끗한 바닷물로 고위험성 Ballast water를 최소 95%로 희석하였을 때 가능함

연속 교체 작업 (비우기/채우기)

탱크에 있는 최소 95%의 물이 호주 도착 시에 깊은 바다로 버려져야 함. 교환 작업의 비우기 마지막 단계에서 탱크에 남아 있는 고위험성 Ballast water는 호주 도착 시에는 탱크에 담겨지는 전체 용량의 5% 미만이어야 함

선장은 연속 교체 작업의 비우기 마지막 단계에, 수심 및 남아 있는 물의 양을 기록해야 하며, 모든 탱크를 비우고 채우는데 사용된 방법(중력, 펌프, 중력과 펌프의 조합), 시간, 날짜, 장소를 기록해야 함

연속 교체 계산 예 1 :

최대 용적 2000m³의 Fore Peak 밸라스트 탱크가 있는 선박의 선장이 호주 항구에 도착 할 때 Fore Peak가 1000m³가 되기를 바랄 경우. 교체 전에 고위험성 Ballast water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탱크에 있는 물은 교체되어야 하며, 그 결과 다시 물이 채워진 후에는, 탱크에 있는 고위험성 Ballast water는 5% 미만이어야 함

배출된 후에 탱크의 수위가 단지 5m³를 나타내야 함. 이 경우 만약 심해의 물이 최소 95m³가 뿔에 더해진다면, 그 혼합물은 호주 바다에 배출 가능함.

연속 교체 계산 예2 :

전체 용적 6000m³의 중앙 라인, double bottom tank beneath No.1 Cargo Hold(DB1C)가 있는 선박의 선장이 DB1C에 용적의 1/3인 2000m³만 채우고 호주에 도착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 후에, 탱크의 수심을 재어서 250m³을 보이면, 95% 용적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선장은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

i) 탱크를 5000m³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그의 희망 수위인 2000m³에 다다를 때까지 물을 빼기

ii) 2000m³까지 탱크를 채우기 전에 탱크를 100m³만 남을 때까지 비우기

Flow-Through 와 희석법 :

이 방법들로 교체하고자 하는 모든 탱크의 용적 300%의 물을 깊은 바다의 깨끗한 바닷물을 이용해서 관련 탱크에 쏟아 넣어야 함

다음의 경우, 이 방법의 효율을 높임

동시에 한쌍의 탱크만 물을 쏟아낼 경우

요구되는 300% 교체를 이루기 위한 펌핑 시간을 제조자의 명세서에 적힌 펌핑 용량이 아닌 실제 검사에 의한 ballast 펌프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만약 처음에 5% 이상의 고위험 Ballast water가 탱크에 있었을 경우, 95% 용적 교환을 위하여 전체 용적의 300%가 펌핑되어야 함. 300%는 단지 Flow-Through 와 희석법의 최소 요건이므로,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것이 현명함

Flow-Through 와 희석법 계산:

9 cargo hold를 가지는 100,000 DWT(재화중량톤수)인 선박은 다음의 ballast 탱크가 있음

Tank/Hold	Capacity	Contents
Fore Peak	2000m³	1000m³
WBT 1P	3000m³	Full
WBT 1S	3000m³	Full
WBT 2P	4200m³	Full
WBT 2S	4200m³	Full
WBT 3P	3000m³	1200m³
WBT 3S	3000m³	Full
WBT 4P	4200m³	Full
WBT 4S	4200m³	Full
After Peak	1200m³	800m³

원래 2500m³/hr 계측 용량을 가진 메인 밸라스트 펌프가 장착되어 있는 10년 된 선박의 선장의 선장이 펌프 검사 결과, 단독 사용시 약 2000m³/hr이고 함께 사용할 경우 총 3700m³/hr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예시 1 :

Fore peak tank (용적 2000m³)에 처음에 고위험성 밸라스트 워터가 1000m³ 있었을 경우, 선장이 flow

through 방법을 사용하여 mid-ocean에서 탱크의 내용물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탱크 전체 용적의 300% ($3 \times 2000\text{m}^3$) = 6000m^3

한개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선장은 깨끗한 해수를 3시간 동안 탱크에 부어야 함. 2개의 펌프를 사용할 경우, 펌핑 시간은 $6000 / 3700 = 1.62\text{hr}$ (1시간 37분)

1 pump 운반량 $2000\text{m}^3/\text{hr} = 3\text{시간동안 } 6000\text{m}^3 = \text{탱크 전체 용량의 } 300\%$

2 pump 운반량 $3700\text{m}^3/\text{hr} = 1.62\text{시간동안 } 6000\text{m}^3 = \text{탱크 전체 용량의 } 300\%$

예시 2 :

선장이 WBT 1P, WBT 1S, WBT 2P 및 WBT 2S에 flow through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a) 가능

WBT 1P와 WBT 1S에 동시에 밸라스트 펌프를 사용하여 최소 4.86시간 동안 물을 붓는 경우 (1P와 S의 조합 용량 = 6000m^3 , 4.86 시간 펌핑 @ $3700\text{m}^3/\text{hr} = 18000\text{m}^3=300\%$ 각 탱크 용량

WBT 1P와 WBT 1S의 ballast 교체 후에, 이 탱크들을 닫고, WBT 2P와 WBT S를 동시에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8400m^3 용량을 갖는 No.2s는 동시에 펌핑할 경우 6.81시간이 더 요구됨

b) 불가

선장이 WBT 1P와 WBT 1S 및 WBT 2P와 WBT 2S(총 14,400)를 동시에 펌핑하기 위해 11.68시간 동안 두 펌프를 사용한 경우. 펌프는 전체적으로 같은 양의 물을 운반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각 탱크에 얼마의 물이 들어갔는지 말할 수 없음. No. 1s가 펌프에서 더 멀기 때문에 No.2s보다 적은 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

부록11.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역량 평가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역량 평가

다음은 2006년 실시하였던 검역핵심역량 평가의 연속으로서, 2005년 국제보건규칙 개정 이후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역량을 재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각 설문 항목을 읽어보시고, 소속 기관의 역량 정도를 평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항목의 평가 정도는 5가지(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로 구분되어 있으며, 평가 정도 선택 후, 괄호 안의 점수(1점~10점)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답변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답안지에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2	3	4	5	6	7	⑧	9	10

I. 항시 필요한 역량

1. 병든 여행자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진단시설 등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도를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2.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3. 병든 여행자를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4. 화물 검사를 위한 숙련된 인력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5. 식수원, 음식점, 항공기내식 관련 시설, 공중화장실, 적절한 고형 및 액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기타 잠재적 위험지역 등 입국지점의 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조사사업을 시행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6. 입국지점 내 또는 그 인근의 매개체와 병원소를 위한 관리 사업과 숙련된 인력을 실천 가능한 한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II.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1. 해당 입국지점의 조정자 및 접촉창구 지명, 공중보건 및 기타 기관과 서비스 등 공중보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 적절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2. 격리,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역 의료 및 수의과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염 여행자나 동물을 평가하고 돌볼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3. 의심 또는 감염된 자와 면접하기 위하여 여행자로부터 떨어진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4. 평가 필요시 감염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여행자를 되도록 입국지점에서 떨어진 시설에 격리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5.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구제, 구서, 소독, 오염제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고 조치를 적용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6.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여행자의 입·출국 관리(입·출국 제한 등)를 적용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7. 감염 또는 오염되었을 수 있는 여행자의 이송을 위하여 특정 장비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춘 숙련된 인력(별도의 전문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입국지점(지정 공항, 항만, 육상 교차점)의 핵심역량 평가 답안지

평가척도 문항번호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2	3	4	5	6	7	8	9	10
I-1	1	2	3	4	5	6	7	8	9	10
I-2	1	2	3	4	5	6	7	8	9	10
I-3	1	2	3	4	5	6	7	8	9	10
I-4	1	2	3	4	5	6	7	8	9	10
I-5	1	2	3	4	5	6	7	8	9	10
I-6	1	2	3	4	5	6	7	8	9	10
II-1	1	2	3	4	5	6	7	8	9	10
II-2	1	2	3	4	5	6	7	8	9	10
II-3	1	2	3	4	5	6	7	8	9	10
II-4	1	2	3	4	5	6	7	8	9	10
II-5	1	2	3	4	5	6	7	8	9	10
II-6	1	2	3	4	5	6	7	8	9	10
II-7	1	2	3	4	5	6	7	8	9	10

※ 귀하의 검역소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위의 역량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갖추고 있는 역량의 종류가 무엇이며, 국제보건규칙 개정 이후 변화된 것은 무엇이며 부족한 역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1	
I-2	
I-3	

I-4	
I-5	
I-6	

※ 귀하의 검역소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위의 역량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갖추고 있는 역량의 종류가 무엇이며, 국제보건규칙 개정 이후 변화된 것은 무엇이며 부족한 역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1	
II-2	
II-3	
II-4	
II-5	
II-6	
II-7	